

『한국복지패널조사』

통계정보보고서

2021. 12.

본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는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과정에서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 보고서로 작성기준 시점에 따라 현재의 통계작성 정보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 2023.10.26.

〈차 례〉

I . 통계작성 기획	1
II . 통계설계	11
III . 자료수집	222
IV . 통계처리 및 분석	288
V .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313
VI . 통계기반 및 개선	354

◆ 보고서 개요 ◆

이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 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설명한 것이다. 보고서의 작성목적은 조사의 배경, 연혁, 이용자 및 용도와 통계에서 이용되는 개념과 방법론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고자 하는 통계작성 담당자(통계 전문이용자, 품질진단자 또는 승인담당자)에게 통계과정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통계작성 기획, 통계설계, 자료수집, 통계처리 및 분석,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통계기반 및 개선 등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I. 통계작성 기획

☐ 통계개요

- 한국복지패널조사(승인번호 : 제33109호)
- 통계작성기관/부서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빈곤불평등연구실 & 사회보장재정데이터연구실 데이터조사관리팀

1. 법적근거

- ☐ 정부승인통계 승인번호 제33109호

2. 조사방법

☐ 면접타계식

- 조사원이 조사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응답 대상 가구원을 만나 조사를 진행하면서 응답내용을 기록하는 면접조사 방법으로 컴퓨터를 이용(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 이하 CAPI)하여 현장에서 입력하는 타계식 면접조사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 CAPI는 조사원이 응답 내용을 입력하는 인터뷰어(Interview)와 조사 에디팅 및 진행 관리를 할 수 있는 매니저(Manager)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인터뷰어에는 조사 문항의 순서 논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응답값의 범위를 설정하고, 이상치 값을 입력했을 때 경고창이 뜨는 등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난 조사의 일반적인 특성과 변하지 않는 속성 결과 정보들을 가구별로 탑재하여 조사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임.
 - 매니저 프로그램에는 조사원들이 조사한 내용이 그대로 전송되어 조사지도원이나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의 오류 내용을 점검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조사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음.
- 지역별 패널 가구 전담 조사원을 배정하고, 조사 내용 및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 조사 내용 숙지와 CAPI에 대한 적응력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표 내용에 대한 교육을 먼저 진행한 후 해당 영역의 CAPI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조사표는 가구 조사표(원가구, 신규(분가)가구)와 가구원 조사표(원가구원, 신규가구원), 부가 조사표(아동, 복지인식, 장애인)로 구분됨. 가구 조사표는 가구를 대표하는 응답자 1인이 응답하며, 가구원 조사표는 개별 가구원이 직접 응답하며, 부가 조사표는 해당 가구원이 응답함.

3. 조사 및 공표주기

- ☐ 조사주기: 1년

- ☐ 공표주기: 1년

4. 조사일정 및 일정별 수행업무

□ 조사 및 연구업무 추진 일정(2022년)

- 2021. 11월~12월: 17차 복지패널 조사표(부가조사표) 수정 및 보완
- 1월: 조사표 검토 및 조사수행 준비
- 1월말~2월: 조사표 확정
- 1월~2월 중순: 통계작성변경승인(2.22), IRB 승인(3.22), CAPI 프로그램 보완 및 시연
- 3월 14일(월) ~ 3월 17일(목): 조사원 교육(세종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호텔)
 -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방식
- 1~3월: 1~16차 복지패널데이터 종단 에러체킹 및 점검
- 3월 28일 ~ 6월 25일(90일): 17차 복지패널조사 실시
 - 전국10개팀(지도원6, 조사원 17명), 지역9개팀(지도원9명, 조사원18명)
- 3월 31일(금): 1~16차 데이터 공개(데이터 공개는 매년 3월 말일로 고정)
 - 1~16차 결합데이터(횡단 및 종단), 각 차수별 데이터, 코드북, 조사표 공개
- 3월 초 ~ 6월 말: 18차 조사진행 중 에러체킹
 - 중간 에러체킹은 수시로 실시(19%, 46%, 80%, 95%)하고, 추가 지침 전달(조사원들에게 피드백)
 - 조사기간 중 로밍(1회, 조사답례품 직접 전달, 조사현장 건의사항)
 - 조사지도원 간담회 실시(6.17)
- 3월 말 ~ 6월 말: 학술대회 홍보, 기획세션 발표자 섭외
- 4월 말: 데이터설명회(1~16차) 개최(4월 22일)(온라인 생방송 송출)
 - 유저가이드 및 설명회 자료 홈페이지 공개
- 5월 중순: 학술대회 연구계획서 접수 마감(5.20)
- 6월 초: 대학원생 및 일반 논문 심사 완료 및 결과 통보(6.10)
- 7월~8월: 신규 패널(2,012가구) 구축 조사
 - 7월 4일: 조사원 교육
 - 7월 5일 ~ 8월 13일(40일): 조사진행
 - 중간 에러체킹(30%, 65, 96%) 실시, 조사원들에게 피드백
- 8월 말 ~ 10월 중순: 18차 데이터 에러체킹 및 가중치 부여
 - 조사완료 후 한국리서치로부터 데이터 받기(2주 소요)
 - 18차 데이터 에러체킹(2~3주 소요)
 - 가중치 부여(4주 소요)
- 8월 말: 학술대회 원고 접수 마감(8.12)
- 9월 : 학술대회 개최(9월 29일)(서울 상공회의소)
 - 온라인 생방송 송출
- 9월 ~ 11월: 17차 데이터 에러체킹 완료 및 기초분석보고서 작성
- 11월~12월: 18차 조사를 위한 사전 전화조사 등 조사준비
- 패널 관리 및 홍보: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

5. 통계작성 문서화

5-1 통계작성 기본계획서

□ 2022년 한국복지패널 구축 및 운영

- (필요성) 2022년도에 가장 중요한 사업 목표중 하나는 전국단위 가구를 대표하는 질 높은 데이터를 생산하고, 생산된 데이터를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학문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임
- (목적) 한국복지패널 데이터의 질 높은 데이터 생산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복지패널 조사·분석', '복지패널 학술대회'두 가지 세부과제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내용) 기존의 빈곤층 및 차상위층 관련 조사 중 지속적으로 자료축적이 필요한 조사내용을 중심으로 아래의 내용을 동태적 관점에서 수년간 조사
 - 경제실태: 가구단위 소득·지출 및 재산, 부채
 - 가구여건: 가족해체, 자녀보육 등
 - 취업실태: 취업의 불안정성 파악
 - 빈곤규모: 빈곤층 및 근로빈곤층의 규모 및 계층이동
 - 사회보장 가입·수혜실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 복지욕구: 의료, 주거, 교육, 보육 등
 - 기타 태도 및 가치관, 공적·사적 이전실태 등

5-2 업무편람(직무편람)

□ 한국복지패널 업무편람

- 크게 한국복지패널 조사 개요, 조사원 유의사항, 업무 매뉴얼, 데이터 관리 매뉴얼 등 4가지로 구분
 - (조사 개요) 조사목적, 목표, 일정, 내용 등 명시
 - (조사원 유의사항) 패널 조사시 유의사항, CAPI 사용방법 등 명시
 - (업무 매뉴얼) 홈페이지 관리, 통계변경 승인, IRB 승인, KOSIS 등록 등 명시
 - (데이터 관리) 설문 영역별 오류점검(에러) 체크리스트 명시

6. 통계연혁

6-1 작성통계의 최초개발 시기 및 개발배경

- 국가적 대표성을 띤 통계 생산과 분석은 정책형성과 학문적 발전의 단초를 제공하여 왔음.
 - 20세기 전후 영국 복지국가의 형성은 부스와 라운트리 등의 노동자의 삶과 빈곤조사를 통한 '빈곤의 재발견'에 크게 힘입었음.
 - 이후에도 조사연구는 학술연구뿐만 아니라 국가정책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음.
 - 특히, 패널조사는 국민의 생애주기별 삶의 역동성과 욕구의 변화 등을 동태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정책의 대응성과 반응성을 높여주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사회복지정책을 비롯한 국가정책은 국민의 경제적 상황, 소비문화, 가치관, 빈곤실태 등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여야 하나, 횡단면 조사는 이러한 변화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음.

- 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미국의 PSID, 영국의 BHPS, 독일의 GSOEP, 캐나다의 SLID 등 국가를 대표하는 패널조사가 존재하며, 이러한 패널데이터의 분석결과는 정책형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사회복지정책관련 패널들이 구축되기 시작하였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수탁과제 형식으로 2003년부터 저소득 근로능력자 중심의 자활패널을 구축하였으며,
 - 서울대학교에서도 보건복지부의 수탁과제 형식으로 2005년부터 저소득 취약계층 중심의 복지패널을 구축함.
 - 한편 이와는 별도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양극화 심화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문제, 빈곤역동성 분석에 초점을 두어 차상위·빈곤패널이 2005년부터 구축하기 시작함.
- 그러나 상기의 사회복지관련 3개 패널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노정함.
 - 첫째, 유사한 조사대상에 분석목적만을 달리한 유사 패널의 난립으로 ‘예산 비효율성’ 사업이라는 문제가 발생함.
 - 둘째, 각각의 패널들은 예산계약으로 유효 표본수가 적어 대표성 있는 패널 데이터를 생산할 수 없는 ‘목적 비효과성’ 사업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음.
-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대표성, 유효성, 효율성을 높이면서 사회복지 정책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복지패널 구축에 대한 논의들이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간에 진행되었음. 2005년에 진행된 논의를 통해,
 - 첫째, 유사한 주제의 패널을 여러 개 운용함으로써 국가적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가예산절감과 효율성 측면에서 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공유함.
 - 둘째, 패널을 통합함으로써 많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함. 이는 본원의 조사 및 연구 인프라와 서울대학교의 학술적 인프라가 결합됨으로써 좀 더 양질의 데이터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임.
 - 셋째, 세 개의 패널을 통합함으로써 유효표본 수를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기존의 분리된 조사결과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다차원적 분석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것임.
- 이러한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는 2006년도부터 기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차상위·빈곤패널’과 ‘자활패널’, 서울대의 ‘복지패널’을 통합한 ‘한국복지패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

6-2 통계의 변경 또는 개편 이력 관리

- 통계 개념은 패널이기 때문에 변경된 적은 없고, 분류는 통계청의 직업 및 산업분류 지침을 따르고 있어서 지침 개정을 반영함.
 - ※ 구체적인 내용은 『II. 통계설계-1-2 주요 용어의 정의나 개념 등에 대한 국내 또는 국제기준』을 참조
- 조사내용
 - 2차 조사부터 수년간은 유저들과 정책관계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문항을 추가하는 방향의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종단조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표의 변경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 복지제도 개편에 따른 변경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대체로 기존 문항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구체적인 항목별 개편 내용은 『Ⅲ 통계설계 조사표 변경이력』, 『Ⅲ 통계설계 조사표 변경이력』을 참조

○ 조사방법

- 1~5차 조사까지 PAPI로 수행, 2011년 6차 조사부터 CAPI로 조사방법 변경
- 2007~2011년 2차~6차 조사에서는 소득파악의 정확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 소득신고기간에 맞춰 조사가 매년 4월말~7월에 진행되었으나, 2012년 7차 조사부터는 6월 초에 조사를 완료함으로써 연구, 정책 및 예산반영에 있어 큰 한계로 지적되어 왔던 시차(time lag)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음.

○ 표본

- 1차 7,072가구에서 시작, 연차적으로 표본소실이 진행되어, 2012년 7차 조사에서 1,800가구를 추가하고, 2022년 17차 조사에서 2,012가구를 추가함

○ 가중치

- 가구 가중치는 조사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구의 개념이 가구원의 변동으로 인하여 1차 조사의 정의와 상이해질 수 있으므로 2차 조사 이후의 가중치는 개인 가중치를 중심으로 가구가중치를 산정해오고 있음.
- 2012년 7차 조사 당시 표본(1,800가구) 추가에 따른 가중치 조정작업을 수행하며, 패널 추가로 인한 기존(원) 패널 가중치와 통합(기존+7차 추가) 가중치로 구분하여 가중치를 산정하고 있음
- 2022년 17차 조사에서 표본(2,012가구) 추가에 따른 가중치 조정작업을 수행하며, 패널 추가로 인한 기존(원) 패널 가중치와 7차 통합(기존+7차 추가), 통합가중치(기존+7차 추가+17차 추가)로 구분하여 가중치를 산정하고 있음
- 이후 매년 표본탈락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 조정 작업 수행

7. 통계의 작성목적

7-1 통계 작성 목적

- 국가 정책으로서의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의 경제적 상황, 소비문화, 가치관, 빈곤실태 등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여야 하나, 횡단면 조사는 이러한 변화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복지패널조사는 국민의 생애주기별 삶의 역동성과 욕구의 변화 등을 동태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정책의 대응성과 반응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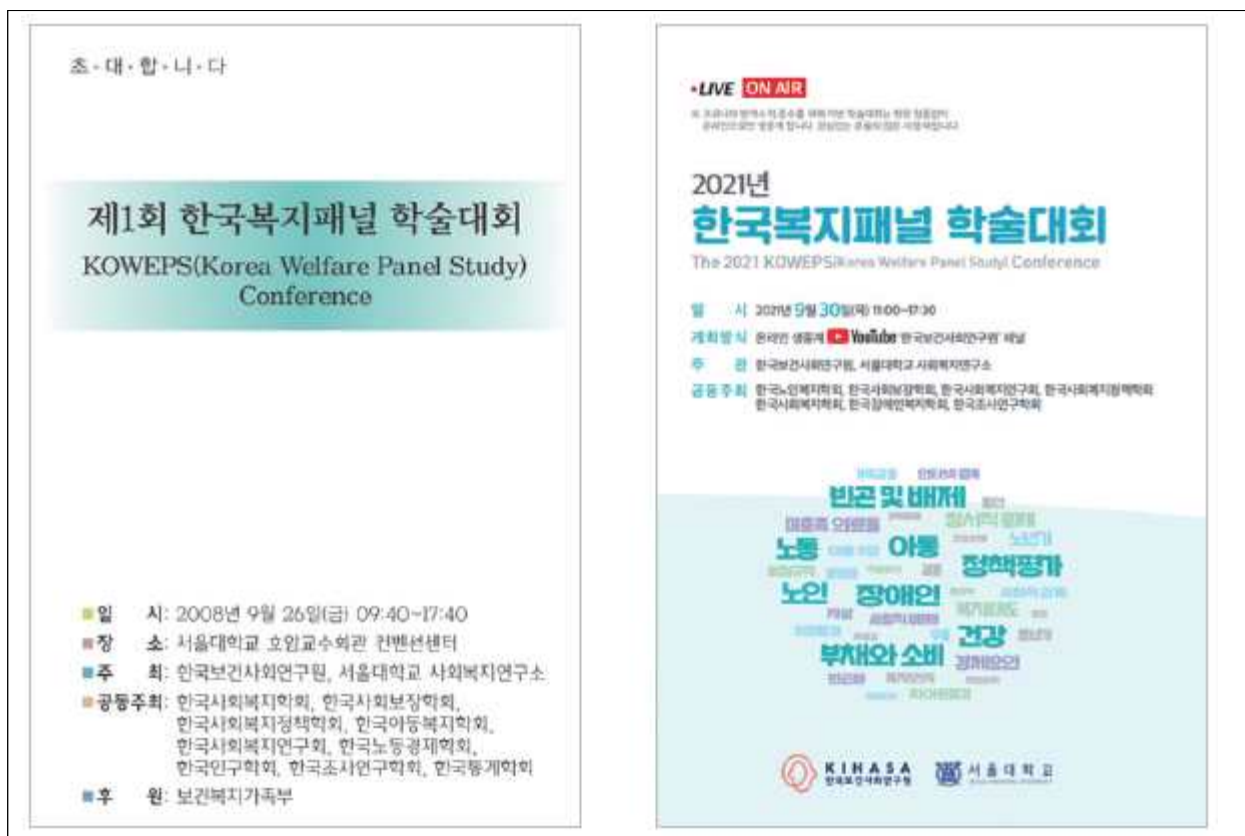
7-2 주요 활용 분야

-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는 다양한 학문분야, 정책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 용도: 학술연구(학술지 논문, 학위논문), 연구보고서(연구기관 기본연구과제), 정책보고서(연구기관 정책연구과제)
 - 학문분야: 사회복지학, 사회학, 경제학, (정신)보건학 등
 - 정책분야: 사회복지정책, 노동시장정책, 보건의료정책 등
- ‘한국복지패널’로 구글 학술 검색(Google Scholar)에서 ‘한국복지패널’로 검색한 결과 지난

18년간 약 26,100건의 학술논문 및 보고서가 누적되어 있음.



- 지난 3년간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논문은 2021년 147건, 2020년 110건, 2019년 122건에 해당함.
- 2008년 9월 제1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학술대회를 통하여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있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는 사회복지학, 경제학, 사회학, 행정학, 통계학, 인구학, 보건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술교류의 장으로, 우리나라 사회정책 및 복지정책의 발전을 모색해옴.



7-3 관련 국·내외 통계 또는 유사 사례에 대한 사전 검토 사항

- 국내(1차 조사 당시 참고한 국내 패널조사)

시작연도	조사기관	조사명	조사대상	조사 수행 시간 간격	최초 표본 수
1998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15세 이상 가구원	1년 단위	5,000가구 13,321명
20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자활패널	15세 이상 가구원	1년 단위	약 2천 가구
20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차상위·빈곤패널조사	15세 이상 가구원	1년 단위	1,142 가구
2005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보건복지부	복지패널조사	15세 이상 가구원	1년 단위	3,855가구

○ 해외

- 미국의 PSID, 영국의 BHPS, 독일의 GSOEP, 유럽의 ECHP(지금은 EU_SILC), 캐나다의 SLID, 호주의 HILDA 등 같이 해당 국가를 대표하는 패널조사 자료를 벤치마킹하였음.
- 해외의 대표적인 패널조사와 비교가능하도록 조사를 설계함으로써 사회정책의 국가간 수렴, 그리고 국제비교 연구의 확대 등의 환경에 대응하고자 하였음. 이를 위해 외국 패널조사의 문항을 검토하고, 가능한 선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후에도 한국복지패널 이용자들로부터 조사문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국제비교 가능한 모듈을 수용하기 위해 관련 해외조사를 벤치마킹 해왔음.¹⁾

8. 주요 이용자 및 용도

8-1 주요 이용자 관리

- 한국복지패널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성명과 소속을 기재하도록 하여 이용자 및 연간 이용자 현황을 관리하고 있음.

8-2 주요 이용자 유형별 용도

□ 정부부처

-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여성부, 청년위원회 등
- 빈곤 동태와 요인파악(빈곤진입, 탈출, 반복빈곤, 지속빈곤 등 현황파악 및 관련 요인 분석), 주요 부처별 복지급여 및 서비스 수급 변동사항, 청년근로빈곤 규모 추정, 사회이동성 등 부처 요구자료 작성에 활용

□ 연구기관

- 국책 및 민간연구기관
-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작성에 활용

□ 학계

- 사회복지학, 사회학, 경제학, 보건학 등 학술논문 작성에 활용
- ※ 연구·정책보고서, 학술논문 활용 목록은 『V.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통계활용 실태』에 제시한 목록 참조

9. 이용자 의견수렴

9-1 이용자 의견수렴 실시 내용과 주요 결과

□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

- 연구과제 평가
- 연간 총 3회(착수 워크숍, 중간 워크숍, 최종 워크숍)

1) ‘한국형 식품보장 측정도구(K-HFSSM)’을 바탕으로 한 ‘한국 간략형 식품보장 측정도구(6 item short-form K-HFSSM)’의 6문항. ‘미국 간략형 식품보장 서베이 모듈(6 item short-form US-HFSSM)’과 연계

○ 원내협의회

- 기존 한국복지패널 연구책임자 및 향후 연구책임자를 할 빈곤불평등연구실의 박사급 인력과 현재 연구진들로 구성되어 있고, 복지패널의 주요 사항의 대해 논의함(3회 개체)

○ 운영위원회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와 복지패널 조사표 내용 및 수정 논의, 학술대회 등 사업내용 전반을 검토함(2회 개체)

□ 전문가 의견수렴 내용

○ 2022년 중간워크숍(자문위원1)

- 복지패널 자료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자료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본 사업의 특성상 기존 문헌에 대한 검토는 주로 자료 구축 방식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면 좋을 것으로 보임
- 중간점검워크숍 자료에는 신규표본 추출 방식의 세부사항(기존 표본의 마모 특성에 대한 분석, 신규표본 추출 방식의 통계 이론적 배경, 1단계 추출을 위해 사용한 모집단 관련 정보 등)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별도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이러한 점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됨
- 자료구축 측면에서 기존 수행 방식 대비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중간워크숍 자료상으로 기존 패널에 대한 조사(17차)는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워크숍 자료에 이전 년도와 금년의 조사 성공률 통계(가능하다면 지역, 연령, 소득 등으로 구분)가 함께 제시된다면 올해 조사의 성공적 수행 여부를 평가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함
- 신규표본 추출이 완료되면 기존 추출 계획과 실제 추출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기초통계가 제시되면 좋을 것으로 보임
- 금년도 사업의 중점과제는 신규표본의 성공적 구축이며, 신규표본 추출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검토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 자료 <표>에 제시된 지역별 표본 수를 보면 저소득층 뿐 아니라 일반가구에서도 수도권 표본이 과소추출된 것으로 보임
- 유치조사를 완료한 7,000가구의 지역별 분포가 모집단과 다른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워크숍 자료에 이러한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한 배경에 대해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이 되면 좋을 것으로 보임 (기존 표본의 지역별 표본 이탈율의 차이 등)
- 만약 7차년도 추가 신규표본 추출 당시 활용한 방법론과 차이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설명이 제시되면 사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 실사일정이 비교적 짧은 한국복지패널 자료 특성상 코로나19 재확산 등 외부적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2022년 중간워크숍(자문위원2)

- 한국복지패널 과제는 기 구축된 표본과 조사방법에 따라 매년 진행하는 과제이므로, 특별한 선행연구 검토가 필요하지 않음.
- 올해 신규패널 구축을 위한 표본 역시 기존 표본 추가 경험에 기초하여 이미 설계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 올해 2000가구의 추가 패널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해 2021년 7000가구 유치조사에

기초하여 저소득층, 일반가구 각 2000가구(2배수)를 표본으로 추출하였음.

- 신규패널 표본 추출 결과를 보면 지역-소득-동부/읍면부-일반/아파트로 층화했을 때 표본이 추출되지 못한 셀이 존재하는데,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임.
- 특히 일반 가구의 경우 유치조사 표본 규모가 비교적 크므로, 셀별로 충분한 표본이 추출되도록 보완하는 방향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한국복지패널 과제는 자료를 수집한 후 기초적인 통계 수치를 집계하여 보고서에 수록하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론이 요구되지는 않음.
- 올해 표본 추가와 관련하여, 추후 추가 표본 설계의 구체적인 내용, 가중치 작업 방식 및 결과 등이 보고서에 정확하게 수록되기를 기대함.
- 기존 패널 표본은 이미 수년간의 조사 경험을 통해 어느 정도 조사에 익숙해진 상태인 반면, 추가 패널 표본은 새롭게 조사를 시작하는 표본이므로 조사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됨. 향후 조사진행 과정에서 현장 상황을 꾸준히 확인하여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9-2 이용자 요구사항 및 요구반영 결과

□ 이용자 의견수렴

○ 한국복지패널 이용자 만족도 조사

- 한국복지패널 이용자의 이용현황, 만족도 및 개선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최근 데이터를 사용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함.
- 이용자 유형별 용도

구분	1.학위논문	2.학술논문	3.학회발표	4.연구(보고서)	5.기타	합계
1.정부부처	0	0	0	0	1	1
2.지방자치단체	1	0	0	1	0	2
3.대학/교육기관	6	21	2	13	3	45
4.공기업등공공기관	1	0	0	1	1	3
5.연구기관	1	2	0	1	2	6
6.민간기업	0	0	0	1	1	2
7.NGO 등 비영리기관	2	0	0	1	0	3
8.기타	0	0	0	2	1	3
합계	11	23	2	20	9	65

· 이용자별 개선사항

소속기관	의견
3.대학교	자살계획, 자살시도 관련 문항이 삭제된 것이 아쉽습니다.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일반인구를 대상으로 거의 유일하게 자살시도와 자살계획을 추적한 종적 연구였습니다. 해당 문항이 향후 부활된다면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민간기업	학술대회를 더 자주 개최하면 좋겠습니다.
3.대학/교육기관	정책수해현황에 대한 설문 추가 필요
2.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관련 연구가 더욱 활발해졌으면 좋겠다.
3.대학/교육기관	연도별 변동내용 요약 및 홈페이지를 보다 직관적으로 개선하면 좋을 듯 합니다.
3.대학/교육기관	공부를 하며 다양한 패널 데이터 및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지만,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만큼 유전환화적인 데이터는 못본 것 같습니다. 항상 양질의 자료를 관리해주시고, 제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대학/교육기관	교통비 등의 생활비가 한 가구에 동일하게 나오게 되어 개별 사람당 생활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소속기관	의견
3.대학/교육기관	복지 패널 이용자들이 학술 논문에서 인용할 수 있는 Data source profile article을 쓰시는 건 어떤지요?
3.대학/교육기관	데이터의 경우는 유의미한 문항들이 끝까지 조사되지 않고 중간에 문항이 바뀌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국제적으로 보편적으로 쓰이는 scale들이 많이 이용되면 좋을거 같습니다.
3.대학/교육기관	한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격년 조사로 최근에 변경된 문항들이 있던데요. 매년 조사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대학/교육기관	의료관련 변수가 다양했으면 좋겠습니다.
3.대학/교육기관	패널연구인만큼 문항을 변경/삭제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측정하다가 중간에 측정을 안해버리면 너무 곤란합니다. 그리고 건강변수를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되도록이면 표준화된 설문지를 인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표준화된 설문지를 인용하실때는, 자의적으로 변화를 주지 않으시면 좋겠고, 만약 피치못할 사정때문에 변화를 주신다면 유저가이드에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5.연구기관	패널이 오래됨에 따라 조사표 내용에도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음
5.연구기관	분석시 사용한 스크립트 예시를 더 많이 보여줬음 좋겠음, 머지데이터에 가구용 데이터 변수가 모두 있었음 좋겠음

□ 의견 반영

- 문항 변경은 패널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자제를 하였고, 제도의 신설, 변경, 삭제 등을 고려하여 문항 변경 의견을 받아들임(예를 자살 문항 추가, 아동부가조사의 새로운 코호트(기존 1차: 초등 4,5,6학년, 4차: 중학교 1,2,3학년, 7차: 고등학교 1,2,3학년 10차: 초등 4,5,6학년으로 새로운 코호트 시작), 복지인식 부가조사의 대상자 확대(2차, 5차는 가구주와 배우자에서 8차부터는 19세이상 성인으로 확대) 등 패널의 큰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의 의견 반영을 함
- 대학/교육기관/지자체 등에서 요구조건이 많았던 특정 문항 추가 및 확대, 지역변수 확대 등 복지패널의 초기 목적에 어긋나는 특정 방향의 문항 추가 및 공개변수 확대 등의 요구사항들은 미반영함

II. 통계설계

1. 조사항목

1-1 주요 용어 및 항목별 정의

□ 원·신규 가구 및 가구의 개념

구분		내용
가구	원가구 (유형1)	- 16차 연도에 조사 완료된 패널 가구 - 2022년 17차 신규 표본 가구
	17차 신규 가구 (유형2)	- 2021년 9월 30일 이전에 분가, 결혼, 직장, 학업, 위탁, 이혼, 별거 등의 이유로 원가구(유형1: 1~15차 연도 조사 완료 가구)에서 분리된 가구 ※ 2021년 10월 1일 이후에 분리된 가구는 원가구에 속하는 가구원(9개월 이상 생계를 함께한 가구원)이므로 17차 신규 가구(유형2)로 조사하지 않고 원가구(유형1)로 조사
가구원	원가구원 (유형3)	- 16차 연도 조사에서 가구원 설문에 응답한 가구원 - 만 15세 이상(2007년 출생자 및 그 이전 출생자)이면서 중·고등학생이 아닌 사람 ※ 2021년 9월 30일 이전에 분가하여 17차 신규 가구원(유형2) 설문으로 조사하더라도 2021년(16차 연도) 가구원 설문에 응답한 가구원이면 원가구원(유형3)으로 조사 - 2022년 17차 신규 표본 가구의 가구원 ※ 패널 최초 진입에 따른 조사 부담으로 일부 문항 제외하고 조사 (누락 문항은 18차 조사 예정)
	17차 신규 가구원 (유형4)	- 16차 연도 가구원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가구원 1) 2021년도에 만 15세가 된 가구원이면서 중·고등학생이 아닌 사람 2) 2021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포함)한 가구원 3) 16차 연도에 출생, 결혼, 합가 등으로 원가구 혹은 신규 가구에 새로 진입한 만 15세 이상 가구원 ※ 2021년 4월 1일 이후에 진입한 가구원은 2021년 1년간 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한 가구원이 아니므로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7차 신규 가구원용 설문 대상이 아님.

□ 가구일반사항

○ 가구형태

구분	내용
단독	1인 가구
모자	어머니와 18세 미만의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단,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부자	아버지와 18세 미만의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단,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조손가구 또는 소년소녀가장	18세 미만의 자가 가구주로 있는 가구 또는 만 65세 이상인 노인(할머니, 할아버지)과 같이 사는 경우 노인을 가구주로 하는 가구
비해당	위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

□ 건강 및 의료

- 종합병원: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100~300개 병상을 가진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가 있음. 병상이 300개 초과인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음(의료법 상 기준).

○ 가입자의 종류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구 분	설 명
직장가입자	모든 사업장(1인이상)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지역가입자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 경제활동상태

○ 근로능력정도

구분	내용
1. 근로가능(일용노동 가능)	일터에서 종일 노동이 가능한 경우
2. 단순근로가능 (집에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정도)	일터에서 종일 근로가 어렵거나, 장애,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집에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경우
3. 단순근로미약자(집안일만 가능)	돈을 벌기 위한 일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집에서 가사일을 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경우
4.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 (집안일도 불가능)	장애, 부상,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하여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 (실제로 경제활동상태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됨)

○ 주된 경제활동 상태

구분	내용
1.상용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인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자 (회사 내규에 의해 채용되어 인사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고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사람)
2.임시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 인 근로자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없더라도 1년 이내에 이 일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또는 일정한 사업완료(프로젝트 등)의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자 (단,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였거나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임시직)
3.일용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인 근로자이거나, 매일 매일 고용 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거나, 일정한 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자
4.자활 및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희망근로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 또는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 희망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자
5.고용주	한 사람 이상 피고용인을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
6.자영업자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7.무급가족종사자	동일 가구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 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단,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경우는 제외)
8.실업자	만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4주 동안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을 하지 못한 자. 구직활동을 한 경우, 30일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것이 확실한 취업대기자는 구직활동여부와 관계없이 실업자로 분류
9.비경제활동인구	만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 에 있는 자. 또한 주된 활동 상태에 따라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로 구분되며, 집에서 통근하는 군 복무자(공익근무요원 등)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 공적연금 가입형태

구분	내용
연금수급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의 수급자(보훈연금 제외)
연금가입	국민연금(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포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의 가입자
연금수급하면서 가입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을 받으면서 공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받으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됨.
미가입	공적연금 가입대상자인데, 어떤 공적연금제도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비해당	국민연금 적용제외 대상자(만18세 미만, 만60세 이상 등) 중 ①연금수급~④미가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구분	내용
직장가입자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피부양자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함.

□ 주거

○ 주택의 유형

구 분		세 부 내 용
①	일반단독주택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
②	다가구용 주택 (원룸 포함)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주택으로서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기가 불가능한 주택. 다가구주택은 건축 시부터 다가구 거주용으로 지어진 주택이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당초 단독주택용으로 지어진 주택을 다가구가 사용하는 주택임.
③	다세대주택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주택으로서 각 세대의 구분등기 및 구분소유가 가능. 별도의 매매 가능.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1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200평)이하이고 4층 이하인 주택.
④	연립주택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4층 이하의 주택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2~4층의 빌라, 맨션 포함). 1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200평)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공동 주택.
⑤	일반 아파트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 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5층 이상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
⑥	영구 임대 아파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사가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임대목적으로 건설한 아파트로, 매매가 아니라 임대가 목적이며, 매각과 양도가 자유롭지 않음.
⑦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한 건물 내에 영업용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경우
⑧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상가, 공장 등)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 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주택의 요건(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 등)을 갖추고 있는 것
⑨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사무실과 호텔을 겸한 복합빌딩으로 낮에는 사무 또는 작업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밤에는 숙식까지 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거 형태를 말함.
⑩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비닐하우스는 비닐 필름을 씌운 온실의 형태로 된 경우를 말함. 움막집은 땅을 움푹 파고 그 바닥부터 기둥을 세워 지붕을 받치게 한 집을 말함. 판잣집은 판자로 사방을 이어 둘러서 벽을 만든 집.

구 분		세 부 내 용
⑪	임시가건물 (컨테이너, 재개발지역 가이주단지 포함)	임시로 지어진 건물
⑫	기타	기타 위에 정의된 주택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로, 기숙사, 보육원, 양로원, 요양원, 기도원 등 집단거주를 위한 구조물
⑬	국민-공공임대아파트	저소득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지방)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 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혹은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하여 3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함.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함.

□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 복지서비스 :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생계 · 보건의료 · 주거 · 보호 · 보육 및 교육 · 발달 · 상담 · 금융 등 포괄적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의미. 단, 본 설문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그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주는 복지서비스에 한함.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본인이 전부 부담하는 경우는 설문에 해당하지 않음
- 바우처서비스 : 바우처는 어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증서를 의미.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전자바우처는 사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서비스의 신청에서 이용과 비용지급, 정산 등 전 과정이 전자시스템으로 처리함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거나 혹은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장애특성 상 활동지원 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각종 활동을 지원하는 바우처 서비스
- 장기요양보험급여 : 일상생활이 힘든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등)을 가진 65세 미만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목욕, 배설 등) 또는 가사지원(세탁, 청소 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 본인부담금 : 바우처서비스 혹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때, 소득수준이나 장기요양등급 및 이용시간 등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차등적으로 적용.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본인이 지불한 금액을 의미

□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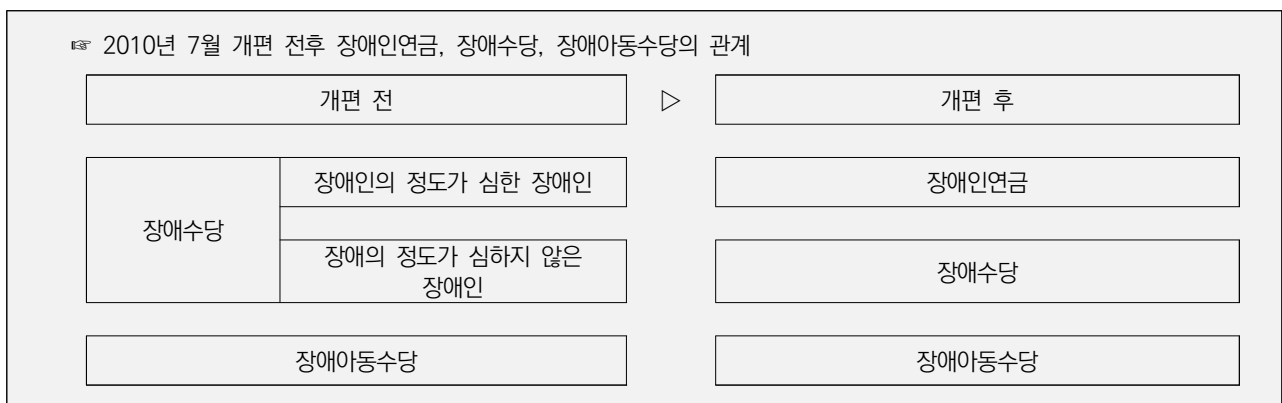
- 노인가구 : 가구원 중 12월 31일 기준으로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
- 노인 무료 급식 : 지자체 노인결식사업의 일환으로 전액 무료로 급식을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 노인이 일부 사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 아동가구 : 가구원 중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만0~17세 사이 아동이 있는 가구
- 공공어린이집 : 공공어린이집은 '정부지원시설'로도 불리며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전담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보다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싸고, 대기자 명단이 긴 특징을 가짐. 공공형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서울형/부산형 어린이집은 모두 공공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점에서 ㉔ 공공 어린이집에 해당함
- 보육료/교육료 지원 : 정부가 부모에게 전자바우처카드(아이행복카드)를 지급하여 부모가 직접 보육료/교육료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원됨. 2015년부터 만3~5세의 보육 및 교육은 누리과정으로 통합되어 지원됨
- 가정양육수당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교 미취학 84개월 미만 전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 수당을 지급함. 단,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등록장애인일 경우,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지원자격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 지원
- 가정봉사·아이돌봄 서비스 : 여성가족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서비스'와 보건복지부의 '장애아(1~3급) 가족양육 지원' 등 정부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아동돌봄 서비스 및 가정봉사 서비스를 의미
- 사교육비와 보육비 : 교육은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행위를 말하며, 보육은 교육을 포함하여 영유아의 건강, 안전과 관련된 보호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짐. 이 개념에 따라 주로 교육의 의미로 이용하는 것이면 사교육비로, 보육의 의미로 이용하는 것이면 보육비로 구분

□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 장애인가구 : 가구원 중 장애인(비등록 장애인도 포함)이 있는 가구
- 2010년 7월 개편 전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의 관계



□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 흡연량 : 생애 흡연 정도, 흡연 경험 시기, 총 흡연기간, 현재 흡연 여부, 하루 평균 흡연량, 최근 1년동안 금연여부, 금연 계획 여부, 간접흡연 경험, 간접흡연 시간을 포함
- 음주 : 음주행동, 음주 영향, 알콜 의존, 위험한 음주 등을 포함

- 출산경험 : 지난 1년간 출산 경험을 포함
- 정신건강 : 지난 일주일간 심리상태, 자아존중감에 대한 질문 포함
- 가족관계 : 배우자와의 폭력 경험정도, 가족관계 만족도를 포함
- 자살 :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경험을 포함

□ 아동부가조사

- 아르바이트 경험 : 아르바이트는 집밖에서 용돈이나 기타 필요한 돈을 목적으로 일을 한 것을 의미. 부모님의 심부름이나 집안일을 하여 용돈을 받은 경우는 아르바이트에 미포함

□ 복지인식부가조사

- 전반적인 사회적·정치적 인식과 태도: 현재 한국사회의 계층구조, 미래의 바람직한 계층구조, 소득, 재산의 평등정도, 소득분배 인식, 빈곤원인 인식, 정부지출에 대한 의견, 사회복지 늘리면 일할 의욕이 떨어지는지 여부, 복지에 대한 인식, 성장과 분배의 중요도, 정부 사회정책 평가, 복지서비스 운영 및 전달의 주체, 복지서비스 재정부담의 주체 등을 포함
- 복지재원 및 대상범위 : 소득계층별 현재 세금수준, 타인에 대한 세금부담 인식, 복지예산을 위한 증세에 대한 의견,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재원 마련 방법, 복지의 대상 범위에 대한 의견, 사회문제 해결의 우선순위 등을 포함
- 정치참여와 성향 : 개인적인 정치에 대한 관심도,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한 만족도, 자신의 정치적 성향 등을 포함

□ 장애인부가조사

- 장애 원인 및 상황 : 장애 원인, 장애시작시점, 현재의 장애상태, 장애의 현재상태 및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장애와 관련된 치료현황,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 외출정도 및 외출하지 않는 이유를 포함
- 일상생활 :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정도, 일상생활 하는데 도움여부 및 도움 준 사람,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이용의향 및 비용부담 여부, 일상생활 수행능력(기본적·수단적), 일상생활에서의 도움 정도, 물질적 지원 및 보살핌 횟수를 포함

□ 장애로 인한 각 상황에서 차별의 의미 규정

- 장애로 인한 결혼으로 인한 차별 : 교제를 포함한 결혼 전과 결혼생활을 모두 포함함
- 장애로 인한 취업시 차별 : 1) 모집시 응시자격이나 채용규정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제한을 둔 경우. 2) 채용절차과정에서 신체검사를 통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격시키는 경우 등을 의미함
- 장애로 인한 직장생활에서의 차별 : 조사대상자가 근무하는 일자리에서 겪게 되는 차별사항.
1) 소득(임금) :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합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 임금을 적게 주는 경우, 임금을 올려주지 않거나 적게 올려주는 경우 등. 2) 동료와의 관계 : 동료들의 따돌림, 대화거부, 회식 동참 거부나 배제 등. 3) 승진 :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승진이나 승급에서

누락되거나 제한된 경우. 4) 기타 : 징계(다른 근로자에 비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다 심한 징계를 받는 경우), 퇴직이나 해고(회사의 경영악화나 구조조정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장애인을 우선 퇴직시키거나 해고하는 경우), 직급부여(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낮은 직급을 주는 경우), 직무부여(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의 능력과 무관한 일을 부여하는 경우), 업무부서 배치(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의 능력과 무관한 업무부서에 배치하는 경우), 근무평가(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근무평가 시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경우), 근무시간(정규근로시간이 아닌 제한된 시간에만 근무를 하게 하는 경우) 등을 의미함

- 장애로 인한 보험제도상 차별 :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각종 보험에 가입을 시키지 않거나, 보험금을 수급 받아야 할 때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을 의미함
- 장애로 인한 의료기관 이용시 차별 :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의료기관이용을 제한받거나 차별받은 경우 등을 의미함
- 장애로 인한 정보통신 이용시(방송포함)의 차별 : 전화요금 할인, 이동통신요금감면, 초고속인터넷 요금감면,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등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제한받거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가입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 등을 의미함
- 장애로 인한 지역사회생활에서의 차별 :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입장(이용)등의 제한을 받거나, 이용하지 못한 경우. 교통요금, 공공시설 이용요금 등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시설(기관)임에도 제한받거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함

□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와주는 주요 인력의 구분

- 가정봉사원 :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임. 가정봉사원 파견시설(복지관, 성당, 동사무소 등도 포함)을 통해 제공됨
- 간병인 : 가족을 대신해서 일정시간 동안 병수발을 들거나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전문적인 간병인 파견기관을 통해서 혹은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
- 활동보조인 : 보건복지부의 활동보조지원제도에 의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데 아무런 장애를 느끼지 않도록 장애인의 육체적인 활동을 매일 보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 요양보호사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 장애아동돌보미 : 보건복지부의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에 의해 만18세 미만 자폐성·지적·뇌병변 장애아 등 모든 중증장애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한 중증장애아동 1, 2, 3급)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장애아동의 학습·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외출지원, 응급조치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 장애아동 및 학생 관련 주요 서비스

- 조기특수교육 : 특수학교에 입학하기 전 단계로서 유아기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 장애전담 어린이집 : 장애아동을 전담으로 보호하는 어린이집
- 특수학교 : 일반학교에서의 교육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특수학교
- 특수학급(일반학교) : 일반학교 내에 장애학생들을 위하여 설치되는 학급
- 학교 방과 후 활동 : 부모의 사회활동으로 인해 낮 시간을 혼자서 보내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생활지도와 학습지도를 하고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활동
- 복지관 방과 후 활동 : 복지관에서 부모의 사회활동으로 인해 낮 시간을 혼자서 보내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생활지도와 학습지도를 하고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활동
- 주간보호 : 가정 내에서 장애인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등을 위해 낮 시간 동안 급식 및 치료서비스 제공,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 단기보호 : 단기간 동안(며칠) 입소하여 급식·치료,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서비스
- 그룹홈 : 장애인의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재활을 돕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에 소규모로 공동가정을 구성하여 생활하는 장소
- 장기시설보호 : 가족이나 보호자가 장기간 장애인을 보호할 수 없을 때 이용하는 시설보호

□ 성인 장애인과 관련된 주요 서비스

- 직업상담 : 구직 장애인의 장애특성과 직업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취업을 위한 준비 사항 및 지원할 내용을 파악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써, 구직 장애인이 희망하는 일자리와 근로조건 등에 대한 사항을 듣고, 일자리 선택의 기준과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자문 및 컨설팅을 제공해주는 것
- 취업알선 : 고용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희망, 적성,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서비스로서 장애인과 동반하여 고용주나 인사담당자와의 면접이나 인터뷰를 지원하는 경우도 포함
- 직업능력평가 : 초기면접 만으로는 직업적 목표설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구직 장애인의 직업적 특성과 잠재능력을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일련의 평가로서 신체능력평가, 의료평가, 심리평가, 작업표본 평가 등
- 일상생활훈련 : 행정업무동행, 차량지원, 외출동행, 장보기, 심부름 등 일상생활 전반에 도움을 주며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
- 직업준비훈련 : 직업생활에 필요한 개인생활, 일상생활, 지역사회생활, 대인관계, 직업의식 등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본자세에 대한 지도
- 보호작업 : 장애인이나 노숙자나 노인 등이 자립을 목적으로 소규모 시설에서 공동으로 작업을 하면서 일정 금액의 임금을 받는 시설.

□ 노인 장애인과 관련된 주요 서비스

- 정서적 서비스 : 말벗, 전화안부, 책읽어주기 등
-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 행정업무대행, 차량지원, 외출동행, 장보기, 심부름 등
- 전문 상담 서비스 : 개별/집단/가족상담, 심리사회적 상담, 정신건강 관련 상담

- 주거지원 : 주거제공 및 주거개조, 도배, 상하수도, 해충박멸, 주방개조 등
- 요양시설보호 : 치매·중풍 등으로 인한 시설 케어

1-2 주요 용어의 정의나 개념 등에 대한 국내 또는 국제기준

□ 직업, 산업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 (업종코드: 중분류코드 2자리 기재함)

대분류		중분류 (업종코드란에 기재함)		소분류
A	농업, 임업 및 어업 (01~03)	01	농업	■ 작물 재배업
				■ 축산업
				■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02	임업	■ 임업
B	광업(05~08)	03	어업	■ 어로 어업
				■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석탄 광업
				■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06	금속 광업	■ 철 광업
				■ 비철금속 광업
		07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 토사석 광업
				■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C	제조업(10~34)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 광업 지원 서비스업
				■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	식료품 제조업	■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과일,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 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
				■ 곡물 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 기타 식품 제조업
				■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 알코올 음료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 담배 제조업
		12	담배 제조업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 편조 원단 제조업
				■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 봉제의복 제조업
				■ 모피제품 제조업
				■ 편조의복 제조업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가죽, 가방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신발 및 신발 부분품 제조업
				■ 제재 및 목재 가공업
		1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나무제품 제조업
				■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1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기록매체 복제업
				■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18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석유 정제품 제조업

대분류		중분류 (업종코드란에 기재함)		소분류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비료, 농약 및 살균·살충제 제조업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화학섬유 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기초 의약품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의약품 제조업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 관련제품 제조업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고무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 내화,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 1차 철강 제조업
				■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금속 주조업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반도체 제조업
				■ 전자 부품 제조업
				■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제조업
				■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 영상 및 음향 기기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 의료용 기기 제조업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광학 기기 제외
		28	전기장비 제조업	■ 사진장비 및 광학 기기 제조업
				■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 가정용 기기 제조업
				■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철도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가구 제조업
				■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 약기 제조업
				■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35)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전기업
				■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 증기, 냉·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

대분류		중분류 (업종코드란에 기재함)		소분류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6~39)	36	수도업	■ 수도업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폐기물 수집, 운반업 ■ 폐기물 처리업 ■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F	건설업(41~42)	41	종합 건설업	■ 건물 건설업 ■ 토목 건설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 전기 및 통신 공사업 ■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 건설장비 운영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자동차 판매업 ■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상품 중개업 ■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 ■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 생활용품 도매업 ■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 건축 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 기타 전문 도매업 ■ 상품 종합 도매업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종합 소매업 ■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 가전제품 및 정보 통신장비 소매업 ■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 연료 소매업 ■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 무점포 소매업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철도 운송업 ■ 육상 여객 운송업 ■ 도로 화물 운송업 ■ 소화물 전문 운송업 ■ 파이프라인 운송업
		50	수상 운송업	■ 해상 운송업 ■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H	운수 및 창고업(49~52)	51	항공 운송업	■ 항공 여객 운송업 ■ 항공 화물 운송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보관 및 창고업 ■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55	숙박업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 기타 숙박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 음식점업 ■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대분류		중분류 (업종코드란에 기재함)		소분류
J	정보통신업(58~63)	58	출판업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60	방송업	■ 라디오 방송업 ■ 텔레비전 방송업
		61	우편 및 통신업	■ 공영 우편업 ■ 전기 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 자료 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 기타 정보 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64	금융업	■ 각종 은행 및 저축기관, 유가증권 및 기타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기관, 여신 전문 금융기관 등
		65	보험 및 연금업	■ 보험, 연금 기금 모금, 운영하는 산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금융 또는 보험 및 연금활동에 밀접히 관련되는 서비스업
L	부동산업(68)	68	부동산업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70	연구개발업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	전문 서비스업	■ 법무관련 서비스업 ■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광고업 ■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 기타 전문 서비스업
				■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수의업 ■ 전문 디자인업 ■ 사진 촬영 및 처리업
				■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운송장비 임대업 ■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 무형 재산권 임대업
				■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 외무 및 국방 행정 ■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 ■ 사회보장 행정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4~76)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 ■ 경비, 경호 및 탐정업 ■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 운송장비 임대업 ■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 무형 재산권 임대업
O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84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 외무 및 국방 행정 ■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 ■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서비스업(85)	85	교육 서비스업	■ 초등 교육기관 ■ 중등 교육기관 ■ 고등 교육기관 ■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일반 고습학원 ■ 기타 교육기관 ■ 교육 지원 서비스업

대분류		중분류 (업종코드란에 기재함)		소분류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86	보건업	■ 병원 ■ 의원 ■ 공중 보건 의료업 ■ 기타 보건업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서비스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96)	94	협회 및 단체	■ 산업 및 전문가 단체 ■ 노동조합 ■ 기타 협회 및 단체
				■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97~98)	97	가구 내 고용활동	■ 가구 내 고용활동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99)	99	국제 및 외국기관	■ 국제 및 외국기관

자료: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 한국표준직업분류 (제7차개정) (직종코드: 소분류코드 4자리 기재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관리자	11. 공공 기관 및 기업 고위직	0111 의회 의원·고위 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원
		0112 기업 고위 임원
	12. 행정·경영 지원 및 마케팅 관리직	0121 행정 및 경영 지원 관리자
		0122 마케팅 및 광고·홍보 관리자
	13. 전문 서비스 관리직	0131 연구·교육 및 법률 관련 관리자
		0132 보험 및 금융 관리자
		0133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
		0134 문화·예술 관련 관리자
		0135 정보 통신 관련 관리자
		0139 기타 전문 서비스 관리자
	14.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0141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0149 기타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15.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	0151 판매 및 운송 관리자
		0152 고객 서비스 관리자
		0153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0159 기타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0211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전문가
		0212 인문 및 사회과학 전문가
		0213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시험원
	22.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022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전문가
		0222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0223 데이터 및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
		0224 정보 시스템 및 웹 운영자
		0225 통신 및 방송 송출 장비 기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0231 건축·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0232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0233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0234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0235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0236 소방·방재 기술자 및 안전 관리원
		0237 환경공학·가스·에너지 기술자 및 시험원
		0238 항공기·선박 기관사 및 관제사
		0239 기타 공학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0241 의료 진료 전문가
		0242 약사 및 한약사
		0243 간호사
		0244 영양사
		0245 치료·재활사 및 의료기사
		0246 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
		0247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0248 종교 관련 종사자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0251 대학교수 및 강사
		0252 학교 교사
		0253 유치원 교사
		0254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0259 기타 교육 전문가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0261 법률 전문가
		0262 행정 전문가
	27.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0271 인사 및 경영 전문가
		0272 금융 및 보험 전문가
		0273 상품 기획·홍보 및 조사 전문가
		0274 감정·기술영업및중개관련종사자
	2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0281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0282 학예사·사서 및 기록물 관리사
		0283 연극·영화 및 영상 전문가
		0284 시각 및 공연 예술가
		0285 디자이너
		028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0287 식문화 관련 전문가
		0288 문화·예술 관련 기획자 및 매니저
3 사무 종사자	31.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0311 행정 사무원
		0312 경영 관련 사무원
		0313 회계 및 경리 사무원
		0314 비서 및 사무 보조원
	32. 금융 사무직	0320 금융 사무 종사자
	33. 법률 및 감사 사무직	0330 법률 및 감사 사무 종사자
	39.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0391 통계 관련 사무원
		0392 여행·안내 및 접수 사무원
		0399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
4 서비스 종사자	41.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0411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0412 경호 및 보안 관련 종사자
	42.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0421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0422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0423 혼례 및 장례 종사자
		0429 기타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 종사자
	43.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0431 운송 서비스 종사자
	44.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0432 여가 서비스 종사자
		0441 조리사
		0442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51. 영업직	0510 영업 종사자
	52.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0521 매장 판매 종사자
		0522 상품 대여 종사자
	53.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	0531 통신 관련 판매직
		0532 방문 및 노점 판매 관련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61. 농·축산 숙련직	0611 작물 재배 종사자
		0612 원예 및 조경 종사자
		0613 축산 및 사육 관련 종사자
	62. 임업 숙련직	0620 임업 관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63. 어업 숙련직	0630 어업 관련 종사자
	71.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0710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0721 섬유 및 가죽 관련 기능 종사자
		0722 의복제조관련기능종사자
	72.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0730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 종사자
		0741 금형·주조 및 단조원
		0742 제관원 및 판금원
	73.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0743 용접원
		0751 자동차 정비원
		0752 운송장비정비원
	74.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0753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0761 전기·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0762 전기공
	75.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0771 정보 통신기기 설치 및 수리원
		0772 방송·통신장비 관련 설치 및 수리원
		0781 건설구조관련기능종사자
	7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0782 건설관련기능종사자
		0783 건축 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0784 채굴 및 토목 관련 기능 종사자
		0791 공예 및 귀금속 세공원
	77.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0792 배관공
		0799 기타 기능 관련 종사자
		0811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원
		0812 음료제조관련기계조작원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78.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0819 기타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원
		0821 섬유 제조 및 가공기계 조작원
		0822 직물·신발 관련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79. 기타 기능 관련직	0823 세탁 관련 기계 조작원
		0831 석유 및 화학물 가공 장치 조작원
		0832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81.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0841 주조 및 금속가공 관련 기계 조작원
		0842 도장 및 도금기 조작원
		0843 비금속제품 생산기 조작원
	82.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0851 금속 공작 기계 조작원
		0852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0853 자동 조립라인 및 산업용로봇 조작원
	83.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0854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0855 금속기계 부품 조립원
		0861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84.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0862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0863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장치 조작원
		0864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85.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0871 철도 및 전동차 기관사
		0872 철도운송 관련 종사자
		0873 자동차 운전원
	8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0874 물품 이동 장비 조작원
		087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0876 선박 승무원 및 관련 종사자
	87. 운전 및 운송 관련직	0881 상하수도 처리 장치 조작원
		0882 재활용 처리 및 소각로 조작원
		0891 목재 및 종이 관련 기계 조작원
	88.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0892 인쇄 및 사진 현상 관련 기계 조작원
		0899 기타 기계 조작원
	89.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091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0921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0922	배달원
	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0930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0941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942	건물 관리원 및 검표원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0951	가사 및 육아 도우미
		0952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0953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0991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0992		계기·자판기 및 주차 관리 종사자	
0999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	
A. 군인	A0. 군인	1001	장교
		1002	부사관
		1009	기타 군인

자료: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 질환 분류코드

○ 희귀질환 및 난치성 질환

① 의료급여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구분	대 상
1	만성신부전의 경우
	가. 혈액투석을 실시하는 사람
	나. 복막투석을 실시하는 사람
2	혈우병(D68.4)
3	장기이식의 경우
	가. 간이식을 받은 사람
	나. 췌장이식을 받은 사람
	다. 심장이식을 받은 사람
	라. 신장이식을 받은 사람
	마. 폐이식을 받은 사람
	바. 소장이식을 받은 사람
4	아래 상병의 경우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1., 구분2. 및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의 구분5.의 상병
5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등록된 극희귀질환자
6	구분 4에 해당되지 않는 희귀질환으로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등록된 상세불명희귀질환자
7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등록된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

주: 1)구분 4, 7은 아래 표 참조.

2)구분5의 ‘극희귀질환’은 진단법에 있는 독립된 질환으로 우리나라 유병인구가 200명 이하로 유병률이 극히 낮거나 별도의 상병코드가 없는 질환, 구분6의 ‘상세불명희귀질환’은 일정기간 동안 정밀검사 및 협진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명을 확정짓지 못하였거나 진단이 불명확한 희귀질환을 의미함.

자료: 2021년 의료급여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교육 및 개인사

○ 대학계열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35개)	소분류(총 121개)	대분류	중분류(35개)	소분류(총 121개)
인문계열	언어·문학	언어학	공학계열	건축	건축·설비공학
		국어·국문학			건축학
		일본어·문학			조경학
		중국어·문학		토목공학	
		기타 아시아어·문학		도시공학	
		영미어·문학		건설	
		독일어·문학		지상교통공학	
		러시아어·문학		항공학	
		스페인어·문학		해양공학	
		프랑스어·문학		기계공학	
		기타유럽어·문학		금속공학	
		교양어·문학		자동차공학	
	문예창작	전기공학			
	인문과학	문헌정보학		전자공학	
		문화·민속·미술사학		제어계측공학	
		심리학		광학공학	
		역사·고고학		에너지공학	
		종교학		소재·재료	반도체·세라믹공학
		국제지역학			섬유공학
		철학·윤리학			신소재공학
교양인문학		재료공학			
인문일반	컴퓨터·통신	전산학·컴퓨터공학			
경영·경제		경영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경제학	정보·통신공학		
	관광학	산업	산업공학		
	광고·홍보학		화학공학		
	금융·회계·세무학	기타	기전공학		
	무역·유통학		응용공학		
	교양경상학		교양공학		
사회계열	법률	법학	자연계열	농림·수산	농업학
	사회과학	가족·사회·복지학			수산학
		국제학		생물·화학·환경	산림·원예학
		도시·지역학			생물학
		사회학			동물·수의학
		언론·방송·매체학			자원학
		정치외교학			화학
		행정학			환경학
		교양사회과학		생활과학	가정관리학
		비서			식품영양학
	교육일반	교육학			의류·의상학
		사회·자연교육			교양생활과학
		유아교육			식품·조리
		특수교육		수학·물리·천문·지리	수학
초등교육	통계학				
중등교육	언어교육	물리·과학			
	인문교육	천문·기상학			
	사회교육	지구·지리학			
	공학교육	교양자연과학			
	자연계교육	지적			
예체능교육					

의약계열	의료	의학	예체능계열	디자인	디자인일반
		치의학			산업디자인
		한의학			시각디자인
	약학	약학			패션디자인
		간호학			기타디자인
	치료·보건	보건학		응용미술	공예
		재활학			사진·만화
		의료공학			영상·예술
		의료장비			뷰티아트
		의무행정		무용·체육	무용
			체육	미술·조형	순수미술
			응용미술		
			조형		
			연극·영화	연극·영화	
			음악	음악학	
				국악	
				기악	
				성악	
				작곡	
				기타음악	
음향					

○ 직업기술

구 분		세 부 내 용
①	기술사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사업관리·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하고 있는 사람
②	기능장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 기능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자와 기능인력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하고 있는 사람
③	기사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시공·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하고 있는 사람
④	산업기사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초기술 및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하고 있는 사람
⑤	기능사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제조·조작·운전·보수·정비·채취·검사 또는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하고 있는 사람
⑥	기타 공인면허 자격증	국가나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자격이 있음을 인정받고 특정한 활동에 대하여 면허를 취득한 사람
⑦	자격증 없는 기능자	공인된 자격증은 없으나 해당 기술분야에서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구체적으로 기능 또는 관련 직업경험을 기술하도록 함)

□ 아동부가조사

- 학교생활 척도(School Life Scale, SLS) : Cavazos, L. F(1990)가 개발한 학교생활 척도는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음. 총점을 계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의 분위기가 보다 민주적이고 긍정적이라고 해석
 - ⇒ 본 조사에서는 아동이 학교분위기를 어떻게 지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Cavazos, L. F(1990)의 학교생활척도(SLS)를 수정하여 사용한 박현선(1998) 연구의 척도를 차용함. 이는 학교유대감 문항으로 원척도와 동일하게 4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함
- 자아존중감(Self-Esteem Scale) : 자아존중감은 Rosenberg, M(1965)가 개발한 척도가 가장 대표적임. 성인용과 아동용이 있으며, 각 10문항으로 4점 척도로 측정함

- ⇒ 본 조사에서는 Rogenberg의 자아존중감 한국어판 아동용 10문항과 자기효능감 3문항을 추가하여 구성함. 자기효능감은 Sherer et al(1982)이 제작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기초로 박현선(1998)이 재구성한 척도의 일부 문항(3문항)을 차용함
-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CBCL: Child Behavior Checklist) : Achenbach와 Edelbrock(1983)이 개발한 CBCL(Child Behavior Checklist)은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를 평가하는 데 세계 여러 나라가 사용하는 유용한 임상도구임. 원래의 CBCL은 4~18세 학생을 대상으로 부모가 평가하는 CBCL/4-18, 유아용인 CBCL/2-3, 교사 보고형, 11~18세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자기보고형, 그리고 학령기 아동의 교실에서의 행동을 10분간 관찰한 후 관찰자가 완성하는 직접관찰형이 있음. 한국판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인 K-CBCL(Korea-Child Behavior Checklist)은 오경자(1990) 등이 번역하여 표준화한 평가도구임. K-CBCL은 크게 사회능력 척도와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로 구성됨
- ⇒ 본 조사에서는 오경자 외(1998)이 번안한 K-CBCL 중 아동의 우울 및 불안, 주의집중, 위축, 비행, 공격성에 해당되는 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함
- 자살 척도 : Raynolds(1988)의 SIQ(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SIQ)는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을 측정하는 척도임. 30문항을 7점 척도로 질문하는 자기보고형 척도. 신민섭(1993)에 의해 한국판 청소년 자살 척도가 번안됨
- ⇒ 본 조사에서는 Raynolds(1988)의 SIQ(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SIQ)를 활용하여 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생애동안의 자살시도 여부와 횟수를 묻는 문항을 추가함
-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 Diener et al(1985)의 삶의 만족 척도와 Watson et al(1988)의 PANAS(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ale)가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됨
- ⇒ 본 조사에서는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2010)가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를 일부 활용함
- 부모의 교육참여 : 이세용 · 양현정(2003)이 부모가 자녀교육에 참여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문항으로 부모-자녀 상호작용, 부모-자녀 물리적 접근성, 부모-자녀 책임/관심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 ⇒ 본 조사에서는 이세용 · 양현정(2003)이 개발한 척도의 일부를 사용함
- 인터넷 중독 : 한국의 인터넷 중독 척도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개발한 K-척도(인터넷 중독 진단)가 대표적임. 대상에 따라 유아용, 청소년용, 성인용 등으로 나뉨
- ⇒ 본 조사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개발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를 사용함

□ 복지인식 부가조사

- 빈곤원인에 대한 인식의 측정 : Feagin(1972)의 빈곤원인인식 척도 10개 문항이 대표적임. 이 척도는 개인책임론과 사회구조책임론, 운명론의 하위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음. 빈곤원인 인식 전체 문항을 단일 척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각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없음
- ⇒ 본 조사에서는 Feagin(1972)의 빈곤원인인식 척도 10문항에 '개인적인 학력수준의 미흡'을 추가하여 1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음

□ 장애인 부가조사

-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 기본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평가하는 지표임(옷 입기, 세수하기, 목욕, 식사하기, 이동, 화장실 사용, 대소변 조절 등). Katz의 Index of ADL, Kenny의 Self-care evaluation, Bathel Index 등이 대표적임. 국내에서는 김수영 외(2004) 등이 변안한 Bathel ADL Index가 사용되고 있음
⇒ 본 조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활용되는 척도를 사용하였음. 12개 항목을 통해 이상없음, 경증, 중증으로 범주화함
-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 수단적 일상생활 능력은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보다 높은 차원의 기능을 평가하는 지표임(몸단장, 집안 일, 식사 준비, 빨래하기, 근거리 외출, 교통수단 이용, 물건 사기, 금전 관리, 전화사용, 약 챙겨먹기 등). IADL of Lawton, Functional Activities Questionnaire(FAQ), IADL of Cambridge Mental Disorders of the Elderly Examination(CAMDEX), Bayer ADL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국판 I-ADL(강수진 등, 2002) 등이 제작되어 사용되고 있음.
⇒ 본 조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활용되는 척도를 사용하였음. 10개 항목을 통해 이상없음, 경증, 중증, 최중증으로 범주화함
- 사회적 지지 척도: Zimet et al.(1988)이 개발한 다면적 척도(MSPSS,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가 대표적임. MSPSS는 세 가지 체계 즉 가족, 친구,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클라이언트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되었고,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조사에서는 원래 12문항으로 되어 있는 MSPSS를 최희수(1999)가 10개 항목으로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음. 10개 항목을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1-3 조사표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202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가구용(유형1)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계층별, 연령별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 욕구를 역동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복지정책 수립시 활용할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고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댁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3월

< 문의 및 연락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44-287-8317, 8294, 8215, 8188, 8138, 8174, 8124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02-880-6320

가구 패널 ID		가구생성차수				가구분리일련번호			
*인포시트상의 숫자를 그대로 이기		- 1차 가구: 01 - 3차 신규가구: 03 -13차 신규가구: 13 -15차 신규가구: 15	- 2차 신규가구: 02 - 4차 신규가구: 04 -14차 신규가구: 14 -16차 신규가구: 16		-1차 가구: 01 -첫 번째 분리가구: 01 -두 번째 분리가구: 02 -세 번째 분리가구: 03				
*인포시트상의 숫자를 그대로 이기		*인포시트상의 숫자를 그대로 이기		*인포시트상의 숫자를 그대로 이기					
주소지	행정코드	_____시·도 _____구·시·군 _____동·읍·면							
	상세주소	_____통·리 _____번지 _____호 (_____아파트 _____동 _____층 _____호) ☎ (_____) _____ - _____							
가구주 성명	응답자 1				응답자 2				
	성명		가구원 번 호		성명		가구원 번 호		
	휴대폰				휴대폰				
조사표완료 소요시간	총 _____분	총방문횟수	총 _____회						
1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미완사유코드			
2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⑥ 비해당(완료) ① 늦은 귀가 ② 장기출타 ③ 부세중(원인미파악) ④ 일부문항 미완			
3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⑤ 조사거부 ⑥ 이사(주소추적불가)			
4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⑦ 사망으로 인한 가구소설 ⑧ 기타 추적불가사유			
최종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⑨ 기타			
조사원 이름		지도원 확인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지도원	(인)		

I. 가구일반사항

본 조사의 조사시점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일반사항은 [인포시트]의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가구원 변동이 없는 경우 반드시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옮겨 주셔야 합니다. 단, 가구주가 바뀐 경우 바뀐 가구를 가구원번호 1번에 기입.

문1) 귀댁에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 2021년 1년 동안 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한 가구원을 기준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단,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가장, 학생, 기타 이유로 같이 살지 않는 가족은 가구원에 포함하여 주십시오.)

가구원 진입 차수	개인 패널ID	가원 번호	이름	문2) 가구주와의 관계		문3) 성별	문4) 태어난 연도, 월		문5) 교육수준	
				문5-1)	문5-2)					
-17차 가구진입 가구원:17 -그 외는 인포시트상 의 숫자를 그대로이기	※인포시트와 지침서를 참고하여 부여	※ 순서 대로 기입	가구원 이름	※ 가구주와의 관계는 주관식 으로 기입후 아래 [가구주 와의 관계표]를 참고하여 코드번호 기입	※ 가구주 정의: 호주 또는 세 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 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사 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① 남 ② 여	※ 주민등록상의 생년, 생월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인포시트]와 비교하 여 확인)	① 미취학 (만 7세미만) ② 무학 (만 7세이상) ③ 초등학교 ④ 중학교 ⑤ 고등학교 ⑥ 전문대학 ⑦ 대학교 ⑧ 대학원(석사) ⑨ 대학원(박사)	① 비해당 ② 재학 ③ 휴학 ④ 수료 ⑤ 졸업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와의 관계 코드	생년 (生年)	생월 (生月)			
			1		0 1 0					
			2							
			3							
			4							
			5							
			6							
			7							
			8							
		9								

문 2) 가구주와의 관계표

- | | |
|---|---|
| 010. 가구주 | 020. 가구주의 배우자 |
| 001. 가구주의 아버지 | 003. 가구주의 배우자의 아버지 |
| 002. 가구주의 어머니 | 004. 가구주의 배우자의 어머니 |
| 005. 가구주의 조부 | 007. 가구주의 배우자의 조부 |
| 006. 가구주의 조모 | 008. 가구주의 배우자의 조모 |
| 011. 가구주의 첫째 자녀 | 02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
| 012. 가구주의 둘째 자녀 | 022.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
| 013. 가구주의 셋째 자녀
(넷째 = 14, 다섯째 = 15, ...) | 023.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배우자
(넷째 = 24, 다섯째 = 25, ...) |
| 031. 가구주의 형제/자매
(첫 번째 사람 = 31, 두 번째 사람 = 32, ...) | 041.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
(첫 번째 사람 = 41, 두 번째 사람 = 42, ...) |
| 051. 가구주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첫 번째 사람 = 51, 두 번째 사람 = 52, ...) | 061.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첫 번째 사람 = 61, 두 번째 사람 = 62, ...) |
| 11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 | 211. 가구주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
| 112.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 = 113, 넷째 = 114, ...) | 212. 가구주 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 = 213, 넷째 = 214, ...) |
| 121.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 | 221. 가구주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
| 122.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 = 123, 넷째 = 134, ...) | 222. 가구주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 = 223, 넷째 = 224, ...) |
| 131.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 | 231. 가구주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
| 132.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 = 133, 넷째 = 134, ...) | 232. 가구주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 = 233, 넷째 = 234, ...) |
| 997. 기타 친인척 (숫자에 관계없이 동일번호) | |
| 998.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숫자에 관계없이 동일번호) | |

가구원 번호	문6) 장애종류 및 정도		문7) 혼인상태	문8) 종교	문9) 동거여부
	문6-1) 장애종류	문6-2) 장애정도			
※순서대로 기입	① 비장애(비장애인) ① 지체장애 ⑧ 정신장애 ② 뇌병변장애 ⑨ 신경장애 ③ 시각장애 ⑩ 심장장애 ④ 청각장애 ⑪ 호흡기장애 ⑤ 언어장애 ⑫ 간장애 ⑥ 정신지체 ⑬ 안면장애 (지적장애) ⑭ 장루·요루장애 ⑦ 발달장애 (자폐성장애) ⑮ 간질장애(뇌전증장애) ⑯ 비등록장애인(보호처등록장애인포함) ※ 가장최근에 판정받은 장애유형을 기록 ※ 중복장애의 경우, 주요 장애 한 가지만 표시 해 주십시오, 등급이 같은 경우에는 생활에 더 큰 어려움을 주는 장애로 표시하면 됩니다.	① 비장애(비장애인)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1~3급) ②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존 4~6급) ③ 비등록 장애인 (보호처등록 장애인 포함)	① 비장애 (18세 미만)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별거 ⑤ 미혼 (18세 이상, 미혼포함) ⑥ 기타(사망등)	① 있음 ② 없음	① 같이 살고 있다. ② 다른 지방에 근무(국내) ③ 해외 근무 중 ④ 학업(해외 유학 포함) ⑤ 입원, 요양 ⑥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⑦ 가출 ⑧ 분가 ⑨ 사망 ⑩ 다른 곳에 밀려진 미취학 자녀 ⑪ 기타(군복무 등) ※ 주거지를 정하지 않은 여행 등 일시적인 비동거자는 동거자로 구분합니다.
1					
2					
3					
4					
5					
6					
7					
8					
9					

문10)	가구형태	① 단독 ② 모자 ③ 부자 ④ 조손가구 또는 소년소녀가장 ⑤ 기타	
------	------	--	--

문11) 맞춤형 급여 수급형태	급여종류	1)수급여부	2) 수급형태 1		3) 수급형태 2	
	① 생계급여 ② 의료급여 ③ 주거급여 ④ 교육급여			① 해당없음 ① 일반수급가구		① 해당없음 ① 가구원 전부 수급
			② 조건부수급가구 ③ 특례가구		② 가구원 중 일부 수급	
			① 해당없음 ① 의료급여 1종		① 해당없음 ① 가구원 전체 의료급여	
			② 의료급여 2종 ③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② 가구원 일부 의료급여	
			① 해당없음 ① 임차급여(특례포함)			
			③ 수선유지급여(특례포함)			
			교육급여 수급자 수		명	

< 용어 해설: 가구형태 >
 • 단독: 1인 가구
 • 모자: 어머니와 18세 미만의 미혼자녀(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만 구성된 가구(단,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 부자: 아버지와 18세 미만의 미혼자녀(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만 구성된 가구(단,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 조손가구 또는 소년소녀가장: 18세 미만의 자가 가구주로 있는 가구 또는 만 65세 이상(1956년 이전 출생자)인 노인(할머니, 할아버지)과 같이 사는 경우 노인을 가구주로 하는 가구
 • 기타: 위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

 < 용어 해설: 의료급여 수급형태 >
 • 의료급여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근로능력결핍,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으로 가구(세대) 모두가 의료급여 수급자인 가구
 • 의료급여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근로능력결핍 등으로 가구(세대) 모두가 의료급여 수급자인 가구

 < 유의사항: 맞춤형 급여 수급형태 >
 ※ 맞춤형 급여(생계, 의료, 주거) 수급형태는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협조를 얻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수급여부 및 수급형태를 확인하고, 교육급여는 응답자의 협조를 얻어 교육청에 문의하여 수급여부 및 수급자 수를 기입합니다.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수급이면 수급가구로 파악합니다.

II. 건강 및 의료 A

※ 가구원 번호와 이름은 2쪽의 순서 및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재합니다.

가구원 번호	이름	문1) 2021년 12월 31일 기준 건강상태	문2) 2021년 1년 중 의료기관 이용			문3) 2021년 1년 중 병원에 입원한 이유	문4) 2021년 1년 중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십시오.	가구원 이름	① 아주 건강하다 ② 건강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⑤ 건강이 아주 안 좋다	문2-1) 외래진료횟수 (예) 3회 →003 없음 →000	문2-2) 입원횟수 (예) 3회 →03 없음 →00	문2-3) 입원일수 (예) 20일 →020 없음 →000	① 비해당 ① 지병/질병 ② 사고 ③ 출산 ④ 건강검진 ⑤ 요양/휴식 ⑥ 성·정형/교정 ⑦ 기타	① 비해당 ① 종합, 대학병원 ② 병·의원(지역내/지역외) ③ 한방 병·의원 ④ 보건소 ⑤ 기타 ⑥ 치과병·의원 ⑦ 요양병원
1							
2							
3							
4							
5							
6							
7							
8							
9							

< 유의사항 >

문 2-1) 외래진료횟수

- ※ 외래진료횟수는 법정의료기관의 횟수만 합산합니다. 순회 진료를 받은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 동일병원에서 각각 다른 진료과목을 2회 이상 진료한 경우는 1회로 표시하고, 2곳 이상의 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2회로 표시합니다.
- ※ 건강검진은 외래진료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 예방접종(국가 무료예방접종 및 유료예방접종)은 외래진료횟수에 포함합니다.

문 2-2) 입원횟수

- ※ 장기입원환자가 365일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1회로 기록합니다.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도 그 횟수를 포함합니다. 응급실에 당일 입퇴원하는 경우, 교통사고나 재발치료 등의 이유로 여러 병원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는 경우는 모두 1회로 표시합니다.

문 3) 병원에 입원한 이유

- ※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으면 '⑩ 비해당' 으로 표시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다면 2021년 1년 중 가장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경우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이유를 기입합니다. '⑤ 요양/휴식' 은 질병 치료 후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문 4)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

- ※ 노인복지관에 의사가 왕진을 오거나 노인복지관 내에 의사가 1인 이상 직원으로 상주할 경우 이곳에서 의료서비스를 주로 이용한다면 '⑤ 기타' 로 표시합니다.

III. 경제활동상태

※ 아래의 모든 조사 항목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 당시 만14세 이하이었던 경우는 문1)의 '0'에 체크하고, 다음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으로 넘어갑니다.

※ 당시 만15세 이상(2006. 12. 31. 이전 출생자)이었던 모든 가구원은 응답해야 합니다.

가구원 번호	이름	문1) 근로능력정도 (※ 심신능력상)	문2) 근로무능력사유	문3)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	문3-1) 경제활동 참여 상태 (12월 31일 기준)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십시오	가구원 이름	① 만14세 이하 → [IV. 사회보험]으로 갈 것 ② 근로가능 → 문3)으로 갈 것 ③ 단순근로가능 (집에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정도) → 문3)으로 갈 것 ④ 단순근로미약자 (집안 일만 가능) → 문3)으로 갈 것 ⑤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 (집안일도 불가능) → 문2)로 갈 것	① 중증장애 ② 질병 또는 부상 ③ 노령으로 인한 심신 무능력 ④ 기타 ※ 모든 응답자는 문3)에서 '⑨ 비경제활동인구' 로 응답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 문4)로 갈 것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 문3-1)로 갈 것 ④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 문3-1)로 갈 것 ⑤ 고용주 ⑥ 자영업자 → 문8)로 갈 것 ⑦ 무급가족종사자 ⑧ 실업자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함) →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으로 갈 것 ⑨ 비경제활동인구 → 문11)로 갈 것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④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⑤ 고용주 ⑥ 자영업자 ⑦ 무급가족종사자 ⑧ 실업자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함) ⑨ 비경제활동인구
1					
2					
3					
4					
5					
6					
7					
8					
9					

〈 용어해설 〉

문3)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경제 활동 인구	취업자	1. 상용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회사 내 규에 의해 채용되어 인사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고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사람)
		2. 임시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없더라도 1년 이내에 이 일이 끝날 것이 라고 생각되는 경우, 또는 일정한 사업완료(프로젝트 등)의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재단, 한 직장에서 오래 일 하였거나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임시직)
		3. 일용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거나, 일정한 장소 없 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자
		4. 자활 및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 또는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자
		5. 고용주	한 사람 이상 피고용인을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
		6. 자영업자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7. 무급가족종사자	동일가구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8. 실업자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4주 동안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을 하지 못한 자 또한 구직활 동을 한 경우, 30일 이내에 새로운 작장에 들어갈 것이 확실한 취업대기자는 구직활동여부와 관계없이 실업자 로 분류
		9. 비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 또한 주된 활동 상태에 따라 가사, 통학, 연로, 심신 장애, 기타로 구분되며, 집에서 통근하는 군 복무자(공익근무요원 등)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 상용/임시/일용 구분은 근무기간이 아닌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학생, 주부라 하더라도 소득을 목적으로 주당 1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는 취업자로 파악하며, 일시휴직자(병가, 산전후휴가, 육아
휴직 등)도 취업자로 파악한다.

※ 불규칙적인 일자리나 계절성이 강한 일자리(농업, 일용직, 자활 및 공공근로 등)의 경우는 조사업무 매뉴얼을 참조하여 응답하도록 한다.

문3-1) 경제활동 참여 상태(12월 31일 기준)

※ 문3)에서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또는 '④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로 응답한 경우 상황에 따라 12월 31일은 쉬고
있을 수 있음. 이런 경우에는 12월 31일 기준으로 경제활동 참여 상태를 응답합니다.

가구원 번호	문4) 고용관계	문5) 근로시간형태	문6) 근로계약기간 설정 여부	문7) 근로지속가능성	문7-1) 근로지속불가능 사유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십시오.	① 직접고용 ② 간접고용 ③ 특수고용 ※ 아래 [문4] 고용관계 참조	① 시간제 ② 전일제 ※아래 [문5] 근로시간형태] 참조	① 계약기간이 정 해져 있음 ② 계약기간이 정 해져 있지 않음 ※ 아래 [문6] 근로 계약기간 설정 여부] 참조	① 특별한 사유(본인의 중대한 과실, 폐업 등 사업체 자체의 소멸 또 는 고용조정, 천재지변 등)가 없 는 한 계속 근로가 가능함 → [문8]로 갈 것 ②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음 → [문7-1]로 갈 것	① 이미 정해진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② 묵시적 • 관행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것이기 때문에 ③ 사업주가 그만두려면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조건 (임시직 등)으로 채용되었으므로 ④ 현재 하는 업무(프로젝트)가 끝나기 때문에 ⑤ 현재의 일자리에서 전에 일하던 사람이 복귀 하기 때문에 ⑥ 특정 계절 동안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9					

문4) 고용관계

- ① 직접고용 고용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둘 사이에 일대일 대응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로 일반적인 고용형태라 할 수 있다. 사용-종속관계가 긴밀하다.
- ② 간접고용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사실상의 사용자가 다른 경우, 근로계약상 '본래 소속의 고용주-일하는 곳에 있는 사용자-근로자' 간의 삼자관계가 성립한다. 파견, 용역 근로가 이에 해당한다.
 - 파견근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
 - 용역근로: 용역회사(용역을 받고자 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 회사의 직원을 보내 해당용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이 회사의 지휘 하에 이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형태(예: 청소용역, 경비용역 등).
- ③ 특수고용: 근로자와 자영업의 중간영역에 있는 자로서,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만큼 소득(수수료, 수당 등)을 얻고 노무제공의 방법이나 노무제공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예: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지입형태의 레미콘(회물, 덤프)기사, 택배원(택배서비스 포함), 다단계판매원, 화장품외판원, 카드모집인, 본인이 소유한 차량으로 학원차량 기사를 하는 경우(단, 본인의 차량이 아닌, 학원에 속한 차량으로 유격을 하는 경우는 직접고용에 포함) 등).

문5) 근로시간 형태

- ① 시간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거나,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에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또한 임금이 시간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 ② 전일제: 시간제 근로자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문6) 근로계약기간 설정 여부

- 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음: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 ②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근로계약상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일정한 사업(프로젝트)완료 기간에 한해 고용된 경우: 사업완료기간이 명백하면 계약기간 정해진 것으로 보고, 사업완료 기간이 명백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봄
 - 일용직의 경우: 인력시장에서 하루하루 고용되어 일을 하는 경우는 계약기간이 정해진 것으로 보고, 고용주(혹은 실장)의 지시에 따라 근로기간이 결정되어 본인은 언제까지 일을 하게 될지 모르는 경우는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봄

문7) 근로지속가능성: 근로계약 기간의 설정여부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다.

-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근로가 가능함: 일반적으로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경우 i)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본인의 중대한 과실, 폐업 등 사업체 자체의 소멸 또는 고용조정,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 경우 ii)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의 반복갱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근로가 가능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음: i)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의 사정상 언제든지 해고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한시적 근로자) ii)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계약기간 만료 이후 계약갱신이 불가능한 경우

가구원 번호	문8) 업종	문9) 직종		문10) 사업장 규모	문11) 비경제활동 사유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시오.	※ [조사업무 매뉴얼] <부록2> 산업분류 코드에서 중분류 코드 2자리를 기입 하시오. ※ 자활 및 공공근로, 노인일자리도 해당 업종의 산업코드를 기입함.	※ 좌측 직업명은 주관식으로 기입, 우측 직업코드는 [조사업무 매뉴얼] <부록3> 직업분류코드에서 소분류 코드 4자리를 기입하시오.		① 1~4명 ② 5~9명 ③ 10~29명 ④ 30~49명 ⑤ 50~69명 ⑥ 70~99명 ⑦ 100~299명 ⑧ 300~499명 ⑨ 500~999명 ⑩ 1000명 이상 ⑪ 잘 모르겠다	① 근로무능력 ② 군복무 ③ 정규교육기관 학업 ④ 진학준비 ⑤ 취업준비 ⑥ 가사 ⑦ 양육 ⑧ 간병 ⑨ 구직활동포기 ⑩ 근로의사 없음 ⑪ 기타 ※ 사유가 겹치는 경우에 주된 사유 하나만 응답 ※ 군복무 대가 지도 ⑫ 군복무로 응답
		직업명	직업코드		
1					
2					
3					
4					
5					
6					
7					
8					
9					

〈 유의사항 〉

문8)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를 따른다(조사업무 매뉴얼 참조).

문9) 직종

※ 한국표준직업분류(7차 개정)를 따른다(조사업무 매뉴얼 참조).

문10) 사업장 규모

① 문3)에서 ‘①~③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 ④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로 응답한 경우

- 종사업체의 상호로 파악되는 전체 사업장 차원의 종사자수를 말하며, 소유, 경영, 인사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종사자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00은행의 00지점일 경우 종사자수는 지점의 종사자수가 아니라 그 은행의 전체 종사자수다.
- 만약, 지점이 아닌, 체인점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일 경우 소유와 운영이 모회사와 별도이기 때문에 해당사업장의 종사자수에 해당 하는 번호를 찾아 기입한다. 예를 들면, 00햄버거의 00지역 체인점의 경우는 햄버거 업체 전체의 종사자가 아닌, 00지역 체인 점의 종사자수만 기입한다.
- 그룹사의 경우 해당 계열사 차원의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예를 들면, 00그룹의 00자동차에 다니는 경우는 자동차 계열사의 종 사자수를 기입한다.
- 공무원, 공립학교 교사 등은 ‘⑩1000명 이상’ 으로 기입한다.
- 하청업체의 경우는 원청업체가 아닌 자신이 소속된 하청업체의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예를 들면, **업체에서 근무를 하지만, 00 업체의 소속으로 급여도 00업체에서 받을 경우는 00업체의 종사자수를 적는다.
- 또한, 파견근로 및 용역근로의 경우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의 사업장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예를 들어, A업체와 고용계약을 맺어 A업체(고용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는 등 인사관리 대상이 되는 사람이 B업체(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A업체의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의 경우에는 사업단 인원수가 되지만, 직업소개소 등과 같은 송출업체를 통해 일을 하고 있는 경우(예를 들어 파출부 등)는 ‘1명’ 으로 간주한다. 즉, 남의 집에서 혼자 일하는 육체적 단순노무, 가사서비스 등과 같은 일용임금근로자는 자신만 종사자로 파악, ‘①1~4명’ 로 응답한다.

② 문3)에서 ‘⑤~⑦비임금근로자(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로 응답한 경우

- 고용주: 고용주를 포함한 자기 사업체내의 전체 종사자수(무급가족종사자 포함)
-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종사자수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 아래의 모든 조사항목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가구원번호와 이름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2쪽의 순서 및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구원 번호	이름	공적연금 가입		국민연금		
		문1) 공적연금가입형태	문2)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	문3) 가입종별	문4) 국민연금납부여부	문5) 미납유형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	가구원 이름	① 비해당 →문9)로 갈 것 ① 연금수급 →문9)로 갈 것 ② 연금가입 →문2)로 갈 것 ③ 연금수급하면서 가입 →문2)로 갈 것 ④ 미가입 →문8)로 갈 것 ※ 공적연금에는 국민,공 무원,사학,군인,발전직 우체국직원연금이 포 함됨. 보호연금은 제외 ※ 아래 [문1) 공적연금 가입형태] 참조	① 국민연금 →문3)으로 갈 것 ② 공무원연금 ③ 사학연금 ④ 군인연금 ⑤ 별정직우체국연금 ⑥ 모름 →문9)로 갈 것 ※ 아래 [문2)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 보충설명] 참조	①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③ 임의가입자(직장이 나 지역가입자는 아 니지만 미래 연금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내고 있음) ④ 임의계속가입자(60~ 65세인데 수급권을 얻기 위해 보험료를 내고 있음) ⑤ 모름 →문9)로 갈 것 ※ 실업상태로 납부에 외자의 경우는 ② 지역가입자로 응답.	① 납부하고 있음 →문7)로 갈 것 ② 납부하지 않고 있음 →문5)로 갈 것 ※ 12월 31일 기준으 로 납부기한을 깜 빕 잊어서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는 ①'납부하고 있음' 으로 응답.	① 납부예외자 →문6)으로 갈 것 ② 보험료 미납 →문7)로 갈 것 ※ 납부예외자는 국민연금가입자 이지만 실직, 사 업중단, 휴직(출산, 육아 등), 군입대, 학업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 지 않는 사람
1						
2						
3						
4						
5						
6						
7						
8						
9						

문1) 공적연금 가입형태

<질문시 유의사항>

공적연금 가입현황을 먼저 질문합니다. 즉, ①, ②, ③을 먼저 질문해서 해당되는 항목에 먼저 체크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
우는 먼저 아래 지침을 참조하여 '① 비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역시 아래 지침을 참조하여 '④ 미
가입'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파악하도록 합니다.

<용어해설>

- ① 연금수급: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의 수급자(재직자노령연금 수급자도 포함)
- ② 연금가입: 국민연금(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포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의 가입자
(만18세 미만으로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라 하더라도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국민연금에 가입을 시켜 준 경우는 연금가입)
- ③ 연금수급하면서 가입: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을 받으면서 공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받으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됨.
- ④ 미가입: 공적연금 가입대상자인데, 어떤 공적연금제도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1961년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던 자인데 2021년 12월 31일 기준 수급 혹은 임의계속가입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
우, 즉 가입자이었던 자가 만60세에 도달하였는데도 수급과 가입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미가입으로 응답
하고, 문8)미가입 이유에 ⑥만60세 경과로 기입)
- ⑤ 비해당: 국민연금 적용제외 대상자(만18세 미만, 만60세 이상 등) 중 ①연금수급~④미가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지침서) 참조

문2)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

- ※ 과거 가입했던 제도가 아니라 현재 가입하고 있는 제도 기준임.
-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그 외 보험료 미납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포함됨.
- ※ 업종, 직종 분류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군인 등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 등 해당 직역연금 가입자가 아닐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예를 들어, 구청직원이라 하더라도 일용직, 용역직원 등은 공무원연금 가입대상이 아닐 수 있음.

가구원 번호	이름	국민연금					
		문6) 납부예외 사유	문6-1) 납부예외 기간	문7) 미납 이유	문7-1) 미납 기간	문8) 미가입 이유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	가구원 이름	① 실직, 휴직, 사업중단 ② 3개월 이상 입원 ③ 생활곤란 ④ 학업(재학) ⑤ 기타(자연재해, 교도소 수감 등)	2021년 1년간 납부예외자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 간은 몇 개월입니까? →문9)로 갈 것 ※ 2021년 1년간 기준임.	① 비해당(미납경험없음) ①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 적 여유가 없어서 ②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 ③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 도 생활걱정이 없을 것 같아서 ④ 모름 ⑤ 기타 ※ 2021년 1년 기준임. ※ 문4)에서 '㉠'납부하고 있 음'으로 응답한 사람 중 20 21년 1년간 미납경험이 없 는 경우 '㉠비해당'으로 기 입하고, 미납한 경험이 있 는 경우는 ㉠-㉤ 중 응답.	2021년 1년간 보험료 를 몇 개월이나 미납 하셨습니까? →문9)로 갈 것 ※ 2021년 1년간 기준임. ※ 2021년 1년간 미납경 험이 없는 경우는 0으 로 기입	① 보험료를 납부할 경 제적 여유가 없어서 ② 국민연금에 대한 불 신 때문에 ③ 가입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④ 모름 ⑤ 기타 ⑥ 만60세 경과	
1							
2							
3							
4							
5							
6							
7							
8							
9							

가구원 번호	산재/고용보험		퇴직금/퇴직연금		개인연금	건강보험
	문9) 산재보험 가입여부	문10) 고용보험 가입여부	문11) 퇴직금 적용여부	문12) 퇴직연금 가입여부	문13) 개인연금 가입여부	문14) 건강보험 가입여부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	① 비해당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모름 ※ 공무원, 사립학교교 직원, 군인의 경우 '㉠ 비해당'에 해당. 별정우체국직원의 경 우는 별도이므로 가 입여부를 응답함. ※ 비경제활동인구는 '㉠ 비해당'임. ※ 다른 종사자 없이 혼자 사업하는 자영 업자는 '㉠ 비해당'이 며, 고용주는 사업장 이 산재보험 가입 사 업장인지에 따라 '㉠ 가입' 또는 '㉡ 미가 입'으로 분류함.	① 비해당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모름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 우체국직원의 경우 '㉠ 비해당'에 해당 함. ※ 비경제활동인구는 '㉠ 비해당'임. ※ 2012.1.22 이후 자영자 및 고용주 (50인 미만 근로자 사용)도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사업 과 실업급여 모두 가입 가능	① 비해당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원, 별정직우체국직원 포함) ① 받을 것이다 ② 받지 못할 것이다 ③ 모름 ※ 직장에서 퇴직금제 시행 여부가 아니라, 응답자 본 인이 현재의 직장에서 퇴 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문함. ※ 퇴직금중간정산 등으로 앞으로 받을 퇴직금이 적 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로 응답 ※ 회사가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사 외적립해서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 도록 하는 퇴직보험의 보 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 우도 '㉠'로 응답	① 비해당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원,별정직우체국직원 포함)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모름 ※ 법정퇴직금에 상응하 는 금액을 사용자가 단독으로 혹은 근로자 와 공동으로 조성하 고, 금융기관에 위탁 • 운용하여 근로자 퇴 직시 연금 또는 일시 금으로 지급하는 새로 운 공적연금제도임. ※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	① 개인연금만 가입 ② 종신보험만 가입 ③ 개인연금, 종신보 험 둘 다 가입 ④ 미가입(수령 중인 경우 포함) ⑤ 모름 ※ 개인연금은 은행, 보 험회사, 투신사, 증권 사 등의 금융기관에 서 취급하는 금융상 품으로 강제적용되는 사회보험이 아니라 일종의 사적인 저축 수단임. ※ 종신보험은 연금으 로 전환이 가능한 금 융상품으로서 개인연 금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음.	① 직장가입자 ②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③ 지역가입자 ④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⑤ 의료급여 1종 ⑥ 의료급여 2종 ⑦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⑧ 미가입 ※ 가구원별로 건강 보험의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혹 은 그 각각의 피부 양자에 해당하는지 물고,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 다면 ⑤~⑧ 중 해 당하는 번호를 기 입함.
1						
2						
3						
4						
5						
6						
7						
8						
9						

V. 의료 B

※ 아래의 모든 조사 항목은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귀댁은 (공적)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문1-1)로 갈 것**

② 아니다 → **문1-2)로 갈 것**

〈유의사항〉

- 한 가구 내에서 1인 이상 건강보험에 가입되고, 일부만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에도 건강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① 그렇다'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1)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①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유의사항〉

- 한 가구 내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 가구주 가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료의 소득비례 부과 및 원천징수가 가능한 임금소득자(직장가입자: 1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직장근로자,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와 보험료의 원천징수가 곤란한 비임금소득자(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로 구분됩니다.

응답 후 문 2)로 가십시오.

문 1-2) (문1)의 ②번 응답자만)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① 의료급여(1종) → **문1-3)으로 갈 것**

② 의료급여(2종) → **문1-3)으로 갈 것**

③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 **문6)으로 갈 것**

④ 미가입 → **문6)으로 갈 것**

〈유의사항〉

- 한 가구 내에서 의료급여, 국가유공자 무료진료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가구주 가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가구주가 의료급여, 국가유공자 무료진료를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주로 이용하는 급여를 기록해 주십시오.
- 의료급여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기본적인 의료혜택(진찰, 수술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 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선별 급여시에는 급여항목별로 30~90% 본인이 부담해야 함.
- 국가유공자 무료진료란, **의료급여(1종, 2종)와는 달리** 의료비를 국가보훈처로부터 전액 국비로 지원받는 국비진료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인 경우를 말합니다(배우자와 유족은 보훈병원 진료비 60% 감면).
- 차성위 수급권자(희귀난치성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는 건강보험 대상자입니다.

문 1-3) (문1-2)의 ①, ②번 응답자만) 귀댁에서는 의료급여서비스를 받으면서 경험했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③ 차별대우를 받음

① 혜택범위가 좁은 것(본인부담이 많은 것)

④ 기타(적을 것 : _____)

② 적용기간의 제한

응답 후 문 4)로 가십시오.

문 2)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에서는 2021년 1년 중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문2-1)로 갈 것**

② 없다 → **문3)으로 갈 것**

문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에서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건강보험을 별로 이용할 일이 없어서

④ 제도에 대한 불신 때문에

②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돈이 없어서

⑤ 납기기한을 잊어버려서

③ 내는 돈에 비해 혜택이 적어서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문2-2) (문2)의 ①번 응답자만) 2021년 1년 중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연간 개월

문 3)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에서 건강보험을 이용하며 경험했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② 보험의 적용범위가 좁음

③ 월 보험료 부담

④ 기타(적을 것 : _____)

문 4)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에서는 건강보험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만큼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	-----------	--------------	-------------

문 5) 귀댁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진료 및 치료 등의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	-----------	--------------	-------------

문 6) ("II. 건강 및 의료" 문 8)의 가구원별 민간 의료보험 가입건수를 고려할 때) 2021년 12월 기준으로 귀댁이 가입하고 계신 모든 민간의료보험의 12월 보험료는 총 얼마나 됩니까?

12월 보험료 합계

백	십	원
---	---	---

만원

VI. 주거

문 1) 귀댁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이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그렇다 → **문1-1)로 갈 것**

② 아니다 → **문2)로 갈 것**

문 1-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이사하신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주택마련
② 재정문제

③ 내/외부요인
④ 주택규모 및 시설설비

⑤ 거주환경
⑥ 기타()

〈 유의사항 〉	
① 주택마련	- 결혼으로 인해 주택을 마련하려고 - 세대 독립을 위해 분가하려고 - 내 집(자기주택)마련을 위해 - 이미 분양받은 주택으로 이사하려고(신축 및 소유주택 포함)
② 재정문제	- 집값 혹은 집세가 너무 비싸고 부담스러워서
③ 내/외부요인	-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 계약 만기로 인해서 - 재개발로 인해서
④ 주택규모 및 시설설비	-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하려고 - 주택규모를 더 늘리려고(주택규모 확장) - 주택규모를 더 줄이려고(주택규모 축소)
⑤ 거주환경	- 부모, 자녀 등과 가까이 살려고 - 직주근접을 위해서 혹은 직장변동(취직·전근 등) 때문에(개인사업 등으로 인한 이사 포함) -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좋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 자녀 양육 및 교육환경 때문에 - 편의시설/위락시설이 부족해서 - 쾌적하고 양호한 지역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⑥ 기타	- 기타

문 2)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이 거주한 주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일반단독주택
② 다가구용 단독주택
③ 다세대주택
④ 연립주택(빌라)
⑤ 일반아파트
⑥ 영구임대아파트

⑦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⑧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상가, 공장 등)
⑨ 오피스텔
⑩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⑪ 임시가건물(컨테이너, 재개발지역 가이주단지 포함)
⑫ 기타(적을 것 :)
⑬ 국민·공공임대아파트

〈 유의사항 〉
※ 반드시 건물전체의 등기상 점유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3)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의 주거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

① 지하층
② 반지하층

③ 지상
④ 옥탑

〈 유의사항 〉
※ 한 가구가 여러 층을 사용할 경우, 가장 좋은 위치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4)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방은 **모두** 몇 개였습니까?(세zon 경우 제외)

총

--	--

 개

< 유의사항 >

- * 사용하는 방의 수를 파악할 때 세를 준 경우는 포함하지 않도록 합니다.
- * 거실의 경우, 침실로 사용하고 있거나 침실로 사용이 가능하면 방수에 포함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5)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건평(APT 등의 경우 분양면적)은 얼마입니까?(1평≒3.3㎡)

--	--	--

 ㎡

< 유의사항 >

- * 마당, 정원, 창고 등을 제외한 거주하고 있는 주택평수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세zon 경우 그 면적을 제외하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6)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이 거주하였던 집의 (등기상) 점유형태는?

- | | |
|---|---|
| ① 자가 → 문7)로 갈 것
② 전세 → 문6-1)로 갈 것
③ 보증부월세 → 문6-1)로 갈 것 | ④ 월세(사글세) → 문6-1)로 갈 것
⑤ 비가구원 명의 주택 → 문10)으로 갈 것
⑥ 기타 → 문10)으로 갈 것 |
|---|---|

< 유의사항 >

- *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등기상 점유형태를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합니다.
- * 가령, 할머니(가구주)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아들(가구원이 아님) 명의로 해놓고 살고 있는 경우, 조사 대상인 할머니 집의 (등기상) 점유형태는 '⑤ 비가구원 명의 주택'에 해당됩니다.
- * 점유형태 '⑥ 기타'에는 무상 관사, 사택 등이 포함됩니다.

문 6-1) (문6) ②전세 ③보증부월세 ④월세 응답자만)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이 거주하였던 집의 임대주택은 어떤 유형입니까?

- | | |
|--------------------------|---|
| ① 민간임대주택
③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②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등)
④ 기타 임대주택 |
|--------------------------|---|

문 7) (문6) ①자가 ②전세 ③보증부 월세 응답자만)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하였던 집의 가격(현시가기준)은 얼마나 됩니까?

금액

--	--	--	--	--	--

 만 원

< 유의사항 >

- * **자가**의 경우 주택가격, **전세**의 경우 전세금, **보증부월세**의 보증금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 * 집의 가격은 반드시 명목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가령, 집이 (가구원이 아닌) 자녀의 명의로 된 경우 집의 가격에 대한 응답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문 8) (문6) ①자가 ②전세 ③보증부 월세 응답자만)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이 거주하였던 주택의 구입비용, 보증금 혹은 증·개축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다?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2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자기돈(상속인 경우 포함)
- ② 무상으로 도움을 받음
- ③ 부모·형제·친척·친구 등으로부터 빌림
- ④ 금융기관(회사에서 융자받은 경우 혹은 모기지론도 포함)으로부터 빌림
- ⑤ 사채

문 9) (문6) ①자가 ②전세 ③보증부 월세 응답자만)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살았던 귀택의 주택관련 부채에 대해 응답하여 주십시오.

구	분							
㉞	2021년 1년간 주택관련 부채를 얼마나 갚으셨습니까? (※ 원금만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㉟	2021년 12월 31일 기준 주택관련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 단, 이자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갚지 못한 이지만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 유의사항 >

※ 주택관련 부채 : 주택구입비, 보증금, 증개축비용만 포함하고,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은 제외합니다.

※ 없음= '0' 으로 표시합니다.

문 9-1) (문6) ①자가 ②전세 ③보증부 월세 응답자만)

2021년 1년간 대출상환액(이자포함)의 연체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① 연체한 적이 없다

③ 2~3회

② 1회

④ 4회 이상

< 유의사항 >

※ 주택관련 부채가 없거나 2021년 이전에 주택관련 부채를 다 갚은 경우 '① 연체한 적이 없다' 에 표기해 주십시오.

문 10)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한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이 어떠하였습니까?

다음 항목별로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예	아니오
㉞ 영구건물로서 튼튼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이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을 갖추고 있다.	①	②
㉟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고 있다.	①	②
㊱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으로 인하여 생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①	②
㊲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㊳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다.	①	②

문 11)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택의 주거시설 종류와 사용형태를 응답해 주십시오.

시설종류	사용형태
㉞ 상·하수도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③ 없음
㉟ 부엌	① 단독사용-입식 ② 단독사용-재래식 ③ 공동사용-입식 ④ 공동사용-재래식 ⑤ 없음
㊱ 화장실	① 단독사용-수세식 ② 단독사용-재래식 ③ 공동사용-수세식 ④ 공동사용-재래식 ⑤ 없음
㊲ 목욕시설	① 단독사용-온수시설 있음 ③ 공동사용-온수시설 있음 ② 단독사용-온수시설 없음 ④ 공동사용-온수시설 없음 ⑤ 없음
㊳ 난방시설	① 연탄 또는 재래식(떨감) 아궁이 ④ 기름보일러 ⑦ 중앙난방(지역난방) ② 연탄보일러 ⑤ 가스보일러 ⑧ 전기장판 ③ 나무·석탄보일러 ⑥ 전기보일러 ⑨ 기타(적을 것: _____)

문 12) **2021년 1년간** 귀택에서 이용한 적이 있는 주거복지 관련 사업이 있다면 그 서비스에 체크해 주십시오.

주거복지 관련 사업	있다	없다
㉠ 영구임대주택	①	②
㉡ 국민·공공임대주택	①	②
㉢ 전세자금(융자)지원(저소득·근로자·서민) (※지자체의 전세(융자)지원 포함)	①	②
㉣ 저소득층 월세지원 (※ 지자체의 월세지원 포함)	①	②
㉤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근로자·서민)	①	②
㉥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	①	②
㉦ 기타(적을 것: _____)	①	②

< 유의사항 >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 '㉦ 기타'에는 소년소녀가장 등 전세주택지원, 부모임대주택 임차인지원, 고령자 임대주택,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직장 여성 아파트), **행복주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의 경우 2021년 이전부터 입주하여 2021년 동안에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이용경험 여부에 '① 있다'로 응답합니다.
 그러나 ㉢,㉣,㉤의 경우는 2021년 당해 연도에 지원받은 경우만을 이용경험 여부에 '① 있다'로 응답합니다.

VII. 생활비

< 유의사항 > ※ 생활비 : 가정생활을 위한 비용만 기입합니다. 따라서 사업용도의 비용은 제외합니다. ※ 천안역, 아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보좌받는 각종 현물(정학금, 의료비, 각종 공과금 대납, 식료품, 의류, 난방용품, 복지 할인 등)도 현금으로 환산하 여 해당 비목의 생활비에 포함하여 주십시오. ※ 할부 구매의 경우 구입시점기준(2021년 구입)이며, 그 품목의 가격÷12를 기입합니다. 예) 2021년 10월에 1,200만원짜리 자동차를 24개월 할부(월 50만원)로 구매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의 총가격을 12개월로 나눈 금액(100만원)을 기입합니다. 따라서 2020년 중 24개월 할부로 차를 구입하여 2021년에도 월 50만원씩 할부금을 내는 경우라도 2021년의 지출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 9개월 미만 생계를 같이한 가족이 있을 경우 이들의 지출은 중생월비에서 제외합니다. 그 이유는 가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 1)	식료품비	문 1-1) 가정 식비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월평균 가정식비는? ※ 가정에서 먹는 주식, 부식, 간식비용, 제사비용, 음주비용 제외 ※ 자기산비(자기가 농사를 지어 먹는 것, 자기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 등) 포함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1-2) 외 식비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월평균 외식비는? ※ 직장인의 증식비(무료 증식비 포함, 가족(가구원)이 아닌 비용은 사적(개인) 지출에 포함) 및 가구원 외식비, 학교 급식비(석식), 밖에서 먹는 술(음주) 비용, 복지관에서의 무료식사 등.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1-3) 주류·담배비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월평균 주류·담배비는? ※ 가정에서 먹는 주류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2)	주거비 (주택 구입비 제외)	문 2-1) 월세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월평균 월세(사과세 포함)는? ※ 돈이 없어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어도 계약한 월세액'을 기입 ※ 전세, 자가인 경우 '0' (단, 자가나 지대를 내는 경우 월평균 지대액을 기입) ※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은 제외하고 월세만 기입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2-2) 주거관리비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월평균 주거 관리비 및 수선비는? ※ 주택설비 및 수선비(주거급여 수선유지 급여 포함), 아파트 등 관리비, 이사비, 복비, 전화조비 등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3)	광열수도비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월평균 광열수도비는? ※ 수도비, 전기료, 난방비(연탄, 등유, 경유, 도시가스, LPG 등 급탕비, 에너지 바우처 포함)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 난방비(연탄, 등유, 경유, 도시가스, LPG 등 급탕비, 에너지 바우처 포함)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4)	가구·가사용품비	문 4-1) 가구·가사용품비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월평균 가구·가사용품비는? ※ 가구, 가정용가전(냉장고, 세탁기, 가스렌지 등), CCTV 카메라, 식기주방용품, 가습기, 공기청정기, 화상기, 전구, 공구, 세탁용수건 등, 침구 및 실내장식품, 가사서비스 비용(피클링, 청소비 등), 기타귀찮, 정수기 대여료, 치료목적이 아닌 바우처·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이용료 등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4-2) 보육료비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월평균 보육료는? ※ 보육료는 베이비시터, 놀이방을 포함하는 것이며, 유치원은 제외함.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5)	의류 신발비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월평균 의류·신발비는? ※ 의의(스포츠웨어 포함), 내의, 학생복(교복), 구두, 운동화, 모자(스포츠용 포함) 등 구입비 및 수선비, 세탁료 등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6)	보건 의료비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월평균 보건 의료비는? ※ 입원비, 외래진료비, 치과진료비, 수술비(임플란트, 성형수술 등도 포함), 약값, 간병비, 산후조리비, 건강진단비, 건강보조식품, 보건의료용품(인형, 콘택트렌즈 등, 보장구, 마스크, 손소독제, 치료용바우처(비만·당뇨·바우처)이용료 등, 보건 의료비는 본인 부담하는 금액만 기입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7)	교육비	문 7-1) 공교육비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월평균 공교육비는?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초·중·고 제외), 문방구비, 보조수업비(모든 학생이 다 하는 경우), 유학비, 아외학습비, 수학여행비 등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7-2) 사교육비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월평균 사교육비는? ※ 학원비, 유치원비, 도서관 및 독서실 비용, 과외수업비, 검정고시비, 학생의 어학연수비, 학습바우처 등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8)	교양 오락비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월평균 교양·오락비는? ※ 신문, 서적, 잡지, 영화 및 공연관람, 교양오락용품 구입비(TV, 오디오, PC, 유선방송, 피아노, 강낭콩, 등산용품, 낚시대, 골프채 등), 교양오락서비스(PC방, 노래방, 운동강습료, 일반인의 어학학습비, 단체관람비 등), 비디오(DVD) 대여료, 해전(강아지) 구입비, 화분 구입비, TV수신료, 이동통신요금 등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9)	교통 통신비	문 9-1)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월평균 교통비는? ※ 택시·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비, 자동차 구입 및 유지비, 자동차 보험료, 대리운전비, 성인용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등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9-2)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월평균 통신비는? ※ 전화·휴대폰 구입 및 이용요금, 인터넷 이용료 등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10)	기타 소비 지출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월평균 기타소비지출은? ※ 이비용품 구입 및 서비스(화장품, 비누, 샴푸, 이·미용실, 목욕료 등), 장난감(핸드백, 시계, 귀금속 등), 경조비, 교제비용, 친목회비, 종교관련(집일조 등) 비용, 보장성보험료(자축성보험 제외), 관혼상비(가구지출 기준), 용돈 등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 경조비(축의금 부의금 등 타 가구 지출)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 종교관련비용(집일조 등)은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 비영리단체(기부금, 직장노조비, 친목회비 등) 이전지출은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11)	사이 적전	문 11-1) 거 원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따로 사는 가구원(타지에서 공부하는 학생,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사는 배우자 등)에게 보낸 월평균 송금보조금은? ※ 현금 포함 ※ 자취비용 월세 등, 학교 기숙사비, 생활장비, 용돈 등, 등록금 등 교육비는 7,000원에 기입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11-2) 타 가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가구원이 아닌 부모, 자녀, 친지 등에게 보낸 월평균 송금보조금은?	부모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자녀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기타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12)	세 금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월평균 세금은? ※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근세, 재산세,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주민세, 취득세 등의 연간 총납세액을 12로 나눈 값 (단, 법인세 등 사업용도의 세금은 제외함) ※ 본인 명의가 아닌 재산에 대해 내는 세금도 포함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 소득세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 재산세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 자동차세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 종합소득세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 부동산세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13)	사회보장부담금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월평균 사회보장부담금은? ※ 가족 모두의 국민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월 합산액 ※ 본인부담의 보험료만 포함(사업장이나 제3자가 부담해주는 보험료는 제외) ※ 사보험료(임보험, 보장성보험 등) 제외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 국민연금보험료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 건강보험료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 고용보험료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14)	총 생 활 비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지출하신 총 생활비는? ※ 중생월비 = 1~13의 합계 ※ 저금, 자축성보험료, 계 부은 금액 등 재산 증기를 위한 지출과 주택부금상환 월부, 외상 일관 돈(이자 포함) 같은 금액 등 부채 감소를 위한 지출은 제외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 없음은 반드시 '0' 표시. 지출 소득의 경우 이하 동일

※ 천원 단위 이하는 소수점으로 표시(예, 5천원 → 0.5), 단 1만원 이상은 반올림하여 만원단위로 처리. 예) 11만5천원의 경우 12만원으로 기입

VIII. 소득

문 1)	가구원의 경제활동: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귀 가구 가구원 중 만 15세 이상(2006.12.31.이전 출생자)이었던 모든 가구원의 경제 활동을 말씀해 주십시오. (①~⑥의 활동 분류 중 해당하는 경우 1로 표시)												
성명	가구원 번호	① 상용근로자		②임시·일용 근로자		③고용주·자영자 (농림축어업제외)		④ 농림축산업 경영주		⑤ 어업 경영주		⑥무급가족종사자·가사 또는 육아·학생·기타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해당 개월수
	1												
	2												
	3												
	4												
	5												
	6												
	7												
	8												
	9												
합계		명		명		명		명		명		명	
		문항 2로 가시오		문항 3으로 가시오		문항 4로 가시오		문항 5로 가시오		문항 6으로 가시오		문항7로 가시오	

〈 유의사항 〉

- ※ 15세 미만의 경우 이름만 기입.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에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 한 사업에 직업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여부에 모두 '1'로 표시(예, 공무원이면서 농사를 짓는 경우 상용근로자와 농림축산업 경영주에 모두 '1'로 표시하고 문항 2와 문항 5에서 소득파악).
- ※ 개월수는 2021년 동안 일한(해당) 개월수 기입(예, 전년(2020)부터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1년 3월에 퇴직하여 3개월 동안 쉬 후 7월에 상용근로자로 취업하여 2개월 일한 경우 '상용근로자 일한 개월수'는 5개월임. 농업의 경우 12개월로 기입.)
- ※ 자영업, 농림축산업, 어업 등에 종사하는 가구 중 2명 이상의 가구원이 하나의 사업장 혹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는 그 중 1명만 고용주·자영자, 농림축산업 경영주, 어업 경영주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⑥무급가족종사자로 표시함.

※ 주된활동구분

① 상 용 근 로 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계속 정규직원으로 일하면서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사람 등. 일반직장인, 공무원, 법인경영자(월급 사장)등을 포함함.
②임시·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란 임금근로자중 상용이 아닌 사람으로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사업완료(예컨대,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 등을 말함. 일용근로자란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면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 다니면서 일한 댓가를 받는 사람 등을 말함.
③ 고용주·자영자 :	(농림축어업제외) 1명 이상의 유급종업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고용주와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과 함께 일을 하거나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 및 경영하는 경우.
④ 농 림 축 산 업 경 영 주 :	10a(약 300평) 이상의 경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거나,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단, 판매액이 120만원 미만이라도 2021. 12. 31. 시점에 120만원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
⑤ 어 업 경 영 주 :	어업에 종사하면서 연간 1개월 이상 판매를 목적으로 해면에서 수산 동식물의 포획·채취나 양식업을 경영하는 사람.
⑥ 무급 가족 종사자:	일정한 보수 없이 자기 가족(동일가구 내)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장 혹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가사 또는 육아:	자기의 시간 대부분을 자기집에서 가사업무를 하거나 가구원의 간병을 수행한 경우 또는 미취학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집에 있는 경우임.
학 생: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로 재학생도 포함함. (※ 직장인이 야간대학(원) 등에 다니는 경우 주된 활동은 해당 근로활동(위의 ①~⑤)으로 표시함)
기 타:	실업자, 장애, 부상,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한 심신무능력을 사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자, 근로능력은 있으나 근로의사가 없는 자 등

문 2)	상용근로자: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상용근로자였던 가구원 각각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연간 급여 총액 (원천징수전 총급여)은 얼마였습니까?										
※ 총급여는 기본급여,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경상적으로 매월 지급된 수당, 성과급, 소득공제 환급분, 판공비, 복지카드, 회사에서 내준 자동차 유지비 및 휴대폰 요금, 무료중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 총급여는 소득세, 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세금 및 각종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임. ※ 법인 경영자의 경우 상용근로자로 분류함. ※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1번과 3번이 상용근로인 경우 가구원 번호 1번과 3번에 이름을 기입하고 총급여액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둠(이하 동일함). → 상용근로 외 다른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		성명	가구원 번호	연간 총급여액							
			1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2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3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4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5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6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7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8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9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3)	임시·일용근로자									
[보조기입란 3-a]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월평균 일한 횟수(출근일수)와 1회(1일)당 지급되는 보수는 얼마입니까?		성명	가구원 번호	월평균 일한횟수	1회당(일당) 보수					
※ 월별로 일한 횟(일)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월별로 일한 횟(일)수를 확인한 뒤, 2021년 1년 동안 전체 일한 횟(일)수를 12개월로 나눈 것을 월평균 일한 횟(일)수로 기재함. 예) 2021년 가구원 A가 1~6월까지 월 5회, 7~12월까지 월 15회 일하였다면, 월 10회((30+90)/12개월) 기재 ※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이 임시·일용인 경우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에 이름, 일한 횟수, 1회당 보수를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둠. ※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사업 소득 포함			1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2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3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4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5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6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7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8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9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3-1.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임시·일용근로자였던 가구원 각각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연간 총급여 (원천징수전 총급여)는 얼마였습니까?	성명	가구원 번호	연간 총급여액							
※ 총급여는 기본급여,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경상적으로 매월 지급된 수당, 성과급, 소득공제 환급분, 판공비, 복지카드, 회사에서 내준 자동차 유지비 및 휴대폰 요금, 무료중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 총급여는 소득세, 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세금 및 각종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임. ※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이 임시·일용인 경우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에 이름과 총급여액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둠. → 임시·일용 외 다른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		1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2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3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4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5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6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7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8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9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4) 고용주 및 자영자									
[보조기입란 4-a]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고용주 혹은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의 1년 동안 연간 총매출액은 얼마였습니까? ※ 가족구성원 중 2명 이상이 동일 매장 및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대표자 1명만 고용주 및 자영자로 분류하고,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서는 월급을 받으면 근로자로, 월급을 받지 않으면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함. ※ 일한 개월 수, 월간 매출액 등을 바탕으로 파악 ※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3번이 고용주 및 자영자인 경우 가구원 번호 3번에 이름과 총 매출액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둬.	성명	가구원 번호	연간 총매출액 (A)						
		1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2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3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4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5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6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7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8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9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보조기입란 4-b]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고용주 혹은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이 매장 및 사업장 등을 운영하면서 소요된 연간 총비용은 얼마였습니까? ※ 경비에는 재료비, 직원 인건비 및 직원 사회보험료, 법인세, 복리후생비, 공장 또는 가게 월임대료, 차량유지비, 광고비, 소모품비용 등이 포함됨. ※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3번이 고용주 및 자영자인 경우 가구원 번호 3번에 이름과 총 비용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둬.	성명	가구원 번호	연간 총비용 (B)						
		1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2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3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4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5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6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7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8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9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4-1,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고용주 및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의 1년 동안 연간 순소득은 얼마였습니까? ※ 순소득은 연간 총매출액에서 연간 총비용을 감하여 구함. ※ 순소득은 소득세, 본인과 가족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부담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임. ※ 순소득에는 자가소비, 고용주와 사업주가 용돈 및 개인경비로 쓰는 비용도 포함됨. ※ 순소득이 마이너스일 경우, 숫자 앞 칸에 “-” 표(마이너스 표시)를 하고 금액을 기입함. ※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3번이 고용주 및 자영자인 경우 가구원 번호 3번에 이름과 순소득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둬. → 고용주 및 자영자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	성명	가구원 번호	연간 순소득 (A-B)						
		1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2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3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4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5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6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7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8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9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4-2.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고용주 및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의 1년 동안 **연간 전입소득**은 얼마였습니까?

- ※ 전입소득은 총수입중에서 가구로 가지고 오는 금액이다. 2021년 2,000만 원을 벌어 1,300만원을 재투자하고, 집으로 **700만원을 가지고 왔다면 700만원 기입**
- ※ 그러므로 전입소득은 4-1의 순소득과 다를 수 있다. 전입소득은 음수(-)가 없음.
- ※ 순소득이 음수(-)인 경우도 전입소득은 있을 수 있음(즉, 0이 아닐 수 있음).
- ※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3번이 고용주 및 자영자인 경우 가구원 번호 3번에 이름과 순소득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둬.

→ **고용주 및 자영자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

성명	가구원 번호	연간 전입소득							
	1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만원
	2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만원
	3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만원
	4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만원
	5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만원
	6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만원
	7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만원
	8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만원
	9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만원

문 5) 농림축산업 경영주

5-1.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 가구가 경작하고 있는(소득이 발생하는) 경지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소작하는 것은 포함하고, 소작을 준 것은 제외함.)

(참고) 1평≒3.3 m²

- ① 논
 - ② 밭
 - ③ 임야(산)(유실수, 산나물 채취 등)
 - ④ 기타(특용농작물, 비닐하우스 등)
- ※ 없음 0

총							m ²
총							m ²
총							m ²
총							m ²

[보조기입란 5-a]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농림·축산물별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

- ※ 가구원 1인 이상이 농림축산업경영주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을 기입함.
 ※ 보조기입란 순서대로 기입한 후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을 계산함.
 ※ 판매량 = 판매량(재고의 판매량 포함) + 다음 농사를 위한 종자량 + 임차료(소작료) 및 임금으로 지불한 수확량
 ※ 이전소비액은 농축산물을 가구원이 아닌 자녀, 형제, 부모, 친지 등에게 보낸 경우 이를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임.
 ※ 판매수입 = 판매량 × 판매단가 ÷ 10, 자가소비액 = 자가소비량 × 판매단가 ÷ 10, 이전소비액 = 이전소비량 × 판매단가 ÷ 10
 (단위에 주의할 것)
 ※ 축산업에서 총 수확량은 가족의 총보유량임.

구분	에 시	종류	총 수확량 (a+b+c) (a)	판매량 (중자, 소작료 포함) (a)	자가 소비량 (b)	이전 소비량 (c)	판매단가 (천원) (p)	판매수입 (만원) (A=a*p÷10)	자가 소비액 (만원) (B=b*p÷10)	이전 소비액 (만원) (C=c*p÷10)
곡류	비곡: 메벼, 쉼쌀, 찰벼, 참쌀									
	곡류: 비곡을 제외한 맥류, 잡곡, 콩류, 감자 고구마 등									
	서류 등									
채소 과일 류	봄	채소: 봄동, 미나리, 냉이, 달래, 오이, 쪽파, 파, 당근, 양파, 호박, 배추, 양배추, 상추, 시금치, 양송이, 아욱, 등 과일: 사과, 딸기, 토마토, 앵두 등								
	여름	채소: 썰러리, 양파, 부추, 감자, 풋고추, 마늘, 무, 오이, 가지, 호박, 배추, 양배추, 생강, 깻잎, 열무, 옥수수, 피망 등 과일: 토마토, 참외, 수박, 포도, 복숭아, 자두 등								
	가을	채소: 고구마, 봄고추, 당근, 양파, 파, 무, 콩, 배추, 시금치, 호박 등 과일: 배, 사과, 감, 대추, 유자, 키위, 은행 등								
	겨울	채소: 우엉, 연근, 아욱, 양파, 봄동, 시금치 등 과일: 사과, 귤 등								
	기타 작물	특용작물: 참깨, 들깨, 섬유작물, 인삼, 담배, 버섯, 기타약용작물 등 기타농작물: 화훼, 병입, 과수묘, 뽕묘, 묘목 등 임산물: 밤, 잣, 호도, 도토리, 자연산 버섯이나 나물, 장작 등								
	총 계									
	축산업	소, 젖소, 우유, 돼지, 닭, 달걀, 개, 젓사양, 염소, 사슴, 토끼, 오리, 꿀벌, 기타 가축(연양 등)								
	총 계									

5-2.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수확한 농림축산물의 연간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은 얼마였습니까?

농림축산물 판매수입 (A)						자가소비액 (B)						이전소비액 (C)						합 계 (A + B + C)					
연간 총	십	억	천	백	만원	연간 총	십	억	천	백	만원	연간 총	십	억	천	백	만원	연간 총	십	억	천	백	만원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 ※ 재고판매량은 판매수입에 포함하여 계산
 ※ 보조기입란 5-a의 합계를 기입. 농지를 임대해 준 경우 문항 8의 재산소득에 기입
 ※ 없음 0

5-3.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농업관련 기타잡수입은 연간 총 얼마였습니까? ※ 농업잡수입에는 농업소득피해보상금, 폐농자재, 벗짚단 판매대금 등이 포함됨. (※ 없음 0)	연간 잡수입 총액(D)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보조기입란 5-b].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농·임산물 생산, 가축사육에 소요된 지출(농업경영비) 의 세부항목
 ※ 농림축산경영주인 가구원이 1명 이상인 경우, 농림축산업에 소요된 가구전체의 비용을 합산하여 기입함.

지출항목	예 시	연간품목별 비용							
재료비	종자및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소동물비, 사료비, 기타양축비, 양잠비, 기타재료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노무비	지불임금(남자, 여자)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경비	영농광열비(유류대 포함), 수선비, 농기구비, 수리비, 임차료, 농작업 위탁수수료, 농업부문 조세부담금, 농업부문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농기계 할부금, 영농잡지출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판매 및 관리비	도정료, 농업보험료, 농산물판매수수료, 농산물판매용 자재비, 생산관리비, 기타지출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 고가(高價)의 농기계를 **일시불로 구입한 경우 사용가능연한(내구연수)을 절분하여 그 연수(年數)만큼** 나누어서 기입함.
 예) 트랙터를 일시불 **1000만원에 구입하여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경우 100만원으로 기재**
 ※ 감가상각비는 농기계를 일시금으로 구입한 것의 감가상각비를 기재함.
 ※ 영농광열비는 바고추 등 농작물 말리기, 비닐하우스 조명 및 난방 등.
 ※ 수리비는 논밭에 물을 대는 비용임.

5-4.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농·임산물 생산과 가축사육에 소요된 연간 총비용은 얼마였습니까?	연간 총비용(E)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5-5. 농림축산물의 자가소비액, 판매액, 농업잡수입, 총비용 등을 고려할 때,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귀 가구의 농림축산업 순소득은 얼마였습니까? → 농림 축산업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	연간 순소득 (A+B+C+D-E)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6)	어업 경영주
-------------	--------

[보조기입란 6-a]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연간 판매 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
 ※ 용어 설명은 5-a와 동일함.

분류	예 시	종류	판매량 (a)	자가 소비량 (b)	이전 소비량 (c)	판매단가 (천원) (p)	판매수입 (만원) (A=a*p÷10)	자가 소비액 (만원) (B=b*p÷10)	이전 소비액 (만원) (C=c*p÷10)
어로 어업	어선, 어구, 어망 등을 사용하여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물, 해조류 등을 포획·채취하는 것 (※ 해녀의 채취활동 포함)								
양식 어업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물, 해조류 등을 기르는 것								
수산 가공업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물, 해조류 등을 가공하는 것								
총계									

6-1.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출하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은 얼마였습니까?																														
수산물 판매수입 (A)								자가소비액 (B)								이전소비액 (C)								합 계 (A + B + C)						
연간 총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연간 총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연간 총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연간 총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 재고량은 판매수입에 포함하여 계산

※ 없음 0

6-2.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어업관련 기타잡수입은 연간 총 얼마였습니까?														연간 잡수입 총액(D)						
※ 어업잡수입에는 어업소득피해보상금, 어업용폐자재 판매대금 등이 포함됨.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보조기입란 6-b]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어업활동에 소요된 지출의 세부항목																													
※ 가구에서 가구원이 어업경영주에 1명 이상 해당하는 경우 어업에 소요된 가구전체의 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함.																													
지출항목		예 시										연간총지출금액																	
어로지출		미끼구입비, 얼음구입비, 소모품비, 낚자 및 여자 임금, 전기료, 연료 및 유류비, 수선유지비, 토지 및 시설임차료, 어선 및 대어구 임차료, 용기대, 단순가공비, 보관비 등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양식지출		어미구입 및 종묘구입비, 사료비, 약품비, 소모품비, 낚자 및 여자 임금, 전기료, 연료 및 유류비, 수선유지비, 토지 및 시설임차료, 용기대, 단순가공비, 보관비 등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수산가공지출		자재및원료비, 지불임금, 광열비, 수선유지비, 수산가공수수료, 기타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6-3.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어업활동에 소요된 총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연간 총비용(E)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6-4. 수산물의 자가소비액, 판매액, 어업잡수입, 총비용 등을 고려할 때,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귀 가구의 어업 순소득은 얼마였습니까?														연간 순소득(A+B+C+D-E)						
→ 어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문 7)	기타 근로소득: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위에 응답한 소득 외에 다른 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총 얼마였습니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1) ~ 문6)에서 응답한 근로소득 외에 주 1시간 미만의 근로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 ※ 순서는 반드시 가구원빈사황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성명	가구원번호	연간 기타 근로소득																	
		1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2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3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4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5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6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7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8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9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다음 소득은 얼마입니까?

			세부 항목	금 액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문 8)	재 산 소 득	2021년 1년 동안 얻은 재산소득의 유형별 소득액은?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경우 월평균액 ×12를 하고, 일시금으로 들어오는 경우일시금 금액을 그대로 기입 (예)매월 이자수입이 10만원이고, 1년에 한번 배당금으로 100만원을 받는 경우 (10×12)+100=220만원으로 기입	① 이자(은행, 사채), 배당금	연간						만원
			② 임대료(월세, 토지임대료 등)	연간						만원
			③ 기 타(자력증 대여 등)	연간						만원
문 9)	사 회 보 험	2021년 1년 동안 받은 사회보험의 유형별 소득액은? ※ 일시불은 제외	①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군인·교원연금, 보훈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 등)	연간						만원
			↳ 국민연금	연간						만원
			↳ 특수직연금(공무원, 군인, 교원, 보훈, 별정직우체국)	연간						만원
			② 고용보험(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직업능력개발급여 등)	연간						만원
문 10)	민 간 보 험	2021년 1년 동안 받은 민간보험사에서 받은 총 개인연금액은?	③ 산재보험휴업급여, 장해연금, 유족급여 등)	연간						만원
			① 개인연금(※ 일시불은 제외)	연간						만원
문 11)	기 타 정 부 보 조 금	2021년 1년 동안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제외)의 유형별 금액은?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문 14)번 문항에 기입 ※ 현물로 받은 보조금의 경우(학비, 보육료 등)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기입함. ※ ⑦, ⑧, ⑨의 경우 농림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포함 ※ 기타 정부보조금으로 보기 외에 수련회비, 자활장려금, 육아돌보미 지원, 직업훈련수당, 교통안전공단지원금, 영양플러스 사업, 보건소지원 물품, 보건소 의료비 지원(5대 암, 치매,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자동차세 감면, 교복비 지원, 수학여행비용, 쓰레기봉투 등이 있음. 이들은 기타에 포함. ※ 주민센터에서 파악하십시오	② 퇴직연금	연간						만원
			① 장애수당(장애인 연금, 경증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연간						만원
			② 기초연금	연간						만원
			③ 한부모가족지원	연간						만원
			④ 가정위탁금 또는 소년소녀가장보호비	연간						만원
			⑤ 양육수당(영유아 양육지원)	연간						만원
			⑥ 보육료 지원 (i-사랑 카드, 아이즐거움 카드)	연간						만원
			⑦ 아동수당	연간						만원
			⑧ 학비지원(농림부 지원 포함)	연간						만원
			⑨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보훈연금 제외)	연간						만원
			⑩ 농이월 정부보조금	연간						만원
			⑪ 긴급복지지원금	연간						만원
			⑫ 기타 바우처 지원금	연간						만원
			⑬ 근로장려세제	연간						만원
			⑭ 자녀장려세제	연간						만원
			⑮ 급식비 지원	연간						만원
			⑯ 에너지 감면 또는 보조(전기료, 가스비 등)	연간						만원
			⑰ 통신비 감면 또는 보조(전화, 인터넷 등)	연간						만원
			⑱ 기타()	연간						만원
			⑲ 지방보조금(지역형 생계, 지역형 긴급복지지원, 지역형 청년수당 등)	연간						만원
			⑳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등)	연간						만원

문 12)	기 타 소 득	이 외에 2021년 1년 동안 발생한 기타소득의 유형별 금액은? ※ 퇴직금의 경우 목돈으로 받은 경우 여기서 파악.	① 중여·상속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② 경조금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③ 보상금(사고보상금, 이주민주거대책비 등)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④ 사고 및 질병 보험금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⑤ 퇴직금, 사회보험 일시금, 개인연금 일시금, 보장성 보험 해약금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⑥ 동산·부동산 매매차익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⑦ 기타(복권/경품당첨금, 상품권, 켄돈 등)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문12-1	현금금	2021년 1년 동안 돌려받은 현금금 총액	세금환급금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 없음 0

※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다음 소득은 얼마입니까?

				금 액							
문 13)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현금 및 현물)	2021년 1년 동안 가구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의 총금액은? ※ 주택구입자금과 결혼자금 제외 ※ 일회성 보육대가 포함. 단, 월금형식으로 받으면 근로소득에 기입 ※ 부모 자녀의 경우 가구주 기준	부모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자녀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9개월 미만 동거 가구원의 소득	2021년 1년 동안 9개월 미만 생계를 같이 하다가 분가한 가구원이 함께 살 때 집으로 가지고 들어온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의 총금액은?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2021년 1년 동안 귀택의 가구원으로 새로 들어온 9개월 미만된 가구원이 집으로 가지고 들어온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의 총금액은? ※ 혼수용품이나 혼수비 등을 제외한 정규적인 소득만을 기입함.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민 간 보 조 금 (현금 및 현물)	2021년 1년 동안 친척·친지, 친구나 이웃, 복지관, 종교·사회단체(학교 장학금 포함), 회사(자녀학자금보조 포함) 등 민간부문으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 보조금의 총금액은? ※ 가구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 제외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문 14)	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급 여 (및 출 형 급 여)	① 생계급여	2021년 1년 동안 정부로부터 받은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연간 수급개월수와 총 금액(현금급여)은?	연간 수급 개월수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 주민센터에서 파악하십시오 ※ 장제급여 및 출산급여 포함	개월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② 주거급여	2021년 1년 동안 정부로부터 받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연간 수급개월수와 총 금액(현금급여)은?	연간 수급 개월수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 주민센터에서 파악하십시오	개월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③ 교육급여	2021년 1년 동안 정부로부터 받은 교육급여 수급가구의 연간 수급개월수와 총 금액(현금급여)은?	연간 수급 개월수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 응답자의 협조를 얻어 교육청에서 파악하십시오	개월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IX. 부채, 이자

※ 귀하 가구의 부채 및 이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1. 12. 31 기준, 사업용도의 부채는 제외함.)

		세부항목	금액								
문 1)	부 채 태	2021.12.31 기준으로 부채의 형태별 부채액(명의기준)은 얼마입니까? ※ 명의기준 ※ 주거부채, 영농부채도 파악함. ※ 카드 할부구매는 '③카드빚'에 포함하고, 현금 할부구매는 '⑤외상 할부구입, 미리탄 깃돈'에 포함 ※ 친인척에게 돈을 빌린 경우, 이자가 있으면 '②일반사채'에 기입하고, 이자가 없으면(무이자) '⑥기타부채'에 기입함. ※ 자동차 구매의 경우, 카드할부이면 '③카드빚'으로 기록하고, 자동차 관련 대출은 '①금융기관대출'로 기록 ※ 밀린 월세, 교통안전공단차원대부금, 사회보험 연체금 등은 '⑥기타부채'에 기입함. ※ 세부항목별로 부채가 없는 경우, '0'	① 금융기관대출(회사대출, 마이너스통장 미상환금 포함)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일반사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③ 카드빚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환대출 미상환금, 구입한 자동차 카드 할부)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④ 전세(임대)보증금(받은 돈)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⑤ 외상, 할부 구입, 미리탄 깃돈 ※ 미리 탄 깃돈의 경우 향후 부어야 하는 금액만 기재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⑥ 기타부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2)	이 자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부채에 대해 지출한 이자는 연간 얼마였습니까? ※ 명의기준 ※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고 있는 경우, 원금을 제외한 '순수이자'만 기입 ※ 연체한 경우, '0'	① 1년 동안 거주하였던 주거관련 부채의 연간이자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주거이자 제외) 기타 연간이자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3)	부 채 용 도	2021.12.31. 기준으로 다음 각각의 항목별 부채 금액이 총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부채가 없는 경우 '0' 기재 ※ 항목별 부채 비율의 합은 '100' 이어야 함. (단, 부채가 없는 경우, 합은 '0')	① 생활비(생계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	
			② 주택관련 자금 (전월세보증금 포함)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	
			③ 교육(학자금마련 포함)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	
			④ 의료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	
			⑤ 빚 갚음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	
			⑥ 기타 ()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	
			총 부채	1	0	0	0	%			

※ 없음 0

X. 재산

※ 귀 가구의 가구원이 보유한 전체 재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1.12.31 기준, 명의기준으로 조사하며,
가구원명의의 사업장(가계)도 포함된다.)

			세부항목	금액							
문 1)	소 부 동 산	2021.12.31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한 소유부동산의 유형별 가격(현시가기준)은? ※ 거주하고 있는 집은 'VI 주거'에서 파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제외.	①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주택의 건물(가족명의로 사업장(가계) ·창고·상가·콘도·별장·오피스텔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③ 토지(택지, 논, 밭, 임야 등), 양식장, 기타부동산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2)	점 부 동 산	2021.12.31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한 점유부동산의 유형별 가격은? ※ 거주하고 있는 집은 'VI 주거'에서 파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제외.	① 가계, 사업장 등의 전세보증금 준 것, 비동거가구원의 전세보증금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기타(권리금, 사업설비, 공장기계, 가계물건, 비닐하우스시설, 양식장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3)	금 용 자 산	2021.12.31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유형별 가격은? ※ 가구원 전부 파악	① 예금(저축예금, 청약예금, 정기예금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적금(정기적금, 연금형 적금, 종신보험,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③ 주식·채권·펀드(적립식, 거치식)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④ 불입환(타기 전) 껀돈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⑤ 기타(남에게 빌려준 돈, 아파트 중도금(계약금) 받은 것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4)	농 기 계	2021.12.31 기준으로 보유하고 계신 농기계의 유 형별 가격은? ※ 기타에는 살포기, 이앙기, 미증기(도정기), 보행관리기, 로타리 등이 포함됨.	① 동력탈곡기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경운기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③ 콤팩트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④ 트랙터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⑤ 기타()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5)	농 축 산 물	2021.12.31 기준으로 (판매하지 않고) 사육하고 있 는 농축산물의 유형별 가격은? ※ 애완용 및 식용 가축 제외	① 소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돼지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③ 닭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④ 제고농산물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⑤ 기타() ※ 유실수 포함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6)	자 동 차	2021.12.31 기준으로 소유하고 계신 비영업용 자동차의 대수와 가격은? ※ 자동차 보유대수 기준은 명의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가구원의 명의로 아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그 가구의 자동차가 아니며, 가구원의 명의로 된 자동차를 현재 타고 있지 않아도 그 자동차는 가구소유의 자동차입니다. ※ 자동차 모델, 연식별 가격은 별책을 참조하여 환산해 주십시오.	보유대수	단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대							
문 7)	기 재 타 산	2021.12.31 기준으로 위의 재산 이외의 소유하고 계신 재산의 유형별 가격은?	① 운동클럽 등의 회원권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영업용 자동차 · 자동차 번호 값, 오토바이·전차, 굴삭기(포크레인), 트럭 등 운송 및 생계수단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③ 귀금속, 골동품, 상품권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④ 기타()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 없음 0

XI. 생활여건

문 1) **2021년 1년 동안** 귀댁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 분	있다	없다	비해당
㉠ 2021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2달 이상 집세가 밀렸거나 집세를 낼 수 없어서 집을 옮긴 적이 있다. ※ 2021년 1년 내내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혹은 '무상' 인 경우 '㉢ 비해당' 에 응답	①	②	③
㉡ 2021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공과금(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 2021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적이 있다.	①	②	
㉣ 2021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자녀(대학생 포함)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 적이 있다. ※ 자녀가 없거나 혹은 자녀가 '미취학', '대학원생(석·박사)' 인 경우 '㉢ 비해당' 에 응답	①	②	③
㉤ 2021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 2021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①	②	
㉦ 2021년 1년 동안 가구원 중에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있었다. ※ 2021년 이전에 신용불량자로 되었던 사람이 2021년 동안에도 신용불량자의 상태로 있었다면 '㉠ 있다' 에 응답	①	②	
㉧ 2021년 1년 동안 연속 6개월 이상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 급여자격을 정지 당한 경험이 있다. ※ 2021년 1년 내내 의료급여 혹은 국가유공자 무료전료만을 받는 가구는 '㉢ 비해당' 에 응답	①	②	③

문 2) **2021년 1년 동안**에 귀댁은 식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 분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름/거부
㉠ 2021년 1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 2021년 1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균형 잡힌 식사(다양한 식품을 충분한 양으로) 를 할 수가 없었다.	①	②	③	④

구 분	그렇다	아니다	모름/거부
㉢ 2021년 1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귀하 가구 내 성인들이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습니까? → ㉠로 같 것 → ㉡로 같 것 → ㉢로 같 것	①	②	③
㉣ (㉢에서 ①번 응답자만) 얼마나 자주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① 거의 매일 ② 몇 개월 동안(매월은 아님) ③ 1-2개월 동안			
㉤ 2021년 1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양보다 적게 드신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 2021년 1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배가 고파데도 먹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XII.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로 변경되면서,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급여별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맞춤형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되며, 그 밖에 의료급여 특례, 자활특례 등 특례도 포함되며, 가구원 중 일부만 수급하는 가구도 수급가구로 간주합니다.

문 1) 귀댁은 2021년 1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맞춤형 급여)를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1-2)로 갈 것**

② 없다 → **문2)로 갈 것**

〈 유의사항 〉

※ 공식적인 서류신청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이미 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2021년에 신청한 적이 없으면 ‘②없다’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1-1)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맞춤형 급여)를 신청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기본적인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②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 ③ 주거비를 지원받기 위해
- ④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
- ⑤ 취업알선, 창업 등 자활지원을 받기 위해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문 1-2) (문1)의 ①번 응답자만) 신청한 결과 귀댁은 수급자로 선정되었습니까? ☐

- ①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모두 받게 되었다 → **문2)로 갈 것**
- ②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일부만 받게 되었다 → **문1-3)으로 갈 것**
- ③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 **문1-3)으로 갈 것**

〈 유의사항 〉

※ 2021년 1년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단, 급여신청을 2021년 12월에 하였고 선정은 2022년에 되었지만, 선정이 되면서 2021년 12월까지의 급여를 소급하여 한꺼번에 받았다면 2021년에 선정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속 수급을 받다가 중간에 탈락한 후, 재신청하여 다시 수급한 경우에는 재신청 결과에 대해 응답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4개 급여를 모두 신청해서 수급하였다가 탈락하고, 5월에는 의료, 주거급여만 신청해서 수급 받게 되었다면 ②로 응답합니다.

문 1-3) (문1-2)의 ②, ③번 응답자만)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급여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 1-3-1)

생계급여 ☐

문 1-3-2)

의료급여 ☐

문 1-3-3)

주거급여 ☐

문 1-3-4)

교육급여 ☐

- ①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서
- ② 자동차가 있어서
- ③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높아서
- ④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 ⑤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 ⑦ 잘 모르겠다.

문 1-4) (문1-2)의 ②, ③번 응답자만)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후 귀댁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문제는 주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해당 급여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 1-4-1) 생계급여 문 1-4-2) 의료급여 문 1-4-3) 주거급여 문 1-4-4) 교육급여

- ① 부양의무자(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자녀), 친지 및 이웃의 도움
- ② 빚을 내어서 생활
- ③ 민간단체의 도움
- ④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
- ⑤ 저축 등 있는 재산을 줄여서
- ⑥ 공공기관 프로그램(공공근로 사업, 차상위 자활사업 등)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으로
- ⑦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공공기관 프로그램 참여 제외)
- ⑧ 기존에 받던 '가구원 중 일부수급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로
- ⑨ 기타(적을 것 : _____)

문 2) 귀댁은 2021년 1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맞춤형 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받은 적이 있다 → 문2-1)로 갈 것
- ② 받은 적이 없다 → XII-1.근로장려세제'로 갈 것

< 유의사항 >

※ 2021년 1년 동안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한 개라도 받은 경험이 있으면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2021년 1년 동안 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기간을 해당 급여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 2-1-1) 생계급여

첫 번째	2	0	2	1	년			월	~	2	0	2	1	년			월
두 번째	2	0	2	1	년			월	~	2	0	2	1	년			월
세 번째	2	0	2	1	년			월	~	2	0	2	1	년			월

문 2-1-2) 의료급여

첫 번째	2	0	2	1	년			월	~	2	0	2	1	년			월
두 번째	2	0	2	1	년			월	~	2	0	2	1	년			월
세 번째	2	0	2	1	년			월	~	2	0	2	1	년			월

문 2-1-3) 주거급여

첫 번째	2	0	2	1	년			월	~	2	0	2	1	년			월
두 번째	2	0	2	1	년			월	~	2	0	2	1	년			월
세 번째	2	0	2	1	년			월	~	2	0	2	1	년			월

문 2-1-4) 교육급여

첫 번째	2	0	2	1	년			월	~	2	0	2	1	년			월
두 번째	2	0	2	1	년			월	~	2	0	2	1	년			월
세 번째	2	0	2	1	년			월	~	2	0	2	1	년			월

< 유의사항 >

※ 수급과 탈피를 반복하였다면 그 기간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문 2-2)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이 **2021년 1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맞춤형 급여) 중 **하나라도 받은 급여가 있다면**, 수급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급여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 2-2-1) ☐ 생계급여 문 2-2-2) ☐ 의료급여 문 2-2-3) ☐ 주거급여 문 2-2-4) ☐ 교육급여

- ① 일은 하고 있었지만 수입이 줄어서
- ② 소득이 발생하였던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 ③ 도와주던 친인척의 경제적 형편이 나빠져서(혹은 도움이 끊겨서)
- ④ 이혼, 가구원의 분가 등으로 인해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빠져나가서
- ⑤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사망해서
- ⑥ 소득은 동일하나 가구원이 증가해서
- ⑦ 의료비 지출이 커져서
- ⑧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 ⑨ 기타(적을 것 : _____)

〈 유의사항 〉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중간에 탈피가 되었더라도, 한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으면, 수급한 **최초**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 이유를 응답해 주십시오.

문 2-3)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맞춤형 급여)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급여만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① 매우 적절하다	② 적절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부족하다	⑤ 매우 부족하다
문 2-3-1) 생계급여	①	②	③	④	⑤
문 2-3-2) 의료급여	①	②	③	④	⑤
문 2-3-3) 주거급여	①	②	③	④	⑤
문 2-3-4) 교육급여	①	②	③	④	⑤

〈 유의사항 〉

※ 한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으면 **응답해주시고**, 수급과 탈피를 반복한 경우, **2021년에 받은 모든 급여수준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3)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맞춤형 급여) 중 **12월 말까지 받은 급여가 있다면**, 앞으로 얼마 후에 각 급여별로 수급대상 가구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해당 급여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 3-1) ☐ 생계급여 문 3-2) ☐ 의료급여 문 3-3) ☐ 주거급여 문 3-4) ☐ 교육급여

- ① 6개월 이내
- ② 6개월 후 ~ 1년 이내
- ③ 1년 후 ~ 3년 이내
- ④ 3년 후
- ⑤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 ⑥ 잘 모르겠다.

XII-1. 근로(자녀)장려세제

- ※ 근로장려세제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단위로 지급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입니다.
- ※ 자녀장려세제는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 소득 4000만 원 미만인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 미만)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문 1) 근로장려세제 또는 자녀장려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문 1-1)
근로장려세제

☐

문 1-2)
자녀장려세제

☐

- ① 들어본 적도 없고, 모른다
②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③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④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다

문 2) 귀댁은 2021년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급여를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

- ① 둘 다 신청했다 → 문2-1)로 갈 것
② 근로장려금만 신청했다 → 문2-1)로 갈 것
③ 자녀장려금만 신청했다 → 문2-1)로 갈 것
④ 둘 다 신청한 적 없다 → 문 3)으로 갈 것

< 유의사항 >

※ 5월에 신청을 못한 경우, 6-11월 동안 기간 후 신청을 받습니다. 기간 후 신청한 경우도 신청한 것으로 응답합니다.

문 2-1) 귀댁은 2021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셨습니까?

☐

- ① 둘 다 받았다 → 문2-2)로 갈 것
② 근로장려금만 받았다 → 문2-2)로 갈 것
③ 자녀장려금만 받았다 → 문2-2)로 갈 것
④ 둘 다 받지 못했다 → XIII.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으로 갈 것

< 유의사항 >

※ 있다고 응답한 경우 기타 정부보조금란의 근로장려세제 또는 자녀장려세제란에 정확한 급여액을 기입함.
※ 5월에 신청한 경우 9월 말까지 급여가 지급되며, 기간 후 신청을 한 경우는 지급시점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기간 후 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를 감액해서 지급됩니다. 이 경우도 지급받은 것으로 응답합니다.

문 2-2) 수급한 근로(자녀)장려금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

- ① 아이들 교육비 ② 일상생활비 ③ 의료비 ④ 문화오락비 ⑤ 저축 ⑥ 기타

문 2-3) 귀댁의 근로(자녀)장려금 급여(수준)가 실생활에 주는 도움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 편이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도움이 되는 편이었다 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문 2-4) 귀댁의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급여는 근로의욕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

- ① 일할 의욕이 매우 감소되었다 ② 일할 의욕이 약간 감소되었다 ③ 일할 의욕에 변화가 없었다
④ 일할 의욕이 약간 증가되었다 ⑤ 일할 의욕이 매우 증가되었다

문 3) 귀댁은 금년(2022년) 근로(자녀)장려금 급여를 받을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둘 다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② 근로장려세계의 수급요건만 충족한다고 생각한다
③ 자녀장려세계의 수급요건만 충족한다고 생각한다
④ 둘 다 수급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한다
⑤ 잘 모르겠다

XIII.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조사대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문 1) **2021년 1년간**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비스 유형	있다	없다
㉠ 생계비(혹은 생계보조수당) 지원	①	②
㉡ 의료비 지원	①	②
㉢ 물품지원(식료품, 의류, 가구 등)	①	②
㉣ 가사지원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안전지원서비스 등)	①	②
㉤ 식사(혹은 밑반찬) 배달 서비스	①	②
㉥ 주택관련 서비스(집수리, 도배 등)	①	②
㉦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자활근로	①	②
㉧ 상담서비스	①	②
㉨ 생계, 생업, 자립, 교육 등을 위한 각종 대출, 융자	①	②
㉩ 개인발달계좌(자산형성프로그램)	①	②
㉪ 권익보장 지원(공공후견서비스 등)	①	②

< 유의사항 >

※ 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인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인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 ※ ㉠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수당(경증장애인 대상), 장애인연금(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지원(양육비), 긴급복지지원(긴급생계급여), 가정위탁금, 소년소녀가장보호비, 근로장려세제 등 생계비 보조를 목적으로 보조하는 현금을 말한다(국민연금,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소득은 포함 안 됨. 보육료 지원비, 노인교통비, 학비지원, 바우처 지원금 등 용도가 한정된 지원은 포함 안 됨). 쌀이나 식료품 등은 생계비 지원에 해당하지 않고 ㉢의 물품지원에 체크하도록 한다.
- ※ ㉡ 의료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한 의료급여, 사회복지관련기관 및 종교(시민)단체에서 의료비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현금, 현물, 재향서비스 모두 포함). 각종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를 포함하되,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상의 혜택은 포함하지 않는다. 의료비 지출을 위한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 개인적인 관계에 의한 지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 ※ ㉣ 주택 관련 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와 같이 공공기관에서 제공(일부 보조)하거나, 사회복지관련기관, 종교(시민)단체에서 실시하는 집수리, 도배 등의 주거시설 개선 및 주택 개조를 말한다.
- ※ ㉦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자활근로: 노인일자리사업, 희망근로, 자활 공공근로를 포함한다.
- ※ ㉧ 상담서비스: 고인 및 갈등, 정신건강 문제, 약물 및 알코올 문제, 학대 및 가정폭력 문제, 아동의 문제 등과 관련된 상담 및 심리재활서비스를 말한다.
- ※ ㉨ 생계, 생업, 자립, 교육 등을 위한 각종 대출, 융자: 생계, 생업, 자립, 교육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국가가 대출해주거나 국가의 신용보증을 통해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지원융자, 자영업자 특례보증 대출, 장애인 자립자금, 저소득층 생업자금, 저소득층 창업자금,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근로자 생계보증 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등이 있다. 단,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 등 주택 관련 대출은 포함하지 않는다.
- ※ ㉩ 개인발달계좌: 개인이 저축한 금액에 대하여 정부가 일정 금액을 매칭하여 적립하는 제도를 말하며, 가입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보건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디딤씨앗통장, 서울시의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등이 포함된다.
- ※ ㉪ 권익보장 지원(공공후견서비스 등): 공공후견서비스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 등의 사유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후견인은 후견인으로부터 복지급여 통장관리, 관공서의 서류발급, 복지서비스 신청대리, 병원진료와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을 받게 된다.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 해당 서비스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다음은 바우처서비스 이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바우처란 어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증서로,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자바우처는 현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문 2) **2021년 1년간**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 ① 예 → **문2-1) 응답 후, 문3)으로 갈 것**
 ② 아니오 → **문3)으로 갈 것**

문 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2021년 1년간** 다음 각각의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비스 유형	있다	없다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①	②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①	②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①	②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스포츠강좌이용권)	①	②
㉤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제도	①	②
㉥ 아이돌봄지원	①	②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①	②
㉧ 장애아동가족지원(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①	②
㉨ 발달장애인지원(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①	②
㉩ 에너지바우처	①	②
㉪ 기타 바우처서비스(적을 것: _____)	①	②

〈 유의사항 〉

- *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말하며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포함한다.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가사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 ㉤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제도: 임신이 확인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고운맘 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 ㉥ 아이돌봄 지원: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시간단위로 보육, 놀이, 등·원 등 돌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영유아 부모에게 보육기관 및 유치원의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를 말한다.
- * ㉧ 장애아동가족지원(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기존 항목이었던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과 '언어발달지원' 을 통합하여 '장애아동가족지원' 문항 신설하였다.
- * ㉨ 발달장애인지원(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는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 * ㉩ 에너지 바우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가구 내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 임산부가 있을 경우 난방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함. 국가바우처 통합카드인 '국민행복카드' 대상 바우처이다.
- * ㉪ 기타 바우처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내서비스, 정실질환자 토털케어 서비스, 자살고위험군 건강증진서비스 등의 지역개발형 바우처가 있다.

다음은 바우처서비스 이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바우처란 어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증서로,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자바우처는 현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문 2) **2021년 1년간**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 ① 예 → **문2-1) 응답 후, 문3)으로 갈 것**
 ② 아니오 → **문3)으로 갈 것**

문 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2021년 1년간** 다음 각각의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비스 유형	있다	없다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①	②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①	②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①	②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스포츠강좌이용권)	①	②
㉤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제도	①	②
㉥ 아이돌봄지원	①	②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①	②
㉧ 장애아동가족지원(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①	②
㉨ 발달장애인지원(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①	②
㉩ 에너지바우처	①	②
㉪ 기타 바우처서비스(적을 것: _____)	①	②

〈 유의사항 〉

- *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말하며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포함한다.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가사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 ㉤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제도: 임신이 확인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고운맘 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 ㉥ 아이돌봄 지원: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시간단위로 보육, 놀이, 등·원 등 돌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영유아 부모에게 보육기관 및 유치원의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를 말한다.
- * ㉧ 장애아동가족지원(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기존 항목이었던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과 '언어발달지원' 을 통합하여 '장애아동가족지원' 문항 신설하였다.
- * ㉨ 발달장애인지원(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지원활동서비스' 는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 * ㉩ 에너지 바우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가구 내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 임신부가 있을 경우 난방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함. 국가바우처 통합카드인 '국민행복카드' 대상 바우처이다.
- * ㉪ 기타 바우처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내서비스, 정실질환자 토탈케어 서비스, 자살고위험군 건강증진서비스 등의 지역개발형 바우처가 있다.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만65세 이상 어르신(노인)이 있는 가구만 응답해 주십시오. 해당하지 않는 가구는 XV.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질문으로 가십시오. 조사대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2021년 1년간**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비스 유형	있다	없다
㉠ 기초연금 지원	①	②
㉡ 의료비 지원	①	②
㉢ 노인 무료 급식(본인부담금 없음)	①	②
㉣ 물품지원(식료품, 의류, 가구 등)	①	②
㉤ 가사지원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안전지원 서비스 등)	①	②
㉥ 식사(혹은 밑반찬) 배달 서비스	①	②
㉦ 방문 가정간호, 간병, 목욕 서비스	①	②
㉧ 이동편의 서비스(병원 동행 등)	①	②
㉨ 주·야간보호 서비스(일정시간 복지관 등에서 보호해주는 것)	①	②
㉩ 노인일자리사업	①	②
㉪ 사회참여 서비스(한글교실, 생활요가, 나들이, 자조모임 등)	①	②

〈 유의사항 〉

※ 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 ㉠ 의료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한 의료급여 및 의료지원, 사회복지관련기관 및 종교(시민)단체에서 의료비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현금, 현물, 재향서비스 모두 포함). 노인 안검진 및 개안 수술, 치매조기검진, 치매치료관리지원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상이 혜택은 포함하지 않는다. 의료비 지출을 위한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 개인적인 관계에 의한 지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 ㉢ 노인 무료 급식(본인부담금 없음): 지자체 노인결식사업의 일환으로 전액 무료로 급식을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노인이 일부 자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 가사지원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안전지원 서비스 등): 방문, 전화, ICI를 통한 안전지원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예' 라고 응답한다.

※ ㉧ 이동편의 서비스: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이동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을 이용하거나, 간병인, 생활관리사 등이 이동 동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노인이 혼자 일반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나, 교통수당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할인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

※ ㉩ 노인일자리사업: 만60세~64세의 예외적 참여를 허용하나,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자체를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만 응답하므로 만60~64세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는 응답하지 않는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대한노인회,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지방문화원, 지역NGO, 청소년수련관 등이다.

※ ㉪ 사회참여 서비스: 문화여가활동(노래교실 등)과 평생교육활동(한글 교실 등) 뿐만 아니라, 체험여행활동(나들이, 공연 관람 등),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하는 자조모임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XV.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만0~17세 이하 아동(자녀)을 둔 가구만 응답해 주십시오. 없다면 XVI.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질문으로 가십시오. 아동(자녀)은 응답자 본인의 친자녀뿐만 아니라 조카, 손자녀 등 만0~17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 가구원은 모두 해당됩니다. 조사대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문 1) **2021년 1년간**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비스 유형	있다	없다
㉠ 아동수당	①	②
㉡ 공공어린이집(주간보호 및 특별활동)	①	②
㉢ 양육·보육료 및 유치원비 보조(양육수당 포함)	①	②
㉣ 아동상담, 집단 프로그램(성격, 정서문제, 독서지도 등)	①	②
㉤ 방과후돌봄 서비스(지역아동센터 등)	①	②
㉥ 무료급식(급식지원 포함)	①	②
㉦ 학비 지원	①	②
㉧ 예체능 교실(컴퓨터, 미술, 음악, 체육 등)	①	②
㉨ 문화활동(문화유산답사, 연극, 영화, 견학, 방학 중 캠프 등)	①	②
㉩ 가정봉사·아이돌봄 서비스	①	②
㉪ 영유아보충식품지원(영양플러스사업 포함)	①	②

〈유의사항〉

- ※ 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서비스의 유형 구분이 어려운 경우 서비스의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응답한다.

〈유의사항〉

- ※ ㉠ 공공어린이집: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전담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을 말한다. 공공형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서울형/부산형 어린이집은 모두 공공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공공어린이집에 해당한다.
- ※ ㉢ 양육·보육료 및 유치원비 보조(양육수당 포함): 가구의 소득 혹은 아동의 출생순위 등의 특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양육·보육료 및 유치원비 보조를 말한다. 직장어린이집의 보육료 할인(직장어린이집에서의 보육료 할인이 직장어린이집 자체에서 운영·지원하는 것이라면 공공부문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으나, 정부의 보육료 지원정책에 의해 할인을 받는 것이라면 포함된다.
- ※ ㉥ 무료급식(급식지원 포함): 취학아동뿐만 아니라 미취학아동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므로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급식지원도 포함된다.
- ※ ㉦ 학비 지원: 초·중·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검정고시 학습비, 방과후교실 등록비 등이 포함된다. 유치원비 지원과 장애영유아 무상교육은 '㉢ 양육·보육료 및 유치원비 보조'에 해당된다.
- ※ ㉧ 예체능 교실(컴퓨터, 미술, 음악, 체육 등): 예체능교실은 미술, 음악, 체육 교육 및 컴퓨터 교육 등 다양한 예체능프로그램을 말한다. 예를 들어 바우처서비스인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가 포함된다.
- ※ ㉩ 가정봉사·아이돌봄 서비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봄 서비스와 보건복지부의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을 통해 양육지원을 받는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에 해당한다.

다음 문2)~문6)은 만0~17세 이하 아동(자녀) 각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반드시 아래 응답지에 개별 아동(자녀)별로 아동의 가구원 번호에 따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2) 귀택에 가구원으로 2020. 4. 1. ~ 2021. 3. 31. 동안에 새로 가구원으로 진입(출산, 입양 등)한 아동(자녀)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아동(자녀)은 누구입니까? ☐

(※ 2쪽의 가구원현황과 16차년도에 추가된 가구원 중 아동이 있는지 확인하여 기재해주시시오.)

① 있다 → 문 2-1)로 갈 것

② 없다 → 문3) 으로 갈 것

문 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택의 아동(자녀) □□□은 출생 시 체중이 2.5kg 이상이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문 2-2)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택의 아동(자녀) □□□은 아기 때부터 앓아온 선천성 기형이나 선천성 질환(심장질환 등)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아동(자녀)의 가구원 번호 (※ 2쪽의 가구원 번호와 일치하도록 기재하시오)	아동(자녀) 가구원의 이름	문2-1) 체중	문2-2) 선천성 기형 및 질환

문 3) 다음은 공적인 학교교육 이외의 학원, 과외, 학습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사교육과 보육기관 이용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댁의 아동(자녀) □□□은 <보기>와 같은 곳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 모든 아동(자녀)을 가구원 번호에 따라 차례대로 기재한 후 질문합니다. 사교육과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자녀)은 이용여부에 '㉔ 안한다'로 기재한 후 다른 아동에 대해 질문합니다.)

문 4) 귀댁의 각각의 아동(자녀)이 이용하는 사교육·보육기관을 아래의 <보기>에서 주로 이용하는 순서대로 3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문 5) 귀댁에서 각각의 아동(자녀)에게 든 사교육비는 한 달 평균 얼마입니까? 교재비, 재료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하여 다음의 응답지에 아동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유의사항 〉

- ※ 한 아동(자녀)이 위 문4)에서 응답한 사교육기관보다 더 많은 사교육기관(4개 이상 이용자)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이용하고 있는 모든 사교육기관의 이용비용과 교재비, 도구실습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를 합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 모든 비용은 가구에서 실제 지출한 실비만 포함시킵니다.
- ※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없음 = 0000

문 6) 귀댁에서 각각의 아동(자녀)에게 든 보육비는 한 달 평균 얼마입니까? 교재비, 재료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하여 다음의 응답지에 아동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유의사항 〉

- ※ 한 아동(자녀)이 위 문4)에서 응답한 보육기관보다 더 많은 보육기관(4개 이상 이용자)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이용하고 있는 모든 보육기관의 이용비용과 교재비, 도구실습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를 합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 모든 비용은 가구에서 실제 지출한 실비만 포함시킵니다.
- ※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없음 = 0000

구 분	〈 보 기 〉	
어린이집 및 유치원	① 국공립(국립·시립·구립 등)어린이집 ②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③ 민간어린이집(법인·단체등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포함) ④ 가정어린이집(개인가정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⑤ 직장어린이집(사업주가 설치한 어린이집) ⑥ 정규시간 이외에 보육도 맡아주는 유치원 ⑦ 정규시간만을 담당하는 유치원
민간학원 및 사교육	⑧ 학원 ⑨ 개인·그룹과의	⑩ 학습지(온라인 학습지 포함)
학교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	⑪ 방과후 교내보충학습(만6세 이상이 학교 내에서 자발적으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보충학습 및 특기 지도 등을 하는 경우) ⑫ 방과후 교실(만6세 이상이 학교가 아닌 사회복지관, 유치원 등에서 보육이 아닌 특기 지도, 보충학습 등을 하는 것)	
기타	⑬ 친·인척(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만 해당) ⑭ 이웃(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만 해당) ⑮ 공적지원 아이 돌보미(건강가정 지원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⑯ 민간 아이 돌보미 ⑰ 기타(적을 것 : _____) ⑱ 그 외 보육시설(방과후 학교 초등보육프로그램, 보육을 목적으로 하는 반일제 이상의 학원,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선교원, 문화센터 등)	

문3)~문6) 응답지

아래 응답지에 모든 아동(자녀)을 가구원 번호에 따라 차례대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구원번호 및 이름은 2쪽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아동(자녀)의 가구원 번호	아동(자녀) 가구원의 이름	문3) 이용여부		문4) 이용기관		문5) 한 달 평균 사교육비 (부대비용 포함)	문6) 한 달 평균 보육비 (부대비용 포함)
		한다	안한다				
		①	②	A		월평균 만원	월평균 만원
				B			
				C			
		①	②	A		월평균 만원	월평균 만원
				B			
				C			
		①	②	A		월평균 만원	월평균 만원
				B			
				C			
		①	②	A		월평균 만원	월평균 만원
				B			
				C			
		①	②	A		월평균 만원	월평균 만원
				B			
				C			
		①	②	A		월평균 만원	월평균 만원
				B			
				C			

XVI.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가구에 장애인(등록 장애인, 비등록 장애인 모두 포함)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해 주십시오. 없다면 다음 페이지의 XVII. 가족에 대한 질문으로 가십시오. 조사대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문 1) **2021년 1년간**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비스 유형	있다	없다
㉠ 장애인연금(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①	②
㉡ 장애수당(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급)	①	②
㉢ 장애아동수당	①	②
㉣ 의료재활서비스	①	②
㉤ 가사지원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등)	①	②
㉥ 방문 가정간호, 간병, 목욕 서비스	①	②
㉦ 이동편의 서비스(병원 동행 등)	①	②
㉧ 주택관련 서비스(집수리, 도배 등)	①	②
㉨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 서비스	①	②
㉩ 사회적응 및 취업관련 서비스	①	②
㉪ 장애아동 및 장애인자녀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①	②
㉫ 장애아동 및 장애인자녀 관련 프로그램(학습지원 서비스 등)	①	②
㉬ 자동차 관련 지원	①	②
㉭ 권익보장 지원(공공후견서비스 등)	①	②

〈유의사항〉

- ※ 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인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인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 ㉠ 장애아동수당: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정도를 고려,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매달 일정 지원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 장애아동 및 장애인자녀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과는 별개의 제도임에 주의한다.
- ※ ㉢ 의료재활서비스: 장애인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장애인 등록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및 보장구 지원 및 할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등이 포함된다.
- ※ ㉣ 이동편의 서비스: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이동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을 이용하거나, 활동보조인, 간병인 등이 이동 동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장애인이 혼자 일반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나, 교통수당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할인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
- ※ ㉤ 주택관련 서비스: 공공기관에서 제공(일부 보조)하거나, 사회복지관련기관, 종교(시민)단체에서 실시하는 집수리, 도배 등의 주거시설 개선 및 주택 개조를 말한다.
- ※ ㉥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 서비스: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를 의미하며,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바우처)도 포함된다.
- ※ ㉦ 사회적응 및 취업관련서비스: 직업재활시설 및 보호작업장 이용,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사회복귀훈련, 사회적응훈련, 자립생활훈련,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자판기·매점 등 사업권 제공 등을 말한다.
- ※ ㉭ 권익보장 지원(공공후견서비스 등): 공공후견서비스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 등의 사유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후견인은 후견인으로부터 복지금·통장관리, 관공서의 서류발급, 복지서비스 신청대리, 병원진료와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을 받게 된다.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 해당 서비스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XVII. 가족

문 1) **2021년 1년간** 귀댁에 근심이나 갈등을 초래한 가장 큰 문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우선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가구원 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1촌 이내까지만 포함합니다.)

1순위		2순위	
-----	--	-----	--

- | |
|---|
| ①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다
② 경제적 어려움(부채 또는 카드 빚 문제)
③ 가구원의 취업 및 실업
④ 자녀교육 혹은 행동
⑤ 가구원의 건강
⑥ 가족 내 폭력
⑦ 가구원간 관계
⑧ 가구원의 가솔
⑨ 주거관련 문제
⑩ 기타(적을 것 : _____)
⑪ 자녀의 결혼문제 |
|---|

문 2) 다음은 가족구성원들이 서로 어떻게 지내고 논쟁을 해결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2021년 1년간 귀댁은 어떠하였습니까?

(※ 독신가구이면서 직계혈족 1촌이 없는 경우 '비해당'으로 표시하고 '추가적인 질문'으로 넘어가십시오. 비가구원인 직계혈족 1촌이 있는 1인 가구(독신가구)이지만 지난 1년간 상호 교류가 전혀 없었다면, '비해당'으로 표시합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비해당
㉠ 우리 가정에서는 의견충돌이 잦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가족원들이 가끔 너무 화가 나서 물건 등을 집어 던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가족원들이 항상 침착하게 문제를 논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가족원들이 자주 서로를 비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가족원들이 가끔 서로를 때린다.	①	②	③	④	⑤	⑥

지금까지 질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202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17차 신규가구용(유형2)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계층별, 연령별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 욕구를 역동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복지정책 수립시 활용할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고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댁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3월

< 문의 및 연락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44-287-8317, 8294, 8215, 8188, 8138, 8174, 8124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02-880-6320

가구 패널 ID				가구생성차수		가구분리일련번호		※분가사유		
※인포시스템의 숫자를 그대로 이기				-17차 신규가구: 17		-첫번째 17차 신규가구: 01 -두번째 17차 신규가구: 02 -세번째 17차 신규가구: 03				
				1 7				① 결혼 ② 직장 ③ 학업 ④ 이혼 ⑤ 별거 ⑥ 위탁 ⑦ 기타(*기타내용은 가구정보란에 기록)		
주소지		행정코드			시·도 구·시·군 동·읍·면					
		상세주소			통·리 번지 호 (아파트 동 층 호) ☎ () -					
가구주 성명		응답자 1				응답자 2				
		성명			가구원 번호			성명		
		휴대폰					휴대폰			
조사표완료 소요시간		총 분		총방문횟수		총 회				
1차방문	월 일 시 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사유(번호기재):		※미완사유코드			
2차방문	월 일 시 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사유(번호기재):		① 비해당(완료) ② 늦은 귀가 ③ 장기출타 ④ 부재중(원인미파악) ⑤ 일부문항 미완			
3차방문	월 일 시 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사유(번호기재):		⑥ 조사거부 ⑦ 이사(주소추적불가) ⑧ 사망으로 인한 가구소실			
4차방문	월 일 시 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사유(번호기재):		⑨ 기타 추적불가사유			
최종방문	월 일 시 분	방문결과	1. 완료 2. 미완		사유(번호기재):		⑩ 기타			
조사원 이름		지도원 확인	① 완료 ② 미완 사유(번호기재):		지도원		(인)			

I. 가구일반사항

※ 본 조사의 조사시점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신규가구는 2021년 9월 30일 이전에 생성된 가구만 해당됩니다 (10월 1일 이후 생성 가구는 신규가구가 아니라 월가구의 가구원으로 간주하여 조사).

※ 신규가구 생성 시기 ([인포시트] 내용 이기) 년 월

문1) 귀댁에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 가구 생성 시점~ 2021년 12월 31일까지 3/4 이상 생계를 같이하였던 가구원을 기준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단,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가장, 학생, 기타 이유로 같이 살지 않는 가족은 가구원에 포함하여 주십시오.) 명

가구원 진입 차수	개인 패널ID	가구원 번호	이름	문2) 가구주와의 관계		문3) 성별	문4) 태어난 연도, 월		문5) 교육수준		
									문5-1)	문5-2)	
-17차 가구원 진입차수: 17 -재진입 가구원: 최초 진입차수 - 그 외는 인포시트상 의 숫자를 그대로 이기	※인포시트와 지침서를 참고하여 부여	※ 순 서 대 로 기 입	가구원 이름	※ 가구주와의 관계는 주관식 으로 기입후 아래 [가구주 와의 관계표]를 참고하여 코드번호 기입		① 남 ② 여	※ 주민등록상의 생년, 생월을 기재하여 주십 시오. (반드시 [인포시트]와 비교하여 확인)	생년 (生年)	생월 (生月)	① 미취학 (만 7세미만) ② 무학 (만 7세이상) ③ 초등학교 ④ 중학교 ⑤ 고등학교 ⑥ 전문대학 ⑦ 대학교 ⑧ 대학원(석사) ⑨ 대학원(박사)	① 비해당 ② 재학 ③ 휴학 ④ 중퇴 ⑤ 수료 ⑥ 졸업
	인포시트상의 개인패널ID 를 그대로 이기하고, 16차 진입가구원의 경우 새로 운 개인패널ID를 부여			※ 가구주 정의: 호주 또는 세 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 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사 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와의 관계 코드						
			1		0 1 0						
			2								
			3								
			4								
			5								
			6								
			7								
		8									
		9									

문 2) 가구주와의 관계표

- | | |
|--|---|
| <p>010. 가구주</p> <p>001. 가구주의 아버지
002. 가구주의 어머니</p> <p>005. 가구주의 조부
006. 가구주의 조모</p> <p>011. 가구주의 첫째 자녀
012. 가구주의 둘째 자녀
013. 가구주의 셋째 자녀
(넷째 = 14, 다섯째 = 15, ...)</p> <p>031. 가구주의 형제/자매
(첫 번째 사람 = 31, 두 번째 사람 = 32, ...)</p> <p>051. 가구주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첫 번째 사람 = 51, 두 번째 사람 = 52, ...)</p> <p>11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
112.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 = 113, 넷째 = 114, ...)</p> <p>121.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
122.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 = 123, 넷째 = 134, ...)</p> <p>131.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
132.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 = 133, 넷째 = 134, ...)</p> <p>997. 기타 친인척 (숫자에 관계없이 동일번호)
998.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숫자에 관계없이 동일번호)</p> | <p>020. 가구주의 배우자</p> <p>003. 가구주의 배우자의 아버지
004. 가구주의 배우자의 어머니</p> <p>007. 가구주의 배우자의 조부
008. 가구주의 배우자의 조모</p> <p>02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022.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023.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배우자
(넷째 = 24, 다섯째 = 25, ...)</p> <p>041.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
(첫 번째 사람 = 41, 두 번째 사람 = 42, ...)</p> <p>061.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첫 번째 사람 = 61, 두 번째 사람 = 62, ...)</p> <p>211. 가구주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212. 가구주 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 = 213, 넷째 = 214, ...)</p> <p>221. 가구주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222. 가구주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 = 223, 넷째 = 224, ...)</p> <p>231. 가구주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232. 가구주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 = 233, 넷째 = 234, ...)</p> |
|--|---|

가구원 번호	문6) 장애종류 및 정도		문7) 혼인상태	문8) 종교	문9) 동거여부
	문6-1) 장애종류	문6-2) 장애정도			
※순서대로 기입	① 비해당(비장애인) ② 지체장애 ③ 정신장애 ④ 뇌병변장애 ⑤ 신장장애 ⑥ 시각장애 ⑦ 심장장애 ⑧ 청각장애 ⑨ 호흡기장애 ⑩ 언어장애 ⑪ 간장애 ⑫ 정신지체 ⑬ 안면장애 ⑭ 발달장애 ⑮ 장루·요루장애 ⑯ 자폐성장애 ⑰ 간질장애(뇌전증장애) ⑱ 비등록장애인(보호처등록장애인포함) ※ 가장최근에 판정받은 장애유형을 기록 ※ 중복장애의 경우, 주요 장애 한 가지만 표시 해 주십시오, 등급이 같은 경우에는 생활에 더 큰 어려움을 주는 장애로 표시하면 됩니다.	① 비해당(비장애인) ②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1~3급) ③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존 4~6급) ④ 비등록 장애인 (보호처등록 장애인 포함)	① 비해당 (18세 미만) ② 유배우 ③ 사별 ④ 이혼 ⑤ 별거 ⑥ 미혼 (18세 이상, 미혼모 포함) ⑦ 기타(사망등)	① 있음 ② 없음	① 같이 살고 있다. ② 다른 지방에 근무(국내) ③ 해외 근무 중 ④ 학업(해외 유학 포함) ⑤ 입원, 요양 ⑥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⑦ 가출 ⑧ 분가 ⑨ 사망 ⑩ 다른 곳에 맡겨진 미취학 자녀 ⑪ 기타(군복무 등) ※ 주거지를 정하지 않은 여행 등 일시적인 비동거자는 동거자로 구분합니다.
1					
2					
3					
4					
5					
6					
7					
8					
9					

문10)	가구형태	① 단독 ② 모자 ③ 부자 ④ 조손가구 또는 소년소녀가장 ⑤ 기타	
------	------	--	--

문11) 맞춤형 급여 수급형태	급여종류	1)수급여부	2) 수급형태 1		3) 수급형태 2	
	① 생계급여 ② 의료급여 ③ 주거급여 ④ 교육급여	① 생계급여	☒	① 해당없음 ① 일반수급가구 ② 조건부수급가구 ③ 특례가구		① 해당없음 ① 가구원 전부 수급 ② 가구원 중 일부 수급
② 의료급여		☒	① 해당없음 ① 의료급여 1종 ② 의료급여 2종 ③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① 해당없음 ① 가구원 전체 의료급여 ② 가구원 일부 의료급여	
③ 주거급여		☒	① 해당없음 ① 임차급여(특례포함) ③ 수선유지급여(특례포함)			
④ 교육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수		명	

< 용어 해설: 가구형태 >
 • 단독: 1인 가구
 • 모자: 어머니와 18세 미만의 미혼자녀(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만 구성된 가구(단,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 부자: 아버지와 18세 미만의 미혼자녀(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만 구성된 가구(단,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 조손가구 또는 소년소녀가장: 18세 미만의 자가 가구주로 있는 가구 또는 만 65세 이상(1956년 이전)인 노인(할머니, 할아버지)과 같이 사는 경우 노인을 가구주로 하는 가구
 • 기타: 위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
 < 용어 해설: 의료급여 수급형태 >
 • 의료급여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근로무능력세대,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으로 가구(세대) 모두가 의료급여 수급자인 가구
 • 의료급여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세대 등으로 가구(세대) 모두가 의료급여 수급자인 가구
 < 유의사항: 기초보장 수급형태 / 의료급여 수급형태 / 맞춤형 급여 >
 ※ 맞춤형 급여(생계, 의료, 주거) 수급형태는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협조를 얻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수급여부 및 수급형태를 확인하고, 교육급여는 응답자의 협조를 얻어 교육청에 문의하여 수급여부 및 수급자 수를 기입합니다.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수급이면 수급가구로 파악합니다.

II. 건강 및 의료 A

※ 가구원 번호와 이름은 2쪽의 순서 및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재합니다.

가구원 번호	이름	문1) 2021년 12월 31일 기준 건강상태	문2) 2021년 1년 중 의료기관 이용			문3) 2021년 1년 중 병원에 입원한 이유	문4) 2021년 1년 중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십시오.	가구원 이름	① 아주 건강하다 ② 건강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⑤ 건강이 아주 안 좋다	문2-1) 외래진료횟수 (예) 3회 →003 없음 →000	문2-2) 입원횟수 (예) 3회 →03 없음→00	문2-3) 입원일수 (예) 20일→020 없음→000	① 비해당 ① 지병/질병 ② 사고 ③ 출산 ④ 건강검진 ⑤ 요양/휴식 ⑥ 성·정형/교정 ⑦ 기타	① 비해당 ① 종합, 대학병원 ② 병·의원(지역내/지역외) ③ 한방 병·의원 ④ 보건소 ⑤ 기타 ⑥ 치과병·의원 ⑦ 요양병원
1							
2							
3							
4							
5							
6							
7							
8							
9							

〈 유의사항 〉

문 2-1) 외래진료횟수

- ※ 외래진료횟수는 법정의료기관의 횟수만 합산합니다. 순회 진료를 받은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 동일병원에서 각각 다른 진료과목을 2회 이상 진료한 경우는 1회로 표시하고, 2곳 이상의 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2회로 표시합니다.
- ※ 건강검진은 외래진료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 예방접종(국가 무료예방접종 및 유료예방접종)은 외래진료횟수에 포함합니다.

문 2-2) 입원횟수

- ※ 장기입원환자가 365일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1회로 기록합니다.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도 그 횟수를 포함합니다. 응급실에 당일 입·퇴원하는 경우, 교통사고나 재발치료 등의 이유로 여러 병원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는 경우는 모두 1회로 표시합니다.

문 3) 병원에 입원한 이유

- ※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으면 '① 비해당'으로 표시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경험 있다면 2021년 1년 중 가장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경우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이유를 기입합니다. '⑤ 요양/휴식'은 질병 치료 후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문 4)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

- ※ 노인복지관에 의사가 왕진을 오거나 노인복지관 내에 의사가 1인 이상 직원으로 상주할 경우 이곳에서 의료서비스를 주로 이용한다면 '⑤ 기타'로 표시합니다.

가구원 번호	문5) 2021년 1년 중 건강검진 횟수	문6) 만성질환	문7) 주요 병명	문8) 2021년 12월 31일 기준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십시오.	2021년 1년 중 건강검진 횟수 (예) 1회 →1 없음→0	① 비해당 ① 3개월 미만 투병·투약하고 있다 ②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투병·투약 하고 있다 ③ 6개월 이상 투병·투약하고 있다	(예) 1개 → 03 없음 → 00	(예) 3개 → 03 없음 → 00
1				
2				
3				
4				
5				
6				
7				
8				
9				

[주요병명코드]					
01 결핵, 결핵, 폐결핵	40 백일해, 흉막	80 외상성 손	90 신장염(중등)	02 결핵성 흉막염(중등) 03 결핵성 흉막염(중등) 04 결핵성 흉막염(중등) 05 결핵성 흉막염(중등) 06 결핵성 흉막염(중등) 07 결핵성 흉막염(중등) 08 결핵성 흉막염(중등) 09 결핵성 흉막염(중등) 10 결핵성 흉막염(중등)	
02 한센병, 결핵, 폐결핵, 디프테리아	41 결핵성 흉막염(흉막 가, 가)	81 지주막하	91 신장염(중등)		
03 폐결핵, 결핵, 폐결핵, 폐결핵	42 결핵	82 결핵성 흉막염(중등)	92 신장염(중등)		
04 결핵성 흉막염, 결핵성	43 결핵성, 결핵성	83 결핵성 흉막염(중등)	93 신장염(중등)		
05 결핵성	44 결핵성 흉막염	84 결핵성 흉막염(중등)	94 신장염(중등)		
06 결핵성 흉막	45 결핵성 흉막염(결핵성 흉막염)	85 결핵성 흉막염(중등)	95 신장염(중등)		
07 결핵성	46 결핵성, 결핵성, 결핵성, 결핵성	86 결핵성 흉막염(중등)	96 신장염(중등)		
08 결핵성, 결핵성, 결핵성	47 결핵성, 결핵성	87 결핵성 흉막염(중등)	97 신장염(중등)		
09 결핵성, 결핵성, 결핵성	48 결핵성, 결핵성	88 결핵성 흉막염(중등)	98 신장염(중등)		
10 결핵성, 결핵성, 결핵성	49 결핵성, 결핵성	89 결핵성 흉막염(중등)	99 신장염(중등)		

III. 경제활동상태

※ 아래의 모든 조사 항목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 당시 만14세 이하이었던 경우는 문1)의 '0'에 체크하고, 다음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으로 넘어갑니다.

※ 당시 만15세 이상(2006. 12. 31. 이전 출생자)이었던 모든 가구원은 응답해야 합니다.

가구원 번호	이름	문1) 근로능력정도 (※ 심신능력상)	문2) 근로무능력사유	문3)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	문3-1) 경제활동 참여 상태 (12월 31일 기준)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시오	가구원 이름	① 만14세 이하 → [IV. 사회보험]으로 갈 것 ① 근로가능 → 문3)으로 갈 것 ② 단순근로가능 (집에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정도) → 문3)으로 갈 것 ③ 단순근로미약자 (집안 일만 가능) → 문3)으로 갈 것 ④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 (집안일도 불가능) → 문2)로 갈 것	① 중증장애 ② 질병 또는 부상 ③ 노령으로 인한 심신 무능력 ④ 기타 ※ 모든 응답자는 문3)에서 '⑨ 비경제활동인구' 로 응답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 문4)로 갈 것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 문3-1)로 갈 것 ④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 문3-1)로 갈 것 ⑤ 고용주 ⑥ 자영업자 → 문8)로 갈 것 ⑦ 무급가족종사자 ⑧ 실업자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함) →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으로 갈 것 ⑨ 비경제활동인구 → 문11)로 갈 것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④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⑤ 고용주 ⑥ 자영업자 ⑦ 무급가족종사자 ⑧ 실업자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함) ⑨ 비경제활동인구
1					
2					
3					
4					
5					
6					
7					
8					
9					

< 용어해설 >

문3)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경제 활동 인구	취업자	1. 상용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재(회)사 내 규에 의해 채용되어 인사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고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사람
		2. 임시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없더라도 1년 이내에 이 일이 끝날 것이 라고 생각되는 경우, 또는 일정한 사업완료(프로젝트 등)의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재단, 한 직장 등에서 오래 일 하였거나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임시직
		3. 일용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매알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거나, 일정한 장소 없 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자
		4. 자활 및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 또는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자
		5. 고용주	한 사람 이상 피고용인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
		6. 자영업자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7. 무급가족종사자	동일가구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8. 실업자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4주 동안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을 하지 못한 자 또한 구직활 동을 한 경우, 30일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것이 확실한 취업대기자는 구직활동여부와 관계없이 실업자 로 분류
		9. 비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 또한 주된 활동 상태에 따라 가사, 통학, 연로, 심신 장애, 기타로 구분되며, 집에서 통근하는 군 복무자(공익근무요원 등)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 상용/임시/일용 구분은 근무기간이 아닌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학생, 주부라 하더라도 소득을 목적으로 주당 1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는 취업자로 파악하며, 일시휴직자(병가, 산전후휴가, 육아
휴직 등)도 취업자로 파악한다.

※ 불규칙적인 일자리나 계절성이 강한 일자리(농업, 일용직, 자활 및 공공근로 등)의 경우는 조사업무 매뉴얼을 참조하여 응답하도록 한다.

문3-1) 경제활동 참여 상태(12월 31일 기준)

※ 문3)에서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또는 '④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로 응답한 경우 상황에 따라 12월 31일은 쉬고
있을 수 있음. 이런 경우에는 12월 31일 기준으로 경제활동 참여 상태를 응답합니다.

가구원 번호	문4) 고용관계	문5) 근로시간형태	문6) 근로계약기간 설정 여부	문7) 근로지속가능성	문7-1) 근로지속불가능 사유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시오.	① 직접고용 ② 간접고용 ③ 특수고용 ※ 아래 [문4] 고용관계] 참조	① 시간제 ② 전일제 ※아래 [문5] 근로시간형태] 참조	① 계약기간이 정 해져 있음 ② 계약기간이 정 해져 있지 않음 ※ 아래 [문6] 근로 계약기간 설정 여부] 참조	① 특별한 사유(본인의 중대한 과실, 폐업 등 사업체 자체의 소멸 또 는 고용조정, 천재지변 등)가 없 는 한 계속 근로가 가능함 → 문8)로 갈 것 ②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음 → 문7-1)로 갈 것	① 이미 정해진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② 묵시적・관행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것이기 때문에 ③ 사업주가 그만두려면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조건 (임시직 등)으로 채용되었으므로 ④ 현재 하는 업무(프로젝트)가 끝나기 때문에 ⑤ 현재의 일자리에서 전에 일하던 사람이 복귀 하기 때문에 ⑥ 특정 계절 동안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9					

문4) 고용관계

- ① 직접고용: 고용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둘 사이에 일대일 대응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로 일반적인 고용형태라 할 수 있다. 사용-종속관계가 긴밀하다.
- ② 간접고용: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사실상의 사용자가 다른 경우, 근로계약상 '본래 소속의 고용주-일하는 곳에 있는 사용자-근로자' 간의 삼각관계가 성립한다. 파견, 용역 근로가 이에 해당한다.
 - 파견근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
 - 용역근로: 용역회사(용역을 받고자 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 회사의 직원을 보내 해당용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이 회사의 지휘하에 이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형태(예: 청소용역, 경비용역 등).
- ③ 특수고용: 근로자와 지령인의 중간영역에 있는 자로서,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만큼 소득(수수료, 수당 등)을 얻고 노무제공의 방법이나 노무제공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예: 학습지교사, 보습설계사, 골프장 캐디, 지입형태의 레미콘(화물, 덤프)기사, 택배원(택배서비스 포함), 다단계판매원, 화장품판매원, 카드모집인, 본인이 소유한 차량으로 학원차량 기사를 하는 경우(단, 본인의 차량이 아닌, 학원에 속한 차량으로 유전을 하는 경우는 직접고용에 포함) 등).

문5) 근로시간 형태

- ① 시간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거나,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또한 임금이 시간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 ② 전일제: 시간제 근로자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문6) 근로계약기간 설정 여부

- 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음: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 ②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근로계약상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일정한 사업(프로젝트)완료 기간에 한해 고용된 경우: 사업완료기간이 명백하면 계약기간 정해진 것으로 보고, 사업완료 기간이 명백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봄
 - 일용직의 경우: 인력시장에서 하루하루 고용되어 일을 하는 경우는 계약기간이 정해진 것으로 보고, 고용주(혹은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근로기간이 결정되어 본인은 언제까지 일을 하게 될지 모르는 경우는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봄

문7) 근로지속가능성: 근로계약 기간의 설정여부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다.

-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근로가 가능함: 일반적으로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경우 i)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본인의 중대한 과실, 폐업 등 사업체 자체의 소멸 또는 고용조정,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 경우 ii)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의 반복갱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근로가 가능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음: i)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의 사정상 언제든지 해고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한시적 근로자) ii)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계약기간 만료 이후 계약갱신이 불가능한 경우

가구원 번호	문8) 업종	문9) 직종		문10) 사업장 규모	문11) 비경제활동 사유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시오.	※ [조사업무 매뉴얼] <부록2> 산업분류 코드에서 중분류 코드 2자리를 기입 하시오. ※ 자활 및 공공근로, 노인일자리도 해당 업종의 산업코드를 기입함.	※ 좌측 직업명은 주관직으로 기입, 우측 직업코드는 [조사업무 매뉴얼] <부록3> 직업분류코드에서 소분류 코드 4자리를 기입하시오.		① 1~4명 ② 5~9명 ③ 10~29명 ④ 30~49명 ⑤ 50~69명 ⑥ 70~99명 ⑦ 100~299명 ⑧ 300~499명 ⑨ 500~999명 ⑩ 1000명 이상 ⑪ 잘 모르겠다	① 근로무능력 ② 군복무 ③ 정규교육기관 학업 ④ 진학준비 ⑤ 취업준비 ⑥ 가사 ⑦ 양육 ⑧ 간병 ⑨ 구직활동포기 ⑩ 근로의사 없음 ⑪ 기타 ※ 사유가 겹치는 경우에 주된 사유 하나만 응답 ※ 군복무 다지라도 ⑩ 군복무로 응답
		직업명	직업코드		
1					
2					
3					
4					
5					
6					
7					
8					
9					

〈 유의사항 〉

문8)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를 따른다(조사업무 매뉴얼 참조).

문9) 직종

※ 한국표준직업분류(7차 개정)를 따른다(조사업무 매뉴얼 참조).

문10) 사업장 규모

① 문3)에서 '①~③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 ④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로 응답한 경우

- 중사업체의 상호로 파악되는 전체 사업장 차원의 종사자수를 말하며, 소유, 경영, 인사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종사자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00은행의 00지점일 경우 종사자수는 지점의 종사자수가 아니라 그 은행의 전체 종사자수다.
- 만약, 지점이 아닌, 체인점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일 경우 소유와 운영이 모회사와 별도이기 때문에 해당사업장의 종사자수에 해당하는 번호를 찾아 기입한다. 예를 들면, 00햄버거의 00지역 체인점의 경우는 햄버거 업체 전체의 종사자가 아닌, 00지역 체인점의 종사자수만 기입한다.
- 그룹사의 경우 해당 계열사 차원의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예를 들면, 00그룹의 00자동차에 다니는 경우는 자동차 계열사의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 공무원, 공립학교 교사 등은 '⑩1000명 이상' 으로 기입한다.
- 하청업체의 경우는 원청업체가 아닌 자신이 소속된 하청업체의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예를 들면, **업체에서 근무를 하지만, 00업체의 소속으로 급여도 00업체에서 받을 경우는 00업체의 종사자수를 적는다.
- 또한, 파견근로 및 용역근로의 경우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의 사업장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예를 들어, A업체와 고용계약을 맺어 A업체(고용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는 등 인사관리 대상이 되는 사람이 B업체(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A업체의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의 경우에는 사업단 인원수가 되지만, 직업소개소 등과 같은 송출업체를 통해 일을 하고 있는 경우(예를 들어 파출부 등)는 '1명' 으로 간주한다. 즉, 남의 집에서 혼자 일하는 육체적 단순노무, 가사서비스 등과 같은 일용임금근로자는 자신만 종사자로 파악, '①1~4명' 로 응답한다.

② 문3)에서 '⑤~⑦비임금근로자(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로 응답한 경우

- 고용주: 고용주를 포함한 자기 사업체내의 전체 종사자수(무급가족종사자 포함)
-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종사자수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 아래의 모든 조사항목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가구원번호와 이름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2쪽의 순서 및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구원 번호	이름	공적연금 가입		국민연금		
		문1) 공적연금가입형태	문2)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	문3) 가입종별	문4) 국민연금 납부여부	문5) 미납유형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	가구원 이름	① 비해당 →문9)로 갈 것 ① 연금수급 →문9)로 갈 것 ② 연금가입 →문2)로 갈 것 ③ 연금수급하면서 가입 →문2)로 갈 것 ④ 미가입 →문8)로 갈 것 ※ 공적연금에는 국민,공 무원,사학,군인,별정직 우체국직원연금이 포 함됨. 보험연금은 제외 ※ 아래 [문1) 공적연금 가입형태] 참조	① 국민연금 →문3)으로 갈 것 ② 공무원연금 ③ 사학연금 ④ 군인연금 ⑤ 별정직우체국연금 ⑥ 모름 ※ 아래 [문2)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 보충설명] 참조	①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③ 임의가입자(직장이 나 지역가입자는 아 니지만 미래 연금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내고 있음) ④ 임의계속가입자(60~ 65세인데 수급권을 얻기 위해 보험료를 내고 있음) ⑤ 모름 →문9)로 갈 것 ※ 실업상태로 납부에 외자의 경우는 '② 지역가입자'로 응답.	① 납부하고 있음 →문7)로 갈 것 ② 납부하지 않고 있음 →문5)로 갈 것 ※ 12월 31일 기준으 로 납부기한을 깜 빡 잊어서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는 '①납부하고 있음' 으로 응답.	① 납부예외자 →문6)으로 갈 것 ② 보험료 미납 →문7)로 갈 것 ※ 납부예외자는 국민연금가입자 이지만 실직, 사 업중단, 휴직(출산, 육아 등), 군입대, 학업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 지 않는 사람
1						
2						
3						
4						
5						
6						
7						
8						
9						

문1) 공적연금 가입형태

<질문시 유의사항>

공적연금 가입현황을 먼저 질문합니다. 즉, ①, ②, ③을 먼저 질문해서 해당되는 항목에 먼저 체크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먼저 아래 지침을 참조하여 '④ 비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역시 아래 지침을 참조하여 '④ 미가입'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파악하도록 합니다.

<용어해설>

- ① 연금수급: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의 수급자(재직자노령연금 수급자도 포함)
- ② 연금가입: 국민연금(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포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의 가입자
(만18세 미만으로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라 하더라도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국민연금에 가입을 시켜 준 경우는 연금가입)
- ③ 연금수급하면서 가입: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을 받으면서 공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받으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됨.
- ④ 미가입: 공적연금 가입대상자인데, 어떤 공적연금제도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1961년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던 자인데 2021년 12월 31일 기준 수급 혹은 임의계속가입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즉 가입자이었던 자가 만60세에 도달하였는데도 수급과 가입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미가입으로 응답하고, 문8)미가입 이유에 ⑥만60세 경과로 가입)
⑤ 비해당: 국민연금 적용제외 대상자(만18세 미만, 만60세 이상 등) 중 ①연금수급~④미가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지침서) 참조)

문2)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

- ※ 과거 가입했던 제도가 아니라 현재 가입하고 있는 제도 기준임.
-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그 외 보험료 미납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포함됨.
- ※ 업종, 직종 분류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군인 등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 등 해당 직역연금 가입자가 아닐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예를 들어, 구청직원이라 하더라도 일용직, 용역직원 등은 공무원연금 가입대상이 아닐 수 있음.

가구원 번호	이름	국민연금					
		문6) 납부예외 사유	문6-1) 납부예외 기간	문7) 미납 이유	문7-1) 미납 기간	문8) 미가입 이유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	가구원 이름	① 실직, 휴직, 사업중단 ② 3개월 이상 입원 ③ 생활곤란 ④ 학업(재학) ⑤ 기타(자연재해, 교도소 수감 등)	2021년 1년간 납부예외자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 간은 몇 개월입니까? →문9)로 갈 것 ※ 2021년 1년간 기준임.	① 비해당(미납경험없음) ①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 적 여유가 없어서 ②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 ③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 도 생활걱정이 없을 것 같아서 ④ 모름 ⑤ 기타 ※ 2021년 1년 기준임. ※ 문4)에서 '㉔'납부하고 있 음으로 응답한 사람 중 20 21년 1년간 미납경험이 없 는 경우 '㉔'비해당으로 기 입하고, 미납한 경험이 있 는 경우는 ①~⑤ 중 응답.	2021년 1년간 보험료 를 몇 개월이나 미납 하셨습니까? →문9)로 갈 것 ※ 2021년 1년간 기준임. ※ 2021년 1년간 미납경 험이 없는 경우는 0으 로 기입	① 보험료를 납부할 경 제적 여유가 없어서 ② 국민연금에 대한 불 신 때문에 ③ 가입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④ 모름 ⑤ 기타 ⑥ 만60세 경과	
1							
2							
3							
4							
5							
6							
7							
8							
9							

가구원 번호	산재/고용보험		퇴직금/퇴직연금		개인연금	건강보험
	문9) 산재보험 가입여부	문10) 고용보험 가입여부	문11) 퇴직금 적용여부	문12) 퇴직연금 가입여부	문13) 개인연금 가입여부	문14) 건강보험 가입여부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	① 비해당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모름 ※ 공무원, 사립학교교 직원, 군인의 경우 '㉔'비해당'에 해당. 별정우체국직원의 경 우는 별도이므로 가 입여부를 응답함. ※ 비경제활동인구는 '㉔'비해당'임. ※ 다른 종사자 없이 혼자 사업하는 자영 업자는 '㉔'비해당'이 며, 고용주는 사업장 이 산재보험 가입 사 업장인지에 따라 '㉔' 가입' 또는 '㉔'미가 입'으로 분류함.	① 비해당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모름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 우체국직원의 경우 '㉔'비해당'에 해당 함. ※ 비경제활동인구는 '㉔'비해당'임. ※ 2012.1.22 이후 자영업자 및 고용주 (50인 미만 근로자 사용)도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사업 과 실업급여 모두 가입 가능	① 비해당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원, 별정직우체국직원 포함) ① 받을 것이다 ② 받지 못할 것이다 ③ 모름 ※ 직장에서 퇴직금제 시행 여부가 아니라, 응답자 본 인이 현재의 직장에서 퇴 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문함. ※ 퇴직금중간정산 등으로 앞으로 받을 퇴직금이 적 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㉔'로 응답 ※ 회사가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사 외적립해서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 도록 하는 퇴직보험의 보 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 우도 '㉔'로 응답	① 비해당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원,별정직우체국직원 포함)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모름 ※ 법정퇴직금에 상응하 는 금액을 사용자가 단독으로 혹은 근로자 와 공동으로 조성하 고, 금융기관에 위탁 • 운용하여 근로자 퇴 직시 연금 또는 일시 금으로 지급하는 새로 운 공적연금제도임. ※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	① 개인연금만 가입 ② 종신보험만 가입 ③ 개인연금, 종신보 험 둘 다 가입 ④ 미가입(수령 중인 경우 포함) ⑤ 모름 ※ 개인연금은 은행, 보 험회사, 투신사, 증권 사 등의 금융기관에 서 취급하는 금융상 품으로 강제적용되는 사회보험이 아니라 일종의 사적인 저축 수단임. ※ 종신보험은 연금으 로 전환이 가능한 금 융상품으로서 개인연 금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음.	① 직장가입자 ②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③ 지역가입자 ④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⑤ 의료급여 1종 ⑥ 의료급여 2종 ⑦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⑧ 미가입 ※ 가구원별로 건강 보험의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혹 은 그 각각의 피부 양자에 해당하는지 문고,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 다면 ⑤~⑧ 중 해 당하는 번호를 기 입함.
1						
2						
3						
4						
5						
6						
7						
8						
9						

V. 의료 B

※ 아래의 모든 조사 항목은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귀택은 (공적)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문1-1)로 갈 것**

② 아니다 → **문1-2)로 갈 것**

〈유의사항〉

- 한 가구 내에서 1인 이상 건강보험에 가입되고, 일부만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에도 건강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① 그렇다'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1-1)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①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유의사항〉

- 한 가구 내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 가구주 가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료의 소득비례 부과 및 원천징수가 가능한 임금소득자(직장가입자: 1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직장근로자,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와 보험료의 원천징수가 곤란한 비임금소득자(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로 구분됩니다.

응답 후 문 2)로 가십시오.

문1-2) (문1)의 ②번 응답자만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① 의료급여(1종) → **문1-3)으로 갈 것**

② 의료급여(2종) → **문1-3)으로 갈 것**

③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 **문6)으로 갈 것**

④ 미가입 → **문6)으로 갈 것**

〈유의사항〉

- 한 가구 내에서 의료급여, 국가유공자 무료진료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가구주 가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가구주가 의료급여, 국가유공자 무료진료를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주로 이용하는 급여를 기록해 주십시오.
- 의료급여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기본적인 의료혜택(진찰, 수술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 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선별 급여시에는 급여항목별로 30~90% 본인이 부담해야 함.

- 국가유공자 무료진료란, **의료급여(1종, 2종)와는 달리** 의료비를 국가보훈처로부터 전액 국비로 지원받는 국비진료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인 경우를 말합니다(배우자와 유족은 보훈병원 진료비 60% 감면).

- 차상위 수급권자(희귀난치성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는 건강보험 대상자입니다.

문1-3) (문1-2)의 ①, ②번 응답자만 귀택에서는 의료급여서비스를 받으면서 경험했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③ 차별대우를 받음

② 혜택범위가 좁은 것(본인부담이 많은 것)

④ 기타(적을 것 : _____)

⑤ 적용기간의 제한

응답 후 문4)로 가십시오.

문 2)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에서는 2021년 1년 중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문2-1)로 갈 것**

② 없다 → **문3)으로 갈 것**

문 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에서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건강보험을 별로 이용할 일이 없어서

④ 제도에 대한 불신 때문에

②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돈이 없어서

⑤ 납기기한을 잊어버려서

③ 내는 돈에 비해 혜택이 적어서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문 22) (문2)의 ①번 응답자만) 2021년 1년 중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연간

 개월

문 3)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에서 건강보험을 이용하며 경험했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② 보험의 적용범위가 좁음

① 월 보험료 부담

③ 기타(적을 것 : _____)

문 4)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에서는 건강보험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만큼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다
-------------	----------	--------	----------	----------

문 5) 귀댁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진료 및 치료 등의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다
-------------	----------	--------	----------	----------

문 6) (‘Ⅱ. 건강 및 의료’ 문 8)의 가구원별 민간 의료보험 가입건수를 고려할 때) 2021년 12월 기준으로 귀댁이 가입하고 계신 모든 민간의료보험의 12월 보험료는 총 얼마나 됩니까?

12월 보험료 합계

백	십	원
---	---	---

VI. 주거

문 1)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이 거주한 주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일반단독주택 | ⑦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
| ② 다가구용 단독주택 | ⑧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상가, 공장 등) |
| ③ 다세대주택 | ⑨ 오피스텔 |
| ④ 연립주택(빌라) | ⑩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
| ⑤ 일반아파트 | ⑪ 임시가건물(컨테이너, 재개발지역 가이주단지 포함) |
| ⑥ 영구임대아파트 | ⑫ 기타(적을 것 : _____) |
| | ⑬ 국민·공공임대아파트 |

< 유의사항 >

※ 반드시 건물전체의 등기상 점유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2)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의 주거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 | | |
|--------|------|
| ① 지하층 | ③ 지상 |
| ② 반지하층 | ④ 옥탑 |

< 유의사항 >

※ 한 가구가 여러 층을 사용할 경우, 가장 좋은 위치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3)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방은 **모두** 몇 개였습니까?(세준 경우 제외)

총 개

< 유의사항 >

※ 사용하는 방의 수를 파악할 때 세를 준 경우는 포함하지 않도록 합니다.
※ 거실의 경우, 침실로 사용하고 있거나 침실로 사용이 가능하면 방수에 포함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4)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건평(APT 등의 경우 분양면적)은 얼마입니까?(1평 ≈ 3.3㎡)

m²

< 유의사항 >

※ 마당, 정원, 창고 등을 제외한 거주하고 있는 주택평수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세준 경우 그 면적을 제외하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5)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이 거주하였던 집의 (등기상) 점유형태는?

- | | | | |
|---------|--------------|--------------|--------------|
| ① 자가 | → 문6)으로 갈 것 | ④ 월세(사글세) | → 문5-1)로 갈 것 |
| ② 전세 | → 문5-1)로 갈 것 | ⑤ 비가구원 명의 주택 | → 문9)로 갈 것 |
| ③ 보증부월세 | → 문5-1)로 갈 것 | ⑥ 기타 | → 문9)로 갈 것 |

< 유의사항 >

※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등기상 점유형태를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합니다.
※ 가령, 할머니(가구주)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아들(가구원이 아님) 명의로 해놓고 살고 있는 경우, 조사 대상인 할머니 집의 (등기상) 점유형태는 '⑤ 비가구원 명의 주택'에 해당됩니다.
※ 점유형태 '⑥ 기타'에는 무상 관사, 사택 등이 포함됩니다.

문 5-1) (문5) ②전세 ③보증부월세 ④월세 응답자만)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이 거주하였던 집의 임대주택은 어떤 유형입니까?

- ① 민간임대주택 ②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가중주택 매입·전세임대 등)
③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④ 기타 임대주택

문 6) (문5) ①자가 ②전세 ③보증부 월세 응답자만)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하였던 집의 가격(현시가기준)은 얼마나 됩니까?

금액

십억	억	천	백	십	만	원

< 유의사항 >

- ※ 자가의 경우 주택가격, 전세의 경우 전세금, 보증부월세의 보증금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 집의 가격은 반드시 명의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가령, 집이 (가구원이 아닌) 자녀의 명의로 된 경우 집의 가격에 대한 응답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문 7) (문5) ①자가 ②전세 ③보증부 월세 응답자만)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이 거주하였던 주택의 구입비용, 보증금 혹은 증·개축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2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차기돈(상속인 경우 포함)
② 무상으로 도움을 받음
③ 부모·형제·친척·친구 등으로부터 빌림
④ 금융기관(회사에서 용자받은 경우 혹은 모기지론도 포함)으로부터 빌림
⑤ 사채

문 8) (문5) ①자가 ②전세 ③보증부 월세 응답자만)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살았던 귀댁의 주택관련 부채에 대해 응답하여 주십시오.

구	분						
㉓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택관련 부채를 얼마나 갚으셨습니까? (※ 원금만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십억	억	천	백	십	만 원
㉔	2021년 12월 31일 기준	주택관련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 단, 이자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갚지 못한 이지만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십억	억	천	백	십	만 원

< 유의사항 >

- ※ 주택관련 부채 : 주택구입비, 보증금, 증개축비용만 포함하고,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은 제외합니다.
※ 없음= '0' 으로 표시합니다.

문 8-1) (문5) ①자가 ②전세 ③보증부 월세 응답자만)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출상환액(이자포함)의 연체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 ① 연체한 적이 없다 ③ 2~3회
② 1회 ④ 4회 이상

< 유의사항 >

- ※ 주택관련 부채가 없거나 2021년 이전에 주택관련 부채를 다 갚은 경우 '① 연체한 적이 없다' 에 표기해 주십시오.

문 9)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한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이 어떠하였습니까?
다음 항목별로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예	아니오
㉠ 영구건물로서 튼튼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이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을 갖추고 있다.	①	②
㉡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고 있다.	①	②
㉢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으로 인하여 생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①	②
㉣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다.	①	②

문 10)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의 주거시설 종류와 사용형태를 응답해 주십시오.

시설종류	사용형태
㉠ 상·하수도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③ 없음
㉡ 부엌	① 단독사용-입식 ② 단독사용-채래식 ③ 공동사용-입식 ④ 공동사용-채래식 ⑤ 없음
㉢ 화장실	① 단독사용-수세식 ② 단독사용-채래식 ③ 공동사용-수세식 ④ 공동사용-채래식 ⑤ 없음
㉣ 목욕시설	① 단독사용-온수시설 있음 ③ 공동사용-온수시설 있음 ② 단독사용-온수시설 없음 ④ 공동사용-온수시설 없음 ⑤ 없음
㉤ 난방시설	① 연탄 또는 채래식(땃감) 아궁이 ④ 기름보일러 ⑦ 중앙난방(지역난방) ② 연탄보일러 ⑤ 가스보일러 ⑧ 전기장판 ③ 나무·석탄보일러 ⑥ 전기보일러 ⑨ 기타(적을 것: _____)

문 11)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귀댁에서 이용한 적이 있는 주거복지 관련 사업이 있다면 그 서비스에 체크해 주십시오.

주거복지 관련 사업	있다	없다
㉠ 영구임대주택	①	②
㉡ 국민·공공임대주택	①	②
㉢ 전세자금(융자)지원(저소득·근로자·서민) (※지자체의 전세(융자)지원 포함)	①	②
㉣ 저소득층 월세지원 (※ 지자체의 월세지원 포함)	①	②
㉤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근로자·서민)	①	②
㉥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	①	②
㉦ 기타(적을 것: _____)	①	②

< 유의사항 >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 '㉦ 기타'에는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부모임대주택 임차인지원, 고령자 임대주택,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직장 여성 아파트), 행복주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 ㉢, ㉣의 경우 2021년 이전부터 입주하여 2021년 동안에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이용경험 여부에 '① 있다'로 응답합니다.

그러나 ㉤, ㉥의 경우는 2021년 당해 연도에 지원받은 경우만을 이용경험 여부에 '① 있다'로 응답합니다.

VII. 생활비

〈유의사항〉

- ※ 생활비 : **신규가구 생성이후** 가정생활을 위한 비용만 기입합니다. 따라서 **사업용도의 비용은 제외합니다.**
- ※ **천연석, 아톰,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보좌받는 각종 현물(장학금, 의료비, 각종 공공금 대납, 식료품, 의류, 난방용품, 복지 할인 등)도 현금으로 환산하**여 해당 비목의 생활비에 포함하여 주십시오.
- ※ 할부 구매의 경우 **구입시점(2021년 12월)이며, 그 품목의 가격÷12를 기입합니다.** 예) 2021년 10월에 1,200만원짜리 자동차를 24개월 할부(월 50만원)로 구매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의 총가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100만원)을 기입합니다. 따라서 2020년 중 24개월 할부로 차를 구입하여 2021년에도 월 50만원씩 할부금을 내는 경우라도 2021년의 지출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 ※ **9개월 미만 생계를 같이한 가족**이 있을 경우 이들의 지출은 **충성할바에서 제외합니다.** 그 이유는 가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 1)	식료품비	문 1-1) 가정 식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가정식비는? ※ 가정에서 먹는 주식, 부식, 간식비용, 제사비용, 음주비용 제외 ※ 자가산(자기가 농사를 지어 먹는 것, 자기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 등) 포함	월평균	천	백	십	원
		문 1-2) 외식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외식비는? ※ 직장인의 증식비(우료 증식비 포함), 가족(가구원이 아닌 비용은 사적이전 지출에 포함) 및 가구원 외식비, 학교 급식비(석식), 밖에서 먹는 술(음주) 비용, 복지관에서의 무료식사 등.	월평균	천	백	십	원
		문 1-3) 주류·담배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주류·담배비는? ※ 가정에서 먹는 주류	월평균	천	백	십	원
문 2)	주거비 (주택 구입비 제외)	문 2-1) 월세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월세(사글세 포함)는? ※ 돈이 없어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어도 '계약한 월세액'을 기입 ※ 전세, 자가인 경우 0 (단, 자가나 지대를 내는 경우 월평균 지대액을 기입) ※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을 제외하고 월세만 기입	월평균	천	백	십	원
		문 2-2) 주거관리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주거 관리비 및 수선비는? ※ 주택설비 및 수선비(주거급여 수선유지 급여 포함), 아파트 등 관리비, 이사비, 복비, 경화조비 등	월평균	천	백	십	원
문 3)	광열수도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광열수도비는? ※ 수도비, 전기료, 난방비(연탄, 등유, 경유, 도시가스, LPG 등 급탕비, 에너지 바우처 포함)	월평균	천	백	십	원
			↳ 난방비(연탄, 등유, 경유, 도시가스, LPG 등 급탕비, 에너지 바우처 포함)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원
문 4)	가구·가사용품비	문 4-1)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가구집기·가사용품비는? ※ 가구, 가정용가전(냉장고, 세탁기, 가스렌지 등), CCTV 카메라, 식기주방용품, 가사집화 및 소모품(조명기구, 화장지, 전구, 공구, 세탁청소용품 등), 침구 및 실내장식품, 가사서비스 비용(파출부, 청소비 등), 기타귀 값 정수기 대여료, 치료목적이 아닌 바우처(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이용료 등	월평균	천	백	십	원
		문 4-2) 보육료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보육료는? ※ 보육료는 베이비시터, 놀이방을 포함하는 것이며, 유치원은 제외함	월평균	천	백	십	원
문 5)	의류 신발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의류·신발비는? ※ 의의(스포츠웨어 포함), 내의, 학생복(교복), 구두, 운동화, 모자(스포츠용 포함) 등 구입비 및 수선비, 세탁료 등	월평균	천	백	십	원
문 6)	보건 의료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보건 의료비는? ※ 입원비, 외래진료비, 치료진료비, 수술비(임플란트, 성형수술 등도 포함), 약값, 간병비, 산후조리비, 건강진단비, 건강보조식품, 보건의료용품(안경, 콘택트렌즈 등, 보장구, 마스크, 손소독제, 치료용바우처(비만아동바우처)이용료 등, 보건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만 기입	월평균	천	백	십	원
문 7)	교육비	문 7-1) 공교육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공교육비는?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초·중·고 제외), 문방구비, 보조수업비(모든 학생이 다 하는 경우), 유학비, 아티클습비, 수학여행비 등	월평균	천	백	십	원
		문 7-2) 사교육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사교육비는? ※ 학원비, 유치원비, 도서관 및 독서실 비용, 과외수업비, 검정고시비, 학생의 여학원수비, 학습비우체 등	월평균	천	백	십	원
문 8)	교양 오락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교양·오락비는? ※ 신문, 서적, 잡지, 영화 및 공연관람, 교양오락용품 구입비(TV, 오디오, PC, 유선방송, 피아노, 강난강, 등산용품, 낚시대, 골프채 등), 교양오락서비스(PC방, 노래방, 운동강습료, 일반인의 어학학습비, 단체관광비 등), 비디오(DVD) 대여료, 애견(강아지) 구입비, 화분 구입비, TV수선료, 아동용자동차 등	월평균	천	백	십	원

문 9)	교통 통신비	문 9-1)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교통비는? ※ 택시·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비, 자동차 구입 및 유지비, <u>자동차 보험료</u> , 대리운전비, 성인용자전거, 전동휠체어, 전동킥보드 등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9-2)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통신비는? ※ 전화·휴대폰 구입 및 이용요금, 인터넷 이용료 등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10)	기 타 소 비 지 출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기타소비지출은? ※ 이미용용품 구입 및 서비스(화장품, 비누, 샴푸, 이·미용실, 목욕료 등), 장신구(핸드백, 시계, 귀금속 등), 경조비, 교제비용, 친목회비, 종교관련(실일조 등) 비용, <u>보장성보험료</u> (저축성보험 제외), <u>관혼상비</u> (아구지출 기준), 용돈 등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 경조비(축의금 부의금 등 타 가구 지출)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 종교관련비용(실일조 등)은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 비영리단체(기부금, 직장노조비, 친목회비 등) 이전지출은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11)	사 이 적 전	문 11-1) 비 동 거 가 구 원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따로 사는 가구원(타지에서 공부하는 학생,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사는 배우자 등)에게 보낸 월평균 송금보조금은? ※ 현물 포함 ※ <u>자녀비용</u> (월세 등), 학교 기숙사비, 생활장비, 용돈 등(단, 등록금 등 교육비는 7.교육비에 기입)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11-2) 기 타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가구원이 아닌 부모, 자녀, 친지 등에게 보낸 월평균 송금보조금은?	부모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 농사지에서 친인척에서 보낸 것(현금으로 환산) 포함	자녀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 자·위 결혼 등으로 집을 사준 경우(전세자금 포함)는 증여로 보아 제외함 ※ 본인 명의가 아닌 부처에 대한 이자(예컨대, 이들 명의의 집에 대한 이자 내는 경우 포함	기타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12)	세 금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세금은? ※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근세, 재산세,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주민세, 취득세 등의 연간 총납세액을 12로 나눈 값 (단, 법인세 등 사업용도의 세금은 제외함) ※ 본인 명의가 아닌 재산에 대해 내는 세금도 포함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 소득세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 재산세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 자동차세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 종합소득세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 부동산세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13)	사회보장부담금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사회보장부담금은? ※ <u>가족 모두의</u> 국민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월 합산액 ※ 본인부담의 보험료만 포함(사업장이나 제3자가 부담해주는 보험료는 제외) ※ <u>사보험료(암보험, 보장성보험 등) 제외</u>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 국민연금보험료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 건강보험료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 고용보험료는 얼마입니까?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문 14)	총 생 활 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지출한 총 생활비는? ※ <u>총생활비 = 1~13의 합계</u> ※ 저금, 저축성보험료, 계 부은 금액 등 재산 증기를 위한 지출과, 주택부금상환, 월부, 외상 빌린 돈(이자 포함) 같은 금액 등 부채 감소를 위한 지출은 제외	월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 없음은 반드시 '0' 표시. 지출 소득의 경우 이하 동일

※ 천원 단위 이하는 소수점으로 표시(예, 5천원 → 0.5). 단 1만원 이상은 반올림하여 만원단위로 처리. 예) 11만5천원의 경우 12만원으로 기입

VIII. 소득

문 1)	가구원의 경제활동: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귀 가구 가구원 중 만 15세 이상(2006.12.31.이전 출생자)이었던 모든 가구원의 경제 활동을 말씀해 주십시오. (①~⑥의 활동 분류 중 해당하는 경우 1로 표시) ※ 단, 2020. 10. 1 ~ 2020. 12. 31 사이에 분가한 신규가구의 경우 2021년의 경제활동을 파악하면 됩니다.												
성명	가구원 번호	① 상용근로자		②임시·일용 근로자		③고용주·자영자 (농림축어업제외)		④ 농림축산업 경영주		⑤ 어업 경영주		⑥무급가족종사자·가 사 또는 육아·학생 ·기타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해당 개월수
	1												
	2												
	3												
	4												
	5												
	6												
	7												
	8												
	9												
합계		명		명		명		명		명		명	
		문항 2로 가시오		문항 3으로 가시오		문항 4로 가시오		문항 5로 가시오		문항 6으로 가시오		문항7로 가시오	

〈 유의사항 〉

- ※ **15세 미만의 경우 이름만 기입.**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에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 **한 사절에 직일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여부에 모두 '1'로 표시(예, 공무원이면서 농사를 짓는 경우 상용근로자와 농림축산업 경영주에 모두 '1'로 표시하고 문항 2와 문항 5에서 소득파악).
- ※ **개월수는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일한(해당) 개월수 기입**(예, 전년(2020)부터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1년 3월에 퇴직하여 3개월 동안 원 후 7월에 상용근로자로 취업하여 2개월 일한 경우 '상용근로자 일한 개월수'는 5개월임, 농업의 경우 12개월로 기입.)
- ※ 자영업, 농림축산업, 어업 등에 종사하는 가구 중 **2명 이상의 가구원이 하나의 사업장 혹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는 그 중 1명만 고용주·자영자, 농림축산업 경영주, 어업 경영주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⑥무급가족종사자로 표시함.

※ 주된활동구분

①	상 용 근 로 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계속 정규직원으로 일하면서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사람 등. 일반직장인, 공무원, 법인경영자(월급 사장)등을 포함함.
②	임시·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란 임금근로자중 상용이 아닌 사람으로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사업완료(예컨대,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 등을 말함. 일용근로자란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면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 다니면서 일한 댓가를 받는 사람 등을 말함.
③	고용주·자영자	(농림축어업제외) 1명 이상의 유급종업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고용주와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과 함께 일을 하거나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 및 경영하는 경우.
④	농 립 축 산 업 경 영 주	10a(약 300평) 이상의 경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거나,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인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단, 판매금액이 120만원 미만이라도 2021. 12. 31. 시점에 120만원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
⑤	어 업 경 영 주	어업에 종사하면서 연간 1개월 이상 판매를 목적으로 해면에서 수산 동식물의 포획·채취나 양식업을 경영하는 사람.
⑥	무급 가족 종사자	일정한 보수 없이 자기 가족(동일가구 내)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장 혹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가사 또는 육아	자기의 시간 대부분을 자기집에서 가사업무를 하거나 가구원의 간병을 수행한 경우 또는 미취학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집에 있는 경우임.
	학 생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로 재수생도 포함함. (※ 직장인이 야간대학(원) 등에 다니는 경우 주된 활동은 해당 근로활동(위의 ①~⑤)으로 표시함)
	기 타	실업자,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한 심신무능력을 사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자, 근로능력은 있으나 근로의사가 없는 자 등

문 2)	상용근로자: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상용근로자였던 가구원 각각이 벌어들인 월평균 급여(원천징수전 총급여의 월평균)는 얼마였습니까? ※ 신규가구는 원가구와 달리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에 유의. ※ 신규가구의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 [(생성시점~2021년 12월까지 소득) ÷ 신규생성기간(개월)] (단, 2021년 1월 1일 이전(2020.10.1~12.31)에 분가한 신규가구의 경우 2021년 한해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함)
------	---

성명	가구원 번호	월평균 급여액						
	1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2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3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4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5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6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7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8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9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 ※ 총급여는 기본급여,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경상적으로 매월 지급된 수당, 성과급, 소득공제 환급분, 판공비, 복지카드, 회사에서 내준 자동차 유지비 및 휴대폰 요금, 무료중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 ※ 총급여는 소득세, 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세금 및 각종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임.
- ※ 법인 경영자의 경우 상용근로자로 분류함.
- ※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1번과 3번이 상용근로인 경우 가구원 번호 1번과 3번에 이름을 기입하고 총급여액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둬(이하 동일함).
- **상용근로소득 외 다른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

문 3)	임시·일용근로자 ※ 신규가구의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 [(생성시점~2021년 12월까지 소득) ÷ 신규생성기간(개월)] (단, 2021년 1월 1일 이전(2020.10.1~12.31)에 분가한 신규가구의 경우 2021년 한해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함)
------	---

[보조기입란 3-a]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0년 12월까지 월평균 일한 횟수(출근일수)와 1회(1일)당 지급되는 보수는 얼마입니까?	성명	가구원 번호	월평균 일한횟수 (A)	1회당(일당) 보수 (B)				
		1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2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3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4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5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6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7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8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9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 ※ 월별로 일한 횟(일)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월별로 일한 횟(일)수를 확인한 뒤,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전체 일한 횟(일)수를 생성 개월수로 나눈 것을 월평균 일한 횟(일)수로 기재함.
예) 2021년 5월 생성가구의 가구원 A가 5~10월까지의 월 20회, 11~12월까지는 월 10회 일하였다면, 17.5회(140회/8개월)가 되어 반올림하여 18회로 기재
- ※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이 임시·일용인 경우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에 이름, 일한 횟수, 1회당 보수를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둬.
- ※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사업 소득 포함

3-1.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임시·일용근로자였던 가구원 각각이 벌어들인 월평균 급여는 얼마였습니까?	성명	가구원 번호	월평균 급여액 (A×B)						
		1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2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3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4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5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6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7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8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9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 ※ 총급여는 기본급여,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경상적으로 매월 지급된 수당, 성과급, 소득공제 환급분, 판공비, 복지카드, 회사에서 내준 자동차 유지비 및 휴대폰 요금, 무료중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
- ※ 총급여는 소득세, 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세금 및 각종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임.
- ※ 신규가구는 원가구와 달리 총급여의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에 유의함.
- ※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이 임시·일용인 경우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에 이름, 일한 횟수, 1회당 보수를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둬.
- **임시·일용 외 다른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

문 4)	고용주 및 자영자 ※ 신규가구는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에 유의함. ※ 신규가구의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 [(생성시점~2021년 12월까지 소득) ÷ 신규생성기간(개월)] (단, 2021년 1월 1일 이전(2020.10.1~12.31)에 분가한 신규가구의 경우 2021년 한해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함)
------	---

[보조기입란 4-a]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고용주 혹은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의 생성시점 이후 월평균 매출액은 얼마였습니까? ※ 가족구성원 중 2명 이상이 동일 매장 및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대표자 1명만 고용주 및 자영자로 분류하고,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서는 월급을 받으면 근로자로, 월급을 받지 않으면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함. ※ 일한 개월 수, 월간 매출액 등을 바탕으로 파악 ※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3번이 고용주 및 자영자인 경우 가구원 번호 3번에 이름과 총 매출액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둠.	성명	가구원 번호	월평균 매출액 (A)							
		1	월평균	십억	백만원	천	백	십	만원	
		2	월평균	십억	백만원	천	백	십	만원	
		3	월평균	십억	백만원	천	백	십	만원	
		4	월평균	십억	백만원	천	백	십	만원	
		5	월평균	십억	백만원	천	백	십	만원	
		6	월평균	십억	백만원	천	백	십	만원	
		7	월평균	십억	백만원	천	백	십	만원	
		8	월평균	십억	백만원	천	백	십	만원	
		9	월평균	십억	백만원	천	백	십	만원	

[보조기입란 4-b]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고용주 혹은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이 매장 및 사업장 등을 운영하면서 소요된 생성시점 이후 월평균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 경비에는 재료비, 직원 인건비 및 직원 사회보험료, 법인세, 복리후생비, 공장 또는 가게 월임대료, 차량유지비, 광고비, 소모품비용 등이 포함됨. ※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3번이 고용주 및 자영자인 경우 가구원 번호 3번에 이름과 총 비용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둠.	성명	가구원 번호	월평균 총비용 (B)							
		1	월평균	십억	백만원	천	백	십	만원	
		2	월평균	십억	백만원	천	백	십	만원	
		3	월평균	십억	백만원	천	백	십	만원	
		4	월평균	십억	백만원	천	백	십	만원	
		5	월평균	십억	백만원	천	백	십	만원	
		6	월평균	십억	백만원	천	백	십	만원	
		7	월평균	십억	백만원	천	백	십	만원	
		8	월평균	십억	백만원	천	백	십	만원	
		9	월평균	십억	백만원	천	백	십	만원	

4-1.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고용주 및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의 생성시점 이후 월평균 순소득은 얼마였습니까? ※ 순소득은 월평균 총매출액에서 월평균 총비용을 감하여 구함. ※ 순소득은 소득세, 본인과 가족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부담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임. ※ 순소득에는 자기소비, 고용주와 사업주가 용돈 및 개인경비로 쓰는 비용도 포함됨. ※ 순소득이 마이너스일 경우, 숫자 앞 칸에 “-” 표(마이너스 표시)를 하고 금액을 기입함. ※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3번이 고용주 및 자영자인 경우 가구원 번호 3번에 이름과 순소득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둠. → 고용주 및 자영자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	성명	가구원 번호	월평균 순소득 (A-B)							
		1	월평균	십억	백만원	천	백	십	만원	
		2	월평균	십억	백만원	천	백	십	만원	
		3	월평균	십억	백만원	천	백	십	만원	
		4	월평균	십억	백만원	천	백	십	만원	
		5	월평균	십억	백만원	천	백	십	만원	
		6	월평균	십억	백만원	천	백	십	만원	
		7	월평균	십억	백만원	천	백	십	만원	
		8	월평균	십억	백만원	천	백	십	만원	
		9	월평균	십억	백만원	천	백	십	만원	

4-2.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고용주 및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의 생성시점 이후 월평균 전입소득 은 얼마였습니까? ※ 전입소득은 총수입증에서 가구로 가지고 오는 금액이다. 신규가구 생성이후 1,500만원을 벌어 1,000만원을 저투자하고, 집으로 500만원을 가지고 왔다면 500만원을 신규가구 생성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 값을 기입 ※ 그러므로 전입소득은 4-1의 순소득과 다를 수 있다. 전입소득은 음수(-)가 없음. ※ 순소득이 음수(-)인 경우도 전입소득은 있을 수 있음(즉, 0이 아닐 수 있음). ※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3번이 고용주 및 자영자인 경우 가구원 번호 3번에 이름과 순소득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둬. → 고용주 및 자영자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	성명	가구원 번호	월평균 전입소득							
		1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원
		2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원
		3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원
		4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원
		5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원
		6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원
		7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원
		8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원
		9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원

문 5)	농림축산업 경영주
	※ 신규가구는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에 유의함. ※ 신규가구의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 ((생성시점~2020년 12월까지 소득) ÷ 신규생성기간(개월)) (단, 2021년 1월 1일 이전(2020.10.1~12.31)에 분가한 신규가구의 경우 2021년 한해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함)

5-1.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 가구가 경작하고 있는(소득이 발생하는) 경지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소작하는 것은 포함하고, 소작을 준 것은 제외함)		(참고) 1평≒3.3 m ²						
※ 없음 0	① 논	총						m ²
	② 밭	총						m ²
	③ 임야(산)(유실수, 산나물 채취 등)	총						m ²
	④ 기타(특용농작물, 비닐하우스 등)	총						m ²

- ※ 가구원 1인 이상이 농림축산업경영주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월평균 판매수입, 월평균 자가소비액, 월평균 이전 소비액을 기입함.
- ※ 보조기입란 순서대로 기입한 후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을 계산함.
- ※ 판매량 = 판매량(재고의 판매량 포함) + 다음 농사를 위한 종자 량 + 임차료(소작료) 및 임금으로 지불한 수확량
- ※ 이전소비액은 농축산물을 가구원이 아닌 자녀, 형제, 부모, 친지 등에게 보낸 경우 이를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임.
- ※ 판매수입 = 판매량 × 판매단가 ÷ 10, 자가소비액 = 자가소비량 × 판매단가 ÷ 10, 이전소비액 = 이전소비량 × 판매단가 ÷ 10 (단위에 주의할 것)
- ※ 축산업에서 총 수확량은 가축의 총보유량임.

[illegible]

생성시점부터 2021년 12월까지 월평균 판매수입 (A)	생성시점부터 2021년 12월까지 월평균 자가소비액 (B)	생성시점부터 2021년 12월까지 월평균 이전소비액 (C)	합 계 (A + B + C)
------------------------------------	-------------------------------------	-------------------------------------	-----------------

[illegible]

- ※ 재고판매량은 판매수입에 포함하여 계산
※ 보조기입란 5-a의 합계를 기입. 농지를 임대해 준 경우 문항 8의 재산소득에 기입
※ 없음 0

5-3.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농업관련 월평균 기타잡수입은 얼마였습니까? ※ 농업잡수입에는 농업소득피해보상금, 폐농자재, 벗질단 판매대금 등이 포함됨. (※ 없음 0)	생성시점부터 2021년 12월까지 월평균 잡수입 (D)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보조기입란 5-b].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농·임산물 생산, 가축사육에 소요된(농업경영비) 세부항목의 월평균 지출
 ※ 농림축산경영주인 가구원이 1명 이상인 경우, 농림축산업에 소요된 가구전체의 비용을 합산하여 기입함.

지출항목	예 시	생성시점부터 2021년 12월까지 월평균 품목별 비용						
재료비	종자및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소동물비, 사료비, 기타양축비, 양잠비, 기타재료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노무비	지불임금(남자, 여자)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경비	영농광열비(유류등 포함), 수선비, 농기구비, 수리비, 임차료, 농작업 위탁수수료, 농업부문 조세부담금, 농업부문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농기계 할부금, 영농잡지출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판매 및 관리비	도정료, 농업보험료, 농산물판매수수료, 농산물판매용 자재비, 생산관리비, 기타지출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 고가(高價)의 농기계를 **일시불로 구입한 경우 사용가능 개월수(내구 개월수)을 직분**하여 그 사용가능 개월수로 나누어서 기입함.
 예) 트랙터를 일시를 1200만원에 구입하여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경우 10만원(=1200만원÷120개월)으로 기재
 ※ 감가상각비는 농기계를 일시금으로 구입한 것의 감가상각비를 기재함.
 ※ 영농광열비는 벼·고추 등 농작물 말리기, 비닐하우스 조명 및 난방 등.
 ※ 수리비는 논밭에 물을 대는 비용임.

5-4.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농·임산물 생산과 가축사육에 소요된 월평균비용은 얼마였습니까?	생성시점부터 2021년 12월까지 월평균 비용 (E)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5-5. 농림축산물의 자가소비액, 판매액, 농업잡수입, 총비용 등을 고려할 때, 가구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귀 가구의 월평균 농림축산업 순소득은 얼마였습니까? → 농림 축산업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	생성시점부터 2021년 12월까지 월평균 순소득 (A+B+C+D-E)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문 6) 어업 경영주 ※ 신규가구는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에 유의함. ※ 신규가구의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 [(생성시점~2021년 12월까지 소득) ÷ 신규생성기간(개월)] (단, 2021년 1월 1일 이전(2020.10.1~12.31)에 분가한 신규가구의 경우 2021년 한해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함)							
---	--	--	--	--	--	--	--

[보조기입란 6-a]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월평균 판매 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
 ※ 용어 설명은 5-a와 동일함.

분류	예 시	종류	월평균 판매량 (a)	월평균 자가소비량 (b)	월평균 이전소비량 (c)	판매단가 (p) (천원)	월평균 판매수입 (A=a*p÷10) (만원)	월평균 자가소비액 (B=b*p÷10) (만원)	월평균 이전소비액 (C=c*p÷10) (만원)
어로 어업	어선, 어구, 어망 등을 사용하여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물, 해조류 등을 포획·채취하는 것 (※ 해녀의 채취활동 포함)								
양식 어업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물, 해조류 등을 기르는 것								
수산 가공업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물, 해조류 등을 가공하는 것								
총계									

6-1.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출하한 수산물의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의 월평균은 얼마였습니까?																																															
생성시점부터 2021년 12월까지 월평균 판매수입 (A)												생성시점부터 2021년 12월까지 월평균 자가소비액 (B)												생성시점부터 2021년 12월까지 월평균 이전소비액 (C)												합계 (A+B+C)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 없음 0

6-2.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어업관련 월평균 잡수입은 얼마였습니까?												생성시점부터 2021년 12월까지 월평균 잡수입 (D)											
※ 어업잡수입에는 어업소득피해보상금, 어업응폐자재 판매대금 등이 포함됨.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보조기입란 6-b]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어업활동에 소요된 세부항목의 월평균 지출																											
※ 가구에서 가구원이 어업경영주에 1명 이상 해당하는 경우 어업에 소요된 가구전체의 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함.																											
지출항목		예 시										생성시점부터 2020년 12월까지 월평균 지출액															
어로지출		미끼구입비, 얼음구입비, 소모품비, 낚자 및 여자 임금, 전기료, 연료 및 유류비, 수선유지비, 토지 및 시설임차료, 어선 및 대어구 임차료, 용기대, 단순가공비, 보관비 등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양식지출		어미구입 및 종묘구입비, 사료비, 약품비, 소모품비, 낚자 및 여자 임금, 전기료, 연료 및 유류비, 수선유지비, 토지 및 시설임차료, 용기대, 단순가공비, 보관비 등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수산가공지출		자재및원료비, 지불임금, 광열비, 수선유지비, 수산가공수수료, 기타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6-3.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어업활동에 소요된 월평균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생성시점부터 2021년 12월까지 월평균 비용 (E)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6-4. 수산물의 자가소비액, 판매액, 어업잡수입, 총비용 등을 고려할 때,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귀 가구의 월평균 어업 순소득은 얼마였습니까?												생성시점부터 2021년 12월까지 월평균 순소득 (A+B+C+D-E)															
→ 어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문 7)		기타 근로소득: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위에 응답한 소득 외에 다른 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총 얼마였습니까? ※ 신규가구는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에 유의함. ※ 신규가구의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 ((생성시점~2021년 12월까지 소득) ÷ 신규생성기간(개월)) (단, 2021년 1월 1일 이전(2020.10.1~12.31)에 분가한 신규가구의 경우 2021년 한해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1) ~ 문6)에서 응답한 근로소득 외에 주 1시간 미만의 근로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 ※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성명	가구원 번호	월평균 기타 근로 소득																
			1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2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3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4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5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6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7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8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9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다음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신규가구는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에 유의함.

※ 신규가구의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 [(생성시점~2021년 12월까지 소득) ÷ 신규생성기간(개월)]

(단, 2021년 1월 1일 이전(2020.10.1~12.31)에 분기한 신규가구의 경우 2021년 한해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함)

			세부 항목	금 액					
문 8)	재 산 소 득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얻은 재산소득의 형태와 월평균 소득액은?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경우 월평균액을 기입하고, 일시금으로 들어오는 경우일시금 금액을 신규생성기간으로 나눔	① 이자(은행, 사채), 배당금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② 임대료(월세, 토지임대료 등)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③ 기타(자격증 대여 등)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문 9)	사 회 보 험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받은 사회보험의 형태와 월평균 소득액은? ※ 일시불은 제외	①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군인·교원연금, 보훈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 등)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 국민연금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 특수직업연금(공무원, 군인, 교원, 보훈, 별정직우체국)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② 고용보험(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직업능력개발급여 등)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문 10)	민 간 보 험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받은 민간보험사에서 받은 월평균 개인연금액은?	③ 산재보험(휴업급여, 장해연금, 유족급여 등)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④ 개인연금(※ 일시불은 제외)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문 11)	기 타 정 부 보 조 금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정부(동사무소)로부터 받은 보조금(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제외)의 형태와 월평균 금액은?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문14, 문15번 문항에 기입 ※ 현물로 받은 보조금의 경우(학비, 보육료 등)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기입함. ※ ⑦, ⑧, ⑨의 경우 농림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포함. ※ 기타 정부보조금으로 보기 외에 수련회비, 자활장려금, 육아돌봄 지원, 직업훈련수당, 교통안전공단 지원금, 영양플러스 사업, 보건소지원 물품, 보건소의료비 지원(5대 암, 치매,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자동차세 감면, 교육비 지원, 수학여행 비용, 쓰레기봉투 등이 있음. 이 들은 기타에 포함. ※ 주민센터에서 파악하십시오	⑤ 퇴직연금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① 장애수당(장애인 연금, 경증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② 기초연금	월평균	삼억	일억	천	백	십
			③ 한부모가족지원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④ 가정위탁금 또는 소년소녀가장보호비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⑤ 양육수당(영유아 양육지원)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⑥ 보육료 지원 (i-사랑 카드, 아이즐거움 카드)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⑦ 아동수당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⑧ 학비지원(농림부 지원 포함)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⑨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보훈연금 제외)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⑩ 농어업 징부보조금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⑪ 긴급복지지원금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⑫ 기타 바우처 지원금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⑬ 근로장려세제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⑭ 자녀장려세제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⑮ 급식비 지원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⑯ 에너지 감면 또는 보조(전기료, 가스비 등)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⑰ 통신비 감면 또는 보조(전화, 인터넷 등)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⑱ 기타()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⑲ 지방보조금(지역형 생계, 지역형 긴급복지지원, 지역형 청년수당 등)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⑳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등)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원

문 12)	기 타 소 득	이 외에 신규가구생성 이후 2021년 12월까지 발생한 기타소득의 유형별 금액은? ※ 퇴직금의 경우 목돈으로 받은 경우 여기서 파악.	① 증여·상속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경조금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③ 보상금(사고보상금, 이주민주거대책비 등)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④ 사고 및 질병 보험금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⑤ 퇴직금, 사회보험 일시금, 개인연금 일시금, 보장성 보험 해약금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⑥ 동산·부동산 매매차익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⑦ 기타(복권/경품당첨금, 상품권, 켄돈 등)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12-1	친급금	신규가구생성 이후 2021년 12월까지 돌려받은 환급금 총액은?	세금환급금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 없음 0

※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다음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신규가구는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에 유의함.

※ 신규가구의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 [(생성시점~2021년 12월까지 소득) ÷ 신규생성기간(개월)]

(단 2021년 1월 1일 이전(2020.10.1~12.31)에 분가한 신규가구의 경우 2021년 한해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함)

문 13)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현금 및 현물)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가구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의 월평균액은?

※ 분가이후 주택구입융과 결혼자금 제외
※ 일회성 보육대가 포함. 단, 월금형식으로 받으면 근로소득에 기입
※ 부모 자녀의 경우 가구주 기준
※ 신규가구에서 분리되었거나 새로 들어온 가구원 중, 신규가구 '생성시점~2021.12.31 기간 중 3/4 미만 동안 생계를 같이한 사람'의 소득은 기타에 기입

부모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자녀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기타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민 간 보 조 금
(현금 및 현물)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친척·친지, 친구나 이웃, 복지관, 종교·사회단체(학교 장학금 포함), 회사(자녀학자금보조 포함) 등 민간부문으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 보조금의 월평균 금액은?

※ 가구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 제외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14)

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급 여
(및 출 형 급 여)

① 생계급여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년 동안 정부로부터 받은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연간 수급개월수와 총 금액(현금급여)은?

※ 주민센터에서 파악하십시오
※ 장제급여 및 출산급여 포함

연간 수급 개월수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개월

② 주거급여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년 동안 정부로부터 받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연간 수급개월수와 총 금액(현금급여)은?

※ 주민센터에서 파악하십시오

연간 수급 개월수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개월

③ 교육급여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년 동안 정부로부터 받은 교육급여 수급가구의 연간 수급개월수와 총 금액(현금급여)은?

※ 응답자의 협조를 얻어 교육청에서 파악하십시오

연간 수급 개월수
월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개월

※ 없음 0

IX. 부채, 이자

※ 귀하 가구의 부채 및 이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1. 12. 31 기준, 사업용도의 부채는 제외함.)

		세부항목	금액								
문 1)	부 채 태	2021.12.31 기준으로 부채의 형태별 부채액(명의기준)은 얼마입니까? ※ 명의기준 ※ 주거부채, 영농부채도 파악함 ※ 카드 할부구매는 '③카드빚'에 포함하고, 현금 할부구매는 '⑤외상 할부구입, 미리탄 겐돈'에 포함 ※ 친인척에게 돈을 빌린 경우, 이자가 있으면 '②일반사채'에 기입하고, 이자가 없으면(무이자) '⑥기타부채'에 기입함. ※ 자동차 구매의 경우, 카드할부이면 '③카드빚'으로 기록하고, 자동차 관련 대출은 '①금융기관대출'로 기록 ※ 밀린 월세, 교통안전공단차원대우금, 사립보통 연체금 등은 '⑥기타부채'에 기입함. ※ 세부항목별로 부채가 없는 경우, '0'	① 금융기관대출(회사대출, 마이너스통장 미상환금 포함)	십억	백만	천	백	십	천	만원	
			② 일반사채	십억	백만	천	백	십	천	만원	
			③ 카드빚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환대출 미상환금, 구입한 자동차 카드 할부)	십억	백만	천	백	십	천	만원	
			④ 전세(임대)보증금(받은 돈)	십억	백만	천	백	십	천	만원	
			⑤ 외상, 할부 구입, 미리탄 겐돈 ※ 미리 탄 겐돈의 경우 향후 부어야 하는 금액만 기재	십억	백만	천	백	십	천	만원	
			⑥ 기타부채()	십억	백만	천	백	십	천	만원	
문 2)	이 자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까지 부채에 대해 지출한 이자는 월평균 얼마였습니까? ※ 명의기준 ※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고 있는 경우, 원금을 제외한 '순수이자'만 기입 ※ 연체한 경우, '0'	① 신규가구 생성이후 거주하였던 주거관련 부채의 연간이자	연간	십억	백만	천	백	십	천	만원
			② (주거이자 제외) 기타 연간이자	연간	십억	백만	천	백	십	천	만원
문 3)	부 채 용 도	2021.12.31. 기준으로 다음 각각의 항목별 부채 금액이 총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부채가 없는 경우 '0' 기재 ※ 항목별 부채 비율의 합은 '100' 이어야 함. (단, 부채가 없는 경우, 합은 '0')	① 생활비(생계비)	%							
			② 주택관련 자금 (전월세보증금 포함)	%							
			③ 교육(학자금마련 포함)	%							
			④ 의료비	%							
			⑤ 빚 갚음	%							
			⑥ 기타 ()	%							
			총 부채	1	0	0	%				

※ 없음 0

X. 재산

※ 귀 가구의 가구원이 보유한 전체 재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1.12.31 기준, 명의기준으로 조사하며,
가구원명의의 사업장(가계)도 포함된다.)

			세부항목	금액							
문 1)	소 부 동 산	2021.12.31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한 소유부동산의 유형별 가격(현시가기준)은? ※ 거주하고 있는 집은 'Ⅵ 주거'에서 파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제외,	①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주택 외 건물(가족명의로 사업장(가계) ·창고·상가·콘도·별장·오피스텔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③ 토지(택지, 논, 밭, 임야 등), 양식장, 기타부동산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2)	점 부 동 산	2021.12.31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한 점유부동산의 유형별 가격은? ※ 거주하고 있는 집은 'Ⅵ 주거'에서 파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제외,	① 가계, 사업장 등의 전세보증금 준 것, 비동거가구원의 전세보증금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② 기타(권리금, 사업설비, 공장기계, 가계물건, 비닐하우스시설, 양식장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3)	금 융 자 산	2021.12.31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유형별 가격은? ※ 가구원 전부 파악	① 예금(저축예금, 청약예금, 정기예금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적금(정기적금, 연금형 적금, 종신보험,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③ 주식·채권·펀드(적립식, 거치식)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④ 불입한(타기 전) 갯돈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⑤ 기타(남에게 빌려준 돈, 아파트 중도금(계약금) 받은 것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4)	농 기 계	2021.12.31 기준으로 보유하고 계신 농기계의 유 형별 가격은? ※ 기타에는 살포기, 이앙기, 미증기(도정기), 보행관리기, 로터리 등이 포함됨.	① 동력탈곡기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경운기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③ 콤팩트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④ 트랙터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⑤ 기타()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5)	농 축 산 물	2021.12.31 기준으로 (판매하지 않고) 사육하고 있 는 농축산물의 유형별 가격은? ※ 애완용 및 식용 가축 제외	① 소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돼지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③ 닭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④ 제고농산물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⑤ 기타() ※ 유실수 포함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6)	자 동 차	2021.12.31 기준으로 소유하고 계신 비영업용 자동차의 대수와 가격은? ※ 자동차 보유대수 기준은 명의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가구원의 명의로 아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그 가구의 자동차가 아니며, 가구원의 명의로 된 자동차를 현재 타고 있지 않아도 그 자동차는 가구소유의 자동차입니다. ※ 자동차 모델, 연식별 가격은 별책을 참조하여 환산해 주십시오.	보유대수	단위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대							
문 7)	기 재 타 산	2021.12.31 기준으로 위의 재산 이외의 소유하고 계신 재산의 유형별 가격은?	① 운동클럽 등의 회원권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② 영업용 자동차 ·자동차 번호 값, 오토바이·선박, 굴삭기(포크레인), 트럭 등 운송 및 생계수단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③ 귀금속, 골동품, 상품권 등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④ 기타()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 없음 0

XI. 생활여건

문 1)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귀댁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 분	있다	없다	비해당
㉠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돈이 없어서 2달 이상 집세가 밀렸거나 집세를 낼 수 없어서 집을 옮긴 적이 있다. ※ 신규가구 생성이후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내내 주거 점유형태가 '차가' 혹은 '무상' 인 경우 ③ '비해당' 에 응답	①	②	③
㉡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돈이 없어서 공과금(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돈이 없어서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적이 있다.	①	②	
㉣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돈이 없어서 자녀(대학생 포함)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 적이 있다. ※ 자녀가 없거나 혹은 자녀가 '미취학', '대학원생(석·박사)' 인 경우 ③ '비해당' 에 응답	①	②	③
㉤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돈이 없어서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돈이 없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①	②	
㉦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구원 중에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있었다. ※ 신규가구 생성이전에 신용불량자로 되었던 사람이 신규가구 생성이후부터 2021년 12월 31일 동안에도 신용불량자의 상태로 있었다면 ① '있다' 에 응답	①	②	
㉧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속 6개월 이상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 급여자격을 정지당한 경험이 있다. ※ 신규가구 생성이후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내내 의료급여 혹은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받을 때는 ③ '비해당' 에 응답	①	②	③

문 2)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귀댁은 식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2021년 1월 1일 이전(2020.10.1~12.31)에 분가한 신규가구의 경우 2021년 경험을 파악하면 됩니다.)

구 분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름/거부
㉠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균형 잡힌 식사(다양한 식품을 충분한 양으로) 를 할 수가 없었다.	①	②	③	④

구 분	그렇다	아니다	모름/거부
㉢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귀하 가구 내 성인들이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습니까?	① → ㉠로 갈 것	② → ㉡로 갈 것	③ → ㉠로 갈 것
(㉢에서 ㉠번 응답자만) 얼마나 자주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 ① 거의 매일 ② 몇 개월 동안(매월은 아님) ③ 1-2개월 동안			
㉤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양보다 적게 드신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배가 고플데도 먹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XII.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로 변경되면서,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급여별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맞춤형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되며, 그 밖에 의료급여 특례, 자활특례 등 특례도 포함되며, 가구원 중 일부만 수급하는 가구도 수급가구로 간주합니다.

문 1) 귀댁은 신인가구 생성 이후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맞춤형 급여)를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1-2)로 갈 것**

② 없다 → **문2)로 갈 것**

< 유의사항 >

※ 공식적인 서류신청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이미 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2021년에 신청한 적이 없으면 '②없다'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1-1)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맞춤형 급여)를 신청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기본적인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②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 ③ 주거비를 지원받기 위해
- ④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
- ⑤ 취업알선, 창업 등 자활지원을 받기 위해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문 1-2) (문1)의 ①번 응답자만) 신청한 결과 귀댁은 수급자로 선정되었습니까? ☐

- ①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모두 받게 되었다 → **문2)로 갈 것**
- ②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일부만 받게 되었다 → **문1-3)으로 갈 것**
- ③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 **문1-3)으로 갈 것**

< 유의사항 >

※ 2021년 1년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단, 급여신청을 2021년 12월에 하였고 선정은 2022년에 되었지만, 선정이 되면 2021년 12월까지의 급여를 소급하여 한꺼번에 받았다면 2021년에 선정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속 수급을 받다가 중간에 탈락한 후, 재신청하여 다시 수급한 경우에는 재신청 결과에 대해 응답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4개 급여를 모두 신청해서 수급하였다가 탈락하고, 5월에는 의료, 주거급여만 신청해서 수급 받게 되었다면 ②로 응답합니다.

문 1-3) (문1-2)의 ②, ③번 응답자만)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급여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 1-3-1)

☐

생계급여

문 1-3-2)

☐

의료급여

문 1-3-3)

☐

주거급여

문 1-3-4)

☐

교육급여

- ①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서
- ② 자동차가 있어서
- ③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높아서
- ④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 ⑤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 ⑦ 잘 모르겠다.

문 1-4) (문1-2)의 ②, ③번 응답자만)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후 귀댁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문제는 주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다? 해당 급여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 1-4-1) 문 1-4-2) 문 1-4-3) 문 1-4-4)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① 부양의무자(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자녀), 친지 및 이웃의 도움
- ② 빚을 내어서 생활
- ③ 민간단체의 도움
- ④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
- ⑤ 저축 등 있는 재산을 줄여서
- ⑥ 공공기관 프로그램(공공근로 사업, 차상위 자활사업 등)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으로
- ⑦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공공기관 프로그램 참여 제외)
- ⑧ 기존에 받던 '가구원 중 일부수급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로
- ⑨ 기타(적을 것 : _____)

문 2) 귀댁은 신규가구 생성 이후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맞춤형 급여)를 받은 경험 ☐
 이 있습니까?

- ① 받은 적이 있다 → **문2-1)로 갈 것**
- ② 받은 적이 없다 → **XII-1.근로장려세제'로 갈 것**

〈유의사항〉

※ 신규가구 생성 이후 2021년 1년 동안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한 개라도 받은 경험이 있으면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신규가구 생성 이후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기간을 해당 급여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 2-1-1) 생계급여

첫 번째		년		월	~		년		월
두 번째		년		월	~		년		월
세 번째		년		월	~		년		월

문 2-1-2) 의료급여

첫 번째		년		월	~		년		월
두 번째		년		월	~		년		월
세 번째		년		월	~		년		월

문 2-1-3) 주거급여

첫 번째		년		월	~		년		월
두 번째		년		월	~		년		월
세 번째		년		월	~		년		월

문 2-1-4) 교육급여

첫 번째		년		월	~		년		월
두 번째		년		월	~		년		월
세 번째		년		월	~		년		월

〈유의사항〉

※ 수급과 탈퇴를 반복하였다면 그 기간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문 2-2)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이 신규가구 생성 이후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맞춤형 급여) 중 **하나라도 받은 급여가 있다면**, 수급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급여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 2-2-1) ☐ 생계급여

문 2-2-2) ☐ 의료급여

문 2-2-3) ☐ 주거급여

문 2-2-4) ☐ 교육급여

- ① 일은 하고 있었지만 수입이 줄어서
 ② 소득이 발생하였던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③ 도와주던 친인척의 경제적 형편이 나빠져서(혹은 도움이 끊겨서)
 ④ 이혼, 가구원의 분가 등으로 인해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빠져나가서
 ⑤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사망해서
 ⑥ 소득은 동일하나 가구원이 증가해서
 ⑦ 의료비 지출이 커져서
 ⑧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⑨ 기타(적을 것 : _____)

< 유의사항 >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중간에 탈피가 되었더라도, 한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으면, 수급한 **최초**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 이유를 응답해 주십시오.

문 2-3)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맞춤형 급여)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급여만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① 매우 적절하다	② 적절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부족하다	⑤ 매우 부족하다
문 2-3-1) 생계급여	①	②	③	④	⑤
문 2-3-2) 의료급여	①	②	③	④	⑤
문 2-3-3) 주거급여	①	②	③	④	⑤
문 2-3-4) 교육급여	①	②	③	④	⑤

< 유의사항 >

※ **한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으면 응답해주시고**, 수급과 탈피를 반복한 경우, **2021년에 받은 모든 급여수준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3)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맞춤형 급여) 중 2021년 **12월 말까지 받은 급여가 있다면**, 앞으로 얼마 후에 각 급여별로 수급대상 가구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해당 급여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 3-1) ☐ 생계급여

문 3-2) ☐ 의료급여

문 3-3) ☐ 주거급여

문 3-4) ☐ 교육급여

- ① 6개월 이내
 ② 6개월 후 ~ 1년 이내
 ③ 1년 후 ~ 3년 이내
 ④ 3년 후
 ⑤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⑥ 잘 모르겠다.

문 4)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맞춤형 급여) 중 **12월 말까지 받지 못한 급여가 있다면**, 각 급여별로 탈피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해당 급여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 4-1) ☐ 문 4-2) ☐ 문 4-3) ☐ 문 4-4)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① 하고 있던 일의 수입이 늘어서
- ② 가구원이 취업을 하게 되서
- ③ 상속, 증여, 재개발 등으로 재산이 늘어서
- ④ 자동차를 새로 구입해서
- ⑤ 친인척이 좀 더 도와주어서
- ⑥ 사망, 이혼, 분가 등 가구원수가 줄어들어서
- ⑦ 가족의 병이 나아서
- ⑧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서
- ⑨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변화는 없으나 조사결과가 달라져서
- ⑩ 기타(적을 것 : _____)

문 5)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여러 지원 중, 귀댁이 **수급가구에서 벗어나더라도 계속 받고 싶은 급여**는 무엇입니까? (생계비를 제외하고 하나만 응답)

☐

- ① 의료비 지원
- ② 교육비 지원
- ③ 주거비 지원
- ④ 자활관련 지원
- ⑤ 없다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XII-1. 근로(자녀)장려세제

- ※ 근로장려세제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단위로 지급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입니다.
- ※ 자녀장려세제는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 소득 4000만 원 미만인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 미만)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문 1) 근로장려세제 또는 자녀장려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문 1-1)
근로장려세제

☐

문 1-2)
자녀장려세제

☐

- ① 들어본 적도 없고, 모른다
 ②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③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④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다

문 2) 귀택은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급여를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

- ① 둘 다 신청했다 → **문2-1)로 갈 것**
 ② 근로장려금만 신청했다 → **문2-1)로 갈 것**
 ③ 자녀장려금만 신청했다 → **문2-1)로 갈 것**
 ④ 둘 다 신청한 적 없다 → **문 3)으로 갈 것**

〈 유의사항 〉

- ※ 5월에 신청을 못한 경우, 6-11월 동안 기간 후 신청을 받습니다. 기간 후에 신청한 경우도 신청한 것으로 응답합니다.

문 2-1) 귀택은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셨습니까?

☐

- ① 둘 다 받았다 → **문2-2)로 갈 것**
 ② 근로장려금만 받았다 → **문2-2)로 갈 것**
 ③ 자녀장려금만 받았다 → **문2-2)로 갈 것**
 ④ 둘 다 받지 못했다 → **XIII.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으로 갈 것**

〈 유의사항 〉

- ※ 있다고 응답한 경우 기타 정보보조금란의 근로장려세제 또는 자녀장려세제란에 정확한 급여액을 기입함.
 ※ 5월에 신청한 경우 9월 말까지 급여가 지급되며, 기간 후 신청을 한 경우는 지급시점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기간 후 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를 감액해서 지급됩니다. 이 경우도 지급받은 것으로 응답합니다.

문 2-2) 수급한 근로(자녀)장려금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

- ① 아이들 교육비 ② 일상생활비 ③ 의료비 ④ 문화오락비 ⑤ 저축 ⑥ 기타

문 2-3) 귀택의 근로(자녀)장려금 급여(수준)가 실생활에 주는 도움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 편이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도움이 되는 편이었다 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문 2-4) 귀댁의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급여는 근로의욕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

- ① 일할 의욕이 매우 감소되었다 ② 일할 의욕이 약간 감소되었다 ③ 일할 의욕에 변화가 없었다
④ 일할 의욕이 약간 증가되었다 ⑤ 일할 의욕이 매우 증가되었다

문 3) 귀댁은 금년(2022년) 근로(자녀)장려금 급여를 받을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둘 다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② 근로장려세제의 수급요건만 충족한다고 생각한다
③ 자녀장려세제의 수급요건만 충족한다고 생각한다
④ 둘 다 수급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한다
⑤ 잘 모르겠다

XIII.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조사대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 문 1) **2021년 1년간**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비스 유형	있다	없다
㉓ 생계비(혹은 생계보조수당) 지원	①	②
㉔ 의료비 지원	①	②
㉕ 물품지원(식료품, 의류, 가구 등)	①	②
㉖ 가사지원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안전지원 서비스 등)	①	②
㉗ 식사(혹은 밑반찬) 배달 서비스	①	②
㉘ 주택관련 서비스(집수리, 도배 등)	①	②
㉙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자활근로	①	②
㉚ 상담서비스	①	②
㉛ 생계, 생업, 자립, 교육 등을 위한 각종 대출, 융자	①	②
㉜ 개인발달계좌(자산형성프로그램)	①	②
㉝ 권익보장 지원(공공후견서비스 등)	①	②

< 유의사항 >

- ※ 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인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인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 ※ ㉓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수당(경증장애인 대상), 장애인연금(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지원(양육비), 긴급복지지원(긴급생계급여), 가정위탁금, 소년소녀가장보호비, 근로장려세제 등 생계비 보조를 목적으로 보조하는 현금을 말한다(국민연금,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소득은 포함 안 됨. 보육료 지원비, 노인교통비, 학비지원, 바우처 지원금 등 용도가 한정된 지원은 포함 안 됨). 쌀이나 식료품 등은 생계비 지원에 해당하지 않고 ㉕의 물품지원에 체크하도록 한다.
- ※ ㉔ 의료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한 의료급여, 사회복지관련기관 및 종교(시민)단체에서 의료비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현금, 현금, 재향서비스 모두 포함). 각종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를 포함하되,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상의 혜택은 포함하지 않는다. 의료비 지출을 위한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 개인적인 관계에 의한 지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 ※ ㉖ 주택 관련 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와 같이 공공기관에서 제공(일부 보조)하거나, 사회복지관련기관, 종교(시민)단체에서 실시하는 집수리, 도배 등의 주거시설 개선 및 주택 개조를 말한다.
- ※ ㉙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자활근로: 노인일자리사업, 희망근로, 자활 공공근로를 포함한다.
- ※ ㉚ 상담서비스: 고민 및 갈등, 정신건강 문제, 약물 및 알코올 문제, 학대 및 가정폭력 문제, 아동의 문제 등과 관련된 상담 및 심리재활서비스를 말한다.
- ※ ㉛ 생계, 생업, 자립, 교육 등을 위한 각종 대출, 융자: 생계, 생업, 자립, 교육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국가가 대출해주거나 국가의 신용보증을 통해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지원융자, 자영업자 특례보증 대출, 장애인 자립자금, 저소득층 생업자금, 저소득층 창업자금,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근로자 생계보증 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등이 있다. 단,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 등 주택 관련 대출은 포함하지 않는다.
- ※ ㉜ 개인발달계좌: 개인이 저축한 금액에 대하여 정부가 일정 금액을 매칭하여 적립하는 제도를 말하며, 가입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보건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디딤씨앗통장, 서울시의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등이 포함된다.
- ※ ㉝ 권익보장 지원(공공후견서비스 등): 공공후견서비스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 등의 사유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후견인은 후견인으로부터 복지급여 통장관리, 관공서의 서류발급, 복지서비스 신청대리, 병원진료와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을 받게 된다.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 해당 서비스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다음은 바우처서비스 이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바우처란 어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증서로,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자바우처는 현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문 2) **2021년 1년간**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 ① 예 → **문2-1) 응답 후, 문3)으로 갈 것**
 ② 아니오 → **문3)으로 갈 것**

문 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2021년 1년간** 다음 각각의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비스 유형	있다	없다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①	②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①	②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①	②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스포츠강좌이용권)	①	②
㉤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제도	①	②
㉥ 아이돌봄지원	①	②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①	②
㉧ 장애아동가족지원(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①	②
㉨ 발달장애인지원(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 발달장애인지원활동서비스,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①	②
㉩ 에너지바우처	①	②
㉪ 기타 바우처서비스(적을 것: _____)	①	②

< 유의사항 >

- *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말하며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포함한다.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가사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 ㉣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제도: 임신이 확인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고유마 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 ㉥ 아이돌봄 지원: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시간단위로 보육, 놀이, 등·원 등 돌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영유아 부모에게 보육기관 및 유치원의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를 말한다.
- * ㉧ 장애아동가족지원(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기존 항목이었던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과 '언어발달지원' 을 통합하여 '장애아동가족지원' 문항 신설하였다.
- * ㉨ 발달장애인지원(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 발달장애인지원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지원활동서비스' 는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 * ㉩ 에너지 바우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가구 내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 임산부가 있을 경우 난방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함. 국가바우처 통합카드인 '국민행복카드' 대상 바우처이다.
- * ㉪ 기타 바우처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내서비스, 정실질환자 토털케어 서비스, 자살고위험군 건강증진서비스 등의 지역개발형 바우처가 있다.

다음은 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이란 일상생활이 힘든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등)을 가진 65세 미만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목욕, 배설 등) 또는 가사지원(세탁, 청소 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문 3) 2021년 1년간 가구원 중에 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은 가구원이 있습니까?
(단, 5등급 이상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 ① 예 → 문3-1), 문3-2) 응답 후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으로 갈 것
② 아니오 →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으로 갈 것

문 3-1) (문3)의 ①번 응답자만)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귀댁이 지불하신 금액은 월단위 얼마였습니까?

월단위

백만	십만	일만	천

 천원

< 유의사항 >

*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료(월단위)를 말함. 장기요양보험료는 해당되지 않음.

문 3-2) (문3)의 ①번 응답자만) 2021년 1년 동안 급여(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떤 종류의 급여를 받으셨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급여(서비스) 유형	있다	없다
㉓ 방문요양(목욕, 옷입히기, 취사, 주변정돈 등)	①	②
㉔ 방문목욕(차량 이용 목욕 제공)	①	②
㉕ 방문간호(간호사 방문 간호,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①	②
㉖ 주·야간보호(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①	②
㉗ 단기보호(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 보호)	①	②
㉘ 기타재가급여(휠체어, 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 복지용구)	①	②
㉙ 시설급여(장기요양보호시설 이용)	①	②
㉚ 특별현금급여(특별한 사유로 가족이 보살피는 경우)	①	②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만65세 이상 어르신(노인)이 있는 가구만 응답해 주십시오. 해당하지 않는 가구는 XV.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질문으로 가십시오. 조사대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문 1) **2021년 1년간**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비스 유형	있다	없다
㉓ 기초연금 지원	①	②
㉔ 의료비 지원	①	②
㉕ 노인 무료 급식(본인부담금 없음)	①	②
㉖ 물품지원(식료품, 의류, 가구 등)	①	②
㉗ 가사지원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안전지원 서비스 등)	①	②
㉘ 식사(혹은 밑반찬) 배달 서비스	①	②
㉙ 방문 가정간호, 간병, 목욕 서비스	①	②
㉚ 이동편의 서비스(병원 동행 등)	①	②
㉛ 주·야간보호 서비스(일정시간 복지관 등에서 보호해주는 것)	①	②
㉜ 노인일자리사업	①	②
㉝ 사회참여 서비스(한글교실, 생활요가, 나들이, 자조모임 등)	①	②

〈 유의사항 〉

- ※ 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 ※ ㉓ 의료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한 의료급여 및 의료지원, 사회복지관련기관 및 종교(시민)단체에서 의료비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현금, 현물, 저활서비스 모두 포함). 노인 안검진 및 개안 수술, 치매조기검진, 치매치료관리지원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상의 혜택은 포함하지 않는다. 의료비 지출을 위한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 개인적인 관계에 의한 지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 ※ ㉕ 노인 무료 급식(본인부담금 없음): 지자체 노인결식사업의 일환으로 전액 무료로 급식을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노인이 일부 자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 ㉖ 가사지원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 방문, 전화, ICI를 통한 안전지원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예' 라고 응답한다.
- ※ ㉚ 이동편의 서비스: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이동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을 이용하거나, 간병인, 생활관리사 등이 이동 동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노인이 혼자 일반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나, 교통수당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할인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
- ※ ㉜ 노인일자리사업: 만60세~64세의 예외적 참여를 허용하나,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자체를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만 응답하므로 만60~64세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는 응답하지 않는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대한노인회,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지방문화원, 지역NGO, 청소년수련관 등이다.
- ※ ㉝ 사회참여 서비스: 문화여가활동(노래교실 등)과 평생교육활동(한글 교실 등) 뿐만 아니라, 체험여행활동(나들이, 공연 관람 등),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하는 자조모임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XV.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만0~17세 이하 아동(자녀)을 둔 가구만 응답해 주십시오. 없다면 XVI.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질문으로 가십시오. 아동(자녀)은 응답자 본인의 친자녀뿐만 아니라 조카, 손자녀 등 만0~17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 가구원은 모두 해당됩니다. 조사대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2021년 1년간**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비스 유형	있다	없다
㉠ 아동수당	①	②
㉡ 공공어린이집(주간보호 및 특별활동)	①	②
㉢ 양육·보육료 및 유치원비 보조(양육수당 포함)	①	②
㉣ 아동상담, 집단 프로그램(성격, 정서문제, 독서지도 등)	①	②
㉤ 방과후돌봄 서비스(지역아동센터 등)	①	②
㉥ 무료급식(급식지원 포함)	①	②
㉦ 학비 지원	①	②
㉧ 예체능 교실(컴퓨터, 미술, 음악, 체육 등)	①	②
㉨ 문화활동(문화유산답사, 연극, 영화, 견학, 방학 중 캠프 등)	①	②
㉩ 가정봉사·아이돌봄 서비스	①	②
㉪ 영유아보충식품지원(영양플러스사업 포함)	①	②

〈유의사항〉

- ※ 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서비스의 유형 구분이 어려운 경우 서비스의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응답한다.

〈유의사항〉

- ※ ㉠ 공공어린이집: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전담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협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을 말한다. 공공형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서울형/부산형 어린이집은 모두 공공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공공어린이집에 해당한다.
- ※ ㉢ 양육·보육료 및 유치원비 보조(양육수당 포함): 가구의 소득 혹은 아동의 출생순위 등의 특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양육·보육료 및 유치원비 보조를 말한다. 직장어린이집의 보육료 할인 (직장어린이집에서의 보육료 할인이 직장어린이집 자체에서 운영·지원하는 것이라면 공공부문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으나, 정부의 보육료 지원정책에 의해 할인을 받는 것이라면 포함된다.
- ※ ㉥ 무료급식(급식지원 포함): 취학아동뿐만 아니라 미취학아동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므로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급식지원도 포함된다.
- ※ ㉦ 학비 지원: 초·중·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검정고시 학습비, 방과후교실 등록비 등이 포함된다. 유치원비 지원과 장애영유아 무상교육은 '㉢ 양육·보육료 및 유치원비 보조'에 해당된다.
- ※ ㉧ 예체능 교실(컴퓨터, 미술, 음악, 체육 등): 예체능교실은 미술, 음악, 체육 교육 및 컴퓨터 교육 등 다양한 예체능프로그램을 말한다. 예를 들어 바우처서비스인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가 포함된다.
- ※ ㉩ 가정봉사·아이돌봄 서비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봄 서비스와 보건복지부의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을 통해 양육지원을 받는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에 해당한다.

다음 문2)~문6)은 만0~17세 이하 아동(자녀) 각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반드시 아래 응답지에 개별 아동(자녀)별로 아동의 가구원 번호에 따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2-1) 귀택의 아동(자녀) □□□은 출생 시 체중이 2.5kg 이상이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문 2-2) 귀택의 아동(자녀) □□□은 아기 때부터 앓아온 선천성 기형이나 선천성 질환(심장질환 등)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아동(자녀)의 가구원 번호 (※ 2쪽의 가구원 번호와 일치하도록 기재하십시오)	아동(자녀) 가구원의 이름	문2-1) 체중	문2-2) 선천성 기형 및 질환

문 3) 다음은 공적인 학교교육 이외의 학원, 과외, 학습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사교육과 보육기관 이용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댁의 아동(자녀) □□□은 <보기>와 같은 곳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 모든 아동(자녀)을 가구원 번호에 따라 차례대로 기재한 후 질문합니다. 사교육과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자녀)은 이용여부에 '② 안한다'로 기재한 후 다른 아동에 대해 질문합니다.)

문 4) 귀댁의 각각의 아동(자녀)이 이용하는 사교육·보육기관을 아래의 <보기>에서 주로 이용하는 순서대로 3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문 5) 귀댁에서 각각의 아동(자녀)에게 든 사교육비는 한 달 평균 얼마입니까? 교재비, 재료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하여 다음의 응답지에 아동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유의사항 〉

- ※ 한 아동(자녀)이 위 문4)에서 응답한 사교육기관보다 더 많은 사교육기관(4개 이상 이용자)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이용하고 있는 모든 사교육기관의 이용비용과 교재비, 도구실습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를 합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 모든 비용은 가구에서 실제 지출한 실비만 포함시킵니다.
- ※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없음 = 0000

문 6) 귀댁에서 각각의 아동(자녀)에게 든 보육비는 한 달 평균 얼마입니까? 교재비, 재료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하여 다음의 응답지에 아동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유의사항 〉

- ※ 한 아동(자녀)이 위 문4)에서 응답한 보육기관보다 더 많은 보육기관(4개 이상 이용자)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이용하고 있는 모든 보육기관의 이용비용과 교재비, 도구실습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를 합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 모든 비용은 가구에서 실제 지출한 실비만 포함시킵니다.
- ※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없음 = 0000

구 분	〈 보 기 〉
어린이집 및 유치원	① 국공립(국립·시립·구립 등)어린이집 ②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③ 민간어린이집(법인·단체등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포함) ④ 가정어린이집(개인가정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⑤ 직장어린이집(사업주가 설치한 어린이집) ⑥ 정규시간 이외에 보육도 맡아주는 유치원 ⑦ 정규시간만을 담당하는 유치원
민간학원 및 사교육	⑧ 학원 ⑨ 개인·그룹과의 ⑩ 학습지(온라인 학습지 포함)
학교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	⑪ 방과후 교내보충학습(만6세 이상이 학교 내에서 자발적으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보충학습 및 특기 지도 등을 하는 경우) ⑫ 방과후 교외(만6세 이상이 학교가 아닌 사회복지관, 유치원 등에서 보육이 아닌 특기 지도, 보충학습 등을 하는 것)
기타	⑬ 친·인척(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만 해당) ⑭ 이웃(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만 해당) ⑮ 공적 지원 아이 돌보미(건강가정 지원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⑯ 민간 아이 돌보미 ⑰ 기타(적을 것 : _____) ⑱ 그 외 보육시설(방과후 학교 초등보육프로그램, 보육을 목적으로 하는 반일제 이상의 학원,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선교원, 문화센터 등)

문3)~문6) 응답지

아래 응답지에 모든 아동(자녀)을 가구원 번호에 따라 차례대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구원번호 및 이름은 2쪽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아동(자녀)의 가구원 번호	아동(자녀) 가구원의 이름	문3) 이용여부		문4) 이용기관		문5) 한 달 평균 사교육비 (부대비용 포함)	문6) 한 달 평균 보육비 (부대비용 포함)
		한다	안한다				
		①	②	A		월평균 만원	월평균 만원
				B			
				C			
		①	②	A		월평균 만원	월평균 만원
				B			
				C			
		①	②	A		월평균 만원	월평균 만원
				B			
				C			
		①	②	A		월평균 만원	월평균 만원
				B			
				C			
		①	②	A		월평균 만원	월평균 만원
				B			
				C			
		①	②	A		월평균 만원	월평균 만원
				B			
				C			

XVI.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가구에 장애인(등록 장애인, 비등록 장애인 모두 포함)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해 주십시오. 없다면 다음 페이지의 XVII. 가족에 대한 질문으로 가십시오. 조사대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2021년 1년간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비스 유형	있다	없다
㉠ 장애인연금(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①	②
㉡ 장애수당(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급)	①	②
㉢ 장애아동수당	①	②
㉣ 의료재활서비스	①	②
㉤ 가사지원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등)	①	②
㉥ 방문 가정간호, 간병, 목욕 서비스	①	②
㉦ 이동편의 서비스(병원 동행 등)	①	②
㉧ 주택관련 서비스(집수리, 도배 등)	①	②
㉨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 서비스	①	②
㉩ 사회적응 및 취업관련 서비스	①	②
㉪ 장애아동 및 장애인자녀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①	②
㉫ 장애아동 및 장애인자녀 관련 프로그램(학습지원 서비스 등)	①	②
㉬ 자동차 관련 지원	①	②
㉭ 권익보장 지원(공공후견서비스 등)	①	②

< 유의사항 >

※ 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 ※ ㉠ 장애아동수당: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정도를 고려,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매달 일정 지원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 장애아동 및 장애인자녀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과는 별개의 제도임에 주의한다.
- ※ ㉣ 의료재활서비스: 장애인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장애인 등록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및 보장구 지원 및 할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등이 포함된다.
- ※ ㉦ 이동편의 서비스: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이동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을 이용하거나, 활동보조인, 간병인 등이 이동 동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장애인이 혼자 일반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나, 교통수당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할인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
- ※ ㉧ 주택관련 서비스: 공공기관에서 제공(일부 보조)하거나, 사회복지관련기관, 종교(시민)단체에서 실시하는 집수리, 도배 등의 주거시설 개선 및 주택 개조를 말한다.
- ※ ㉨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 서비스: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를 의미하며,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바우처)도 포함된다.
- ※ ㉩ 사회적응 및 취업관련서비스: 직업재활시설 및 보호작업장 이용,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사회복귀훈련, 사회적응훈련, 자립생활훈련,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자판기·매점 등 사업권 제공 등을 말한다.
- ※ ㉭ 권익보장 지원(공공후견서비스 등): 공공후견서비스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 등의 사유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후견인은 후견인으로부터 복지금여 통장관리, 관공서의 서류발급, 복지서비스 신청대리, 병원진료와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을 받게 된다.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 해당 서비스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XVII. 가족

문 1) **2021년 1년간** 귀댁에 근심이나 갈등을 초래한 가장 큰 문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우선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가구원 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1촌 이내까지만 포함합니다.)

1순위		2순위	
-----	--	-----	--

- | | |
|---|--|
| ①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다
① 경제적 어려움(부채 또는 카드 빚 문제)
② 가구원의 취업 및 실업
③ 자녀교육 혹은 행동
④ 가구원의 건강
⑤ 가구원의 알코올 | ⑥ 가족 내 폭력
⑦ 가구원간 관계
⑧ 가구원의 가솔
⑨ 주거관련 문제
⑩ 기타(적을 것 : _____)
⑪ 자녀의 결혼문제 |
|---|--|

문 2) 다음은 가족구성원들이 서로 어떻게 지내고 논쟁을 해결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2021년 1년간 귀댁은 어떠하였습니까?

(※ 독신가구이면서 직계혈족 1촌이 없는 경우 '비해당'으로 표시하고 '추가적인 질문'으로 넘어가십시오. 비가구원인 직계혈족 1촌이 있는 1인 가구(독신가구)이지만 지난 1년간 상호 교류가 전혀 없었다면, '비해당'으로 표시합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비해당
㉠ 우리 가정에서는 의견충돌이 잦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가족원들이 가끔 너무 화가 나서 물건 등을 집어 던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가족원들이 항상 침착하게 문제를 논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가족원들이 자주 서로를 비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가족원들이 가끔 서로를 때린다.	①	②	③	④	⑤	⑥

지금까지 질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202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가구원용(유형3)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계층별, 연령별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 욕구를 역동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복지정책 수립시 활용할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고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책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3월

< 문의 및 연락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44-287-8317, 8294, 8215, 8188, 8138, 8174, 8124)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02-880-6320)

※가구원의 숫자를 그대로 이기										해 당 가 구 원			
가구 패널 ID		가구 생성차수	가구분리 일련번호	가구원 진입차수	개인패널ID (인포시스템상의 개인패널ID)					성명	가구원 번호	전화 번호	
												휴대폰	
대리 응답 여부	① 예	☐ 사유 (번호기재)	※ 대리응답 사유코드	⑥ 비해당(직접응답) ③ 병원입소 ⑥ 감옥수감 ① 해외거주(기러기부모) ④ 가출 ⑦ 군대 혹은 전투경찰 ② 여행 및 출장 ⑤ 별거(가정불화) ⑧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 ③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3급 ⑩ 기타						가구주성명			
	② 아니오			대리응답자									
	성명			가구원번호									
주소지		행정코드								시·도 구·시·군 동·읍·면			
상세주소		동·리 번지 호 (아파트 동 층 호) ☎ () -											
조사표완료 소요시간		총 분		총방문횟수		총 회							
1차방문	__월 __일 __시 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미완사유코드					
2차방문	__월 __일 __시 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⑥ 비해당(완료) ① 늦은 귀가 ② 장기출타 ③ 부계중(원인미파악) ④ 일부문항 미완 ⑤ 조사거부					
3차방문	__월 __일 __시 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⑥ 뇌병변장애 ⑦ 심한 지적, 자폐성장애 (기존1,2급) ⑧ 사망 ⑨ 기타					
4차방문	__월 __일 __시 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최종방문	__월 __일 __시 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조사원 이름		지도원 확인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지도원		(인)			

문 1-5) 그렇다면 귀하가 2021년 1년간 받은 특수지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원, 군인, 별정직우체국
연금 등)의 **총 현금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 문1-4)에서 응답한 특수지역연금의 총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14세 이하 혹은 중고등학생 가구원이 있으면 그 금액도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일시금 총액

일	천	백	십	원

 만원

연금 연간

십	원

 개월 연간 총액

천	백	십	원

 만원

문 1-6) (문1-1)의 ⑥, ⑦번 **응답자만** 귀하가 2021년 1년간 받은 보호연금 및 기타 연금의 **총 현금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14세 이하 혹은 중고등학생 가구원이 있으면 그 금액도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일시금 총액

일	천	백	십	원

 만원

연금 연간

십	원

 개월 연간 총액

천	백	십	원

 만원

고 용 보 험

문 2) (모든 응답자) 귀하는 2021년 1년간 고용보험 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2-1)로 갈 것**

② 없다 → **문3)으로 갈 것**

문 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받은 고용보험의 급여 종류는 무엇입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실업급여 (구직급여,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
- ②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 ③ 기타 현금급여 (훈련장려금 등 직업능력개발 현금지원)
- ④ 현물급여 (근로자학자금대부 등 비현금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문 2-2) 그렇다면 귀하가 2021년 1년간 받은 고용보험의 **총 급여액(현금+현물)**은 얼마입니까?

(※ 현금급여액은 본인이 직접 받은 현금을 말합니다.)

연간

십	원

 개월 연간 총액

천	백	십	원

 만원

산 재 보 험

문 3) (모든 응답자) 귀하는 2021년 1년간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3-1)로 갈 것**

② 없다 → **문4)로 갈 것**

문 3-1) (문3)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받은 산재보험의 급여 종류는 무엇입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
|------------|---|
| ① 요양급여 | ⑤ 유족급여-연금 |
| ② 휴업급여 | ⑥ 유족급여-일시금 |
| ③ 장해급여-연금 | ⑦ 기타 현금급여(장의비,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장해·유족특별급여 등) |
| ④ 장해급여-일시금 | ⑧ 잘 모르겠다 |

문 3-2) 귀하가 2021년 1년간 본인이 직접 받은 산재보험의 **총 현금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14세 이하 혹은 중고등학생 가구원이 있으면 그 금액도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일시금	총액						만원			
		일억	천	백	십	일				
연금	연간			개월	연간 총액					만원
		십	일			천	백	십	일	

개 인 연 금

문 4) (모든 응답자) 귀하는 2021년 1년 동안 은행, 보험회사, 투신사, 증권회사 등의 금융기관에 가입했던 개인연금 급여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 ① 그렇다 → **문4-1)로 갈 것** ② 아니다 → **문5)로 갈 것**

문 4-1) (문4)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2021년 1년 동안 받은 개인연금 급여액은 총 얼마입니까?

일시금	총액						만원			
		일억	천	백	십	일				
연금	연간			개월	연간 총액					만원
		십	일			천	백	십	일	

퇴직금 및 퇴직보험

문 5) (모든 응답자) 귀하는 2021년 1년 동안 퇴직금 또는 퇴직보험금을 받으셨습니까?

☐

(※ 퇴직금 중 **정산금**, 퇴직보험 **일시금**을 포함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① 그렇다 → **문5-1)로 갈 것** ② 아니다 → **B. 근로로 갈 것**

문 5-1) (문5)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2021년 1년 동안 받은 퇴직금 또는 퇴직보험금은 얼마입니까?

(※ 퇴직금과 퇴직보험금을 동시에 받으셨을 경우는 **합계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시금	총액						만원			
		일억	천	백	십	일				
연금	연간			개월	연간 총액					만원
		십	일			천	백	십	일	

B. 근로

문 1) 귀하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근로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 ① 임금근로자 → **문2)~문6) 응답한 후 문9)로 갈 것**
 ② 자영업, 고용주 → **문2)~문5) 응답한 후 문9)로 갈 것**
 ③ 무급가족종사자 → **문7)으로 갈 것**
 ④ 미취업자(근로능력있음) → **문7)으로 갈 것**
 ⑤ 미취업자(근로능력없음) → **C. 생활실태 만족 및 의식 문항으로 갈 것**

< 유의사항 >

※ 가구용 III.경제활동상태의 '문1)근로능력정도' 및 '문3)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와 일치해야 합니다.
 단, 자활근로, 공공근로 및 노인일자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임금근로자'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임금근로자: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상용, 임시, 일용근로자 포함)
 자활, 공공근로 및 노인일자리도 임금근로자로 응답
2. 자영업, 고용주: 혼자 혹은 유급종업원을 고용하거나 무급가족과 함께 기업이나 농장을 경영하거나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자
3. 무급가족종사자: 동일가구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4. 미취업자(근로능력있음): 실업자(2021.12.31 기준으로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한 자), 근로무능력의 사유가 아닌 가사, 학업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자로 근로능력은 있으나 근로를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5. 미취업자(근로능력없음): 근로의사와 무관하게 장애, 부상,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한 심신무능력을 사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 다음 문2) ~ 문6)까지는 취업자용(임금근로자, 자영업 및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질문입니다.

문 2) (문1)의 ①~③번 응답자만) 2021년 1년간 귀하께서는 다니던 직장(사업)을 그만 둔 적이 있었습니까?

☐

- ① 있다 → **문2-1)로 갈 것** ② 없다 → **문3)으로 갈 것**

< 유의사항 >

※ 질병, 출산 등으로 일시 휴직한 경우는 일자리(직장)나 사업을 그만 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일용직 등 불규칙한 일자리 구분방식

- ① 일하는 장소(00건설현장, 00식당 등에서 1주일 이상 안정적으로 일하였다면 하나의 일자리로 파악함
- ② 일하는 장소가 수시로 바뀌더라도 중간에 1달 이상의 공백기간 없이 같은 일(건설현장인부, 식당일, 파출부 등)을 계속 하였다면, 하나의 일자리로 파악함
- ③ 같은 일을 했더라도 1달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 1월에 일하고 5월에 일할 경우, 1월에 했던 일과 5월에 했던 일을 다른 일자리로 취급함

문 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직장(사업)을 그만두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가장 마지막 사례를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 | | |
|-------------------------------|--------------------------|
| ① 일자리(직장)나 사업의 파산, 폐업, 휴업 등으로 | ⑩ 근로시간 또는 근로 환경이 나빠서 |
| ② 정리해고로 | ⑪ 자기(가족)사업을 새로 하려고 |
| ③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 ⑫ 결혼, 가족 간병 등의 가사 문제로 |
| ④ 정년퇴직 | ⑬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 |
| ⑤ 계약기간이 끝나서 | ⑭ 회사나 우리 집의 이사로 거리가 멀어져서 |
| ⑥ 소득 또는 보수가 적어서 | ⑮ 학업, 군입대 등의 이유로 |
| ⑦ 일거리가 없거나 적어서(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 ⑯ 좀 더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
| ⑧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 ⑰ 출산, 육아 때문에 |
| ⑨ 적성, 지식, 기능 등이 맞지 않아서 | ⑱ 기타(적을 것 : _____) |

문 3) (모든 취업 응답자) 2021년 12월 31일 당시에 재직 중인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한(사업을 시작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년			월
--	--	--	--	---	--	--	---

문 4) (모든 취업 응답자) 2021년 1년간 일을 한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그리고,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는 며칠입니까?

연간 총

--	--

 개월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

--	--

 일

〈 유의사항 〉

- ※ 불규칙적으로 일을 한 경우, 하루라도 일한 달은 1개월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중 3월에 2일, 4월에 15일, 7월에 20일, 8월에 20일 일 한 경우 '4개월' 로,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는 $57(2+15+20+20) \div 4 = 14.25$ 일이므로 반올림 적용하여 '14일' 로 기입합니다.
- ※ 직장에 계속 있기는 하였지만 몇 개월간 휴직을 한 경우(무급휴직이든, 유급휴직이든),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중 7개월 휴직을 하였다면 연간 총 근로 개월은 5개월로 적어주고, 평균근로일수도 실제 일한 달의 평균을 적어주면 됩니다.
- ※ 1년간 농사를 지은 경우는 12개월로 간주합니다.

문 5) (모든 취업 응답자) 2021년 1년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 주당 평균

--	--	--

 시간

일한달의 월 평균 임금 : 월 평균

--	--	--	--

 만원

불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일한 날의 하루 평균

--	--

 시간

일한날의 시간당 임금 : 시간당

--	--	--	--

 만원

〈 유의사항 〉

- ※ 1년 동안 직장(사업)의 변동이 있었다면 가장 최근의 직장(사업)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불규칙적으로 일하는 직업, 예를 들어 농사나 일용 건설 노동자의 경우라면 1년 중 일한 날의 하루 평균 시간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점심시간 등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6) (문1)의 ①번 응답자만) 직장에서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 ① 노동조합이 없음
- ②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대장이 안됨
- ③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았음
- ④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

응답 후 문9) 고용지원 프로그램 문항으로 가십시오.

※ 다음 문7) ~ 문8)까지는 미취업자용 (근로능력있음) 질문입니다.

문 7) (문1)의 ④번 응답자만 귀하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난 4주 동안 돈을 벌 목적으로 일자리(사업)를 구해보셨습니까?

☐

① 그렇다 → 문7-1)로 갈 것

② 아니다 → 문8)로 갈 것

< 유의사항 >

- ※ 구직활동이란 원서접수, 취직시험 응시부터 친구, 친지에게 소개부탁, 직업알선기관에 등록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 일이 주어졌더라도 가사나 학업 등의 이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나, 근로의사가 없는 사람은 '②아니다'로 응답합니다.

문 7-1) (문7)의 ①번 응답자만 마지막으로 직장(사업)을 그만둔 후 총 구직 기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총 구직 기간

년

개월

문 7-2)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점에서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나이 때문에
- ② 성차별 때문에
- ③ 외모 때문에
- ④ 학력이 낮기 때문에
- ⑤ 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 ⑥ 경력이 부족해서
- ⑦ 건강문제로
- ⑧ 일자리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서
- ⑨ 신용불량자라서

- ⑩ 가사일 때문에
- ⑪ 자녀를 돌보는 문제 때문에
- ⑫ 가족(배우자, 부모 등)의 반대로
- ⑬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
- ⑭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 ⑮ 근로조건이나 근로환경이 열악해서
- ⑯ 임금수준이 너무 낮은 일자리여서
- ⑰ 고용이 불안정해서(비정규직이라서)
- ⑱ 기타(적을 것 : _____)

문 7-3) (문7)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취업 혹은 사업을 한다면, 한 달 벌이가 적어도 얼마나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월

천	백	십	일

만원 정도

< 유의사항 >

- ※ 자영업을 생각하는 경우에는 순수익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 지로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 후 문9) 고용지원 프로그램 문항으로 가십시오.

문 8) (문7)의 ②번 응답자만)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난 1년간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

① 그렇다 → 문8-1)로 갈 것

② 아니다 → 문9)로 갈 것

문 8-1) (문8)의 ①번 응답자만)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난주에 알맞은 일거리나 직장이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습니까? ☐

① 그렇다 → 문8-2)로 갈 것

② 아니다 → 문9)로 갈 것

< 유의사항 >

* 일이 주어졌더라도 가사나 학업 등의 이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나, 근로의사가 없는 사람은 “② 아니다”에 해당합니다.

문 8-2) (문8-1)의 ①번 응답자만) 취업을 원하면서도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 ②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 ③ 근처에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 ④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 ⑤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 ⑥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 ⑦ 기타()

* 다음 문9)~문10)은 모든 취업 및 미취업 응답자용 질문입니다.

문 9) (문1)의 ①~④번 응답자) 귀하는 2021년 1년간 정부가 제공하는 아래의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프로그램을 체크해 주세요.

고용지원 프로그램	경험이 있다
① 공공근로	☐
② 노인일자리	☐
③ 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	☐
④ 사회적 일자리(사회적 기업)	☐
⑤ 직장체험연수 관련 프로그램	☐
⑥ 미취업자 직업훈련 관련 프로그램	☐
⑦ 창업지원 관련 프로그램	☐
⑧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희망근로)	☐
⑨ 청년 인턴제도 관련 프로그램	☐
⑩ 취업자 능력 개발 훈련 관련 프로그램	☐
⑪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 통합)	☐
⑫ 기타 ()	☐

문 10) 귀하는 2021년 1년 동안에 어떤 새로운 직업기술을 습득하셨습니다?

주요한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
|--------|--------------------------------|
| ① 기술사 | ⑤ 기능사 |
| ② 기능장 | ⑥ 기타 공인면허자격증 |
| ③ 기사 | ⑦ 자격증 없는 기능자 |
| ④ 산업기사 | ⑧ 없다 → C.생활실태 만족 및 의식 문항으로 갈 것 |

문 10-1) (문 10)의 ① ~⑦번 응답자만) 새로운 직업기술을 습득하셨다면, 다음 중 어떤 직종에 해당합니까?

1순위		2순위	
-----	--	-----	--

- | | | |
|------------|---------|------------------|
| ① 기계 · 금속 | ⑪ 국토개발 | ⑳ 공예 |
| ② 화공 · 세라믹 | ⑫ 농업 | ㉑ 사무관리 |
| ③ 전기 · 전자 | ⑬ 해양 | ㉒ 음료품 · 식료품 |
| ④ 통신 | ⑭ 산업디자인 | ㉓ 위생 |
| ⑤ 조선 | ⑮ 에너지 | ㉔ 보건 · 의료 · 사회 |
| ⑥ 항공 | ⑯ 환경 | ㉕ 금융 · 무역 · 유통 |
| ⑦ 섬유 | ⑰ 안전관리 | ㉖ 교육 · 공무원 관련 자격 |
| ⑧ 토목 · 건축 | ⑱ 산업응용 | ㉗ 외국어 · 관광 |
| ⑨ 광업자원 | ⑲ 교통 | ㉘ 기타 |
| ⑩ 정보처리 | | |

< 유의사항 >

※ 문10)에서 응답한 순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C. 생활실태·만족 및 의식

※ 다음은 귀하의 생활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1년 1년 동안에 대한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1) 귀하는 인터넷을 사용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유의사항 >

※ 집이 아닌 곳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했다면 ‘그렇다’에 응답합니다.

문 2) 귀하는 안전설비가 잘 갖추어지지 않거나, 작업장 오염 등으로 유해한 환경에서 일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비해당

< 유의사항 >

※ 2021년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③ 비해당’에 응답합니다.

※ 부업의 경우도 포함하여 응답합니다.

문 3)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구 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 건강	①	②	③	④	⑤
㉡ 가족의 수입	①	②	③	④	⑤
㉢ 주거 환경	①	②	③	④	⑤
㉣ 가족 관계	①	②	③	④	⑤
㉤ 직업(일)	①	②	③	④	⑤
㉥ 사회적 친분관계	①	②	③	④	⑤
㉦ 여가생활	①	②	③	④	⑤
㉧ 그럼, 위의 사항을 모두 고려할 때, 귀하는 전반적으로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 유의사항 >

- ㉠ 주거환경의 경우 가구원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환경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합니다.
- ㉡ 가족 관계에서 가구원 외의 경우 직계혈족 1촌 이내까지 만을 포함하여 만족 정도를 표기하도록 합니다.
- ㉤ 직업(일)에서 무직, 전업주부 등도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 정도를 표기하도록 합니다.

D.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

※ 아래의 모든 조사 항목은 2021년 1년 동안에 대한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1) 일반적으로 볼 때, 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만하니
 ② 매우 조심해야 한다
 ③ 잘 모르겠다

문 2) 귀하는 안의 지역사회 내에서 누군가 위급하게 도움을 필요(예: 헌혈 등)로 하는 경우 가까이 도움을 줄 의향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문 3) 귀하의 지역사회 내에 새롭게 화장시설, 특수학교, 장애인 거주시설 등과 같은 배설시설이 입지한다면 받아들일지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문 4) 귀하는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문4-1)로 갈 것 ② 아니다 → 문5)로 갈 것

< 유의사항 >

※ 정기적인 기부인 경우 교회나 절에 내는 십일조, 시주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문 4-1) (문4)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는 2021년 1년간 얼마 정도 기부하셨습니까?

연간 총액

--	--	--	--	--

 만원

문 4-2) (문4)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는 자원봉사활동을 2021년 1년간 몇 회 정도 하셨습니까?

연간

--	--	--

 회

문 5) 귀하는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

① 있다 → 문5-1)로 갈 것

② 없다

< 유의사항 >

- ※ 계부, 계모도 포함하며, 응답자 본인의 부모님에 대해서만 응답합니다.
- ※ 이 문항에서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이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부모님**을 말합니다.

문 5-1) (문5)의 ①번 응답자만) 2021년 1년간 귀하는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과 얼마나 자주 왕래를 하셨습니까?

· 주 _____ 회 또는 · 월 _____ 회 또는 · 년 _____ 회

< 유의사항 >

- ※ 주나 월, 년 중에서 한 가지로만 응답해 주십시오.
- ※ 거의 매일 왕래하는 경우는 주7회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 하루 1회 이상 왕래하더라도 1회로 계산합니다.

문 5-2) (문5)의 ①번 응답자만) 2021년 1년간 귀하는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과 얼마나 자주 전화통화를 하셨습니까?

· 주 _____ 회 또는 · 월 _____ 회 또는 · 년 _____ 회

< 유의사항 >

- ※ 주나 월, 년 중에서 한 가지로만 응답해 주십시오.
- ※ 거의 매일 전화통화 하는 경우는 주7회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 하루 1회 이상 전화통화 하더라도 1회로 계산합니다.
- ※ 전화통화 외 카톡, 문자 등을 통한 연락도 포함합니다.

문 6)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크게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여성이 전일제로 일한 경우 가족의 일상생활은 힘들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 미취학 아동의 어머니가 일을 할 경우 미취학 아동에게 나쁘다.	①	②	③	④	⑤
㉢ 전일주부로 일하는 것은 밖에서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 남성의 감부는 밖에서 돈을 버는 것이고, 여성의 감부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 남성과 여성 모두 가구소득에 기여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가정에서의 생활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직장에서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E.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 문1), 문2), 문3)은 신규가구원만 응답하는 문항으로, 신규가구원용 조사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문1), 문2), 문3)은 신규가구원만 응답하는 문항으로, 신규가구원용 조사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① 피옴 → 문 4-1), 문4-2), 문4-3) 응답 후 문 5)로 갈 것
 ② 피우지 않음 → 문 5)로 갈 것

문 4-1) (문 4)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의 하루 평균 흡연량은 몇 개비입니까?
(※ 조사 시점(2022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개비

- ① 예 ② 아니오

- ① 1개월 안에 금연할 계획이 있다.
② 6개월 안에 금연할 계획이 있다.
③ 6개월 이내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금연할 계획이 있다.
④ 현재로서는 전혀 금연할 계획이 없다.

11

- ① 0시간(없음) ② 1시간 미만 ③ 1시간 이상 → 문5-1)로 갈 것

문 5-1) (문 5)의 ③번 응답자만) 귀하는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밀폐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으셨습니까? (* 조사 시점(2022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시간

11

- ① 월 1회 이하
② 월 2~4회
③ 주 2~3회
④ 주 4회 이상
⑤ 전혀 마시지 않는다
- 문 6-1)로 같 것
- 문 7)로 같 것

문 6-1) (문 6)의 ①~④번 응답자만) 보통 술을 마실 때 몇 잔 정도 마십니까?

- ① 1~2칸 정도 ④ 7~9칸 정도
② 3~4칸 정도 ⑤ 10칸 이상
③ 5~6칸 정도

문 6-2) (문 6)의 ①~④번 **용답자만**) 한 번에 술좌석에서 6잔 이상 마시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됩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몇 달에 한번정도 ③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④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⑤ 거의 매일

문 6-3) (문 6)의 ①~④번 응답자만) 2022년 조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은 몇 번입니까?

항목	전혀 없음	몇달에 한번	한달에 1~2번	주에 1~2번	거의 매일
㉠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중간에 그만둘 수 없었던 적이 얼마나 자주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 해야 할 일을 술 때문에 하지 못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①	②	③	④	⑤
㉢ 과음을 한 다음날 해장술을 마셔야 했던 적이 얼마나 됩니까?	①	②	③	④	⑤
㉣ 술을 마신 후에 좌절감을 느끼거나 후회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①	②	③	④	⑤
㉤ 술 마시고 필름이 끊긴 적이 얼마나 됩니까?	①	②	③	④	⑤
항목	전혀 없음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없음	지난 1년 동안 있었음		
㉥ 술로 인해 자신이 다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①	②	③		
㉦ 친척, 친구나 의사와 같은 주변사람들이 귀하의 음주를 걱정하거나 술을 줄이도록 권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①	②	③		

문 7) (모든 응답자) 귀하는 2021년 1년간(2021. 1. 1 ~ 2021. 12. 31) 출산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비해당(남성의 경우)

문 8) (모든 응답자) 귀하는 **지난 1주일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 조사시점(2022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지난 1주일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극히 드물다 (일주일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일주일 1~2일간)	종종 있었다 (일주일 3~4일간)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 5일 이상)
㉮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①	②	③	④
㉯ 비교적 잘 지냈다.	①	②	③	④
㉺ 상당히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 잠을 설치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㊀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㊁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①	②	③	④
㊂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㊃ 마음이 슬펐다.	①	②	③	④
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㊅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문 9)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가 가장 가깝다고 느끼시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조사 시점(2022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항목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①	②	③	④
㉼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㊀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㊁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㊂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㊃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㊄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문 10) 살다보면 부부 사이에 서로 의견이 다르거나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021년 1년간(2021. 1. 1 ~ 2021. 12. 31) 당신의 배우자가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배우자가 없는 경우(사별, 이혼, 미혼)에만 비례당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전혀없음	1~2번	3~5번	6번이상	비례당
㉮ 모욕적,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 때리려고 위협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문 11) 귀하는 귀하의 가족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조사 시점(2022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보통 ⑤ 약간 만족 ⑥ 만족 ⑦ 매우 만족 ⑧ 비해당

< 유의사항 >

※ 독신가구이면서,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에만 '비해당' 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12) 귀하는 귀하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조사 시점(2022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보통 ⑤ 약간 만족 ⑥ 만족 ⑦ 매우 만족 ⑧ 비해당

< 유의사항 >

※ 배우자가 없는 경우(사별, 이혼, 미혼)에만 '비해당' 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13) 귀하는 귀하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조사 시점(2022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보통 ⑤ 약간 만족 ⑥ 만족 ⑦ 매우 만족 ⑧ 비해당

< 유의사항 >

※ 자녀가 없는 경우(비가구원 포함)에만 '비해당' 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14) 귀하는 귀하의 자녀들의 형제자매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조사 시점(2022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보통 ⑤ 약간 만족 ⑥ 만족 ⑦ 매우 만족 ⑧ 비해당

< 유의사항 >

※ 자녀가 없거나, 1명인 경우에만(비가구원 포함) '비해당' 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 문 15)~문 17)은 신규가구원만 응답하는 문항으로, 신규가구원용 조사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 18)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는 2022년 조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자살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 19)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는 2021년 조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자살하려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 20)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는 2021년 조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 21)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는 밑(0)에서 꼭대기(10)까지 숫자가 매겨진 사다리를 생각하세요. 맨 꼭대기(10)는 귀하의 삶에서 가능한 최선의 상태를, 맨 아래(0)는 귀하의 삶에서 가능한 최악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귀하는 2022년 조사일 현재 사다리의 몇 번째 칸에 있다고 느끼십니까?

☐

최선의 상태

10
9
8
7
6
5
4
3
2
1
0

최악의 상태

< 유의사항 >

* 0-10 사이 숫자 중 하나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조사에 응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

조사원의 평가

문) 조사 설문지에 대한 응답자의 응답내용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전체적으로 매우 신뢰할 만하다
- ② 대체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부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 ⑤ 전체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202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17차 신규가구원용(유형4)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계층별, 연령별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 욕구를 역동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복지정책 수립시 활용할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고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댁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3월

< 문의 및 연락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44-287-8317, 8294, 8215, 8188, 8138, 8174, 8124)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02-880-6320)

※가구원의 숫자를 그대로 이기										해 당 가 구 원			
가구 패널 ID		가구 생성차수	가구분리 일련번호	가구원 진입차수	개인패널ID (인포시스템상의 개인패널ID)					성명	가구원 번호	전화 번호	
													휴대폰
대리 응답 여부	① 예	☐ 사유 (번호기재)	※ 대리응답 사유코드	⑥ 비해당(직접응답)		③ 병원입소		⑥ 감옥수감		가구주성명			
	① 해외거주(기러기부모)			④ 가출		⑦ 군대 혹은 전투경찰		대리응답자					
	② 여행 및 출장			⑤ 별거(가정분화)		⑧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		성명		가구원번호			
					⑨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3급		⑩ 기타						
주소지	행정코드				_____시·도 _____구·시·군 _____동·읍·면								
※ 비동거가구원은 거주하는 현주소로 기재함	상세주소	_____통·리 _____번지 _____호 (_____아파트 _____동 _____층 _____호) ☎ (_____) _____ - _____											
조사표완료 소요시간		총 _____분		총방문횟수		총 _____회							
1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미완사유코드					
2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⑥ 비해당(완료) ① 늦은 귀가 ② 장기출타 ③ 부재중(원인미파악) ④ 일부문항 미완 ⑤ 조사거부					
3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⑥ 뇌병변장애 ⑦ 심한 지적, 자폐성장애 (기준1,2급) ⑧ 사망 ⑨ 기타					
4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최종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조사원 이름		지도원 확인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지도원		(인)			

A.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수급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문 1) 귀하는 2021년 1년간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 보훈연금)을 받으셨습니까?

☐

- ① 그렇다 → **문1-1)로 갈 것**
 ② 아니다 → **문2)로 갈 것**

문 1-1)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받은 공적연금 종류는 무엇입니까(중복응답 가능)?

☐
☐

- ① 국민연금 → **문1-2)로 갈 것**
 ② 공무원연금
 ③ 사립학교교원연금
 ④ 군인연금
 ⑤ 별정직우체국연금
 ⑥ 보훈연금
 ⑦ 기타(적을 것 : _____) → **문1-4)로 갈 것**
 _____ → **문1-6)로 갈 것**

〈 유의사항 〉

※ 중복응답일 경우, 아래 문1-2)~문1-6)에서 해당하는 모든 공적연금의 급여종류와 급여액을 기입해 주십시오.

문 1-2) (문1-1)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받은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는 무엇입니까?

☐

- ① 노령연금
 ② 장애연금
 ③ 유족연금
 ④ 분할연금
 ⑤ 사망일시금
 ⑥ 반환일시금
 ⑦ 기타(적을 것 : _____)

문 1-3) 귀하가 2021년 1년간 받은 국민연금의 총 현금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14세 이하 혹은 중고등학생 가구원이 있으면 그 금액도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일시금	총액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만원		
연금	연간	_____ _____ _____ _____	개월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만원

문 1-4) (문1-1)의 ②~⑤번 응답자만) 귀하가 받은 특수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원, 군인, 별정직우체국연금 등)의 급여 종류는 무엇입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
|--|--|
| ① 퇴직급여(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등)
② 유족급여(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등)
③ 재해보상급여(장해연금, 상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사망보상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공무상요양비 등) | ④ 퇴직수당
⑤ 부조급여(재해보조금, 사망조위금)
⑥ 기타(적을 것 : _____) |
|--|--|

문 1-5) 그렇다면 귀하가 2021년 1년간 받은 특수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원, 군인, 별정직우체국
연금 등)의 총 현금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 문1-4)에서 응답한 특수직역연금의 총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14세 이하 혹은 중고등학생 가구원이 있으면 그 금액도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일시금 총액

일	천	백	십	원

 만원

연금 연간

십	원

 개월 연간 총액

천	백	십	원

 만원

문 1-6) (문1-1)의 ⑥, ⑦번 응답자만) 귀하가 2021년 1년간 받은 보호연금 및 기타 연금의 총 현금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14세 이하 혹은 중고등학생 가구원이 있으면 그 금액도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일시금 총액

일	천	백	십	원

 만원

연금 연간

십	원

 개월 연간 총액

천	백	십	원

 만원

고 용 보 험

문 2) (모든 응답자) 귀하는 2021년 1년간 고용보험 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2-1)로 갈 것

② 없다 → 문3)으로 갈 것

문 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받은 고용보험의 급여 종류는 무엇입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실업급여 (구직급여,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
- ②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 ③ 기타 현금급여 (훈련장려금 등 직업능력개발 현금지원)
- ④ 현물급여 (근로자학자금대부 등 비현금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문 2-2) 그렇다면 귀하가 2021년 1년간 받은 고용보험의 총 급여액(현금+현물)은 얼마입니까?

(※ 현금급여액은 본인이 직접 받은 현금을 말합니다.)

연간

십	원

 개월 연간 총액

천	백	십	원

 만원

산 재 보 험

문 3) (모든 응답자) 귀하는 2021년 1년간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3-1)로 갈 것

② 없다 → 문4)로 갈 것

문 3-1) (문3)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받은 산재보험의 급여 종류는 무엇입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
|------------|---|
| ① 요양급여 | ⑤ 유족급여-연금 |
| ② 휴업급여 | ⑥ 유족급여-일시금 |
| ③ 장해급여-연금 | ⑦ 기타 현금급여(장의비,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장해·유족특별급여 등) |
| ④ 장해급여-일시금 | ⑧ 잘 모르겠다 |

문 3-2) 귀하가 2021년 1년간 본인이 직접 받은 산재보험의 총 현금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14세 이하 혹은 중고등학생 가구원이 있으면 그 금액도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일시금	총액	만원 십 백 천 일	만원			
연금	연간	십 일	개월	연간 총액	만원 십 백 천 일	만원

개 인 연 금

문 4) (모든 응답자) 귀하는 2021년 1년 동안 은행, 보험회사, 투신사, 증권회사 등의 금융기관에 가입
했던 개인연금 급여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 ① 그렇다 → 문4-1)로 갈 것 ② 아니다 → 문5)로 갈 것

문 4-1) (문4)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2021년 1년 동안 받은 개인연금 급여액은 총 얼마입니까?

일시금	총액	만원 십 백 천 일	만원			
연금	연간	십 일	개월	연간 총액	만원 십 백 천 일	만원

퇴직금 및 퇴직보험

문 5) (모든 응답자) 귀하는 2021년 1년 동안 퇴직금 또는 퇴직보험금을 받으셨습니까?

☐

(※ 퇴직금 중간정산금, 퇴직보험일시금을 포함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① 그렇다 → 문5-1)로 갈 것 ② 아니다 → B. 근로로 갈 것

문 5-1) (문5)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2021년 1년 동안 받은 퇴직금 또는 퇴직보험금은 얼마입니까?

(※ 퇴직금과 퇴직보험금을 동시에 받으셨을 경우는 합계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시금	총액	만원 십 백 천 일	만원			
연금	연간	십 일	개월	연간 총액	만원 십 백 천 일	만원

B. 근로

문 1) 귀하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근로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 ① 임금근로자 → **문2)~문6) 응답한 후 문9)로 갈 것**
 ② 자영업, 고용주 → **문2)~문5) 응답한 후 문9)로 갈 것**
 ③ 무급가족종사자 → **문7)으로 갈 것**
 ④ 미취업자(근로능력있음) → **문7)으로 갈 것**
 ⑤ 미취업자(근로능력없음) → **C.생활실태 만족 및 인식 문항으로 갈 것**

< 유의사항 >

※ 가구용 III.경제활동상태의 '문1)근로능력정도' 및 '문3)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와 일치해야 합니다.
 단, 자활근로, 공공근로 및 노인일자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임금근로자' 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임금근로자: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상용, 임시, 일용근로자 포함)
 자활, 공공근로 및 노인일자리도 임금근로자로 응답
2. 자영업, 고용주: 혼자 혹은 유급종업원을 고용하거나 무급가족과 함께 기업이나 농장을 경영하거나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자
3. 무급가족종사자: 동일가구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4. 미취업자(근로능력있음): 실업자(2021.12.31 기준으로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한 자), 근로무능력의 사유가 아닌 가사, 학업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자로 근로능력은 있으나 근로를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5. 미취업자(근로능력없음): 근로의사와 무관하게 장애, 부상,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한 심신무능력을 사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 다음 문2) ~ 문6)까지는 취업자용(임금근로자, 자영업 및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질문입니다.

문 2) (문1)의 ①~③번 응답자만) 2021년 1년간 귀하께서는 다니던 직장(사업)을 그만 둔 적이 있었습니까?

☐

- ① 있다 → **문2-1)로 갈 것** ② 없다 → **문3)으로 갈 것**

< 유의사항 >

※ 질병, 출산 등으로 일시 휴직한 경우는 일자리(직장)나 사업을 그만 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일용직 등 불규칙한 일자리 구분방식

- ① 일하는 장소(00건설현장, 00식당 등)에서 1주일 이상 안정적으로 일하였다면 하나의 일자리로 파악함
- ② 일하는 장소가 수시로 바뀌더라도 중간에 1달 이상의 공백기간 없이 같은 일(건설현장인부, 식당일, 파출부 등)을 계속 하였다면, 하나의 일자리로 파악함
- ③ 같은 일을 했더라도 1달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 1월에 일하고 5월에 일할 경우, 1월에 했던 일과 5월에 했던 일을 다른 일자리로 취급함

문 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직장(사업)을 그만두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가장 마지막 사례를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 | | |
|-------------------------------|--------------------------|
| ① 일자리(직장)나 사업의 파산, 폐업, 휴업 등으로 | ⑩ 근로시간 또는 근로 환경이 나빠서 |
| ② 정리해고로 | ⑪ 자기(가족)사업을 새로 하려고 |
| ③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 ⑫ 결혼, 가족 간병 등의 가사 문제로 |
| ④ 정년퇴직 | ⑬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 |
| ⑤ 계약기간이 끝나서 | ⑭ 회사나 우리 집의 이사로 거리가 멀어져서 |
| ⑥ 소득 또는 보수가 적어서 | ⑮ 학업, 군입대 등의 이유로 |
| ⑦ 일거리가 없거나 적어서(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 ⑯ 좀 더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
| ⑧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 ⑰ 출산, 육아 때문에 |
| ⑨ 적성, 지식, 기능 등이 맞지 않아서 | ⑱ 기타(적을 것 : _____) |

문 3) (모든 취업 응답자) 2021년 12월 31일 당시에 재직 중인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한(사업을 시작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년			월
--	--	--	--	---	--	--	---

문 4) (모든 취업 응답자) 2021년 1년간 일을 한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그리고,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는 며칠입니까?

연간 총

--	--

 개월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

--	--

 일

〈유의사항〉
 ※ 불규칙적으로 일을 한 경우, 하루라도 일한 달은 1개월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중 3월에 2일, 4월에 15일, 7월에 20일, 8월에 20일 일 한 경우 '4개월' 로,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는 57일(2일+15일+20일+20일)÷4개월=14.25일이므로 반올림 적용하여 '14일' 로 기입합니다.
 ※ 직장에 계속 있기는 하였지만 몇 개월간 휴직을 한 경우(무급휴직이든, 유급휴직이든),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중 7개월 휴직을 하였다면 연간 총 근로 개월은 5개월로 적어주고, 평균근로일수도 실제 일한 달의 평균을 적어주면 됩니다.
 ※ 1년간 농사를 지은 경우는 12개월로 간주합니다.

문 5) (모든 취업 응답자) 2021년 1년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 주당 평균

--	--	--

 시간

일한달의 월 평균 임금 : 월 평균

--	--	--	--

 만원

불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일한 날의 하루 평균

--	--

 시간

일한날의 시간당 임금 : 시간당

--	--	--	--

 만원

〈유의사항〉
 ※ 1년 동안 직장(사업)의 변동이 있었다면 가장 최근의 직장(사업)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불규칙적으로 일하는 직업, 예를 들어 농사나 일용 건설 노동자의 경우라면 1년 중 일한 날의 하루 평균 시간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점심시간 등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6) (문1)의 ①번 응답자만) 직장에서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 ① 노동조합이 없음
- ②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대상이 안됨
- ③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았음
- ④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

응답 후 문9) 고용지원 프로그램 문항으로 가십시오.

※ 다음 문7) ~ 문8)까지는 미취업자용 (근로능력있음) 질문입니다.

문 7) (문1)의 ④번 응답자만) 귀하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난 4주 동안 돈을 벌 목적으로 일자리(사업)를 구해보셨습니까?

☐

① 그렇다 → 문7-1)로 갈 것

② 아니다 → 문8)로 갈 것

< 유의사항 >

- ※ 구직활동이란 원서접수, 취직시험 응시부터 친구, 천지에게 소개부탁, 직업알선기관에 등록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 ※ 일이 주어졌더라도 가사나 학업 등의 이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나, 근로의사가 없는 사람은 '②아니다'로 응답합니다.

문 7-1) (문7)의 ①번 응답자만) 마지막으로 직장(사업)을 그만둔 후 총 구직 기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총 구직 기간

년

개월

문 7-2)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점에서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나이 때문에
- ② 성차별 때문에
- ③ 외모 때문에
- ④ 학력이 낮기 때문에
- ⑤ 기술이나 기능이 부족해서
- ⑥ 경력이 부족해서
- ⑦ 건강문제로
- ⑧ 일자리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서
- ⑨ 신용불량자라서

- ⑩ 가사일 때문에
- ⑪ 자녀를 돌보는 문제 때문에
- ⑫ 가족(배우자, 부모 등)의 반대로
- ⑬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
- ⑭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 ⑮ 근로조건이나 근로환경이 열악해서
- ⑯ 임금수준이 너무 낮은 일자리여서
- ⑰ 고용이 불안정해서(비정규직이라서)
- ⑱ 기타(적을 것 : _____)

문 7-3) (문7)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취업 혹은 사업을 한다면, 한 달 벌이가 적어도 얼마나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월

천	백	십	일

만원 정도

< 유의사항 >

- ※ 자영업을 생각하는 경우에는 순수익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 지로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 후 문9) 고용지원 프로그램 문항으로 가십시오.

문 8) (문7)의 ②번 응답자만)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난 1년간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

① 그렇다 → 문8-1)로 갈 것

② 아니다 → 문9)로 갈 것

문 8-1) (문8)의 ①번 응답자만)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난주에 알맞은 일거리나 직장이 있다면 일할 수 있었습니까? ☐

① 그렇다 → 문8-2)로 갈 것

② 아니다 → 문9)로 갈 것

< 유의사항 >

* 일이 주어졌더라도 가사나 학업 등의 이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나, 근로의사가 없는 사람은 "② 아니다"에 해당합니다.

문 8-2) (문8-1)의 ①번 응답자만) 취업을 원하면서도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 ②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 ③ 근처에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 ④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 ⑤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 ⑥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 ⑦ 기타()

※ 다음 문9)는 모든 취업 및 미취업 응답자용 질문입니다.

문 9) (문1)의 ①~④번 응답자) 귀하는 2021년 1년간 정부가 제공하는 아래의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프로그램을 체크해 주세요.

고용지원 프로그램	경험이 있다
① 공공근로	☐
② 노인일자리	☐
③ 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	☐
④ 사회적 일자리(사회적 기업)	☐
⑤ 직장체험연수 관련 프로그램	☐
⑥ 미취업자 직업훈련 관련 프로그램	☐
⑦ 창업지원 관련 프로그램	☐
⑧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희망근로)	☐
⑨ 청년 인턴제도 관련 프로그램	☐
⑩ 취업자 능력 개발 훈련 관련 프로그램	☐
⑪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 통합)	☐
⑫ 기타 ()	☐

C. 생활실태 · 만족 및 의식

※ 다음은 귀하의 생활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1년 1년 동안에 대한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1) 귀하는 인터넷을 사용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유의사항 >

※ 집이 아닌 곳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했다면 ‘그렇다’에 응답합니다.

문 2) 귀하는 안전설비가 잘 갖추어지지 않거나, 작업장 오염 등으로 유해한 환경에서 일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비해당

< 유의사항 >

※ 2021년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③ 비해당’에 응답합니다.

※ 부업의 경우도 포함하여 응답합니다.

문 3)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구 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 건강	①	②	③	④	⑤
㉡ 가족의 수입	①	②	③	④	⑤
㉢ 주거 환경	①	②	③	④	⑤
㉣ 가족 관계	①	②	③	④	⑤
㉤ 직업(일)	①	②	③	④	⑤
㉥ 사회적 친분관계	①	②	③	④	⑤
㉦ 여가생활	①	②	③	④	⑤
㉧ 그럼, 위의 사항을 모두 고려할 때, 귀하는 전반적으로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 유의사항 >

- ㉠ 주거환경의 경우 가구원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환경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합니다.
- ㉡ 가족 관계에서 가구원 외의 경우 직계혈족 1촌 이내까지 만을 포함하여 만족 정도를 표기하도록 합니다.
- ㉤ 직업(일)에서 무직, 전업주부 등도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 정도를 표기하도록 합니다.

D.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

※ 아래의 모든 조사 항목은 2021년 1년 동안에 대한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1) 일반적으로 볼 때, 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만하니
 ② 매우 조심해야 한다
 ③ 잘 모르겠다

문 2) 귀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치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문 3) 귀하의 지역사회 내에 새롭게 확장시설, 특수학교, 장애인 거주시설 등과 같은 비산출시설이 입지한다면 받아들여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치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문 4) 귀하는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 문4-1)로 갈 것

② 아니다 → 문5)로 갈 것

< 유의사항 >

※ 정기적인 기부의 경우 교회나 절에 내는 십일조, 시주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문 4-1) (문4)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는 2021년 1년간 얼마 정도 기부하십니까?

연간 총액

십억	천	백	십	만원

문 4-2) (문4)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는 자원봉사활동을 2021년 1년간 몇 회 정도 하십니까?

연간

		회

문 5) 귀하는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

① 있다 → 문5-1)로 갈 것 ② 없다

< 유의사항 >

- ※ 계부, 계모도 포함하며, 응답자 본인의 부모님에 대해서만 응답합니다.
- ※ 이 문항에서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이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부모님**을 말합니다.

문 5-1) (문5)의 ①번 응답자만 2021년 1년간 귀하는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과 얼마나 자주 왕래를 하셨습니까?

• 주 _____ 회 또는 • 월 _____ 회 또는 • 년 _____ 회

< 유의사항 >

- ※ 주나 월, 년 중에서 한 가지로만 응답해 주십시오.
- ※ 거의 매일 왕래하는 경우는 주7회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 하루 1회 이상 왕래하더라도 1회로 계산합니다.

문 5-2) (문5)의 ①번 응답자만 2021년 1년간 귀하는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과 얼마나 자주 전화통화를 하셨습니까?

• 주 _____ 회 또는 • 월 _____ 회 또는 • 년 _____ 회

< 유의사항 >

- ※ 주나 월, 년 중에서 한 가지로만 응답해 주십시오.
- ※ 거의 매일 전화통화 하는 경우는 주7회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 하루 1회 이상 전화통화 하더라도 1회로 계산합니다.
- ※ 전화통화 외 카톡, 문자 등을 통한 연락도 포함합니다.

문 6)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㉔ 허점이 전일제로 일할 경우 가족의 일상생활은 힘들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㉕ 미취학 아동의 어머니가 일을 할 경우 미취학 아동에게 나쁘다.	①	②	③	④	⑤
㉖ 전일주부로 일하는 것은 밖에서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㉗ 남편의 집무는 밖에서 돈을 버는 것이고, 여성과 집무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㉘ 남성과 여성 모두 지주소득에 기여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㉙ 가정에서의 생활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㉚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㉛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직장에서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E.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문 1) (모든 응답자) 귀하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피운 담배의 양은 총 얼마입니까?
(※ 조사 시점(2022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① 5갑(100개비) 미만 → 문 2)로 갈 것
 ② 5갑(100개비) 이상 ↓
 ③ 피운 적 없음 → 문 4)로 갈 것

문 2) (문 1)의 ①~②번 응답자만) 귀하께서 처음으로 담배 한 대를 다 피운 시기는 언제입니까?

만

 세

문 3) (문 1)의 ①~②번 응답자만) 귀하의 총 흡연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담배를 주기적으로 피우던 시기를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금연하였던 기간은 제외합니다.)
(※ 조사 시점(2022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총 흡연기간

 년

 개월

문 4)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는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
(※ 조사 시점(2022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① 피움 → 문 4-1), 문4-2), 문4-3) 응답 후 문 5)로 갈 것
 ② 피우지 않음 → 문 5)로 갈 것

문 4-1) (문 4)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의 하루 평균 흡연량은 몇 개비입니까?
(※ 조사 시점(2022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개비

문 4-2) (문 4)의 ①번 응답자만) 최근 1년 동안 담배를 끊고자 하루(24시간) 이상 금연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 4-3) (문 4)의 ①번 응답자만) 앞으로 담배를 끊을 계획이 있습니까?

- ① 1개월 안에 금연할 계획이 있다.
 ② 6개월 안에 금연할 계획이 있다.
 ③ 6개월 이내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금연할 계획이 있다.
 ④ 현재로서는 전혀 금연할 계획이 없다.

문 5)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 밀폐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는 시간은 하루 몇 시간 정도입니까? (※ 조사 시점(2022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① 0시간(없음) ② 1시간 미만 ③ 1시간 이상 → 문5-1)로 갈 것

문 5-1) (문 5)의 ③번 응답자만) 귀하는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밀폐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으셨습니까? (※ 조사 시점(2022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시간

문 6) (모든 응답자) 귀하는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 조사 시점(2022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① 월 1회 이하 } → 문6-1)로 갈 것
 ② 월 2~4회
 ③ 주 2~3회
 ④ 주 4회 이상
 ⑤ 전혀 마시지 않는다 → 문 7)로 갈 것

문 6-1) (문 6)의 ①~④번 응답자만) 보통 술을 마실 때 몇 잔 정도 마십니까?

- ① 1~2잔 정도 ④ 7~9잔 정도
 ② 3~4잔 정도 ⑤ 10잔 이상
 ③ 5~6잔 정도

문 6-2) (문 6)의 ①~④번 응답자만) 한 번에 술작석에서 6잔 이상 마시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됩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몇 달에 한번정도 ③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④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⑤ 거의 매일

문 6-3) (문 6)의 ①~④번 응답자만) 2022년 조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은 몇 번입니까?

항목	전혀 없음	몇달에 한번	한달에 1~2번	주에 1~2번	거의 매일
㉡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중간에 그만둘 수 없었던 적이 얼마나 자주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 해야 할 일을 술 때문에 하지 못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①	②	③	④	⑤
㉣ 과음을 한 다음날 해장술을 마셔야 했던 적이 얼마나 됩니까?	①	②	③	④	⑤
㉤ 술을 마신 후에 좌절감을 느끼거나 후회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①	②	③	④	⑤
㉥ 술 마시고 필름이 끊긴 적이 얼마나 됩니까?	①	②	③	④	⑤
항목	전혀 없음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없음		지난 1년 동안 있었음	
㉦ 술로 인해 자신이 다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①	②		③	
㉧ 친척, 친구나 의사와 같은 주변사람들이 귀하의 음주를 걱정하거나 술을 줄이도록 권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①	②		③	

문 7) (모든 응답자) 귀하는 2021년 1년간(2021. 1. 1 ~ 2021. 12. 31) 출산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비해당(남성의 경우)

문 8) (모든 응답자) 귀하는 지난 1주일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 조사시점(2022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지난 1주일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극히 드물다 (일주일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일주일 1~2일간)	종종 있었다 (일주일 3~4일간)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 5일 이상)
㉠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①	②	③	④
㉡ 비교적 잘 지냈다.	①	②	③	④
㉢ 상당히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①	②	③	④
㉧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 마음이 슬펐다.	①	②	③	④
㉩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 문 9)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가 가장 가깝다고 느끼시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조사 시점(2022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항목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①	②	③	④
㉼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㊱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㊲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㊳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 문 10) 살다보면 부부 사이에 서로 의견이 다르거나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021년 1년간(2021. 1. 1 ~ 2021. 12. 31) 당신의 배우자가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배우자가 없는 경우(사별, 이혼, 미혼)에만 '비해당'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전혀없음	1~2번	3~5번	6번이상	비해당
㉮ 모욕적,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 때리려고 위협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 문 11) 귀하는 귀하의 가족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조사 시점(2022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보통 ⑤ 약간 만족 ⑥ 만족 ⑦ 매우 만족 ⑧ 비해당

< 유의사항 >

※ 독신가구이면서,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에만 '비해당'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12) 귀하는 귀하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조사 시점(2022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보통 ⑤ 약간 만족 ⑥ 만족 ⑦ 매우 만족 ⑧ 비해당

< 유의사항 >

※ 배우자가 없는 경우(사별, 이혼, 미혼)에만 '비해당'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13) 귀하는 귀하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조사 시점(2022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보통 ⑤ 약간 만족 ⑥ 만족 ⑦ 매우 만족 ⑧ 비해당

< 유의사항 >

※ 자녀가 없는 경우(비가구원 포함)에만 '비해당' 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14) 귀하는 귀하의 자녀들의 형제자매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조사 시점(2022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보통 ⑤ 약간 만족 ⑥ 만족 ⑦ 매우 만족 ⑧ 비해당

< 유의사항 >

※ 자녀가 없거나, 1명인 경우에만(비가구원 포함) '비해당' 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15)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는 지금까지 자살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 조사 시점(2022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기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예

② 아니오

문 15-1) (문 15)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께서 자살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마지막으로 생각한 때는 언제입니까?

처음 나이

만 세

마지막 나이

만 세

문 16)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는 지금까지 자살하려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 조사 시점(2021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기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예 → 문 16-1)로 갈 것

② 아니오 → 문 17)로 갈 것

문 16-1) (문 16)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께서 자살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마지막으로 계획을 세운 때는 언제입니까?

처음 나이

만 세

마지막 나이

만 세

문 17)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는 지금까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 조사 시점(2021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기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예 → 문 17-1)로 갈 것

② 아니오 → 문 18)로 갈 것

문 17-1) (문 17)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께서 자살을 처음/마지막으로 시도한 때는 언제입니까?

처음 나이

만 세

마지막 나이

만 세

< 유의사항 >

※ 문18), 문18-1), 문19), 문19-1), 문20), 문20-1))은 기존가구원만 응답하는 문항으로, 가구원용 조사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문 21)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는 밑(0)에서 꼭대기(10)까지 숫자가 매겨진 사다리를 생각하세요. 맨 꼭대기(10)는 귀하의 삶에서 가능한 최선의 상태를, 맨 아래(0)는 귀하의 삶에서 가능한 최악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귀하는 **2022년 조사일 현재** 사다리의 몇 번째 칸에 있다고 느끼십니까?

최선의 상태

10
9
8
7
6
5
4
3
2
1
0

최악의 상태

< 유의사항 >

※ 0-10 사이 숫자 중 하나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 교육

문 1) 귀하의 최종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중학교 졸업 이하→ **G.개인사로 갈 것**
 ② 고등학교 중퇴, 졸업 -----
 ③ 전문대학 재학, 중퇴, 졸업 -----> **문 2)로 갈 것**
 ④ 대학교(4년제) 재학, 중퇴, 졸업 -----
 ⑤ 대학원 이상 -----

문 2) (②~⑤ 응답자만) 귀하가 다니신 고등학교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2-1) 고등학교 유형	2-2) 소재지
①일반계(일반) ②일반계(특목: 과학고) ③일반계(특목: 외국어고) ④일반계(자립형사립고, 국제고) ⑤일반계(특목: 예술고) ⑥일반계(특목: 체육고) ⑦실업계(농업) ⑧실업계(공업) ⑨실업계(상업) ⑩실업계(수산 및 해양) ⑪실업계(가사 및 실업) ⑫실업계(종합) ⑬특성화고 ⑭대안학교 ⑮검정고시 ⑯기타 ⑰자율고(자율형고, 기숙형고)	고등학교의 소재지 *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예) 서울시 강남구

< 유의사항 >

- ※ 고등학교 유형이 “⑮검정고시”인 경우 소재지(metro)는 “40:검정고시”로 응답합니다.
 ※ 2007년부터는 “실업계”의 명칭이 “전문계”로 변경되었습니다. 응답자가 “전문계”라고 할 경우 해당 “실업계”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④ 일반계(자립형사립고, 국제고)
 ▪ 자립형사립고: 하나고, 현대청운고, 민족사관학교, 전주상산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등
 ▪ 국제고: 서울국제고, 부산국제고, 인천국제고, 청신국제고 등
- ⑦ 실업계(농업)에는 다음의 마이스터고등학교(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도 포함시킴(2010년부터 추가됨). 마이스터고등학교란, 2010년 첫 개교를 하였으며,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 학교임.
 ▪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대구농업마이스터고, 한국경마축산고, 전남생명과학고 등
- ⑧ 실업계(공업) 중에서 일반 공업고등학교 이외에 마이스터고등학교(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도 포함시킴.
 ▪ 경기게임마이스터고, 수도전기공고, 부산자동차고, 부산기계공고, 경북기계공고, 인천전자마이스터고, 광주마이스터고, 광주지동화설비공고, 동아마이스터고, 울산마이스터고, 울산에너지고, 수원하이텍고, 평택기계공고, 원주의료고, 충북반도체고, 충북에너지고, 합덕제철고, 군산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 한국항만물류고, 구미전자공고, 금오공고, 거제공고, 삼천포공고, 삼척마이스터고,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연무대기계공고, 대구열마이스터고, 포항제철공고, 공군항공과학고, 서울로봇고, 여수석유화학고, 서울도시과학기술고, 현대공고,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대구소프트웨어고,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밀양전자고, 영월공고 등
- ⑨ 실업계(상업)에는 “정보고등학교”가 포함됩니다. 이외에 마이스터고등학교(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도 포함시킴(2010년부터 추가됨).
 ▪ 한국국제통상마이스터고
- ⑩ 실업계(수산 및 해양)에는 다음의 마이스터고등학교(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도 포함시킴.
 ▪ 인천해사고, 부산해사고, 원도수산고 등
- ⑪ 실업계(가사 및 실업)에는 다음의 마이스터고등학교(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도 포함시킴.
 ▪ 한국식품마이스터고, 경북식품과학마이스터고,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등
- ⑬ 특성화고등학교
 ▪ 디자인고등학교: 대전디자인고, 서울디자인고, 세그루패션디자인고, 예림디자인고, 예일디자인고, 홍익디자인고, 부일전자디자인고, 인천디자인고, 대전전자디자인고, 안산디자인문화고, 한림디자인고, 경주디자인고 등
 ▪ 애니메이션고등학교: 울산애니원고, 한국애니메이션고, 강원애니고 등
 ▪ 관광고등학교: 대일관광고, 서울관광고, 선정국제관광고, 송곡관광고, 부산관광고, 부산정보관광고, 해운대관광고, 대구관광고, 영화관광경영고, 경기관광고, 경일관광경영고, 한국관광고, 한국호텔관광고, 경남관광고 등
 ▪ 미용고등학교: 울산미용예술고, 전남미용고 등
 ▪ 자동차고등학교: 인평자동차고, 경기자동차과학고, 줄포자동차고, 청송자동차고, 경남자동차고 등
 ▪ 국악고등학교: 국립국악중고, 국립전통예술고, 남원국악예술고 등
 ▪ 골프고등학교: 부산골프고, 함평골프고 등
- ⑭ 대안학교
 ▪ 지구촌고, 달구벌고, 산마을고, 동명고, 양원고, 한마을고, 공동체비전고, 전인고, 팔월고, 현천고, 영산성지고, 한빛고, 한울고, 현천고, 세인고, 푸른꿈고, 지평선고, 고산고, 경주화랑고, 간디고, 원경고, 지리산고, 태봉고, 두레자연고, 경기대명고, 아우고, 한겨레고 등
- ⑰ 자율고(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기숙형고)
 ▪ 자율형 사립고: 동성고, 우신고, 이화여고, 중동고, 한가람고, 동래여고, 계성고, 송원고, 안산 동산고, 북일고, 김천고 등 (2019년 8월, 경희고, 배제고, 세화고, 송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 대부고, 경문고,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 자율형 공립고: 등촌고, 당곡고, 구현고, 수락고, 성동고, 원목고, 미양고, 고척고, 금천고, 청량고, 상암고, 경일고, 경동고, 대영고, 중경고, 면목고, 광양고, 서울여고, 경남여고, 낙동고, 사상고, 부산남고, 부산중앙고, 금정고, 부산진고, 주례여고, 영도여고, 부산여고, 연제고, 개성고, 경남고, 강동고, 경북여고, 대구고, 호산고, 상인고, 학남고, 구암고, 달성고, 대전고, 칠성고, 대구서부고, 수성고, 포산고, 신현고, 인천예일고, 동인천고, 인천공항공고, 인천상경고, 강화고, 상일여고, 광주고, 광주제일고, 대전송촌고, 대전고, 애전여고, 충남고, 대전노은고, 문현고, 약사고, 한솔고, 와부고, 세마고, 함현고, 양주고, 충현고, 자현고, 고색고, 의왕고, 청학고, 군포중앙고, 운정고, 청원고, 충주예성여고, 청주고, 오송고, 충주고, 단양고, 대산고, 용남고, 강경고, 덕산고, 천안업성고, 서천여고, 논산고, 목포고, 순천고, 여수고, 나주고, 남양고, 광양고, 해남고, 안동고, 상주여고, 영주제일고, 북산고, 경산고, 안동고, 울진고, 점촌고, 봉화고, 울곡고, 거제제일고, 양산고, 진양고, 웅천고, 김해고, 김해제일고, 마산고, 진주고, 창원중앙고, 김해경원고

문 3) (㉓~㉕ 응답자만) 귀하가 다니신 대학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3-1) 대학 전공 계열			3-2) 소재지
①인문계열	⑤교육계열	⑨의약계열(약학)	대학교의 소재지
②사회계열(경상계열)	⑥공학계열	⑩의약계열(간호, 치료보건)	*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예) 서울시 강남구
③사회계열(법학계열)	⑦자연계열	⑪예체능계열	
④사회계열(사회과학계열)	⑧의약계열(의학)	⑫기타	

〈 유의사항 〉

※ 응답자가 다닌(혹은 다니고 있는) 대학에서 경제학과, 경영학과 등이 사회과학계열로 분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㉔사회계열(경상계열)”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 개인사

문 1) 아동기(만 0~17세)에 귀하가 가장 오랜 기간 성장한 곳은 다음 중 어느 지역입니까?

☐

- ①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② 중소도시(기타 시도) ③ 농어촌(읍면지역) ④ 외국

문 2) 귀하가 아동기(만 0~17세)에 가구의 경제적 생활 상태는 어떠하였습니까?

☐

- ① 매우 가난 ② 가난 ③ 보통 ④ 부유 ⑤ 매우 부유

문 3) 귀하는 만 15세 이후 한 번이라도 직장(사업)을 가진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3-1)로 갈 것

② 없다 → 문4)로 갈 것

< 유의사항 >

※ 일주일에 평균 18시간 이상씩 연속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장 혹은 사업만 응답하십시오.

문 3-1) (문3)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의 만 15세 이후 첫 직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고용형태였습니까?

구 분	기 간								고용형태
첫 직장					년	~			년

문 3-2) (문3)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의 첫 직장 이후의 취업 기간과 고용형태를 최근 것부터 연차적으로 주요한 직업 경력을 6개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 분	기 간								고용형태
가장 최근 (2021년 12월 31일로부터)					년	~			년
주된 일자리 A					년	~			년
주된 일자리 B					년	~			년
주된 일자리 C					년	~			년
주된 일자리 D					년	~			년
주된 일자리 E					년	~			년

< 보기 > 고 용 형 태

-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 한시적 근로자: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회사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조건으로 근무하게 하는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동안 일하거나 임금이 시간 단위로 지급받는 근로자
 - 비전형 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재택, 가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
- 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임금근로자가 아닌자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
- 고용주: 한 사람 이상 피고용인을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
- 자영업자: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농업의 경우 자영업에 포함)
- 무급가족종사자: 동일가구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 유의사항 >
 ※ 일주일에 평균 18시간 이상씩 연속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장 혹은 사업만 응답하십시오.
 ※ 동일직종에 근무하면서 고용형태만 바뀐 경우는 근무기간은 구분하지 말고 고용형태는 마지막 형태를 기입합니다. 고용형태는 바뀌지 않았지만 직장을 바꾼 경우에는 바뀐 직장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인 경우는 3-1)과 3-2) 최근일자리에 동시에 기입합니다.
 ※ 첫 직장 이후 다른 직장을 다닌 경험에 있는 경우에는 3-1)에만 기입하고, 3-2)에는 최근 일자리부터 순차적으로 적되, 마지막에 첫 직장은 적지 않습니다.

문 4) (모든 응답자) 귀하는 어떤 직업기술을 갖고 계십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3개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
| ① 기술자 | ⑥ 기타 공인면허자격증 |
| ② 기능장 | ⑦ 자격증 없는 기능자 |
| ③ 기사 | ⑧ 잘 모르겠다 → 문5)로 갈 것 |
| ④ 산업기사 | ⑨ 없다 |
| ⑤ 기능사 | |

문 4-1) (문 4)의 ①~⑦번 응답자만) 직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다음 중 어떤 직종에 해당합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
|----------|---------|----------------|
| ① 기계·금속 | ⑪ 국토개발 | ⑳ 공예 |
| ② 화공·세라믹 | ⑫ 농업 | ㉑ 사무관리 |
| ③ 전기·전자 | ⑬ 해양 | ㉒ 음료품·식료품 |
| ④ 통신 | ⑭ 산업디자인 | ㉓ 위생 |
| ⑤ 조선 | ⑮ 에너지 | ㉔ 보건·의료·사회 |
| ⑥ 항공 | ⑯ 환경 | ㉕ 금융·무역·유통 |
| ⑦ 섬유 | ⑰ 안전관리 | ㉖ 교육·공무원 관련 자격 |
| ⑧ 토목·건축 | ⑱ 산업응용 | ㉗ 외국어·관광 |
| ⑨ 광업자원 | ⑲ 교통 | ㉘ 기타 |
| ⑩ 정보처리 | | |

< 유의사항 >
 ※ 문4)에서 응답한 순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5)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는 아동기(만 0~17세)에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몇 살이었습니까?

항 목	경험 여부				당시 나이
	그렇지 않다	그렇다	모름		
㉐ 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일찍 돌아가셨다.	①	②	③	☞	만__세
㉑ 부모님이 이혼하셨다.	①	②	③	☞	만__세
㉒ 생계가 곤란하여 학업을 중단(진학포기)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	만__세
㉓ 경제적 이유로 친척집에서 자란 적이 있다.	①	②	③	☞	만__세

< 유의사항 >
 ※ '무응답'의 경우에도 '모름'으로 표기하십시오.
 ※ 생계곤란으로 처음부터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다'로 응답한 후 당시 나이는 취학연령인 만 7세로 기재합니다.

문 6) 귀하 부모님의 교육수준은 각각 어느 정도입니까?

부	모
---	---

- | | | |
|---------|------------|--------|
| ① 무학 | ④ 중학교졸 | ⑦ 대학교졸 |
| ② 서당수학 | ⑤ 고등학교졸 | ⑧ 대학원졸 |
| ③ 초등학교졸 | ⑥ 대학(전문대)졸 | ⑨ 모름 |

< 유의사항 >
 ※ 중퇴 수료는 이전 학교 졸업으로 표기하여 주십시오. 예를 들어, 중학교 중퇴(수료)인 경우는 '초등학교 졸'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 '무응답'의 경우에도 '모름'으로 표기하십시오.

문 7) 귀하 부모님의 주된 직업은 무엇입니까(이었습니다)?

부	모
① 비해당 ②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③ 전문가 ④ 기술공 및 준전문가 ⑤ 사무종사자 ⑥ 서비스 종사자 ⑦ 판매 종사자 ⑧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⑨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⑩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⑪ 단순 노동 종사자 ⑫ 직업군인 ⑬ 주부 ⑭ 무직 ⑮ 기타(적을 것 : _____) ⑯ 모름

< 유의사항 >
 ※ 가장 오래 종사한 직업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무응답'의 경우에도 '모름'으로 표기하십시오.

문 8) 귀하는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결혼 시 받은 물질적 도움 등)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8-1)로 갈 것** ② 없다 → **문9)로 갈 것**

< 유의사항 >
 ※ 부모로부터의 증여에는 결혼할 때 받은 부동산(주택미련자금 또는 전세자금), 자동차, 사업자금 등이 포함됩니다.
 ※ 본인의 재산증식에 도움이 될 정도의 비정기적 증여를 말하며, 정기적으로 받는 사적이전소득(예를 들어,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월, 대학등록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 8-1) (문8)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속이나 증여 (결혼 시 받은 물질적 도움 등)가 현재 경제상황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도움 안 됨 ④ 약간 도움이 됨
 ② 별로 도움 안 됨 ⑤ 매우 큰 도움이 됨
 ③ 보통

문 9) 귀하는 결혼 혹은 근로 등의 사유로 다른 나라에서 한국으로 오셨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유의사항 >
 ※ 본 질문은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 새터민(북한이탈주민)가정 등 다문화가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 해외에 거주하였다가 귀국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장시간 조사에 응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

조사원의 평가
문) 조사 설문지에 대한 응답자의 응답내용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 전체적으로 매우 신뢰할 만하다 ② 대체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부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⑤ 전체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202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부가조사(유형5)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계층별, 연령별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 욕구를 역동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복지정책 수립시 활용할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고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책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3월

< 문의 및 연락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44-287-8317, 8294, 8215, 8188, 8138, 8174, 8124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02-880-6320

※ 가구용의 숫자를 그대로 이기										해 당 가 구 원			
가구패널 ID		가구 생성차수	가구분리 일련번호	가구원 진입 차수	개인패널ID [인포시스템상의 개인패널ID]					성명	가구원 번호	전화 번호	
												휴대폰	
대리 응답 여부	① 예	☐ 사유 (번호기재)	※ 대리응답 사유코드	⑥ 비해당(직접응답) ③ 병원입소 ⑥ 감옥수감 ① 해외거주(기러기부모) ④ 가출 ⑦ 군대 혹은 전투경찰 ② 여행 및 출장 ⑤ 별거(가정분화) ⑧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 ⑨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3급 ⑩ 기타						가구주성명			
	② 아니오			대리응답자									
	성명			가구원번호									
주소지	행정코드									_____시·도 _____구·시·군 _____동·읍·면			
※ 비동거가구원은 거주하는 연주소를 기재함	상세주소	_____통·리 _____번지 _____호 (_____아파트 _____동 _____층 _____호) ☎ (_____) _____ - _____											
조사표완료 소요시간		총 _____분		총방문횟수		총 _____회							
1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 미완사유코드						
2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⑥ 비해당(완료) ① 늦은 귀가 ② 장기출타 ③ 부재중(원인미파악) ④ 일부문항 미완 ⑤ 조사거부						
3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⑥ 뇌병변장애 ⑦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1,2급 ⑧ 사망 ⑨ 기타						
4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최종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조사원 이름		지도원 확인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지도원		(인)				

I. 전반적인 사회적 · 정치적 인식과 태도

다음은 우리 사회의 사회계층과 소득분배와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문 1) 귀하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어떤 종류의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어떤 그림이 현재의 한국 사회에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로축이 사람 수, 세로축이 계층을 의미합니다.)

☐


- ① 부자가 약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중간층이 거의 없는 사회
- ② 부자가 극소수이고 하층으로 갈수록 사람이 많아져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
- ③ 가난한 사람이 중간층보다 적고, 부자가 극소수인 사회
- ④ 중간층이 대다수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
- ⑤ 부자가 많고 하층으로 갈수록 인구가 줄어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

문 2) 귀하는 아래의 그림 중에서 한국 사회가 어떠한 사회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로축이 사람 수, 세로축이 계층을 의미합니다.)

☐


- ① 부자가 약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중간층이 거의 없는 사회
- ② 부자가 극소수이고 하층으로 갈수록 사람이 많아져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
- ③ 가난한 사람이 중간층보다 적고, 부자가 극소수인 사회
- ④ 중간층이 대다수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
- ⑤ 부자가 많고 하층으로 갈수록 인구가 줄어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

문 3) 우리나라는 소득이나 재산에 있어서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소득이나 재산이 평등할수록 ①로, 불평등할수록 ⑦로 기입해 주십시오.)

☐


문 4) 귀하는 다음 각각의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 ㉠~㉣ 항목별로 각각 작성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선택할 수 없음
㉠ 우리나라는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 5) 귀하는 다음 각각의 항목들이 우리사회의 빈곤 원인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항목별로 각각 작성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중요함	약간 중요함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 개인적인 절약과 적절한 가계(돈)관리 부족	①	②	③	④
㉡ 개인적인 동기와 스스로의 노력 부족	①	②	③	④
㉢ 개인적인 능력(타고난 재능)의 부족	①	②	③	④
㉣ 개인적인 책임감 및 자기규율의 부족(음주, 도박 등)	①	②	③	④
㉤ 개인적인 질환(질병)과 신체적 장애	①	②	③	④
㉥ 개인적인 학력수준의 미흡	①	②	③	④
㉦ 기업과 산업에서의 낮은 임금	①	②	③	④
㉧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의 부족	①	②	③	④
㉨ 좋은 일자리 공급의 미흡	①	②	③	④
빈곤층 및 일부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	①	②	③	④
㉩ 개인적인 불행과 불운(불우한 가족배경 등)	①	②	③	④

다음은 정부의 역할에 대한 평가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문 6) 다음에 열거된 각 영역의 정부지출이 늘기를 바라는지 혹은 줄어든기를 바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단, '훨씬 더 많이'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 이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 ㉠~㉨ 항목별로 각각 작성해 주십시오.)

항목	훨씬 더 많이 지출	좀 더 지출	현재 수준으로 지출	조금 덜 지출	훨씬 덜 지출	선택할 수 없음
㉠ 환경	①	②	③	④	⑤	⑥
㉡ 건강보험 및 보건	①	②	③	④	⑤	⑥
㉢ 국민연금(기초연금)	①	②	③	④	⑤	⑥
㉣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 주거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 국방	①	②	③	④	⑤	⑥
㉦ 치안 및 사회질서 유지	①	②	③	④	⑤	⑥
㉧ 빈곤층 생활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 노인 생활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 장애인 생활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 아이를 키우는 가족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 청년 사회활동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 외국인주민의 권리보장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실업급여)	①	②	③	④	⑤	⑥
㉮ 문화와 예술	①	②	③	④	⑤	⑥
㉯ 정부행정업무	①	②	③	④	⑤	⑥
㉰ 양성평등정책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다음은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문 7) 사회복지를 늘리면 국민들의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 ① 매우 그렇다 | ⑤ 대체로 그렇지 않다 |
| ② 그렇다 | ⑥ 그렇지 않다 |
| ③ 대체로 그렇다 | ⑦ 전혀 그렇지 않다 |
| ④ 보통이다 | |

문 8) 귀하는 성장과 분배 중에서 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분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①로, 분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④로 기입해 주십시오.)

☐

- ① ————— ② ————— ③ ————— ④
- ① 성장만이 중요하다
 ② 분배도 중요하나, 성장이 보다 중요하다
 ③ 성장도 중요하나, 분배가 보다 중요하다
 ④ 분배만이 중요하다

문 9) 귀하는 다음 각각의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 ㉠~㉨ 항목별로 각각 작성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줄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빈곤층은 대부분 게으르다.	①	②	③	④	⑤
㉤ 복지는 전국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노동능력이 있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최소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부모를 모실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	①	②	③	④	⑤
㉧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은 최소한의 서비스로 축소시키고, 나머지는 각자 민간의료보험을 이용해서 해결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대학교육까지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복지를 제공하는 여러 부문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를 묻는 질문입니다.

문 10) 귀하는 우리나라 정부가 사회정책과 관련된 다음의 각 정책영역에서 얼마나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 항목별로 각각 작성해 주십시오.)

정부의 사회정책	매우 잘하고 있다	잘 하고 있는 편이다	보통/ 그저 그렇다	잘 못하는 편이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 아픈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 노인들이 적절한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①	②	③	④	⑤
㉣ 청년들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위한 지원	①	②	③	④	⑤
㉤ 질 높고 충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 빈곤 예방 및 감소	①	②	③	④	⑤
㉦ 실업에 대한 대응	①	②	③	④	⑤
㉧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것	①	②	③	④	⑤
㉨ 모두가 위생적이고 적절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 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교육	①	②	③	④	⑤
㉪ 외국인주민의 노동권 및 시민권을 보장하도록 지원하는 것	①	②	③	④	⑤

II. 복지자원 및 대상범위

다음은 세금부담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오늘날 한국의 세금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세금은 소득세, 소비세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세금을 의미합니다. 단, 사회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문 11) 귀하는 다음 각 소득계층이 **현재 내는 세금의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항목별로 각각 작성해 주십시오.)

소득계층	지나치게 높다	꽤 높다	적절한 편이다	꽤 낮다	너무 지나치게 낮다	선택할 수 없음
㉠ 고소득층	①	②	③	④	⑤	⑥
㉡ 중간층	①	②	③	④	⑤	⑥
㉢ 저소득층	①	②	③	④	⑤	⑥

문 12) 나보다 돈을 많이 벌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① 매우 그렇다 | ⑤ 대체로 그렇지 않다 |
| ② 그렇다 | ⑥ 그렇지 않다 |
| ③ 대체로 그렇다 | ⑦ 전혀 그렇지 않다 |
| ④ 보통이다 | |

문 13)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

- | | |
|------------|------------|
| ① 매우 찬성한다 | ⑤ 대체로 반대한다 |
| ② 찬성한다 | ⑥ 반대한다 |
| ③ 대체로 찬성한다 | ⑦ 매우 반대한다 |
| ④ 보통이다 | |

문 14) 귀하는 국가가 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서비스 이용 요금을 내서
 ②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서
 ③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서
 ④ 기업이 세금, 기부금 등을 내서
 ⑤ 종교단체 등이 기부금 등을 내서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문 15)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의료, 연금 등의 사회보험이나 육아나 양로와 같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과 가난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어느 방안으로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옳다고 생각할수록 ①로,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옳다고 생각할수록 ⑤로 기입해 주십시오.)

문 17) 귀하는 개인적으로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① 매우 관심이 있다	④ 별로 관심이 없다
② 상당히 관심이 있다	⑤ 전혀 관심이 없다
③ 다소 관심이 있다	⑥ 선택할 수 없음

문 18) 귀하는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 또는 불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④ 다소 불만족
② 다소 만족	⑤ 매우 불만족
③ 만족도 불만족도 아니다	⑥ 선택할 수 없음

문 19) 귀하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진보적	④ 다소 보수적
② 다소 진보적	⑤ 매우 보수적
③ 중도	⑥ 선택할 수 없음

1-4 조사항목의 체계

□ 조사영역

조사표 구분		조사영역		
가구용 (유형1,2)	공동조사영역 (1~3차)	I. 가구일반사항 II. 건강 및 의료 A III. 경제활동상태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V. 의료 B VI. 주거	VII. 생활비 VIII. 소득 IX. 부채, 이자, 주관적 최저생계비 X. 재산 XI. 생활여건 XII. 국민기초생활보장	XIII.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V.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VI.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VII. 가족
	4차년도 변경영역	XII-1. 근로장려세제(추가)		
	6차년도 변경영역	XII-2. 희망키움통장(근로소득장려금)(추가)		
	7차년도 변경영역	XII-2. 희망키움통장(근로소득장려금)(삭제) XII-2. 가구의 경제상황 및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 및 전망(추가)		
	8차년도 변경영역	XII-2. 가구의 경제상황 및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 및 전망(삭제)		
	11차년도 변경영역	XII-1. 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 2015년 7월 이후 기준)(추가)		
	12차년도 변경영역	XII. 국민기초생활보장(2015년 7월 이전 기준)(삭제)		
가구원용 (유형3,4)	1차년도 조사영역	A.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수급 B. 근로	C. 생활실태·만족 및 의식 D.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	E.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F. 개인사
	2차년도 변경영역	F. 개인사(‘유형3:가구원용’에서 삭제, ‘유형4:신규가구원용’에만 포함)		
	3차년도 변경영역	F. 교육(‘유형4:신규가구원용’에 추가)		
부가 조사	아동용 (1,4,7, 10,13, 16차)	1차년도 조사영역	A. 나의 학교생활 B. 나의 생각과 행동	C. 우리 부모님 D. 나의 친구 E. 나와 나의 가족
		4차년도 변경영역	E. 나와 나의 가족 → F. 나의 건강 및 생활 G. 나의 아르바이트 경험 및 활동(추가) H. 나의 진로(추가)	
		7차년도 변경영역	A. 현재상태(추가)	
	복지인식 (2,5, 8,11, 14차)	2차년도 조사영역	I. 전반적인 사회적·정치적 인식과 태도	II. 복지자원 및 대상범위
		5차년도 변경영역	III. 정치참여와 성향(추가)	
	장애인 (3, 6, 9, 12, 15차)		(공통) 장애 원인 및 상황 (공통II) 일상생활	(개별I) 미취학 아동 설문 -만0세~초등 입학 이전 (개별II) 학생설문 -초등학생~고등학생
			(개별III) 성인설문 -만 18~65세 미만 (개별IV) 어르신설문 -만 65세 이상	

□ 조사주제별 구성

주제	세부 주제	항목 포함 영역
1. 가구원 배경 및 개인사	1) 가구원 일반 사항	가구용 I. 가구 일반 사항 가구원용 F. 교육
	2) 부모 세대	가구원용 G. 개인사
	3) 개인사	가구원용 G. 개인사
2. 근로활동	1) 직업 이력	가구원용 G. 개인사
	2) 경제활동 상태	가구용 III. 경제활동 상태 가구원용 B. 근로
	3) 고용지원 프로그램	가구원용 B. 근로
3. 경제 상황	1) 소득	가구용 VIII. 소득
	2) 지출 및 저축	가구용 VII. 생활비, X. 재산
	3) 재산 및 부채	가구용 IX. 부채 및 이자, X. 재산
	4) 기초생활	가구용 XI. 생활 여건
4. 가구 여건 (복지 욕구)	1) 보육, 교육	가구용 XV. 아동 가구의 복지 서비스 이용
	2) 건강 및 의료	가구용 II. 건강 및 의료 A, V. 의료 B
	3) 주거	가구용 VI. 주거
	4) 가족 관계	가구용 XVIII. 가족 가구원용 E. 생활 습관, 가족 관계 및 정신건강
	5) 기타 가구 여건	부가조사. 아동 부가조사(1·4·7·10·13·16차) 장애인 부가조사(3·6·9·12·15차)
5. 사회보장 가입 및 수급 현황	1) 사회보험	가구용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가구원용 A.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수급
	2) 공공부조	가구용 I. 가구 일반 사항(기초보장수급 형태) XII. 국민기초생활보장(1~6월) XII-1. 국민기초생활보장(7~12월) XII-2. 근로(자녀)장려세제
	3) 사회복지 서비스	가구용 XIII. 가구의 복지 서비스 이용 XIV. 노인 가구의 복지 서비스 이용 XV. 아동 가구의 복지 서비스 이용 XVI. 장애인 가구의 복지 서비스 이용 부가조사. 장애인 부가조사(3·6·9·12·15차)
6. 기타	1) 기타 생활 여건 및 사회적 관계망	가구원용 C. 생활실태·만족 및 의식 D.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
	2) 생활 습관 및 정신건강	가구원용 E. 생활 습관, 가족 관계 및 정신건강
	3) 복지·사회·정치 문제 인식	부가조사. 복지 인식 부가조사(2·5·8·11·14·17차) 가구원용 D.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성역할)

□ 가구용 설문 주요항목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비고
I. 가구일반 사항	1) 가구원 수(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한 가구원의 수)	2021년 1년간
	2) 가구원 일반 사항 -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장애 종류 및 등급, 혼인 상태, 종교, 동거 여부	전체 가구원 대상
	3) 가구 일반 사항 - 가구 형태: 단독 가구, 모자·부자 가구, 소년·소녀가장 가구, 기타 - 기초보장 수급 형태: 일반 수급, 조건부 수급, 특례 가구 등 - 의료급여 수급 형태: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국가유공자 ※ 기초보장 및 의료급여 수급 형태 세분화: 가구원 전부 수급, 가구원 중 일부 수급	2021. 12. 31. 기준
II. 건강 및 의료 A	1) 건강 상태	2021. 12. 31. 기준 전체 가구원 대상
	2) 의료기관 이용 및 주요 병명 - 외래진료 횟수, 입원 횟수 및 입원 일수, 병원에 입원한 주요 이유,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형태, 건강검진 횟수, 만성질환, 주요 병명, 12월 31일 기준 민간의료보험 가입 건수	2021년 1년간 전체 가구원 대상 2021. 12. 31. 기준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비고
III. 경제활동상태	1) 근로 능력 정도 - 근로 능력 정도, 근로 무능력 사유	2021. 12. 31. 기준 만 15세 이상 가구원
	2) 경제활동 참여 상태 - 2021년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 - 2021. 12. 31. 기준 경제활동 참여 상태	
	3) 취업자 일자리 특성 - 고용 관계, 근로시간 형태, 근로 계약 기간 설정 여부, 근로 지속 가능성 및 불가능 사유, 업종, 직종, 사업장 규모	
	4) 미취업자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1) 공적연금 가입 - 가입 형태, 가입한 연금제도, 가입 종별, 국민연금 납부 여부, 미납 유형, 납부 예외 사유 및 기간, 미납 이유 및 기간, 미가입 이유	전체 가구원 대상 (다만 만 15세 미만 가구원 등 해당 제도의 적용 제외 대상은 '비해당'으로 기입)
	2)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여부 - 산재보험 가입 여부, 고용보험 가입 여부	
	3) 퇴직(연)금 가입 - 퇴직금 적용 여부, 퇴직연금 가입 여부	
	4) 개인연금 가입 여부	
	5)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등의 가입 여부	
V. 의료 B	1) 건강보험 - 공적 건강보험 가입 여부, 직장·지역 가입 여부, 건강보험료 미납 경험 여부, 미납 사유, 미납 기간, 건강보험 이용 시 문제점	2021. 12. 31. 기준 2021년 1년간
	2) 의료급여 - 의료급여 수급 여부 및 종류, 의료급여 이용 시 문제점	
	3) 민간의료보험 12월 보험료	
VI. 주거	1) 이사 경험 여부	2021년 1년간
	2) 주택 유형 및 주거 위치, 주거 점유 형태	2021.12.31. 기준
	3) 주택 구입 - 주택 가격(보증금), 주택 비용 마련 방법, 지난 1년간 주택 관련 총부채 원금 상환액, 12월 31일 기준 주거 관련 부채액, 연체 횟수	2021. 12. 31. 기준 2021년 1년간
	4) 주택 구조·성능·환경, 주거시설 - 주택 재질, 방음, 난방, 오염,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 여부 등 - 방 개수, 주거면적, 상하수도·부엌·화장실 등 주거시설의 종류 및 사용 형태	2021. 12. 31. 기준
	5) 주거복지사업 이용 경험 -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전세자금 융자 지원, 저소득층 월세 지원, 주택 구입 자금 지원, 기타 주거복지 관련 사업 이용 경험	2021년 1년간
VII. 생활비	1) 비목별 생활비 - 식목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의류·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2021년 1년간 월평균액
	2) 사적이전지출 - 비동거 가구원에게 보낸 현금과 현물(현금 환산액) - 가구원이 아닌 부모·자녀 등에게 제공한 현금과 현물(현금 환산)	
	3) 세금 및 사회보장분담금	
	4) 총생활비: 월평균 생활비	
VIII. 소득	1) 종사상 지위별 가구원 근로소득 - 만 15세 이상 가구원의 2021년 1년간 경제활동, 상용근로자 총급여액, 임시·일용근로자 총급여액, 고용주·자영자 순소득 및 전입소득, 농림축산업 경영주 경지 규모, 자가소비액, 판매수입, 이전소비액, 잡수입, 총비용, 순소득, 어업 경영주 수산물 자가소비액, 판매수입, 이전소비액, 잡수입, 총비용, 순소득, 기타근로소득	2021년 1년간 총액
	2) 원천별 가구 소득(근로소득 제외) - 재산소득, 사회보험, 민간보험, 기타정부보조금, 기타소득, 환급금, 사적이전소득(가구원이 아닌 부모·자녀에게 받은 현금과 현물, 9개월 미만 동거 가구원의 현금과 현물 소득, 그 밖에 민간부문에서 받은 현금과 현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개월 수 및 급여액	
IX. 부채, 이자	1) 부채 - 부채 형태(금융기관 대출, 일반 사채, 카드 빚, 전세 보증금, 외상 및 미리 탄 갯돈 등)별 금액	2021. 12. 31. 기준
	2) 이자 - 부채에 대해 지출한 이자 연간 총액(주거 관련 부채의 이자, 주거이자 제외한 기타 이자)	2021년 1년간 총액
	3) 부채 용도 - 항목별 부채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생활비, 주택 관련 자금, 교육비, 의료비, 빚 갚음, 기타)	2021. 12. 31. 기준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비고
X. 재산	1) 부동산 - 소유 부동산(주택, 주택 외 건물, 토지 등)별 금액 - 점유 부동산(전세 보증금 준 것, 그 밖의 권리금 등)별 금액	2021. 12. 31. 기준
	2) 동산 - 보유 농기계 종류 및 가격, 사육 농축산물 종류 및 가격	
	3) 금융재산 - 금융재산별(예금, 적금, 주식·채권·펀드, 타기 전 부은 갯돈, 기타) 금액	
	4) 기타 재산 - 비영업용 자동차 보유 대수 및 가격 - 기타 재산(회원권, 영업용 자동차 등 운송·생계 수단, 귀금속 등)별 총액	
XI. 생활 여건	1) 박탈 지표 - 집세 미납, 공공금 미납, 세금 미납, 교육육비 미납, 난방 못함, 의료서비스 이용 못함, 신용불량 경험 여부,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한 급여 자격 정지 여부	2021년 1년간
	2) 식생활 보장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식료품 미구입 및 균형 잡힌 식사 불가 빈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절식 및 결식 경험 여부 등	

□ 가구원용 설문 주요항목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비고
A.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수급	1) 공적연금 - 공적연금 수급 여부·종류, 국민연금 급여 종류, 일시금, 연금 수급기간 및 금액, 특수직역연금 급여 종류, 일시금, 연금 수급기간 및 금액, 보훈연금, 기타연금 일시금, 연금 수급기간 및 금액	2021년 1년간
	2) 고용보험 - 고용보험 수급 여부, 급여 종류, 수급 개월 수 및 총현금급여액	
	3) 산재보험 - 산재보험 수급 여부, 급여 종류, 일시금 총액, 연금 수급 개월 수 및 총현금급여액	
	4) 개인연금 - 개인연금 수급 여부, 일시금 총액, 연금 수급 개월 수 및 총급여액	
	5) 퇴직금 및 퇴직보험 - 퇴직금 수급 여부, 일시금 총액, 보험금 수급 개월 수 및 총급여액	
B. 근로	1) 근로 유형	2021. 12. 31. 기준
	2) 취업자 - 실직 경험 여부, 실직 사유, 현 직장 근속 연수, 근로 개월 수,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 (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 및 월평균 임금, (불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일한 날 평균 근로시간 및 시간당 임금, 노조 가입 여부, 정부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여부	2021. 12. 31. 기준 2021년 1년간
	3) 미취업자 -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여부, 총 구직 기간, 구직상의 어려움, 희망임금, 지난 1년간 구직활동 여부, 지난주 알맞은 일자리 유무,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정부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여부	
	4) 직업기술 -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의 종류 및 해당 직종	
C. 생활실태 만족 및 의식	1) 생활실태 - 인터넷 사용 여부, 유해 환경 근로 경험 여부	2021년 1년간
	2) 생활 만족 - 건강 상태, 가족의 수입, 주거환경, 가족 관계, 직업, 사회적 친분관계, 여가 생활 만족도 등	
D.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	1) 사회적 자본 및 지역사회 활동 - 신뢰, 지역사회 이웃에 대한 도움 의사, 비선호 시설 수용 정도(3년 주기) - 기부 혹은 자원봉사활동 여부, 연간 기부액, 자원봉사활동 연간 횟수	2021년 1년간
	2) 부모님과의 접촉 정도 - 비동거 부모님의 유무, 왕래 횟수, 전화 통화 횟수	
	3) 성역할에 대한 인식 - 여성전일제와 가족 일상생활 양립,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노동과 가족 관계, 전업주부 역할과 소득 활동 역할 간의 중요성, 남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남녀 소득 기여, 가정생활에서의 스트레스, 가족에 대한 책임, 가족 돌봄으로 인한 직장생활의 어려움	2021년 조사일 현재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비고
E. 생활 습관, 가족 관계, 정신건강	1) 생활 습관 및 출산 경험 여부 - 흡연, 음주, 음주로 인한 문제, 출산 경험 여부	2021년 조사일 현재 2021년 1년간
	2) 정신건강 - 우울감, 자아 존중감	2021년 조사일 현재
	3) 가족 관계 - 부부 폭력 경험, 부부 폭력 가해 경험, 가족생활, 부부 관계, 자녀와의 관계, 자녀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2021년 1년간, 2021년 조사일 현재
	4) 자살 관련 -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 시도	2021년 조사일 현재
	5) 행복 지수	2021년 조사일 현재
F. 교육 (신규가구원용)	1) 최종 학력	
	2) 출신 고등학교의 유형 및 소재지 - 일반계(일반) 등 열일곱 가지 유형, 소재지(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3) 출신 대학의 전공계열 및 소재지 - 인문계열 등 열두 가지 유형, 소재지(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G. 개인사 (신규가구원용)	1) 아동기 - 성장 지역, 경제생활 상태, 조실부모·부모 이혼·학업 중단·친척집 성장 경험 여부 및 연령	
	2) 부모님 - 교육 수준, 직업, 부모로부터의 상속·증여 경험 및 경제적 도움 정도	
	3) 직업 이력 - 만 15세 이후 첫 직장, 이후 가장 최근까지 6개 주요 직장의 근무기간 및 고용 형태	
	4) 직업기술 - 보유 직업기술(1~3순위), 보유 직업기술 직종	
	5) 다문화 가정 여부 - 결혼 혹은 근로 등의 사유로 다른 나라에서 한국으로 왔는지 여부	

□ 부가조사(아동)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A. 현재상태	- 현재 상황(1문항)
B. 나의 학교생활	- 심리사회적 학교환경(9문항)
	- 학교성적(전과목 평균 등 4문항)
	- 학업 스트레스(4문항)
	- 학교유대감(6문항)
C. 나의 생각과 행동	- 자아존중감(13문항)
	- 우울/불안(14문항)
	- 주의집중(11문항)
	- 위축(9문항)
	- 비행(13문항)
	- 공격성(19문항)
	- 자살관련(8문항)
	- 주관적 행복감(6문항)
	- 음주/흡연(5문항)
	- 비행경험(8문항)
D. 우리 부모님	- 성추행 피해경험(2문항)
	- 학교폭력 피해경험(6문항)
	- 방과 후 생활(4문항)
	- 부모여부(1문항)
	- 부모와의 관계(8문항)
E. 나의 친구	- 신체적 학대(1문항)
	- 정서적 학대(3문항)
	- 방임(4문항)
	- 친구들과의 접촉 및 친구애착(6문항)
	- 친구의 또래애착(4문항)
	- 친구의 비행경험(6문항)
	- 친구의 처벌 및 경찰서에 잡혀간 경험(2문항)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F. 나의 건강 및 생활	- 건강상태와 키, 몸무게(3문항)
	- 의논상대(1문항)
	- 전학경험(2문항)
	- 짧은 경험(1문항) - 하루 TV 시청시간 및 인터넷 사용시간(2문항) - 인터넷중독(20문항)
G. 나의 아르바이트 경험 및 활동	- 아르바이트 경험(13문항) - 참여 활동 및 서비스 이용경험 및 횟수(26문항)
H. 나의 진로	- 희망 직업(1문항) - 직업 계기(1문항) - 희망 직업 획득가능성(1문항) - 진로성숙도(21문항)

□ 부가조사(복지인식)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비고
I. 전반적인 사회적·정치적 인식과 태도	- 사회 계층 구조 및 소득 격차에 대한 인식 - 제도 영역별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 -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에 대한 인식 - 복지 영역별 운영 및 재정 부담 주체에 대한 인식	조사일 현재
II. 복지 자원 및 대상 범위	- 세금 수준 및 부담에 대한 인식 - 세금 사용 영역 및 방식에 대한 인식	조사일 현재
III. 정치 참여와 성향	- 정치 참여 정도 및 정치 성향에 대한 인식	조사일 현재

□ 부가조사(장애인)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공통I) 장애 원인 및 상황	- 장애 원인, 장애시작시점, 현재의 장애상태 - 장애의 현재상태 및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 장애와 관련된 치료현황 -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 - 외출정도 및 외출하지 않는 이유
(공통II) 일상생활	-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정도 - 일상생활 하는데 도움여부 및 도움 준 사람 -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이용의향 및 비용부담 여부 - 일상생활 수행능력(기본적·수단적) - 일상생활에서의 도움 정도, 물질적 지원 및 보살핌 횟수
(개별I) 미취학 아동 설문 (만 0세~초등학교 입학 이전)	- 미취학 아동의 심리 - 장애아동 관련 서비스 필요여부, 이용여부 - 지역혁신사업에 대한 이용의향 및 비용부담 여부 - 보육시설 이용과 관련된 질문
(개별II) 학생 설문 (초등학교~고등학교)	- 학생의 심리상태 - 장애 관련 서비스 필요여부, 이용여부 - 심리상태 - 특수교육보조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향 및 비용부담 여부 - 지역혁신사업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향 및 비용부담 여부 - 학교생활에 관련된 질문
(개별III) 성인 설문 (만 18~65세 미만)	- 장애 관련 서비스 필요여부, 이용여부 - 심리상태 - 소득활동여부 - 근로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향 및 비용부담 여부
(개별IV) 어르신 설문 (만 65세 이상)	- 사회복지 서비스 필요여부, 이용여부 - 심리상태 - 소득활동여부 - 월평균 용돈(생활비 제외) - 노인돌봄미(바우처)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향 및 비용부담 여부

1-5 주요 항목의 조사목적

□ 항목별 조사목적 등이 있는 경우

-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 1차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공적연금 가입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공적연금과 함께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의 가입 여부와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사회보험 제도가 보장하고 있는 인구규모 및 보장성 정도 등을 파악하고자 함.
- 건강 및 의료
 - 조사대상가구의 가구원들의 건강상태, 의료기관 이용정도, 만성질환 및 주요 병명, 건강검진 횟수, 건강보험 및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 건강보험료 부담정도의 실태를 파악하여, 가구 및 개인특성별 의료관련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함.
- 경제활동참여 및 근로
 - 조사대상가구의 가구원들의 주된 경제활동상태, 고용관계, 근로시간형태, 근로지속가능성, 업종 및 직종, 사업장 규모를 파악하고자 함. 비경제활동인 경우 그 사유를 파악하고 미취업자에게는 4주간과 1년간의 구직활동 여부 등을 파악하고자 함. 그 밖에 정부의 고용지원프로그램 참여 여부 등을 조사하여 경제활동의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자함
- 주거
 - 조사대상가구의 주거형태 및 주택관련 부채 정도, 주거시설의 구조·성능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주거관련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함.
- 소득, 지출, 부채 및 이자, 재산
 - 조사대상가구의 가정생활을 위한 지출, 부채, 이자를 파악하고, 가구원들의 소득, 재산 등을 파악하여 가구경제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함
- 생활여건
 - 조사대상가구가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생계부문에서 결핍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며,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식품부족, 결식, 불량한 식사로 인한 영양섭취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자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 2015년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가구의 욕구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고, 최저생계비가 아닌 중위소득(상대적 빈곤선)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및 보장이 이루어지는 '맞춤형급여' 체계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 근로(자녀)장려세제
 - 근로장려세제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단위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이다.

○ 생활실태 만족 및 의식

- 조사대상 가구원들의 정보화의 접근성 정도, 노동환경에 대한 유해여부와 건강, 가족의 수입, 주거환경,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친분관계, 여가생활 등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생활 전반적인 주관적 만족 정도 상태를 파악하고자 함.

○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

- 조사대상가구들의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여부, 함께 살고 있지 않는 부모님과 왕래 정도를 파악하여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고자함.

○ 사회복지서비스

- 전체 가구 및 특정 인구사회학적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에 대하여 조사함. 가구 및 가구원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서비스 의존도 및 서비스 효과성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복지서비스 형성 및 평가에 기여하고자 조사를 시행함

○ 아동부가조사

-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부가조사임. 아동의 학교생활, 자신에 대한 생각과 행동, 또래관계, 진로 등에 대하여 설문함으로써 아동의 심리·사회적 환경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 복지인식부가조사

-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인식에 관한 부가조사로 3년마다 실시하는 부가조사임. 개인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및 그 변화에 따른 개인의 복지인식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현재 한국사회 및 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현재 시행중인 복지정책 설계의 보완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향후 성공적인 복지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 기초 자료가 됨

○ 장애인부가조사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가조사로 3년마다 실시하는 부가조사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장애인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의 변화 및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향후 복지서비스 이용 성향 및 그 변화를 파악함. 또한 연구자에게 개별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가구원으로 한 가구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향후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가 됨

2. 적용 분류체계

2-1 분류체계 개요 및 내용

□ 통계의 수집과 집계에 적용하고 있는 분류체계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KCD)는 대한민국에서 의무기록자료 및 사망원인통계조사 등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모든 형태의 보건 및 인구동태 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질병 및 기타 보건문제를 분류하는데 이용하기 위해서 설정한 것임.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하는 통계를 작성할 때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일관성 및 비교성있는 자료를 확보함.

- 희귀난치성 질환 분류코드(144개)

구분	대 상	구분	대 상
1	만성신부전의 경우		- 인대사장애(E83.3)
	가. 혈액투석을실시하는사람		- 만성성염증(E84)
	나. 복막투석을실시하는사람		- 아밀로이드증(E85)
	다. 신장이식을받은사람	4	주. 혈청검사양성인류마티스관절염(M05)
2	혈우병(D66~D68.4)		추. 건선성및장병증성관절병증(M07.1~M07.3)
3	장기이식의 경우		쿠. 연소성관절염(M08.0 ~ M08.3)
	가. 간이식을받은사람		투. 전신결합조직장애
	나. 췌장이식을받은사람		- 결절성다발동맥염및관련병태(M30.0 ~ M30.2)
	다. 심장이식을받은사람		- 기타괴사성혈관병증(M31.0 ~ M31.4)
4	아래 상병의 경우		- 현미경적다발동맥염(M31.7)
	가. 결핵		- 전신성홍반루프스(M32)
	- 다제내성결핵(U88.0),광범위약제내성결핵(U88.1)		- 피부다발근육염(M33)
	- 결핵(A15~A19)		- 전신경화증(M34)
	나. 중추신경계통의비정형바이러스감염(A81)		- 결합조직의기타전신침습(M35.0 ~ M35.7)
	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 ~ B24)		푸. 강직성척추염(M45)
	라. 거대세포바이러스병(B25)		후. 진행성골화섬유형성이상(M61.1)
	마. 크립토콕스증(B45)		그. 뼈의파열[변형성골염](M88)
	바. 뇌하수체양성신생물(D35.2)		느. 복합부위통증후군1형(M89.0)
	사. 효소장애에의한빈혈		드. 재발성다발연골염(M94.1)
	- 포도당6인산탈수소효소결핍에의한빈혈(D55.0)		르. 신장성요붕증(N25.1)
	- 해당효소의장애에의한빈혈(D55.2)		므. 신생아의호흡곤란(P22)
	아. 지중해빈혈(D56)		브. 신경계통의선천기형
	자. 용혈-요독증후군(D59.3)		- 댄디-워커증후군(Q03.1)
	차. 발작성야간해모글로빈뇨증(D59.5)		- 무뇌회증(Q04.3)
	카. 재생불량성빈혈(D60,D61)		- 분열뇌증(Q04.6)
	타. 선천성적혈구생성빈혈(D64.4)		- 이분척추(Q05)
	파. 혈소판관련질환		- 척수이개증(Q06.2)
	- 정성적혈소판결함(D69.1)		- 아놀드-키아리증후군(Q07.0)
	- 에반스증후군(D69.30)		스. 순환기계통의선천기형
	- 상세불명의혈소판감소증(D69.6)		- 심방실및연결의선천기형(Q20.0 ~ Q20.2)
	하. 무과립구증(D70)		- 단일심실(Q20.4)
	거. 다형핵호중구의기능장애(D71)		- 아이젠먼거복합·증후군(I27.8),아이젠먼거결손(Q21.8)
	너. 림프세망및세망조작구조의참여를동반한기타명시된질환		- 폐동맥판폐쇄(Q22.0)
	(D76.1, D76.2, D76.3)		- 형성저하성우심증후군(Q22.6)
	더. 면역결핍증및사르코이드증(D80~D84,D86)		- 대동맥판및승모판의선천기형(Q23)
	러. 내분비샘의장애		- 관상혈관의기형(Q24.5)
	- 말단거대증및뇌하수체거인증(E22.0)		- 폐동맥의폐쇄(Q25.5)
	- 고프로락틴혈증(E22.1)		- 대정맥의선천기형(Q26.0 ~ Q26.6)
	- 콜만증후군,쉬한증후군(E23.0)		으. 무설증(Q38.3)
	- 쿠싱증후군(E24)		즈. 담관의폐쇄(Q44.2)
	- 부신생식기장애(E25)		츠. 방광외반(Q64.1)
	- 부신의기타장애(E27.1,E27.2,E27.4)		크. 근육골격계통의선천기형및변형
	- 기타명시된내분비장애(레프리코니즘등:E34.8)		- 두개안면골형성이상(크루종병:Q75.1)
	머. 활동성구루병(E55.0)		- 하악안면골형성이상(Q75.4)
	버. 대사장애		- 관상골및척추의성장결손을동반한골연골형성이상(Q77)
	- 대사장애(E70 ~ E77)		서. 레트증후군(F84.2)
	- 레쉬-니한증후군(E79.1)		어. 중추신경계통에영향을주는전신위축(한팅톤병등:G10 ~ G13)
	- 기타포르피린증(E80.2)		저. 파킨슨병(G20)
	- 구리대사장애(윌슨병등:E83.0)		처. 진행성해상안근마비[스탈-리처드슨-올스제위스키](G23.1)
	커. 아급성괴사성뇌병증[리이](G31.81)		- 수포성유사천포창(L12.0)
	터. 다발성경화증(G35)		- 반흔성유사천포창(L12.1)
	퍼. 레녹스-가스토증후군(G40.4)		우. 후천성수포성표피분리증(L12.3)
	허. 간질지속상태(G41)		- 불완전골형성증(Q78.0)
	고. 발작수면및허탈발작(G47.4)		- 다골성섬유성형성이상(Q78.1)
	노. 멜커슨증후군(멜커슨-로젠탈증후군:G51.2)		- 골화석증(Q78.2)
	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2형(G56.4)		- 내연골증(Q78.4)
4	로. 다발신경병증	4	- 필레증후군(Q78.5)
	- 유전성운동및감각신경병증(샤르코-마리-투스병등:G60.0)		- 다발선천외골증(Q78.6)

구분	대 상	구분	대 상
	- 염증성다발신경병증(G61)		- 달리분류되지않은근육골격계통의
	- 달리분류된감염성및기생충성질환에서의다발신경병증(G63.0)		트. 치사성, 디스트로피성수포성표피박리증
	모. 중증근무력증및근육의일차성장애(G70,G71)		프. 선천기형
	보. 자율신경계통의기타장애(G90.8)		- 신경섬유종증 (비악성 : 폰 레클링하우젠병 : Q85.0)
	소. 척수공동증및연수공동증(G95.0)		- 결절성 경화증 (부르누이 병 등 : Q85.1)
	오. 기타망막장애		-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스타지-베버(-디미트리) 증후군, 폰 헤펠-린다우 증후군 (Q85.8)
	- 노년황반변성(삼출성)(H35.31)		- (이상형태증성)태아알코올증후군 (Q86.0)
	- 색소망막염(H35.51),스타르가르트병(H35.58)		- 주로 얼굴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증후군 (Apert, 골덴하증후군 등 : Q87.0)
	조. 일차성폐동맥고혈압(I27.0)		- 주로 단신과 관련된 선천기형 증후군 (프라더-윌리증후군 등 : Q87.1)
	초. 심근병증(I42.0 ~ I42.5)		- 루빈스타인-테이비증후군(Q87.2)
	코. 모야모야병(I67.5).		- 소토스증후군(Q87.3)
	토. 폐색성혈전혈관염[버거병](I73.1)		- 마르팡증후군(Q87.4)
	포. 랑뒤-오슬러-웨버병(I78.0)		흐. 염색체이상
	호. 버드-키아리증후군(I82.0)		- 다운증후군(Q90)
	구. 폐포단백질증(J84.0)		- 에드워즈증후군 및 파타우증후군 (Q91)
	누. 특발성폐섬유증(J84.18)		- 5번염색체단완의결손(Q93.4)
	두. 크론병[국한성장염](K50)		- 캐취22증후군,엔젤만증후군(Q93.5)
	루. 궤양성결장염(K51)		- 터너증후군(Q96)
	무. 일차성담즙성간경화증(K74.3)		- 클라인펠터증후군(Q98.0, Q98.1, Q98.2, Q98.4)
	부. 자가면역성간염(K75.4)		- 여린X증후군(Q99.2)
	수. 수포성장애		
	- 보통천포창(L10.0)		
	- 낙엽상천포창(L10.2)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법에 의거하여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국가 간의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제표준사업분류를 기초로 작성한 통계목적분류임.

대분류		중분류 (업종코드란에 기재함)		소분류
A	농업, 임업 및 어업 (01~03)	01	농업	■ 작물 재배업
				■ 축산업
				■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02	임업	■ 임업
B	광업(05~08)	03	어업	■ 어로 어업
				■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석탄 광업
				■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06	금속 광업	■ 철 광업
				■ 비철금속 광업
C	제조업(10~34)	07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 토사석 광업
				■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 광업 지원 서비스업
				■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	식료품 제조업	■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과일,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 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
				■ 곡물 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 기타 식품 제조업
				■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 알코올 음료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 담배 제조업
		12	담배 제조업	

대분류		중분류 (업종코드란에 기재함)		소분류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방직 및 가공사 제조업
				■ 식물 직조 및 식물제품 제조업
				■ 편조 원단 제조업
				■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봉제의복 제조업
				■ 모피제품 제조업
				■ 편조의복 제조업
				■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가죽, 가방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신발 및 신발 부분품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제재 및 목재 가공업
				■ 나무제품 제조업
				■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 기록매체 복제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 석유 정제품 제조업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비료, 농약 및 살균·살충제 제조업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화학섬유 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의약품 제조업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고무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 내화,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 1차 철강 제조업
				■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금속 주조업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반도체 제조업
				■ 전자 부품 제조업
				■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제조업
				■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 영상 및 음향 기기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 의료용 기기 제조업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광학 기기 제외
				■ 사진장비 및 광학 기기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 가정용 기기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대분류		중분류 (업종코드란에 기재함)		소분류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철도장비 제조업 ■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 악기 제조업 ■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35)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전기업 ■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 증기, 냉·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6	수도업	■ 수도업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6~39)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폐기물 수집, 운반업 ■ 폐기물 처리업 ■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41	종합 건설업	■ 건물 건설업 ■ 토목 건설업
F	건설업(41~42)	42	전문직별 공사업	■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 전기 및 통신 공사업 ■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 건설장비 운영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자동차 판매업 ■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
G	도매 및 소매업(45~47)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상품 중개업 ■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 ■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 생활용품 도매업 ■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 건축 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 기타 전문 도매업 ■ 상품 종합 도매업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종합 소매업 ■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 가전제품 및 정보 통신장비 소매업 ■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 연료 소매업 ■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 무점포 소매업

대분류		중분류 (업종코드란에 기재함)		소분류
H	운수 및 창고업(49~52)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철도 운송업 - 육상 여객 운송업 - 도로 화물 운송업 - 소화물 전문 운송업 - 파이프라인 운송업
				- 해상 운송업 -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 항공 여객 운송업 - 항공 화물 운송업
				- 보관 및 창고업 -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0	수상 운송업	
		51	항공 운송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55	숙박업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 기타 숙박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 음식점업 -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J	정보통신업(58~63)	58	출판업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60	방송업	- 라디오 방송업 - 텔레비전 방송업
		61	우편 및 통신업	- 공영 우편업 - 전기 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 자료 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 기타 정보 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64	금융업	각종 은행 및 저축기관, 유가증권 및 기타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기관, 여신 전문 금융기관 등
		65	보험 및 연금업	보험, 연금 기금 모금, 운영하는 산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금융 또는 보험 및 연금활동에 밀접히 관련되는 서비스업
L	부동산업(68)	68	부동산업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70	연구개발업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	전문 서비스업	- 법무관련 서비스업 -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광고업 -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 기타 전문 서비스업
		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수의업 - 전문 디자인업 - 사진 촬영 및 처리업 -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4~76)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 - 경비, 경호 및 탐정업 -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 운송장비 임대업 -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무형 재산권 임대업

대분류		중분류 (업종코드란에 기재함)		소분류
O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84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 외무 및 국방 행정
				■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
				■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서비스업(85)	85	교육 서비스업	■ 초등 교육기관
				■ 중등 교육기관
				■ 고등 교육기관
				■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일반 교습학원
				■ 기타 교육기관
				■ 교육 지원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86	보건업	■ 병원
				■ 의원
				■ 공중 보건 의료업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 기타 보건업
				■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서비스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96)	94	협회 및 단체	■ 산업 및 전문가 단체
				■ 노동조합
				■ 기타 협회 및 단체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97~98)	97	가구 내 고용활동	■ 가구 내 고용활동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99)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

자료: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 한국표준직업분류(제7차 개정)

-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직업관련 통계를 적성하는 모든 기관이 통일적으로 사용하여 통계자료의 일관성과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직업정보에 관한 국내통계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ILO의 국제표준직업분류(ISCO)를 기초로 작성되었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관리자	11. 공공 기관 및 기업 고위직	0111 의회 의원·고위 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원
		0112 기업 고위 임원
	12. 행정·경영 지원 및 마케팅 관리직	0121 행정 및 경영 지원 관리자
		0122 마케팅 및 광고·홍보 관리자
	13. 전문 서비스 관리직	0131 연구·교육 및 법률 관련 관리자
		0132 보험 및 금융 관리자
		0133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
		0134 문화·예술 관련 관리자
		0135 정보 통신 관련 관리자
		0139 기타 전문 서비스 관리자
	14.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0141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0149 기타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15.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	0151 판매 및 운송 관리자
		0152 고객 서비스 관리자
		0153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0159 기타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0211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전문가
		0212 인문 및 사회과학 전문가
		0213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시험원
	22.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022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전문가
		0222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0223 데이터 및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
		0224 정보 시스템 및 웹 운영자
		0225 통신 및 방송 송출 장비 기사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0231 건축·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0232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0233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0234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0235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0236 소방·방재 기술자 및 안전 관리원
		0237 환경공학·가스·에너지 기술자 및 시험원
		0238 항공기·선박 기관사 및 관제사
		0239 기타 공학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0241 의료 진료 전문가
		0242 약사 및 한약사
		0243 간호사
		0244 영양사
		0245 치료·재활사 및 의료기사
		0246 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
		0247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0248 종교 관련 종사자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0251 대학교수 및 강사
		0252 학교 교사
		0253 유치원 교사
		0254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0259 기타 교육 전문가
		0261 법률 전문가
	27.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0262 행정 전문가
		0271 인사 및 경영 전문가
	2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0272 금융 및 보험 전문가
		0273 상품 기획·홍보 및 조사 전문가
		0274 감정·기술영업및중개관련종사자
		0281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0282 학예사·사서 및 기록물 관리사
		0283 연극·영화 및 영상 전문가
		0284 시각 및 공연 예술가
		0285 디자이너
		028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31.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0287 식문화 관련 전문가
		0288 문화·예술 관련 기획자 및 매니저
		0311 행정 사무원
3 사무 종사자	32. 금융 사무직	0312 경영 관련 사무원
		0313 회계 및 경리 사무원
		0314 비서 및 사무 보조원
		0320 금융 사무 종사자
	33. 법률 및 감사 사무직	0330 법률 및 감사 사무 종사자
		0391 통계 관련 사무원
39.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0392 여행·안내 및 접수 사무원	
	0399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	
	41.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0411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0412 경호 및 보안 관련 종사자		
42.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0421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0422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0423 혼례 및 장례 종사자
	0429 기타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 종사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43.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0431	운송 서비스 종사자	
		0432	여가 서비스 종사자	
	44.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0441	조리사	
		0442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51. 영업직	0510	영업 종사자	
	52.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0521	매장 판매 종사자	
		0522	상품 대여 종사자	
	53.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	0531	통신 관련 판매직	
0532		방문 및 노점 판매 관련직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61. 농·축산 숙련직	0611	작물 재배 종사자	
		0612	원예 및 조경 종사자	
		0613	축산 및 사육 관련 종사자	
	62. 임업 숙련직	0620	임업 관련 종사자	
63. 어업 숙련직	0630	어업 관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1.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0710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72.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0721	섬유 및 가죽 관련 기능 종사자	
		0722	의복제조관련기능종사자	
	73.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0730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 종사자	
		0741	금형·주조 및 단조원	
		0742	제관원 및 판금원	
	74.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0743	용접원	
		0751	자동차 정비원	
		0752	운송장비정비원	
	75.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0753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0761	전기·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0762	전기공	
	7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0771	정보 통신기기 설치 및 수리원	
		0772	방송·통신장비 관련 설치 및 수리원	
	77.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0781	건설구조관련기능종사자	
		0782	건설관련기능종사자	
		0783	건축 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0784	채굴 및 토목 관련 기능 종사자	
	78.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0791	공예 및 귀금속 세공원	
		0792	배관공	
		0799	기타 기능 관련 종사자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81.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0811
	0812			음료제조관련기계조작원
0819	기타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원			
82.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0821		섬유 제조 및 가공기계 조작원	
	0822		직물·신발 관련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0823		세탁 관련 기계 조작원	
83.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0831		석유 및 화학물 가공 장치 조작원	
	0832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84.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0841		주조 및 금속가공 관련 기계 조작원	
	0842		도장 및 도금기 조작원	
	0843		비금속제품 생산기 조작원	
	0851		금속 공작 기계 조작원	
85.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0852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0853		자동 조립라인 및 산업용로봇 조작원	
	0854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0855		금속기계 부품 조립원	
8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0861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0862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0863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장치 조작원	
	0864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87. 운전 및 운송 관련직	0871 철도 및 전동차 기관사
		0872 철도운송 관련 종사자
		0873 자동차 운전원
		0874 물품 이동 장비 조작원
		087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0876 선박 승무원 및 관련 종사자
	88.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0881 상하수도 처리 장치 조작원
		0882 재활용 처리 및 소각로 조작원
	89.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0891 목재 및 종이 관련 기계 조작원
0892 인쇄 및 사진 현상 관련 기계 조작원		
0899 기타 기계 조작원		
9 단순노무 종사자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091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0921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0922 배달원
	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0930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0941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942 건물 관리원 및 검표원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0951 가사 및 육아 도우미
		0952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0953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0991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0992 계기•자판기 및 주차 관리 종사자	
	0999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	
A. 군인	A0. 군인	1001 장교
		1002 부사관
		1009 기타 군인

○ 아동부가조사

- 가장 원하는 직업 : 가구원의 직종 조사에 사용하는 직종코드는 대-중-소분류 체계를 사용하여 총 149가지의 직종으로 분류됨. 1, 4, 7차 아동부가조사에는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였으나, 아동을 대상으로 희망 직업을 조사하는 설문에 성인 직종코드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분류의 어려움이 있음. 이에 아동의 희망 직업에 대한 응답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총 26개의 직업군으로 분류하여 사용함.

(직종) 중분류 코드	아동부가조사 분류	아동부가 직업코드
11 공공 및 기업 고위직	공공 및 기업 고위직	1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연구직	2
	인문 및 사회과학 관련 연구직	3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대학교수 및 강사	4
	교사, 유치원 교사	5
22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6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7
24 보건,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8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9
	종교관련 종사자	10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법률전문가	11
	공무원	12
28 문화, 예술, 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연예인, 방송인	13
	언론인	14
	문화, 예술 관련 종사자	15
	운동선수	16
31 경영 및 회계 관련직	회사원	17
	광고 및 홍보전문가	18
32 금융 및 보험 관련직	금융 및 보험 관련직	19
87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20
51-53 영업 및 판매 관련직	영업 및 판매 관련직	21

(직종) 중분류 코드	아동부가조사 분류	아동부가 직업코드
94 경비 및 청소 관련직	경비 및 청소 관련직	22
42-4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관련직	미용, 숙박, 여행, 오락 관련직	23
44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24
61-63 농, 축산, 임업, 어업 관련직	농, 축산, 임업, 어업 관련직	25
기타		26

3. 조사표 구성

3-1 조사표 구성 관련 내·외부 전문가 회의

☐ 조사항목의 검토 결과

- 매해 조사 전 준비시기 동안 조사표 내용 및 설문 로직에 대한 검토와 수정보완사항을 논의하며, 논의 주체는 복지패널 연구진(1차), 원내협의회(2차),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공동의 운영위원회(3차)로 이루어짐. 필요시, 컨소시엄 외부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조사내용 관련 자문을 구하고 있음.

3-2 조사표 구성 관련 내·외부 전문가 회의 결과 반영 여부

☐ 17차 조사표 구성 회의

- 복지패널 연구진 회의(2021. 12 ~ 2022. 2.)
- 복지패널 1차 운영위원회(2022. 1. 20.)
- 복지패널 1차 원내협의회(2022. 1. 13.)
- 결과 반영
 - 매주 정례화된 복지패널 연구진 회의, 서울대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복지패널 원내협의회를 거쳐 최종 조사표를 확정함
 - 17차 조사표에는 아동부가조사 문항 일부, 종사상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문항 개발(비공개 변수), 3년 주기 문항의 복원 등이 적용되었으며, 그 외 문항은 패널 조사의 성격상 다른 변동 없이 그대로 조사함

3-3 첨부된 조사표에 수록된 사항

- 조사명, 조사목적, 국가승인통계로그, 작성승인번호
- 응답자 협조 요청 및 조사 협조에 대한 감사 인사
- 조사기관 명시, 응답자 비밀보호 정책 및 문의사항 연락처

4. 조사표 설계 및 변경 절차나 방법

☐ 조사표 및 연구수행 관련 제반 절차

- 한국복지패널(KOWEPS) 관리 및 운영은 기본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와의 컨소시엄을 기본으로 하며, 따라서 조사표와 같은 연구수행의 주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체계에 준한 의사결정 단계를 거치게 됨.
- (1차 단계) 각 연구진이 맡은 영역에 있어 설계 상의 변화가 있을 시, 1차적으로는 연구진

내부의 논의와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됨.

- (2차 단계) 1차적으로 연구진 내부 논의를 거친 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 현 연구책임자로 구성된 보건사회연구원 건을 상정하고, 2차 논의와 협의를 갖게 됨.
- (3차 단계) 2차 논의를 거친 뒤, 컨소시엄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의 연구진 간의 논의와 협의 과정을 3차로 갖고, 해당 안건의 결정을 내림.
- (자문) 이 과정에서 필요시, 외부 자문을 받는 방식임.

□ 의견수렴 실시 결과(2020~2022)

- 상기 언급한 의사결정과정의 지난 경과를 일부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 연구진 회의는 수시로 소집되기 때문에 제외
- 운영위원회 주요 경과(일부)

일자	회의내용 및 안건
2020. 1. 22.	15차 조사표 검토, 복지패널 가중치 및 표본 관련 논의, 학술대회 운영방안 논의
2021. 2. 3.	16차 조사표 검토, 데이터 설명회 및 학술대회 일정 논의
2021. 7. 9.	16차 조사 수행 경과, 학술대회 준비, 2022년 샘플 추가를 위한 사전 예비조사 설문, 표본 및 조사 수행 방법 논의
2022. 1. 20.	17차 조사표 검토, 종사상지위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신분류 적용여부 및 시기 검토, 외부기관 문항 개발 요청 건 대응 방안 논의, 복지인식 부가조사 대상자 선정, 자살인식 및 실태 문항 관련 검토
2022. 4. 4.	학술대회 운영방안 논의, 기획세션의 구성 및 학술대회 특별강연 주제 선정
2022. 11. 21.	17차 조사 결과, 18차 조사표 개발 및 내년도 연구 계획 논의

- 원내협의회 주요 경과(일부)

일자	회의내용 및 안건
2020. 2. 17.	15차 조사표 검토, 복지패널 가중치 및 표본 관련 논의, 학술대회 운영방안 논의
2020. 3. 26.	코로나19로 인한 조사 일정(계획) 변경 및 운영 관련 협의
2020. 10. 29.	15차 조사 결과, 학술대회 운영 결과 논의
2021. 1. 22.	16차 조사표 검토, 신규표본 추가를 위한 표본구성 검토, 데이터 설명회 및 학술대회 일정 논의
2021. 5. 24.	2022년 추가표본을 위한 사전 예비조사 설문지안 검토
2021. 7. 1.	사전 예비조사 설문, 사전예비조사 표본 및 조사방식 관련 논의
2022. 1. 13.	17차 조사표 검토, 외부 기관 문항 개발 요청 처리 협의 등
2022. 6. 14.	신규패널 구축 및 데이터 공개시점 논의, 내년도 복지인식 부가조사 대상 논의

- 자문회의의 주요 경과(일부)

일자	회의내용 및 안건
2021. 5. 17.	한국복지패널 특징과 추가표본 구축방안 논의
2021. 6. 7.	타 패널 추가표본 사례를 통한 시사점 논의

5. 조사표 변경이력

5-1 조사표 변경 이력 관리

□ 조사표 변경 사항

○ 가구용 조사표 주요항목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1차년도)	2차년도 변경 항목	3차년도 변경 항목	4차년도 변경 항목	5차년도 변경 항목	6차년도 변경 항목	7차년도 변경 항목	8차년도 변경 항목	9차년도 변경 항목	10차년도 변경 항목	11차년도 변경 항목	12차년도 변경 항목	13차년도 변경 항목	14차년도 변경 항목	15차년도 변경 항목	16차년도 변경 항목
I. 가구 일반 사항	1) 가구원수	-	-	-	-	-	-	-	-	-	-	-	-	-	-	-
	2) 가구원 일반사항 - 가구원번호, 이름,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생년·월, 교육수준, 장애종류 및 등급, 만성질환, 혼인상태, 종교, 동거여부	-만성질환 (이동: Ⅰ. 일반사항 →Ⅱ. 의료A)	-	-	-	-	-	-	-	-	-	-	-	-	-장애정도 (수정) -종교 문항 (일시삭제)	-
	3) 가구일반사항 - 가구형태(단독가구,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정, 기타) - 기초보장수급형태 (일반수급, 조건부수급, 일부수급, 비해당)	-	-의료급여 수급형태 (추가)	-	-기초보장 의료급여 수급형태 문 항 세분화 (추가)	-	-	-	-	-	-기초보장 (맞춤형 급 여) 수급형태 (추가)	기초보장 (2015년 7월 이전 기준) 수급형태 (삭제)	-	-	-	-
II. 건강 및 의료A	1) 건강상태	-	-	-	-	-	-	-	-	-	-	-	-	-	-	-
	2) 의료기관 이용 및 주요병명 - 외래진료 횟수, 입원횟수, 입원일수, 병원에 입원한 주요 이유,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 건강검진횟수, 주요병명	-만성질환 (이동: Ⅰ. 일반사항 → Ⅱ. 의료A)	-민간 의료보험 가입건수 (추가)	-	-	-	-	-	-	-	-	-	-	-	-건강검진 횟수 (일시삭제)	(일시삭제 문항 복원)
	3) 주요 병명 (3년 주기 문항) - 주된 질환명	-	-	-	-	-	-	-	-	-	-	-	-	-주요병명 (원가구 3년주기 문항으로 변경, 신규가구 조사)	-주요병명 (신규가구도 원가구와 동일하게 3년주기로 변경)	(3년 주기 문항 조사)
III. 경제 활동 상태	1) 근로능력정도 - 근로능력정도, 근로무능력사유	-	-	-	-	-	-	-	-	-	-	-	-	-	-	-
	2) 경제활동참여상태 - 주된 경제활동참여상태	-	-	-	-	-	-12월 31일 기준 경제 활동 참여	-	-	-	-	-	-	-	-	-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1차년도)	2차년도 변경 항목	3차년도 변경 항목	4차년도 변경 항목	5차년도 변경 항목	6차년도 변경 항목	7차년도 변경 항목	8차년도 변경 항목	9차년도 변경 항목	10차년도 변경 항목	11차년도 변경 항목	12차년도 변경 항목	13차년도 변경 항목	14차년도 변경 항목	15차년도 변경 항목	16차년도 변경 항목
							상태 (추가)									
	3) 취업자 일자리 특성 - 고용형태, 근로시간형태, 업종, 직종, 사업장 규모	-근로계약 유무, 근로지속 가능성 문항(추가)	-근로계약 유무, 근로지속 가능성 문항 분리 (세분화)	-근로지속 불가능 사유 (추가)	-	-	-	-	-	-	-	-	-	-	-	-
	4) 비취업자 - 비경제활동 사유	-	-	-	-	-	-	-	-	-	-	-	-	-	-	-
IV. 사회 보험 가입, 퇴직금 적용	1) 공적연금 가입 - 가입대상,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여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이유, 보험료 미납기간, 미납사유, 미가입사유	-공적연금 가입형태, 가입연금 제도, 가입종별, 납부여부, 미납유형 (변경, 세분화) -납부예외 사유, 납부예외 기간(추가)	-	-	-	-	-	-	-	-	-	-	-	-	-미납유형, 납부예외 사유, 납부예외 기간, 미납이유, 미납기간, 미가입 이유 (일시삭제)	-
	2)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 산재보험 가입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	-	-	-	-	-	-	-	-	-	-	-	-	-	-	-
	3) 퇴직(연)금 가입 - 퇴직연금 적용여부, 퇴직금 적용여부	-개인연금 가입여부 (이동: 가구원용→ 가구용)	-	-개인연금 가입여부 (세분화)	-	-	-	-	-	-	-	-	-	-	-퇴직연금 가입여부 (일시삭제)	-
	4) 건강보험 가입	-	-	-	-	-	(신설)	-	-	-	-	-	-	-	-	-
V. 의료B	1) 건강보험 - 공적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보험료 미납 경험 여부, 미납사유, 미납기간, 건강보험 이용시 문제점, 건강보험 만족도	-건강보험 보장성정도 (원가구 3년주기 문항으로 변경, 신규가구 매년 조사)	-직장/지역 가입구분 (추가) -민간 의료보험 월평균 보험료 (추가)	-	-	-	-	-	-	-	-	-	-	-	-건강보험 (일시삭제 보장성정도 문항 복원) (신규가구도 원가구와 동일하게 3년 주기로 변경) -건강보험 가입여부 및 유형 (일시삭제) -건강보험 문제점	(일시삭제 문항 복원) (3년 주기 문항 조사)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1차년도)	2차년도 변경 항목	3차년도 변경 항목	4차년도 변경 항목	5차년도 변경 항목	6차년도 변경 항목	7차년도 변경 항목	8차년도 변경 항목	9차년도 변경 항목	10차년도 변경 항목	11차년도 변경 항목	12차년도 변경 항목	13차년도 변경 항목	14차년도 변경 항목	15차년도 변경 항목	16차년도 변경 항목
VI. 주거	2) 의료급여 - 의료급여 수급 여부 및 수급 종류, 의료급여 이용시 문제점	-의료기관 서비스 만족도 (원가구 3년주기 문항으로 변경, 신규가구 매년 조사)	-	-	-	-	-	-	-	-	-	-	-	-	(일시삭제) -의료기관 서비스 만족도 (신규가구도 원가구와 동일하게 3년 주기로 변경) -의료급여 수급여부 및 의료급여 문제점 (일시삭제)	(일시삭제) 문항 복원) (3년 주기 문항 조사)
	1) 주택 유형 및 주거 위치 - 주택유형 주거 위치, 주거점유형태	-이사경험 여부 (추가)	-	-	-	-	-	-	-	-	-	-	-	-주택 점유형태 보기 (추가) -이사사유 (추가)	-	-임대주택 유형 (신설)
	2) 주택 구입비(보증금) - 주택(보증금)가격, 월세액, 주택 구입비(보증금) 마련 방법, 대출상환액 연체 횟수	-12월 31일 기준 주택관련 부채액 (추가), 1년간 총 부채원금 상환액 (추가)	-월세액 (이동: VI.주거→ VII.생활비)	-	-	-	-	-	-	-	-	-	-	-	-주택구입비 (보증금) 마련방법 (일시삭제)	(일시삭제) 문항 복원)
	3) 주택 구조·성능·환경, 주거시설 - 주택재질, 방음, 난방, 오염,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 여부 등 - 방갯수, 주거면적, 상하수도, 부엌·화장실 등 주거시설 종류 및 사용형태	-	-	-	-	-	-	-	-	-	-	-	-	-	-주택재질, 방음, 안전 여부 등 보기(추가)	-
	4) 주거복지사업 필요성, 이용경험 및 만족도 -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전세자금융자 지원, 저소득층 월세 지원, 주택구입자금 지원 사업의 필요성 이용경험, 만족도	-주거복지 사업의 필요성 (삭제)	-주거복지 관련 사업에 기타사업 (추가)	-	-	-	-	-주거복지 사업의 만족도 (삭제)	-	-	-	-	-	-서비스 이용경험 보기 (추가)	-주거복지 사업 이용경험 (일시삭제)	(일시삭제) 문항 복원)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1차년도)	2차년도 변경 항목	3차년도 변경 항목	4차년도 변경 항목	5차년도 변경 항목	6차년도 변경 항목	7차년도 변경 항목	8차년도 변경 항목	9차년도 변경 항목	10차년도 변경 항목	11차년도 변경 항목	12차년도 변경 항목	13차년도 변경 항목	14차년도 변경 항목	15차년도 변경 항목	16차년도 변경 항목
	5) 거주지역 생활환경 -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교육시설, 대중교통, 자연환경 근거리위치 여부	(삭제)	-	-	-	-	-	-	-	-	-	-	-	-	-	-
VII. 생활비	1) 비목별 지출 - 월평균 식료품비, 월평균 보건의료비, 부족했던 보건의료비 월평균액	-식료품비, 보건의료비, 부족했던 보건의료비 (삭제)	-식료품비 (가정식비, 외식비), 주거비 (월세, 주거관리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 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 소비지출, 사적이전 지출 (비동거 가구원, 가구원외) (추가)	-사회복지 서비스 본인부담금 (장기요양, 노인, 장애인, 아동, 기타 대상 서비스) (추가)	-식료품비 (가정식비, 외식비, 주류담배비) (세분화)	-광열수도비 (이중 난방비) -기타 소비지출 (이중 경조비, 종교 관련비) (추가)	-사회복지 서비스 본인부담금 (장기요양, 노인, 장애인, 아동, 기타 대상 서비스) (삭제)	-	-	-	-	-	-기타 소비지출 (이중 비영리단체 이전지출) 추가)	-	-	-
	2) 세금 및 사회보장분담금 - 월평균 세금, 월평균 사회보장분담금	-	-	-	-	-세금 (이중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소득세, 부동산세) -사회보장 부담금 (이중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추가)	-	-	-	-	-	-	-	-	-	-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1차년도)	2차년도 변경 항목	3차년도 변경 항목	4차년도 변경 항목	5차년도 변경 항목	6차년도 변경 항목	7차년도 변경 항목	8차년도 변경 항목	9차년도 변경 항목	10차년도 변경 항목	11차년도 변경 항목	12차년도 변경 항목	13차년도 변경 항목	14차년도 변경 항목	15차년도 변경 항목	16차년도 변경 항목
	3) 총생활비 - 월평균 생활비	-	-	-	-	-	-	-	-	-	-	-	-	-	-	-
VIII. 소득	1) 종사상 지위별 가구원 근로소득 - 만 15세 이상 가구원의 2005년 1년간 경제활동, 상용근로자 연간 총급여액, 임시·일용근로자 총급여액, 고용주 및 자영자 연간 총매출액·연간 총비용·연간 순소득, 농림축산업 경영주 경지규모·자가소비액· 판매수입·접수입·연간 총비용·연간순소득, 어업경영주 수산물 자가소비액·판매수입· 접수입·연간총비용·연 간순소득, 부업소득	-고용주 및 자영자 총매출, 총비용 (삭제) -고용주 및 자영자 전입소득 (추가)	-	-가구원별 매트릭스 문항으로 수정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및 자영자, 기타 근로소득)	-	-	-	-	-	-	-	-	-	-	-	-
	2) 원천별 소득 (근로소득 제외) - 재산소득, 사회보험 급여액, 민간보험 급여액, 민간보조금 (현금, 현물),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총액, 기타정부보조금 총액, 기타 비경상소득 총액	-재산소득, 사회보험, 기타정부 보조금, 기타소득 세분화 (변경) -민간 보조금의 재구분 및 세분화 (9개월 미만 동거 가구원의 소득 구분) (추가)	-국민기초 생활보장 연간 수급 개월수 (추가) -기타소득 중 퇴직금· 사회보험 일시금· 개인연금 일시금· 보장성보험 해약금 (추가)	-기타정부 보조금 중 유류환급금, 긴급복지지 원금, 바우처 지원금 (추가)	-기타정부 보조금 중 근로장려세 제, 한시 생계비 (추가) -기타정부 보조금 중 영유아 보육료 지원 세분화 (변경)	-기타정부 보조금 중 유류환급금 (삭제) -민간보험 (개인연금, 퇴직연금) 세분화 (변경) -세금환급금 (추가)	-기타정부 보조금 중 노인교통비, 한시생계비 (삭제) -기타정부 보조금 중 급식비지원· 에너지감면· 통신비감면 (추가) -기타정부 보조금 중 보육료 지원, 학비지원, 기타 바우처 지원금, 급식비지원, 에너지감면, 통신비감면, 기타 보조금의 '지출을 전제로 한	-기타정부 보조금 중 기타 바우처 지원금의 '지출을 전제로 한 바우처 또는 현금' (삭제)	-	-기타정부 보조금 중 기초연금 (추가)	-국민기초 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생계, 주거, 교육) 연간 수급 개월수, 총 급여액 (추가)	-국민기초 생활보장 (2015년 7월 이전 기준) 연간 수급 개월수, 총 급여액 (삭제)	-기타정부 보조금 및 맞춤형 급여에서 '지출을 전제로 한 바우처 또는 현금' (삭제)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특수직역 연금(추가) -기타정부 보조금 중 아동수당 (추가)	-지방보조금 (추가)	재난지원금 (추가)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1차년도)	2차년도 변경 항목	3차년도 변경 항목	4차년도 변경 항목	5차년도 변경 항목	6차년도 변경 항목	7차년도 변경 항목	8차년도 변경 항목	9차년도 변경 항목	10차년도 변경 항목	11차년도 변경 항목	12차년도 변경 항목	13차년도 변경 항목	14차년도 변경 항목	15차년도 변경 항목	16차년도 변경 항목
							바우처 또는 현금' (추가)									
IX. 부채 및 이자, 주관적 최저 생계비	1) 부채 - 부채형태 (금융기관대출, 일반사채, 카드빚, 전세보증금, 외상 및 미리탄 갯돈, 기타), 총부채액	-부채형태별 부채액 (변경)	-	-	-금융기관 대출 (이중 담보대출) (추가)	-	-금융기관 대출 (이중 담보대출) (삭제)	-	-	-	-	-	-	-	-	-
	2) 이자 - 부채에 대해 지출한 이자 연간 총액	-이자 (주거관련 부채이자, 기타 이자) 세분화	-	-	-	-	-	-	-	-	-	-	-	-	-	-
	3) 주관적 최저생계비 - 한 달 동안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	-	-	-	-	-	-주관적 최저생계비 (이동: IX.부채, 이자→VII. 생활비)	-	-	-	-	-	-주관적 최저생계비 (삭제)	-	-	-
	4) 주관적 적정생활비 - 한 달 동안 생활하는데 필요한 '적정 생활비'	-	-	-	-	-주관적 적정생활비 (추가)	-주관적 적정생활비 (이동: IX.부채, 이자→VII. 생활비)	-	-	-	-	-	-주관적 적정생활비 (삭제)	-	-	-
	5) 부채 용도	-	-	-	-	-	-	-	-	-	-	-항목별 (생활비, 주택, 교육, 의료비, 빚갚음, 기타) 부채 비율 (추가)	-	-	-부채용도 (일시삭제)	-
X. 재산	1) 부동산 - 소유부동산 형태(주택, 주택 외 건물, 토지 등), 소유부동산 총액, 점유부동산 형태 (전세보증금 준 것, 기타 권리금 등), 점유부동산 총액	-소유부동산, 점유부동산 형태별 금액 (변경)	-	-	-	-	-	-	-	-	-	-	-	-	-	-
	2) 동산 - 보유 농기계 종류 및 가격, 사육 농축산물	-농기계, 농축산물 종류별	-	-	-	-	-	-	-	-	-	-	-	-	-	-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1차년도)	2차년도 변경 항목	3차년도 변경 항목	4차년도 변경 항목	5차년도 변경 항목	6차년도 변경 항목	7차년도 변경 항목	8차년도 변경 항목	9차년도 변경 항목	10차년도 변경 항목	11차년도 변경 항목	12차년도 변경 항목	13차년도 변경 항목	14차년도 변경 항목	15차년도 변경 항목	16차년도 변경 항목
	종류 및 가격	금액 (변경)														
	3) 금융자산 - 소유 금융자산 형태(예금, 적금, 주식채권, 타기 전 부은 계돈, 기타), 금융자산 총액	-금융자산 형태별 금액 (변경)	-	-	-	-	-	-	-	-	-	-	-	-	-	-
	4) 기타 재산 - 자동차 대수 및 총 가격, 기타 재산(회원권, 선박 등) 총액	-기타재산 종류별 금액 (변경)	-	-	-	-	-	-	-	-	-	-	-	-	-	-
XI. 생활 여건	1) 박탈지표 - 결식집세 미납공과금 미납전기, 전화, 수도비 미납공교육비 미납난방, 못함의료서비스 이용 못함신용불량 경험 여부	-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한 보험자격 정지여부 (추가) -식생활 박탈문항 (세분화)	-	-	-	-	-	-	-	-	-	-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식생활 경험 3문항 (일시삭제)	(일시 삭제 문항 복원)
XII. 국민 기초 생활 보장 (1~6월 기준)	1) 급여 신청 및 탈락 - 기초보장급여 신청 경험여부, 신청사유, 선정여부, 신청탈락사유, 신청탈락 후 생계해결방법	-	-	-	-	-	-	-	-	-	-	(삭제)	-	-	-	-
	2) 조사기준년도 1년간 수급이력 - 조사기준년도 1년간 수급경험, 수급이력, 수급이유, 수급 탈피 예상 기간, 수급탈피 후 필요지원 비목	-	-급여수준 평가 (추가)	-	-	-	-	-	-	-	-	(삭제)	-	-	-	-
	3) 조사기준년도 이전 수급이력 - 조사기준년도 이전 수급 경험여부, 수급 기간, 수급 희망여부	(삭제)	-	-	-	-	-	-	-	-	-	(삭제)	-	-	-	-
	4) 제도 탈피 - 탈피 사유, 탈피 후 필요지원 비목	-	-	-	-	-	-	-	-	-	-	(삭제)	-	-	-	-
XII-1. 국민 기초 생활 보장	1) 급여 신청 및 탈락 - 신청 경험여부, 신청사유, 선정여부, 선정탈락사유, 선정탈락 후	-	-	-	-	-	-	-	-	-	(신설)	-	-	-	-신청사유, 신청탈락 후 해결방법 (일시삭제)	-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1차년도)	2차년도 변경 항목	3차년도 변경 항목	4차년도 변경 항목	5차년도 변경 항목	6차년도 변경 항목	7차년도 변경 항목	8차년도 변경 항목	9차년도 변경 항목	10차년도 변경 항목	11차년도 변경 항목	12차년도 변경 항목	13차년도 변경 항목	14차년도 변경 항목	15차년도 변경 항목	16차년도 변경 항목
(맞춤형 급여, 7~12월 기준)	생계해결방법															
	2) 2015년 7~12월간 수급이력 - 수급이력, 수급이유, 급여수준 평가, 수급탈피 예상 기간, 탈피 사유	-	-	-	-	-	-	-	-	-	(신설)	-	-	-	-수급이유, 급여수준 평가 (일시삭제)	-
	3) 수급 탈피 - 탈피 후 필요지원 비목	-	-	-	-	-	-	-	-	-	(신설)	-	-	-	-탈피 예상 기간, 탈피 후 필요지원 비목 (일시삭제)	-
XII-2. 근로 (자녀) 장려 세제	1) 제도인식, 신청여부 - 제도인식여부, 급여요건 충족 여부, 급여신청(예정)	-	-	(신설)	-	-	-	-	-	-	자녀장려 세제 인식여부, 급여요건 충족여부, 급여신청 (추가) 향후 급여신청 (삭제)	-	-	-	-제도 인식여부 (일시삭제)	-
	2) 급여수급여부 - 급여수급여부, 급여 사용처, 수급급여 실생활 도움 정도, 수급급여의 근로의욕 영향	-	-	-	(신설)	-	-	-	-	-	수급여부, 급여 사용처, 급여 실생활 도움 정도, 근로의욕 영향(추가) 올해 신청 여부(삭제)	-	-	-	-급여 사용처, 수급급여 실생활 도움 정도, 수급 충족 여부에 대한 인식 (일시삭제)	-
XII-2. 희망 키움 통장 (근로 소득 장려금)	1) 제도인식, 참여여부, 급여수급 - 제도인식여부, 참여여부, 유지기간, 적립금, 매칭금, 근로소득장려금 금액	-	-	-	-	(신설)	(삭제)	-	-	-	-	-	-	-	-	-
XII-2. 가구의 경제 상황 및 복지 수준에 대한	1) 가구의 계층 인식 - 가구의 소득 계층	-	-	-	-	-	(신설)	(삭제)	-	-	-	-	-	-	-	-
	2) 가구의 경제상황 인식 - 1년 전, 현재, 1년 후 경제 상황 인식 정도	-	-	-	-	-	(신설)	(삭제)	-	-	-	-	-	-	-	-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1차년도)	2차년도 변경 항목	3차년도 변경 항목	4차년도 변경 항목	5차년도 변경 항목	6차년도 변경 항목	7차년도 변경 항목	8차년도 변경 항목	9차년도 변경 항목	10차년도 변경 항목	11차년도 변경 항목	12차년도 변경 항목	13차년도 변경 항목	14차년도 변경 항목	15차년도 변경 항목	16차년도 변경 항목
인식 및 전망	3) 복지 및 사회문제 인식 - 1년 전, 현재, 1년 후 복지 및 사회문제 인식 정도	-	-	-	-	-	(신설)	(삭제)	-	-	-	-	-	-	-	-
XIII. 가구의 복지 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 정도	1)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 필요성 정도, 경험여부, 제공기관, 이용만족도	-필요성 정도 (삭제)	-	-바우처 서비스 경험여부 및 만족도 (추가) -장기요양 보험 급여 경험여부, 지불한 금액, 만족도 (추가)	-대출·융자 서비스 (추가) -바우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추가) -바우처 장애인 재활치료 사업 (추가) -바우처 아이사랑 보육서비스 (추가)	-바우처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삭제) -바우처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제공기관 (삭제) -바우처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이용만족도 (삭제) -상담(삭제) -약물상담 (삭제) -학대 혹은 가정폭력 상담 (삭제) -부모상담, 부모교육 (삭제) -상담서비스 (추가) -개인발달 계좌 (추가) -바우처 본인 부담금 (삭제)	-	-바우처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추가)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삭제)	-통합문화 이용권 (추가) -에너지 바우처 (추가)	-	-	-권익보장 지원 (추가) -아이돌봄 지원 (추가) -장애아동 가족 지원 (추가) -발달장애인 지원 (추가) -발달지원 사업 (삭제) -언어발달 지원 (삭제)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삭제)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삭제)
XIV. 노인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	1) 노인부양의 어려움과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 노인부양의 어려움, 노인복지서비스 필요성 정도, 경험여부, 제공기관, 이용만족도	-필요성 정도 (삭제) -노인부양 어려움 (삭제)	-노인일자리 사업 (추가)	-사회교육 서비스 (추가) -단기보호 서비스 (삭제)	-	-	-제공기관 (삭제)	-이용만족도 (삭제)	-	-	-	-	-	-	-	-
XV. 아동 (만17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1) 아동양육의 어려움과 아동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 아동부양의 어려움, 아동복지서비스 필요성 정도, 경험여부, 제공기관, 이용만족도	-필요성 정도 (삭제) -아동양육 어려움 (삭제)	-	-가정봉사 서비스 (추가) -장애아동 특별 프로그램 (삭제)	-	-	-제공기관 (삭제) -영유아 보충 식품 지원 (추가)	-이용만족도 (삭제)	-	-	-	-	-	-아동수당 추가)	-	-
	2) 아동의 건강 - 출생시 체중, 선천성 기형·질환	-추가아동 여부 (추가)	-	-	-	-	-	-	-	-	-	-	-	-	-추가아동 여부 (일시삭제) -출생시 체중 (일시삭제) -선천성 기형·질환 (복원)	-추가아동 여부(복원) -출생시 체중 (복원) -선천성 기형·질환 (복원)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1차년도)	2차년도 변경 항목	3차년도 변경 항목	4차년도 변경 항목	5차년도 변경 항목	6차년도 변경 항목	7차년도 변경 항목	8차년도 변경 항목	9차년도 변경 항목	10차년도 변경 항목	11차년도 변경 항목	12차년도 변경 항목	13차년도 변경 항목	14차년도 변경 항목	15차년도 변경 항목	16차년도 변경 항목
															기형·질환 (일시삭제)	
	3) 사교육과 보육기관 이용실태 - 이용여부, 이용하지 않는 이유, 이용기관, 한달 평균 사교육비, 한달평균 보육비, 사교육비와 보육비 부담정도	-이용여부 아동별 응답으로 변경 -이용하지 않는 이유 (삭제) -사교육비· 보육비 부담정도 (삭제)	-	-	-	-	-	-	-	-	-	-	-	-	-	-
XVI. 장애인 (장애인 있는 가구)	1) 장애인 보호의 어려움과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현황 - 장애인 보호의 어려움, 장애인복지서비스 필요성 정도, 경험여부, 제공기관, 이용만족도	-필요성 정도 (삭제) -장애인 보호 어려움 (삭제)	-	-가정봉사 서비스 (추가) -방문가정 간호/간병 서비스 (추가) -사회적응 및 취업관련 서비스 (추가) -직업재활 시설 (삭제) -취업지원 (삭제) -사회복귀 훈련등 (삭제) -가사지원 서비스 (삭제) -공공시설내 사업권 (삭제)	-	-장애인연금 (추가) -경증장애 수당 (추가)	-제공기관 (삭제) -장애수당 (삭제)	-이용만족도 (삭제) -재활보조 기구 및 생활편의 용품 (삭제) -장애인 자립 지원 서비스 (삭제)	-	-	-	-	-	-	-권익보장 지원 (추가)	-
XVII. 가족	1) 가족의 갈등 - 갈등 초래 문제, 대처방법	-	-	-	-	-	-	-	-	-	-	-	-	-	-갈등 초래 문제 (일시삭제)	갈등 초래 문제 (복원)

○ 가구원용 조사표 주요항목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1차년도)	2차년도 변경 항목	3차년도 변경 항목	4차년도 변경 항목	5차년도 변경 항목	6차년도 변경 항목	7차년도 변경 항목	8차년도 변경 항목	9차년도 변경 항목	10차년도 변경 항목	11차년도 변경 항목	12차년도 변경 항목	13차년도 변경 항목	14차년도 변경 항목	15차년도 변경 항목	16차년도 변경 항목
A. 사회 보험, 퇴직금, 개인 연금 수급	1) 공적연금 - 공적연금 수급여부, 수급 공적연금 종류, 국민연금 급여종류, 국민연금 일시금 총액, 국민연금 수급 개월수 및 수급연금 총액, 보훈연금 및 기타 공적연금의 일시금 총액, 기타 공적연금 수급 개월수 및 수급연금 총액, 특수직역연금 급여 종류, 특수직역연금 일시금 총액, 특수직역연금 수급 개월수 및 수급연금 총액	-수급공적 연금 종류 종복응답 (추가)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15세 미만 가구원이 있으면 그 금액도 포함(변경)	-	-	-	-	-	-	-	-	-	-	-	-	-	-
	2) 고용보험 - 고용보험 수급여부, 급여종류, 개월수 및 총현금급여액	-	-	-	-	-	-	-	-	-	-	-	-	-	-	-
	3) 산재보험 - 산재보험 수급여부, 급여종류, 산재보험 일시금 총액, 산재보험 수급 개월수 및 총현금급여액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15세 미만 가구원이 있으면 그 금액도 포함(변경)	-	-	-	-	-	-	-	-	-	-	-	-	-	-
	4) 개인연금 - 개인연금 가입여부, 수급여부, 개인연금 일시금 총액, 개인연금 수급 개월수 및 총 급여액	-개인연금 가입여부 (이동: 가구원용 →가구용)	-	-	-	-	-	-	-	-	-	-	-	-	-	-
	5) 퇴직금 및 퇴직보험 - 퇴직금 또는 퇴직보험금 일시금 총액, 보험금 수급 개월 수 및 총급여액	-	-	-	-	-	-	-	-	-	-	-	-	-	-	-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1차년도)	2차년도 변경 항목	3차년도 변경 항목	4차년도 변경 항목	5차년도 변경 항목	6차년도 변경 항목	7차년도 변경 항목	8차년도 변경 항목	9차년도 변경 항목	10차년도 변경 항목	11차년도 변경 항목	12차년도 변경 항목	13차년도 변경 항목	14차년도 변경 항목	15차년도 변경 항목	16차년도 변경 항목
B. 근로	1) 근로유형 - 근로유형	-근로유형 (세분화)	-	-	-	-	-	-	-	-	-	-	-	-	-	-
	2) 취업자 - 실직경험여부, 실직사유, 현 직장 근속년수, 근로개월 수,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 주당 평균 근로시간, 일한 날 하루 평균 근로시간	-	-	-노조가입 여부 (추가)	-	-	-	-일한달 월평균 임금, 일한날 시간당 임금 (추가)	-	-	-	-	-	-	-현직장 근속년수 (근무시작 시기) (일시삭제)	-
	3) 미취업자 - 4주간 구직활동 여부, 총 구직기간, 구직상의 어려움, 취업의사, 희망임금, 자활지원 프로그램 참여경험여부, 참여기간만족도, 자활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	-미취업자 대상 자활지원 프로그램 문항이 취업 및 미취업자 공통 질문으로 변경 (아래참조)	-취업의사 (삭제) -지난 1년간 구직활동 여부, 취업의사, 구직활동 안한 이유 (추가)	-	-	-	-구직상 어려움 모든 항목별 5점척도→ 1,2순위 응답 (변경)	-	-	-	-	-	-	-구직기간, 구직상의 어려움 (일시삭제) -지난 4주간 구직활동 하지 않은 사유 (일시삭제)	-
	4) 취업 및 미취업자(공통) - 정부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경험여부,참여기간만족도, 효과성 평가	-	(신설)	-고용지원 프로그램 재구분 (변경)	-희망근로, 청년 인턴십 (추가)	-근로자 능력 개발 훈련 (추가)	-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기간, 만족도 (삭제) -고용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문항 (삭제)	-	-	-	-취업성공 패키지 경험 여부 (추가)	-	-	-	-
	5) 새로운 직업기술 습득여부와 직종	(신설)	-	-	-	-	-	-	-	-	-	-	-	-	(일시삭제)	-
C. 생활 실태 · 만족 및 의식	1) 생활실태 - 인터넷 사용여부, 유해환경 근로 경험여부	-	-	-	-	-	-	-	-	-	-	-	-	-	-인터넷 사용 여부 (일시삭제) (일시삭제)	(일시 삭제 문항 복원)
	2) 생활만족 - 건강상태 가구 소득 주거 환경가족 관계 직업 사회적 친분관계 여가생활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	-	-	-	-	-	-	-	-	-	-	-	-	-	-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1차년도)	2차년도 변경 항목	3차년도 변경 항목	4차년도 변경 항목	5차년도 변경 항목	6차년도 변경 항목	7차년도 변경 항목	8차년도 변경 항목	9차년도 변경 항목	10차년도 변경 항목	11차년도 변경 항목	12차년도 변경 항목	13차년도 변경 항목	14차년도 변경 항목	15차년도 변경 항목	16차년도 변경 항목
	- 경제적 생활상태(3년 주기 문항) - 복지인식(3년 주기 문항)	-경제적 생활상태, 복지인식 삭제 (3년 주기 문항으로 변경)	-	(3년 주기 문항 조사)	-	-	(3년 주기 문항 조사)	3년 주기 문항 (삭제)	-	-	-	-	-	-	-	-
D.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	1) 사회적 자본 - 신뢰, 지역사회 이웃에 대한 도움 의사, 비선호시설 수용정도 (3년 주기 문항)	-	-	(3년 주기 문항 조사)	-	-	(3년 주기 문항 조사)	-	-	(3년 주기 문항 조사)	-	-	(3년 주기 문항 조사)	-	-	(3년 주기 문항 조사)
	- 기부 혹은 자원봉사 활동 여부, 연간 기부액, 자원봉사활동 연간 횟수	-	-	-	-	-	-	-	-	-	-	-	-	-	-	-
	- 도움을 받은 곳, 도움을 준 사람 수, 도움 종류, 도움 정도	문항 삭제	-	-	-	-	-	-	-	-	-	-	-	-	-	-
	2) 부모님과의 접촉정도 - 비동거 부모님 유무, 비동거 부모님과의 왕래 횟수, 비동거 부모님과의 전화통화 횟수	-	-	-	-	-	-	-	-	-	-	-	-	-	-	-
	3) 생활시간 - 취업활동, 집안일, 자녀돌보기, 가족돌보기, 교육과 훈련, 여가활동	삭제	-	-	-	-	-	-	-	-	-	-	-	-	-	-
	4) 성역할	-	-성역할 문항 (추가)	-	-	-	-	-	-	-	-	-	-	-성역할 문항 (원가구 3년 주기 문항으로 변경, 신규가구 조사)	-성역할 문항 삭제 (신규가구도 원가구와 동일하게 3년 주기로 변경)	(3년 주기 문항 조사)
E. 생활 습관, 가족 관계 및 정신 건강	1) 생활습관 - 흡연, 음주, 음주로 인한 문제	-	-생애동안 흡연총량, 흡연기간, 담배를 처음 피운 시기, 현재 흡연여부, 하루평균	-음주관련 문항을 AUDIT으로 변경 및 추가	-	-	-	-	-	-	-	-	-음주인식 (3년주기 문항)	-	-간접 흡연 여부와 노출시간 (일시삭제) -출산경험 (일시삭제)	-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1차년도)	2차년도 변경 항목	3차년도 변경 항목	4차년도 변경 항목	5차년도 변경 항목	6차년도 변경 항목	7차년도 변경 항목	8차년도 변경 항목	9차년도 변경 항목	10차년도 변경 항목	11차년도 변경 항목	12차년도 변경 항목	13차년도 변경 항목	14차년도 변경 항목	15차년도 변경 항목	16차년도 변경 항목
			흡연량, 금연 시도 여부, 금연 계획, 간접흡연 여부와 노출시간 (추가) -1년간 평균 흡연량 (삭제) -출산경험 (추가)													
	2) 정신건강 - 우울감, 자아존중감	-	-	-	-	-	-	-	-	-	-	-행복지수 (추가)	-	-	-	-
	3)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 - 부부폭력 경험, 부부폭력 가해 경험	-부부관계 미조사 -가족생활 등 가족관계 만족도 (추가)	-부부관계 미조사	-부부관계 3문항으로 축소	-	-	-	-	-	-	-	-	-	-	-	-
	4)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	-	-	-	-자살생각 및 처음/ 마지막 생각한 나이(추가) -자살계획 및 처음/ 마지막 계획한 나이(추가) -자살시도 및 처음/ 마지막 시도한 나이(추가)	-지난 한해 동안 자살생각 (추가) -지난 한해 동안 자살계획 (추가) -지난 한해 동안 자살시도 (추가)	-	-	-	-	-	-	-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및 처음/ 마지막 시도한 나이 (일시삭제) -지난 한해 동안 자살 계획 및 시도 (일시삭제)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및 처음/ 마지막 시도한 나이 (일시삭제) -지난 한해 동안 자살 계획 및 시도 (일시삭제)
F. 교육 (유형4: 신규 가동)	1) 교육 - 최종학력, 출신 고등학교 유형과 소재지, 출신 대학 전공계열과 소재지	-	(신설)	-	-	-	-	-	-	-	-	-	-	-	-	-
G.	1) 아동기	(유형3에서	-	-	-	-	-	-	-	-	-	-	-	-	-	-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1차년도)	2차년도 변경 항목	3차년도 변경 항목	4차년도 변경 항목	5차년도 변경 항목	6차년도 변경 항목	7차년도 변경 항목	8차년도 변경 항목	9차년도 변경 항목	10차년도 변경 항목	11차년도 변경 항목	12차년도 변경 항목	13차년도 변경 항목	14차년도 변경 항목	15차년도 변경 항목	16차년도 변경 항목
개인사 (유형4: 신규 가정원생)	- 아동기 성장 지역, 아동기 경제생활상태, 아동기 조실부모·부모님 이혼·학업중단· 친척집에서 성장 경험여부	삭제, 유형4에 포함)														
	2) 부모님 - 교육수준, 직업, 부모로부터의 상속 및 증여 경험 및 경제적 도움 정도	(유형3에서 삭제, 유형4에 포함)	-	-	-	-	-	-	-	-	-	-	-	-	-	-
	3) 직업이력 - 만15세 이후 첫 직장, 두 번째~ 여섯번째, 가장 최근 직장의 근무기간 및 고용형태	(유형3에서 삭제, 유형4에 포함)	-	-	-	-	-	-	-	-	-	-	-	-	-	-
	4) 직업기술 - 보유 직업기술(1~3순위), 직업 기술 직종	(유형3에서 삭제, 유형4에 포함)	-	-	-	-	-	-	-	-	-	-	-	-	-	-
	5) 다문화 가정 여부	-	(신설)	-	-	-	-	-	-	-	-	-	-	-	-	-

○ 부가조사 항목

구분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변경 항목	변경 항목	변경 항목	변경 항목	변경 항목
		1차년도(아동) 2차년도(복지인식) 3차년도(장애인)	4차년도(아동) 5차년도(복지인식) 6차년도(장애인)	7차년도(아동) 8차년도(복지인식) 9차년도(장애인)	10차년도(아동) 11차년도(복지인식) 12차년도(장애인)	13차년도(아동) 14차년도(복지인식) 15차년도(장애인)	16차년도(아동)
아동 (1, 4, 7, 10, 13, 16차)	현재 상태	-	-	현재 상황(수정) 휴학/중퇴 시기(추가) 휴학/중퇴/고등학교 미진학 이유(추가) 휴학/중퇴/고등학교 미진학 후 하는 일(추가)	현재 상황(수정) 휴학/중퇴 시기(삭제) 휴학/중퇴/고등학교 미진학 이유(삭제) 휴학/중퇴/고등학교 미진학 후 하는 일(삭제)	-	현재 상황(수정) 휴학/중퇴 시기(추가) 휴학/중퇴/고등학교 미진학 이유(추가) 휴학/중퇴/고등학교 미진학 후 하는 일 (추가)
	나의 학교생활	사회심리적 학교환경(9문항)	-	-	-	-	-
		학교성적(4문항)	-	-	-	-	-
		-	-	학업 스트레스(4문항)(추가)	-	-	-
		-	학교유대감(6문항)(추가)	-	-	-	-
	나의 생각과 행동	자아존중감(13문항)	-	-	-	-	-
		우울/불안(13문항)	우울/불안 1문항(추가)	-	-	-	-
		주의집중(11문항)	-	-	-	-	-
		위축(9문항)	-	-	-	-	-
		공격성(19문항)	-	-	-	-	-
		비행(24문항)	비행 1문항(추가)	-	-	-	-

구분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변경 항목	변경 항목	변경 항목	변경 항목	변경 항목
		1차년도(아동) 2차년도(복지인식) 3차년도(장애인)	4차년도(아동) 5차년도(복지인식) 6차년도(장애인)	7차년도(아동) 8차년도(복지인식) 9차년도(장애인)	10차년도(아동) 11차년도(복지인식) 12차년도(장애인)	13차년도(아동) 14차년도(복지인식) 15차년도(장애인)	16차년도(아동)
		학교폭력 피해경험(6문항)	-	-	-	-	-
		-	방과 후 생활(4문항)(추가)	-	-	-	2019년(코로나 이전) 방과후 생활(4문항) (추가) 방과후 생활 보기문항 (가족 구성원과의 시간보내기)(추가)
		-	-	자살관련(8문항)(추가)	-	-	자살시도(2문항)(일시 삭제)
		-	-	주관적 행복감(6문항)(추가)	-	-	-
		-	-	-	-	행복 지수(1문항)(추가)	-
	우리 부모님	-	-	부모님 유무(추가)	-	-	-
		신체적 학대(5문항)	신체적 학대 1문항(수정)	-	-	-	-
		정서적 학대(3문항)	-	-	-	-	-
		방임(7문항)	방임 4문항으로 수정	-	-	-	-
		-	부모와의 관계(8문항)(추가)	-	-	-	-
	나의친구	-	친구들과의 접촉 및 친구애착(6문항) (추가)	-	-	-	-
		또래애착(4문항)	-	-	-	-	-
		친구의 비행경험(6문항)	-	-	-	-	-
		-	처벌 및 경찰서에 잡혀간 경험(2문항) (추가)	-	-	-	-
아동 (1, 4, 7, 10, 13, 16차)	나와 나의 가족 (나의 건강 및 생활)	아동 개인 - 건강상태와 키, 몸무게, 의논상대, 전학 경험, 하루 TV 시청시간, 인터넷 사용시간, 아르바이트 경험, 아동복지서비스 이용경험 및 만족도 등	아르바이트 경험 관련 문항을 “나의 아르바이트 경험 및 활동” 파트로 이동 아동복지서비스 이용경험 및 만족도 관련 문항을 “나의 아르바이트 경험 및 활동” 파트로 이동	인터넷 중독(20문항)(추가)	-	-	-
		가족 - 가족수, 같이 살고 있는 가족, 방과후 보호자, 방과후 방치되는 시간, 방과후 시간 활용 등	방과후 생활 관련 문항을 “나의 생각과 행동” 파트로 이동 가족수, 같이 살고 있는 가족 문항(삭제)	-	-	-	-
	나의 아르바이트 경험 및 활동	-	1) 아르바이트 -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종류,	-	-	-	-

구분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변경 항목	변경 항목	변경 항목	변경 항목	변경 항목
		1차년도(아동) 2차년도(복지인식) 3차년도(장애인)	4차년도(아동) 5차년도(복지인식) 6차년도(장애인)	7차년도(아동) 8차년도(복지인식) 9차년도(장애인)	10차년도(아동) 11차년도(복지인식) 12차년도(장애인)	13차년도(아동) 14차년도(복지인식) 15차년도(장애인)	16차년도(아동)
		-	기간, 시간 2) 참여 활동 및 프로그램 - 참여 활동 및 프로그램 수급 경험여부 및 횟수	참여 활동 및 프로그램에 진로상담, 청년직장체험 추가	참여 활동 및 프로 그램에 진로상담, 청년직장체험 삭제	참여 활동 및 프로그램에 진로상담 추가	참여 활동 및 프로그램에 직장 체험/탐방 등 취업 관련 프로그램(추가)
	나의 진로	-	희망진로 진로성숙도(21문항)	직업희망 계기, 직업획득 가능성(추가)	-	-	-
복지인식 (2, 5, 8, 11, 14차)	I. 전반적인 사회적·정치적 인식과 태도	- 사회계층과 관련한 인식 (2문항) - 소득분배와 관련된 인식 (2문항) - 정부의 역할에 대한 평가의견(14문항) -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에 대한 의견(12문항) - 사회 전반적인 부문에서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견(23문항)	- 소득격차, 실업자 지원, 빈곤층 지원에 대한 의견(3문항) 추가 - 복지서비스 재정적 부담 담당에 대한 의견 문항의 보기를 “국가/본인/ 가족친지/직장”으로 수정	- 빈곤원인에 대한 인식(11문항) 추가	-	- 정부 지출에 대한 의견 문항 중 분야(3문항) 추가 - 정부사회정책평가 분야(2문항) 추가	-
	II. 복지자원 및 대상범위	- 세금부담에 대한 의견 (3문항) - 납세에 대한 의견(4문항) - 세금의 사용처에 대한 의견 (2문항)	- 부자와 서민의 조세부담에 관한 의견 1문항 삭제	-	-	- 복지서비스운영/전달주체 (7문항) 및 복지서비스재정 부담주체(7문항) 삭제	-
	III. 정치참여와 성향	-	- 정치에 대한 관심, 만족도, 정치성향(3문항) 추가	-	-	-	-
장애인 (3, 6, 9차)	(공통I) 장애 원인 및 상황	- 장애 원인, 장애시작시점, 현재의 장애상태 - 장애의 현재상태 및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 장애와 관련된 치료현황 -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 - 외출정도 및 외출하지 않는 이유	-	-	-	- 전반적으로 느끼는 장애로 인한 차별(추가) -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추가)	-
	(공통II) 일상생활	-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정도 - 일상생활하는 데 도움여부 및 도움 준 사람 -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이용의향 및 비용부담 여부	- 사회적 지지(10문항)(추가) - 일상생활에서의 도움 정도, 물질적 지원 및 보살핌 횟수에 ‘활동보조인’ 추가	- 도와주는 사람(1~3순위)의 보기문항에 ‘요양보호사’, ‘장애아동돌보미’를 추가 - 일상생활에서의 도움 정도, 물질적 지원 및 보살핌 횟수에 ‘요양보호사’,	-	- 도와주는 사람(1~3순위)의 보기문항에 ‘활동보조원’을 ‘활동지원사’로 수정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금액 부담 희망 비율 삭제 -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

구분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변경 항목	변경 항목	변경 항목	변경 항목	변경 항목
		1차년도(아동) 2차년도(복지인식) 3차년도(장애인)	4차년도(아동) 5차년도(복지인식) 6차년도(장애인)	7차년도(아동) 8차년도(복지인식) 9차년도(장애인)	10차년도(아동) 11차년도(복지인식) 12차년도(장애인)	13차년도(아동) 14차년도(복지인식) 15차년도(장애인)	16차년도(아동)
		- 일상생활 수행능력 (기본적·수단적) - 일상생활에서의 도움 정도, 물질적 지원 및 보살핌 횟수		‘장애아동 돌보미’를 추가 -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서비스로 수정		- 보기문항에 ‘비해당’을 추가	
	(개별Ⅰ) 미취학 아동 설문 (만 0세~초등학교 입학 이전)	- 미취학 아동의 심리상태 - 장애아동 관련 서비스 필요여부, 이용여부 - 지역혁신사업에 대한 이용의향 및 비용부담 여부 - 보육시설 이용과 관련된 질문	- 지역혁신사업을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으로 수정	-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을 발달재활서비스사업으로 수정 - 보육시설의 형태에 ‘놀이방’을 삭제, 어린이집을 ‘장애인 통합 어린이집’ ‘장애인 전문 어린이집’으로 이원화	-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필요/이용여부(추가)	-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이용금액 부담 희망 비율 삭제 - 장애아동관련서비스 필요여부(일시삭제)	
	(개별Ⅱ) 학생 (초등학생~고등학생) 설문	- 학생의 심리상태 - 장애 관련 서비스 필요여부, 이용여부 - 우울감 - 특수교육보조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향 및 비용부담 여부 - 지역혁신사업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향 및 비용부담 여부 - 학교생활에 관련된 질문	- 지역혁신사업을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으로 수정	-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을 발달재활서비스사업으로 수정	-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필요/이용여부(추가)	-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이용금액 부담 희망 비율 삭제 - 장애학생관련서비스 필요여부(일시삭제)	
	(개별Ⅲ) 성인 (만 18~65세 미만) 설문	- 장애 관련 서비스 필요여부, 이용여부 - 우울감 - 소득활동여부 - 근로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향 및 비용부담 여부	-	-	-	- 근로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이용금액 부담 희망 비율 삭제 - 성인관련서비스 필요여부(일시삭제)	
	(개별Ⅳ) 어르신 (만 65세 이상) 설문	- 사회복지 서비스 필요여부, 이용여부 - 우울감 - 소득활동여부 - 월평균 용돈(생활비 제외) - 노인돌보미(바우처)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향 및 비용부담 여부	- 노인돌보미(바우처) 서비스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로 수정	-	-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대한 이용금액 부담 희망 비율 삭제 -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에 대한 이용금액 부담 희망 비율 삭제 - 어르신관련서비스 필요여부(일시삭제)	

5-2 조사표 변경 이유 기록 · 관리

☐ 조사표 변경 이유

- 주요 조사내용을 기본적으로 유지하였지만, 제도가 변경되었거나 정보 제공이 좀 더 필요한 항목에 대해 수정하였음
- 조사내용에 대한 개념 및 용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사표 구성 및 내용을 보완하였음
- 그 밖에 데이터 활용도도 높고 심층분석이 필요한 문항에 대해서는 문항을 추가하였으며, 제도가 없어졌거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항에 대해서는 삭제하였음

5-3 변경승인일자 기록 · 관리

☐ 조사표 변경 승인일자

- 통계승인: 2006년 9월 29일(승인번호: 33109호)
- 변경승인: 2007년 4월 10일(승인번호: 33109호)
- 변경승인: 2016년 2월 25일(승인번호: 33109호)
- 변경승인: 2017년 1월 13일(승인번호: 33109호)
- 변경승인: 2018년 1월 16일(승인번호: 33109호)
- 변경승인: 2019년 1월 31일(승인번호: 33109호)
- 변경승인: 2020년 6월 4일(승인번호: 33109호)
- 변경승인: 2021년 3월 2일(승인번호: 33109호)
- 변경승인: 2022년 2월 22일(승인번호: 33109호)

6.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

☐ 목표모집단의 정의

- 각 년도 현재 전국 16개 시·도의 일반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가구

☐ 조사모집단의 정의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 중 기숙사, 특수 시설 조사구, 섬지역 조사구를 제외한 조사구에 거주하는 가구

☐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 차이의 적절성

- 조사모집단을 보면 섬지역 및 기숙사, 특수 시설 조사구를 제외한 모든 조사구에 거주하는 가구를 포함하였기 때문에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의 차이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7. 표본추출틀

7-1 표본추출틀로 사용되는 자료의 출처

- 통계명 : 2006 최저생계비 계층조사
- 작성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 작성연도 : 2006

7-2 표본추출틀로 선정한 이유

- 한국복지패널의 목적은 빈곤층(또는 working poor) 및 차상위계층의 가구형태, 소득수준, 취업상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이들의 상태변화를 동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고자 함이기 때문에 소득계층별 조사 필요
- '0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와 주택의 총수는 물론 개별특성까지 파악하여 각종 경제·사회 발전계획의 수립 및 평가와 각종 학술연구, 민간부문의 경영계획수립에 활용하고 각종 표본조사의 표본추출틀을 제공하기 위해 90% 전수조사와 10% 표본조사로 실시
- '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조사구 단위로 집계하여 추출틀로 제공하는데, 이에는 조사구특성, 가구특성(가구원수, 주택유형 등), 인구특성(연령, 교육, 혼인상태, 경제활동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나, 소득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음
- 이러한 인구주택총조사를 표본추출틀로 한 2006 최저생계비 계층조사는 소득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조사로부터 조사된 가구 중 소득계층별로 저소득층 가구와 일반가구를 각각 3,500가구씩을 층화집락계통추출을 통해 총 7,000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최종 7,072가구를 조사완료 하였음

7-3 표본추출틀의 구축 과정 및 내용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 실시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본조사 : 2006.06.30. ~ 10.01.
- 내용 : 가구, 가구원 특성, 주택, 주거실태, 경제상태, 정책관련 의견 등
- 주기 : 3년

7-4 모집단 변동에 따른 표본추출틀 주기적 개편

- 해당사항 없음(패널 조사로 최초 구축된 원표본 패널가구를 계속 추적 조사)
- 패널과 상관은 없지만 다른 일반조사를 수행할 때 보면 표본추출틀을 인구센서스 조사구를 쓰는데 아직도 재개발 및 상업지역 등의 정보(국토부 자료 등의 정보 연계)가 업데이트가 느린데 이는 좀 더 빠른 개편 주기 또는 국토부 자료 등의 정보 연계 등은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8. 표본설계 방법 및 결과(표본조사)

8-1 표본추출방법

☐ 모집단 분석

- 패널 조사를 위해 직접적으로 모집단 자료를 이용하지 않고,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표본 설계한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층 조사를 위한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90% 자료를 모집단으로 고려
- 이는 소득 수준별 표본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가구별 소득자료가 없기 때문에 90%자료를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층 조사 표본을 패널조사를 위한 보조정보로 고려하여 표본설계를 수행

- 실제 목표 모집단은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90%자료이며, 가중치 또한 이를 기준으로 작성

〈표〉 시도별 모집단 규모(90%)^{주)}

시 도	조사구수	가구수	시 도	조사구수	가구수
계	237,682	14,260,103			
서울	49,440	3,005,559	강원	7,871	462,601
부산	18,165	1,074,589	충북	7,499	450,291
대구	12,128	738,953	충남	9,869	588,216
인천	12,713	737,976	전북	9,275	544,563
광주	6,793	416,208	전남	9,243	544,741
대전	7,268	434,710	경북	14,025	830,597
울산	5,053	308,537	경남	15,857	940,076
경기	49,803	3,021,932	제주	2,680	160,554

주: 표본설계 당시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는 확정치가 아님으로 2007년 1월 현재 통계청 발표 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전국 90% 조사구에 대해 총 237,682개 조사구로 구성되고, 이중 서울과 광역시가 111,560개 조사구로서 전체의 약 46.9%를 차지하고, 나머지 도지역이 126,122개 조사구로서 약 53.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조사구 유형을 일반조사구와 아파트조사구로 구분할 경우 일반조사구가 141,954개 조사구로 59.7%를 차지하고, 나머지 약 40.3%인 95,728개 조사구가 아파트조사구임.

〈표〉 모집단 조사구 규모 (90%) (동부, 읍면부별)주)

	전체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계	일반	아파트	계	일반	아파트
전국	237,682	141,954	95,728	191,286	107,066	84,220	46,396	34,888	11,508
서울	49,440	32,243	17,197	49,440	32,243	17,197	-	-	-
부산	18,165	10,817	7,348	17,759	10,557	7,202	406	260	146
대구	12,128	7,070	5,058	11,413	6,723	4,690	715	347	368
인천	12,713	7,076	5,637	12,449	6,839	5,610	264	237	27
광주	6,793	2,982	3,811	6,793	2,982	3,811	-	-	-
대전	7,268	3,812	3,456	7,268	3,812	3,456	-	-	-
울산	5,053	2,698	2,355	4,248	2,281	1,967	805	417	388
경기	49,803	26,311	23,492	40,786	20,519	20,267	9,017	5,792	3,225
강원	7,871	4,852	3,019	4,790	2,405	2,385	3,081	2,447	634
충북	7,499	4,457	3,042	4,550	2,182	2,368	2,949	2,275	674
충남	9,869	6,504	3,365	3,498	1,629	1,869	6,371	4,875	1,496
전북	9,275	5,545	3,730	6,204	2,751	3,453	3,071	2,794	277
전남	9,243	6,301	2,942	4,001	1,818	2,183	5,242	4,483	759
경북	14,025	9,529	4,496	6,980	3,846	3,134	7,045	5,683	1,362
경남	15,857	9,561	6,296	9,179	5,028	4,151	6,678	4,533	2,145
제주	2,680	2,196	484	1,928	1,451	477	752	745	7

주) 지역별 총 조사구 수에서 섬,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조사구는 제외함.

- 지역적으로 조사구 분포를 살펴보면, 대도시(광역시)지역의 읍면부 조사구의 경우 동지역 조사구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표본조사구를 배분할 경우 거의 표본으로 추출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 표본배분 과정에서 이들 지역의 추출률을 어느 정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도지역의 경우 읍면부의 조사구 분포가 동부와 거의 유사한 분포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 대해 일정규모의 표본조사구 배분이 가능한 것을 파악됨
- 섬, 기숙사, 특수시설 조사구는 모집단조사구에서 제외

〈표〉 지역별 조사구유형별 동읍면부별 가구 수 분포(90%)

	전체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계	일반	아파트	계	일반	아파트
전국	14,260,103	8,378,179	5,881,924	11,567,849	6,360,644	5,207,205	2,692,254	2,017,535	674,719
서울	3,005,559	1,937,041	1,068,518	3,005,559	1,937,041	1,068,518	-	-	-
부산	1,074,589	623,668	450,921	1,052,411	610,218	442,193	22,178	13,450	8,728
대구	738,953	422,825	316,128	696,314	403,510	292,804	42,639	19,315	23,324
인천	737,976	399,023	338,953	722,054	384,745	337,309	15,922	14,278	1,644
광주	416,208	180,490	235,718	416,208	180,490	235,718	-	-	-
대전	434,710	224,936	209,774	434,710	224,936	209,774	-	-	-
울산	308,537	162,328	146,209	260,251	138,114	122,137	48,286	24,214	24,072
경기	3,021,932	1,547,053	1,474,879	2,505,031	1,225,549	1,279,482	516,901	321,504	195,397
강원	462,601	286,812	175,789	285,326	143,046	142,280	177,275	143,766	33,509
충북	450,291	267,315	182,976	279,771	134,390	145,381	170,520	132,925	37,595
충남	588,216	385,980	202,236	216,568	100,425	116,143	371,648	285,555	86,093
전북	544,563	317,258	227,305	369,987	158,310	211,677	174,576	158,948	15,628
전남	544,741	367,739	177,002	234,729	101,893	132,836	310,012	265,846	44,166
경북	830,597	558,120	272,477	419,252	226,562	192,690	411,345	331,558	79,787
경남	940,076	565,284	374,792	553,025	302,719	250,306	387,051	262,565	124,486
제주	160,554	132,307	28,247	116,653	88,696	27,957	43,901	43,611	290

주) 지역별 총 조사구 수에서 섬,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조사구는 제외함.

- 지역별 조사구 분포와 함께 지역별 가구수 분포와 동부, 읍면부의 가구분포는 위 표와 같음.
- 전국 총가구수는 14,260,103가구로 파악되었으며, 서울지역이 전체의 21.07%인 3,005,559가구이고, 부산광역시 7.53%, 대구광역시가 5.18%, 인천광역시 5.18%, 광주광역시가 2.92% 대전광역시 3.05%, 울산광역시 2.16%로 파악되어 가구규모별로 표본가구를 배분할 경우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가 상대적으로 적은규모의 표본가구가 배분될 것으로 예상
- 도지역의 경우 경기도가 전체의 21.19%로 나타나 타 지역에 비해 많은 가구수가 배분될 것으로 예상됨.

〈표〉 지역별 거처유형별 가구수 분포(90%)

	계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영업용	주택 외
전국	14,310,622	6,413,829	6,005,885	471,593	1,059,478	177,337	182,680
서울	3,005,559	1,314,120	1,102,872	127,632	374,347	26,058	60,530
부산	1,075,315	462,435	471,234	35,028	78,893	14,830	12,895
대구	738,953	358,796	322,970	6,479	39,152	10,376	1,180
인천	743,280	204,810	344,795	18,425	156,846	7,052	11,352
광주	416,208	165,629	235,537	4,725	3,163	4,698	2,456
대전	434,710	179,953	211,830	12,620	23,101	4,491	2,715
울산	308,537	126,086	153,049	7,003	15,618	5,317	1,464
경기	3,021,968	1,035,300	1,488,658	130,898	277,948	27,071	62,093
강원	462,601	252,184	178,717	17,511	3,200	9,199	1,790
충북	450,291	238,526	184,342	13,898	5,504	6,767	1,254
충남	589,406	338,739	204,079	19,486	15,371	8,912	2,819
전북	545,503	292,268	228,926	12,368	3,000	7,611	1,330
전남	581,943	372,056	179,327	10,683	4,492	10,359	5,026
경북	830,597	482,980	281,104	23,333	23,374	16,313	3,493
경남	944,054	490,809	386,318	22,122	20,210	14,667	9,928
제주	161,697	99,138	31,947	9,382	15,259	3,616	2,355

- 전국 가구를 거처유형별로 파악해보면,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각각 44.82%와 41.97%로 거처유형별로 가구수를 배분할 경우 대부분 단독주택과 아파트가구에 표본가구가 배분될 것임. 따라서 타 유형의 거처에 대한 추출률을 상향조정하여 일정규모의 거처유형이 표본가구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90% 자료를 기반으로 패널가구를 추출하기 위한 1차 판별자료의 성격을 가지는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표본조사구 분포는 지금까지의 모집단 분포를 지역별, 조사구별, 동·읍면별, 거처유형별, 가구규모별로 파악하여 총 517개 조사구를 일반 조사구와 아파트조사구에 대해 지역별로 조사구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하였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층에 대해서는 일정규모의 표본가구가 추출될 수 있도록 추출률을 상향 조정하였음.

□ 표본추출방법

- 1단계 표본추출
 -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27만여 개의 조사구중 90%조사구인 23만여 개 조사구중 예비조사구를 포함하여 517개 조사구를 지역별 조사구 규모에 따라 층화 추출하였으며, 층화의 주요기준변수로는 지역(16), 조사구형태(2), 주택유형(3) 등을 사용하여 총 96개 층으로 나누어 각 층별로 확률비례 추출하였음.
 - 전체 517개 표본조사구중에서 수해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지역의 조사구를 제외하고 487개 조사구에 대한 조사를 수행
 - 조사대상지역은 각 시도의 섬 지역을 제외한 전국을 포괄하며, 제주도를 포함
 - 표본 조사구는 전국을 대상지역으로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지만, 실제 조사가가능성 및 접근성과 조사비용 및 제한된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각 시도의 도서지역은 조사대상 지역에서 제외하고, 제주도는 조사지역에 포함하도록 하였음.
- 2단계 표본추출
 - 1단계 표본자료인 “최저생계비계측조사”자료를 기초로 패널가구의 전국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 7,000가구를 소득기준으로 중위소득 60%이하인 3,500가구와 중위소득 60%이상인 3,500가구를 각각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를 수행

- 저소득층과 일반 가구층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은 가구소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대안을 고려하였고, 최종적으로 “공공부조이전경상소득”의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저소득층 가구와 일반가구로 구분하였음.

〈표〉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분류기준

중위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공공부조이전 경상소득	
	가구수	백분율(%)	가구수	백분율(%)	가구수	백분율(%)
< 40%	2,481	10.0	2,489	10.09	3,477	13.96
< 50%	4,016	16.12	3,880	15.62	4,757	19.04
< 60%	5,227	22.56	5,473	22.25	6,128	24.76

- 소득 규모별로 구분된 2개의 층에 대해 지역별, 조사구별로 표본가구를 확률비례 계통추출에 의해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였음.
- 패널가구 구성을 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를 가진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추출률을 상향 조정하여 일반가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각각 3,500가구를 표본 가구로 선정

〈표〉 패널 조사를 위한 지역별 조사구수와 가구분포현황

지 역	조사구수		일반가구		저소득 가구		합 계	
	표본 조사구수	조사완료 조사구	일반 표본가구	조사완료 가구수	저소득 표본가구	조사완료 가구수	표본 가구수	조사완료가구 수
서울	93	93	811	886	506	449	1,317	1,335
부산	33	33	254	277	272	251	526	528
대구	25	25	187	204	227	218	414	422
인천	28	28	228	247	193	190	421	437
광주	15	15	114	123	130	121	244	244
대전	14	14	118	132	89	76	207	208
울산	14	14	120	124	82	79	202	203
경기	76	76	644	706	471	426	1,115	1,130
강원	14	14	102	118	131	118	233	236
충북	14	14	108	113	113	107	221	221
충남	20	20	153	161	168	160	321	321
전북	20	20	138	140	209	207	347	347
전남	19	19	104	109	273	268	377	377
경북	26	26	152	164	339	329	491	494
경남	30	30	229	240	254	248	483	488
제주	5	5	38	45	43	36	81	81
합 계	446	446	3,500	3,789	3,500	3,283	7,000	7,072

□ 한국복지패널 7차(1,800 가구) 신규패널 표본 배분 방법

- 한국복지패널의 6차년도 조사 이후에 원표본 가구 유지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신규 표본가구의 추가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저소득층 가구 및 가구원 분포가 어느 정도 치우침 현상이 발생하였고, 지역별 표본 규모는 잦은 이주와 탈락 등의 사유로 변동이 발생하였음.
-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신규표본은 1차 웨이브와 동일한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도록 하였으며, 이때 일반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비율도 1차 웨이브와 동일한 비율로 저소득 가구를 과대표집하였음. 또한 지역별 표본 배분의 경우 또한 1차 웨이브당시의 지역별 가구 비율과 유사하게 표본가구를 배분하여, 패널의 동질성을 최대한 유지하였음.

8-3 표본추출 결과

□ 원표본 추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6 최저생계비 계층조사(2006.6.30~10.1)"의 표본설계 당시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90% 조사구에 대해 이용 가능한 자료로서는 조사구별 가구 수, 조사구 형태, 주택형태 뿐이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조사구당 평균 60가구인 약 30,000가구를 추출하기 위해 500개 조사구의 기초 자료를 집계하여 지역별(16개광역시 및 도지역), 조사구 유형별(일반, 아파트), 읍면동별, 주택형태별(단독,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로 분류하여 분포를 파악하였고, 추가로 읍면지역 조사구를 표본으로 추출하기 위해 17개 조사구를 추가로 추출하여 총 517개 조사구를 표본조사구로 선정하였음.

〈표〉 지역별 표본조사구 분포

시 도	계	일반	아파트	계	구	시	군	동	읍	면
서울	110	68	42	25	25	-	-	110	-	-
부산	43	29	14	15	14	-	1	41	2	-
대구	30	23	7	8	7	-	1	27	3	-
인천	30	22	8	8	7	-	1	27	1	2
광주	16	6	10	5	5	-	-	16	-	-
대전	17	8	9	5	5	-	-	17	-	-
울산	14	9	5	5	4	-	1	10	3	1
경기	91	59	32	25	17	16	2	72	4	15
강원	18	9	9	11	-	5	6	10	5	3
충북	16	11	5	8	-	2	6	8	3	5
충남	21	14	7	10	-	3	7	4	6	11
전북	21	16	5	8	2	2	4	13	3	5
전남	22	16	6	11	-	5	6	7	9	6
경북	30	23	7	17	-	7	10	11	4	15
경남	33	19	14	15	-	8	7	15	6	12
제주	5	3	2	3	-	2	1	4	1	-
전체	517	335	182	179	86	59	53	392	50	75

- 표본 가구 수는 총 30,573가구 중 단독주택 20,335(66.5%)가구와 아파트 10,083(32.9%)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이를 동부와 읍면부로 구분하면, 동부 23,663가구(77.4%)와 읍면부 6,865가구(22.6%)로서 모집단 비율에 따라 지역별로 가구규모에 비례하도록 배분하여 표본을 추출

〈표〉 지역별 표본 가구 수

지 역	계			동 부			읍면 부		
	합계	단독주	아파트	합계	단독	아파트	합계	단독	아파트
전 국	30,573	20,335	10,083	23,663	1,4450	9,213	6,865	5,885	980
서울	6,438	4,623	1,815	6,438	4,623	1,815	-	-	-
부산	2,602	1,686	916	2,495	1,632	863	107	54	53
대구	1,585	949	636	1,426	850	576	159	99	60
인천	1,722	1,004	718	1,560	842	718	162	162	-
광주	8,15	424	391	815	424	391	-	-	-
대전	8,22	491	331	822	491	331	-	-	-
울산	8,66	528	338	866	528	338	-	-	-
경기	5,268	2,950	2,318	4,073	2,085	1,988	1,195	865	330
강원	1,091	908	183	559	376	183	532	532	-
충북	1,061	708	308	452	285	167	564	423	141
충남	1,335	995	230	375	178	197	960	817	143
전북	1,301	987	314	758	510	248	543	477	66
전남	1,327	914	413	706	293	413	621	621	-
경북	1,932	1,414	518	910	452	458	1022	962	60
경남	2,115	1,530	585	1,168	710	458	947	820	127
제주	293	224	69	240	171	69	53	53	-

주) 주택형태 "단독"은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형태를 나타냄.

□ 한국복지패널 7차(1,800가구) 신규표본 추출 결과

- 다음은 2010년 차상위조사의 일반과 저소득 가구로 구분하여 지역별 가구 분포에 따라 1,800가구를 비례 배분한 결과임.

〈표〉 지역별 신규표본배분 결과

지역	2010년 차상위 표본			표본배분		
	일반	저소득	계	일반	저소득	계
전국	10,745	4,298	15,043	900	900	1,800
서울	1,494	343	1,837	125	72	197
부산	821	330	1,151	69	69	138
대구	616	313	929	52	66	118
인천	706	243	949	59	51	110
광주	504	200	704	42	42	84
대전	535	172	707	45	36	81
울산	457	142	599	38	30	68
경기	1,510	342	1,852	126	72	198
강원	443	286	729	37	60	97
충북	490	235	725	41	49	90
충남	482	344	826	40	72	112
전북	524	278	802	44	58	102
전남	501	300	801	42	63	105
경북	600	351	951	50	73	123
경남	751	303	1054	63	63	126
제주	311	116	427	27	24	51

- 신규패널 표본 1,800가구에 대한 지역별 가구원수 분포를 살펴보면, 2006년 1차 웨이브 표본과 유사하게 1~8인가구가 존재하며, 이러한 분포를 바탕으로 가구소득을 산정하여 가구 구분에 반영하도록 하였음. 마찬가지로 지역과 가구구분 및 가구규모가 1차 웨이브와 유사하도록 배분함으로서 기존의 패널표본 분포를 따르도록 하였음.

〈표〉 지역별 가구원수 분포

(단위 : 가구)

지역	구분	가구원수								총합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서울	일반	48	96	106	100	22	2	1	0	375
	저소득	80	75	33	23	4	1	0	0	216
	계	128	171	139	123	26	3	1	0	591
부산	일반	23	42	54	65	17	5	1	0	207
	저소득	85	74	25	11	12	0	0	0	207
	계	108	116	79	76	29	5	1	0	414
대구	일반	10	39	30	63	13	1	0	0	156
	저소득	90	67	19	17	4	1	0	0	198
	계	100	106	49	80	17	2	0	0	354
인천	일반	26	44	42	46	15	3	1	0	177
	저소득	60	55	26	8	3	1	0	0	153
	계	86	99	68	54	18	4	1	0	330
광주	일반	22	33	24	32	14	0	1	0	126
	저소득	60	43	11	8	2	2	0	0	126
	계	82	76	35	40	16	2	1	0	252
대전	일반	15	30	44	37	8	1	0	0	135
	저소득	37	40	15	13	3	0	0	0	108
	계	52	70	59	50	11	1	0	0	243
울산	일반	10	22	34	41	7	0	0	0	114
	저소득	33	36	11	7	3	0	0	0	90
	계	43	58	45	48	10	0	0	0	204
경기	일반	42	82	100	114	32	8	0	0	378
	저소득	71	78	28	27	7	5	0	0	216
	계	113	160	128	141	39	13	0	0	594

지역	구분	가구원수								총합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강원	일반	18	30	23	27	10	2	1	0	111
	저소득	69	79	22	7	2	0	1	0	180
	계	87	109	45	34	12	2	2	0	291
충북	일반	12	37	21	36	12	2	2	1	123
	저소득	53	69	14	6	5	0	0	0	147
	계	65	106	35	42	17	2	2	1	270
충남	일반	17	29	29	25	14	6	0	0	120
	저소득	69	86	34	16	6	4	1	0	216
	계	86	115	63	41	20	10	1	0	336
전북	일반	19	32	31	38	12	0	0	0	132
	저소득	67	72	14	15	4	1	1	0	174
	계	86	104	45	53	16	1	1	0	306
전남	일반	20	30	27	38	10	1	0	0	126
	저소득	86	82	10	5	5	1	0	0	189
	계	106	112	37	43	15	2	0	0	315
경북	일반	15	51	33	37	10	2	2	0	150
	저소득	99	77	21	13	6	3	0	0	219
	계	114	128	54	50	16	5	2	0	369
경남	일반	14	43	50	60	17	5	0	0	189
	저소득	78	70	25	13	3	0	0	0	189
	계	92	113	75	73	20	5	0	0	378
제주	일반	13	18	19	20	9	1	0	1	81
	저소득	35	21	6	8	1	0	1	0	72
	계	48	39	25	28	10	1	1	1	153

□ 한국복지패널 17차(2,012가구) 신규 표본설계 및 결과

- 2021년 한국복지패널 추가 표본은 1~16차 조사까지 지속적으로 마모되는 패널 표본의 통계분석의 유의성을 확보하고, 복지패널로부터 산출되는 통계의 신뢰성 보장 및 복지정책 대상자 표본을 확보함으로서 복지정책의 효과성을 적절히 분석하고자 17차 조사에서 기존 패널에 대한 신규패널 가구를 추가하고자 함
-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패널 가구의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저소득층과 일반소득층으로 구분하여 패널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파악하기 위해 이중 추출방법으로 패널을 구축하기 위한 1단계 조사가 필요함
- 1단계에서는 대규모 표본을 추출하여 표본가구로부터 소득을 파악한 후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파악된 소득을 기반으로 패널 가구를 선정하여 최종 패널 가구를 구축하는 과정을 따르게 됨
 - 목표모집단: 2021년 대한민국 거주 가구 및 가구원
 - 조사모집단: 2021년 대한민국 거주 가구 및 가구원(집단거주자 및 비주거 가구원 제외)
 - 표본추출틀: 2020년 조사구 리스트(시설조사구, 섬조사구 제외)
 - 표본규모: 기존 패널의 특성별 응답률(또는 탈락률), 패널의 유지 기간 동안의 예상 응답률, 전통적인 표본 규모 산출방법을 고려하여 1단계 표본 규모를 결정함(1단계 7,000가구, 2단계 2,000가구)
 - 층화 및 표본배분: ① 시도별 동부와 읍면부별로 유지율 또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표본가구를 배분하였고, ② 모집단의 거주 유형별(일반, 아파트)로 비례 배분함
 - 원표본과 신규 패널 전체의 탈락률을 표본비율로 고려한 표본배분이 패널 유지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보여짐(떡배분 $p=0.4$)
 - 아래 표로부터 조사구당 평균 10가구를 조사할 경우 최종 700개 조사구를 가구 규모에 따라 층별로 할당한 결과임

〈표〉 층별 표본조사구 배분

(단위 : 개)

구분	동부			읍면부		
	일반	아파트	계	일반	아파트	계
전국	133	329	462	143	95	238
서울	23	34	57	-	-	0
부산	12	23	35	2	9	11
대구	8	21	29	2	9	11
인천	11	22	33	8	1	9
광주	5	18	23	0	0	0
대전	7	20	27	0	0	0
울산	5	16	21	4	8	12
세종	0	13	13	5	5	10
경기	13	39	52	14	14	28
강원	6	15	21	11	5	16
충북	5	16	21	10	7	17
충남	4	15	19	15	10	25
전북	6	18	24	14	3	17
전남	5	15	20	17	5	22
경북	8	18	26	17	8	25
경남	6	20	26	14	10	24
제주	9	6	15	10	1	11

〈표〉 1단계 표본가구의 분포

(단위: 가구)

구분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전국	1,330	3,290	1,430	950	7,000
서울	230	340	-	-	570
부산	120	230	20	90	460
대구	80	210	20	90	400
인천	110	220	80	10	420
광주	50	180	-	-	230
대전	70	200	-	-	270
울산	50	160	40	80	330
세종	-	130	50	50	230
경기	130	390	140	140	800
강원	60	150	110	50	370
충북	50	160	100	70	380
충남	40	150	150	100	440
전북	60	180	140	30	410
전남	50	150	170	50	420
경북	80	180	170	80	510
경남	60	200	140	100	500
제주	90	60	100	10	260

○ 2단계 표본가구 배분

- 소득기준별로 동일한 규모로 배분되도록 하였으며, 이때 17개 시도 및 동부와 읍면부별로 1단계 표본 규모에 따라 ① 소득 수준별로 배분하고, ② 지역별로 비례 배분함
- 저소득 및 일반 가구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비중이 낮아 소득규모에 따라 비례배분할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표본이 배분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규모로 배분함
- 조사 응답률을 고려하여 저소득 및 일반가구에 대해 2배수로 추출하여 일정규모의 표본이 확보되도록 하였음

〈표〉 저소득 가구의 지역별 분포

(단위: 가구)

저소득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전국	200	355	345	100	1,000
서울	21	28	0	0	49
부산	24	33	4	9	70
대구	19	40	5	12	76
인천	13	26	17	2	58
광주	3	26	0	0	29
대전	18	17	0	0	35
울산	4	13	10	5	32
세종	0	11	11	16	38
경기	16	31	27	12	86
강원	17	20	28	5	70
충북	10	14	22	5	51
충남	3	10	27	13	53
전북	11	28	33	5	77
전남	12	15	53	2	82
경북	10	12	51	6	79
경남	10	27	43	8	88
제주	9	4	14	0	27

〈표〉 일반 가구의 지역별 분포

(단위: 가구)

일반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전국	200	355	345	100	1,000
서울	41	38	0	0	79
부산	15	23	5	10	53
대구	9	18	4	9	40
인천	18	23	22	4	67
광주	9	17	0	0	26
대전	7	23	0	0	30
울산	9	19	9	9	46
세종	0	15	13	2	30
경기	21	45	42	10	118
강원	5	15	25	5	50
충북	7	18	27	8	60
충남	7	18	46	10	81
전북	8	17	35	3	63
전남	5	17	28	6	56
경북	13	22	30	9	74
경남	10	20	24	10	64
제주	16	7	35	5	63

- 최종 표본은 저소득 및 일반 가구의 할당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타남

〈표〉 추가 표본 가구의 소득 유형별 지역 배분 결과 및 조사 결과

(단위: 가구)

구분	저소득						일반					
	동부		읍면부		계	조사 결과	동부		읍면부		계	조사 결과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전국	200	355	345	100	1,000	1,025	200	355	345	100	1,000	987
서울	21	28	-	-	49	54	41	38	-	-	79	74
부산	24	33	4	9	70	70	15	23	5	10	53	53
대구	19	40	5	12	76	77	9	18	4	9	40	40
인천	13	26	17	2	58	57	18	23	22	4	67	66
광주	3	26	-	-	29	32	9	17	-	-	26	25
대전	18	17	-	-	35	36	7	23	-	-	30	32
울산	4	13	10	5	32	38	9	19	9	9	46	40
세종	-	11	11	16	38	38	-	15	13	2	30	30
경기	16	31	27	12	86	88	21	45	42	10	118	117
강원	17	20	28	5	70	66	5	15	25	5	50	53
충북	10	14	22	5	51	48	7	18	27	8	60	64
충남	3	10	27	13	53	54	7	18	46	10	81	80
전북	11	28	33	5	77	81	8	17	35	3	63	61
전남	12	15	53	2	82	83	5	17	28	6	56	56
경북	10	12	51	6	79	84	13	22	30	9	74	68
경남	10	27	43	8	88	93	10	20	24	10	64	64
제주	9	4	14	0	27	26	16	7	35	5	63	64

9. 표본관리

□ 표본 내 변동 발생 시 수정 · 보완 방법

○ 가구원 개념에 따라 조사대상을 달리함.

- 가구원은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 하였던 자로 한다.

○ 가구원은 주민등록 등재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실상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을 말한다.

□ 위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란 소득과 소비를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도 부모와 같은 가구로 본다.

① 주거를 달리하는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생활비 전체를 상대(부모 가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경우(예시: 자녀가 교육관계로 다른 곳에 기숙하고 있는 경우 등)

※ 30세 이상의 자녀는 주거를 달리할 경우, ‘별도가구’로 본다.

② 행상 또는 근무 등의 이유로 자녀를 타인에게 맡겨서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 경우

□ 포함 가구원: 다음의 가구원이 있는 지 확인하도록 한다.

① 여행, 출장 등 국내외의 다른 곳에 잠시(2021년 1년 중 3개월 미만) 출타 중인 가구원

② 병원이나 기도원 등에 잠시(2021년 1년 중 3개월 미만) 입원(입소)해 있는 가구원

③ 공익근무요원, 3개월 미만의 가출자, 미결수

④ 선박(원양어선 제외), 항공기, 철도 탑승 승무원

⑤ 맥의 식구는 아니지만 9개월 이상 계속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소득과 소비를 공유하지 않는 하숙생 등은 제외)

□ 포함되지 않는 가구원: 다음의 가구원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① 장기간(2021년 1년 중 3개월 이상) 형 확정으로 교도소, 소년원, 감호소 등에 살고 있는 사람

② 장기간(2021년 1년 중 3개월 이상) 군대 또는 전투경찰에 입대하여 집을 떠나 있는 사람

③ 장기간(2021년 1년 중 3개월 이상) 사회복지시설 등에 장기요양 또는 수용 중인 사람

※ 단, 가구원용 조사 대상자이더라도 다음의 경우 조사를 하지 않고, 가구원용 조사표 표지만 작성(가구원용 미완사유 참조).

- 1) 뇌병변장애인
- 2)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1,2급 장애인
- 3) 사망자
- 4) 의사의 진단을 받은 극심한 우울증 환자
- 5) 치매환자
- 6)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이사 등으로 동일 지역에서 주소가 바뀐 경우 혹은 타 지역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현재 주소 확인 협조를 구함.

○ 표본가구 관리방법

- 접촉가구에서 장기출타, 시설입소, 늦은 귀가 등을 제외하여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 가구들로만 거부로 하여 조사

□ 표본 유지 현황

-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총 17차 웨이브까지의 원패널가구의 유지율을 분석해보면, 2006년 대비 2022년 17차 웨이브의 원패널가구에 대한 유지율은 51.8%이며, 원패널가구원은 52.2%로 가구원에 비해 가구의 탈락률이 다소 높게 나타남.
-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신규가구의 유지율은 2012년 대비 2022년 원패널가구에 대한 유지율은 66.0%이며, 가구원은 61.63%로 가구에 비해 가구원의 탈락률이 높게 나타남.
- 여기에서 원표본은 기존 패널의 원표본을 의미하며, 분가 가구는 원표본의 신규(2~17차 생성) 가구와 2012년 추가패널을 포함함.
 - 조사 미완료 가구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전체 미완료 가구(304가구) 중 조사 거부가 180가구(원표본 89, 분가 91)로 가장 높은 비중(59.21%)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자연적인 탈락으로 볼 수 있는 사망 가구는 54가구(원표본 35, 분가 19)로 17.76%를 차지함. 또한 1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미완료 가구 중 기타(요양소 입소, 이민 등)가 41가구(원표본 28, 분가 13)로 13.49% 인 것으로 분석되고, 합가 가구는 18가구(원표본 1, 분가 17)로 5.92%임. 그 밖에 이사 후 주소 부재로 인한 추적 불가 가구가 6가구(원표본 3, 분가 3), 장기 출타 가구가 5가구(원표본 1, 분가 4)로 나타남.
- 1차 조사 대비 17차 조사의 원표본 패널 가구 탈락률(attrition rate)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가구의 경우 48.19%, 가구원의 경우 47.78%의 탈락률을 보임
 - 지역별 가구 탈락률은 서울 지역이 61.50%로 가장 높고, 울산이 53.20%로 두 번째로 탈락률이 높다. 반면 충남 지역의 탈락률이 32.0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 가구원 탈락률은 서울이 59.47%로 가장 높고, 부산이 52.57%로 두 번째로 높다. 지역별 가구원 탈락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충남으로 34.59%임
- 1차 조사 대비 11차 조사의 2012년 추가 표본 패널 가구 탈락률(attrition rate)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가구의 경우 34.00%의 탈락률을, 가구원의 경우 38.37%의 탈락률을 보였다. 지역별 가구 탈락률은 서울이 48.45%로 가장 높으며, 울산이 38.96%로 두 번째로 높음
 - 반면 충남 탈락률은 18.87%로 제일 낮은 것으로 나왔다. 지역별 가구원 탈락률은 서울이 50.88%로 가장 높고, 울산이 45.12%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표〉 웨이브별 가구 및 가구원 유지율

(단위: 가구, 명, %)

조사웨이브	가 구(원가구)		가 구(신규가구)		가구원(원가구)		가구원(신규가구)	
	표본수	유지율	표본수	유지율	표본수	유지율	표본수	유지율
1차 웨이브	7,072	100.00			14,463	100.00		
2차 웨이브	6,511	92.06			13,264	91.71		
3차 웨이브	6,128	86.65			12,399	85.73		
4차 웨이브	5,935	83.92			11,902	82.29		
5차 웨이브	5,675	80.25			11,379	78.68		
6차 웨이브	5,335	75.44			10,670	73.77		
7차 웨이브	5,271	74.53	1,800	100.00	10,566	73.06	3,375	100.00
8차 웨이브	5,104	72.17	1,690	93.89	10,274	71.04	3,146	93.21
9차 웨이브	4,896	69.23	1,594	88.56	9,867	68.22	2,932	86.87
10차 웨이브	4,760	67.31	1,534	85.22	9,656	66.76	2,791	82.70
11차 웨이브	4,560	64.48	1,478	82.11	9,244	63.91	2,681	79.44
12차 웨이브	4,398	62.19	1,426	79.22	8,934	61.77	2,566	76.03
13차 웨이브	4,266	60.32	1,392	77.33	8,686	60.06	2,482	73.54
14차 웨이브	4,124	58.31	1,343	74.61	8,444	58.38	2,390	70.81
15차 웨이브	3,865	54.65	1,281	71.17	7,913	54.71	2,265	67.11
16차 웨이브	3,816	53.96	1,239	68.83	7,819	54.06	2,162	64.06
17차 웨이브	3,664	51.81	1,188	66.00	7,552	52.22	2,080	61.63

〈표〉 2022년 1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미완료 사유별 가구 현황

구분	자연소실		사유소실				총 계
	사망	합가	조사거부	장기출타	추적불가	기타	
원가구	35	1	89	1	3	28	157
분가가구	19	17	91	4	3	13	147
합계	54	18	180	5	6	41	304

〈표〉 17차 조사의 원표본 가구 및 가구원 지역별 탈락률 비교

(단위: 가구, 명, %)

지역	가구			가구원		
	1차 조사	17차 조사	탈락률	1차 조사	17차 조사	탈락률
전국	7,072	3,664	48.19	14,463	7,552	47.78
서울	1,335	514	61.50	2,847	1,154	59.47
부산	528	249	52.84	1,090	517	52.57
대구	422	219	48.10	873	445	49.03
인천	437	221	49.43	914	452	50.55
광주	244	147	39.75	519	317	38.92
대전	208	99	52.40	435	222	48.97
울산	203	95	53.20	424	204	51.89
경기	1,130	578	48.85	2,324	1,343	42.21
강원	236	138	41.53	465	267	42.58
충북	221	140	36.65	457	286	37.42
충남	321	218	32.09	662	433	34.59
전북	347	199	42.65	655	361	44.89
전남	377	236	37.40	709	453	36.11
경북	494	280	43.32	942	465	50.64
경남	488	285	41.60	975	540	44.62
제주	81	46	43.21	172	93	45.93

〈표〉 17차 조사의 2012년 신규 표본 가구 및 가구원 지역별 탈락률 비교

(단위: 가구, 명, %)

지역	가구			가구원		
	1차 조사 (2012)	11차 조사 (2022)	탈락률	1차 조사 (2012)	11차 조사 (2022)	탈락률
전국	1,800	1,188	34.00	3,375	2,080	38.37
서울	194	100	48.45	397	195	50.88
부산	133	92	30.83	239	166	30.54
대구	126	80	36.51	223	139	37.67
인천	109	68	37.61	199	118	40.70
광주	87	63	27.59	159	124	22.01
대전	89	59	33.71	166	98	40.96
울산	77	47	38.96	164	90	45.12
경기	180	118	34.44	370	225	39.19
강원	95	66	30.53	174	111	36.21
충북	90	60	33.33	176	100	43.18
충남	106	86	18.87	196	147	25.00
전북	104	74	28.85	190	126	33.68
전남	102	64	37.25	178	106	40.45
경북	130	88	32.31	229	131	42.79
경남	127	83	34.65	218	127	41.74
제주	51	40	21.57	97	77	20.62

□ 표본 관리방법 및 내용

○ 상시 관리

- 명절 선물 지급
 - 설과 추석에 명절선물 발송
- 이사 정보 제공시 선물 지급
 - 080 수신자 부담 전화 운영
- 기타(긴급 상황 대응)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방역물품 지급
 - 태풍피해, 산불 등 자연재해에 따른 위로금 지급

○ 실사 기간

- 조사 시작 전, 과년도 조사에 참여한 가구에게 조사시작 안내엽서 발송
- 조사시작 전, 과년도 조사에 참여한 가구에게 사전 전화조사 실시
 - 이사 여부 및 주소 파악, 조사 가능 여부와 조사 실시 안내 등을 목적으로 실시
- 조사 종료 후 당해년도 분가가구에게 조사참여에 대한 감사의 선물 발송

○ 응답 사례금

- (기본 사례금) 가구 설문과 가구원 설문을 완료한 가구
 - 가구조사표 당 50,000원 + 가구원 조사표 당 5,000원 농협상품권 및 계좌이체
 - 부가조사표: 1부당 5,000원(복지인식, 장애인), 아동 1인당 10,000원(문화상품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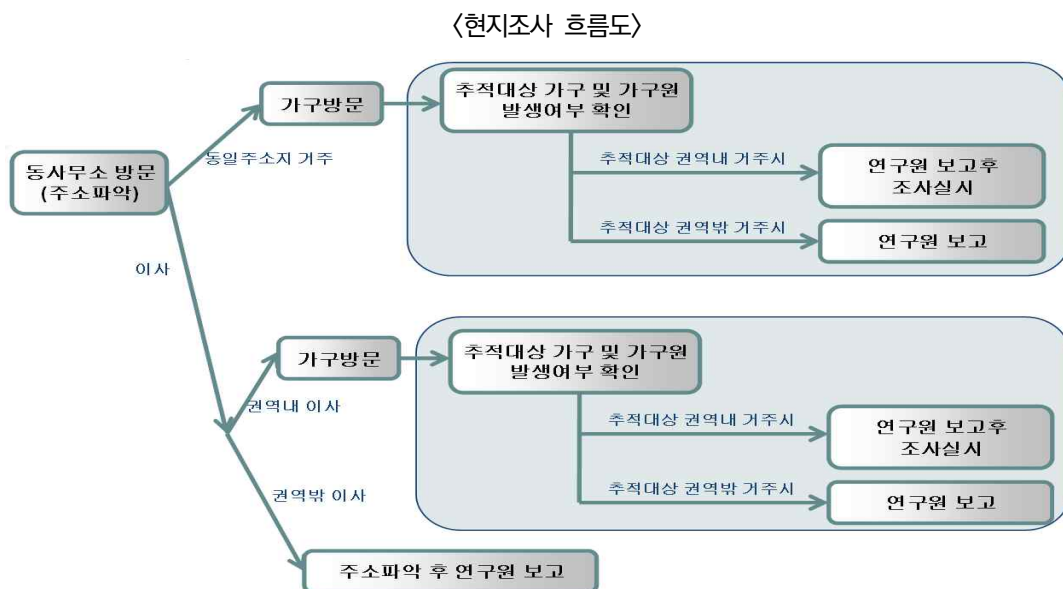
Ⅲ. 자료수집

1. 조사방법

1-1 조사방법 선택에 대한 검토

- CAPI : 컴퓨터를 이용한 타계식 직접 면접조사로, 조사원이 노트북을 지참하고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 진행
 - 조사원 규모: 14개팀, 1인체계 4인 총 47명의 조사(지도)원 직접 수행
- 조사의 효율성, 정확성 등의 제고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관리 부서에서 조사원을 위탁 도급 계약하여 직접적으로 수행 운영
 - 현장 조사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조사결과의 정확성 제고
 - 조사결과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전달체계 구축
 - 면접조사 완료 시 에디팅 및 에러체크 등을 통한 검증 실시
 - 조사기간 중에 2회에 걸쳐 사후검증 실시로 조사의 신뢰성 제고
- 조사 설명회 운영 및 현장 조사 검증 등
 - 조사 설명회 실시 (조사표 교육 및 매뉴얼 숙지 교육)
 - 방문조사 후에도 확인사항 발생시 수시로 방문 및 전화를 통하여 확인 조사 실시
 - 조사원이 현장방문하여 조사완료를 하고, 조사지도원이 조사원의 조사데이터를 에디팅 점검하여 최종 데이터를 완료함.
 - 조사원 필요용품: 조사원 확인증, 조사원 명함, 조사매뉴얼, 조사협조공문, 조사용 노트북(CAPI) 등

1-2 조사과정



※ 권역내 이사: 동일 지역으로 이사하였거나, 인접 지역으로 이사하였지만 현지에서 조사가 가능한 곳으로 이사한 경우(단, 팀의 조사지역 외로 이사하거나 분가한 경우는 타 팀에게 전달이 가능하도록 연구원에 연락)

1단계

동사무소 방문(가구 주소파악 및 정부지원 수금액 확인)

- 가. 인포시트 상의 주소지의 동사무소(필요시 사회복지사무소)를 방문하여, 패널가구가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사한 경우 이사 간 주소를 파악함.
- 나. 사회복지담당자의 협조를 얻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기타정부보조금’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수급여부 및 수금액을 파악함.
- 다.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왔음을 알리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조사협조 공문이 내려왔는지 확인. 만약, 아직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을 경우, 나누어준 보건복지부 협조 공문을 보여주고 정중하게 조사 협조를 구함.
- 라. 만약 이사를 간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할당된 조사 지역 내로 이동하였으면 본인 팀에서 추적조사 실시, 할당 조사지역 외 면 지역으로 이동했으면 주소를 파악하여(지도원이 취합하여) 가구 ID를 연구원에 보고함.

2단계

인포시트 확인 및 가구방문 -조사대상 가구원 파악(CAPI 입력내용 확인)

- 마. 동사무소(주민센터) 협조와 가구방문을 하기 전 CAPI에 입력된 인포시트 및 조사 가구의 주소를 확인. 만일 CAPI상에 해당 조사대상 가구의 주소가 잘못 입력된 경우 연구원에 연락하여 이를 수정하거나, 또는 조사대상 가구의 개인연락처를 활용하여 수정한 후 조사지역내인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지역외 인 경우 연구원에 연락하여 조정함.
- 바. 가구방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인포시트의 내용을 가구주성명, 전화번호, 가구형태 등에 대해 순서대로 확인함.
- 사. 위의 사항이 확인이 되면 조사대상가구원수를 확인함.

3단계

추적대상 가구 및 가구원 발생 여부 확인

- 아. 추적 대상 가구는 1) 조사지역 밖으로 이사한 가구, 2) 해당 조사차수 신규가구(분가가구)를 의미함.
 - 1) 추적대상 가구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의 조사 팀에서 인계 받아 실시함.
 - 2) 권역 밖으로 이사한 가구의 경우 해당 가구 ID를 취합하여 연구원에 보고함.
 - 3) 원가구원의 결혼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분가가구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소를 파악하여 역시 연구원에 보고. 권역 내에 거주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권역밖에 거주하는 경우 주소를 파악하여 대상 가구원(가구주)및 가구원이 속한 가구ID를 연구원에 보고함.
- 자. 추적 대상 가구원은 가구원용 조사표 대상자이면서 소속 가구(원가구 혹은 신규가구)와 주거를 달리하는 비동거 가구원을 의미함.
 - 1) 추적 대상 가구원이 조사지역 내에 거주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지역밖에 거주하는 경우 주소를 파악하여 연구원에 보고함.

4단계

신규 가구원 편입 여부 확인

- 차. CAPI 프로그램의 가구원 정보의 가구원 외에 새롭게 편입된 가구원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해당 조사차수 신규가구원 대상자이면 CAPI 프로그램에서 신규가구원을 생성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차수 조사 대상자가 아닌 다음 조사차수의 신규가구원 조사 대상자이면 CAPI 프로그램의 가구원 변동사항에서 신규가구원을 생성한 후 “상태”에서 “예정”을 선택한 후 가구원의 정보만 파악함.

5단계

가구판별 및 가구원 변동사항

카. 인포시트 확인 작업 후, 가구(유형1)와 신규가구(유형2)를 판별, 각각 가구의 가구원을 파악(표 참조).

<17차 가구 및 가구원 판별 기준>

구분	기준시점	17차 가구원수 포함여부	조사여부	capi상의 가구원 변동상태	
				변동사항	상태
원가구원 (중간 차수에 빠졌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	2022. 03. 31 이전 진입	포함	17차 원가구원으로 조사	원가구원	기존
	2022. 04. 01 이후 진입	비포함	올해는 조사치 않고 18차 원가구원으로 조사	원가구원	예정
신규 가구원	2022. 03. 31 이전 진입	포함	17차 신규가구원으로 조사	신규가구원	신규
	2022. 04. 01 이후 진입	비포함	18차 신규가구원 대상자로 올해 조사치 않고 정보만 파악	신규가구원	예정
분가 가구원	2022. 09. 30 이전 분가	비포함	17차 신규가구로 조사	분가가구원	분가
	2022. 10. 01 이후 분가	포함	18차 신규가구 대상자이며 17차 원가구원으로 조사	분가가구원	예정
사망 가구원	2022. 09. 30 이전 사망	비포함	가구원 소실	사망가구원	사망
	2022. 10. 01 이후 사망	포함	17차 가구원으로 조사 (가구용조사 내 가구원)	사망가구원	기존
요양소입소 가구원	2022. 09. 30 이전 입소	비포함	가구원 소실	요양소입소 가구원	입소
	2022. 10. 01 이후 입소	포함	17차 가구원으로 조사	요양소입소 가구원	기존

가구원은 2021년 1년간 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 한 자를 의미하므로, 이에 유의하여 가구원을 판정(‘가구원 개념’ 참조)

※ 단, 17차 신규가구의 가구원은 생성시점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4이상 생계를 같이 한 사람을 의미

6단계

조사 실시

타. 인포시트의 내용과 CAPI 프로그램의 가구 및 가구원 변동사항 확인이 끝나면, 가구원 일반사항을 확인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한 후 조사를 실시함.

7단계

답례품 증정 및 답례품 수령 확인 도장 받기

파. 해당 가구의 가구 및 개인 조사가 모두 완료되었으면 정중히 “고맙습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조사 답례품을 증정하고, “한국복지패널조사 답례품 수령증” 수령인란에 확인 도장 혹은 서명 받음. 조사답례품 선택이 농촌사랑상품권이 아닌 계좌이체일 경우 계좌이체 동의서에 계좌정보를 기입받고 도장 또는 서명을 받아 2주 이내 지급됨을 전달함.

하. 조사지도원은 각 가구에 지급된 조사답례품수령증 금액과 조사완료 후의 CAPI상에 기록된 금액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한국복지패널조사 답례품 수령증” 지도원 확인란에 서명함.

8단계

조사결과 정리

거. 마지막으로 면접가능시간대, 이사계획유무 등 참고가 될만한 가구정보를 여쭙보고 CAPI 접촉 일지“방문가구 기재사항”란에 기재함.

9단계

조사완료 전송

너. 가구마다 조사가 완료되면 CAPI “접촉일지”부분에 완료표시를 하고 가구에 지급한 답례품의 금액을 확인 후 조사를 마무리.

더. 완료된 조사는 CAPI 인터뷰어 상에서 “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전송함.

10단계

지도원 에디팅완료 전송

러. 지도원은 해당 팀의 조사원이 전송한 조사결과를 CAPI 매니저 상에서 에디팅 한 후 완료되면 “지도원 완료” 버튼을 클릭한 후 연구원으로 전송함.

머. 답례품수령증을 수거하여 조사판정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해당 대상과 조사가 일치하였는지, 지급된 답례품 금액이 일치하였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함.

11단계

조사부대자료 제출

버. 조사팀별로 한 지역조사와 현지 에디팅이 완료되면, 지역별로 조사답례품수령증을 모아 보관 후 일정수량이 되면 연구원으로 등기 발송함.

서. 조사팀별로 조사일정에 따라 모든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부대자료와 남은 조사답례품을 모두 연구원에 제출함.

어. ※ 조사부대자료 : 조사용 노트북, 조사답례품수령증 및 계좌이체동의서 등

□ 현장조사 실시 요령 및 유의사항

< 조사원 역할 및 유의사항 >

○ 조사원 신분 및 조사홍보, 조사신뢰확보 노력

- 조사업무 수행 중에는 항상 조사원 신분증을 패용하도록 한다.
- 조사원 신분증을 달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응답자의 조사원에 대한 신뢰가 달라진다. 조사원 신분증을 달지 않으면 상품 판매원으로 알고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 조사원은 패널가구를 방문하여 조사 실시전에 조사의 중요성 및 조사원에 대한 신뢰성, 이사시 연락처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조사원 명함을 전달하도록 한다.
- 이와 함께 혹시라도 패널 가구의 전년 조사결과에 대한 문의 및 복지패널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정중하게 복지패널 홈페이지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를 알려 주도록 한다.

※ 한국복지패널 홈페이지 - <http://www.koweaps.re.k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kihasa.re.kr>

○ 조사원의 태도

- 복지패널 조사의 경우 매년 반복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표본관리 및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조사가구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로 조사에 임하여 좋은 인상을 남기고 오도록 한다.
- 반드시 조사지침사항을 준수하여 조사에 임하도록 한다.

- 조사의 정확성은 일차적으로 응답자를 대하는 조사원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조사원이 당면하게 될 여러 가지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조사원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적절한 수단을 써야 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조사 요령을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
- 응답자가 조사의 목적, 응답결과의 활용 등에 대하여 이해를 하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이해를 하면서도 조사내용과 관계되는 사실을 숨기거나 답변을 꺼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응답자가 조사원을 최대한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사원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 불량한 옷을 입거나, 화장을 너무 짙게 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혹시 모자를 쓰고 다니다가도 대문에 들어서기 전에 벗어야 한다. 이러한 사소한 행동에도 응답자는 대단한 호감을 갖기 때문이다.
- 대화에는 존댓말을 사용하되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을 써야 한다. 조사를 빨리 끝내고 싶은 생각에서 말을 빨리 하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불쾌한 마음을 갖게 되므로, 가급적 질문은 또박또박 천천히 하는 것이 좋다.
- 조사기간에는 이 조사업무만을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항상 지도원의 지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 조사 불응의 경우

- 한국복지 패널조사는 정부승인 지정통계조사(승인번호 제331009호)이며, 이 조사의 내용이 통계작성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며 또한 법(통계법 제33조, 제34조)으로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을 설명하여야 한다.
- 조사불응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조사원의 태도가 중요하므로 응답자가 어떤 불쾌한 말을 하더라도 조사원은 침착하고 겸손해야 한다.
- 답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여 이 통계조사의 중요성과 조사결과의 처리방법 등을 이해시켜야 한다.
- 응답을 거부하는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하여 조사원은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최선을 다하여 응답자를 설득하였지만 계속 불응할 때에는 너무 오래 끌지 말고 번거롭게 해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고 적당한 시기에 일단 물러나야 하며, 지도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 불응을 하였더라도 그 가구에서 나올 때에는 “귀찮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란 인사를 하여야 한다.

○ 조사완료의 경우

- 가구조사든 개인조사든 여러 번 방문하여 조사가 끝나면, 그 가구에서 나올 때마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하며, 끝까지 좋은 인상을 남기고 오도록 한다.
- 이 때 말로만 하지 말고, 정중하게 인사하도록 한다.

< 조사지도원 역할 및 유의사항 >

○ 읍·면·동사무소 방문

- 조사지도원은 이사 등으로 동일 지역에서 주소가 바뀐 가구가 있을 경우, 타 지역으로 전입을 한 경우에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현재 주소 확인 협조를 구한다.
- 관내 조사대상 가구(신규 전입가구 포함)의 기초보장급여 및 기타정부보조금 (장애수당, 경로연금, 기초노령연금, 국가유공자 보조금 등) 수급액 확인 협조를 구한다.

○ 조사업무의 지도·관리

- 조사원이 교육을 받은 그대로 조사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반드시 조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며, 조사원이 조사한 조사표를 올바르게 기재했는지 검토하고 항상 독려·지도한다.
- 지도원이 얼마나 현지 조사업무를 잘 관리하고, 팀 내의 협조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에 따라 이 조사의 성공여부가 달려 있음을 숙지하여야 한다.

○ 불응가구에 대하여 조치

- 불응가구에 대해서는 조사원으로부터 상황을 듣고, 재방문을 지시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 설득해 볼 것인가를 결정한다(필요시 연구진과 상의).
-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의 협조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일 수 있다. 또는 조사지역 통장, 반장, 부녀회장, 아파트의 경우 주민대표(와 관리소장), 경찰서(파출소)에 조사의 주지 및 협조를 요청한다.

○ 조사원의 행동 및 태도에 대한 관심

- 현지에서 조사원이 적절한 품위를 유지하고 태도가 겸손한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고쳐야 할 점에 대하여는 충고를 한다. 왜냐하면, 응답자나 인근 주민이 조사원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하게 되면, 조사에 비협조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조사원에 대한 조사 대상 가구 ID 파악 및 배분

- 조사지도원은 해당 조사지역의 조사대상 가구ID를 파악하여 팀별(조사원)로 올바르게 ID가 배부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 CAPI 조사는 개별 조사원별로 ID를 할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팀당 조사원의 조사량을 고려하여 배부한다.

○ 조사원 및 본인의 노트북 관리와 표본관리

- 조사원과 조사지도원에게 배부된 노트북을 손상시키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 만일 조사원 또는 본인의 노트북에 이상이 발생하여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조속히 연구원에 연락하여 대체노트북을 받아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CAPI 전용 노트북은 반드시 조사 전용으로만 활용하고, 조사 이외의 작업은 가급적 피하도록 한다. 조사표 이외의 프로그램 설치하는 조사과정에서 CAPI 조사표에 대한 진행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다.
- 조사원이 조사 완료한 자료를 조사지도원은 전용 노트북(CAPI 매니저)으로 조사내용을 검토한 후 최종 검토된 자료를 연구원에 전송하도록 한다.

○ 조사표 업데이트 확인

- CAPI 조사과정에서는 수시로 수정된 조사표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조사원 및 조사지도원의 노트북에 설치된 CAPI 프로그램은 반드시 가장 최신의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야 하며, 조사지도원은 반드시 해당 팀원들의 노트북에 설치된 CAPI 조사표를 확인하여 업데이트가 되도록 독려한다.
- 만일 조사표 업데이트가 실행되지 않을 경우 연구원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업데이트가 되도록 한다.
- 조사원별 조사표 버전 업데이트는 연구원의 담당자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사 중간에 조사지도원에게 업데이트 상황을 연락할 수 있으며, 이를 검토하여 조사원에게 업데이트를 독려하도록 한다.

※ ID 배부 처리절차

- 조사원별 가구 ID 배부(연구원) → 배부된 가구 ID 검토(인포시트 확인) → 조사가구 컨택 → 이사가구 발생(조사지역외) → 이사 가구 ID 재 배부 요청(연구원) → 가구 ID 배부 완료

※ 조사 자료 검토

- 조사원별 조사완료 가구 ID 전송(연구원/지도원) → 전송받은 조사 자료를 가구 ID별로 검토(에디팅) → 에디팅 완료시 “지도원완료” 체크 후 연구원 전송
- 미완으로 전송받은 조사자료의 재조사 필요시 → 조사원 노트북에서 완료로 수정 체크한 후 재전송 → 지도원의 노트북(CAPI 매니저) 수정모드에서 조사 → 조사와 에디팅이 완료되면 “지도원 완료” 체크 후 연구원 전송, 만일 지도원도 조사가 미완되면 “지도원 완료”에 체크하지 않고 전송하면 최종적으로 미완 처리

○ 노트북 반납

- 모든 조사가 완료되고, 조사내용의 전송이 완료된 후 조사지도원은 각 팀의 노트북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각종 부속품도 빠짐없이 확인한 후 조사원 및 조사지도원의 노트북을 연구원에 반납

□ 조사의 효율성, 정확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조사방법을 검토한 결과

○ 신속·정확한 자료생산체계 구축 및 조사과정 표준화

- CAPI 시스템 도입으로 조사과정 표준화 및 신속한 자료생산체계 구축
- 권역별 지역조사원을 모집·운영하여 지역단위 조사체계 구축

○ 조사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조사 진행중 에러체크 4~5회 실시

- CAPI 매니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간 조사진행상황을 파악
- 조사 진행율(19%, 46%, 80%, 95%, 100%))에 따른 중간 에러체크를 실시하여 오류를 줄임

○ 조사지역 현장검증(로밍)

- 조사의 질관리를 위하여 현장 실사를 1회 실시

1-3 조사방법별 응답 비율, 응답자 특성

○ 조사방법별 응답 비율: 복지패널은 CAPI 면접조사로 100% 진행되고 있음

한국복지패널(2022년) 매니저 - [가구별 진행상황]

가구별 진행상황 면접원별 진행상황 배부 분가 리뷰 DATA 출력 보조기입簿

새로고침 패널가구 ID

CAPI ID	신규패널 여부	진행상태	미완세부사항	패널가구 ID	가구생성 차수	가구분리 번호
4660101	0	지도원완료		466	1	1
85760701	1	지도원완료		8576	7	1
1800101	0	지도원완료		180	1	1
10220101	0	지도원완료		1022	1	1
61310101	0	지도원완료		6131	1	1
68760601	0	지도원완료		6876	6	1
1000101	0	지도원완료		100	1	1
1690101	0	지도원완료		169	1	1
8590101	0	지도원완료		859	1	1
38600101	0	지도원완료		3860	1	1
38880101	0	지도원완료		3888	1	1
38910101	0	지도원완료		3891	1	1
40000101	0	지도원완료		4000	1	1
46260101	0	지도원완료		4626	1	1
46380101	0	지도원완료		4638	1	1
46670101	0	지도원완료		4667	1	1
51550101	0	지도원완료		5155	1	1
88191201	1	지도원완료		8819	12	1
2420101	0	지도원완료		242	1	1
45400101	0	지도원완료		4540	1	1
54420501	0	지도원완료		5442	5	1
95340701	1	지도원완료		9534	7	1
8471501	0	지도원완료		847	15	1
15970101	0	지도원완료		1597	1	1
17040101	0	지도원완료		1704	1	1
20760101	0	지도원완료		2076	1	1
30020101	0	지도원완료		3002	1	1
30120501	0	지도원완료		3012	5	1
31840101	0	지도원완료		3184	1	1
32920101	0	지도원완료		3292	1	1
38320101	0	지도원완료		3832	1	1
38340101	0	지도원완료		3834	1	1
38970101	0	지도원완료		3897	1	1
45950201	0	지도원완료		4595	2	1
47040101	0	지도원완료		4704	1	1
80820701	1	지도원완료		8082	7	1
81780701	1	지도원완료		8178	7	1
88440701	1	지도원완료		8844	7	1
2900401	0	지도원완료		290	4	1
3920101	0	지도원완료		392	1	1
4080101	0	지도원완료		408	1	1
7600101	0	지도원완료		760	1	1
7750101	0	지도원완료		775	1	1
8310101	0	지도원완료		831	1	1
8420101	0	지도원완료		842	1	1

○ 응답자 특성: 패널 가구의 응답자(가구주) 및 전체 가구원 특성

〈표〉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성별	남성	76.47	49.55	85.00
	여성	23.53	50.45	15.00
연령	20세 미만	0.16	0.06	0.19
	20~30세 미만	5.70	2.53	6.70
	30~40세 미만	12.15	2.85	15.09
	40~50세 미만	20.20	7.57	24.20
	50~60세 미만	23.88	13.19	27.26
	60~70세 미만	20.30	24.74	18.89
	70~80세 미만	12.14	30.71	6.25
	80세 이상	5.48	18.35	1.40
학력	초등학교 졸 이하	15.30	44.02	6.21
	중학교 졸 이하	8.77	15.56	6.62
	고등학교 졸 이하	29.88	24.24	31.67
	전문대 졸 이하	12.08	5.00	14.32
	대학교 졸 이하	28.61	10.44	34.36
	대학원 졸 이상	5.36	0.75	6.82
장애	비장애인	90.99	80.46	94.32
	장애인	9.02	19.54	5.68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3	8.00	1.45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47	11.22	3.64
	비등록 장애인	0.52	0.32	0.59
만성질환	비해당	41.34	18.50	48.58
	있음	58.65	81.50	51.42
	3개월 미만 투병, 투약	3.85	1.93	4.46
	3~6개월 미만 투병, 투약	1.97	1.56	2.10
	6개월 이상 투병, 투약	52.83	78.01	44.86
혼인 상태	비해당	-	-	-
	유배우	63.40	32.60	73.15
	사별	12.90	36.41	5.46
	이혼	9.70	16.84	7.44
	별거	0.91	1.29	0.79
	미혼	13.02	12.78	13.10
	기타	0.07	0.08	0.07
종교	있음	42.60	47.15	41.15
	없음	57.40	52.85	58.85
동거 여부	동거(같이 살고 있다)	97.24	99.62	96.49
	비동거	2.75	0.38	3.50
	다른 지방에 근무(국내)	2.41	0.14	3.12
	해외 근무 중	0.12	-	0.15
	학업	0.01	-	0.01
	입원, 요양	0.02	0.07	0.01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0.04	0.08	0.03
	분가	0.08	-	0.11
	사망	0.07	0.08	0.07
	기타(군복무 등)	0.00	0.01	-
계		100.00	100.00	100.00

〈표〉 가구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39.33	58.31	35.66
	가구주의 배우자	24.58	18.10	25.84
	가구주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15	1.12	1.15
	가구주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33.12	19.36	35.78
	기타 친·인척(형제자매 포함)	1.82	3.11	1.57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0.00	0.01	-
성별	남성	49.97	44.30	51.07
	여성	50.03	55.70	48.93
연령	20세 미만	17.51	8.15	19.32
	20~30세 미만	13.61	7.48	14.80
	30~40세 미만	13.87	5.55	15.48
	40~50세 미만	15.94	8.87	17.31
	50~60세 미만	16.47	11.75	17.38
	60~70세 미만	12.37	20.28	10.83
	70~80세 미만	7.09	24.68	3.68
	80세 이상	3.14	13.25	1.19
학력	초등학교 졸 이하	20.53	39.96	16.77
	중학교 졸 이하	7.97	14.57	6.70
	고등학교 졸 이하	27.28	25.71	27.58
	전문대 졸 이하	12.95	6.03	14.29
	대학교 졸 이하	27.75	12.74	30.66
	대학원 졸 이상	3.51	0.98	4.00
장애	비장애인	93.79	82.02	96.07
	장애인	6.21	17.98	3.93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2.82	8.66	1.68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17	9.12	2.02
	비등록 장애인	0.22	0.20	0.23
만성질환	비해당	57.67	29.22	63.18
	있음	42.33	70.77	36.82
	3개월 미만 투병, 투약	4.81	2.80	5.20
	3~6개월 미만 투병, 투약	1.95	1.51	2.03
	6개월 이상 투병, 투약	35.57	66.46	29.59
혼인 상태	비해당	14.29	6.40	15.82
	유배우	50.13	37.14	52.65
	사별	6.01	22.21	2.87
	이혼	4.52	11.21	3.22
	별거	0.39	0.75	0.31
	미혼	24.57	22.05	25.06
	기타(사망 등)	0.09	0.24	0.06
종교	있음	41.86	45.25	41.20
	없음	58.14	54.75	58.80
동거 여부	동거(같이 살고 있다)	96.30	99.03	95.77
	비동거	3.69	0.97	4.22
	다른 지방에 근무(국내)	1.29	0.08	1.52
	해외 근무 중	0.05	-	0.06
	학업(해외 유학 포함)	1.79	0.30	2.08
	입원, 요양	0.06	0.12	0.05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0.03	0.12	0.01
	가출	0.00	-	0.00
	분가	0.17	0.03	0.20
	사망	0.10	0.25	0.07
	기타(군 복무 등)	0.20	0.07	0.23
계		100.00	100.00	100.00

2. 조사원 채용

2-1 조사원 채용방법 및 과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공고 → 조사원 모집 → 채용 → 희망지역 고려하여 배정
 -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작성한 후 접수
 - 조사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참여여부 통보, 참여불가 조사원에게는 개별 문자 발송
- ※ 지역조사원 구축 : 대전충청 2개팀, 대구경북 2개팀, 부산경남 1개팀, 광주전남 2개팀, 전북 1개팀 (전체 14개팀 중 8개팀)

2-2 우수 조사원 채용을 위하여 적용한 방법이나 조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조사 참여 유경험자 우대
 - 전국조사의 종류 : 전국 출산력실태조사,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계층조사, 자활실태조사 (패널조사 포함), 차상위계층조사, 노인생활실태조사 등
 - 기존 지역조사원은 별도 면접절차 없이 지속적 조사업무 수행

3. 조사원 교육훈련

3-1 조사원(조사관리자 포함) 교육훈련

- 교육내용: 조사수수료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교육, 조사현장에 대한 교육, 조사표 및 조사매뉴얼 내용에 대한 교육, 조사 CAPI 사용에 대한 교육 등
- 교육 방법 : 조사지도원 · 조사원에 대한 집합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지도원 대상 에디팅 교육
 - [집합교육] 현지조사 실시요령, 조사항목별 내용 및 주의사항 설명, 조사원 확인사항 점검, 개인정보관련 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한국복지패널조사 항목의 개인정보 해당성 및 정보수집 시 유의점,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방법, 한국복지패널조사와 개인 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조사원의 지위와 직무범위 등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관한 외부 전문강사교육 실시
 - [지도원대상 에디팅 교육] 전문지도원이 조사지도원들이 수행하는 에디팅에 대한 내용, 방향 등 전반적 교육 실시
- 202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본조사 설명회
 - 일시: 2022. 3. 14(월)~17(목) 9:30~18:00
 - 장소: 세종 베스트웨스턴호텔
- 202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신규유치조사 설명회
 - 일시: 2022. 7. 4(월) 9:30~18:00
 - 장소: 수도권 사회조사센터 교육장

3-2 교육시간의 적정성 검토

- 매 년 연말 조사원워크숍을 통해 조사(지도)원과 전반적인 조사관련 내용, 조사 설명회 관련 등에 대한 소통 실시, 그 이후 나온 의견들로 조사설명회 교육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있음.

3-3 교육훈련 교제

- 당 해 조사표 (유형1~유형5)
- 조사업무매뉴얼

3-4 조사기간 중 교체된 조사원에 대한 교육 실시

- 교체된 조사원에 대한 교육 실시
 - (사전교육) 녹화된 설명회 교육영상 시청 후 현장조사 투입. 조사표 내용, 현장조사 실시요령, 조사항목별 내용 및 주의사항 설명, 조사원확인사항, 개인정보관련 교육
 - (조사지도) 배속된 조사팀의 조사지도원이 조사수행 전반에 대해 설명 후 현장조사 동행하여 지도 참관

3-5 조사원 대상 비밀보호 의미 교육 또는 서약서 작성

- 사업에 참여하는 조사원에게 개인정보보호서약서 및 유의사항확인서 서류를 사인받아 보관함.
- ※ 참고사항: 2022년 개인정보보호서약서 및 유의사항 확인서

개인정보보호서약서 및 유의사항 확인서

1. 개인정보보호서약서

본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_____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탁조사사업 수행업무 도중 취득하게 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직무상 보호해야 하는 대상임을 인식한다.
2. 본인은 개인정보를 누설할 시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개인정보를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업무수행 중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4. 본인은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이 종료된 후에도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본인은 상기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를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성명 : (인)

○ 개인정보교육을 실시하여 패널가구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교육 수료함.

※ 참고사항: 2022년 개인정보보호교육 자료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content covered in the 28 slides:

- Slide 1: 개인정보보호 - 한국복지재단 조사 -** Introduction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the Korea Welfare Foundation survey.
- Slide 2: I 한국복지재단조사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Consent form for data collection by the Korea Welfare Foundation.
- Slide 3: 가구원명부 및 가구원명부제** Household register and household register system.
- Slide 4: III 개인정보 생명주기별 준수사항** Compliance requirements for personal information throughout its lifecycle.
- Slide 5: 학습목표** Learning objectives for the education.
- Slide 6: 한국복지재단 조사결과-자료활용 동의서** Consent form for the use of survey results by the Korea Welfare Foundation.
- Slide 7: II 통계법 33조와 34조** Articles 33 and 34 of the Statistical Act.
- Slide 8: 개인정보보호법 구성체계** Structur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Slide 9: Contents** Table of contents for the education material.
- Slide 10: 한국복지재단 조사결과-자료활용 동의서** Another version of the consent form for data use.
- Slide 11: 통계법 제 33조, 제 34조** Articles 33 and 34 of the Statistical Act.
- Slide 12: 개인정보 관리** Mana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 Slide 13: 개인정보의 종류** Types of personal information.
- Slide 1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 3차 제공** Third provis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Use Regulation.
- Slide 15: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처리(제23조, 제24조)**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unique identifiers (Articles 23 and 24).
- Slide 16: 개인정보의 폐기(제26조)** Disposal of personal information (Article 26).
- Slide 17: Q 휴대전화번호 뒤 4자리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Are the last 4 digits of a mobile phone number personal information?
- Slide 1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 3차 제공** Another version of the third provision of the regulation.
- Slide 19: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는 방법 (제22조)** Methods for obtaining consent from the data subject (Article 22).
- Slide 20: 정보주체 권리 보장에 35조 ~ 제 39조의2** Provisions for protecting the rights of data subjects (Articles 35 to 39-2).
- Slide 21: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Protection measures at each stage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 Slide 22: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내세)** Sample of a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use consent form.
- Slide 2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4차 제공** Fourth provis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Use Regulation.
- Slide 24: 제58조 적용의 일부 제외** Exclusion of some provisions of Article 58.



3-6 조사원 평가 결과

- 사업에 참여하는 조사원에게 집합교육을 통해 조사표와 조사매뉴얼 내용을 교육하여 숙지하게 하고, 그 내용으로 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함.
- 완료된 조사가구의 데이터를 점검 및 평가하여 포상을 실시함.
 - 조사완료율, 원표본유지율, 조사파트 별 에러율, 부가조사완료율, 팀유지율 등의 항목을 가지고 평가함.

4. 조사원 업무량

4-1 업무량 배정시 고려사항

- 조사응답소요시간 측정(평균 4인가구 기준 소요시간: 약 2시간)하여 1일 업무량 산출)
- 조사응답자 컨택과정의 반영
 - 1가구 조사가 완료됨은 가구용조사표 1부, 가구원용 조사표(조사대상가구수), 부가조사표(부가대상수)가 완료되어야 1가구를 완료함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가구원을 컨택하고 가구원마다 조사표를 완료하는 일련의 과정의 시간을 단계별로 고려하여 업무량 산출
- 조사내용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업무량 산출
 - 재산, 부채, 이자, 사회보험 등 생활비와 자산 등 세부적이고 민감한 조사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음.
- 방문횟수
 - 조사원이 방문하는 차수를 접촉일지에 기재하도록 표시함.
- 응답소요시간, 응답자 컨택과정, 조사 내용 및 난이도, 방문회수를 종합 고려하여 조사원당 일일 업무량 산정

접속일자

방문자수 6 조사일시 2022년 6월 28일 화요일 15 시 51 분 ~ 17 시 03 분 설문소요시간 71 분 조사원 [] 지도원 []

완료여부 ☒ 완료 ☐ 미완 미완사유 []

미완 세부사항 (거부일 경우) []

방문가구 기재사항 []

사례비 금액 및 지급방법

가구 성공여부 예 가구원 완료부수 3 부 부가 완료부수 3 부 사례비 금액 [] 원

지급방법 ☒ 상품권 ☐ 계좌이체 ☐ 상품권+계좌이체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패널가구 호응도 (1) 매우 소극적 (2) 소극적 (3) 보통 (4) 적극적 (5) 매우 적극적

이제금액(A) [] 원

농협상품권(C) [] 원

총합(A+C) [] 원

응답자 선택 이미숙

방문자수	조사일	소요시간	조사원	완료여부	미완사유	미완세부사항	지도원	방문가구기재사항	가구 성공여부	가구원 완료부수	부가 완료부수	사례비 금액
3	2022-06-28 14:38 ~ 14:44	5	[]	미완	조사진행 미완(일...)		[]		예			[]
4	2022-06-28 14:56 ~ 14:59	2	[]	미완	조사진행 미완(일...)		[]		예			[]
5	2022-06-28 15:00 ~ 15:48	47	[]	미완	조사진행 미완(일...)		[]		예			[]
6	2022-06-28 15:51 ~ 17:03	71	[]	완료			[]		예	3	3	[]

삭제 저장 후 종료 취소

□ 업무량 배정 결과

- 조사원 1인당 약 3개월(working day 약 90일)의 기간동안 평균 148가구를 조사

5. 조사업무 흐름도

□ 조사실시에 대한 조사업무 흐름도

단 계	일 정	업 무
사전전화조사	2021. 12.21.~12.26. (5일간)	- 패널가구 사전전화조사 실시 - 주소지 및 연락처 변동여부 확인, 조사시기 및 방문 공지
현장조사 준비	2022. 01.01.~03.26. (85일간)	- 패널가구 주소지 및 연락처 최종 업데이트 작업 - 조사표, 조사지침서 수정 및 보완 - 조사표, 조사지침서 인쇄 - 조사협조요청 공문 지자체 발송 - 조사용 CAPI 프로그램 TEST 02.25. 캐피테스트 - 지도원 간담회: 팀별 할당 조사지역 작업 및 조사실시 문제점 공유 01.24. 1차 지도원 간담회 03.03. 2차 지도원 간담회 - 신규조사원 면접 01.25. 신규조사원 면접
조사홍보	2022. 02.01.~03.26. (54일간)	- 조사협조요청 공문 지자체 발송 - 기관 홈페이지 배너, 팝업 공지 - 패널가구 조사실시 안내 및 감사인사장 제작 및 발송 - 설명절 선물(글라스락 5조 세트) 발송
본조사 교육	2022. 03.14.~03.17. (4일)	- 조사원 교육 - 조사용품 구매 및 배부, 확인

본조사	현장면접조사 2022. 03.28.~06.25. (90일)	■ 조사 진행을 파악 ■ 항목 관련 질의응답 ■ 가구방문 조사표작성 및 사례금 지급 ■ 조사가구명부 리스트 수정 및 보완 ■ 대상가구 조사 완료여부 확인 ■ 항목 관련 질의응답 ■ 불응 가구 설득 ■ 조사관리 현장점검(조사팀별 1회 실시 예정) ■ 본조사 완료가구 사후검증(10%) 실시
신규조사 교육	2022. 07.04. (1일)	■ 조사원 교육 ■ 조사용품 구매 및 배부, 확인
신규조사	현장면접조사 2022. 07.05.~08.17. (44일)	■ 신규조사 진행을 파악 ■ 항목 관련 질의응답 ■ 가구방문 조사표 작성 및 사례금 지급 ■ 조사가구명부 리스트 수정 및 보완 ■ 대상가구 조사 완료여부 확인 ■ 항목 관련 질의응답 ■ 불응 가구 설득 ■ 신규조사 완료가구 사후검증(10%) 실시
입력 및 내검	8.22. ~ 12월 중순.	■ 조사완료 데이터 크리닝 ■ 조사데이터 가중치 작업

6. 조사준비 및 준비조사

6-1 조사홍보 실시 내용과 방법

- 조사 실시 전 조사대상 패널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전화조사 실시
 - 주소지 및 연락처 변동 확인, 조사 시기 및 조사내용 전달 및 공지
- 조사 실시 전 조사대상가구가 속해인 지자체에 조사협조요청 공문 발송
- 조사 시 주민센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주민에 대한 홍보 부탁
- 조사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지자체에 발송한 조사협조 요청공문 사본 휴대 및 제시

6-2 응답자(조사대상) 사전통지

- 사전전화조사를 통해 해당년도 조사구를 확인, 조사방문에 대한 안내 전달
- 설 명절 선물 발송과 안내엽서를 동봉하여 조사기간과 조사내용에 대한 안내
- 신규유치조사의 경우, 조사안내문과 조사대상 협조를 위한 공문 사전 우편 발송

6-3 조사구 확인 또는 조사명부 보완

- 전년도 조사결과에 따라 1차 조사구 및 가구명부 정리
- 수시로 변동되는 가구연락으로 조사구 및 가구명부 업데이트 관리
- 전년도 말, 해당년도 초에 사전전화조사를 실시하여 이사주소 및 변동 연락처를 파악하여 2차 조사구 및 가구명부 정리
-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등으로 조사 컨택이 안될 경우 이웃주민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추적하여 보완 실시

□ 조사대상 조사구 확인 방법

- 조사대상 관할 주민센터(동·읍·면사무소) 및 통·이장, 반장 방문
- 사전전화조사를 통한 해당년도 조사구 확인 실시

□ 조사준비 사항

- 조사홍보
 - 조사협조요청 공문 지자체 발송
 - 기관 홈페이지 배너, 팝업 공지
 - 조사안내 및 감사장 발송
 - 사전전화조사 실시 및 공지 전달
- 조사대상 및 사례금액 확정
 - 조사대상가구용, 조사대상가구원용, 부가가구원용 파악
 - 조사답례품: 상품권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
- 조사프로그램(CAPI) 수정 및 개발
- 조사프로그램(CAPI)가 탑재 후 노트북 배부
- 설문지, 설명회자료 등 인쇄
 - 지침서 80부 인쇄
 - 설문지는 교육용으로 약 80부 인쇄
 - 조사협조공문 인쇄
- 조사원 개인 준비물 점검
 - 조사원 확인증
 - 조사협조 공문
 - 조사원 명함

※ 조사원 개인준비물 외에 모든 홍보물, 조사표, 조사지침서, 조사사례금 등은 연구원에서 일괄 구매·제작하여 조사팀에 배포

7. 조사항목별 조사 방법

7-1. 주요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가구일반사항

- 본 조사의 조사시점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 가구원 개념을 참고하여 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 한 가구원만이 가구원으로 판정되어야 함
- 가구원이 원가구의 가구원인지, 신규가구의 가구원인지 판정한 내용이 오류가 없는지 확인
- 가구원수(조사대상)
 - 가구원수는 2021년 1년간 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 한 가구원수를 의미

♠ 가구의 가구원 개념 ♠

- 가구원은 2021년 1년(2021.1.1~12.31) 동안 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 하였던 자로 한다.
 ○ 가구원은 주민등록 등재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실상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을 말한다.
- 위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란 소득과 소비를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도 부모와 같은 가구로 본다.
 ① 주거를 달리하는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생활비 전체를 상대(부모 가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경우 (예: 자녀가 교육관계로 다른 곳에 기숙하고 있는 경우 등)
 ※ 30세 이상의 자녀는 주거를 달리할 경우, '별도가구'로 본다.
 ② 행상 또는 근무 등의 이유로 자녀를 타인에게 맡겨서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 경우

○ 가구원번호와 이름

- 가구원 이름은 이후 추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지만, 사생활 보호의 측면에서 주의를 요함.
- 이름 등 모든 사항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됨을 다시 한 번 주지해 주면서 공란없이 정확하게 기입

○ 가구주와의 관계

- 가구주: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 가구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구주와 가구원의 관계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입
- 반드시 1번에는 가구주를 기입하도록 하며, 위로부터 공란없이 기입

○ 성별

- 각 가구원의 성별(주민등록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

○ 태어난 연도, 월

- 각 가구원의 주민등록상의 생년과 생월을 기입

○ 교육수준

- 교육수준은 해당 교육기관과 교육과정 수료여부인 두 가지 칸으로 구성
- 먼저 첫 번째 칸에 미취학에서 대학원까지 중 해당 사항을 기입한 뒤, 그 교육과정에 대해 재학, 중퇴, 졸업 여부를 표시
- 만 7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① 미취학”으로 표시하며, 7세 이상의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 “② 무학”으로 표시

○ 장애종류

- 등록장애인의 경우, 복지카드에 따라 장애종류를 정확하게 기입
- 비등록장애인으로 기입하는 경우는 장애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16”을 기입
 · ‘중’이 없는 경우는 비등록장애인이 아님으로 체크함(6차년도에 변경됨).
- 추가적으로 장애 취소가 있을 수 있음. 간질이나 정신장애의 경우는 6개월마다 재조사를 하고 있으며, 그때 취소가 될 수 있음.
- 비등록장애인에는 보훈처 등록장애인을 포함.
- 중복장애(2가지 이상의 장애가 같이 나타남)의 경우 높은 등급의 장애유형을 기입, 다만 중복 장애의 등급이 같을 경우 주된 장애 1가지만을 기입
 ※ 장애유형별 등급범위: 중복장애의 경우 본 표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지체장애	○	○	○	○	○	○
뇌병변장애	○	○	○	○	○	○
시각장애	○	○	○	○	○	○
청각장애		○	○	○	○	○
언어장애			○	○		
지적장애	○	○	○			
자폐성장애	○	○	○			
정신장애	○	○	○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신장장애		○			○	
심장장애	○	○	○		○	
호흡기장애	○	○	○		○	
간장애	○	○	○		○	
안면장애		○	○	○	○	
장루·요루장애		○	○	○	○	
간질장애		○	○	○	○	

○ 장애정도

- 등록장애인의 경우, 복지카드에 따라 장애정도를 정확하게 기입하되, 기존1~3급은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기존4~6급은 ②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기재
- 비등록장애인으로 기입하는 경우는 장애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③”을 기입
- 비등록장애인에는 보호처 등록 장애인을 포함
- 중복장애의 경우에는 중복장애가 복지카드에 표시되어 합산되어 있는 경우 이를 그대로 기입

○ 혼인상태

- 남자/여자 모두 만 18세 미만인 자에 대한 사실상의 혼인상태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
- 비해당: 남자/여자 모두 18세 미만
- 유배우: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사실혼 관계 포함, 남자/여자 모두 18세 미만에 결혼한 경우에도 유배우로 봄)
- 사별: 배우자 중 한 쪽이 사망하여 현재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사람
- 이혼: 배우자가 서로 헤어져서 현재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사람
- 별거: 법적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같이 살고 있지 않는 사람
- 미혼: 혼인한 사실이 없는 사람(미혼모 포함), 남자/여자 모두 만18세 이상인 사람

○ 종교: 종교가 있으면 “① 있음”, 없으면 “② 없음”으로 기입.

○ 동거여부

- 2021.12.31 기준으로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이면 “① 같이 살고 있다”고 기입
- 2021.12.31 기준으로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이면, 비동거 사유별로 해당 번호를 기입.
- 단, 주거지를 정하지 않은 여행 등 일시적인 비동거자는 동거자로 구분
- 군입대 또는 군복무 등은 “⑪ 기타”에 표시

○ 가구형태

- 가구형태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파악
- 단독: 1인 가구를 의미
- 모자: 어머니와 18세 미만의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단,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 부자: 아버지와 18세 미만의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단,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 조손가구 또는 소년소녀가장: 18세 미만의 자가 가구주로 있는 가구 또는 만 65세 이상인 노인(할머니, 할아버지)과 같이 사는 경우 노인을 가구주로 하는 가구
- 비해당: 위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

○ 맞춤형급여

- 맞춤형급여(생계, 의료, 주거)는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협조를 얻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수급가구 여부 및 수급형태를 확인하고, 교육급여는 응답자의 협조를 얻어

교육청에 문의하여 수급여부 및 수급자 수를 기입

□ 생활비

- 원 가구와 신규가구의 생활비 산정방식이 다름에 유의한다.
 - 원가구: 모든 가구원의 2021년 1년간(‘21.01.01~12.31)간의 지출을 합산하여 12개월로 나눈 월평균액을 기입한다.
 - 신규가구: 모든 가구원의 가구분리가 일어난 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지출을 합산하여 생성 개월수로 나눈 월평균액을 기입한다.

☞ 신규가구의 월평균 지출(유형2 조사표)

- 신규가구의 지출은 가구분리가 일어난 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월평균액을 기록하며, 이 때 결혼 및 혼수비용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들 비용은 원가구에 파악되기 때문입니다.
 - 예) 2021년 3월에 결혼하여 분가한 가구의 경우: 2021. 3. ~12.간의 월평균 지출액을 기입

- 순수하게 가구원들의 가정생활을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주요 비목과 총 생활비를 조사한다.
 - 가구원변동사항에서 9개월 미만 생계를 같이한 가족(부모나 자녀 등)이 있을 경우 이들의 지출은 총 생활비에서 제외된다.
- 광열수도비(3), 기타소비지출(10), 세금(12), 사회보장부담금(13)의 기타는 이중 항목을 제외한 지출을 기입한다.
- 1회적으로 지출된 것(예를 들어 결혼, 장례비용)도 포함된다. 다만, 사업이나 업무용도로 사용한 돈은 제외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 2007년 조사에서는 의료비를 제외한 1회성 지출은 조사하지 않았으나, 2008년 이후부터는 관혼상제비 등의 1회성 지출도 조사합니다.
- 2007년 조사에서는 월세를 주거부분에서 파악하였으나, 2008년 이후부터는 생활비 중 월세(2-1)에서 파악합니다.
- 2007년 조사에서 자가소비는 생활비에서 파악하지 않았으나, 2008년 이후부터는 생활비에서 파악합니다. 예컨대, 자기가 농사지어 먹는 것은 가정식비(1-1)에 포함하고, 목욕탕을 경영하면서 가족이 목욕을 한다면 기타소비지출(10)에 목욕비를 포함하여 조사합니다.
- 자동이체되는 공과금 등도 생활비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회성 지출 중 ‘수술비’는 보건의료비(6)에 포함하고, 관혼상제는 기타소비지출(10)에 포함한다. 관혼상제 중 ‘제사’ 비용은 가정식비에 포함한다.
- 따로 사는 가구원의 월세는 사적이전(비동거 가구원, 11-1)에 기입합니다.
- 친인척, 이웃,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보조받는 각종 현물(장학금, 의료비, 각종 공과금 대납, 식료품, 의류, 난방용품, 복지 할인 등)도 현금으로 환산하여 해당 비목의 생활비에 포함함

○ 유치원비와 보육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함

〈 유의사항 〉

- ☞ 가구·가사용품비 중 보육료는 문 4-2) 보육료비에 포함됩니다(5차 조사부터 세분화).유치원비는 문7-2) 사교육비로 파악
- ☞ 보육료와 유치원비 구분 방법
 -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 보육을 위한 시설 이용비, 베이비시터 비용 등은 무조건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중 보육료로 파악함.
 - 36개월 ~ 취학전 아동의 경우,
 - 놀이방, 탁아방, 보육원 어린이집 등 보육을 위주로 하는 시설(보건복지가족부 관할)에 대한 이용료는 가구집기·가사용품비의 보육료로 파악함.
 - 유치원(교육과학부 관할), 예체능학원 등 교육을 위주로 하는 시설에 대한 이용료는 교육비 중 사교육비로 파악함.
 - 예외적으로 명목상 **체육학원(미술학원, 피아노학원) 등의 간판을 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탁아와 보육을 주로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가구집기·가사용품비의 보육료로 파악함.

- 생활비 지출금액에 천원 단위금액이 나오는 경우 소숫점으로 표시한다. 예를 들면, 5천원 → 0.5단, 1만원 이상은 반올림하여 만원단위로 처리. 예) 11만 5천원의 경우 12만원으로 기입.
- 지출이 없는 비목은 반드시 “0”을 기입한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빈 칸(공란)으로 둔 경우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지출이 없는 것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을 묻는 문항에서도 없는 경우는 반드시 “0”을 기입하여야 함.

□ 세금

- 세금은 모든 가구원의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등록세, 갑근세, 자동차세,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주민세, 양도세 등의 직접세만 파악함.
 - 조사표에는 각 세금항목에 대한 모든 가구원의 1년 납세액을 합산한 1년 세금액을 원가구의 경우 12개월 나누어 기입하고, 신규가구의 경우 가구분리가 일어난 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총 세금액을 생성개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액을 기록함.
 - 직접세: 소득이나 재산에 과세하는 세금으로 소득세·이윤세·수익세·재산세 등이 직접세에 속함.
 - 간접세: 소득 및 재산에서 획득된 소득의 지출 혹은 소득 및 재산의 이전사실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소비세·유통세 등을 말하여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이 간접세에 속함.
 - 사업용도의 세금은 제외한다.(예, 법인세 등)
 - 갑근세는 매월 내는 세금인 반면에,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은 1년에 1~2회 내는 세금

□ 사회보장부담금(사회보장분담금)

- 사회보장부담금은 모든 가구원의 연금보험(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공(公) 보험료를 의미
 - 원가구의 경우 사회보장부담금은 가구원 모두의 보험료를 합산한 총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기입하고, 신규가구의 경우 가구분리가 일어난 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총 사회보장분담금을 생성개월수로 나누어 월평균금액을 기록한다. 그러므로 성인자녀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사회보장부담금 액수를 파악

- 만약 가정생활이 어려워 2021년 사회보장부담금을 연체한 경우, 이를 낸 것으로 간주하여 포함
- 암보험, 민간건강보험, 보장성보험, 개인연금보험, 생명보험 등의 민간 사(私)보험료는 문 13) 사회보장부담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간 사보험 중 보장성 보험료는 문 10) 기타소비지출에 포함된다. 그러나 저축성 보험료는 지출이 아니므로 생활비에 포함되지 않음
- 건강보험료는 이곳에 포함되는 항목임(보건의료비가 아님)

□ 총생활비

- 총생활비는 위의 모든 비목 합계액(1~13)으로 계산됨
- 생활비는 가정생활을 위한 비용이므로 재산 증가를 위한 지출이나, 부채 감소를 위한 지출은 제외됨
- 2021년 1월 1일 전에 월부 및 외상으로 상품을 구입하고, 2021년 동안 이를 갚았을 경우 한국복지패널은 구입시점 기준이므로 2021년 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음.
- 저금, 저축성보험료, 계 부은 금액 등 재산 증가를 위한 지출은 제외함.
- 주택부금 상환금은 부채 감소를 위한 지출이므로 제외함.

□ 소득

- 원 가구와 신규가구의 소득 산정방식이 다름에 유의
- 원가구: 모든 가구원의 2021년 1년간('21.01.01~12.31)간의 연간 소득을 기입
- 신규가구: 모든 가구원의 가구분리가 일어난 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월평균 소득액을 기입

☞ 신규가구의 월평균 소득(유형 2 조사표)

- 신규가구의 소득은 가구분리가 일어난 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월평균 소득액을 기입
- 신규가구의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 [(생성시점~2021년 12월까지의 소득)÷신규생성 개월 수], 단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분가한 신규가구는 2021년 한해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함.
- 예) 2021년 3월 1일에 결혼하여 분가한 가구의 경우: 2021. 3. ~ 12.간의 소득을 10개월로 나누어 기입

- 소득은 만 15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 가구원의 소득을 조사하며, 소득산정에서 다음을 유의함
- 그러나 만 15세 미만의 가구원이라도 소득이 있을 경우 파악
- 가구원 번호와 성명은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에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입
- 문 13)의 9개월 미만 생계를 같이한 가구원 소득 파악은 다음과 같이 함.
- 인포시트 작성 시 9개월 미만 생계를 같이한 가구원(부모나 자녀 등)이 있는 지를 확인. 참고로 이들은 가구일반사항에서 파악되지 않음. 그 이유는 가구원이 아니기 때문임.
- 이들의 소득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기입
- 첫째, 9개월 미만 살다가 분가한 경우(전출의 경우) 전출 전 소득을 기입둘째, 가구원으로 새로 들어온 지 9개월 미만인 경우(전입의 경우) 전입 후 소득을 기입
- 이와 같이 파악한 소득이 문 13)의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이나 '민간 보조금'과 중복되어서는 안 됨.

- 소득을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등으로 응답하는 경우 다시 확인하여 정확한 금액을 기입
 - 응답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급명세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을 파악
- 소득은 세금과 각종 사회보장분담금(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을 납부하기 전(前)의 총 소득으로 파악
- 소득은 가능한 무응답이 없어야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 반드시 “0”을 기입

□ 가구원의 경제 활동

-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2006년 출생자 및 이전 출생자)의 모든 가구원에 대하여 2021년(‘21.1~12월)동안의 경제 활동을 모두 기입한 후 해당문항(문항 2~7)으로 가서 활동하는 가구원 각각의 벌어들였던 소득 또는 매출액 등의 기재사항을 설문지에 기입
 - 가구원의 경제 활동 분류 중 해당하는 경우에는 “1”로 기입하고,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0”으로 기록
 - 한 시점에 직업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여부에 모두 “1”로 기입
- 2021년 1년 동안 일한 개월수(또는 해당 개월수)는 해당 여부에 “1”로 기입된 경우 일한 개월수를 기입
 - 2009년부터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1년 3월에 퇴직하여 3개월 동안 쉬 후 7월에 상용근로자로 취업하여 2개월 일한 경우 ‘상용근로자 일한 개월수’는 5개월이 됨.
 - 농업의 경우 12개월로 기입.
 - 해당여부에 “0”으로 기입된 경우 일한 개월수(또는 해당 개월수)는 빈칸으로 둠.
- 자영업, 농림축산업, 어업 등에 종사하는 가구 중 2명 이상의 가구원이 하나의 사업장 혹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는 그 중 1명만 고용주·자영자, 농림축산업 경영주, 어업 경영주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⑥무급가족종사자로 표시
- 상용근로자의 연간 총급여(가구용(유형 1) 기준)
 - 여기서는 가구용(유형 1)을 기준으로 설명. 17차 신규 가구조사표(유형 2)의 경우에도 기본개념은 동일함. 다만, 17차 신규 가구용(유형 2) 조사표의 경우 기준 시점이 다르고, 월평균 소득을 파악함에 유의
 - 2021년(‘21.1~12월)동안의 해당가구원의 소득을 세금과 각종 사회보장분담금(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을 납부하기 전(前)의 총 총급여를 파악
 - 총급여액에는 기본급, 상여금, 소득공제환급금, 초과근무수당,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성과급 등이 포함됨
 - 판공비, 차 유지비, 휴대폰요금을 회사에서 내주는 경우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합산함.
 - 가구원의 경제활동(문항 1)에서 상용근로자로 응답한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가구원 각각의 연간 총급여를 조사표에 다 기재
 -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해당 칸에 기록.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1번과 3번이 상용근로인 경우 가구원 번호 1번과 3번에 이름을 기입하고 총급여액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둠(이하 동일함).
 - 상용근로자이면서 다른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문항으로 이동하여 소득을 파악.

○ 임시·일용근로자의 연간 총급여

- 앞의 상용근로자에서 언급된 기준과 같으며, 다만 정확한 소득액 기재를 위해 2021년(‘21.1~12월) 동안 월 평균 일한(출근) 횟(일)수와 이에 따른 1회(일)당 지급 받는 보수를 먼저 물어본 후 이것을 토대로 총급여를 조사.
- 이 때 [보조기입란 3-a] 를 활용.
- 2021년 동안 월평균 근로횟수를 계산할 때에는 계절이나 월에 다른 차이를 고려하여 정확한 월평균 일한 횟(일)수를 계산.
- 가구원의 경제활동(문항 1)에서 임시·일용근로자로 응답한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가구원 각각의 세금과 보험료 납부 전(前) 연간 총급여를 다 기재.

○ 고용주 및 자영자의 연간 순소득 및 전입소득

- 가구원의 경제활동(문항 1)에서 고용주 및 자영자로 응답한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가구원 각각의 연간 총매출액과 연간 총비용을 조사표에 기재.
- 연간 총매출액(보조기입란 4-a)의 경우 세금과 각종 사회보장부담금(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을 납부하기 전의 총매출액을 의미함.
- 총비용의 경우 지난 1년간 재료비, 일반관리비, 직원 인건비 및 직원 사회보험료, 법인세, 임대료, 차량유지비, 광고비, 소모품비 등으로 소요된 총비용의 합을 기재한다. 사업용도의 부채는 총 비용에 포함되지 않음.
- 연간 순소득(4-1)은 ‘연간 총 매출액-연간 총비용’으로 계산함.
- 순소득이 마이너스일 경우, 숫자 앞 칸에 “-” 표(마이너스 표시)를 하고 금액을 기입
- 연간 전입소득(4-2)은 총 수입 중에서 가구로 가지고 오는 금액을 의미
- 예컨대, 2021년에 2000만원을 벌어 1,300만원을 재투자하고, 집으로 700만원을 가지고 왔다면 700만원이 전입소득임
- 그러므로 순소득보다 많을 수도 있고(재고를 많이 처분한 경우), 적을 수도 있음(재투자를 많이 한 경우).
- 단, 전입소득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음

○ 농림·축산업 경영주 소득

-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농림·축산업경영주에 해당하는 경우 기입
- 먼저 5-1의 경지규모를 파악한 후,
- [보조기입란 5-a] 를 활용하여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 농림축산업 판매수입 등을 파악한다.
- 경작지는 경작 등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토지를 의미
- 따라서 임야의 경우에는 유실수 또는 조경수를 심는 등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평수를 기록하며, 야산과 같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기록
- 응답자에게 농업·임업·축산업 생산물의 종류 및 총 수확량을 질문하고 판매량과 판매단가 등을 보조기입란 순서대로 질문하여 정확한 판매수입 및 자가소비액을 파악
- 총수확량은 ‘판매량 + 자가소비량 + 이전소비량 + 재고량(보조기입란에는 없음)과 같아야 함.
- 판매수입은 ‘판매량 × 판매단가’이다. 재고량을 판매한 경우도 판매량에 포함
- 자가소비액은 ‘자가소비량 × 판매단가’임.
- 농림축산업의 판매량에 있어서는 단위는 응답자가 응답한 것으로 그대로 기록함.

- 문항 '5-3'의 농업관련 기타 잡수입(C)에는 농업소득피해보상금, 폐농자재, 벼짚단 판매대금 등이 포함됨.
- 문항 '5-4'의 연간 총비용(D)에는 농·림산물 생산과 가축사육에 소요된 비용을 기록
 - 이때 [보조기입란 5-b] 를 활용하여 연간 총비용을 파악
- 1년간 농림축산의 순소득은 '5-5'에 기록하며, 최종 연간 순소득은 $A+B+C+D-E$ 로 계산

○ 어업경영주 소득

-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어업경영주에 해당하는 경우 기입
- [보조기입란 6-a] 를 활용하여 자가소비액, 판매수입 등을 파악한 후 6-1에 기입
- 문항 6-2에서는 기타 잡수입을 파악
 - 기타 잡수입에는 어업소득피해보상금, 어업용폐자재 판매대금 등이 포함
- [보조기입란 6-b] 를 활용하여 연간 총비용을 산정한 후 6-3에 기입
- 1년간 어업의 순소득은 '6-4'에 기록하며, 최종 연간 순소득은 $A+B+C+D-E$ 의 금액이 됨.

○ 기타 근로소득

- 기타 근로소득은 2021년('21.1~12월)동안 앞의 문1) ~ 문6)에서 응답한 소득 외에 주 1시간 미만의 근로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파악
 - 취업자가 본업 외에 연간 52시간(주 1시간) 미만의 근로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여기에 포함됨.
 - 만약 본업 외의 근로활동이 연간 52시간 이상이면, 본업 외의 근로활동도 경제활동의 해당란에 파악. 예컨대, 회사원이면서 10a(약 300평) 이상의 경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거나,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농축산업에 종사하면, 상용근로소득과 농업소득으로 파악
 - 학생, 주부 등의 비경제활동 인구가 연간 52시간(주 1시간) 미만의 근로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여기에 포함
 - 14세 이하 가구원의 소득도 여기서 파악
 - 군복무자(공익요원, 상근직 등)의 소득, 장애인 직업 재활 소득도 포함
 - 퇴직 후 다단계, 보험 설계사의 실직 수당도 소득에 포함
 - 본인이 직접 소득활동을 하지 않지만, 배우자나 지인 등이 이사, 상무 등 직책(직원 등록)을 주고 소득(월급)을 받을 시, 기타근로소득에 포함(자세한 사항을 메모창에 기입)

○ 재산소득

- 가구전체(가구원 전체)가 재산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예금·사채·채권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주택이나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등 재산적 소득
 -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경우 평균금액에 12를 곱하고, 일시금으로 들어오는 경우 일시금 금액을 그대로 기입
 - 세부항목에 해당되는 재산소득이 없는 경우 금액란에 "0"을 기입
 - 자격등 대여 등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에 기입

○ 사회보험 소득(급여)

- 가구전체(가구원전체)가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파악
 - 이때, 개인 조사표의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급여의 합계액과 일치하도록 함
 - 개인조사표에서 미완이 발생할 경우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구 조사표에서의 사회보험 소득(급여)은 개인조사표의 급여보다 많거나 같음

- 세부항목에 해당되는 사회보험 소득이 없는 경우 금액란에 “0”을 기입
- 단, 일시불은 제외.(문12. 기타소득에서 파악함)

○ 민간보험 소득(급여)

- 가구전체(가구원전체)의 민간보험 소득을 파악
 - 이때, 개인 조사표의 민간보험의 소득의 합계액과 일치하도록 함
 - 개인조사표에서 미완이 발생할 경우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구 조사표에서의 민간보험 소득(급여)은 개인조사표의 급여보다 많거나 같음.
 - 주택연금, 농지연금도 포함. 단, 일시불은 제외.(문12. 기타소득에서 파악함)
 - 세부항목에 해당되는 사회보험 소득이 없는 경우 금액란에 “0”을 기입.

○ 기타 정부보조금

- 기타 정부보조금은 반드시 주민센터 사회담당의 협조를 받아서 조사
 - 주민센터 사회담당에게 확인 시에는 기준시점이 2021년 1년간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함.
 - 현물로 받은 보조금(학비, 보육료 등)의 경우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기입
 - 2021년 노인일자리와 영세자영업자 종사자도 근로장려세제를 받을 수 있음.
 - 기타정부보조금은 가구구성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장애인이 있거나 부양아동, 학생이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 관련 급여를 수급하였는지 확인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맞춤형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기록해야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맞춤형급여)는 문14)에서 파악
 - 학비지원(농림부 지원 포함)에서 2021년도 국가장학금은 1인당 최대 520만원임(기초·차상위~3구간: 520만원, 4구간: 390만원, 5~6구간: 368만원, 7구간: 120만원, 8구간: 67.5만원). 단,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드림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 등은 최대금액을 초과할 수 있음(이런 경우엔 메모창에 기록).
 - 항목 외에 수련회비, 노인위생비, 자활장려금, 출산장려수당, 출산축하금(지자체 지원 포함), 육아돌보미 지원, 노인장수수당, 직업훈련수당, 교통안전공단지원금, 영양플러스 사업, 보건소지원 물품, 보건소 의료비 지원(5대 암, 치매,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자동차세 감면, 교복비 지원, 수학여행 비용 지원, 쓰레기봉투 등이 있다. 이들은 ‘기타’로 처리
 - 세부항목에 해당되는 정부보조금이 없는 경우 금액란에 “0”을 기입

○ 지방보조금

- 지방보조금은 지자체 순수 사업(예산)으로 운영되는 것만 파악하고, 대표적으로 지역형 기초생활보장제도(서울형, 부산형, 광주형, 전북형, 세종형)와 지역형 긴급복지지원, 지역형 청년수당, 효 장려금 등이 있음.
- 지역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만 제공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와 지역형 기초생활보장을 동시에 받는 것은 불가능함

○ 재난지원금(정부 5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 2021년 한해 코로나19 관련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이 지급됨에 따라, 가구 내 소득으로 귀속되는 재난지원금 금액을 파악
-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21. 6월 건강보험료가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액(기준 중위소득 180% 상당)보다 낮을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고 1인당 25만원 지급함(신청하여

대상자 지급)

- 특례적용: 1인 가구는 연소득 5,800만원 수준을 건강보험료 기준액으로 적용하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기준액을 적용
- 제외기준: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함(별도신청 없이 일괄지급)
- 긴급복지 / 한시생계지원 / 상생국민지원금과 중복수급 가능

○ 기타 소득

- 기타소득은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 경조금(축의, 조의금 등), 연금일시금, 사회보험 및 민간보험 일시불, 보상금(사고, 송전탑 등), 잭팟이나 손해보험 탄 돈,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매매에 따른 차익 등의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
- 세부항목에 해당되는 기타소득이 없는 경우 금액란에 “0”을 기입
- 문 12-1) 환급금은 2021년에 받은 환급금을 기입

○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및 민간보조금 등

-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란에는 가구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로부터 받는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을 기입
- 현물 보조에는 쌀, 반찬, 옷, 난방용품(연탄, 기름 등), 월세·통신료 대납 등이 포함
- 없을 경우 금액란에 “0”을 기입
- 민간보조금란에는 친척·친지, 친구나 이웃, 복지관, 종교·사회단체(학교 장학금 포함), 회사(자녀학자금보조, 상품권 선물(명절, 결혼, 생일) 포함) 등 민간으로 받는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을 기입
- 현물 보조에는 쌀, 반찬, 옷, 난방용품(연탄, 기름 등), 월세·통신료 대납 등이 포함
- 없을 경우 금액란에 “0”을 기입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맞춤형 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맞춤형 급여)중 생계, 주거급여는 반드시 주민센터 담당자의 협조를 받아서 조사하도록 한다. 단 교육급여는 응답자의 협조를 얻어 교육청에 문의하여 조사
- 2021년 1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맞춤형 급여)를 수급한 경험이 있는 가구에 대해 수급기간(개월) 및 수급액을 확인하여 받은 현금급여액을 기입
- 주거급여 수급자라도 무상임차자는 급여액이 0원임.

□ 경제활동상태

- 12월 31일 기준으로 당시 만 15세 이상 이었던 가구원은 모두 응답함.
- 근로능력정도는 본인의 장애, 부상, 질병을 고려하여 응답자 개인이 판단함. 근로능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근로무능력 사유에 응답하여야 함.
- 주된 경제활동 상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이 주된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응답함. 학생, 주부라 하더라도 소득 목적으로 주당 1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 취업자로 파악하며, 일시휴직자도 취업자로 봄.

- 일용직 임금근로자와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로 응답한 경우 12월 31일 기준으로 경제활동 참여 상태를 다시 확인함.
- 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용관계, 근로시간 형태, 근로계약기간 설정 여부, 근로지속가능성, 근로지속불가능 사유를 응답함.
- 임금근로자와 자영업/고용주는 업종, 직종, 사업장 규모에 응답하여야 함.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조함.
- 주된 경제활동 상태에서 비경제활동인구에 응답한 경우는 비경제활동 사유에 응답하여야 함. 사유가 겹치는 경우는 주된 사유 하나만 응답

□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 공적연금 가입형태 질문시 유의사항
 - 공적연금 가입현황을 먼저 질문함. 즉, ①, ②, ③을 먼저 질문해서 해당되는 항목에 먼저 체크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먼저 아래 지침을 참조하여 '⑩ 비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지침을 참조하여 '④ 미가입'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파악하도록 함.
-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
 - 과거 가입했던 제도가 아니라 현재 가입하고 있는 제도 기준임.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그 외 보험료 미납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포함됨.
 - 업종, 직종 분류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군인 등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 등 해당 직역연금 가입자가 아닐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예를 들어, 구청직원이라 하더라도 일용직, 용역직원 등은 공무원연금 가입대상이 아닐 수 있음.
- 산재보험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선원,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⑩ 비해당'
- 고용보험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선원, 별정직우체국직원,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⑩ 비해당'
- 공적연금 수급여부
 - 가구용의 '공적연금 가입'에 대한 문항에서는 보훈연금이 제외되나, 가구원용의 '공적연금 수급'에 대한 문항에서는 보훈연금까지 포함하여 응답해야 함.
- 고용보험 총 급여액
 - 1년간 받은 고용보험 총 급여액(현금+현물) 합계액 기록함.
- 개인연금
 - 개인연금은 은행에서 운영하는 신탁형과 보험회사에서 주로 운영하는 보험형으로 구분됨. 두 경우의 합계액을 기록함.
 - 개인연금의 계좌수가 여러 개일 경우에도 합계액을 기록함.
 - 종신보험은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금융상품으로서 개인연금의 하나로 파악가능.
- 퇴직금 및 퇴직보험금
 - 여기서 일시금은 지난 1년간 받은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금 및 종업원퇴직보험 일시금을 포함하며, 세금이나 퇴직금 담보대출 등을 공제한 후 순수하게 받은 금액을 기재함.

- 퇴직금과 퇴직보험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 둘의 합산액을 기재함.

□ 부채 및 이자

- 모든 가구원의 부채 및 이자를 가구 단위로 파악하며,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사.
- 명의를 기준으로 파악하고,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빌린 돈만을 파악하며 사업용으로 빌린 돈은 제외함.
- 부채는 반드시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부항목(금융기관대출, 일반사채, 카드빚, 전세(임대)보증금, 외상, 할부 구입, 미리탄 갯돈, 기타부채)별로 질문하며, 이자를 제외한 부채만 파악함.
- 이자액은 부채와 별도로 파악하며, 부채에 대한 이자를 산정함. 원가구와 신규가구의 이자 산정방식이 다름에 유의
- 원가구는 연간 이자를 기입하고, 신규가구는 가구분리가 일어난 월부터 12월까지의 월평균 이자를 기입함.
-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할 경우 원금을 제외한 순수이자만을 기록하며,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연체한 경우는 0으로 기입함.

□ 재산

- 모든 가구원의 재산을 가구단위로 파악하며,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사함.
- 명의를 기준으로 파악하며, 가구원 명의의 사업장(가게)도 포함함.
- 세부항목별로 해당되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0을 기입함.
- 모든 가구원의 재산을 가구단위로 파악하며,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사함.
- 소유부동산은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하며, 점유부동산도 거주하고 있는 집은 제외하고 타인의 건물을 전세보증금을 주고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함.
- 금융자산은 가구원 전부의 금융자산을 파악하고, 농기계, 농축산물은 12월 31일 기준 시가를 기입함.
- 자동차는 비영업용 자동차는 문6)에서 영업용 자동차는 문7)에서 파악함.

□ 건강 및 의료

- 2021년 1년 동안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한다.
- 가구원번호는 I. 가구일반사항에 기재한 가구원번호의 순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 가구원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조사 내용 전반에 오류가 생기므로, 옮겨 적을 때 순서가 일치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건강상태
 -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건강상태에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하도록 한다.
 - 가구원 중에 9개월 이상 거주한 후 사망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 사망 전의 건강상태를 기입한다.
- 의료기관 이용
 - 외래진료횟수는 1년 동안 해당되는 횟수를 기록한다.
 - 단, 동일 병원에서 각각 다른 과를 2회 이상 진료한 경우(예: 치과, 내과 등)는 1회로 표시하도록

한다. 반면에 2곳 이상의 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2회로 표시한다.

- 예방접종을 위한 병원 방문도 외래진료에 포함한다.
- 순회 진료를 통한 진료의 경우는 외래진료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외래진료횟수는 법정의료기관의 횟수만 합산한다. 법정의료기관이란 종합/대학병원, 병·의원(지역내/지역외), 한방 병·의원, 보건소 등만을 포함하며 사회복지관 등의 정식 의료인가가 나지 않은 기관에서의 진료횟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단, 의사가 왕진을 오거나 의사 1인 이상이 직원으로 상주하는 노인복지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는 외래진료횟수에 합산한다.
- 건강검진은 외래진료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암수술 후 암 검진 만을 받는 것은 외래진료횟수에 포함하지 않으나, 의사를 만나 경과에 대한 보고를 듣는 것과 같은 경우는 외래진료횟수에 포함한다.

※ 응답 표시 예) 없음 → 000, 3회 → 003

○ 입원횟수는 1년 동안 입원한 횟수를 기록한다.

- 입원횟수의 경우 장기입원 환자가 365일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1회 입원으로 기록한다.
-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가 있다면 그 수를 세도록 한다.
- 응급실에 당일 입·퇴원하는 경우도 1회로 한다.
- 교통사고나 재활치료 등의 이유로 한 병원에서 180일씩 여러 병원을 거쳐 가며 입·퇴원을 반복하는 경우, 같은 질병/질환인데 의료보험혜택 때문에 병원을 옮기는 것이므로 입원횟수는 1회로 본다.

※ 응답 표시 예) 없음 → 00, 3회 → 03

○ 입원일수는 1년 동안 입원한 일수를 기록한다.

○ 병원에 입원한 이유

- 2021년 1년간 병원에 입원한 경험들 중 가장 장기간 동안 입원한 이유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입하도록 한다.
-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는 경우는 '⑩ 비해당'으로 표기한다.
- '⑤ 요양/휴식'은 질병 치료 후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이유로 선택한다.
- 산전관리, 유산 등은 '⑦기타'에 기입하도록 한다.

○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

- 종합병원: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100~300개 병상을 가진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가 있음. 병상이 300개 초과인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음(의료법 상 기준).
- "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이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치과병원은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않음.(의료법 상 기준)

- “요양병원”이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함(의료법 상 기준)
- ‘문2-1) 외래진료횟수’와 마찬가지로, 노인복지관에 의사가 왕진을 오는 경우나 노인복지관 내 의사가 1인 이상 직원으로 상주하는 경우 이곳에서 의료서비스를 주로 이용한다면 ‘⑤ 기타’로 기록한다.

○ 건강검진 횟수

- 2021년 1년 중 건강검진의 횟수를 기록하도록 한다.
- 학교나 유치원에서 지정병원을 정하여 신체검사 및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지정된 병원에서의 혈액, 소변, 엑스레이, 심전도 등과 같이 핵심 검진항목을 검진 받거나, 5대 암검진(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받는 경우도 건강검진 횟수로 포함하도록 한다.
- 예방차원의 건강검진, 진단을 위한 검진 모두 포함되며, 병이 걸린 상태에서의 검진은 포함하지 않는다.
- ※ 예) 없음 → 0, 1회 → 1

○ 만성질환

-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투병하거나 투약을 하고 있는지를 묻고, 투병하거나 투약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기간을 다시 질문하여 ‘①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인 경우’, ‘③ 6개월 이상인 경우’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 ※ 만성질환 투약 및 투병 기간은 최초 투약 및 투병 시점부터 산정한다. 따라서 신규가구의 경우, 가구 생성일부터가 아니라 개인의 투병 및 투약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 투병하거나 투약하고 있었고, 투병 때문에 지속적인 투약이 필요하나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만성질환이 있는 것으로 본다(기간은 최초 투병 또는 투약시점부터 산정한다).
- 만성질환은 보통 그 증세가 완만하게 나타나 장기적으로 지속한다. 만성질환은 특정병명으로 정의되지는 않으나, 아래의 ‘만성질환의 대상 및 범위’를 참고할 수는 있다(‘희귀난치성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도 만성질환으로 포함).
-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의료급여수급자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다음 각 질환의 경우 만성질환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외래진료를 요하는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대사장애, 암환자, 근육병환자, 장기이식환자
- ※ 만성 고시 질환과 희귀난치성 질환의 범위

만성 고시 질환 ¹⁾	희귀·중증난치성 질환
정신 및 행동장애, 신경계질환, 고혈압성 질환, 간의 질환(만성바이러스간염포함), 당뇨병, 기타 만성폐쇄성질환, 대뇌혈관질환, 두개내손상, 갑상선의 장애, 심장질환, 뇌전증	〈부록 1〉 ②의료급여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참조

주: 1)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참고: 보건복지부(2021). 의료급여 사업안내

○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

-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건수를 기록한다.
- 민간의료보험은 전용상품(암보험, CI(Critical Illness)보험, GI(General Illness)보험, 어린이의료보험,

실손형 의료보험, 실버 및 간병보험, 일반질병보험, 특정질병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해당하는 건수를 기록한다.

- 단, 상해보험의 경우 상해보험 전용상품은 제외하고, 상해와 질병보험이 혼합된 형태의 보험(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 등)은 포함한다.
- 가족의료보험(주계약자 가구주, 종계약자가 배우자 및 자녀)의 경우, 가입 건수는 가구원 각각 가입한 것으로 계산한다.
- 보험료 납입기간이 끝났으나, 보장받고 있는 보험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산정한다. 단, 이 경우 월 평균 납입보험료는 0으로 간주한다.

○ 건강보험 가입여부

-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한다.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① 그렇다',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② 아니다'에 기입한다.
- (공적)건강보험은 전 국민 대상의 국가의 공적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말하는 것으로, 보험회사에 가입한 건강보험은 제외된다.
- 가구원 중 일부만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① 그렇다'로 기입한다.
- '① 그렇다'로 응답한 경우는 그 다음 문 1-1)로, '② 아니다'로 응답한 경우는 문 1-2)로 간다.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즉, 문 1)에서 '① 그렇다'로 응답한 경우)에만 응답한다.

- 한 가구 내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 가구주 가입을 기준으로 한다.
- '① 직장가입자'와 '② 지역가입자' 중 해당하는 사항의 번호를 기입하고 난 뒤, 문 2)로 간다.

※ 가입자의 종류(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구 분	설 명
직장가입자	모든 사업장(1인 이상)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 문 1-2)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즉, 문 1)에서 '② 아니다'로 응답한 경우)에만 응답한다.

- '① 의료급여 1종'과 '② 의료급여 2종'으로 응답한 경우는 문 1-3)으로 간다.
- '③ 국가유공자 무료진료'와 '④ 미가입'로 응답한 경우는 문 5)로 넘어간다.
- 한 가구 내에서 의료급여, 국가유공자 무료진료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가구주 가입을 기준으로 한다. 단, 가구주가 의료급여, 국가유공자 무료진료를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주로 이용하는 급여를 기록한다.

[의료급여의 정의]						
- 의료급여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기본적인 의료혜택(진찰, 수술, 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종과 2종으로 구분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및 본인 부담금액]						
1종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선별 급여시에는 급여항목별로 30~90% 본인이 부담해야 함.						

- 국가유공자 무료진료란, 의료급여(1종, 2종)와는 달리 의료비를 국가보훈처로부터 전액 국비로 지원받는 국비진료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보훈병원 및 지정·위탁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응답자가 주민등록번호를 가지지 않아 의료급여 수급을 하지 않는 가구의 경우는 ‘④미가입’에 체크한다.
- 차상위 수급권자는 2009년 4월 1일 이후로 모두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되었다.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응답하므로 차상위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대상자이다.

○ 건강보험료 미납경험 여부

- 문 2)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응답했을 때(즉, 문 1)에서 ‘①그렇다’로 응답한 경우), 건강보험료 미납경험이 있는 경우 ‘① 있다’로 응답하고 문 2-1)로 넘어가고, 미납경험이 없는 경우 ‘② 없다’로 응답하고 문 3)으로 넘어간다.
- 문 2-1)의 경우, 위의 문 2)에서 미납경험이 있을 경우 그 이유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입한다.
- 문 2-2)의 경우, 위의 문 2)에서 미납경험이 있을 경우 2021년 1년 동안(연간) 건강보험료 미납 기간을 개월 수로 기입한다.

○ 건강보험 이용의 문제점

- 건강보험을 이용하면서 느낀 문제점에 관해 해당하는 번호를 기입한다.
- 예) ‘② 보험의 적용범위가 좁음’: 척추질환(디스크 등)과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으로 보험적용이 제한적인 것을 의미한다.

○ 민간의료보험의 12월 총 보험료

- 2021년 12월 기준으로 가구가 가입하고 있는 모든 민간의료보험의 12월 한달치 보험료를 기입한다.
- 민간의료보험의 12월 보험료에서 혼합된 형태의 보험의 경우 가능한 한 질병과 관련한 부분의 금액을 파악하도록 한다. 만약, 혼합된 형태의 보험에서 질병과 관련한 부분의 금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민간의료보험의 12월 보험료에는 적지 않도록 한다.

- 예를 들어, 종신보험에서 특약으로 질병에 관한 보장을 받는 경우를 총 보험료는 20만원인데, 이중 종신보험과 관련하여 나가는 비용은 10만원, 질병에 관련하여 나가는 비용은 10만원이다. 이런 경우에 민간의료보험의 12월 보험료에는 10만원만을 적도록 한다. 가능한 한 분리하여 파악하도록 한다.

□ 주거

○ 이사경험 여부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이사경험 여부를 묻고, '①그렇다' 혹은 '②아니다' 중에 응답한 후, 다음 문항인 문 2)로 넘어간다.

○ 주택의 유형

- '주택유형'의 경우 조사대상가구(표본가구)가 속한 거처 즉, 건물전체(덩어리 기준)의 주택유형을 파악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3층짜리 건물(주택)에 두 조사대상가구가 포함되어 있다. 한 조사대상가구는 주인집으로 맨 위 3층에 살고 있고, 다른 조사대상가구는 1층에 미용실로 해놓고, 한쪽 편에 방을 주거공간으로 꾸며놓고 살고 있다. 이런 경우 3층에 사는 조사대상가구와 1층에 사는 조사대상가구의 주택유형은 거처 즉, 반드시 건물전체의 등기상 점유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파악하도록 한다.
- 만약 등기 상의 기준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혹은 구분이 애매모호한 경우) 비율을 따져서 해당되는 주택의 유형에 표기한다. 가령, '②다가구용 주택'의 경우 주택을 개조하여 일부는 상점 등을 내고 일부는 거주용으로 세를 준 경우 각각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서 상점의 비율이 높게 차지하고 있으면 '⑦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 그리고 '③다세대 주택'과 '④연립주택'의 경우 1동당 건축연면적 기준[건축연면적이 660㎡(200평)이하 인 경우 '③다세대 주택', 건축연면적이 660㎡(200평)초과 인 경우 '④연립주택'임.]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기상의 기준을 묻도록 한다.
- 기존 1,2,3차 조사에서는 국민임대아파트를 주택유형 중 '⑤일반아파트'에 포함하여 조사하였으나 4차 조사부터는 따로 항목을 구성하여 '⑬ 국민임대아파트'에 표기하도록 한다.
- 국민(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지만 자가인 경우가 있음. 이때는 점유형태와 상관없이, 아파트 동단위 기준으로 유형을 파악합니다. 기존에는 국민(공공)임대아파트였지만 일반아파트로 바뀌었다면, '⑤일반아파트'로 기입하고 여전히 국민(공공)임대아파트라면 '⑬ 국민임대아파트'로 기입합니다.
- 일반 사기업의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일부를 공공임대 형식으로 분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⑤일반아파트'에 표기하도록 한다.

〈 주택의 유형 〉

구 분		세 부 내 용
①	일반단독주택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
②	다가구용 주택 (원룸 포함)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주택으로서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기가 불가능한 주택. 다가구주택은 건축 시부터 다가구 거주용으로 지어진 주택이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당초 단독주택용으로 지어진 주택을 다가구가 사용하는 주택임.
③	다세대주택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주택으로서 각 세대의 구분등기 및 구분소유가 가능. 별도의 매매 가능.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1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200평)이하이고 4층 이하인 주택.
④	연립주택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4층 이하의 주택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2~4층의 빌라, 맨션 포함). 1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200평)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공동 주택.
⑤	일반 아파트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 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5층 이상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
⑥	영구 임대 아파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사가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임대목적으로 건설한 아파트로, 매매가 아니라 임대가 목적이며, 매각과 양도가 자유롭지 않음.
⑦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한 건물 내에 영업용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경우
⑧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상가, 공장 등)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 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주택의 요건(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 등)을 갖추고 있는 것
⑨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사무실과 호텔을 겸한 복합빌딩으로 낮에는 사무 또는 작업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밤에는 숙박까지 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거 형태를 말함.
⑩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비닐하우스는 비닐 필름을 씌운 온실의 형태로 된 경우를 말함. 움막집은 땅을 움푹 파고 그 바닥부터 기둥을 세워 지붕을 받치게 한 집을 말함. 판잣집은 판자로 사방을 이어 둘러서 벽을 만든 집. ※ 2010년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의 용도로 활용가능
⑪	임시가건물 (컨테이너, 재개발지역 가이주단지 포함)	임시로 지어진 건물
⑫	기타	기타 위에 정의된 주택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로, 기숙사, 보육원, 양로원, 요양원, 기도원 등 집단거주를 위한 구조물
⑬	국민임대아파트	저소득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지방)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 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혹은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하여 3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함.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함.

○ 주거 위치

- 한 가구가 여러 층을 나누어 사용할 경우 최상의 기준으로 표기하도록 한다(2021년 12월 31일 기준).
- 예) 아들은 지하층, 딸은 옥탑, 어머니는 지상에 살고 있을 때, 최적의 조건으로 '지상'을 표기하도록 한다.

○ 방의 수

- 기존 1,2,3차 조사까지는 실제로 가구가 사용한 방의 수를 응답하도록 하였으나, 4차 조사부터는 실제로 가구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침실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방수에 포함하도록 한다(2021년 12월 31일 기준).
- 예) 거실에 미닫이문이 있어서 독립적인 공간으로 구분되는 경우, 방수로 계산한다.
- 단, 세준 경우는 제외한다.

○ 건평

- 건평의 경우, 귀댁의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면적만을 기록하도록 한다(2021년 12월 31일 기준).
- 단, 세준 경우는 제외한다.

- 1평=3.3㎡ 를 참고하여 계산하도록 한다.

○ 주거 점유형태

-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등기상 점유형태를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한다(2021년 12월 31일 기준).
- 예) 가령, 할머니(가구주)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아들(가구원이 아님) 명의로 해놓고 살고 있는 경우, 조사 대상인 할머니 집의(등기상) 점유형태는 '⑤ 비가구원 명의 주택'이 된다.
- 점유형태 '⑥ 기타'에는 무상인 경우도 포함된다.
-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부 월세로 응답한 경우 문7) 주택가격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한다. 한편, ④ 월세(사글세), ⑤ 비가구원 명의 주택, ⑥ 기타로 응답한 경우 문10) 거주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혹은 교통안전공단 등에서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점유형태를 표기하도록 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혹은 교통안전공단 등에서 무이자로 전세금을 전액 지원하여 집을 얻게 되는 경우 '⑥ 기타(무상)'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혹은 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전세금은 전액 지원해주고, 이자형식으로 매달 얼마씩 본인이 지불하도록 하여 집을 얻게 되는 경우는 '④ 월세'로 표기하도록 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혹은 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전세금 2/3는 지원해주고, 본인이 전세금(1/3)+ 이자형식으로 매달 얼마씩 본인이 지불하도록 하여 집을 얻게 되는 경우는 '③ 보증부 월세'로 표기하도록 한다.
- 점유형태에 따라 주택금액, 생활비 파트의 월세액 등 크로스 확인하도록 한다.
- 가구일반사항 문11) 맞춤형급여에서 임차급여를 받는 경우더라도 주거 문6) (등기상) 점유형태는 '자가'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땅은 본인 소유가 아니지만 건물은 본인 소유일 수 있으므로, 가구일반사항 문11)에서 맞춤형급여 수급여부, ① 임차급여로 체크되더라도 주거 문6) (등기상) 점유형태는 ① 자가인 케이스도 있으며, 이와 같은 특이 케이스는 메모에 입력하도록 한다.

○ 임대주택 유형 (16차 신규문항)

- 문 6)에서 점유형태가 임차-②전세, ③보증부월세, ④월세-인 경우만 응답합니다.
- 일반 개인 및 민간회사에서 제공하는 임차는 ①민간임대주택으로 응답합니다.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만 공급됩니다. 단, 2021년 12월 31일 현재 분양전환 된 상태의 주택이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은 대부분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으로 공급됩니다.
- 기타임대주택: 사원주택, 뉴스테이 등이 해당됩니다.

○ 주택가격

- 2021년 12월 31일 기준, 현시가 기준의 주택가격을 묻도록 한다.
- 이때 응답 가구의 주택 점유형태가 자가인 경우 주택가격을 묻고, 전세인 경우는 전세금을 보증부월세인 경우는 보증금을 응답 받도록 한다.
- 집의 가격은 반드시 명의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한다. 가령, 집이(가구원이 아닌) 자녀의 명의로 된 경우 집의 가격에 대한 응답은 받지 않는다.

○ 주택 구입비용·보증금 혹은 증·개축 비용 마련 방법

- 2021년 12월 31일에 거주하였던 집을 구입하는데 든 비용이나 보증금을 마련한 방법에 대해 묻는다.
- 단, 비용마련에 있어 금액이 높은 순서로 2개까지 응답을 기록한다.
- 문 8)에서 주택 구입비용을 '전세를 끼고 산 경우(=부채)'는 제외하고 응답하도록 한다. 또한, 국가보훈처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관련 비용을 마련한 경우 '④ 금융기관(회사에서 융자받은 경우 혹은 모지기론도 포함)으로부터 빌림'에 표기하도록 한다.
- 부모, 형제, 친척, 친구 등에게 빌린 경우, ② 무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갚아야 하는 경우는 ③으로 구분한다.

○ 주택 관련 부채액 및 연체횟수

- 주택 관련 부채액의 경우 주택구입비, 보증금, 증·개축 비용만 포함하고,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은 제외한다. 또한 주택 관련 부채액이 없는 경우, '0'으로 표기한다.
- 문 9)에서 ㉠의 경우 주택과 관련한 부채 중 2021년 1년간 총 원금상환액을 계산하도록 한다. ㉡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 기준에서 남아있는 주택관련 부채액을 계산하도록 한다. 단, 이자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갚지 못한 이자는 포함하여 계산한다.
- 문 9-1)은 2021년 1년간 빌린 돈의 연체 횟수를 기록한다. 단, 대출상환액에 이자도 포함하여 응답하도록 한다.
- 주택관련 부채가 없는 경우 또는 2021년 이전에 주택관련 부채를 다 갚은 경우 '① 연체한 적이 없다'에 표기하도록 한다.

☞ 신규가구의 '원금상환액' 및 '연체횟수' 조사기준 시점

- 신규가구의 원금상환액: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신규가구의 대출상환액의 연체횟수: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거주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 2021년 12월 31일에 거주하였던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과 관련하여 각각의 항목이 해당되면 '①예'로 응답하고,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②아니오'로 기입하도록 한다.
- 15차 조사부터 기존 4개의 구조·성능 및 환경에 1개를 추가하여 조사한다. 추가된 내용은 '㉠.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다.

○ 주거시설의 종류와 사용형태

- 2021년 12월 31일 기준에 주거시설의 종류와 사용형태를 표기하도록 한다.
- 주거시설의 경우 설치되어 있으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예: 마당에 수도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나 물이 나오지 않음)가 있으므로 반드시 응답자에게 확인을 하고 기입한다.
- 주거시설의 종류와 사용형태에 있어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좋은 것 또는 발전된 형태의 것을 기입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단독 사용하는 수세식 화장실과 재래식 화장실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 단독사용-수세식"으로 응답하도록 한다. 만약에 두 가지를 사용하는 가구에서 발전된 형태의 것을 1년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일단 가장 발전된 형태로 표기하도록 하고 메모장에 메모를 해두도록 한다(이러한 예외적인

가구의 경우 머지키를 필기해두었다가 연구원에게 알려주도록 한다).

- 목욕시설의 경우, 샤워기 등이 있어 샤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곳을 기준으로 하여 표기한다.

○ 주거복지서비스의 이용경험

- 2021년 1년 간, 제시된 주거복지 관련 사업 중 이용경험의 유무를 묻는다.
- ㉠ 공공(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에서 분양하는 일반임대주택 혹은 임대아파트는 포함되지 않는다.
- ㉡ ‘기타’에는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지원, 고령자 임대주택,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직장 여성 아파트), 행복주택 등이 포함된다.
- ㉢, ㉣, ㉤, ㉥의 경우 2021년 이전부터 입주하여 2021년 1년 동안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이용경험 여부에 ‘① 있다’로 응답한다. 그러나 ㉤, ㉥의 경우는 2021년 당해 연도에 지원받은 경우만을 이용경험 여부에 ‘① 있다’로 응답한다.

☞ 신규가구의 ‘주거복지 관련사업’ 조사기준 시점

- 신규가구의 주거복지 관련사업의 경우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와 ㉡ 기타지원사업은 그 상세 지원 형태를 CAPI에 메모하도록 한다.

〈주거복지 관련사업〉

구 분		세 부 내 용
㉢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임. (신규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입주가능)
㉣	공공(국민)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 5년 공공임대주택 : 5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하므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82.65㎡ 이하의 주택 - 50년 공공임대주택 :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료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2년(임대차기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어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신규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입주가능) ■ 국민임대주택: 내 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않은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도 보증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	전세자금(용자)지원 (저소득 · 근로자 · 서민)	전세자금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 세입자를 금융기관(은행)에 추천해 주는 제도임.
㉥	저소득층 월세지원 (※지자체의 월세지원 포함)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임.
㉦	주택구입자금(용자)지원 (근로자 · 서민)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자금 지원제도임.
㉧	기존주택(다가구포함) 매입임대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기존주택(다가구주택포함)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임.
	기존주택 전세임대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임.
	재건축 매입임대	주택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의 인수자 지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임.
	신혼부부 전세임대	도심 저소득계층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여인숙에 거주하는 자 및 범죄피해자에 대해 주거환경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임.

④ 기 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등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주택을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지원	임대주택의 부도로 장기간 주거불안에 처한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상당 및 퇴거임차인에 대한 주거지원을 실시하는 제도임.
	고령자 임대주택	고령자세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령자에게 편리한 설계와 시설을 갖춘 고령자용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제도임.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직장 여성 아파트)	지자체 혹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미혼 여성 근로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임대해주는 주거지원 사업, 보통 방 두 개짜리 아파트에 2인이 한방씩 차지하고 거주
	행복주택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 생활여건

- 조사대상가구가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생계부문에서 결핍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각 항목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구의 경우, 그러한 경험이 “금전적 사정, 즉 돈이 없어서”인지를 파악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 해당 경험이 있더라도 “돈 때문”이 아니라면 “②없다”에 표시하도록 한다.
 - “㉠”에서는 2015년 1년 내내(1~12월)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혹은 “무상”인 경우 “③비해당”에 응답하도록 한다.
 - “㉡”에서는 “자녀가 없거나” 혹은 자녀가 “미취학”, “대학원생(석·박사)”인 경우 “③비해당”에 응답하도록 한다.
 - 또한 공교육비는 등록금 뿐 만 아니라, 학용품, 교재비 등도 포함하여 기입한다.
 - “㉢”에서는 2021년 이전에 신용불량자로 되었던 사람이 2015년 동안에도 신용불량자의 상태로 있었다면 “①있다”에 응답하도록 한다.
 - “㉣”에서는 2021년 1년 내내(1~12월) 의료급여 혹은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만을 받는 가구는 “③비해당”에 응답하도록 한다. “㉣”의 경우 연속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미납했다면, 병원에서 의료혜택(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어도 급여자격정지당한 경험에 “①있다”라고 기입한다.
- 조사대상가구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식품부족, 결식, 불량한 식사로 인한 영양섭취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각 항목의 경험 정도는 그러한 경험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인지를 파악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 응답자가 해독능력과 문항에 대한 파악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원이 전체적인 질문의도를 설명해준 후, 응답자가 그 자리에서 직접 기입하도록 유도한다.
 - 노인, 정신지체 장애인 등의 취약자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원이 직접 기입한다.
- 기본적으로 생활여건의 각 문항들은 모든 가구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2021년 1년 동안 가구원 동안 가구원 전체의 생활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실시한다.
 - 신규가구 생성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2021년 1월 1일 이전(2018. 10. 1~12. 31.) 분가한 신규가구의 경우도 2021년 경험을 파악하면 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 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 2015년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가구의 욕구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고, 최저생계비가 아닌 중위소득(상대적 빈곤선)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및 보장이 이루어지는 '맞춤형급여' 체계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 의료특례 · 자활특례 · 교육특례 등 특례도 포함되며, 가구원 중 일부만 수급하는 가구도 수급가구로 간주한다.
 - “국가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하면 응답자가 이해하기 쉽다.
 - 급여종류별로 선정기준을 차등하는 맞춤형 급여 방식임을 강조하여 설명한다.
 - 한 가구에 수급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주민등록이 별도로 설정된 경우 가능) 가구주 기준으로 응답한다.
- 2021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포함)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다만, 고소득(연1억,세전), 고재산(9억)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기준 지속 적용
 - 2021년 10월부터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 소수의 사례이나 생계급여는 받지만, 의료급여는 받지 않는 수급가구가 있을 수 있다. 생계급여 받으니 무조건 의료급여도 받는 것이 아닌, 맞춤형급여 라는 점을 이해하고 수급급여를 파악해야한다.
- 가구일반사항, 소득파트와 연계해서 주의하여 조사해야하는 부분 예시
 - 생계급여 중 조건부 수급자(예를 들면, 자활급여 대상자)는 수급 대상 맞음. 수급 개월 수는 12개월이나, 수급액은 0원 가능하다.
 - 주거급여 중에 '무상임차'는 임차료를 따로 지불하지 않기에, 주거급여 수급 대상 맞음. 수급 개월 수는 12개월이나, 수급액은 0원 가능하다.
 - 주거급여 중에 '수선유지급여' 대상자는 집 수선비를 지원받는 것이다. 조사하는 해당 연도에 집을 수리한 적이 없으면, 수급 개월 수는 12개월이나, 수급액은 0원이 가능하다.
- 문 1) 급여 신청 여부
 - 공식적인 서류신청을 한 경우만 해당하며, 이미 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2021년에 신청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② 없다'로 응답한다.
 - 2021년에 신청한 적이 없더라도 2020년에 이어서 계속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문 2) 수급 경험'과는 별개의 문항으로 조사한다.
- 문 1-2) 수급자 선정 여부
 - 2021년 1년 동안을 기준으로 응답한다. 단, 급여신청을 2021년 12월에 하였고 선정은 2022년 1월 이후에 되었지만, 선정이 되면서 2021년 12월까지의 급여를 소급하여 한꺼번에 받았다면 2021년에 선정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 계속 수급을 받다가 중간에 탈락한 후, 재신청하여 다시 수급한 경우에는 재신청 결과에 대해 응답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4개 급여를 모두 신청해서 수급하였다가 탈락하고,

5월에는 의료, 주거급여만 신청해서 수급 받게 되었다면 ②로 응답합니다.

- ‘①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모두 받게 되었다’, ‘②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일부만 받게 되었다’일 경우, 문 2)에서 ‘① 받은 적이 없다’는 절대로 나올 수 없음에 유의한다.
- 문 1)에서 신청한 적이 있고, 문 2)에서 수급한 적이 있으면 문 1-2) 선정 여부는 반드시 ‘①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모두 받게 되었다 또는 ②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일부만 받게 되었다’로 응답해야 한다.

※ 문 1-3), 문 1-4), 문 2-1), 문 2-2), 문 2-3), 문 3), 문 4) 문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각 급여별(생계, 의료, 주거, 교육)로 응답해야 하는 항목이다. 각 급여별로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응답해야 하며, **해당하지 않는 급여에 대해서는 CAPI 시스템에 ‘88’로 입력해야 함에 유의한다.**

○ 문 1-3)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이유

- 문 1-2)에서 ‘②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일부만 받게 되었다’로 응답한 경우 수급하게 된 급여에 대해서는 CAPI 시스템에 ‘88’로 입력하고, 선정되지 못한 급여에 대해서만 그 이유에 대해 응답한다. 이 원칙은 이후 문항에도 모두 해당한다.
- 교육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또는 부양의무자 기준에는 해당하지만 가구원 중 교육급여 대상자(초·중·고등학생)에 해당하는 구성원이 없어서 수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때는 CAPI 시스템에 교육급여는 ‘88’로 입력한다.

○ 문 2) 급여 수급 경험

- 2021년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한 개라도 받은 경험이 있으면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한다.

○ 문 2-1) 수급 기간

- 2021년 1년 동안 수급과 탈피를 반복하였다면, 그 기간을 모두 적도록 한다.
- 2021년 이전부터 수급한 경우, 원가구는 2021년 01월부터로 입력하고 신규가구는 가구생성 이후부터로 입력한다.
 - ‘문 1) 급여 신청 여부’에서 ‘② 없다’로 응답하고 ‘문 2) 급여 수급 경험’에서 ‘① 받은 적이 있다’로 응답했을 경우 **2021년 이전부터 계속 수급해오던 가구임에 유의한다.**
- 원가구의 경우 2021년 동안의 수급 기간을 조사하므로 수급을 시작한 월과 마지막 월만 조사하지만, 신규가구의 경우 신구가구 생성 이전부터 수급할 수도 있으므로 수급 연도까지 조사해야 함에 유의하며, 기간은 신규가구 생성시점부터 표기하도록 한다.

○ 문 2-2) 수급 이유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수급하던 중간에 탈락이 되었더라도,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으면, 수급한 최초 기준으로 판단해서 수급 이유에 대해 응답한다.
- 수급 탈락 후 다시 신청하여 재 수급을 받는 경우, 재 수급 신청 당시 기준으로 응답한다.
 -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급여에 대해서는 CAPI 시스템에 ‘88’로 입력한다.

○ 문 2-3) 급여수준의 적정성

-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으면 응답해 주시고, 수급과 탈피를 반복한 경우 2021년에 받은 모든 급여수준을 기준으로 응답한다.

○ 문 3) 급여 탈피 예상 기간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2021년 12월 말까지 받은 급여에 대해서만 응답한다. 중간에 탈락한 급여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고, CAPI에는 '88'로 입력한다.

○ 문 4) 급여 탈피 이유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수급하다가 2021년 12월 이전에 중간 탈락한 급여에 대해서만 응답한다. 2021년 12월 말까지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고, CAPI에는 '88'로 입력한다.

○ 문 5) 탈수급 이후 계속 받고 싶은 이유

- '문 2)'에서 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대해서만 응답한다.

□ 근로(자녀)장려세제

○ 근로장려세제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단위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이다.
- 기존의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015년부터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게 됨에 유의한다(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사업자 및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사업자는 제외).
- 2019년부터 종교인도 수급 대상에 포함되었다.
- 2019년부터 반기별 소득과약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가 신설되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가능,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5월, 기간 후 신청은 6~11월, 상반기 반기신청 9월, 하반기 반기신청 다음해 3월
- 신청주의에 따라서 신청해야만 수급 가능함에 주의한다.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 금액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150만원
홀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26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300만원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전년도 중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

○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가구 요건

-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 18세 미만(2002. 1. 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부양부모(1950.12.31. 이전 출생)가 있거나, ③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단독가구)

※부양자녀 및 부양부모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소득 요건: 2019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

- 재산 요건

-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소유자로 보며,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요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 개인별 500만원 이상의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 다만,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한다.

- 기타사항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포함)일 것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기별 소득과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 불가)

- 신청대상자

- 소득귀속연도(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 소득귀속연도 전년도(2020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 유의사항

- 상·하반기, 정기신청 중 한번만 신청
-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정산시 지급

- 자녀장려세제는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 미만) 1명당 최대 70만원을 가구단위로 지급한다.

- 자녀장려금은 가구원 구성, 총소득, 재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 자녀장려금은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산식에 따라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한다.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 금액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해당없음	
홀벌이 가구	4,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70만원
맞벌이 가구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전년도 중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

○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가구 요건

-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2002. 1. 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 ※ 부양자녀는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자녀이거나 동거입양자,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부양하는 손자녀·형제자매를 포함한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기준 적용에서 제외한다.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
 - *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간주
 - *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거나, 취학 또는 질병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양자녀를 판정하지만 해당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자녀에 포함함
- 소득 요건: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원		

※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

- 재산 요건

- 201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소유자로 보며,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요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 개인별 500만원 이상의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 다만,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한다.

- 기타사항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포함)일 것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 신청가능 함(2020년 신청 기준 변경사항)

○ 문 1) 근로(자녀)장려세제 인식 수준

- 14차 조사부터 원가구와 신규가구에게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을 모두 조사한다.
- 11~13차조사에서는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식'을 신규가구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에 유의한다.

○ 문 2) 급여 신청 여부

- 근로(자녀)장려세제 신청은 매년 5월 정기신청기간을 두고 신청을 받지만, 신청기한 종료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까지(6월~11월) 기한 후 신청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신청기간 후에 신청한 경우도 신청한 것으로 응답한다.
-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반기신청한 경우에도 신청한 것으로 응답한다.
- 즉, 정기신청 및 반기신청에 상관없이 신청했다면 신청했다고 응답한다.

○ 문 2-1) 근로(자녀)장려세제의 수급 여부

- 근로(자녀)장려세제를 수급받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소득]의 기타 정부보조금란의 근로(자녀)장려세제란에 정확한 급여액이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반대로, [소득]의 기타 정부보조금란의 근로(자녀)장려세제란에 급여액이 '0'이 아닌 값이 입력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급여를 받은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해당 급여의 수급 여부를 응답한다.
- 단, 기간 후 신청을 한 경우는 신청기한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지급되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10%를 감액해서 지급된다. 이 경우도 지급받은 것으로 응답한다.
- 문2에 ②근로장려금만 신청했다 라고 응답했으면, 문2-1에 ③자녀장려금만 받았다 라는 응답은 나올 수 없음에 주의한다.
- 문2에 ③자녀장려금만 신청했다 라고 응답했으면, 문2-1에 ②근로장려금만 받았다 라는 응답은 나올 수 없음에 주의한다.

□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 지난 1년간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 이용여부를 표시한다. 조사원은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 개별적으로 질문하도록 한다.
-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주는 것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㉔ 생계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수당(경증장애인 대상), 장애인연금(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지원(양육비), 긴급복지지원(긴급생계급여), 가정위탁금, 소년소녀가장보호비, 근로장려세제 등 생계비 보조를 목적으로 보조하는 현금을 의미함(국민연금,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소득은 포함 안 됨. 보육료 지원비, 노인교통비, 학비지원, 바우처 지원금 등 용도가 한정된 지원은 포함 안 됨). 쌀이나 식료품 등은 생계비 지원에 해당하지 않고 ㉕의 물품지원에 체크하도록 함.
- ㉕ 의료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한 의료급여, 사회복지관련기관 및 종교(시민)단체에서 의료비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말함(현금, 현물, 재활서비스 모두 포함). 각종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를 포함하되,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상의 혜택은 포함하지 않음. 의료비 지출을 위한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 개인적인 관계에 의한 지원은 해당하지 않음.
- ㉖ 물품지원 : 식료품, 의류, 가구 등 각종 물품을 지원받은 경우를 말함. 식료품, 의류, 가구 등 각종 물품을 지원(복지관, 동사무소 공공에서 제공 되는 것임. 민간의 지원을 받더라도 공공의 지원이 일부라도 있어야 함). 영양플러스사업의 서비스도 포함됨. 아파트 부녀회, 관리실, 지인 등을 통하여 지원되는 물품은 해당하지 않음.
- ㉗ 주택 관련 서비스 :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일부보조한 경우) 집수리 도배 등 주거시설 개선 및 주택 개조가 이에 해당하며, 아파트 관리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음.
- ㉘ 주택 관련 서비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와 같이 공공기관에서 제공(일부 보조)하거나, 사회복지관련기관, 종교(시민)단체에서 실시하는 집수리, 도배 등의 주거시설 개선 및 주택 개조를 의미함.
- ㉙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자활근로 : 노인일자리사업, 희망근로, 자활 공공근로를 포함
- ㉚ 상담서비스 : 고민 및 갈등, 정신건강 문제, 약물 및 알코올 문제, 학대 및 가정폭력 문제, 아동의 문제 등과 관련된 상담 및 심리재활서비스를 의미함
- ㉛ 생계, 생업, 자립, 교육 등을 위한 각종 대출, 융자 : 생계, 생업, 자립, 교육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국가가 대출해주거나 국가의 신용보증을 통해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의미함. 예를 들어 소상공인 지원융자, 자영업자 특례보증 대출, 장애인 자립자금, 저소득층 생업자금, 저소득층 창업자금,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근로자 생계보증 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등이 있음. 단,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 등 주택 관련 대출은 포함하지 않음.
- ㉜ 개인발달계좌 : 개인이 저축한 금액에 대하여 정부가 일정 금액을 매칭하여 적립하는 제도를 말하며, 가입 중인 경우만 해당. 보건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디딤씨앗통장, 서울시의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등이 포함됨.
- ㉝ 권익보장 지원(공공후견서비스 등) : 2020년 조사(15차 조사)에서 신설된 항목임. 발달장애아 공공 후견지원사업(2016년), 정신장애인 공공 후견지원 사업(2017년), 치매노인 공공 후견지원 사업(2020년) 등,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 공공후견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응답하도록 한다.

□ 가구의 바우처서비스 이용

- 지난 1년간 바우처서비스에 대해 이용여부를 표시한다.
- 지난 1년간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 예'로 기재한 후 개별 바우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문2-1)에 대해 질문한다.
- 지난 1년간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2. 아니오'로 기재한 후 문3)으로 넘어간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65세 이상 노인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하는 가사 활동지원, 주간보호 등의 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말하며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가 해당됨.
-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제도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위해 임산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받는 진료비용(출산 비용,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 포함)을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 출산가정에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서비스
- 가사간병 방문관리지원사업 :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가사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보육료 지원
- 아이돌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9년)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에게 영아종일제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등 지원
- 장애아동가족지원(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시·청각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서비스
- 발달장애인지원(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심리정서적 상담을 제공하여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주는 서비스
 -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 재학중인 발달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활동 지원
- 문화/스포츠 바우처(문화누리카드, 스포츠강좌이용권) : 문화누리카드는 개인별 연간 8만원의 문화·여행·스포츠 관람할 수 있으며,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개인별 연간 6개월 이상 스포츠강좌(최대 월 8만 원 이내) 수강료 지원
- 에너지바우처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가구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

- 기타 바우처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외에, 다른 정부부처의 바우처서비스도 포함한다.

사업분류	사업유형
영유아 대상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등
아동재활	- 영유아발달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정서발달지원, 인터넷과몰입아동치유 등
아동역량개발	- 아동비전형성지원, 아동리더십, 멘토링, 아동문화활동지원 등
노인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 노인 장애인 돌봄여행, 노후 사회참여 지원, 장애인 사회참여 등
신체건강 관리	- 시각장애인 안마,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기타 맞춤형 운동처방, 비만아동건강관리, 저소득 건강증진서비스 등,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정신건강관리	- 정신건강토탈케어, 자살위험군예방서비스 등
가족역량강화	- 다문화가정 사회참여 지원, 근로자 정서지원 통합지원 등

- 가구의 장기요양보험급여의 이용
 -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귀댁이 지불하신 금액을 월단위로 질문하는 문항에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료(월단위)를 말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해당하지 않음.

□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 의료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한 의료급여 및 의료지원, 사회복지관련기관 및 종교(시민)단체에서 의료비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말함(현금, 현물, 재할서비스 모두 포함). 노인 안검진 및 개안 수술, 치매조기검진, 치매치료관리지원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를 포함.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상의 혜택은 포함하지 않음. 의료비 지출을 위한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 개인적인 관계에 의한 지원은 해당하지 않음.
- 노인 무료 급식 : 지자체 노인결식사업의 일환으로 전액 무료로 급식을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 노인이 일부 시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가사지원 서비스 (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 :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돌봄서비스의 노인돌보미,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중에서 ‘방문요양’ 서비스
- 이동편의 서비스 :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이동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을 이용하거나, 간병인 등이 이동 동행하는 경우. 단, 노인이 혼자 일반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나, 교통수당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할인을 받은 것은 제외
- 노인일자리사업 : 사업유형은 크게 공익활동(전국형, 지역형), 재능나눔활동, 시장형 사업단, 인력과견형 사업단,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기업 등이 있음
- 사회교육 서비스 : 교양교육(한글/영어/일어/중국어/한문, 역사이야기 등), 건강증진(에어로빅, 단전호흡, 생활요가, 건강태극권, 땃돌체조, 생활의학, 탁구교실 등), 취미여가(노래교실, 한국무용, 사교댄스, 댄스스포츠, 경기민요, 포크댄스, 서예, 장기바둑 등), 클럽동아리 (동양고전연구, 역사탐방, 자서전만들기, 외부활동(주말농장/게이트볼/등산), 동아리(영어/일본어/중국어), 공연단(합창/무용/댄스/장구) 등), 정보화교육(컴퓨터기초, 인터넷이용, 디지털카메라 등) 등

□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 아동수당 :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18년). 2020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의 아동(0 ~ 83개월)까지로 아동수당의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 공공어린이집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전담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미함. 공공형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서울형/부산형 어린이집은 모두 공공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공공어린이집에 해당함.
- 양육·보육료 및 유치원비 보조(양육수당 포함) : 대한민국 국정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가에 대한 양육·보육료 및 유치원비 보조
- 아동상담, 집단 프로그램(성격, 정서문제, 독서지도 등 : 아동의 심리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과 관련프로그램 및 독서지도를 말한다.
- 방과후돌봄 서비스(지역아동센터 등) : 학교,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사회복지관, 학교, 청소년 관련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등에서 방과 후의 아동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학비 지원 : 공공기관에서 제공(일부 보조)하거나, 사회복지관련기관, 종교(시민)단체에서 제공하는 학비지원을 말한다. 단, 독지가 개인이 제공하는 장학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영유아보충식품지원(영양플러스사업 포함) : 영유아의 영양섭취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아동의 출생 시 정상 체중 여부 및 선천성 질환이나 기형 여부
 - 아동의 출생 시 체중을 회상하여 2.5kg 이상일 경우 '① 그렇다'라고 표시하고 아닐 경우 '② 아니다'라고 표시한다.
- 월평균 사교육비/보육비의 경우, 한 아동(자녀)이 이용하고 있는 모든 사교육(보육)기관의 이용비용과 교재비, 도구실습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를 합산하여 응답. 모든 비용은 가구에서 실제 지출한 실비만 포함.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함.
- 자녀에게 투입된 한 달 평균 사교육비
 - 한 자녀가 여러 가지 사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모든 비용을 합산하여 기록한다.
 - 1년 중 특정 기간 동안에만 사교육을 받는 경우는 '전체비용/12개월' 형태로 월평균 사교육비를 계산하여 기재한다.
- 자녀에게 투입된 한 달 평균 보육비
 - 한 자녀가 여러 가지 보육기관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모든 비용을 합산하여 기록한다.
 -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만을 계산에 포함한다.

□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 의료재활서비스 : 장애인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장애인 등록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및 보장구 지원 및 할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등이 포함

- 이동편의 서비스 :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이동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을 이용하거나, 활동보조인, 간병인 등이 이동 동행하는 경우를 의미함. 단, 장애인이 혼자 일반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나, 교통수당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할인을 받은 것은 제외
- 주택관련 서비스 : 공공기관에서 제공(일부 보조)하거나, 사회복지관련기관, 종교(시민)단체에서 실시하는 집수리, 도배 등의 주거시설 개선 및 주택 개조를 의미함.
-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 서비스 :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를 의미하며,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바우처)도 포함됨.
- 사회적응 및 취업관련서비스 : 직업재활시설 및 보호작업장 이용,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사회복귀훈련, 사회적응훈련, 자립생활훈련,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자판기·매점 등 사업권 제공 등
- 권익보장 지원(공공후견서비스 등) : 2020년 조사(15차 조사)에서 신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심판 청구 비용 지원 서비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지원 서비스의 경험 여부를 반영.

□ 근로

-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유형을 응답하되, 가구용 조사표 주된 경제활동 상태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직장을 그만둔 경험에 대해서는 질병, 출산 등으로 일시휴직한 경우, 농사나 일용직 등 부정기적인 일의 특성상 일을 쉬는 경우(농한기 등)는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보지 않음.
- 직장을 그만둔 경험은 근로형태가 아니라 직장이 기준이며, 같은 직장에서 고용지위가 바뀐 것은 그만둔 것에 해당하지 않음.
- 재직 중인 직장의 근무시작 시기는 문1에서 그만둔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021년(조사년도) OO월이 되어야 함. 단, 일용직 노동자가 중간에 1달 이내로 쉬었거나 자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에 계약기간이 끝나서 쉬고 있는 경우에는 일을 처음 시작한 년도로 기입함.
- 연간 근로개월수는 최대 12개월, 월별평균 근로일수는 최대 31일을 넘길 수 없으며, 일한 기간은 불규칙적으로 일한 경우는 하루라도 일한 달은 1개월로 간주하며, 휴직을 한 경우는 실제 일한 기간을 기입하고, 1년간 농사를 지은 경우는 12개월로 응답함.
- 평균 근로시간 및 평균 임금은 가장 최근의 직장을 기준으로 응답하며, 점심시간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 기준으로 응답. 규칙적으로 일한 경우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기입하고, 일한달의 월 평균 임금을 기입함. 불규칙적으로 일하는 경우는 1년 중 일한 날 하루 평균 시간과 일한 날 시간당 임금을 기입함.
- 미취업자는 구직활동 여부, 구직활동기간, 구직과정의 어려움, 희망 수입 등에 응답하도록 함. 구직활동이라 함은 원서접수, 취직시험 응시부터 친구, 친지에게 소개부탁, 직업알선기관에 등록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함.
- 일이 주어졌더라도 가사나 학업 등의 이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나, 근로의사가 없는 사람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
- 정부의 고용지원 프로그램은 취업자와 미취업자가 모두 응답하여야 함.

□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 조사시점에 주의하여 작성

조사시점	문항
2022년 현재 조사일 기준 및 조사 당시의 상황	- 흡연관련 문1)~문4-1), 문4-3)~문5-1) - 음주관련 문6)~문6-2) - 자아존중감 문9) - 가족관계만족도 문11)~문14)
2022년 현재 조사일 기준으로 지난 한 해	- 흡연관련 중 문4-2) - 음주관련 중 문6-3) - 자살관련 문18)~문20)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 음주관련 중 문6-4) - 출산경험 문7) - 부부갈등 문10)
2022년 현재 조사일 기준으로 지난 1주일간	- 우울 문8)
2022년 현재 조사일 기준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간	- 자살관련 문15)~문17-1)

- 다음의 문항은 대리응답이 불가능함에 유의 : 간접흡연 문5), 간접흡연 시간 문5-1), 음주로 인한 경험 문6-3), 음주 태도 문6-4), 우울 문8), 자아존중감 문14), 배우자와의 폭력경험정도 문10), 가족관계 만족도 문11)~문14), 자살관련 문15)~문17-1), 문18)~문20)
- 총 흡연 기간 : 총 흡연기간을 모를 경우 년과 개월을 모두 모름/무응답으로 응답함. 모르거나 응답하지 않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절대 0년 0개월로 응답하지 말고 모름/무응답으로 응답함. 1년(12개월)간 담배를 피운 경우 년에는 1을 기입하고, 개월은 비워두거나 모름/무응답을 응답하지 말고 반드시 0을 입력함. 개월은 0~11의 값을 갖도록 함. 예를 들어 12개월은 1년 0개월로, 15개월은 1년 3개월로 표시. 년은 기억하되 개월을 모를 경우에는 개월을 0으로 표시하지 말고 모름/무응답으로 응답함.
- 간접흡연 시간 : 정확한 하루 평균 간접 흡연시간을 모를 경우 모두 모름/무응답으로 응답함. 모르거나 응답하지 않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절대 0시간으로 응답하지 않고 모름/무응답으로 응답함. 하루 평균 간접흡연 시간은 1~24의 값을 가질 수 있음.
- 음주량 : 응답자가 보통 술을 마실 때 술의 종류에 관계없이(소주는 소주잔 기준, 맥주는 맥주잔 기준) 1회에 마시는 술이 몇 잔 정도인지 조사함.
- 출산 경험 : 응답자가 여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응답함. 남성의 경우 '비해당'으로 응답
- 배우자와의 폭력 경험 정도 :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가하는 행동은 나를 때리려고 위협함, 물건을 집어던짐, 나를 세게 밀침, 칼이나 흉기로 나를 위협함 등의 신체적 폭력을 직접적으로 가하지는 않지만 위협이 될 만한 행동을 말함.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동은 손바닥으로 나의 뺨을 때림, 나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림, 물건(책,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림, 나의 어깨나 목 등을 꼭 움켜잡음, 폭력으로 인해 뼈거나 멍이 들거나 작은 상처가 생기는 경우 등을 말함.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기혼뿐만 아니라 별거도 포함함. 배우자가 없는 경우(사별, 이혼, 미혼)에만 '비해당'에 응답함.
- 가족관계 만족도 :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원을 중심으로 파악하며, 가구원 외의 경우에는 1촌 이내의 직계혈족까지만 포함하도록 함. 독신가구이면서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에만 '비해당'에 응답함.
-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기혼뿐만 아니라 별거도 포함됨. 배우자가

없는 경우(사별, 이혼, 미혼)에만 '비해당'에 응답함.

-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 자녀들이 많아 각 아동별 관계만족도가 다를 경우 응답자와 자녀들 간의 전반적인 관계만족도에 대해 물어봄. 자녀가 없는 경우(비가구원 포함)에만 '비해당'에 응답함.
- 자녀들의 형제자매 간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 자녀들이 많아 형제자매관계가 복잡한 경우 전반적인 형제자매 관계에 대한 응답자의 만족도를 물어봄. 자녀가 없거나, 1명인 경우(비가구원 포함)에만 '비해당'에 응답함.
- 계획 : 언제였는지 모르거나 응답하지 않아 나이를 알 수가 없는 경우에는 절대 0세로 응답하지 말고 모름/무응답으로 응답함.

□ 생활실태 만족 및 의식

- 2021년 1년 동안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한다.
- 인터넷 사용 여부
 - 이는 개인의 정보화의 접근성을 보기 위한 질문사항으로, 2021년 1년 동안 응답자 개인이 인터넷을 사용했었는지의 경험 여부를 묻도록 한다.
 - 집 안, 밖을 통틀어 인터넷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한다.
- 노동 환경
 - 이는 개인의 노동박탈과 관련한 부분을 보기 위한 질문사항으로, 2021년 1년 동안 응답자 개인이 일한 곳의 환경과 관련해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하도록 한다.
 - 2021년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해당'에 응답하도록 한다.
 - 부업의 경우도 포함하여 응답하도록 한다.
 - 주된 경제활동의 작업장과 함께, 부업삼아 잠깐 일한 곳의 작업장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
 -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 1년 동안, 건강, 가족의 수입, 주거환경,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친분관계, 여가생활 등과 관련하여 개인이 느꼈던 만족도에 관련하여 질문한다.

□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

- 1년 동안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한다.
- 기부 및 자원봉사
 -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다.
 - ※ 정기적인 기부의 경우 교회나 절에 내는 십일조, 시주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 '㉠그렇다' 로 응답한 경우 문 4-1)로 '㉡아니다'로 응답한 경우 문 5)로 간다.
 - 문4-1)의 경우, 문 1)에서 ①번으로 응답한 자만 2021년 1년간 기부한 정도를 기록 한다.
 - 문4-2)의 경우, 문 1)에서 ①번으로 응답한 자의 경우 2021년 1년간 자원봉사활동 횟수를 기입한다.
 - 정기적 기부의 경우, 지로나 지역사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내는 것을 말하며, 1년에 3~4차례 전화모금 등에 참여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 부모와의 동거여부

- 응답자의 계부, 모도 포함하도록 하며, 여기서는 응답자 본인의 부모님만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한다.
- 이 문항에서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이란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는 부모님을 말한다.
- 질문 시, 응답자 개인의 부모님 중 응답자 개인과 2021년 1년 동안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이 계시는지의 여부를 묻는다.
 -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이 있다면 문 5-1)로, 그렇지 않다면 'E.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으로 넘어간다.

○ 부모와의 왕래 정도

- 응답자 개인이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과 얼마나 자주 왕래를 했는지 만남의 횟수를 적는다.
 - 거의 매일 왕래하는 경우는 주7회로 적고, 하루 1회 이상 왕래하더라도 그것은 하루 1회로 계산하도록 한다.

○ 부모와의 전화통화 정도

- 응답자 개인이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과 얼마나 자주 전화통화를 했는지 횟수를 적는다.
 - 거의 매일 전화하는 경우는 주7회로 적고, 하루 1회 이상 전화하더라도 그것은 하루 1회로 계산하도록 한다.

□ 교육

※ 교육은 매년 조사되는 조사 영역이 아닌, 신규 가구원이 된 첫해 연도에만 조사되는 문항이다. 본 조사 영역은 회상이 필요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조사원과 응답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각각의 응답자에게서 패널 조사동안 처음 한 번만 응답을 받는 질문이므로, 응답자에게 양해를 얻고 정확한 조사가 수행되도록 유의한다.

○ 문 1) 신규가구원 최종학력

- 응답 후 가구용(유형 1 및 유형 2)의 가구일반사항의 가구원 진입차수가 "16"인 신규 가구원의 교육수준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가구 일반사항의 최종학력과 동일하여야 한다.
- 15세 이상인데, 고등학교를 휴학한 경우는 '고등학교 중퇴, 졸업'으로 표시한다.

○ 문 2-1) 신규가구원의 고등학교 유형

- 응답자가 학교를 다니던 당시의 고등학교 유형을 기재한다.
- 2007년부터는 '실업계'의 명칭이 '전문계'로 변화되어, 응답자가 '전문계'라고 응답할 경우 해당 '실업계'에 표시하여야 한다.
- 또한 다니던 당시 '실업계'였으나 현재 '인문계'로 바뀌었더라도 '실업계'로 표시한다.

○ 문 2-2) 소재지

- 검정고시의 경우 소재지(metro)는 "40:검정고시"로 응답한다.

○ 문 3-1) 신규가구원의 대학 전공 계열

- 신규가구원이 학교를 다니던 당시의 전공계열을 기재한다. 즉, 학교를 다니던 당시의 학과가 현재 학부제 등으로 없어졌거나 변화되었더라도 당시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 신규가구원이 다닌(혹은 다니고 있는) 대학에서 경제학과, 경영학과 등이 사회과학계열로 분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②사회계열(경상계열)”로 표시한다.
- 아래의 대학계열 분류표를 참조하여 기입한다.

○ 문 3-2) 소재지

- 사이버대학교: 해당 학교의 실제 주소지를 소재지로 기입한다.
- 학점은행제로 공부한 경우
 - 온라인: 그때 당시 살았던 지역으로 소재지를 기입한다.
 - 오프라인: 해당 학교의 주소지를 기입한다.
- 방송통신대학교: 출석을 해서 강의를 받은 지역의 소재지를 기입한다.

□ 개인사

○ 문 1) 성장한 곳

- 북한에서 성장한 경우는 외국으로 응답한다.

○ 문 3) ~ 문 3-1) 만 15세 이후 첫 직장 보유 여부와 기간, 고용형태

- 만 15세 이후, 일주일에 평균 18시간 이상씩 연속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만 응답한다.
- 만 15세 이후 한 번이라도 직장(사업)을 가진 경험이 있는 경우 처음 가졌던 직장의 근무기간과 고용형태를 기입하면 된다. 이때,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등의 1차 산업 종사이력도 포함될 수 있다.
- 첫 직장 근로가 끝나는(시작하는) 시점이 적어도 만 15세 이상이어야 한다(가구일반사항의 태어난 연도와 비교하여 확인해볼 것).

〈용어정의〉

구분	내용
1.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 한시적 근로자: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회사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조건으로 근무하게 하는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동안 일하거나 임금이 시간 단위로 지급받는 근로자 ■ 비전형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재택, 가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
2. 정규직 임금근로자	■ 비정규직 임금근로자가 아닌자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
3. 고용주	■ 한 사람 이상 피고용인을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
4. 자영업자	■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농업의 경우도 포함)
5. 무급가족종사자	■ 동일가구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 문 3-2) 2021년 12월 31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직장파 과거에 거쳤던 주요 일자리 경력

- 첫 직장 근로가 끝나는(시작하는) 시점이 적어도 만 15세 이상이어야 한다(가구일반사항의 태어난 연도와 비교하여 확인해볼 것).
- 가장최근, A, B, C...순으로 최근일자리부터 순차적으로 기록이 되었는지, 기간을 시작~끝으로 표기했는지 확인한다.
- 가장 최근의 고용기간에서 끝나는 기간은 2021년이 되어야 한다(2022년이 되어서는 안 됨).

- 직장을 옮긴 적이 없고 계속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 즉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인 경우는 문 3-1)과 문 3-2)에 동시에 기입한다.
- 첫 직장 이후 다른 직장을 다닌 경험에 있는 경우에는 문 3-1)에만 기입하고, 문 3-2)에는 최근 일자리부터 순차적으로 적되, 마지막에 첫 직장은 적지 않는다.
- 근로의 문1)에서 '① 임금근로자, ② 자영업, 고용주, ③ 무급 가족 종사자'로 응답한 경우, 가장 최근일자리가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시작시점은 근로 문3)과 일치하고, 끝나는 시점은 2021년이 되어야 한다(2022년이 되어서는 안됨). 또한 일자리의 고용형태가 근로의 문1) 근로유형과 일치해야 한다.
- 첫 일자리와 가장 최근 일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일자리가 5개가 넘는 경우 가장 주요한 5개만 기입한다.
- 동일직종에 근무하면서 고용형태만 바뀐 경우는 근무기간은 구분하지 말고 고용형태는 마지막 형태를 기입한다. 고용형태는 바뀌지 않았지만 직장을 바꾼 경우에는 바뀐 직장을 기입해야 한다.
- 2021년 10월 이후 취업해서 12월까지 계속 일을 한 경우는 직장경력이 3개월 미만이라도 문 3-2) 최근일자리에 기록한다.
- 월남전에 참전한 경우 직업군인으로 참전한 경우는 근로로 보고 기입을 하지만, 그 외에 군대에서 파병으로 참전한 경우는 근로로 기입하지 않는다.
- 본 질문은 회상이 필요한 질문으로 조사원과 응답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각각의 응답자에게서 패널조사동안 한 번만 응답을 받는 질문이므로, 응답자에게 양해를 얻도록 한다.
 - 회상이 어려운 노인의 경우에도 친절한 추가질문을 통해 최대한 공란이 없이 응답을 받도록 한다.
 - 만 15세 이후 일자리(일주일 평균 18시간 이상씩 연속 3개월 이상 근무) 중 첫 일자리, 가장 최근 일자리, 과거 주요 5개 일자리에 대해 응답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고령으로 인한 기억의 한계와 인지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첫 번째 일자리와 마지막 일자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 위의 경우에는 설문지 오른쪽 공란에 “해당 가구원 기억의 한계” 혹은 “인지능력 미약” 등 사유를 기록한다.
- 문 4) ~ 문 4-1) 직업기술의 자격과 직종
 - 응답자 본인이 직업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종류를 알고 있으므로, 응답자 본인이 응답하는 내용 그대로 표시하면 된다.
 - 문4에서 응답한 순서대로 문 4-1)를 응답한다.

〈직업기술〉

구 분		세 부 내 용
①	기술사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사업관리·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하고 있는 사람
②	기능장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 기능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자와 기능인력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하고 있는 사람
③	기사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시공·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하고 있는 사람
④	산업기사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초기술 및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하고 있는 사람
⑤	기능사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제조·조작·운전·보수·정비·채취·검사 또는 작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하고 있는 사람
⑥	기타 공인면허 자격증	국가나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자격이 있음을 인정받고 특정한 활동에 대하여 면허를 취득한 사람
⑦	자격증 없는 기능자	공인된 자격증은 없으나 해당 기술분야에서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구체적으로 기능 또는 관련 직업경험을 기술하도록 함)

○ 문 5) 아동기 경험

- ‘무응답’의 경우 ‘③ 모름’으로 표시하고, ‘③ 모름’의 경우는 당시 나이는 결측값으로 둔다.
- 생계곤란으로 처음부터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다’로 응답한 후 당시 나이는 취학연령인 만 7세로 기재한다.
- 아동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경험의 나이에서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신 경우 먼저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문 6) 부모님 교육수준

- 중퇴/수료는 이전 학교 졸업으로 표기하여 주십시오. 예를 들어, 중학교 중퇴(수료)인 경우는 ‘초등학교 졸’로 표기한다.
- ‘무응답’의 경우 ‘⑨ 모름’으로 표기한다.

○ 문 7) 부모님 직업

- 가장 오래 종사한 직업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 ‘무응답’의 경우에도 ‘⑩ 모름’으로 표기한다.
- 부모가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도 직업으로 선정하여 표기한다.

○ 문 8) 부모로부터의 상속, 증여

- 부모로부터의 증여에는 결혼할 때 받은 부동산(주택마련자금 또는 전세자금), 패물, 자동차, 사업자금 등이 포함된다.
- 즉, 본인의 재산증식에 도움이 될 정도 규모의 비정기적 증여를 말한다.
- 단, 부모님으로부터 정기적(매월 혹은 분기별, 일 년에 한두 번씩)으로 받는 사적이전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예. 시골에서 부모님이 올려 보내주는 쌀, 고춧가루, 대학등록금)

○ 문 9)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경험

- 본 질문은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 새터민(북한이탈주민)가정 등 다문화가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 해외에 거주하였다가 귀국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재미교포 2세가 학업이나 근로 등의 사유로 한국으로 온 경우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는 경우 외국인으로 간주하고 ‘① 예’로 응답한다.

□ 부가조사

○ 아동부가조사

- 본 조사의 응답시점은 조사당시(2021년)를 기준으로 하며, 10차 아동부가조사 응답자인 2021년 현재 초등학교 4, 5, 6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함.
- 음주, 흡연을 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주기(연,월,일) 중 한번만 횟수를 기입하며, 음주, 흡연을 해 본 경험이 없는 경우는 모두 “0”으로 기입함.
- 방과 후 집에 가면 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⑩ 비해당’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숙학교에 다니는 경우로 제한함.
- 부모님이나 부모님 역할을 하는 어른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 현재 부모님이나 부모님 역할을 하시는 어른이 응답자와 함께 살고 있지 않더라도 ‘① 있다’로 응답함.
- 친한 친구의 수를 묻는 질문에 친한 친구가 0명인 경우는 하위 문항에 응답하지 않음.
-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에 학업관련 작업 시간은 미포함
-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이 0인 경우에는 하위 문항(인터넷 중독)에 응답하지 않음.
- 아르바이트는 집밖에서 용돈이나 기타 필요한 돈을 목적으로 일을 한 것을 의미하므로, 부모님의 심부름이나 집안일을 하여 용돈을 받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복지인식부가조사

- 복지인식 부가조사는 응답자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므로 모든 문항에서 대리응답 불가
-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해서는 안 됨. 이는 응답자가 일괄적으로 같은 번호로 기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조사원이 직접 읽고 대답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사해야 함.
- 응답자의 의견을 특정한 응답값으로 유도하는 식으로 질문하면 안 됨.
- 조사시점은 2022년 조사일 현재임.
- 응답자가 ‘개인적인 생각이라 밝힐 수 없다’, ‘나와 관련이 없다’ 등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선택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⑥ 선택할 수 없음’으로 체크하고, 단순히 ‘모르겠다’라고 하거나 정확한 이유 없이 응답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름/무응답’으로 체크함.
- 성장과 분배의 중요도 : 성장과 분배가 똑같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체크할 수 없으므로 조금이라도 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②, 조금이라도 분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③으로 응답하도록 함.
- 복지서비스 운영 및 전달의 주체 : ‘④ 민간기관(영리기관)’은 수익을 목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사립유치원, 유료민간 양로원 및 실버타운, 민간병원 등)을 말하며, ‘⑤ 비영리 민간기관’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관(복지관, 노인회관 등)을 말함.
- 복지예산을 위한 증세에 대한 의견 : 세금은 소득세, 소비세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세금을 의미함. 단, 사회보험료는 제외함.
- 사회문제 해결의 우선순위 : 국민이 낸 세금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쓸 때 어디에 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우선 순위대로 2가지를 선택하는 질문임. 반드시 2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해야 하며, 1순위만 응답하고 넘어가지 않도록 함.

○ 장애인부가조사

- 장애인 부가조사의 기준 응답시점은 가구용, 가구원용(전년도 말)과 달리, 조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본인 응답이 원칙이나, 장애로 인해 대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가 대리 응답할 수 있음. 장애인이 고등학생 이하인 경우는 보호자가 대리응답함.
- 장애인 부가조사는 공통부분과 학교 재학 여부와 장애인의 연령에 따라 4개의 개별 파트(미취학 아동, 학생, 성인, 어르신 파트)로 나뉘짐. 자신에 해당하는 개별파트에 응답하면 됨.

○ (장애인의) 장애원인 및 상황

- 지난 3년 동안의 장애상태 : 장애상태는 조사대상자의 자신의 장애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하며, 전문가의 진단 혹은 장애등급의 변화(장애등급이 중증에서 경증으로, 경증에서 바뀐 경우) 혹은 장애유형 개수의 변화(중복장애에서 단일장애, 단일장애에서 중복장애로 바뀐 경우) 등의 객관적 평가가 아님에 유의해야 함.
- 장애로 인한 사회로부터의 차별에 대한 인식 : '지난 1년간'의 시점에 주의해서 질문을 하도록 함. 차별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중복응답은 가능하며,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기재하지 않음.
- 외출정도 및 외출하지 않는 이유 : 외출이란 집이나 근무지로부터 벗어나 잠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이나 가게, 대형할인마트나 백화점 등에 물건을 구입하러 가는 경우, 산책, 공원에 운동하러 가는 경우도 포함함. 목발, 전동휠체어 등을 이용하여 외출한 경우도 포함함.

○ (장애인의) 일상생활

- 일상생활능력 : 네 번째, 목욕하기 항목은 욕조에 들어가서 목욕하거나, 욕조에 들어가지 않고 물수건으로 때 밀기, 샤워(물 뿌리기) 등을 모두 포함하고, 여덟번째 옮겨 타기(앉기) 항목은 침상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것 또는 의자에서 의자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함.
-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 만약 응답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집안일 해본 적이 없어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 능력을 파악하여 기입함.

○ 개별 파트 - 미취학 아동, 학생, 성인, 어르신 파트

- 미취학 아동 파트 : 만0세~만5세이면서 학생이 아닌 경우에 미취학 아동 파트에 응답함. 연령은 만 나이로 하며, 만 나이의 기준은 2013년 12월 31일로 함.
- 학생 파트 : 만 6세~만 17세인 장애인은 학생 파트에 응답함. 장애로 인해 학교에 입학할 연령이 되었음에도 입학하지 못한 경우와 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할 연령임에도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경우도 여전히 학생설문에 응답함. 만 18세~20세이면서 고등학생인 경우는 학생설문에 응답함.
- 성인 파트 : 만 18세 ~ 만 64세까지는 성인설문에 응답함.
- 어르신 파트 : 만 65세이상은 어르신 설문에 응답함.
- 서비스 필요여부와 이용여부 : 필요여부를 먼저 물어본 후 이용여부를 질문함. 미취학 아동 파트의 경우, 문항별로 응답대상이 다르므로 주의함.
- 심리상태 :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 이내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질문을 함. 의도적으로 한 가지 번호만 표기하지 않도록 함.

- 심리상태 : 보기문항이 수정되었음. 극히 드물다(일주일에 1일 미만), 가끔 있었다(일주일에 1~2일간), 종종 있었다(일주일에 3~4일간), 대부분 그랬다(일주일에 5일 이상)으로 변경되었음. 기존 항목에서 범주는 유지되고 하위범주인 날짜의 오류만 수정되었음.

8. 현장조사 관리

8-1 현장조사 관리 체계 및 방법

- 조사지도원은 조사팀의 팀장으로 현장조사 전반에 대하여 조사를 관리하고 조사수행을 지도감독
 - 조사관리자(지도원) 1인은 조사원 2인에 대한 조사 지도하며 1팀으로 구성
 - 조사관리자(지도원)은 전체 현장 조사 기간동안 해당조사팀 관리
- 연구진, 데이터조사관리팀에 의한 상시적 현장조사 관리
 - 조사원들의 조사내용 관련 문의사항 Q&A 진행
 - 조사지도원과의 간담회 실시 : 조사실시상의 애로사항 청취 및 조사내용에 대한 검토
- 연구진, 데이터조사관리팀에 의한 조사관리 현장점검
 - 조사표 확인을 통한 조사의 질 관리 및 고충 처리
- 체계 별 업무내용

직위	과업내용
전문 지도원	- 대표지도원으로써 조사현장과 연구원의 소통 창구 - 지도원의 기본업무(조사, 에디팅)와 병행 수행 - 신규 조사지도원 및 1인 체계 안착 및 육성
지도원	- 신규조사원 안착 및 육성 - 요도 및 조사구 사전 확인, 요도·가구명부 관리 - 주민센터 연락처 수집 및 공문도착 확인 - 조사구 섭외(안내문 부착, 조사 홍보 등) - 조사표 에디팅 - 방문 면접조사 - 답례품 등 배부물품 인수인계
조사원	- 방문 면접조사 - 수기 가구명부 작성 - 조사대상자별 특이사항 작성

8-2 조사관리자(지도원)의 1인당 조사원 수 및 역할

- 조사지도원 1인당 조사원수 : 2인
- 조사지도원의 역할
 - 신규조사원 안착 및 육성
 - 조사원이 조사업무 수행시 필요한 사항에 관해 설명하고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 조사원이 조사한 내용을 올바르게 입력했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
 - 조사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물품 배포
 - 조사팀 내 협조관계 유지
 - 주민센터 방문(가구수급상태 및 변경주소 확인)
 - 가구 배부리스트 작성

8-3 현장조사 파라데이터 기록 · 관리

- 조사 시 방문 접촉 관련 정보 파악
 - 조사 방문차수, 조사일자, 설문 소요시간, 조사사례비 금액 및 지급방법, 방문기자사향 메모, 조사가구 호응도, 미완세부사항 등

8-4 조사기간 중 작성기관이 조사위탁기관이나 조사원을 대상으로 실시지도(지도점검) 실시

- 현장조사 기간 내 조사팀을 방문는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추가 문의사항 및 질의사항에 대한 논의 진행
- 조사기간 내 추가지침 수시 하달

집적일지

방문차수: 6, 조사일자: 2022년 6월 28일 화요일, 15 시 51 분 ~ 17 시 03 분, 설문소요시간: 71 분, 조사원: [redacted], 지도원: [redacted]

완료여부: ☒ 완료 ☐ 미완, 미완사유: [redacted]
미완 세부사항 (거부일 경우): [redacted]

사례비 금액 및 지급방법

가구 성공여부: 예, 가구원 완료부수: 3 부, 부가 완료부수: 3 부, 사례비 금액: [redacted] 원

지급방법: ☒ 상품권 ☐ 계좌이체, 은행명: [redacted], 예금주: [redacted], 계좌번호: [redacted]

방문기자사향: [redacted]

패널가구 호응도

(1) 매우 소극적, (2) 소극적, (3) 보통, (4) 적극적, (5) 매우 적극적

이제금액(A): [redacted] 원, 농협상품권(C): [redacted] 원, 총합(A+C): [redacted] 원

응답자 선택: 이미숙

방문차수	조사일	소요시간	조사원	완료여부	미완사유	미완세부사항	지도원	방문기자사향	가구 성공여부	가구원 완료부수	부가 완료부수	사례비 금액
3	2022-06-28 14:38 ~ 14:44	5	[redacted]	미완	조사진행 미완(일...)		[redacted]		예			[redacted]
4	2022-06-28 14:56 ~ 14:59	2	[redacted]	미완	조사진행 미완(일...)		[redacted]		예			[redacted]
5	2022-06-28 15:00 ~ 15:48	47	[redacted]	미완	조사진행 미완(일...)		[redacted]		예			[redacted]
6	2022-06-28 15:51 ~ 17:03	71	[redacted]	완료			[redacted]		예	3	3	[redacted]

저장 후 종료, 취소

- 조사표 내용 상 지침통일이나 내용 질의 발생 시 추가조사지침 문서를 작성하여 조사팀에게 전달하고, 그 내용은 다음 해 조사표 및 조사매뉴얼에 반영함.

9. 조사 질의응답 체계

9-1 조사원, 응답자 등의 조사관련 질의, 응답체계 및 운영방법

- 응답자 질의 응답체계 및 운영방법
 - 조사관리 담당자에게 수신자부담번호(080-380-3800)를 통해 유선전화 문의
 - 방문 조사 시 지급하는 조사원 명함 내 연락처를 통한 문의
 - 한국복지패널 홈페이지의 Q&A 문의
- 조사(지도)원 질의응답체계 및 운영방법
 - 질의 응답 체계: 조사원 ⇄ 조사지도원 ⇄ 전문지도원 ⇄ 연구원
 - 현장 조사 질의사항 발생 시 담당 조사지도원에게 문의 및 질의
 - 담당 조사지도원은 전문지도원에게 문의 및 질의
 - 전문지도원은 복지패널 연구진에게 직접 문의 및 질의
 - 전체 지침이 필요한 경우, 추가조사지침문서로 현장 조사팀에게 전달

- 조사 기간 내 조사지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침 관련 등 회의 진행

9-2 조사진행 중 발생하는 가구민원 및 조사관련 사항 별도 기록관리

- 패널가구 민원사항 별도 정리
- 조사관련 진행사항 별도 정리
- COVID-19 관련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별도 정리
- 조사원(팀) 관련 별도 정리
- CAPI 관련 별도 정리
- 패널가구가 방문 조사원을 폭행하는 사고발생으로 사고 초기~말기 상황 별도 기록 및 사고관리
 - 폭행사고 발생 후 신규유치조사 설명회부터 '안전매뉴얼'별도 교육 실시함

9-3 주요 질의 응답·오류사례 추적 및 관리

- 조사지도원 간담회 개최
 - 각 팀 조사지도원 및 연구진이 참석하여 조사초기 오류사항 및 조사지침 관련 질의 및 응답
- 조사기간 내 추가지침 수시 하달
 - 조사표 내용 상 지침통일이나 내용질의 발생 시 추가조사지침문서를 작성하여 조사팀에게 전달하고, 그 내용은 다음 해 조사표 및 조사매뉴얼에 반영하여 축적함
- 현장조사 기간 내 조사팀을 방문하여 현지점검 및 추가 문의사항 답변

10. 조사(또는 응답) 대상

10-1 적격 응답자의 지위 및 지정 이유

- 가구의 적격응답자는 가구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반드시 직접 만나서 면접방식으로 조사하여야 함.
 - 적절한 응답자가 없는 경우 응답가능자가 귀가하는 일시 및 연락처를 파악한 이후에 전화 등으로 약속을 정하고 다시 방문하도록 함.
- 가구원의 적격응답자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 하였던 자) 전체로 중·고등학교 재학생 제외, 신규진입자는 포함
- 부가조사의 적격응답자는 이전 부가조사(아동, 복지인식, 장애인)를 응답완료한 가구원임.

〈한국복지패널 17차 조사표 조사 대상, 응답 대상 기간 및 시점〉

17차 (2022년)	가구용 설문지(유형1,2)	가구원용 설문지(유형3,4)	부가조사표(복지인식)
	•조사대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 배우자 •조사대상 기간 2021.1.1~12.31 •기준 응답시점 2021.12.31	• 조사대상: 1) 만15세 이상 가구원 전체 (중고생 제외, 신규진입자 포함) 2) 2021년 2월에 고등학교 졸업한 가구원 •조사대상 기간: 2021.1.1~12.31 •기준 응답시점: 2021.12.31	•조사대상: 1) 11차 및 14차 복지인식 조사 완료 된 가구원 •기준 응답시점: 2022년 조사시점

□ 대리응답 허용여부와 허용하는 경우 사유

- 가구원용 조사 및 부가조사의 경우 응답대상자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대리응답을 허용한다.
 - 조사기간에 응답자가 3개월 미만 해외 거주(기러기 부모), 여행 및 출장, 병원입소, 가출,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감옥수감, 군대 또는 전투경찰,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요양소 입소 등), 지적장애·자폐성장애 3급 등에 해당하면 대리응답을 허용.
 - 대리응답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동거인 또는 비동거인 모두 응답이 가능하다.
 - 대리응답 적용 대상 및 선정 기준
 - 대리응답의 적용 대상
 - 대리응답은 가구원용 응답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편하여 설문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한함. 이 밖에 응답자가 언어적 표현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병상에 있는 경우에는 응답자와 가족의 동의를 구하고 대리응답을 실시. 응답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치매가 있는 등 의식이 없어 불가피하게 설문참여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는 대리응답을 실시.
 - 대리응답자 선정
 - 대리응답자는 가구원용 응답자의 생활과 건강상태 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가구원(적어도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조사가구에서 배우자, 자녀나 가구 내에서 우선 대리응답자를 찾고, 그 밖에 친구, 이웃 등도 대리응답자가 될 수 있음(단독가구 등).
- ※ 단 대리응답을 허용하지만, 개인의식의 관한 문항은 비해당 처리함.

10-2 기억응답

□ 조사 기준시점과 조사시기의 간격

- 각종 소득과 생활비 지출, 제도별 급여 수혜 등의 정책 관련 변수의 조사기준 시점은 유량(flow) 파악의 경우 지난해 1월 1일~12월 31일(1년)을 기준으로 하며, 저장(stock) 파악의 경우는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함.
- 반면, 패널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변수(성역할, 복지인식, 만족도 등)의 경우는 조사시기인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응답을 받고 있음.
- 조사시기는 1차년도에는 3개의 패널을 통합하고 조사표 개발 등의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조사시기가 11월에서 12월까지 이루어 졌으나, 2차년도부터는 종합소득세가 신고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를 진행함. 7차년도 조사이후부터는 응답자의 회상의 문제를 개선하고, 데이터 공개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연초에 조사를 진행하도록 변경함.

구분	조사시기	비고
1차년도(2006년 조사)	2006년 11월 1일~12월 30일	차상위패널, 자활패널, 복지패널의 통합작업이 다소 지연되었으며, 조사표 개발 등의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조사시기가 늦어짐.
2차년도(2007년 조사)	2007년 4월 24일~7월 20일	조사시점이 종합소득세가 신고되는 시점(5월)을 기준으로 함.
3차년도(2008년 조사)	2008년 4월 13일~7월 19일	
4차년도(2009년 조사)	2009년 4월 18일~7월 5일	
5차년도(2010년 조사)	2010년 5월 18일~8월 20일	CAPI 시스템 도입
6차년도(2011년 조사)	2011년 6월 9일~10월 10일	
7차년도(2012년 조사)	2012년 2월 11일~6월 16일	응답자의 회상의 문제를 개선하여 조사의 정확성 제고, 적시성 높은 연구성과를 생산, 정책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조사시점을 변경함.
8차년도(2013년 조사)	2013년 1월 12일~6월 8일	
9차년도(2014년 조사)	2014년 3월 8일~8월 15일	
10차년도(2015년 조사)	2015년 3월 2일~6월 12일	
11차년도(2016년 조사)	2016년 3월 2일~6월 15일	
12차년도(2017년 조사)	2017년 2월 18일~5월 31일	
13차년도(2018년 조사)	2018년 2월 24일~6월 7일	
14차년도(2019년 조사)	2019년 2월 18일~5월 31일	
15차년도(2020년 조사)	2020년 6월 5일~9월 13일	코로나로 잠정중단 및 재개
16차년도(2021년 조사)	2021년 3월 15일~6월23일	
17차년도(2022년 조사)	2022년 3월19일~6월23일	

□ 응답에 필요한 기록물 활용

- 소득 및 지출, 자산 관련 변수의 경우 가급적이면 갑근세 증명원, 가계부 등의 문서화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가구에 협조를 구하고 있음.
- 제도의 수혜 여부 및 이전급여액의 정확한 수치를 조사할 수 있도록 방문 조사원은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급여액과 수급기준을 사전에 숙지하고, 조사매뉴얼의 제도설명을 참고, 응답자의 회상을 도와 정확한 응답을 유도하고 있음.

11. 무응답 대처

11-1 항목무응답 대처 방법

- 조사원이 조사 항목에 대하여 불응을 당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항에 대해 지도원에게 보고하고, 지도원은 연구원에 알려 연구원의 조치를 받는다.
 - 주요 문항인 소득 및 생활비에서 항목 무응답이 발생하면 인포시트의 경상소득 범주를 토대로 응답자의 기억을 환기시키고, 해당 주민센터나 통반장의 협조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
 - ☞ 주요문항에서의 항목무응답은 17차조사 기준으로 없음.
- 6차 이전에서는 주요항목(소득변수)에 결측치 대체(다중대체)를 함
 - 1단계: 가구구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설명변수로서 “1차년도 경상소득”, “1차년도 가구구분”,

- “가구 유형”, “기초보장 수급형태”, “가구의 경제활동상태”, “주택유형”등을 선택하여 모형에 투입(이때 변수의 선택은 결측변수와 연관성이 있는 변수를 선택)
- 2단계: 필요하다면, 정규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변수변환을 실시
 - 3단계: 선택된 변수를 모형에 투입하여 다중대체를 실시하여 자료를 산출
 - 4단계: 변수변환 된 경우 역변환을 통해 원래 변수값으로 변환하고, 만일 대체된 값이 이산치인 경우 round 함
 - 5단계: 표준화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대체된 자료에 대한 적절한 모형을 추정
 - 6단계: 대체 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추정치와 표준오차, 검정통계값(test statistics)을 산출하는 통계분석 실시
 - 최종적으로 다중대체의 경우 디폴트 값으로 대체 자료 세트가 5개 생성되는데, 복지패널의 경우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후 분석을 통^o해 선택된 설명변수가 소득 변수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는 모형을 선택함

11-2 단위무응답 대처 방법

- 무응답 단위(불응가구)에 대한 대응
 - 조사원이 불응을 당하였을 때에는 상황을 듣고, 조사원의 재방문 여부와 해당가구에 지도원의 직접 방문여부를 판단
 - 조사가 불가할 경우 조사관리 담당자가 가구에 연락하여 조사불가 사유 파악 후 설득하여 조사협조 요청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도 조치불가할 경우, 조사미완가구사유 기재작성 후 미완처리
- 패널조사이기 때문에 단위무응답의 대처 방법은 따로 없음. 단, 당해연도 조사거부로 인한 단위무응답이 발생하면 2년 뒤에 패널가구를 추적하여 조사를 재시도하여 복원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무응답 사유별 처리조건 및 과정

- 무응답가구 접촉 회수, 무응답 처리조건 및 과정
 - 무응답 처리조건 및 과정

사유분류	처리조건 및 과정
사망	9개월 이상 거주 가구원 확인 후 조사대상이 없을 경우 가구소실 판단
합가	9개월 이상 거주 가구원 확인 후 합가로 분류될 경우 가구소실 판단
이민	본인, 가족, 비상연락처를 통하여 해외이민 확인 후 가구소실 판단
시설입소	본인, 가족, 비상연락처를 통하여 요양소입소 확인 후 가구소실 판단
대상제외	가구대상이 사라진 분가가구일 경우 조사대상 제외로 가구소실 판단
조사거부	최대 5회 접촉하여 설득 및 설명, 그 이후에도 거부할 경우 가구소실 판단
장기출타	조사기간내 가구부재 등 조사할 수 없는 경우 가구소실 판단 *단, 후년도 조사실시에 장기출타가구 조사가능여부 재확인 후 조사 실시
추적불가	가출, 연락처소실, 주소지변동 등으로 가구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소실 판단

- 조사거부 및 장기출타의 경우 최대 5회 접촉 실시

조사표완료	소요시간	총 분	총방문횟수	총 회
1차방문	___월 ___일 ___시 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사유(번호기재):
2차방문	___월 ___일 ___시 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사유(번호기재):
3차방문	___월 ___일 ___시 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사유(번호기재):
4차방문	___월 ___일 ___시 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사유(번호기재):
최종방문	___월 ___일 ___시 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사유(번호기재):

조사원 이름	지도원 확인	① 완료 ② 미완	사유(번호기재):	지도원	(인)
--------	--------	-----------	-----------	-----	-----

12. 표본대체

12-1 표본대체 허용 기준

- 복지패널조사는 패널조사로 표본대체를 허용하지 않음
 - 단, 패널 차수가 진행됨에 따라 원패널의 탈락으로 인해 원표본의 유지율이 떨어져 7차에 1,800가구, 17차에 2,012가구를 추가로 패널로 선정

12-2 표본대체 절차 및 방법

- 단위무응답(조사거부)이 발생한 가구에 대해선 2년 뒤에 재시도 조사를 진행하며, 그 외 사망, 행방불명, 이민, 시설입소, 추적불가 등은 패널소실로 보아 패널 소실로 봄
- 17차 조사에선 2년전 코로나19로 인해 거부하였던 가구에 대한 복원을 시도하여 14가구를 복원하였음.

12-3 표본대체 기준, 절차 및 방법

- 패널조사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패널 탈락(이탈)이 발생하며,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 패널을 구축하여 기존 패널에 추가함
- 7차에 1,800가구를 추가 패널로 구축하였고, 17차에서도 2,012가구를 추가 패널로 구축하였음
- 17차 추가패널(2,012가구)에 대한 표본설계서 및 가중치 작업

13. 사후조사

13-1 조사 실시 후 사후조사(모니터링) 실시

- 조사실시지역 방문 후 조사 전반적 분위기, 내용 등 점검 실시
 - 수행주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패널 연구진
 - 수행기간: 5.11 ~ 5.20
 - 수행내용
 - 조사표 확인을 통한 조사 질 관리 및 조사수행 고충 처리
 - 조사표 설문지 검토 및 문제점 발견, 유의사항 도출 및 전달

13-2 사후조사(모니터링) 수행에 대한 결과 분석 및 사후조치 방안(결과, 활용)

- 조사완료된 패널가구의 10%를 샘플링하여 조사여부, 조사내용 등을 확인하는 실사검증
 - 방법: 전화조사를 통한 사후검증조사
 - 수행업체: (주)한국리서치
 - 검증부수: 800가구
 - 1차 사후검증 (본조사)
 - 검증대상: 본조사 5,853가구의 약 10%
 - 검증부수: 600가구
 - 검증기간: 7.14 ~ 7.26
 - 2차 사후검증 (신규조사)
 - 검증대상: 신규조사 2,012가구의 약 10%
 - 검증부수: 200가구
 - 검증기간: 9.2 ~ 9.25
 - 수행내용
 - 조사실시 일자 확인
 - 주소지 변동여부 확인
 - 조사원 직접방문 여부 확인
 - 방문전 사전연락 및 컨택여부 확인
 - 조사사례금(농협상품권) 수령여부 확인
 - 조사원 조사설명 및 태도 확인

IV. 통계처리 및 분석

1. 자료코딩

1-1 자료 코드체계 및 코딩(부호화) 방법

- 코딩(부호화) 방법은 조사결과를 표준화된 틀(조사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
- 현재 CAPI 화면 참조

한국복지패널 - 가구원 일반사항 (설문은 반드시 순서대로 진행을 하 주세요)

5-1. 교육수준1

1 : 미취학(만 7세 미만)
2 : 무학(만 7세 이상)
3 : 초등학교
4 : 중학교
5 : 고등학교
6 : 전문대학
7 : 대학교
8 : 대학원(석사)
9 : 대학원(박사)

※ 2021년 1년 동안 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한 가구원을 기준으로 말하여 주십시오.
단,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가정, 학생, 기타 이유로 같이 살지 않는 가족은 가구원에 포함하여 주십시오.

연월차수	PID	가구원번호	이름	생년월일	성별	1. 가구원수	2. 가구원별연령	3. 생년월일	4-1. 태어난 연도	4-2. 태어난 월	5-1. 교육수준	5-2. 교육수준	6-1. 장애유무	6-2. 장애정도	7. 본인 성별	8. 종교	9. 동거여부	10. 가구형태
1		1	이름	1990-01-01	남	3	10:가구의 수				5:고등학교	5:고급	0:배우자(배우자) 1:배우자(배우자)			2:없음	2:다들 지냈어 근! 5:기타	
1		2	이름	1990-01-01	남	20:가구의 배우					5:고등학교	5:고급	0:배우자(배우자) 1:배우자(배우자)			2:없음	1:같이 살고 있다.	
1		3	이름	1990-01-01	남	11:가구의 셋째					5:고등학교	5:고급	0:배우자(배우자) 1:배우자(배우자)			2:없음	1:같이 살고 있다.	

- 코드는 모두 실수로 구성되며, 각 항목별로 응답값을 부여(단, 조사항목 중에 기타: 항목은 텍스트 입력 후 범주화하여 코드화 함)

- CAPI 시스템에 입력값 범위를 지정하기 range도 제공

○ 코드체계

- 【가구용(h), 가구원용(p), 부가조사(c, wc, da)】 + 【패널차수(1차: 01, 2차: 02, ... 17차: 17)】 + 【조사영역별 x일련번호(조사표 장 번호로 I.가구일반사항: 01, V.주거: 05 등)】 + 【 】 + 【각 조사영역에 속한 문항의 일련번호】

- 예시: h1001_1 → 가구용 17차 I.가구일반사항의 문1 가구원수

※ 2차 조사에서 추가하였거나 많이 변형된 문항은 aq, 3차는 3aq, 17차는 17aq를 붙이고 해당 일련번호를 붙임

예시: h1708_17aq1 → 가구용 17차 VIII.소득에서 17차에 추가된 문항

2. 자료입력

2-1 조사결과 자료의 전산입력 방법

- 복지패널은 CAPI 시스템을 도입하여 노트북에 입력한 값이 DB에 저장되어 출력됨.

- 문항 응답을 숫자 또는 텍스트 형태로 입력
- 입력되는 내용은 모든 조사결과(응답값)
- CAPI 시스템에서 입력범위 문항 로직 등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응답한 값의 셀이 붉은색으로 표시되고 입력 수정을 요구하게 설정되어 있고, 설문 로직 등의 이유로 문항을 건너뛰는 경우는 파랑색으로 표시되고 입력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음
- 또한 비표본오차를 줄이기 위해 메모창 및 보조기입란, 자동 합계 등을 CAPI 시스템에 탑재함

2-2 입력 시 오류 검출을 위해 적용한 방법

- 오류검출을 위하여 적용한 방법은 CAPI 시스템에 내검담당자 및 연구진이 조사항목의 로직 및 범위를 설정하여 화면에 표시되게 함.
- 패널 특성상 큰 변화가 없는 문항들은 전년도 응답 문항 정보를 인포시트의 형태로 CAPI 시스템에 띄움
- 예를 들어 주거 파트에서 이사여부 문항에서 이사를 하지 않았는데, 전년도 응답 항목과 다른 오류가 검출되어서, CAPI 시스템에 이사를 하지 않았으면 전년도 응답한 문항 값이 화면에 보이게끔 되어 있고, 전년도 문항이 틀려서 문항값을 수정하면 메모를 달아서 표시하게끔 함
- 또한 가구주와 관계에서 가구주의 부, 모, 조부, 조모 등 성별이 고정된 것은 성별 문항과 로직을 걸어 두었고, 가구주의 첫째 자녀, 둘째 자녀 등 생년의 순서가 있는 것은 생년에서 로직 적용, 가구형태도 가구원수가 1인이면 단독가구, 모 • 부자 가구의 가구주 성별 및 가구주의 배우자가 없어야 하는 등의 로직을 CAPI에 탑재 등 문항 및 조사항목 파트별로 로직을 다양하게 적용함

2-3 입력매뉴얼

-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조사원들이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컴퓨터로 면접을 진행하는 기법
- CAPI Interview(조사표), CAPI Manager(조사표 에디팅 및 내검)
 - CAPI Interview 기능설명
 - ① 배부(전체) TAB : 업데이트 된 리스트를 배부 받을때 클릭하는 단추
 - ② 진행 중 TAB : 현재 진행중인 대상자들의 상태를 보여주며, 처음로그인 하면 진행 중 화면이 보이며 계속 진행하려면 해당하는 CAPI ID혹은 아래 나온 리스트 이름을 더블 클릭하면 진행할 수 있는 화면이 뜬다
 - ③ 완료 TAB : 모든 조사를 완료하게 되면 자동으로 완료 TAB으로 이동되며, 전송 단추를 클릭하면 완료된 TAB에 있는 자료만 서버로 전송하게 된다
 - ④ 전송 단추 : 조사된 자료를 서버로 보낼 때 클릭하는 단추로 반드시 인터넷이 연결되어야 한다.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에서 이 단추를 클릭하면 노트북의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고, 설문지 버전 및 업데이트 내용을 확인하여 자동으로 업데이트 한다.
 - ⑤ 전송기록 TAB : 전송이 완료된 자료가 있는 TAB으로 사용자는 어떤 리스트의 정보를 전송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 ⑥ 설문정보 : 현재 인터뷰어의 버전정보와 히스토리를 보여주는 곳
 - CAPI Manager 기능설명
 - ① 가구별 진행상황
 - ② 면접원별 진행상황
 - ③ 조사한 데이터를 리뷰
 - ④ 면접원별 조사가구 배부
 - ⑤ 데이터 출력

2-4 자료입력 교육 실시 여부와 교육 일정 및 방법

- 자료입력교육은 조사원 지침 및 CAPI 교육을 3일 실시함.
 - 조사항목 파트별로 지침 교육 및 로직 시연
- 3월 14일(월) ~ 3월 17일(목): 조사원 교육(세종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호텔)
 -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방식

3. 자료내검

3-1 조사현장 내검 내용 및 방법, 오류자료 처리방법

□ 조사현장(CAPI 로직 자동 검증)

- CAPI 시스템 수준에서 입력범위 및 설문로직 등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붉은색으로 경고를 띄우고 입력 수정을 요구하게 설정되어 있음.
- CAPI 상의 에디팅 시스템 화면

- 에디팅(조사지도원)
 - 각 조사팀 별로 에디팅을 전문으로 하는 숙련된 조사지도원(본 조사의 경력만 10년 이상)을 배치, 조사원이 입력한 CAPI 내용을 열람하여 조사 파트 간 로직과 제도와의 부정합성 등을 발견하여, 수정 지시 혹은 직접 응답자에게 보충조사를 실시

□ CAPI 시스템의 도입으로 조사현장의 입력단계에서 기본 내검

- 응답문항의 조건(나이, 성별, 결혼유무 등), 응답문항의 기본 범위, 지시 문항의 로직 등 조사표의 지시로직은 CAPI 시스템에 구현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자료명: 한국복지패널 CAPI 설문조사 운영지원 및 매뉴얼)

3-2 입력결과 내검 내용 및 방법, 오류자료 처리방법

- 자료내검은 범위내검과 논리내검으로 구분하여 실시
 - (범위내검) 조사항목에 대한 각각의 Syntax 작성·가동후 각 변수들의 응답값이 범위를 넘어서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조사표와 대조하여 정정
 - (논리내검) 조사항목의 논리구성상 오류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조사항목간 응답값의 대조를 통해 오류를 정정
- 통계패키지 활용 자료내검(연구진)
 - 조사진행 중: 조사지도원이 에디팅을 완료한 자료를 데이터로 추출, 통계패키지 상에서의 전산내검을 실시하고, 조사팀의 지도원에게 오류사항을 전달하여 조사팀의 보충조사 등을 유도하는 식으로 응답내용의 정합성을 확보함. 각 조사영역의 연구진이 데이터 상의 모든 변수를 전산내검하며, 본인 영역 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진의 영역과의 로직을 내검함. 조사 완료율의 특정 수준에 달할 때마다 전산내검을 실시하며, 진행 중에 통상 5회 이상의 전산내검을 실시함(예: 조사완료율 15%, 35%, 75%, 85%, 100%).
 - 조사완료 후: 조사 완료율이 100%에 달하면 완료된 데이터를 추출하여 내검을 다시 실시, 조사진행 중과 마찬가지로 조사팀에게 오류사항을 전달하지만 자료의 오류는 데이터 상에서 수정을 함. 종단데이터의 특성 상 시간불변성 변수의 경우는 해당 패널의 지난 차수 데이터를 참고하기도 함.

3-3 전산내검의 범위, 논리내검의 적용 대상 및 내용

□ 확인된 오류의 유형, 내용, 원인 등에 대한 분석결과(전산내검의 논리 및 적용내용)

- 가구일반사항 분야 내검사례
 - 가구원 수에 따른 응답 문항 확인
 - 1인 가구이지만, 2번 가구원 문항이 응답된 경우 예러(1~9번 가구원)
 - 가구주와의 관계와 성별 및 연령 매치
 - 가구주와 관계가 1:가구주의 아버지, 3:가구주의 배우자의 아버지, 5:가구주의 조부, 7:가구주의 배우자의 조부인데 성별이 여성이면 예러, 관계에 따른 연령 확인
 - 가구주와 관계가 2:가구주의 어머니, 4:가구주의 배우자의 어머니, 6:가구주의 조모, 8:가구주의 배우자의 조모인데 성별이 남성이면 예러, 관계에 따른 연령 확인
 - 가구주와의 관계에 따른 연령 확인
 - 가구주와 관계가 자녀인 경우 자녀의 순서별 연령 확인
 - 교육수준
 - 문5-1)이 1.미취학(만 7세미만), 2.무학(만 7세이상)이면 문5-2)는 0.비해당
 - 문5-1)이 1.미취학과 2.무학의 만 나이 확인
 - 연령에 따른 교육수준 확인
 - 조기입학은 메모 확인
 - 장애종류 및 등급
 - 장애종류와 등급 로직(장애종류가 비해당이면 등급도 비해당, 비등록장애이면 비등록 장애, 해당 장애별 나올 수 있는 장애등급 확인-단 중복장애이면 메모확인)

- 혼인상태
 - 비해당(만 18세 미만), 미혼(만18세 이상)의 나이 확인
 - 부부간의 혼인상태 일치 확인
- 가구형태
 - 단독이면 가구원수가 1인인지 확인
 - 모자, 부자인 경우엔 가구주의 성별 및 자녀의 나이 확인
 - 조손가구 또는 소년소녀가장의 경우엔 가구주의 나이 확인(조손: 만65세 이상, 소년소녀가장: 만 18세 미만)하고, 조손일 경우 가구주와 관계 확인(손자녀 코드 확인)
- 기초보장 수급형태 및 의료급여 수급형태
 - 수급형태1 문항이 해당없음이면 수급형태2 문항도 해당없음
- 맞춤형 급여
 - 수급여부 문항과 수급형태1,2 문항 로직(여부가 예이면 수급형태1,2가 해당없음이면 에러)
- 생활비 분야 내검사례
 - 총 생활비 합계 확인
 - 세부 생활비 문항의 합계 값과 총생활비 문항과의 매치
 - 상하위 5% 금액의 가구 확인(메모사항 확인 및 전년도 문항과의 비교)
- 소득 분야 내검사례
 - 근로소득 해당여부 매치 확인
 - 만 15세 미만인 가구원의 해당 근로소득 해당여부 확인
 - 상용, 임시, 고용주, 농림, 어업의 근로 개월 수 확인(12개월 미만이면 무급의 개월수를 합하여 12개월이 나와야 함 - 신규가구는 생성시기로 재확인)
 - 근로소득의 해당여부에 따른 근로 개월 수 및 근로소득액 확인
 - 주된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해당 근로소득(해당여부, 근로소득액) 매치
 - 농림축산업 경영주에 해당하면 문5) 논, 밭, 임야, 기타의 경지규모가 모두 0이 나오면 에러
 - 농림축산물 판매수입(A), 자가소비액(B), 이전소비액(C), 합계(A+B+C), 연간 잠수입 총액(D), 연간 총비용(E), 연간 순소득(A+B+C+D-E) 계산 확인
 - 농림축산업 경지합계가 300명(990m²)미만과 판매수익이 120만원 미만인 농림축산업 경영주 확인
 - 경지규모(논)이 990m²(300평)이상이지만 농어업정부지원금이 0인 경우 확인
 - 어업 판매수입(A), 자가소비액(B), 이전소비액(C), 합계(A+B+C), 연간 잠수입 총액(D), 연간 총비용(E), 연간 순소득(A+B+C+D-E) 계산 확인
 - 근로소득이 0인 경우 확인(단, 육아휴직, 고용주 및 자영자의 전입소득은 메모 확인)
 - 소득에서 음의 소득 확인(단 고용주 및 자영업, 농림축산업 순소득, 어업 순소득, 환급금 제외)
 - 기타정부보조금의 보육료 지원과 이 중 지출을 전제로 한 금액이 같지 않으면 확인
 - 기타정부보조금의 학비 지원과 이 중 지출을 전제로 한 금액이 같지 않으면 확인
 - 기타정부보조금의 학비 지원의 금액이 520만원 초과인 경우 확인
 - 기타정부보조금의 기타 바우처 지원금과 가구복지서비스의 바우처서비스 이용경험여부 로직 체크(기타 바우처 지원금이 0이면, 이용경험은 아니요가 되어야 함)
 - 기타정부보조금의 보육료 지원금과 가구복지서비스의 바우처서비스 이용경험여부 로직 체크

(보육료 지원금이 0이면, 이용경험은 아니요가 되어야 함)

- 해당 기타정부보조금의 자격 여부 확인(장애수당이면 장애인 존재, 기초연금 금액이 있으면 노인이 존재 등)
- 해당 기타정부보조금의 최대 수령 금액 확인(기초연금 1인 최대 연간 360만, 부부 최대 연간 576만 등)

○ 경제활동상태 및 근로

- 근로능력없음으로 응답한 경우, 비경제활동 사유에 근로무능력으로 응답했는지 로직 확인
-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와 근로의 문항간 로직 확인
-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와 소득의 가구원 경제활동 간의 로직 확인
- 사업장 규모의 공무원, 공공립 교사 등의 규모 확인
- 근로에서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경우, 현 직장 근무시작 년도 로직 확인
-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를 자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등으로 응답한 경우, 정부의 고용지원 프로그램 경험 여부와 로직 확인
- 주당 평균 근로시간 및 일한 날의 하루 평균 시간 등 범위 확인
- 일한 달의 월 평균 임금, 일한 날의 시간당 임금의 이상치 확인
- 업종, 직종과 노동조합 가입여부 간 논리적 관계 확인

○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가구용 데이터)

- 개인패널 ID가 sysmis가 아닌데, p.9 문1) 공적연금가입형태가 sysmis이면 오류
- 개인패널 ID가 sysmis가 아닌데, p.10 문9) 산재보험가입여부가 sysmis이면 오류
- 개인패널 ID가 sysmis가 아닌데, p.10 문10) 고용보험 가입여부가 sysmis이면 오류
- 개인패널 ID가 sysmis가 아닌데, p.10 문11) 퇴직금 적용여부가 sysmis이면 오류
- 개인패널 ID가 sysmis가 아닌데, p.10 문12) 퇴직금연금가입여부가 sysmis이면 오류
- 개인패널 ID가 sysmis가 아닌데, p.10 문13) 개인연금가입여부가 sysmis이면 오류
- 개인패널 ID가 sysmis가 아닌데, p.10 문14) 건강보험가입여부가 sysmis이면 오류
- 60세 이상인데 문1) 공적연금 가입형태가 4.미가입이면 오류 → 그러나 9차부터는 60세의 경우 나올 수 있음(국민연금 수급연령의 단계적 상향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지났지만 급여 수급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기간이 발생함. 즉, 가입자 이었던 자가 만 60세에 도달하였는데도 수급과 가입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미가입으로 응답)
- 문1)공적연금 가입형태가 0.비해당 또는 1.연금수급인데 문2)~문8)이 sysmis가 아니면 에러
- 문1)공적연금 가입형태가 0.비해당 또는 1.연금수급인데 문9)가 sysmis이면 에러
- 문1)공적연금 가입형태가 2.연금가입 혹은 3.연금수급하면서 가입인데, 문2)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가 sysmis이면 에러
- 문1)공적연금 가입형태가 2.연금가입 혹은 3.연금수급하면서 가입인데, 문8)미가입이유가 sysmis가 아니면 에러
- 문1)공적연금가입형태가 4.미가입인데 문2)~문7-1)이 sysmis가 아니면 에러
- 문1)공적연금가입형태가 4.미가입인데 문8)미가입이유가 sysmis이면 에러
- 문2)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가 1.국민연금인데, 문3)국민연금가입종별이 sysmis이면 에러
- 문2)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가 2~6의 값을 가지는데, 문3)~문8)이 sysmis가 아니면 에러
- 문2)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가 2~6의 값을 가지는데, 문9)가 sysmis이면 에러

- 문3)국민연금가입종별이 5.모름인데 문4)~문8)이 sysmis가 아니면 에러
- 문3)국민연금가입종별이 5.모름인데, 문9)가 sysmis이면 에러
- 문3)국민연금가입종별이 1~4 값을 가지는데, 문4)가 sysmis이면 오류
- 문4)국민연금납부여부가 값을 가지는데 문3)국민연금가입종별이 5.모름 혹은 sysmis이면 오류
- 연령이 60~65세이고, 문1)공적연금 가입형태가 2.연금가입 혹은 3.연금수급하면서 가입이면서, 문2)가입한 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인데, 문3)국민연금 가입종별이 4.임의계속가입자가 아니면 에러
- 문3)국민연금 가입종별이 4.임의계속가입자인데, 만60세~만65세가 아닌 경우 에러
- 문4)국민연금 납부여부를 1.납부하고 있음으로 응답했는데, 문5)국민연금 미납유형~문6-1) 납부예외기간이 sysmis가 아니면 에러
- 문4)국민연금 납부여부를 1.납부하고 있음으로 응답했는데, 문7)미납이유, 문7-1)미납기간이 sysmis이면 에러
- 문4)국민연금 납부여부를 2.납부하지 않고 있음으로 응답했는데, 문5)국민연금 미납유형이 sysmis이면 오류
- 문5)국민연금 미납유형이 1.납부예외자인데 문6)납부예외사유 및 문6-1)납부예외기간이 sysmis면 에러
- 문5)국민연금 미납유형이 1.납부예외자인데 문7)미납이유~문8)미가입이유가 sysmis가 아니면 에러
- 문5)국민연금 미납유형이 2.보험료 미납인데, 문6)납부예외사유, 문6-1)납부예외기간, 문8)미가입이유가 sysmis가 아니면 에러
- 문5)국민연금 미납유형이 2.보험료 미납인데, 문7)미납이유, 문7-1)미납기간이 sysmis이면 에러
- 문6)납부예외사유가 sysmis가 아닌데, 문6-1)납부예외기간이 sysmis이면 에러
- 문6)납부예외 사유가 sysmis가 아닌데, 문7)미납이유~문8)미가입이유가 sysmis가 아니면 에러
- 문6)납부예외사유가 sysmis인데, 문6-1) 납부예외 기간이 sysmis가 아니면 에러
- 문6-1)납부예외기간이 sysmis가 아닌데, 문7)미납이유~문8)미가입이유가 sysmis가 아니면 에러
- 문6-1)납부예외기간이 sysmis가 아닌데, 문9)산재보험 가입여부가 sysmis이면 에러
- 문7)국민연금 미납이유가 0.비해당인데, 문7-1)미납기간이 0이 아니면 에러
- 문7)국민연금 미납이유가 0.비해당이 아닌데, 문7-1)미납기간이 0이면 에러
- 문7-1)국민연금 미납기간이 sysmis가 아닌데, 문9)산재보험 가입여부가 sysmis이면 에러
- 연령이 만15세 미만인데, 문1)공적연금가입형태, 문9)산재보험 가입여부, 문10)고용보험 가입여부, 문11)퇴직금 적용여부, 문12)퇴직연금 가입여부가 0.비해당이 아니면 에러
- 연령이 만65세 이상인데, 문10)고용보험 가입여부가 0.비해당이 아니면 에러: 9차부터 에러 아님
- 문2)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가 2~5(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인데, 문9)산재보험 가입여부, 문10)고용보험 가입여부, 문11)퇴직금 적용여부, 문12)퇴직연금 가입여부가 0.비해당이 아니면 에러
- 주된 경제활동참여상태가 자영업자인데, 문9)산재보험 가입여부가 0.비해당이 아니면 에러
→ 15차부터 에러 아닐 수 있음(중소기업 산재보험 가입요건 대폭완화).
- 주된 경제활동참여상태가 자영업자인데, 문10)고용보험 가입여부가 0.비해당이 아니면 에러

→ 9차부터 에러 아닐 수 있음(자영자 및 고용주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 주된 경제활동참여상태가 비경활인구인데, 문9)산재보험 가입여부, 문10)고용보험 가입여부가 0.비해당이 아니면 에러
- 경제활동참여상태가 5.고용주~9.비경활인데, 문2)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가 2.공무원연금~5.별정직우체국연금으로 되어있으면 에러
- 경제활동참여상태가 비임금근로자(6.자영자)인데, 국민연금 가입종별이 1.직장가입자로 기입되어 있는 경우 CAPI 열람 필요
- 경제활동참여상태가 5.고용주인데, 국민연금 가입종별이 2.지역가입자로 기입되어 있는 경우 11차부터 처음부터 고용주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검토 필요
- 경제활동참여상태가 비경활이나 실업자인데, 직장가입자이면서 납부예외인 경우 에러체크 필요
- 개인연금에 가입되어있는데, 금융자산 2번(정기적금, 연금형 적금, 종신보험, 청약부금, 청약저축등)에서 안잡히는 경우 에러체크 필요
- 가구용 p.9 문1)공적연금 가입형태가 1.연금수급 혹은 3.연금수급하면서 가입인데, 가구원용 p.2 문1)연간 공적연금 수급여부가 1.그렇다가 아니면 에러

○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가구원용 데이터)

- 가구원용 p.2 문1)공적연금 수급여부가 1.그렇다인데, 가구용 p.8 문1)공적연금 가입형태가 1.연금수급 혹은 3.연금수급하면서 가입이 아닌 경우, 보훈연금 혹은 기타일때만 가능하고 그 외엔 에러
- 일시금(금액확인 or 급여종류 확인)으로 받은 경우에도 가구용에서 1.연금수급(60세이상) 혹은 3.연금수급하면서 가입(60세미만)으로 기입
-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60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근로를 할 경우 연금지급이 정지되는데 이 경우 가구용에서 3.연금수급하면서 가입으로 기입
- 문1)1년간 공적연금 수급여부에 1.그렇다고 응답했는데, 문1-1)수급 공적연금 종류(중복응답 문항 중 하나라도)가 sysmis이면 에러
- 문1)1년간 공적연금 수급여부 2.아니다라고 응답했는데, 문1-1)~문1-6)까지 sysmis가 아니면 에러
- 문1-1)수급 공적연금 종류의 중복응답 값이 동일한 경우 에러
- 문1-1)수급 공적연금 종류_1,2에서 1이 sysmis인데 2가 응답이 있으면 에러
- 문1-1)수급 공적연금 종류(중복응답 문항 중 하나라도)가 1.국민연금인데, 문1-2)국민연금 급여종류가 sysmis이면 에러
- 문1-1)수급 공적연금 종류(중복응답 문항 중 하나라도)가 1.국민연금인데, 문1-3)국민연금 총급여액 일시금 및 연금 연간총액 둘다 sysmis이면 에러
- 문1-1)수급 공적연금 종류(중복응답 문항 둘다)가 1.국민연금이 아닌데, 문1-2)~문1-3) sysmis가 아니면 에러
- 문1-1)수급 공적연금 종류(중복응답 문항 중 하나라도)가 2~5로 응답했는데, 문1-4)특수직역연금 급여종류 1순위가 sysmis이면 에러
- 문1-1)수급 공적연금 종류(중복응답 문항 중 하나라도)가 2~5로 응답했는데, 문1-5)특수직역연금 일시금 및 연금 연간총액 둘다 sysmis이면 에러

- 문1-1)수급 공적연금 종류(중복응답 문항 중 둘다)가 응답이 2~5.가 아닌데, 문1-4)특수직역연금 급여종류 1순위, 2순위 모두 sysmis가 아닌 경우 에러
- 문1-1)수급 공적연금 종류(중복응답 문항 중 하나라도)가 6~7.인데, 문1-6)보훈연금 및 기타연금 일시금과 연금 연간총액이 모두 sysmis이면 에러
- 문1-1)수급 공적연금 종류(중복응답 문항 둘다)가 6~7.이 아닌데, 문1-6) 보훈연금 및 기타연금 일시금과 연금 연간총액이 모두 sysmis로 되어 있지 않으면 에러
- 문1-2)국민연금 급여종류가 1.노령연금~4.분할연금인데 문1-3)국민연금 수급액 연금이 sysmis 또는 0이면 에러 → 일시금 수령 또는 연기연금대상자일 수 있음
- 문1-2)국민연금 급여종류가 1.노령연금~4.분할연금인데 문1-3)국민연금 수급액 일시금이 sysmis 또는 0이 아니면 에러가능성 있음(그러나 중복급여 가능)
- 문1-2)국민연금 급여종류가 5.사망일시금이나 6.반환일시금인데 문1-3)국민연금 수급액 일시금이 sysmis 또는 0이면 에러
- 문1-2)국민연금 급여종류가 5.사망일시금이나 6.반환일시금인데 문1-3)국민연금 수급액 연금이 sysmis 또는 0이 아니면 에러
- 문1-3)국민연금 일시금이 0을 초과하는 값을 가지는데, 연금 수급개월수 및 연간총액이 sysmis이면 에러
- 문1-3)국민연금 수급액 일시금, 연금 연간총액이 0인 경우 에러
- 문1-3)국민연금 수급액 일시금, 연금 모두 있는 경우 검토
- 문1-3)국민연금 수급액 연금 개월수가 있는데, 연금액이 없는 경우 에러 → 연금연기 대상일 수 있음
- 연령이 55세 미만인데, 가구원용 p2 문1-1)공적연금 종류가 1.국민연금이면서 문1-2)급여종류가 1.노령연금이면 에러
- 가구용 p2 문4) 연령이 만 55세 미만인데, 가구원용 p2 문1-2) 국민연금 급여종류가 1.노령연금이면 에러
- 가구용 p2 문4) 연령이 만 60세 미만인데, 가구원용 p2 문1-2) 국민연금 급여종류가 4.분할연금이면 에러
- 문1-4)수급 특수직역연금 종류의 중복응답 값이 동일한 경우 에러
- 문1-5)특수직역연금 일시금 및 연금 연간총액이 모두 0인 경우 에러
- 문1-5)특수직역연금 일시금이 0을 초과하는 값을 가지는데, 연금 수급개월수 및 연간총액이 sysmis이면 에러
- 문1-5)특수직역연금 수급액 일시금, 연금 모두 있는 경우 검토
- 문1-5)특수직역연금 수급액 연금 개월수가 있는데, 연금액이 없는 경우 에러
- 문1-6)보훈연금 및 기타연금 일시금 및 연금 연간총액이 모두 0인 경우 에러
- 문1-6)보훈연금 및 기타연금 일시금이 0을 초과하는 값을 가지는데, 연금 수급개월수 및 연간총액이 sysmis이면 에러
- 문1-6)보훈연금 및 기타연금 수급액 일시금, 연금 모두 있는 경우 검토
- 문1-6)보훈연금 및 기타연금 수급액 연금 개월수가 있는데, 연금액이 없는 경우 에러

- 문2)고용보험 수급여부가 1.있다 인데, 문2-1)~문2-2)까지 하나라도 sysmis이면 에러
- 문2) 고용보험 수급여부가 2.없다 인데, 문2-1)~문2-2)까지 하나라도 sysmis가 아니면 에러
- 문2-1)고용보험 급여종류_1,2의 중복응답 값이 동일한 경우 에러
- 문2-1)고용보험 급여종류_1,2에서 1이 sysmis인데, 2가 응답이 있으면 에러
- 문2-2)고용보험 수급 개월수 및 연간총액이 0인 경우 에러 (현금+현물 모두)
- 문3)산재보험 수급여부가 1.있다 인데, 문3-1)~문3-2)까지 하나라도 sysmis이면 에러
- 문3)산재보험 수급여부가 2.없다 인데, 문3-1)~문3-2)까지 하나라도 sysmis가 아니면 에러
- 문3-1)산재보험 급여종류_1,2의 중복응답 값이 동일한 경우 에러
- 문3-1)산재보험 급여종류_1,2에서 1이 sysmis인데, 2가 응답이 있으면 에러
- 문3-2)산재보험 급여액 일시금과 연금 연간총액이 모두 0인 경우 에러
- 문3-2)산재보험 일시금이 0을 초과하는 값을 가지는데, 연금 수급개월수 및 연간총액이 sysmis이면 에러
- 문3-1)산재보험 급여종류(1순위,2순위 중 하나라도)가 4.장해급여 일시금 또는 6.유족급여 일시금인데, 문3-2)일시금 총액이 sysmis 또는 0이면 에러
- 문3-1)산재보험 급여종류(1순위,2순위 중 하나라도)가 3.장해급여 연금 또는 5.유족급여 연금인데, 문3-2)연금 수급 개월수 및 연간총액이 sysmis 또는 0이면 에러
- 문4)개인연금 수급여부가 1.있다 인데, 문4-1)이 sysmis이면 에러
- 문4)개인연금 수급여부가 2.없다 인데, 문4-1)이 sysmis가 아니면 에러
- 문4-1)개인연금 급여액 일시금과 연금 연간총액이 모두 0인 경우 에러
- 문4-1)개인연금 급여액 일시금이 0을 초과하는 값을 가지는데, 연금 수급개월수 및 연간총액이 sysmis이면 에러
- 문5)퇴직금 및 퇴직보험 수급여부가 1.있다 인데, 문5-1)이 sysmis이면 에러
- 문5)퇴직금 및 퇴직보험 수급여부가 2.없다 인데, 문5-1)이 sysmis가 아니면 에러
- 문5-1)퇴직금 및 퇴직보험 급여액 일시금과 연금 연간총액이 모두 0인 경우 에러
- 문5-1)퇴직금 및 퇴직보험 급여액 일시금이 0을 초과하는 값을 가지는데, 연금 수급개월수 및 연간총액이 sysmis이면 에러

○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가구 및 가구원용 데이터 활용)

- 가구원용 문1-3)국민연금, 문1-5)특수직역연금, 문1-6)보훈연금 등 가구의 공적연금 급여액 연금이 sysmis이거나 0이 아닌데, 가구용 소득문항에서 문9)사회보험 중 공적연금 0이면 에러
- 가구원용 문2-2)고용보험 급여액이 sysmis이거나 0이 아닌데, 가구용 소득문항에서 문9)사회보험 중 고용보험 0이면 에러
- 가구원용 문3-2)산재보험 급여액이 sysmis이거나 0이 아닌데, 가구용 소득문항에서 0이면 에러
- 요양급여인 경우 현물이기 때문에 사회보험파트에서는 0원이고, 소득에서도 요양급여는 산재보험소득이나 기타소득에서 잡히지 않음
- 가구원용 문4)개인연금 급여액이 sysmis이거나 0이 아닌데, 가구용 소득문항에서 문10)민간보험 중 개인연금 0이면 에러
- 가구원용 문5)퇴직연금 급여액이 sysmis이거나 0이 아닌데, 가구용 소득문항에서 문10)민간보험 중 퇴직연금 0이면 에러

-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수급하는 60세 이하 사람의 경우 공적연금 가입형태가 가입하면서 수급으로 되어있는지 확인
- 부채 및 이자, 재산
 - 금액 범위 체크 확인
 - 원가구와 신규가구의 이자 산정방식이 다름을 확인하고 그것의 예러 확인
 - 재산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집은 제외하고 파악하는 것인데, 포함되지 않았는지 논리적 관계 확인
 - 재산소득에서 임대료가 있는 경우 소유부동산의 응답내용과 논리적 관계 확인
 - 재산소득에서 이자, 배당금이 있는 경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이 있는지의 논리적 관계 확인
 - 가구의 복지서비스에서 대출 이용경험이 있는데 부채가 없는 경우가 있는지 논리적 관계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 내검사례
 -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경험이 결측으로 나오는 경우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한 경험이 없는데, 이유 및 선정결과 등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확인
 - 문2와 문2-1)에서는 급여를 12개월 받았는데, 일반사항에서 기초생활보장은 비해당, 소득에서는 기초생활급여를 12개월 받은 것으로 나옴. 이러한 경우 수급자가 맞는지 확인 필요.
 - 일반사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해당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의 문 2-1) 수급기간, 소득에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개월 수가 수급액 간의 관계가 불일치함. (아래는 사례)
 - 4~12월까지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소득파트에서 수급개월 수는 12개월로 입력함.
 - 5~12월까지 받았으므로 수급개월 수가 8개월이어야 하는데, 소득 파트에서는 10개월로 입력함.
 - 주거급여 수급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파트 하위문항 다 입력했는데, 소득파트에서 0원인 경우 확인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인데 관련 하위문항(급여 적정성, 급여수준 평가, 급여 탈피 예상기간, 탈피 이유, 탈수급 이후 계속 받고 싶은 이유) 결측인 경우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12월 말까지 받았는데, 문3) 미응답이거나 문4)응답한 경우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12월 말까지 받지 못하고 탈락했는데, 문3) 응답이거나 문4) 미응답한 경우 확인
- 근로장려세제 분야 내검사례
 - 근로장려세제를 신청한 적이 없는데, 수급하는 것으로 확인됨.
 - 근로장려세제 파트 최소 1개 이상 수급인데 관련 하위문항(사용현황, 도움정도, 근로의욕 영향) 결측인 경우 확인
 - 소득파트의 근로장려세제에서 수급받은 금액이 있는데, 근로장려세제 파트에서는 수급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소득파트의 자녀장려세제에서 수급받은 금액이 있는데, 근로장려세제 파트에서는 수급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근로장려세제 파트에서는 수급으로 응답했는데, 소득파트에서는 0원으로 응답한 경우 확인
- 의료 및 건강 분야 내검사례
 - 문2-2) 입원횟수, 문2-3) 입원일수

- 입원횟수가 없는데 입원일수가 0이상인 경우 에러
- 문2) 외래진료횟수, 문3) 입원횟수, 문4) 입원일수가 모두 0인데, 병원입원이유를 응답한 경우 에러
- 문2) 외래진료횟수, 문3) 입원횟수, 문4) 입원일수, 문5) 병원입원이유가 모두 0인데,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뜨는 경우 에러
- 문6) 만성질환, 문7) 주요병명
 - 문7) 주요병명이 '①없음'인데, 만성질환이 뜨는 경우 확인
 - 문6) 만성질환이 '①비해당'인데, 주요병명이 '①없음' 또는 '③기타질병(급성질환 등)'이 아닌 경우 확인
-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 및 민간의료보험료
 - 의료B에 문4) 민간의료보험료에서 보험료가 존재하는데, 의료A 문8)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가 0인 경우 확인
- 가구일반사항의 의료급여 수급형태와 비교
 - 가구일반사항의 12-1) 의료급여수급형태와 의료B의 의료급여 형태가 같은지 확인
 - 가구일반사항의 12-1) 의료급여형태에서는 '비해당'이면서 의료B에는 의료급여 1종으로 한 경우 또는 모든 건강보장 혜택에 미가입인 경우 확인
 - 가구일반사항의 12-1) 의료급여수급형태에서는 1종 의료급여, 2종 의료급여이면서 의료B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로 응답한 경우 확인
 - 가구일반사항에서 국가유공자가 아닌데 의료B에서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일부인 경우제외) 확인
 - 4. 사회보험 문14) 건강보험 가입여부에서 가구원 모두가 의료급여, 국가유공자, 미가입인데 의료B에서는 건강보험가입로 되어있는 경우 확인

○ 주거 분야 내검사례

- 영구임대아파트와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점유형태가 '⑤ 기타'로 나오는 경우 확인
- 주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임에도 방이 2개 이상인 경우 확인
- 주거면적이 198제곱미터 초과인데 방이 지나치게 적은 경우 확인. 단, 일반아파트의 경우는 가능할 수 있음, 단독주택은 오류 근거 찾을 수 없음.
- 점유형태가 ④월세, ⑤기타인 경우는 가격, 비용마련, 부채, 연체횟수에 응답하지 말아야 함. 바로 주택환경으로 넘어가는지 확인 문10)으로 바로 이동
- 구입비용 마련 1순위와 2순위가 동일항목으로 입력된 경우 확인
- 점유형태가 보증부월세, 전세, 자가인데 부채 관련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확인
- 점유형태가 월세, 기타인데 부채 관련 문항에 응답한 경우 확인
- 생활비 문2주거비가 주거 문6이 3,4일때 존재하는지 확인
- 주거점유형태가 월세, 보증부월세임에도 생활비의 월세가 0인 경우 확인
- 주거점유형태가 자가, 전세인데도 생활비의 월세가 존재하는 경우 확인
- 문6) 집의 (등기상) 점유형태이 ①자가 또는 ②전세, ③보증부월세일 때 문7) 집의 가격이 0이나 결측치인 경우가 존재하는지 확인

○ 생활여건 분야 내검사례

- 주거점유형태가 전월세(②전세, ③보증부월세, ④월세)임에도, 생활여건의 집세 연체유무가 비해당.으로 입력되어 있는 경우 확인

- 주거점유형태가 ①자가 혹은 ⑤기타(무상포함)이면서 이사경험도 없는데, 생활여건의 연체유무에 응답한 경우 확인
- 가구주의 자녀 혹은 손자녀가 초,중,고,대학교 재학 중임에도 생활여건의 공교육비 문항에 비해당으로 응답한 경우
- 의료B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임에도 생활여건의 건강보험료 체납여부에 비해당으로 입력된 경우 확인
-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님에도, 생활여건의 건강보험료 체납여부에 응답한 경우 확인
- 의료B의 문2-1) 건강보험료 미납이유가 '②납부할 돈이 없어서'로 응답했는데, 생활여건의 문1-나) 공과금미납경험에 '①있다.'가 아닌 경우 확인
- 의료B의 문2-1) 건강보험료 미납이유가 '②납부할 돈이 없어서'이고, 미납기간은 '9개월 이상'으로 응답했는데, 생활여건의 문1-아)건강보험료 미납경험에 '1.있다'가 아닌 경우
-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 분야 내검사례
 - 문1) 기부나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는 응답자 중 1-1)기부금액, 1-2)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횟수 모두가 0인 경우 존재 여부 확인
 - 따로 사는 부모님이 계신데, 왕래와 전화 횟수 모두 결측인 경우 확인
 - 각각의 경제활동 상태별로 일한 개월수가 모두 0개월 이지만, 기타 근로소득이 0원 이상인 경우에 생활실태 문2) 유해환경 작업 경험이 비해당으로 되어 있는 경우 찾기
- 교육 및 개인사 분야 내검사례
 - 신규가구원이나 교육 및 개인사 미응답자 확인
 - 모든 문항에 응답하지 않고 결측인 문항 확인
 - 근로의 문1)에는 직업유형이 있는데(즉, 임금근로자) 개인사 문3) 15세 이후 직장 경험이 '없음'으로 나오는 경우 확인
 - 첫 직장 시작일과 종료일을 계산해서 0이하 있는지 확인(직장 경험 있는데 입력 안한 경우)

4. 주요 항목무응답 실태

4-1 주요 항목에 대하여 항목 무응답률

- 항목 무응답 없음.
- 복지패널조사는 현재 주요 항목(생활비, 소득)에 항목 무응답이 나오지 않아, 별도로 무응답률을 산출하지 않음.
 - 조사내용이 본인, 가족, 이웃 등 본인 주변과의 일상생활에 관계된 것을 질문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득, 생활비, 재산, 부채 등 민감한 문항도 응답자와 조사원의 공감대 형성(해당 가구의 조사원 변동을 최소화)으로 항목 무응답이 나오지 않음.

5. 항목무응답 대체

□ 주요 항목의 항목 무응답을 대체하는 경우 무응답 대체방법

- 복지패널조사는 현재 주요 항목(생활비, 소득)에 항목 무응답이 나오지 않아, 항목 무응답을 대체하지 않음.
- 6차 이전에는 주요 항목(소득변수)에 무응답이 있어서, 다중대체법을 사용하여 소득변수값을 대체함

6. 단위무응답 실태

□ 단위(가구)무응답 실태

- 단위(가구)무응답률 산출식

$$\text{단위무응답률(\%)} = \frac{\text{조사미완 가구수}}{\text{조사대상 가구수}} \times 100$$

- 조사차수별 패널 유지율(100 - 응답율 = 단위무응답률(이탈률))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원표본 가구 수(1차)	7,072	6,511	6,128	5,935	5,675	5,335	5,271	5,104	4,896	4,760	4,560 (13) ¹⁾	4,398 (11) ²⁾	4,266 (10) ³⁾	4,124 (15) ⁴⁾	3,865	3,816 (51) ⁵⁾	3,664 (5) ⁵⁾
원표본 유지율	100.00%	92.07%	86.65%	83.92%	80.25%	75.44%	74.53%	72.17%	69.23%	67.31%	64.48%	62.19%	60.32%	58.31%	54.65%	53.96%	51.81%
전체 분가 가구	-	69	186	272	359	400	461	515	542	583	629	683	731	768	789	838	888
전 체	7,072	6,580	6,314	6,207	6,034	5,735	5,732	5,619	5,438	5,343	5,189	5,081	4,997	4,892	4,654	4,654	4,552
원표본 가구 수(7차)	-	-	-	-	-	-	1,800	1,690	1,594	1,534	1,478	1,426 (1) ²⁾	1,392 (2) ³⁾	1,343 (3) ⁴⁾	1,281	1,239 (6) ⁵⁾	1,188(4) ⁵⁾
전체 분가 가구	-	-	-	-	-	-	-	3	16	37	56	74	85	96	94	103	113
전 체	-	-	-	-	-	-	1,800	1,693	1,610	1,571	1,534	1,500	1,477	1,439	1,375	1,342	1,301
원표본 가구 수(17차)																	2,012 ⁷⁾
조사 완료 총 표본 가구	7,072	6,580	6,314	6,207	6,034	5,735	5,732	7,312	7,048	6,914	6,723	6,581	6,474	6,331	6,029	5,996	7,865
응답률 (전년대비)	100.0	93.0	96.0	98.3	97.2	95.0	99.9	97.1	96.4	98.1	97.2	97.9	98.4	97.8	95.2	99.5	97.6
단위무응답률 (전년대비)	0.0	7.0	4.0	1.7	2.8	5.0	0.1	2.9	3.6	1.9	2.8	2.1	1.6	2.2	4.8	0.5	2.4

- 조사차수별 무응답 실태

- 11차년도(2016)조사 무응답 가구

구분	자연소실		사유소실				총 계
	사망	합가	조사거부	장기출타	추적불가	기타	
원가구	24	10	202	1	5	35	277
분가가구	11	1	43	2	2	8	67
합계	35	11	245	3	7	43	344

- 12차년도(2017)조사 무응답 가구

구분	자연소실		사유소실				총 계
	사망	합가	조사거부	장기출타	추적불가	기타	
원가구	28	0	96	1	4	44	173
분가가구	11	9	87	1	3	14	125
합계	39	9	183	2	7	58	298

- 13차년도(2018)조사 무응답 가구

구분	자연소실		사유소실			총 계
	사망	합가	조사거부	추적불가	기타	
원가구	25	2	85	3	27	142
분가가구	10	5	65	2	11	93
합계	35	7	150	5	38	235

- 14차년도(2019)조사 무응답 가구

구분	자연소실		사유소실			총 계
	사망	합가	조사거부	추적불가	기타	
원가구	30	0	82	1	44	157
분가가구	14	8	78	4	20	124
합계	44	8	160	5	64	281

- 15차년도(2020)조사 무응답 가구

구분	자연소실		사유소실			총 계
	사망	합가	조사거부	추적불가	기타	
원가구	47	0	164	4	44	259
분가가구	18	10	128	5	11	172
합계	65	10	292	9	55	431

- 16차년도(2021)조사 무응답 가구

구분	자연소실		사유소실			총 계
	사망	합가	조사거부	추적불가	기타	
원가구	18	0	66	3	13	100
분가가구	10	7	113	1	13	144
합계	28	7	179	4	26	244

- 17차년도(2022)조사 무응답 가구

구분	자연소실		사유소실				총 계
	사망	합가	조사거부	장기출타	추적불가	기타	
원가구	35	1	89	1	3	28	157
분가가구	19	17	91	4	3	13	147
합계	54	18	180	5	6	41	304

7. 가중치 조정

7-1 설계가중치 산출과정 및 방법

□ 가중치 조정 과정 개요

- 한국복지패널의 7차 웨이브의 경우 기존의 1~6차 웨이브에서 구축된 패널표본과 7차 웨이브에서 새롭게 추가된 신규 패널을 병합하여 새롭게 가중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가중치를 조정하였음.
- 먼저 1차 웨이브 이후 7차 웨이브까지 구축된 기존의 패널 표본은 6차 웨이브의 응답률을 로지스틱회귀모형으로 부터 응답확률을 추정하고, 6차 웨이브의 종단면 가중치에 기초하여 7차 웨이브에 조사된 개인 종단면 가중치를 조정하였음. 다음으로 7차 웨이브에 새롭게 추가된 신규 패널은 “2010년 차상위 실태조사”의 최종가중치를 기본가중치로 고려하여 1,800가구의 추출확률의 역수를 곱하여 신규패널의 설계가중치를 조정
- 이와 같이 각각 독립적으로 조정된 가중치에 대해 신규패널의 종단면가중치는 2013년 새롭게 진입한 신규 가구이므로 모두 “0”으로 부여하고, 횡단면 가중치의 경우 기존의 패널과 신규패널을 병합하여 새롭게 가중치를 부여
- 8차 조사의 개인 가중치는 7차 조사의 개인 종단면 가중치를 기준으로 종단면과 횡단면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단 7차 조사에 새로 추가된 신규 패널 1,800가구의 가구원은 개인 종단면 가중치가 0이므로 7차 조사의 개인 횡단면 가중치를 기준으로 원표본 패널 가중치와 병합하여 8차 조사의 종단면 가중치와 횡단면 가중치를 산정하였음.
- 9차 조사의 개인 가중치는 8차 조사의 개인 종단면 가중치를 기준으로 종단면과 횡단면 가중치를 부여하고, 10차 조사의 개인 가중치는 9차 조사의 개인 종단면 가중치를 기준으로 종단면과 횡단면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17차 조사의 개인 가중치 산출 역시 16차 조사의 개인 종단면 가중치를 기준으로 종단면과 횡단면 가중치를 부여하였음.

□ 1단계 가중치

- 전체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90% 모집단으로부터 각 지역별의 크기에 비례하여 표본조사구를 추출하였으므로 지역별 모집단 조사구와 표본조사구의 비율로서 PSU의 추출확률을 계산할 수 있음. 가중치는 지역별 조사구의 크기에 따라 확률비례로 부여된 가중치이고, 하나의 조사구에 추출된 가구는 동일한 추출확률을 가지게 됨으로 PSU당 가구가중치로 사용됨.
- 즉, 2007년 최저생계비계측조사에 적용한 1단계 가구가중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 조사구별 가구수 크기가 다르고, 각 조사구별 조사완료 가구수가 다르기 때문에 조사당 가중치가 다르게 적용
 - 가구추출확률(selection probability):

$$\begin{aligned} p_{ij} &= (a \times p_i)(b_i \times p_{ij}) \frac{n_{ij}}{N_{ij}} \\ &= \left(a \times \frac{N_i}{N} \right) \left(b_i \times \frac{N_{ij}}{N_i} \right) \\ &= (ab_i) \times \frac{N_{ij}}{N} \end{aligned} \quad (1)$$

- 여기서 a 는 표본 PSU 수, b_i 는 i 번째 표본PUS 내의 표본 가구수, n_{ij} 는 i 번째 PSU, j 번째 가구수이며, N_{ij} 는 i 번째 PSU, j 번째 표본 SSU내의 총가구수임. p_i 는 i 번째 PSU가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 p_{ij} 는 i 번째 PSU, j 번째 표본 SSU가 추출될 확률임.
- 2007년 최저생계비 가구가중치 :

$$W_{1ij} = \text{constant} \times (1/p_{ij}) \quad (2)$$

- 이와 함께,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가 이주나 조사거절로 인하여 무응답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구 내에서 무응답 가구와 가장 유사한 가구로 대체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가능한 현장 대체는 허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지역별로 각 조사구당 추출확률(PSU)를 계산하고, 2007최저생계비 계측조사로부터 조사구당 무응답가구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제외조사구에 대한 scale 조정을 마친 후의 지역별 가중치의 분포를 구하면 다음과 같음.

〈표〉 지역별 표본가구수와 1단계 가중치 분포

지 역	표본가구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서울	5,433	687.89	125.95	330.92	1273.42
부산	2,135	633.25	125.04	308.03	963.85
대구	1,379	738.58	209.90	311.83	1324.27
인천	1,425	685.41	197.91	178.76	1031.35
광주	765	624.03	67.82	506.41	726.73
대전	816	668.18	67.39	551.39	792.65
울산	716	538.49	218.63	237.10	991.72
경기	4,276	910.10	215.97	521.11	1680.42
강원	754	708.52	324.51	373.84	1216.04
충북	713	756.04	301.12	391.73	1164.16
충남	1,020	762.09	606.53	255.65	2403.57
전북	1,020	693.34	349.38	267.25	1566.89
전남	969	698.31	119.63	519.54	935.94
경북	1,505	646.85	448.63	172.77	1630.08
경남	1,530	699.42	435.66	215.50	1696.13
제주	255	856.53	241.11	600.34	1282.91
계	24,711				

□ 2단계 가중치

-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의 가중치인 W_{1ij} 와 더불어 고려할 사항은 복지패널조사를 위해 7000가구를 추출하는 과정에서의 추출확률과 조사가구에 대한 응답확률을 고려한 가중임. 이를 W_{ph} 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계산됨.
- 먼저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를 지역별(16개시도)로 구분하였으므로 첫째, 조사구별로 일정규모의 표본가구를 추출하였기 때문에 조사구별 추출확률의 역수인 조사구별 가중치(W_{1ij}^*)를 고려하고, 둘째, 저소득층 가구와 일반가구에 대한 소득층별 가중치(W_{sq})를 고려해야하며, 마지막으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90% 자료를 이용한 사후층화 가중치(W_{pst})를 고려함으로 최종적인 패널가구의 가중치를 계산할 수 있음. 이때, 조사구별 추출가중치는 1단계 가중치 W_{1ij} 를 재계산하여 얻을 수 있음.

- 가구패널가중치 :

$$WZ001 = W_{ij}^* \times W_{st} \times W_{pst} \quad (3)$$

- 여기서 지역별, 조사구별 사후층화과정으로부터 W_{pst} 를 부여하여 전체적인 가중치조정을 수행

- 이와 함께 복지패널의 가구원에 대한 정의는 “패널 가구에 속한 가구원에 대한 가구원 가중치는 9개월 이상 주거를 함께한 가구원 중 15세 이상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원” 으로서 1차 조사에서 부여된 가구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였음. 즉, 가구조사에서 응답한 가구의 15세 이상(학생제외)가구원을 모두 조사함으로서 각 가구원의 응답확률이 가구응답확률과 동일함으로 가구가중치를 해당 가구원에 동일하게 부여

- 가구원패널가중치 :

$$WF001_k = WZ001 \quad (4)$$

- 여기서 $WF001_k$ 는 k번째 조사대상가구의 응답 가구원의 가중치를 나타냄.

- 가구원 가중치에 대한 사후 층화 가중치 조정은 이미 가구 가중치 조정 과정에서 수행하였으므로 원래의 패널 가구가중치를 직접 적용하도록 하였음.

〈표〉 지역별 패널가구와 가중치의 기술통계값

지 역	표본가구수	평 균	표준편차	Q1	중위수	Q3
서 울	1,335	2,298.3	965.1	1,362.7	2,369.4	2,984.6
부 산	528	2,154.9	1,156.7	1,157.0	1,868.8	2,971.3
대 구	422	1,913.2	966.4	1,201.6	1,590.2	2,578.9
인 천	437	1,844.1	1,054.1	1,005.8	1,841.8	2,508.9
광 주	244	1,599.8	744.2	947.7	1,321.1	2,197.7
대 전	208	2,086.0	873.1	1,208.2	2,199.1	2,666.5
울 산	203	1,561.8	959.5	820.8	1,304.0	2,185.6
경 기	1,132	2,900.8	1,394.0	1,663.8	2,882.5	3,725.9
강 원	236	2,036.6	1,602.6	732.0	1,501.7	3,042.9
충 북	220	1,990.7	1,342.0	755.7	1,532.1	3,052.4
충 남	321	2,065.1	2,064.4	628.0	1,186.6	2,478.3
전 북	347	1,652.9	1,249.8	589.6	1,289.3	2,412.0
전 남	377	1,439.1	809.1	919.7	1,084.6	1,800.5
경 북	493	1,567.6	1,592.1	431.6	749.3	2,281.5
경 남	488	1,962.7	1,973.7	400.7	809.5	3,620.6
제 주	81	2,209.9	1,071.5	1,196.1	2,034.9	2,879.4

- 지역별 가중치에 대한 기술통계량 결과를 살펴보면, 광주, 대전, 전남지역의 가중치 분포가 타 지역에 비해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강원지역, 충북, 경북, 경남지역은 산포정도가 큰 것으로 파악됨.

7-2 무응답 가중치 조정과정 및 방법

□ 개인종단면 가중치 조정 과정

- 17차 조사의 종단면 기본 가중치는 16차 조사의 개인 종단면 가중치를 기본 가중치로 한다. 17차 조사의 무응답으로 인한 실제 표본 크기의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무응답 보정은 다음과 같이 하였음.
- 17차 조사에서 조사가 완료된 개인의 가중치는 17차 조사의 종단면 응답 여부 변수와 16차 조사 변수들의 관계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조정하였음. 이를 통해 패널 탈락으로 인한 무응답을 보정하여 응답 확률을 추정하였음. 로지스틱 모형의 설명 변수로는 응답자의 성별, 연령, 지역, 교육 수준, 경제활동 상태 변수를 사용하였고, 17차 조사의 종단면 응답 여부 변수는 17차와 16차 조사에 모두 응답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을 가짐.
- 다음으로 17차 조사의 개인 종단면 기본 가중치에 로지스틱 모형으로 추정된 응답 확률의 역수를 곱하여 17차 조사의 개인 종단면 가중치를 조정함. 17차 조사의 기본 가중치를 $w_{\text{기본17차}}$, 로지스틱 회귀 분석으로 예측된 예측 응답 확률을 $\hat{p}_{17\text{차}}$ 라고 하면 무응답 보정으로 얻어지는 가중치는 $w_{17\text{차}} = w_{\text{기본17차}} \times \hat{p}_{17\text{차}}^{-1}$ 로 표현됨.

□ 개인 횡단면 가중치 산출 과정

- 개인 횡단면 가중치는 17차 조사의 종단면 응답 여부 변수와 16차 조사 변수들의 관계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조정하였음. 이를 통해 패널 탈락으로 인한 무응답을 보정하여 응답 확률을 추정하였음.
- 다음으로 17차 조사의 개인 종단면 기본 가중치에 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 추정된 응답 확률의 역수를 곱하여 17차 조사의 개인 종단면 가중치를 조정함.

7-3 사후가중치 조정과정 및 방법

□ 개인종단면 가중치 산출 과정

- 개인별 변동 상황에 따라 17차 종단면 가중치를 조정한 뒤, 지역 및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2021년 인구 추계값을 이용하여 사후 조정을 하였음.
- 개인별 변동 상황의 예는 다음과 같음. 1차 조사 패널 가구원 중 군대 입대 및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조사 당시 응답하지 않았던 가구원은 가구의 평균 가중치를 적용받고, 결혼 등의 사유로 원패널 가구에 진입한 가구원은 0의 가중치를 부여받음. 또 17차 조사에서 원패널 가구에서 분가한 가구원의 경우 원래의 가구원 가중치를 부여받지만, 분가한 후 결혼 등의 사유로 신규로 진입한 신규 가구의 가구원은 0의 가중치를 부여받음. 16차 조사에서 탈락했던 가구원이 17차 조사에 재진입한 경우에는 지역별 평균 가중치를 부여하였음.
- 지나치게 큰 가중치 값들은 추정량의 분산을 크게 만들어 추정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러한 가중치의 과도한 변동을 줄이고자 17차 조사에서는 사후 조정 후 극단 가중치 조정을 하였음.
- 레이킹(raking)을 통한 사후 조정 후 지나치게 큰 가중치들(상위 1%)을 찾아서 절단(trimming)한

뒤 절단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을 극단 관측치가 속한 지역·성별·연령 내의 관측치에 동일하게 배분하였음.

〈표〉 17차 조사의 지역별 개인 종단면 가중치 분포

(단위: 명)

지역	표본 수	평균값	표준오차	중위값	제1사분위수	제3사분위수	상대 표준오차
전국	10,932	4,030.2	40.3	2,593.2	906.0	5,779.0	1.0
서울	1,511	5,519.2	110.7	4,572.9	2,049.6	7,824.4	0.8
부산	764	3,764.6	133.5	2,530.9	1,116.4	5,275.3	1.0
대구	650	3,137.6	133.5	1,832.2	734.6	4,510.6	1.1
인천	631	3,944.8	164.5	2,704.9	962.4	5,590.7	1.0
광주	500	2,446.1	115.3	1,608.9	635.3	3,425.7	1.1
대전	354	3,469.5	179.9	2,417.4	858.9	5,086.1	1.0
울산	338	2,768.0	170.5	1,706.5	701.5	3,718.5	1.1
경기	1,842	6,217.7	117.0	5,225.2	2,344.9	8,885.0	0.8
강원	430	3,041.9	174.4	1,653.5	606.6	4,126.9	1.2
충북	424	3,269.9	167.9	2,296.7	675.1	4,494.7	1.1
충남	671	3,160.0	149.7	1,398.5	611.4	4,478.1	1.2
전북	577	2,637.4	138.0	1,407.1	555.3	3,501.8	1.3
전남	630	2,424.4	94.7	1,640.3	838.5	3,173.0	1.0
경북	649	3,477.6	177.8	1,505.3	690.8	4,320.4	1.3
경남	756	3,700.2	161.2	1,666.0	463.9	5,489.0	1.2
제주	205	2,709.3	223.8	1,562.5	476.3	3,543.6	1.2

□ 개인 횡단면 가중치 산출 과정

- 개인별 변동 상황에 따라 17차 조사의 종단면 가중치를 조정한 뒤 17차 조사의 종단면 가중치 값이 0인 가중치에 대해 가구별 평균 가중치를 적용하고, 지역 및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2021년 인구 추계값을 이용하여 사후 조정을 하였음.
- 17차 조사의 횡단면 가중치에서는 레이킹(raking)을 통한 사후 조정 후 17차 조사의 종단면 가중치와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큰 가중치들(상위 1%)을 찾아서 절단한 뒤 절단값을 제외한 나머지의 값을 극단 관측치가 속한 지역·성별·연령 내의 관측치에 동일하게 배분하였음.

〈표〉 17차 조사의 지역별 개인 횡단면 가중치 분포

(단위: 명)

지역	표본 수	평균값	표준오차	중위값	제1사분위수	제3사분위수	상대 표준오차
전국	10,932	4,021.0	37.3	2,722.8	1,080.9	5,683.3	1.0
서울	1,511	5,484.7	102.6	4,560.5	2,277.6	7,548.7	0.7
부산	764	3,762.4	124.1	2,653.0	1,220.0	5,157.6	0.9
대구	650	3,137.6	125.7	1,899.3	886.8	4,395.1	1.0
인천	631	3,944.8	152.5	2,815.1	1,116.0	5,534.1	1.0
광주	500	2,445.7	107.4	1,617.5	719.2	3,358.3	1.0
대전	354	3,469.5	170.1	2,453.3	920.3	5,024.1	0.9
울산	338	2,768.0	160.0	1,840.5	777.4	3,718.5	1.1
경기	1,842	6,199.6	102.9	5,249.0	2,665.8	8,535.6	0.7
강원	430	3,041.8	164.9	1,773.5	660.3	4,094.4	1.1
충북	424	3,269.3	160.2	2,361.0	754.9	4,483.4	1.0
충남	671	3,159.9	140.8	1,546.9	685.6	4,488.8	1.2
전북	577	2,638.1	128.1	1,509.1	662.9	3,443.9	1.2
전남	630	2,424.2	90.0	1,682.3	894.1	3,149.1	0.9
경북	649	3,477.6	169.0	1,650.4	742.7	4,396.7	1.2
경남	756	3,683.4	148.2	2,048.2	561.9	5,357.2	1.1
제주	205	2,709.3	205.6	1,703.6	622.9	3,668.5	1.1

□ 가구 가중치 산출 과정

- 17차 조사의 가구 가중치는 먼저 가구의 패널 진입 차수에 따라 17차 조사 개인 종단면 가중치의 가구 내 평균값을 계산하여 산출하였음. 17차 조사에서 새롭게 진입한 신규 가구는 신규 가구 내에 원표본(또는 신규 표본) 가구원들의 가중치 평균을 적용하였고, 원표본(또는 신규 표본) 가구원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이들의 평균으로 가구 가중치를 산출하였음. 다음으로 이와 같이 계산된 가구 가중치를 2021년 추계 가구 수에 따라 지역별로 사후 조정하고, 극단값 조정으로 최종 가중치를 산출하였음.
- 극단값 조정은 레이킹(raking)을 통한 사후 조정 후 지나치게 큰 가중치들(상위 1%)을 찾아서 절단한 뒤 절단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을 극단 관측치가 속한 지역·가구원 수 내의 관측치에 동일하게 배분하였음.
- 지역별 가구 가중치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아래 <표> 참조).
- 17차 조사의 지역별 가구 가중치 평균값은 경기 지역이 가장 높고, 전남 지역이 가장 낮음. 이에 대한 지역별 표준오차는 전남 지역의 가중치 표준오차가 가장 작고, 제주 지역이 가장 크게 나타났음. 중위값으로 비교하면, 경기 지역의 가중치 중위값이 가장 높고, 전북 지역이 가장 낮음. 제1사분위 수를 비교해 보면 경기 지역의 가중치 제1사분위 값이 가장 높으며 경남 지역이 가장 낮음. 제3사분위 수는 광주 지역의 가중치 제3사분위 값이 가장 낮음. 지역별 상대 표준오차는 경기 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표〉 17차 조사의 지역별 가구 가중치 분포

(단위: 가구)

지역	표본 수	평균값	표준오차	중위값	제1사분위수	제3사분위수	상대 표준오차
전국	5,853	3,515.0	41.4	2,482.4	1,088.2	5,022.9	0.9
서울	775	4,983.1	118.1	4,456.8	2,373.4	6,806.2	0.7
부산	412	3,324.0	135.2	2,438.0	1,217.9	4,537.7	0.8
대구	357	2,709.8	133.3	1,829.5	836.0	3,760.2	0.9
인천	329	3,436.8	172.3	2,453.5	1,144.9	4,828.2	0.9
광주	265	2,243.5	128.4	1,609.5	833.9	2,869.7	0.9
대전	191	3,213.4	212.6	2,357.4	1,122.3	4,376.4	0.9
울산	169	2,581.8	182.9	1,829.9	879.7	3,325.6	0.9
경기	914	5,525.7	115.0	4,881.7	2,632.5	7,738.3	0.6
강원	236	2,740.4	186.6	1,530.4	753.0	3,742.7	1.0
충북	247	2,707.8	155.6	2,019.5	667.0	4,070.9	0.9
충남	367	2,805.3	154.6	1,571.5	715.0	4,046.5	1.1
전북	320	2,310.8	134.4	1,412.8	734.5	2,880.7	1.0
전남	340	2,188.6	88.7	1,633.5	1,010.4	2,983.6	0.7
경북	392	2,842.3	162.6	1,438.8	746.1	3,783.1	1.1
경남	434	3,090.9	161.2	1,504.1	562.9	4,948.7	1.1
제주	105	2,516.2	252.7	1,622.5	961.9	3,133.5	1.0

□ 2022년 추가 표본을 포함한 통합 횡단 가중치 조정 과정

○ 가구 통합 가중치 산출 과정

- 17차 조사의 가구 통합 가중치는 기존 패널(원표본 + 2012년 신규 표본)의 가구 가중치와 2022년 신규 표본의 가구 가중치를 결합한 새로운 통합 가중치를 산출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가중치 계산식을 통해 구함.

$$w_{hik}^{CBH} = \begin{cases} \lambda_h w_{ahik} & hik \in s_a \\ (1 - \lambda_h) w_{bhik} & hik \in s_b \end{cases}$$

- 여기서 w_{ahik} 는 기존 패널의 가구 가중치를, w_{bhik} 는 신규 표본의 가구 가중치를 나타내는데, λ_h ($0 < \lambda_h < 1$)는 가구 통합 가중치를 정의하게 되며, 이는 기존 패널과 2022년 신규 표본의 추정량을 선형 형태로 결합하게 됨.
- 최적의 혼합계수 λ_h 는 혼합 추정량의 분산을 최소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모비율 추정을 기준으로 σ_{ah}^2 와 σ_{bh}^2 이 기존 패널과 2022년 신규 표본에서의 비율 추정량의 분산이라면, 혼합계수 λ_h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음.

$$\lambda_h = \frac{\sigma_{bh}^2}{\sigma_{ah}^2 + \sigma_{bh}^2} \approx \frac{n_{bh}}{n_{ah} + n_{bh}}$$

- 최종적으로 가구 통합 가중치는 두 가중치를 선형 결합한 형태의 가중치 w_{hik}^{CBH} 에 대해 2021년 추계 가구 수에 따라 지역별, 가구원 수별 레이킹 비(raking ratio) 조정을 통해 구함.
- 기존 패널(원표본 + 2012년 신규 표본)과 2022년 신규 표본에 대한 가구 통합 가중치 조정 작업을 통한 결과는 <표>와 같음.

<표> 17차 조사의 지역별 가구 통합 가중치 분포

(단위: 가구)

시도	표본 가구 수	합계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Q1	Q3	최댓값	deff
전체	7,865	20,573,057	2,616	3,014	16	707	3,399	17,668	2.33
서울	903	3,861,863	4,277	4,120	293	1,582	5,008	17,668	1.93
부산	535	1,369,481	2,560	2,988	44	724	2,781	17,650	2.36
대구	474	967,379	2,041	2,495	78	499	2,336	17,650	2.49
인천	452	1,130,717	2,502	3,133	30	560	2,910	17,225	2.57
광주	322	594,516	1,846	2,410	71	454	2,143	17,650	2.70
대전	259	613,753	2,370	2,405	167	843	3,256	17,650	2.03
울산	247	436,324	1,767	1,672	125	587	2,199	10,498	1.90
경기	1119	5,050,524	4,513	3,704	163	2,051	5,485	17,650	1.67
강원	355	646,731	1,822	1,770	17	557	2,409	12,251	1.94
충북	359	668,831	1,863	1,962	63	536	2,321	11,662	2.11
충남	569	1,029,559	1,809	2,141	91	354	2,274	11,485	2.40
전북	462	739,458	1,601	2,088	58	359	1,805	13,097	2.70
전남	479	744,113	1,553	1,459	134	592	1,833	10,755	1.88
경북	544	1,114,170	2,048	2,181	110	505	2,588	12,667	2.13
경남	591	1,341,432	2,270	2,639	58	374	2,847	14,818	2.35
제주	195	264,205	1,355	1,392	16	564	1,718	9,915	2.05

○ 개인 통합 횡단 가중치 산출 과정

- 17차 조사의 개인 통합 횡단 가중치는 기존 패널(원표본 + 2012년 신규 표본)의 개인 횡단 가중치와 2022년 신규 표본의 개인 횡단 가중치를 결합한 새로운 개인 통합 횡단 가중치를 산출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가중치 계산식을 통해 구함.
- $w_{hik}^{CBP} = \begin{cases} \lambda_h w_{ahik} & hik \in s_a \\ (1 - \lambda_h)w_{bhik} & hik \in s_b \end{cases}$
- 여기서 w_{ahik} 는 기존 패널의 개인 횡단 가중치, w_{bhik} 는 2022년 신규 표본의 개인 횡단 가중치를 나타내는데, λ_h ($0 < \lambda_h < 1$)는 개인 통합 횡단 가중치를 정의하게 되며, 이는 기존 패널과 2022년 신규 표본의 추정량을 선형 형태로 결합하게 됨.
- 최종 개인 통합 횡단 가중치는 w_{hik}^{CBP} 의 값을 2021년 인구 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에 따라 레이킹 비(raking ratio) 조정을 통해 구함.
- <표>은 17차 조사의 기존 패널(원표본 + 2012년 신규 표본)과 2022년 신규 표본에 대한 개인 통합 횡단 가중치 조정 작업을 통한 결과임.

〈표 2-3-10〉 17차 조사의 지역별 개인 통합 횡단 가중치 분포

(단위: 개인)

시도	표본 가구 수	합계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Q1	Q3	최댓값	deff
전체	14,458	43,828,380	3,031	3,691	21	711	3,906	27,862	2.48
서울	1,741	8,276,506	4,754	5,028	142	1,472	5,752	27,602	2.12
부산	967	2,866,541	2,964	3,666	28	756	3,461	25,590	2.53
대구	843	2,014,751	2,390	3,185	51	488	2,716	21,988	2.78
인천	844	2,486,696	2,946	3,655	21	600	3,600	21,023	2.54
광주	592	1,217,872	2,057	3,236	32	383	2,234	23,839	3.47
대전	485	1,249,898	2,577	2,667	117	797	3,300	14,443	2.07
울산	478	927,207	1,940	2,075	101	521	2,500	13,464	2.14
경기	2,214	11,360,688	5,131	4,423	55	2,249	6,105	27,862	1.74
강원	651	1,317,102	2,023	2,203	24	570	2,807	14,077	2.19
충북	628	1,393,031	2,218	2,759	59	583	2,540	20,067	2.55
충남	1,033	2,114,032	2,047	2,506	79	354	2,616	16,076	2.50
전북	799	1,523,541	1,907	2,591	61	411	2,170	20,838	2.85
전남	867	1,519,726	1,753	2,082	78	549	1,929	16,723	2.41
경북	933	2,250,242	2,412	2,825	67	514	2,972	19,120	2.37
경남	1,010	2,753,578	2,726	3,304	51	414	3,547	18,800	2.47
제주	373	556,970	1,493	1,491	21	504	1,808	9,496	2.00

8. 통계추정 산식 및 내용

□ 총합 추정 산식

○ 전체 가구의 평균 산출

$$\hat{\bar{Y}} = \frac{\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 w_{hij} : 각 응답자에 부여된 가중치
- y_{hij} : 각 응답결과
- L : 층의 수

- n_h : 층 h 에서의 표본 조사구의 수
- m_{hi} : 층 h 내 i 번째 표본 조사구의 응답자 수
- $w_{...} = \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전체 응답자에 대한 가중치의 합계

9. 표본오차 추정 방법 및 결과(표본조사)

9-1 주요 항목에 대한 분산, 표준오차 등의 추정 방법

○ 추정량의 분산

$$var(\hat{Y}) = \sum_{h=1}^L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overline{e_{h..}})^2$$

- L : 층의 수
- n_h : 층 h 에서의 조사구 수, m_{hi} 는 층 h 내 i 번째 표본조사구의 응답자 수
- $f_h = n_h/N_h$
- $e_{hi.}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bar{y}) \right) / w_{...}$
- $\overline{e_{h..}} = \left(\sum_{i=1}^{n_h} e_{hi.} \right) / n_h$

○ 표준오차, 상대표준오차, 오차한계

- $s.e(\bar{y}) = \sqrt{var(\bar{y})}$: 모평균 및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준오차(standard error)
- $rse(\bar{y}) = \frac{s.e(\bar{y})}{\bar{y}} \times 100(\%)$: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
- 오차의 한계 $= 1.96 \times \sqrt{var(\bar{y})}$: 95% 신뢰수준 오차의 한계

9-2 주요 항목의 오차 특성과 이용 시 고려사항

□ 주요 항목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및 이용시 유의사항

- 통상적으로 단순임의 추출에 의한 표본은 표본단위들이 자체가중치를 부여 받기 때문에 별도의 가중치조정과정이 필요 없음. 또한 층화집락 추출과 같은 복합표본추출 설계 하에서 각 층별 규모에 따라 비례배분을 적용하면, 추정과정에서 자체가중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가중치 조정이 필요 없게 됨.
- 그러나 KOWEPS 와 같은 복합 표본추출설계를 적용하여 조사가 수행되면 각 층별, 집락별 응답률의 차이와 표본의 차이로 인한 과소추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추정과정에서 가중치 조정이 필요함. 하지만 이와 같이 가중치를 고려하여 추정치를 산정할 경우 추정량의 분산이 확대되는 효과 때문에 추정량의 신뢰구간이 길어져 추정의 정도가 떨어지게 됨.
- 따라서 추정과정에 적용되는 가중치의 효과를 분석하여 실제로 추정량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인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L = n \times \frac{\sum_h n_h w_h^2}{(\sum_h n_h w_h)^2} \quad (1)$$

- 여기서 $n = \sum_h n_h$ 는 총 표본수, w_h 는 최종가중치, n_h 는 층별 표본수를 의미
- 식(1)은 다음과 같이 가중치의 변동계수에 관한 식으로 변환할 수 있음.

$$L = n \times \frac{\sum_j w_j^2}{(\sum_j w_j)^2} = 1 + CV^2(w_j) \quad (2)$$

- 결과적으로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추정치의 분산의 증가분을 식(2)를 이용하여 계산하면,
 $L = 1 + (0.67\%)^2 = 1.46$ 로서 약 45%의 분산이 증가가 예상됨.

V.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1. 공표통계 해석방법

1-1 공표되는 주요 분류 수준 및 통계공표의 적정성

○ 주요 분류 수준

- 기본 분류: 모든 통계치는 소득집단별 균등화된 소득²⁾의 중위값 60%를 기준으로 저소득, 일반, 전체 가구로 응답자(가구)를 구분하여 제시
- 분야별 분류: 상기 가구분류를 기본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각 분야별 세분류를 적용
 - ※ 분야별 세분류: 인구학적특성(성별, 연령, 학력, 장애, 만성질환, 혼인상태, 종교, 동거여부 등), 근로능력정도, 경제활동참여상태, 업종·직종별, 연금가입형태(비해당, 수급, 가입, 수급하면서 가입, 미가입), 제도별 수급여부 구분(수급, 비수급) 등

○ 통계공표의 적정성

- 기본 빈도표를 제외한 기술통계(중위값, 평균)에서는 표준오차를 제시함.
- 일부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표에는 응답대상(분석대상)에 대한 설명을 주석으로 표시함.
- 모든 통계표에 응답관련 사항을 주석으로 표시함.

※ 주석예시)

주: 학력에서 항목의 이하는 재학, 휴학, 중퇴, 수료, 졸업을 다 포함한 값임.

주: 해당소득이 없는 가구까지도 포함해서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단 무응답은 제거함.

주: 주택의 구입비용 및 보증금의 전액을 한 가지 비용으로만 지불한 경우는 2순위는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음.

주: 신규가구원만 응답하였음. 저소득가구원의 응답 사례수가 적으니 해석에 주의를 요함.

주: 부채를 가진 사람은 주택 구입비용 및 보증금 마련을 1순위나 2순위에서 부모 등에게 빌린 경우나 금융기관, 사채로 빌린 1,815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함.

1-2 공표되는 주요통계표 현황

○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경제활동상태(일반적 특성)

- 가구형태
- 가구규모
- 소득집단별 평균 가구원 수
- 가구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생계) 수급 가구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생계) 수급 형태
-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의료) 수급 가구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의료) 수급 형태

2) 균등화된 소득 = (경상 소득 - 공공부조소득) / $\sqrt{\text{가구원 수}}$

-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주거) 수급 가구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교육) 수급 가구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교육) 평균 수급자 수
- 가구원의 최종 학력
- 가구원의 고등학교 유형
- 가구원의 고등학교 소재지
- 가구원의 대학 전공계열
- 가구원의 대학교 소재지
- 가구주의 최종 학력
- 가구주의 고등학교 유형
- 가구주의 고등학교 소재지
- 가구주의 대학 전공계열
- 가구주의 대학교 소재지

○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경제활동상태(경제활동상태)

- 가구원의 근로 능력 정도 및 근로 무능력 사유
- 가구원의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
- 가구원의 비경제활동 사유
- 취업 가구원의 업종 및 직종
- 취업 가구원의 사업장 규모
- 가구원의 1년간 근로 개월 수,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 및 주당 근로시간
- 노동 환경 유해 여부
- 가구주의 근로 능력 정도 및 근로 무능력 사유
- 가구주의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 가구주의 비경제활동 사유
- 취업 가구주의 업종 및 직종
- 취업 가구주의 사업장 규모
- 가구주의 1년간 근로 개월 수,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 및 주당 근로시간
- 노동 환경 유해 여부
- 임금 근로자 가구원의 고용 관계, 근로시간 및 근로계약의 형태
- 임금 근로자 가구원의 근로 지속 불가능 사유
- 임금 근로자 가구원의 노동조합 가입 실태
- 취업 가구원의 사직 또는 폐업 여부 및 사유
- 가구원의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여부 및 구직기간
- 가구원의 구직 상 어려움
- 가구원의 취업(사업) 시 한 달간의 희망 소득
- 비경제활동 가구원의 지난 1년간 구직활동 및 근로 가능 여부
- 가구원이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 가구원이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

- 가구원이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에 해당하는 직종
- 임금 근로자 가구의 고용 관계, 근로시간 및 근로계약의 형태
- 임금 근로자 가구의 근로 지속 불가능 사유
- 임금 근로자 가구의 노동조합 가입 실태
- 취업 가구의 사직 또는 폐업 여부 및 사유
- 가구의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여부 및 구직기간
- 가구의 구직 상 어려움
- 가구의 취업(사업) 시 한 달간의 희망 소득
- 비경제활동 가구의 지난 1년간 구직활동 및 근로 가능 여부
- 가구가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 가구가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
- 가구가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에 해당하는 직종

○ 가구경제(소득)

- 가구의 연간 경상소득 평균
- 가구의 연간 평균 소득
-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유형별 평균
- 가구의 연간 경상소득 분포
- 가구의 연간 평균 소득 보유 여부
- 가구의 연간 평균 소득 분포
-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유형별 보유 여부
-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유형별 세부 항목 보유 여부
-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유형별 세부 항목 평균
- 가구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유형별 세부 항목 분포

○ 가구경제(지출)

- 월간 총 가계지출
- 지출항목별 구성비중
- 월간 총 가계지출 규모별 분포
- 지출항목별 생활비 평균

○ 가구경제(재산 및 부채)

- 총재산가액 평균
- 순재산가액 평균
- 소유 부동산 평균
- 금융재산 평균
- 총부채 평균
- 총 이자액과 기타 이자액
- 부채의 용도
- 소유부동산 유형별 평균
- 점유부동산 평균

- 점유부동산 유형별 평균
- 금융재산 유형별 평균
- 농기계 평균
- 농기계 유형별 평균
- 농축산물 평균
- 농축산물 유형별 평균
- 자동차 가액 평균
- 기타 동산·부동산 재산 평균
- 자동차를 제외한 기타 동산·부동산 유형별 평균
- 부채유형별 평균

○ 주거

- 주택 유형
- 주거 점유 형태
- 임차 가구의 임대 유형
- 주택 면적
- 주택의 견고성 및 주요 구조부 재질의 양호성 여부
- 주택의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 유무
- 주택의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불만 여부
- 주택의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성 여부
- 주택의 구조 및 설비의 안전성 여부
-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의 평균 가격
-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전세 보증금 평균
- 주택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 평균
-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월세액 평균
- 2021년 1년 동안 이사 경험 여부
- 주거 위치
- 방의 수
- 상·하수도 사용 형태
- 부엌 사용 형태
- 화장실 사용 형태
- 목욕시설 사용 형태
- 난방시설 사용 형태
-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의 가격 분포
-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전세 보증금 분포
- 주택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 분포
-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월세액 분포
-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의 평균 가격(지역별)
-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전세 보증금 평균 가격(지역별)

- 주택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 평균(지역별)
-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월세액 평균(지역별)
- 주택 구입 비용 및 보증금 마련 방법
- 주택 구입 비용 및 보증금 마련 방법 1순위
- 주택 구입 비용 및 보증금 마련 방법 2순위
- 총 원금 상환액 평균
- 상환 후 남은 융자액 또는 부채 평균
- 주거 관련 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 평균
- 대출상환액 연체 횟수
- (돈이 없어서) 집세 연체 혹은 집세 미납부로 인한 이사 경험 여부
- 영구임대아파트 이용 경험
- 공공(국민)임대아파트 이용 경험
- 전세자금(융자) 지원의 이용 경험
- 저소득층 월세 지원의 이용 경험
-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의 이용 경험
- 전세 임대 또는 매입 임대 이용 경험
- 기타 주거복지 관련 사업의 이용 경험

○ 건강

- 전체 가구원의 건강상태
- 가구주의 건강상태
- 전체 가구원의 만성질환
- 가구주의 만성질환
- 건강검진 횟수
- 외래진료 횟수
- 입원 횟수
- 입원 일수
- 민간의료보험 가입률(가구 기준)
- 민간의료보험 가입 건수(가구 기준)
- 병원에 입원한 이유
-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형태
- 민간의료보험 월평균 보험료(가구 기준)

○ 가족

- 성역할에 대한 인식(3년주기 문항, 2024년 19차 조사 예정)
- 따로 사는 부모의 존재 여부
- 따로 사는 부모와의 왕래 정도
- 따로 사는 부모와의 전화 연락 정도
- 가족 갈등 원인(1순위, 2순위)
- 가족 갈등 대처 방법

- 현재 흡연 여부
- 하루 이상 금연 시도 여부
- 하루 동안 실내에서 담배 연기를 맡는 시간
- 음주 횟수
- 과음 횟수
- 음주를 중간에 그만둘 수 없었던 경험
- 주변 사람들이 음주를 걱정하거나 술을 줄이도록 권한 경험
- 출산 경험
- 우울에 대한 인식
-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
- 남성이 배우자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
- 여성이 배우자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
- 지금까지 자살을 한 번이라도 생각한 적이 있는지 여부
- 지난 한 해 동안의 자살 생각(기존가구원)
- 행복지수(컨트롤 사다리-주관적 행복감)
- 생애 동안 피운 담배의 총량
- 흡연 경험 시기
- 총 흡연 기간
- 하루 평균 흡연량
- 향후 금연 계획
- 담배 연기에 노출된 시간
- 음주량
- 해야 할 일을 술 때문에 하지 못한 경험
- 과음한 다음 날 해장술을 마셔야 했던 경험
- 음주 후 좌절감을 느끼거나 후회한 경험
- 음주 후 필름이 끊겼던 경험
- 음주로 인해 자신이 다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험
- 남성이 배우자로부터 모욕적, 악의적인 이야기를 들은 경험
- 남성이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받은 경험
- 여성이 배우자로부터 모욕적, 악의적인 이야기를 들은 경험
- 여성이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받은 경험
- 가족생활 만족도
-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 자녀들의 형제자매와의 관계 만족도
- 생활실태 및 자원 활동
 - 건강에 대한 만족도
 -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

-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
-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도
- 직업에 대한 만족도
-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만족도
-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
-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
- 두 달 이상 집세가 밀리거나, 낼 수 없어 집을 옮긴 경험
-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험
- 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전화·수도가 끊긴 경험
- 자녀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못 준 경험
- 돈이 없어 겨울에 난방을 못한 경험
- 돈이 없어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못 간 경험
-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있었던 경험
-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보험 급여 자격을 정지당한 경험
-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여부
- 연간 기부 액수
- 연간 자원봉사활동 횟수
- 인터넷 사용 여부
-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던 경험
-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가 없었던 경험
-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식사량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경험
-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식사량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경험(빈도)
-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양보다 적게 먹은 경험
-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배가 고픈데도 먹지 못한 경험

○ 사회보장

-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 실태
- 공적연금 제도별 가입 실태
- 공적연금 수급 실태
- 공적연금 종류별 수급자 현황
- 건강보험 가입 실태(가구 단위)
- 건강보험 가입 실태(개인 단위)
- 고용보험 가입 실태
- 고용보험 급여 수급 경험
- 산재보험 가입 실태
- 산재보험 급여 수급 경험
- 퇴직(연)금제(종업원 퇴직보험제) 적용 실태
- 퇴직(연)금 가입 실태
- 퇴직금(퇴직보험금) 수급 여부

- 개인연금(종신보험 포함) 가입 실태
- 개인연금 급여 수급 경험
- 국민연금 종별 가입 실태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여부
-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유형
-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
-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 국민연금 보험료 실제 미납 사유
-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기간
- 공적연금 미가입 사유
- 국민연금 급여 종류별 수급자 현황
- 국민연금 연간 연금 수급 개월 수
- 국민연금 연간 평균 연금-일시금 수급액
- 특수직역연금 급여 종류별 수급 현황
- 특수직역연금 연간 연금 수급 개월 수
- 특수직역연금 연간 연금-일시금 수급액
- 보훈연금 연간 연금 수급 개월 수
- 보훈연금 연간 수급액
- 건강보험료 미납 경험 여부
- 건강보험료 미납 사유
- 건강보험료 미납 기간
-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태도
- 의료급여 서비스 이용상의 문제점
- 고용보험 급여 종류별 수급 현황
- 고용보험 연간 연금 수급 개월 수
- 고용보험 연간 수급액
- 산재보험 급여 종류별 수급 현황
- 산재보험 연간 연금 수급 개월 수
- 산재보험 연간 연금-일시금 수급액
- 퇴직금(퇴직보험금) 연간 연금-일시금 수급액
- 개인연금 연간 연금 수급 개월 수
- 개인연금 급여 연간 수급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가구 및 수급 형태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 가구 및 수급 형태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 가구 및 수급 형태
-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수급 형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여부 및 사유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후 선정 여부 및 신청 탈락 사유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탈락 후 생계 문제 해결 방법
- 근로(자녀)장려세제에 대한 인지 여부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경험 및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여부
- 근로(자녀)장려금 사용 용도
-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개월 수
- 의료급여(국가유공자 무료진료 포함) 수급 여부
- 의료급여 수급 시 문제점
-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사유
-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의 적절성 평가
- 기초생활보장 탈수급 예상 소요 기간
- 탈수급의 주된 사유
- 탈수급하게 될 경우 가장 필요한 지원 항목
- 근로(자녀)장려금 급여(수준)가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도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이 근로 의욕 변화에 미친 영향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요건 충족에 대한 인식
- 가구의 복지 서비스 지원 경험 여부
- 바우처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 장기요양보험급여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 노인 가구의 복지 서비스 지원 경험 여부
- 장애인 가구의 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 아동 가구의 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 추가된 아동의 출생 시 체중 정도
- 추가된 아동의 선천성 기형 또는 선천성 질환
- 사교육·보육기관 이용 여부
- 사교육·보육 이용 기관 수
- 사교육·보육기관의 종류
- 사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한 가구의 아동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사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한 가구의 아동 1인당 월평균 보육비
-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 비율
- 바우처 서비스 이용 경험
- 장기요양보험급여 서비스 이용 금액
- 장기요양보험급여 유형별 이용 경험 비율
- 노인 가구의 기타 노인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 비율
- 장애인 가구의 기타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비율
- 아동 가구의 기타 아동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 비율
- 새로 추가된 아동이 있는지 여부
- 사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한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
- 사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한 가구의 월평균 보육비

○ 복지인식 부가조사

- 응답자 특성
- 사회복지를 늘리면 근로 의욕이 떨어진다는 의견에 대한 인식
- 성장과 분배에 대한 인식
- 경제를 위해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 사회복지를 위해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 기초보장 급여를 받는 빈곤층은 게으르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 노동 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최소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 부모 부양의 책임은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 국가 건강보험 축소, 민간의료보험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 대학 교육까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 유치원, 보육시설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 복지의 대상에 대한 의견
- 현재의 사회 계층 구조
-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 계층 구조
- 우리나라의 소득이나 재산의 평등 정도
-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 소득 격차 축소는 정부의 책임이라는 의견에 대한 동의
- 정부가 실업자에게 적정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 빈곤의 원인이 개인적인 절약과 적절한 가계(돈) 관리의 부족 때문이라는 인식
- 빈곤의 원인이 개인적인 동기와 스스로의 노력 부족 때문이라는 인식
- 빈곤의 원인이 개인적인 능력(타고난 재능)의 부족 때문이라는 인식
- 빈곤의 원인이 개인적인 책임감 및 자기규율의 부족(음주, 도박 등) 때문이라는 인식
- 빈곤의 원인이 개인적인 질환(질병)과 신체적 장애 때문이라는 인식
- 빈곤의 원인이 개인적인 학력 수준의 미흡 때문이라는 인식
- 빈곤의 원인이 기업과 산업에서의 낮은 임금 때문이라는 인식
- 빈곤의 원인이 충분한 교육 기회 제공의 부족 때문이라는 인식
- 빈곤의 원인이 좋은 일자리 공급의 미흡 때문이라는 인식
- 빈곤의 원인이 빈곤층 및 일부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 때문이라는 인식
- 빈곤의 원인이 개인적인 불행과 불운(불우한 가족배경 등) 때문이라는 인식
- 환경 영역의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
- 건강보험 및 보건 영역의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
- 국민연금(기초연금) 영역의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
- 교육 영역의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
- 주거 지원 영역의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

- 국방 영역의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
 - 치안 및 사회 질서 유지 영역의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
 - 빈곤층 생활 지원 영역의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
 - 노인 생활 지원 영역의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
 - 장애인 생활 지원 영역의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
 - 아이를 키우는 가족 지원 영역의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
 - 청년 사회활동 지원 영역의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
 - 외국인 주민의 권리보장 지원 영역의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
 -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실업급여) 영역의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
 - 문화와 예술 영역의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
 - 정부 행정 업무 영역의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
 - 양성평등정책 지원 영역의 정부 지출에 대한 평가
 - 아픈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노인들이 적절한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한 서비스 제공
 - 청년들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위한 지원
 - 질 높고 충분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빈곤 예방 및 감소
 - 실업에 대한 대응
 -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것
 - 모두가 위생적이고 적절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교육
 - 외국인 주민의 노동권 및 시민권을 보장하도록 지원하는 것
 - 고소득층이 현재 내는 세금의 수준
 - 중간층이 현재 내는 세금의 수준
 - 저소득층이 현재 내는 세금의 수준
 -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한 의견
 - 나보다 돈을 많이 벌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이 많은지에 대한 의견
 - 세금을 주로 써야 할 사회 문제 1순위
 - 세금을 주로 써야 할 사회 문제 2순위
 -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
 -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만족도
 - 자신의 정치 성향
- 아동 부가조사(3년 주기 조사, 16차 조사 기준)
- 현재 상황 및 성별
 - 휴학 혹은 중퇴 시기
 - 휴학, 중퇴, 미진학한 주된 이유

- 휴학, 중퇴, 미진학 후 주된 활동
- 학업성적
- 학업 스트레스
- 학교생활 및 학교 유대감
- 정서
- 자살 생각
- 주관적 행복감
- 행복 지수(칸트릴 사다리-주관적 행복감)
- 음주 및 흡연
- 부모님 역할을 하는 어른의 존재 여부
- 부모의 교육 참여 및 지도감독
- 부모의 학대와 방임
- 친구들과의 접촉
- 방과 후 보호자
- 방과 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
- 의논 상대
- TV 시청 및 인터넷 사용시간
- 인터넷 과의존 수준
- 참여활동 및 서비스 이용 경험
-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 경험한 아르바이트 개수
- 아르바이트 종류
- 아르바이트 기간 및 시간
- 희망 직업
- 1순위 직업 획득 가능성
- 진로 성숙도
- 키
- 몸무게
- 건강 상태
- 전학 경험
- 비행 행동
- 성추행 피해 경험
- 학교 내 피해 경험
- 친구들과의 접촉빈도
- 친구들의 아동에 대한 태도
- 친구들의 학습태도
- 친구들의 일탈행동
- 친한 친구 중 학교를 중단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

- 친한 친구 중 경찰서에 잡혀간 경험이 있는 친구들
- 평일 방과 후 하는 일
- 2019년(코로나19 이전) 평일 방과 후 하는 일
- 주말에 주로 하는 일
- 2019년(코로나19 이전) 주말에 주로 하는 일
- 굶주림 경험 여부
- 1순위 희망 직업의 계기
- 장애인 부가조사(3년 주기 조사, 15차 조사 기준)
 - 응답자 특성: 성별, 연령대, 장애종류, 장애등급, 교육수준
 - 전반적으로 느끼는 장애로 인한 차별
 -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 각종 상황별(8) 차별 경험 있음 비율
 - 각종 상황별(8)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중복응답 가능)
 - 외출정도
 - 외출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 일상생활에서 주로 도와주는 사람(1순위/2순위/3순위)
 - 일상생활에서 도움의 충분성
 -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여부
 -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의향 여부
 - 경제적 또는 일상생활 상의 어려움 시 주변의 도움 여부
 - 경제적 또는 일상생활 상의 어려움 시 주변의 물질적 지원 정도
 - 경제적 또는 일상생활 상의 어려움 시 주변의 보살핌 정도
 - 장애발생 원인
 - 장애발생 시기
 - 장애발생 당시 가구 소득 수준
 - 장애의 현재 상태
 - 현재 이용 중인 의료서비스
 - 장애치료의 충분 여부
 - 장애 치료의 불충분 이유
 - 결혼 전 및 생활 중 차별 경험 있음 비율
 - 결혼 전 및 생활 중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중복응답 가능)
 - 직장 생활 차별 경험 있음 비율
 - 직장 생활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중복응답 가능)
 - 일상생활에서 남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
 - 지각된 사회적지지
 - (성인) 각종 서비스 이용 여부
 - (성인) 취업일자리
 - (성인) 취업 희망 일자리

- (성인) 취업불원 이유
- (성인)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이용여부
- (성인)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이용희망 여부
- (어르신) 각종 서비스 이용 여부
- (어르신) 취업여부
- (어르신) 취업일자리
- (어르신) 구직활동 여부
- (어르신) 취업 희망 일자리의 보수 수준
- (어르신) 취업을 위해 바라는 정부지원
- (어르신) 용돈
- (어르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이용여부
- (어르신)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이용희망 여부
- (어르신)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희망여부

1-3 주요 통계표, 그래프, 해석방법 및 이용시 유의사항

○ 주요 통계표 및 그래프

- 모든 조사항목에 대해 빈도분석 통계표 혹은 기술통계표를 기본적으로 제시
- 가구의 균등화 소득 중위 60%를 기준으로 저소득층과 일반, 전체가구를 구분하고 각 집단별 수치를 제시하여 저소득층과 타 집단과의 비교가 용이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있음.

○ 주요 통계표 예시(2022년 보고서 참조)

- 가구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39.33	58.31	35.66
	가구주의 배우자	24.58	18.10	25.84
	가구주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15	1.12	1.15
	가구주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33.12	19.36	35.78
	기타 친·인척(형제자매 포함)	1.82	3.11	1.57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0.00	0.01	-
성별	남성	49.97	44.30	51.07
	여성	50.03	55.70	48.93
연령	20세 미만	17.51	8.15	19.32
	20~30세 미만	13.61	7.48	14.80
	30~40세 미만	13.87	5.55	15.48
	40~50세 미만	15.94	8.87	17.31
	50~60세 미만	16.47	11.75	17.38
	60~70세 미만	12.37	20.28	10.83
	70~80세 미만	7.09	24.68	3.68
	80세 이상	3.14	13.25	1.19
학력	초등학교 졸 이하	20.53	39.96	16.77
	중학교 졸 이하	7.97	14.57	6.70
	고등학교 졸 이하	27.28	25.71	27.58
	전문대 졸 이하	12.95	6.03	14.29
	대학교 졸 이하	27.75	12.74	30.66
	대학원 졸 이상	3.51	0.98	4.00
장애	비장애인	93.79	82.02	96.07
	장애인	6.21	17.98	3.93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2.82	8.66	1.68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17	9.12	2.02
	비등록 장애인	0.22	0.20	0.23
만성질환	비해당	57.67	29.22	63.18
	있음	42.33	70.77	36.82
	3개월 미만 투병, 투약	4.81	2.80	5.20
	3~6개월 미만 투병, 투약	1.95	1.51	2.03
	6개월 이상 투병, 투약	35.57	66.46	29.59
혼인 상태	비해당	14.29	6.40	15.82
	유배우	50.13	37.14	52.65
	사별	6.01	22.21	2.87
	이혼	4.52	11.21	3.22
	별거	0.39	0.75	0.31
	미혼	24.57	22.05	25.06
	기타(사망 등)	0.09	0.24	0.06
종교	있음	41.86	45.25	41.20
	없음	58.14	54.75	58.80
동거 여부	동거(같이 살고 있다)	96.30	99.03	95.77
	비동거	3.69	0.97	4.22
	다른 지방에 근무(국내)	1.29	0.08	1.52
	해외 근무 중	0.05	-	0.06
	학업(해외 유학 포함)	1.79	0.30	2.08
	입원, 요양	0.06	0.12	0.05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0.03	0.12	0.01
	가출	0.00	-	0.00
	분가	0.17	0.03	0.20
	사망	0.10	0.25	0.07
	기타(군 복무 등)	0.20	0.07	0.23
계		100.00	100.00	100.00

주: 학력에서 항목의 이하는 재학, 휴학, 중퇴, 수료, 졸업을 다 포함한 값임.

-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성별	남성	76.47	49.55	85.00
	여성	23.53	50.45	15.00
연령	20세 미만	0.16	0.06	0.19
	20~30세 미만	5.70	2.53	6.70
	30~40세 미만	12.15	2.85	15.09
	40~50세 미만	20.20	7.57	24.20
	50~60세 미만	23.88	13.19	27.26
	60~70세 미만	20.30	24.74	18.89
	70~80세 미만	12.14	30.71	6.25
	80세 이상	5.48	18.35	1.40
학력	초등학교 졸 이하	15.30	44.02	6.21
	중학교 졸 이하	8.77	15.56	6.62
	고등학교 졸 이하	29.88	24.24	31.67
	전문대 졸 이하	12.08	5.00	14.32
	대학교 졸 이하	28.61	10.44	34.36
	대학원 졸 이상	5.36	0.75	6.82
장애	비장애인	90.99	80.46	94.32
	장애인	9.02	19.54	5.68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3	8.00	1.45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47	11.22	3.64
	비등록 장애인	0.52	0.32	0.59
만성질환	비해당	41.34	18.50	48.58
	있음	58.65	81.50	51.42
	3개월 미만 투병, 투약	3.85	1.93	4.46
	3~6개월 미만 투병, 투약	1.97	1.56	2.10
	6개월 이상 투병, 투약	52.83	78.01	44.86
혼인 상태	비해당	-	-	-
	유배우	63.40	32.60	73.15
	사별	12.90	36.41	5.46
	이혼	9.70	16.84	7.44
	별거	0.91	1.29	0.79
	미혼	13.02	12.78	13.10
	기타	0.07	0.08	0.07
종교	있음	42.60	47.15	41.15
	없음	57.40	52.85	58.85
동거 여부	동거(같이 살고 있다)	97.24	99.62	96.49
	비동거	2.75	0.38	3.50
	다른 지방에 근무(국내)	2.41	0.14	3.12
	해외 근무 중	0.12	-	0.15
	학업	0.01	-	0.01
	입원, 요양	0.02	0.07	0.01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0.04	0.08	0.03
	분가	0.08	-	0.11
	사망	0.07	0.08	0.07
	기타(군복무 등)	0.00	0.01	-
계		100.00	100.00	100.00

주: 학력에서 항목의 이하는 재학, 휴학, 중퇴, 수료, 졸업을 다 포함한 값임.

- 가구원의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상용직 임금근로자	27.78	2.05	33.25
임시직 임금근로자	16.19	8.14	17.90
일용직 임금근로자	4.20	4.62	4.11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	1.90	7.69	0.67
고용주	2.13	0.65	2.45
자영업자	7.73	7.88	7.70
무급가족 종사자	2.22	2.63	2.13
실업자	2.02	3.21	1.76
비경제활동인구	35.84	63.13	30.04
계	100.00	100.00	100.00

- 가구의 연간 평균 소득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상시 근로소득	전체	2,715	45.94
	저소득	62	6.20
	일반	3,695	65.89
임시·일용 근로소득	전체	1,135	26.05
	저소득	333	10.29
	일반	1,432	39.43
사업소득	전체	681	27.82
	저소득	13	8.41
	일반	927	42.68
농림축산어업소득	전체	110	13.95
	저소득	5	9.23
	일반	148	21.21
부업소득	전체	6	0.70
	저소득	4	0.73
	일반	7	1.03

주: 해당소득이 없는 가구까지도 포함해서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단 무응답은 제거함.

- 주거 점유 형태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자가	57.49	46.12	61.68
전세	13.47	8.85	15.17
보증부 월세	19.23	28.26	15.90
월세	1.42	2.39	1.07
비가구원 명의 주택	6.72	12.17	4.70
기타	1.67	2.20	1.48
계	100.00	100.00	100.00

- 주택 구입비용 및 보증금 마련 방법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자기 돈	83.14	27.89
무상으로 도움을 받음	2.77	4.72
부모·형제·친척·친구 등으로부터 빌림	1.55	4.76
금융기관(회사에서 융자받은 경우 포함)으로부터 빌림	12.52	62.54
사채	0.02	0.09
계	100.00	100.00

주: 주택의 구입 비용 및 보증금의 전액을 한 가지 비용으로만 지불한 경우 2순위는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음.

- 총 원금 상환액 평균

(단위: 만 원)

구분	중위값	평균	표준오차
전체	0	343	26.48
저소득	0	224	97.68
일반	0	363	23.79

주: 부채가 있는 사람은 주택 구입 비용 및 보증금 마련을 1순위나 2순위에서 부모 등에게 빌린 경우나 금융기관, 사채로 빌린 2,439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함.

- 생애동안 피운 담배의 총량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5갑(100개비) 미만	2.64	0.78	3.08
5갑(100개비) 이상	32.72	33.88	32.44
피운 적 없음	64.64	65.34	64.48
계	100.00	100.00	100.00

주: 신규가구원만 응답하였음. 저소득가구원의 응답 사례수가 적으니 해석에 주의를 요함.

○ 해석방법 및 이용시 유의사항

- 본 조사는 표본추출 설계상 저소득층 과대표집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통계치는 가중치가 적용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추정치(모수추정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가중치를 이용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빈도분석 통계표는 비율(%)만을 기본으로 제시하고 실제 사례수(N)는 제시하지 않고 있음.
- 통계결과의 집단범주(가구소득의 중위 60%기준) 또한 가중치가 적용되어 집단 구분이 되어 있으며, 이 집단범주 변수는 생성변수로서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이용자가 본 보고서의 기술통계를 재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통계표마다 단위(% , 만원 등)를 표기하여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용시 유의사항은 '주'로 제시하여 해석상 착오를 방지하고자함.

1-4 연도별 통계결과 및 분석결과 관리

- KOSIS에 자료수록을 위해 시계열 결과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진 않지만, 심층분석(2020년)에서 중단분석을 위해 시계열 자료 분석을 제시함

1-5 성인지(성별 관련)와 관련하여 공표하는 관련 통계 항목

- 성역할에 대한 인식(전체, 저소득, 일반가구) - 3년 주기 문항
- 남성/여성이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

- 남성/여성이 배우자로부터 모욕적, 악의적인 이야기를 들은 경험
- 남성/여성이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받은 경험

2. 조사대상 기간/조사 기준시점과 공표 시기

2-1 조사대상 기간 및 시점과 공표시기

- 주요 추진 일정

조사 진행	진행 내용	진행 일정
1. 조사 준비	• 조사표 수정 및 개발 • 대상가구 주소파악 • 조사지역 배분 • 조사 설명회 • CAPI 프로그램 개발	2021년 12월~2022년 2월
2. 본 조사	• 17차년도 본조사 데이터 수집(CAPI 조사)	2022년 3월~6월
3. 신규 조사	• 17차년도 신규조사 데이터 수집(CAPI 조사)	2022년 7월~8월
4. 자료처리 및 보고	• 패널데이터 생산 및 보고서 작성	2022년 8월~12월
5. 패널 관리	• 18차년도 조사를 위한 패널관리 감사편지 발송, 요약보고서, 명절 선물 발송, 전화조사 관리 등	2022년 12월~2023년 1월

- 세부 일정 및 공표 시점(2022년 기준)

- 1월 중: 패널가구 (사전)전화조사 주소지 정리
- 2월 중: 조사준비(인포시트, 팀구성, 지역배분 등)
- 1월 4(월) ~ 1월 15일(금): 조사표 수정 및 확정 후 한국리서치 조사표 전달
- 1월 15(금) ~ 2월 29(월): CAPI 개발
- 3월 14일(월) ~ 3월 17일(목): 본조사 설명회(세종, 베스트웨스턴 호텔)
- 3월 28일(월) ~ 6월 25일(토): 17차 본조사 기간
- 7월 04일(월): 신규유치조사 설명회 (서울, 수도권조사센터 교육장)
- 7월 05일(화) ~ 8월 17일(수): 신규유치조사 기간
- 1월 19일(수) ~ 3월 25일(금): 1~16차 데이터 중단 에러체크 및 점검
- 3월 31일(목): 1~10차 데이터 공개(데이터 공개는 3월 말일로 정례화 되어 있음)
- 4월 초 ~ 6월 초: 17차 본조사 진행 중 에러체크
 - 중간 에러체크는 수시로 실시(19%, 46%, 80%, 95%, 100%)하고, 추가 지침 전달(필요 시 간담회 개최)
 - 조사기간 중 로밍(1회, 조사답례품 직접 전달)
- 6월 중순~말: 운영위원회 개최(조사 완료 후, 조사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7월 말 ~ 8월 초: 17차 신규유치조사 진행 중 에러체크

- 8월 말 ~ 12월 중순: 11차 데이터 에러체크 및 가중치 부여
 - 조사 완료 후 한국리서치로부터 데이터 받기(2주 소요)
 - 17차 데이터 에러체크(2~3주 소요)
 - 가중치 부여(4주 소요)
- 9월 말: 보고서 작성을 위한 데이터 세팅 완료
- 11월 말: 보고서 작성완료
- 12월 말: 보고서 통계공표

○ 조사 대상, 응답대상 기간 및 시점

	가구용 설문지(유형1,2)	가구원용 설문지(유형3,4)	부가조사표(복지인식)
17차 (2022년)	•조사대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 배우자 •조사대상 기간 2021.1.1~12.31 •기준 응답시점 2021.12.31	• 조사대상: 1) 만15세 이상 가구원 전체 (중고생 제외, 신규진입자 포함) 2) 2021년 2월에 고등학교 졸업한 가구원 •조사대상 기간: 2021.1.1~12.31 •기준 응답시점: 2021.12.31	•조사대상: 1) 11차 및 14차 복지인식 조사 완료 된 가구원 •기준 응답시점: 2022년 조사시점

3. 공표일정

3-1 사전 계획 및 공개된 통계공표 일정과 공개 방법

○ 공표 일정

- 자료(데이터) 공표 일정은 매년 3월 말로 정례화 되어 있음. 단 2022년 17차 조사 자료는 2023년 4월 7일에 공개함
- 보고서 발간: 매해 12월 말

- 보고서 작성은 매해 12월 말로 작성 완료는 하고 있음. 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은 NKIS를 통해 공개해야 하므로 사업종료(매해 12월 말) 후 3개월 내에 공개로 규정되어 있어서 익년 2월~3월에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고 있는 실정임.

연구보고서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

연구책임자 정은희

발행연도 2022

페이지 471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2022-24

목차

요약

번호	제목	첨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자
27	2021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보고서		관리자	1878	2022-05-16
26	2020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보고서		관리자	2122	2021-05-14
25	2020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보고서		관리자	1197	2021-05-14

○ 공표 방법: 홈페이지 공개

- 데이터 공개 및 보고서 공개 일정 홈페이지 공개
- 한국복지패널 홈페이지 <http://www.koweps.re.kr/>

※ [이미지] 데이터 공표 홈페이지 화면

The screenshot shows the '데이터' (Data) section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website. The page layout includes a top navigation bar with links like HOME, CONTACT US, and ENGLISH. Below this is a main header with the study's name and logo. The central content area is titled '데이터 다운로드 안내' (Data Download Guide) and contains a grid of buttons for downloading data from various waves (1st to 17th). Each button specifies the wave number and the available file formats: .stata, .spss, and .sas. For example, the 1st wave button lists files like (2006년 1차 한국복지패널조사) 데이터 (beta19)_.stata.zip. At the bottom, there is a '결합 데이터(1-17차)' (Combined Data (1-17th)) button and a list of combined data files.

○ 보고서의 실제 공표시기

- 매해 기관 보고서 발간 시기에 맞추어 공표되고 있음.

4. 통계 작성방법의 비교성

4-1 조사기준 및 조사시기

○ 조사항목 중에서 유량(flow)의 경우 매년 1월 1일~12월 31일(1년)을 기준으로 하며, 저장(stock)의 경우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함.

1차 / 2006년 조사		
가구용 조사표	가구원용 조사표	부가조사표(아동)
- 조사대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배우자 - 조사방법: 가구방문을 통한 직접면접조사 - 조사기준연도: 2005.1.1~2005.12.31 - 조사기준시점: 2005.12.31	- 조사대상: 만15세 이상 가구원 전체(중고생 제외) - 조사방법: 가구방문을 통한 직접면접조사 - 조사기준연도: 2005.1.1~2005.12.31 - 조사기준시점: 2005.12.31	- 조사대상: 초등학교 4,5,6학년 재학 아동 전체 - 조사방법: 가구방문 통한 직접면접과 자기기입식 병행 - 조사기준시점: 조사일 현재

2차 / 2007년 조사		
가구용 조사표(원·신규)	가구원용 조사표(원·신규)	부가조사표(복지인식)
- 조사대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배우자 - 조사기준연도: 2006.1.1~12.31 - 조사기준시점: 2006.12.31	- 조사대상: - 만15세이상 가구원 전체(중고생 제외) 2006년 2월에 고등학교 졸업한 가구원 - 조사기준연도: 2006.1.1~12.31 - 조사기준시점: 2006.12.31	- 조사대상: 부가조사 대상으로 추출된 표본가구의 가구주와 배우자 - 조사기준시점: 조사일 현재

3차 / 2008년 조사		
가구용 조사표(원·신규)	가구원용 조사표(원·신규)	부가조사표(장애인)
- 조사대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배우자 - 조사기준연도: 2007.1.1~12.31 - 조사기준시점: 2007.12.31	- 조사대상: - 만15세이상 가구원 전체(중고생 제외) 2007년 2월에 고등학교 졸업한 가구원 - 조사기준연도: 2007.1.1~12.31 - 조사기준시점: 2007.12.31	- 조사대상: 장애 유형에 따라 표본으로 선정된 장애인 - 조사기준시점: 조사일 현재

4차 / 2009년 조사		
가구용 조사표(원·신규)	가구원용 조사표(원·신규)	부가조사표(아동)
- 조사대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배우자 - 조사기준연도: 2008.1.1~2008.12.31 - 조사기준시점: 2008.12.31	- 조사대상: - 만15세이상 가구원 전체(중고생 제외) 2008년 2월에 고등학교 졸업한 가구원 - 조사기준연도: 2008.1.1~12.31 - 조사기준시점: 2008.12.31	- 조사대상: 1차년도 아동조사 응답자와 응답시점에서 중학교 재학 중인 가구원 - 조사방법: 가구방문 통한 직접면접과 자기기입식 병행 - 조사기준시점: 조사일 현재

5차 / 2010년 조사		
가구용 조사표(원·신규)	가구원용 조사표(원·신규)	부가조사표(복지인식)
- 조사대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배우자 - 조사기준연도: 2009.1.1~12.31 - 조사기준시점: 2009.12.31	- 조사대상: - 만15세이상 가구원 전체(중고생 제외) 2009년 2월에 고등학교 졸업한 가구원 - 조사기준연도: 2009.1.1~12.31 - 조사기준시점: 2009.12.31	- 조사대상: 2차년도 복지인식조사 응답자와 신규 부가조사 대상으로 추출된 표본가구의 가구주와 배우자 - 조사기준시점: 조사일 현재

6차 / 2011년 조사		
가구용 조사표(원·신규)	가구원용 조사표(원·신규)	부가조사표(장애인)
- 조사대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배우자 - 조사기준연도: 2010.1.1~12.31 - 조사기준시점: 2010.12.31	- 조사대상: - 만15세이상 가구원 전체(중고생 제외) 2010년 2월에 고등학교 졸업한 가구원 - 조사기준연도: 2010.1.1~12.31 - 조사기준시점: 2010.12.31	- 조사대상: 3차년도 장애인조사 응답자 - 조사기준연도: 조사일로부터 지난 1년간 - 조사기준시점: 조사일 현재

7차 / 2012년 조사		
가구용 조사표(원·신규)	가구원용 조사표(원·신규)	부가조사표(아동)
- 조사대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배우자 - 조사기준연도: 2011.1.1~12.31 - 조사기준시점: 2011.12.31	- 조사대상: - 만15세이상 가구원 전체(중고생 제외) 2011년 2월에 고등학교 졸업한 가구원 - 조사기준연도: 2011.1.1~12.31 - 조사기준시점: 2011.12.31	- 조사대상: 1차 또는 4차년도 아동조사 응답자 - 조사방법: 가구방문 통한 직접면접과 자기기입식 병행 - 조사기준시점: 조사일 현재

8차 / 2013년 조사		
가구용 조사표(원·신규)	가구원용 조사표(원·신규)	부가조사표(복지인식)
- 조사대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배우자 - 조사기준연도: 2012.1.1~12.31 - 조사기준시점: 2012.12.31	- 조사대상: - 만15세이상 가구원 전체(중고생 제외) 2012년 2월에 고등학교 졸업한 가구원 - 조사기준연도: 2012.1.1~12.31 - 조사기준시점: 2012.12.31	- 조사대상: 7차 총 표본가구 중 조사대상으로 추출된 표본가구의 만19세 이상 모든 가구원* - 조사기준시점: 조사일 현재

9차 / 2014년 조사		
가구용 조사표(원·신규)	가구원용 조사표(원·신규)	부가조사표(장애인)
- 조사대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배우자 - 조사기준연도: 2013.1.1~12.31 - 조사기준시점: 2013.12.31	- 조사대상: - 만15세이상 가구원 전체(중고생 제외) 2013년 2월에 고등학교 졸업한 가구원 - 조사기준연도: 2013.1.1~12.31 - 조사기준시점: 2013.12.31	- 조사대상: 3차년도 장애인 조사 응답자 8차년도 조사에서 15세 미만 장애인 가구원 전원 - 조사기준시점: 조사일 현재

10차 / 2015년 조사		
가구용 조사표(원·신규)	가구원용 조사표(원·신규)	부가조사표(아동)
- 조사대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배우자 - 조사기준연도: 2014.1.1~12.31 - 조사기준시점: 2014.12.31	- 조사대상: - 만15세이상 가구원 전체(중고생 제외) 2014년 2월에 고등학교 졸업한 가구원 - 조사기준연도: 2014.1.1~12.31 - 조사기준시점: 2014.12.31	- 조사대상: 10차년도에 초등학교 4,5,6학년 재학 아동 전체 - 조사방법: 가구방문 통한 직접면접과 자기기입식 병행 - 조사기준시점: 조사일 현재

11차 / 2016년 조사		
가구용 조사표(원·신규)	가구원용 조사표(원·신규)	부가조사표(복지인식)
- 조사대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배우자 - 조사기준연도: 2015.1.1~12.31 - 조사기준시점: 2015.12.31	- 조사대상: - 만15세이상 가구원 전체(중고생 제외) 2015년 2월에 고등학교 졸업한 가구원 - 조사기준연도: 2015.1.1~12.31 - 조사기준시점: 2015.12.31	- 조사대상: 8차년도 복지인식조사 응답자 중 10차년도 표본에 포함된 가구원 - 조사기준시점: 조사일 현재

12차 / 2017년 조사		
가구용 조사표(원·신규)	가구원용 조사표(원·신규)	부가조사표(장애인)
- 조사대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배우자 - 조사기준연도: 2016.1.1~12.31 - 조사기준시점: 2016.12.31	- 조사대상: - 만15세이상 가구원 전체(중고생 제외) 2016년 2월에 고등학교 졸업한 가구원 - 조사기준연도: 2016.1.1~12.31 - 조사기준시점: 2016.12.31	- 조사대상: 3차년도 장애인 조사 응답자 11차년도 조사에서 장애인 가구원 전원 - 조사기준시점: 조사일 현재

13차 / 2018년 조사		
가구용 조사표(원·신규)	가구원용 조사표(원·신규)	부가조사표(아동)
- 조사대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배우자 - 조사기준연도: 2017.1.1~12.31 - 조사기준시점: 2017.12.31	- 조사대상: - 만15세 이상 가구원 전체(중고생 제외) 2017년 2월에 고등학교 졸업한 가구원 - 조사기준연도: 2017.1.1~12.31 - 조사기준시점: 2017.12.31	- 조사대상: 13차년도에 중학교 1,2,3학년 재학 아동 전체 - 조사기준시점: 조사일 현재

14차 / 2019년 조사		
가구용 조사표(원·신규)	가구원용 조사표(원·신규)	부가조사표(복지인식)
- 조사대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배우자 - 조사기준연도: 2018.1.1~12.31 - 조사기준시점: 2018.12.31	- 조사대상: - 만15세 이상 가구원 전체(중고생 제외) 2018년 2월에 고등학교 졸업한 가구원 - 조사기준연도: 2018.1.1~12.31 - 조사기준시점: 2018.12.31	- 조사대상: 11차년도 복지인식 부가조사 응답자 중 13차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 13차 기준 만 19~21세에 속하는 가구원 - 조사기준시점: 조사일 현재

15차 / 2020년 조사		
가구용 조사표(원·신규)	가구원용 조사표(원·신규)	부가조사표(장애인)
- 조사대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배우자 - 조사기준연도: 2019.1.1~12.31 - 조사기준시점: 2019.12.31	- 조사대상: - 만15세 이상 가구원 전체(중고생 제외) 2019년 2월에 고등학교 졸업한 가구원 - 조사기준연도: 2019.1.1~12.31 - 조사기준시점: 2019.12.31	- 조사대상: 14차년도 가구원 조사 완료된 사람 중 장애인 가구원 전원 - 조사기준시점: 조사일 현재

16차 / 2021년 조사		
가구용 조사표(원·신규)	가구원용 조사표(원·신규)	부가조사표(아동)
- 조사대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배우자 - 조사기준연도: 2020.1.1~12.31. - 조사기준시점: 2020.12.31.	- 조사대상: - 만15세 이상 가구원 전체(중고생 제외) 2020년 2월에 고등학교 졸업한 가구원 - 조사기준연도: 2020.1.1~12.31 - 조사기준시점: 2020.12.31	- 조사대상: 2021년 3월 기준, 고등학교 1, 2, 3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전체 - 조사기준시점: 조사일 현재

17차 / 2022년 조사		
가구용 조사표(원·신규)	가구원용 조사표(원·신규)	부가조사표(복지인식)
- 조사대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배우자 - 조사기준연도: 2021.1.1~12.31. - 조사기준시점: 2021.12.31.	- 조사대상: - 만15세 이상 가구원 전체(중고생 제외) 2021년 2월에 고등학교 졸업한 가구원 - 조사기준연도: 2021.1.1~12.31 - 조사기준시점: 2021.12.31	- 조사대상: 5, 8, 11, 14차 복지인식 부가조사에서 한 번이라도 응답한 만 19세 이상 가구원 - 조사기준시점: 조사일 현재

* 주: 2차/5차 복지인식 부가조사의 경우 표본이 표본가구 내 모든 가구원이 아니라 가구주와 배우자 중 1명 또는 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표성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함. 이에 따라 8차 복지인식 부가조사에서는 대표성을 확보하고 추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표본설계 방안을 마련함. 7차 전체 표본가구 중 지역별(16개 시도)/계층별(저소득, 일반) 확률비례추출법에 따라 추출된 표본가구(2,399가구, 가구원 6,248명) 내 만 19세 이상 모든 가구원(5,0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총 4,185명에 대해 조사가 완료됨.

- 조사시기는 1차년도에는 3개의 패널을 통합하고 조사표 개발 등의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조사시기가 11월에서 12월까지 이루어 졌으나, 2차년도부터는 종합소득세가 신고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를 진행함. 7차년도 조사이후부터는 응답자의 회상의 문제를 개선하고, 데이터 공개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연초에 조사를 진행하도록 변경함.

구분	조사시기	비고
1차년도(2006년 조사)	2006년 11월 1일~12월 30일	차상위패널, 자활패널, 복지패널의 통합작업이 다소 지연되었으며, 조사표 개발 등의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조사시기가 늦어짐.
2차년도(2007년 조사)	2007년 4월 24일~7월 20일	조사시점이 종합소득세가 신고되는 시점(5월)을 기준으로 함.
3차년도(2008년 조사)	2008년 4월 13일~7월 19일	
4차년도(2009년 조사)	2009년 4월 18일~7월 5일	
5차년도(2010년 조사)	2010년 5월 18일~8월 20일	CAPI 시스템 도입
6차년도(2011년 조사)	2011년 6월 9일~10월 10일	
7차년도(2012년 조사)	2012년 2월 11일~6월 16일	응답자의 회상의 문제를 개선하여 조사의 정확성 제고, 적시성 높은 연구성고를 생산, 정책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조사시점을 변경함.
8차년도(2013년 조사)	2013년 1월 12일~6월 8일	
9차년도(2014년 조사)	2014년 3월 8일~8월 15일	
10차년도(2015년 조사)	2015년 3월 2일~6월 12일	
11차년도(2016년 조사)	2016년 3월 2일~6월 15일	
12차년도(2017년 조사)	2017년 2월 18일~5월 31일	
13차년도(2018년 조사)	2018년 2월 24일~6월 7일	
14차년도(2019년 조사)	2019년 2월 18일~5월 31일	
15차년도(2020년 조사)	2020년 6월 5일~9월 13일	코로나로 잠정중단 및 재개
16차년도(2021년 조사)	2021년 3월 15일~6월23일	
17차년도(2022년 조사)	2022년 3월19일~6월23일	

4-2 통계의 개념 동일 여부

- 소득, 생활비, 부채, 재산 등의 주요 항목 및 복지패널 조사표의 모든 항목들의 개념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 단 제도의 신설, 변경, 삭제 등으로 인한 통계변경은 있음(예시: 기초생활보장제도 => 맞춤형급여 로 변경, 장애등급 => 장애정도, 기타정부보조금의 세부 제도(아동수당 추가, 지방보조금 추가, 코로나19 지원금 추가) 변화)

4-3 분류체계 동일 여부

-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제8차(1~3차) → 제9차(4~13차) → 제10차(14~17차)로 개정됨.

제8차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1~3차)	제9차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4~11차)	제10차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14~17차)
01 농업	01 농업	01 농업
02 임업	02 임업	02 임업
05 어업	03 어업	03 어업
10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11 금속광업	06 금속광업	06 금속광업
12 비금속 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7 비금속 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7 비금속 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15 음식료품 제조업	10 식품품 제조업	10 식품품 제조업
16 담배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7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12 담배 제조업	12 담배 제조업
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58 출판업	58 출판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제8차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1~3차)	제9차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4~11차)	제10차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14~17차)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7 제1차 금속산업	24 제1차 금속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3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3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41 수도사업	36 수도사업	36 수도업
45 종합 건설업	41 종합 건설업	41 종합 건설업
46 전문직별 공사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50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5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52 소매업 (자동차 제외)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55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업	55 숙박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61 수상 운송업	50 수상 운송업	50 수상 운송업
62 항공 운송업	51 항공 운송업	51 항공 운송업
63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64 통신업	61 통신업	61 우편 및 통신업
65 금융업	64 금융업	64 금융업
66 보험 및 연금업	65 보험 및 연금업	65 보험 및 연금업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70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69 임대업, 부동산 제외	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63 정보서비스업
73 연구 및 개발업	70 연구 개발업	70 연구개발업
7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1 전문서비스업	71 전문 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4 사업 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7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0 교육 서비스업	85 교육 서비스업	85 교육 서비스업
85 보건업	86 보건업	86 보건업
86 사회복지사업	87 사회복지사업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	59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9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 방송업	60 방송업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8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0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39 환경정화 및 복원업	39 환경정화 및 복원업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91 회원단체	94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92 수리업	95 수리업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93 기타 서비스업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95 가사 서비스업	97 가구내 고용활동	97 가구 내 고용활동
99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97 자활지원 관련업	삭제	삭제

- 한국표준직업분류가 제5차(1~3차) → 제6차(4~13차) → 제7차(14~17차)로 개정됨
(본 보고서에는 일부만 제시함)

제5차 표준직업분류 소분류 (1~3차)		제6차 표준직업분류 중분류 (4~13차)		제7차 표준직업분류 중분류 (14~17차)	
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	관리자	1	관리자
0110	의회의원	1110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공공 단체임원	1110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공공 단체임원
01101	중앙 의회의원				
01102	지방 의회의원				
0121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01210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0122	지방정부 고위공무원				
01220	지방정부 고위공무원				
0131	정당 고위임원	11101	국회의원	11101	국회의원
01310	정당 고위임원	11102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	11102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 의원
0132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	11103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11103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01320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	11104	지방정부 고위공무원	11104	지방정부 고위공무원
0133	기타 특수이익단체 고위임원	11105	공공기관 임원	11105	공공기관 임원
01330	기타 특수이익단체 고위임원	11106	정당 및 특수단체 임원	11106	정당 및 특수단체 임원
0210	기업 고위임원				
	-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임원				
	- 기업고위임원	1120	기업고위임원	1120	기업 고위 임원
02100	기업고위임원	11201	기업 대표이사	11201	기업 대표이사
	- 공공기관 임원	11202	기업 고위임원	11202	기업 고위 임원
	- 기업 대표이사	1201	정부행정 관리자	1211	정부행정 관리자
	- 기업 고위임원				
0220	정부행정부서 관리자				
	- 정부행정 관리자	12010	정부행정 관리자	12110	정부행정 관리자
	- 법률·경찰·소방 및 교도 관리자				
02200	정부 행정부서 관리자	1202	경영지원 관리자	1212	경영 지원 관리자
	- 정부행정 관리자				
	- 법률 관리자				
	- 경찰 관리자				
	- 소방 관리자				
	- 교도 관리자				
0231	농림어업 생산부서 관리자				
02310	농림어업 생산부서 관리자				
0232	광공업 생산부서 관리자	12021	총무 및 인사 관리자	12121	총무 및 인사 관리자
	- 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	12022	기획·홍보 및 광고 관리자	12202	광고 및 홍보 관리자
	- 전기·가스 및 수도 관련 관리자			12209	그 외 마케팅 및 광고·홍보 관리자
	- 제품 생산관련 관리자				
02321	광업 생산부서 관리자	12023	재무 관리자	12123	재무 관리자
02322	제조업 생산부서 관리자	12024	자재 및 구매 관리자	12124	자재 및 구매 관리자
	- 식품생산 관리자	12029	그 외 경영지원 관리자	12129	그 외 경영 지원 관리자

5. 시계열 비교성

□ 시계열 단절 유무

- 가구용 조사표와 가구원용 조사표의 경우, 1차년도 조사부터 현재까지 단절없이 이루어져서 시계열적인 변화의 비교가 가능함.
- 다만, 조사표별로 일부 문항이 삭제되고 추가된 부분이 존재하지만, 전후 비교표를 제시하고 있음.

- 건강 및 의료A: 주요 병명 코드분류 항목이 3차년도에 추가되었으며, 민간의료보험 가입전수 문항도 3차년도에 추가됨.
- 경제활동상태: 근로지속불가능 사유가 3차 때 추가됨에 따라 임금근로자 중 한시적 근로자의 한시적 근로 사유의 파악이 가능해짐.

1차 자료의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고용형태(h0103_5)	근로시간형태(h0103_6)	구분
한시적(=1)	시간제(=1)	비정규직
	전일제(=2)	
비전형(=2)	시간제(=1)	
	전일제(=2)	
정규직(=3)	시간제(=1)	정규직
	전일제(=2)	

2차 자료의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고용관계(h0203_aq1)	근로시간형태(h0203_6)	근로계약유무, 로지속가능성(h0203_aq2)	구분
직접고용(=1)	전일제(=2)	지속가능 무기근로(=1)	정규직
		지속불가능 무기근로(=2)	비정규직
		지속가능 유기근로(=3)	
		지속불가능 유기근로(=4)	
	시간제(=1)	-	
간접고용(=2)	-	-	
특수고용(=3)	-	-	

9차 자료(3~9차와 동일)의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고용관계(h0903_aq1)	근로시간형태(h0903_6)	근로계약유무(h0903_3aq1)	근로지속가능성(h0903_3aq2)	구분
직접고용(=1)	전일제(=2)	무기계약(=2)	지속가능(=1)	정규직
		무기계약(=2)	지속불가능(=2)	비정규직
		유기계약(=1)	지속가능(=1)	
		유기계약(=1)	지속불가능(=2)	
	시간제(=1)	-	-	
간접고용(=2)	-	-	-	
특수고용(=3)	-	-	-	

- 경제활동상태: 업종 및 직종이 통계청 표준분류체계에 따라 개정되어 4차년도 이후에 새롭게 분리되었음.
-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의 공적연금 관련 변수가 2차년도 이후부터 세분화, 상세화하여 변수의 수를 기존 6개에서 10개로 늘렸으며, 보다 체계적인 분류를 위해 단계적인 질문방식으로 변경하였음.

2~9차 자료	변수값	1차 자료	비고
공적연금가입여부(h0204_aq1~h0904_aq1)	비해당, 수급, 가입, 수급&가입, 미가입	h0104_4(=1)	국민연금 수급자만
가입 연금제도(h0204_aq2~h0904_aq2)	특수직역연금 국민연금	h0104_2(=1,2,3,4) h0104_3(=1,2,3,4) + h0104_4(=2,4,5)	
국민연금가입종별(h0204_aq3~h0904_aq3)	직장, 지역, 임의, 임의계속	h0104_3(=1,2,3,4)	
국민연금납부여부(h0204_aq4~h0904_aq4)	납부중 미납중	h0104_3(=1,2,3,4) h0104_3(=5)	
국민연금미납유형(h0204_aq5~h0904_aq5)	납부예외 단순미납	h0104_4(=4) h0104_4(=5)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h0204_aq6~h0904_aq6)	실직외, 입원, 생활곤란, 학업, 기타	없음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h0204_aq7~h0904_aq7)	1년간 납부예외 기간	없음	
국민연금 미납이유(h0204_aq8~h0904_aq8)	경제적 이유, 제도불신, 불필요 등	h0104_6	
국민연금 미납기간(h0204_aq9~h0904_aq9)	1년간 미납 기간	h0104_5	
국민연금 미가입 이유(h0204_aq10~h0904_aq10)	경제적 이유, 제도불신, 불필요 등	h0104_7	

-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에서 개인연금 가입여부 변수와 관련하여 1차년도 자료에서는 가구원용 설문지에서 설문한 반면, 2차년도 이후에는 가구용 설문지에서 설문하였으며, 4차년도 이후자료에서는 개인연금과 종신보험 가입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응답항목을 5가지로 세분화함.

구분	1차 자료	2차 자료	3차 자료	4~9차 자료
조사표 유형/변수명	가구원용/ p0101_26	가구용/ h0204_aq11	가구용/ h0304_aq11	가구용/ h0404_aq11~h0904_aq11
응답항목 세분화	가입(=1), 미가입(=2)	가입(=1), 미가입(=2), 모름(=3), 종신보험 가입(=4)	가입(=1), 미가입(=2), 모름(=3)	개인연금만 가입(=1), 종신보험만 가입(=2), 둘 다 가입(=3), 미가입(=4), 모름(=5)

- 의료B: 가입자의 해당종류와 민간의료보험의 12월 보험료가 3차년도에 추가되었으며, 건강보험의 보험료에 합당한 보장도와 의료기관 진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문항은 3년주가 문항으로 변경됨.
- 근로(자녀)장려세제: 4차년도에 근로장려세제가 시행예정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인식 및 신청여부에 관한 문항만 조사하였으며, 5차년도 이후부터는 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문항이 추가됨. 11차년도에는 자녀장려세제가 도입됨에 따라 문항이 추가됨
- 가구복지서비스이용: 사회복지 서비스 사업이 수정, 삭제, 생성됨에 따라 문항이 변경됨.
-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사교유그, 보육기관의 보기 항목이 조사 차수에 따라 변경됨.

1~2차	3~4차	5~7차	8차 이후
1. 국공립 어린이집	1. 국공립 혹은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	1. 국공립 혹은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	1. 국공립 어린이집
-			2.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2. 민간어린이집	2. 민간어린이집	2. 민간어린이집	3. 민간어린이집
3. 사설놀이방	3. 사설놀이방	3. 사설놀이방	4. 가정어린이집
4. 직장보육시설	4. 직장보육시설	4. 직장보육시설	5. 직장어린이집
5. 정규시간 이외에 보육도 맡아주는 유치원	5. 정규시간 이외에 보육도 맡아주는 유치원	5. 정규시간 이외에 보육도 맡아주는 유치원	6. 정규시간 이외에 보육도 맡아주는 유치원
6. 정규시간만을 담당하는 유치원	6. 정규시간만을 담당하는 유치원	6. 정규시간만을 담당하는 유치원	7. 정규시간만을 담당하는 유치원
7. 학원	7. 학원	7. 학원	8. 학원
8. 개인그룹과외	8. 개인그룹과외	8. 개인그룹과외	9. 개인그룹과외
9. 학습지	9. 학습지	9. 학습지	10. 학습지
10. 방과후 교내보충학습	10. 방과후 교내보충학습	10. 방과후 교내보충학습	11. 방과후 교내보충학습
11. 방과후 교실	11. 방과후 교실	11. 방과후 교실	12. 방과후 교실
12. 찬인척	12. 찬인척	12. 찬인척	13. 찬인척
13. 이웃이나 아이 돌보미	13. 이웃	13. 이웃	14. 이웃
	14.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 돌보미	14.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 돌보미	15.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 돌보미
	15. 민간 아이 돌보미	15. 민간 아이 돌보미	16. 민간 아이 돌보미
14. 기타	16. 기타	16. 기타	17. 기타
-	-	17. 그 외 보육시설	18. 그 외 보육시설

- 근로: 정부고용지원 프로그램이 수정, 생성됨에 따라 문항이 변경되었으며, 만족도, 참여기간에 대한 문항은 8차년도에 삭제함.
- 생활실태 만족도 및 의식: 경제적 생활상태, 미래에 목표로 하는 사회 문항은 3년주기 문항으로 설정되었으며, 이후 8차년도에는 문항이 삭제됨
-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 3차년도에 젠더역할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관련 문항을 포함함.

-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4차년도에 세계보건기구의 AUDIT(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척도를 사용하여 문제음주와 알코올 의존에 대한 질문을 추가함.
- 부가조사의 경우 아동, 복지인식, 장애인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음
 - 아동 부가조사: 1차년도에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4차와 7차년도에는 1차년도에 조사된 아동에 대해 조사를 실시함. 10차년도에는 신규표본을 추출하였으며, 2015년 3월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4~6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을 모두 조사함.
 - 복지인식 부가조사: 2차와 5차에는 표본가구 내 가구주와 배우자 중 1명 또는 2명만 조사하였으나, 8차년도부터는 전년도 전체 표본가구 중 지역별(16개시도)/계층별(저소득, 일반) 확률비례추출법에 따라 추출된 표본가구 내 만 19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함.
 - 장애인 부가조사: 3차년도에는 15세 이상의 장애인 중 표본으로 선정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6차년도에는 3차년도에 조사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9차년도에는 3차와 6차에 조사 대상 장애인외에 15세 미만 장애인 가구원 전원을 포함하여 조사함.

6. 국가간 비교성

□ 직접 비교는 불가능함. 조사목적이 틀리고, 그 나라만의 용어 및 문항 정의 등이 틀려서 직접 비교는 불가능함

○ 영국 BHPS와 한국복지패널의 주요 조사내용 간접 비교 가능함

영국 BHPS		한국복지패널	
주거	주거 유형 현거주지의 소유상태 현거주지의 소유방식 세입자인 경우 세입액 및 기간	주거	주택 유형 및 주거 위치 주거 점유형태
소비 지출	내구재 및 차량 소유여부 생활비용	생활비	비목별 생활비 총생활비, 월평균 생활비
인구학적 정보	출생지, 주거지 가정과 이웃의 대한 만족도 이사 이유 인종, 교육 배경과 학력 최근의 교육 경험, 결혼 및 결혼상태 변화	가구 일반사항	가구원 수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교육수준, 장애현황, 혼인상태, 종교, 동거여부
고용	고용지위, 직업 근무지역, 직장규모, 통근수단, 근속연수, 근무시간, 노동조합가입여부, 직장내 교육, 연금계획, 노동만족도, 수입만족도, 보육시설, 구직활동	근로	근로유형 실직경험여부, 실직사유 현직장 근속연수, 근로개월수, 평균 근로일수, 주당 평균 근로시간 월평균 임금, 노조가입여부, 구직활동 여부, 직업기술
재무	수당, 연금, 임대료, 이직, 임금외 소득, 연금계획, 저축 및 금융자산투자, 소비자신뢰도, 소득이전, 지출의 운영, 육아, 보유차량의 가치	부채, 이자, 재산	부채형태별 금액 부채에 대해 지출한 이자 연간 총액 소유부동산별 금액, 금융재산별 금액 비영업용 자동차 보유대수 및 가격
건강 보살핌	건강상태, 장애, 병원방문정도, 복지서비스 이용현황, 의사상담, 건강진단, 친지의 보살핌, 봉사활동	건강 및 의료	건강상태 의료기관 이용 및 주요 병명 진료 횟수, 입원횟수,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 건강검진횟수, 만성질환
고용 역사	작년의 고용지위, 고용지속기간, 직장의 규모, 산업, 이직의 이유	개인사	아동기, 부모님 교육수준 및 직업, 직업이력, 직업기술, 다문화가정 여부
가치와 의견	정치만족도, 종교, 이해집단과의 소속여부	복지인식	전반적인 사회적 정치적 인식 정치참여와 성향

○ 위의 통계 이외에도 빈곤율, 우울증, 흡연율, 박탈지수 등 국가간 비교 가능함

□ 아래의 내용은 복지패널 구축 당시에 참고한 통계임

□ 미국의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 개요

- PSID는 미국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패널 조사이며,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 정부의 국민복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됨. 경제기획국(OEO: The Office of Economic Opportunity)은 1966년과 1967년 30,000가구를 표집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968년에는 빈곤층에 포함되는 2,000가구에 대한 5년간의 추적을 실시함. 이에 빈곤층·중산층·부유층 모두를 포함하는 미국 국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존의 3,000 표본을 추가하여 5,000여 가구를 원표본으로 구축함.
- PSID는 가구라는 틀 속에서 개인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였으며, 세대(generation)를 넘어서까지 개인과 가구의 변화를 추적하였고 종종 한 가구로부터 파생된 다수의 세대들을 동시에 면접하였다는 특징을 갖고 있음.

○ 조사 방식

- 조정·감독의 역할을 맡은 사무국을 중심으로 전국에 산재한 6~12명 정도의 감독관들과 약 115명의 면접원들로 구성된 국가실사진이 매년 3~9월까지 진행함.
- PSID의 조사 방식은 최초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변화하였는데 2003년부터는 CATI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주거사항의 변화 및 취업현황을 Event History Calendar(EHC: 경과이력 목록) 기법을 이용하여 기록함. 이 방법은 면접자가 응답자의 답변을 EHC 목록에 시간을 고려하여 입력할 수 있게 함으로서, 이를 통하여 응답자의 과거 2년간 직업 변화를 시점별로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음.

○ 조사 내용

- PSID는 표본 가구와 개인에 대한 방대하고 다양한 자료들을 얻기 위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음. 초기에는 인구학적·경제적 자료 수집에 중점을 두었고, 1985년부터는 출산과 결혼 및 소비활동에 대한 세부항목들이 추가되었음. 1999년부터는 건강상태에 대하여도 조사하기 시작했고, 비정기적으로는 주거 및 주변 환경, 직업훈련, 교육, 군대경력, 건강 등이 특별조사항목으로 추가됨.
- 매년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조사내용은 소득, 빈곤, 가족구성, 고용, 가사, 주거, 사회·경제적 배경 등으로 PSID의 핵심조사항목임. 공공요금, 교통이용 상황, 육아, 부(wealth), 보건, 그리고 친구, 친지사이의 시간 및 금전의 이전 등과 같이 상황에 따라서 추가되는 항목은 추가항목이라고 함.

○ 조사 관리

- 조사 및 관리의 과정에는 핵심적으로 면접원들과 감독관이 참여함. 감독관들은 면접원의 선발과 교육 및 면접과정의 감독을 담당하며 면접의 질과 완결성·정확성 등을 고려하면서 면접원과 응답자 사이에서 각종 문제들을 해결함.
- 대면·전화 면접 후 감독관들은 면접을 완료한 설문지 중 일부에 대하여 실제 면접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해당 응답자와 다시 연락하여 검토 및 확인 과정을 거침. 숙련된 면접원의 경우 약 5%가, 새로운 면접원의 경우 약 10%가 재접촉의 대상이 되며, 감독관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면접의 질과 면접 소요시간, 설문지의 문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함.

□ 영국의 The 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 개요

- BHPS는 1991년, Essex 대학의 ISER(Institute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내의 ESRC Research Centre on Micro-social Change에서 실시하는 가구패널조사로 시작된 이래, 조사된 1~18차(wave 18)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음.
- BHPS는 영국 사회의 미시·거시적 변화를 장기간 관찰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21세기 영국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작됨.

○ 조사 방식

- BHPS는 1998년까지는 PAPI를 이용하여 면접자가 면접자관리 질문지와 짧은 자기완성 질문지를 포함하는 직접방문식 조사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1994년부터는 11~15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오디오 테이프를 이용한 자기완성 질문지가 사용됨. 9차년도(1999년) 조사부터 컴퓨터지원 개인면접(CAPI;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으로 전환하기 시작됨.

○ 조사 내용

- BHPS 질문지는 소득과 부의 분배, 소비, 노동활동, 연금, 주거, 건강, 그리고 사회경제적 가치 등의 주제를 통해서 사회경제구조의 변화를 연구하는데 적합하도록 구성됨.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구용 질문지, 개인용 질문지, 자기기입 질문지, 대리설문지가 따로 마련되어 있음.
- 가구용 질문지는 가구원 중에서 주거상황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용 질문지에는 만 16세 이상 모든 가구원이 응답함. 자기기입 질문지는 면접조사를 마친 모든 가구 구성원이 기입하며, 대리질문지는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집을 떠나있는 가구원이나 나이가 많아 불가능한 경우 다른 가구원이 대신 응답하는 질문지임.

○ 조사 관리

- BHPS의 조사는 두 단계로 수행됨. 1단계로 4월에서 5월까지 1,000명을 표본으로 한 예비조사(pilot survey)가 실시된 후 이를 토대로 2단계인 본 조사는 9월에서 12월까지의 4개월에 걸쳐 실시됨. BHPS의 실제 조사는 현장 조사, 부호화(coding), 자료입력(data-entry)의 작업과 모근 조사도구의 설계에 대한 조언을 담당하는 민간 조사업체인 NOP(사회·정치부)에 의뢰되어 실시됨.

□ 독일의 The German Socio-Economic Panel Study

○ 개요

- 1984년 시작된 SOEP는 주요 패널조사 중에서 가장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표본을 포함하고 있는 독일 인구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는 독일의 대표적인 가구패널조사임. SOEP은 국립 경제연구기관인 DIW(Deutsch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에서

총괄하고 설문지 작성과 같은 실무는 민간학술조사기관인 'Infratest'에서 담당하고 있음.

○ 조사 방식

- SOEP는 모든 가구원의 정보를 응답자 본인으로부터 직접 얻는다는 엄격한 원칙을 특징으로 함. 미국의 PSID가 가구주에게서 다른 가구원들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과 같은 대리응답이 사용되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독특한 특징으로, 응답의 신뢰도 향상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SOEP는 1998년부터 CAPI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였음. CAPI의 적용대상을 표본의 특성에 따라 선별하여 진행하는 동시에 표본 및 설문지의 차이와 같은 조사 방법의 차이에 따라 PAPI와 CAPI를 혼용하여 사용함. 또한 조사도구가 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향된 결과를 연구하기 위하여 면접원 및 응답자들의 반응까지도 분석함.

○ 조사 내용

- SOEP는 객관적인 생활조건 및 주관적인 삶의 질, 다양한 생활영역의 변화 등을 기초로 정치적·사회적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하는 개인과 가구에 대한 풍부한 자료가 포함됨. 매년 소득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SOEP 자료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구의 변화에 대한 분석 역시 가능함. SOEP의 장점은 패널 디자인, 모든 성인가구원에 대한 조사, 지역 간의 비교, 외국인을 가장 많이 표본으로 포함하는 독일 내 최대 패널, 이민자에 대한 정보 등이 있음.

○ 조사 관리

- SOEP의 설문지는 교육, 주거, 건강 등을 포함하는 사회학적 접근법과 소득과 지출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학적 접근법의 관련성을 강화함. 매년 질문되는 주제로는 인구학적 변수, 노동시장과 실업, 소득, 조세, 사회보장, 주거, 건강,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이 있으며 설문지는 가구용 설문지와 개인용 설문지, 비독일인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 SOEP에서는 응답자의 효율적인 표집과 유지를 위해 표본 탈락이 발생할 경우 '최종 탈락'과 '일시적 탈락'으로 구별하여 관리함. 지속적인 관리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더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나 이후 조사 참여를 강력하게 거부할 경우에는 최종탈락 대상이 됨.

□ 캐나다의 Survey of Labor and Income Dynamics

○ 개요

- SLID는 1993년부터 캐나다 통계청의 주관 하에 실시되고 있는 패널조사임. 이 조사는 약 35,000가구의 개인 및 가족의 경제적 상황과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화, 교육 등에 대해 조사하는 가장 규모가 큰 가구조사이며, 미국(미시간주립대학교)과 영국(엑세스대학교)의 패널조사가 대학에 위탁되어 조사되는 반면에 SLID는 캐나다 통계청이 주관하여 지방 통계청이 직접 조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조사 방식

- SLID는 첫 조사인 1993년부터 설문지 설계에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의 인적자원연구센터 (CHRR: Center for Human Resource Research)에서 개발한 CAI와 자체적으로 개발한 FOXPRO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공동으로 적용한 CAI를 사용함.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모든 조사에 대해 전면적인 CATI 도입을 검토하였고 2001년 1월 SLID에 대한 CATI 설문지가 약 1년 동안의 설문지 분석, 디자인, 테스트 끝에 CATI적용의 첫 번째 사례로 완성됨.

○ 조사 내용

- 한 번 패널에 선정된 표본가구는 매년 2회, 최대 12번의 면접을 6년에 걸쳐 수행됨. 1월 조사에서는 세금 및 소득 정보가 제외된 주로 지난해의 노동시장 경험, 교육 및 가족관계와 관련된 정보들이 수집되며, 이전해의 세금보고가 끝난 5월 조사에서는 전년도 소득에 관련된 정보가 추가적으로 수집됨.

○ 조사 관리

- SLID 역시 다른 조사와 마찬가지로 면접원을 통해서 실시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대한의 정보를 면접원이 주지하게 하여 응답자들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응답을 꺼리는 조사대상자를 보다 잘 설득하여 응답률의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갖도록 함. 이러한 점에서 캐나다 통계청은 매 조사기간 전 응답자 뉴스레터와 안내책자를 표본가구에 발송하여 조사의 실시를 알리는 동시에 협조를 당부함. 또한 조사가 끝난 이후인 7월에는 감사편지와 수집된 자료의 분석 결과 및 활용에 관한 자료를 발송하여 사후관리에도 힘씀.
- SLID는 응답자뿐 아니라 면접원에 대해서도 다양한 유인체계를 갖고 있음. 면접원들로 하여금 팀의 한 부분이라고 느끼게 하도록 응답자와 마찬가지로 현장 경험과 같은 여러 가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면접원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조사가 종료되면 그들이 직무를 잘 수행하는데 대한 감사의 내용이 담긴 책임자가 서명한 감사편지를 보냄.

7. 동일영역 통계와 일관성

7-1 동일하거나 유사한 통계의 명칭과 개요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2006년 당시 가계자산조사를 5년 주기 예정으로 실시하였으나, 2010년 기존 가계자산조사, 가계신용조사, 한은패널조사를 통합하여 1년 주기로 가계금융조사를 실시,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로 개칭하면서 1년 주기로 전국 20,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조사되고 있음.
- 가계생활수준의 정도, 변화, 지속기간, 변화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재정 및 복지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
- 자산, 부채, 소득 등의 규모, 구성 및 분포와 미시적 재무건전성을 파악하여 사회 및 금융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
- 조사는 금융부문(가구구성, 자산 및 금융자산운용 계획, 부채 및 부채상환능력, 소득 및 지출 등 161개 항목)과 복지부문(가구구성,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노후생활 등 142개 항목(금융부문과 70% 항목 중복))으로 나뉨.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구성원(5,000 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 1회 조사하는 종단면조사

- 개인용 설문지는 조사대상가구에 속한 만 15세 이상의 모든 가구구성원을 조사대상자로 하고, 가구용 설문지는 조사대상가구의 가구주 혹은 가구주의 배우자를 응답자로 하되 가구주와 그 배우자가 응답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구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가구구성원을 응답자로 함.
- 기본조사는 가구의 특성과 가구원의 경제활동을 주로 조사함. 구체적으로 가구에 대한 조사는 가구의 구성과 가구 소득 및 소비, 주거 등과 개인의 경제활동, 노동력 상태, 소득, 노동이동 등 다양하며, 가구의 소득과 소비, 자산과 부채 등을 분석하여 가계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특성 등

7-2 동일영역 통계 간 작성목적/대상/항목, 통계수치의 유사·차이점 및 이유, 이용 시 고려사항

- 표본의 대표성
 -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지역적으로는 ‘제주도’, 가구유형으로는 ‘농어가’를 조사대상 가구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패널조사로서는 드물게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니고 있음.
- 표본의 특징점
 - 저소득층 연구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즉 표본추출 시 중위소득 60%미만 저소득층에 전체 표본의 약 50%를 할당하였기 때문에 국내 패널조사 중에서 가장 많은 저소득층 가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층 대상 정책이나 빈곤 연구에 적합함.

8. 작성주기 차이에 의한 통계의 일관성

8-1 [작성주기가 다른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통계의 명칭과 개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욕구조사
 - 저소득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주요 사회보장정책의 기초 자료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3년과 2006년에 실시한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연구와 2011년에 수행된 ‘빈곤정책 선진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에 이어, 2014년 복지욕구 실태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빈곤층의 규모, 정책의 사각지대 실태, 빈곤특성의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립을 위하여 전국단위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행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및 급여기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제도의 주요한 기준선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함.
 - 1999년 처음 실시 이후로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조사대상은 20,000여 가구로 농어를 포함한 전국가구 조사이며, 소득, 자산, 소비 항목 모두 포함하고 있음.
 - 이후 명칭을 ‘국민생활실태 조사’에서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로 변경하여, 3년 주기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2017년, 2020년 조사를 수행함.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복지패널조사
 - 동일한 가구 및 개인들을 대상으로 종단적으로 조사하는 패널조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민의 삶의 변화양태를 보여줌으로써, 시민의 삶의 역동성과 시대적 변화에 따른 복지실태와 복지욕구의 변화경향성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음.

- 2006년 서울시복지패널 데이터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2009년 1차 본조사, 2010년 1차 부가조사 및 2차 본조사, 2011년 2차 부가조사, 2012년 3차 본조사가 실시됨.
- 소득, 소비, 저축, 부채, 자산, 생활여건, 건강, 주거, 노인부양, 자녀교육, 장애 및 재활, 복지서비스 등 기존의 복지관련 조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온 영역들 외에도, 문화생활 및 사회참여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문항들과 복지정책관련 의견을 묻는 문항들이 포함

8-2 [작성주기가 다른 경우] 동일영역 통계 간 작성목적/대상/항목, 통계수치의 유사·차이점 및 이유, 이용 시 고려사항

- 종단(시계열)분석 가능
 - 2006년부터 2022년 17차까지 조사가 진행된바 시계열분석이 가능함. 즉, 횡단면데이터는 특정 시점 조사이므로 변수들 간 정적인 관계만을 추정가능한 반면, 패널데이터에서는 반복하여 관찰되기 때문에 동적인 관계를 추정할 수 있음.
- 빈곤관련 연구 적합성
 - 저소득층 연구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즉 표본추출 시 중위소득 60%미만 저소득층에 전체 표본의 약 50%를 할당하였기 때문에 국내 패널조사 중에서 가장 많은 저소득층 가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층 대상 정책이나 빈곤 연구에 적합함.

9. 통계의 이용자 서비스

9-1 통계공표 방법

- 통계청의 KOSIS(<http://kosis.kr>)를 통해서 한국복지패널 보고서에 작성된 통계표를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고 있음.
- 국가통계통합DB 호스팅 통계DB관리(<http://stat.kosis.kr>)를 이용하여 통계표 전송 및 수정하고 있음.
- 현재 국가통계포털(KOSIS)에는 2005~2021년까지 통계표가 수록되어 있고, 수록된 통계표를 사용하는 이용자 접속횟수를 기간별로 확인할 수 있음.

- 주요 용어해설, 자료수집방법, 조사연혁, 조사체계, 승인내역, 조사관리, 표본설계 등
- 나라통계(통계설명자료) : <https://www.narastat.kr/metasvc/index.do>

11. 마이크로데이터 생성·관리

11-1 마이크로데이터 생성 방법

- 생성 방법
 - 조사 완료 후 capi manag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시(raw)데이터 출력(데이터 출력은 실시간으로 가능함)
 - 출력된 원시(raw)데이터를 검수(클리닝, 에러체크 등) 및 가공하여 최종 마이크로데이터 생성

11-2 마이크로데이터 관리 방법

- 관리 방법
 - 복지패널 데이터 담당자가 1차~17차까지 마이크로데이터를 저장매체를 통해 관리하며 백업파일을 추가로 관리함.
 - 종단에러체크를 통해 발생하는 내용을 수정하며 변경된 사항을 기록함.

12.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12-1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여부 및 제공방법

- 제공여부
 - 매년 3월 말에 전년도 조사 차수까지 제공
- 제공방법
 - 매년 3월 말에 전년도 조사 차수까지 ‘한국복지패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데이터 공개 일시는 학술대회 논문공모 포스터 및 홈페이지 등에 미리 제공됨.
 - ‘한국복지패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사용형태, 제목(주제), 발간지(처), 발간년도 등)를 작성하면 데이터, 설문지, 유저가이드, 코딩북 등을 차수별로 다운로드할 수 있음.
 - 관련 서비스 제공 인터넷주소: 한국복지패널 홈페이지
 - (<https://www.koweps.re.kr> > 데이터&설문지)
 - 마이크로데이터 구입 소요시간 및 구입비용: 데이터 사용목적 등을 기입하면 무료로 바로 다운로드 가능
 - 자료제공 포맷 및 자료 제공 레이아웃: sas, stata, spss 3개 버전의 데이터로 제공
 - 미제공 항목: 주소, 패널가구의 이름, 연락처, 행정코드 7자리, 조사원 이름 및 지도원 이름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항목

12-2 마이크로데이터에 대한 설명자료(202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코딩북 예시)

제 17차 2022년 한국복지패널조사 가구용 코딩북						
변수명	SYSMIS, 모음/무응답	원가구용 결문번호	16차 신규가구용 결문번호	구분	변수설명	문항내용
h17_id		표지	표지	가구식별변수	가구 패널 ID	1차년도 조사대상 가구에 부여된 패널 ID
h17_ind					가구종별차수	1차 종성가구, 2차 종성가구, 3차 종성가구, 3...
h17_sn					가구분리일련번호	첫번째 신규가구, 1. 두번째 신규가구, 2...
h17_merkey					패널간 가구머지 키변수	가구 패널 ID + 가구종별차수 + 가구분리일련번호
h_new	-	-	-		7차 추가표본(1,800가구) 구분	0. 기존패널가구 1. 7차 추가패널가구
h_new1	-	-	-	가구식별변수	17차 추가표본(2,012가구) 구분	0. 기존패널가구 1. 17차 추가패널가구
h17_cobf	-	-	표지		분가사유	1.결혼 2.직업 3.학업 4.이혼 5.멸거 6.위탁 7.기타
h17_ws					표준 가중치(표본분류) - 원단면 데이터 및 1,2,3,4,5,6,7,8,9,10,11,12,13,14,15,16,17차 종단면 데이터(통합표본)	소수점 10자리
h17_wg					일반 가중치(모수추정) - 원단면 데이터 및 1,2,3,4,5,6,7,8,9,10,11,12,13,14,15,16,17차 종단면 데이터(통합표본)	소수점 10자리
h17_ws_all					표준 가중치(표본분류) - 원단면 데이터 및 1,2,3,4,5,6,7,8,9,10,11,12,13,14,15,16,17차 종단면 데이터(통합표본)	
h17_wg_all				가구식별변수	일반 가중치(모수추정) - 원단면 데이터 및 1,2,3,4,5,6,7,8,9,10,11,12,13,14,15,16,17차 종단면 데이터(통합표본)	
h17_reg5					5개 권역별 지역구분	1. 서울 2.강원 3.충청 4.경남 5.제주도
h17_reg7					7개 권역별 지역구분	1. 서울 2.수도권(인천/경기) 3.부산/경남/충청 4.대구/경북 5.대전/충남 6.광주/충북 7.제주/전남/전북/제주도
h17_din					가치분소독	소수점 4자리(단위: 만원)
h17_cin					경상소독	소수점 4자리(단위: 만원)
h17_flg				가구식별변수	가치분소독 및 경상소독 -imputation 여부 (무응답 대체법 적용 여부)	0. 대체법 미적용 1. 대체법 적용
h17_hc					군동화소독에 따른 가구구분(중공부조 이전의 군동화 경상소독의 중위 60% 기준(일표본))	1. 일반가구 2. 저소득층 가구
h17_hc_all					군동화소독에 따른 가구구분(중공부조 이전의 군동화 경상소독의 중위 60% 기준(일표본))	1. 일반가구 2. 저소득층 가구
mh1701_1	SYSMIS=	-	신규가구 생성시기	가구식별변수	신규가구 생성시기	
mh1701_2	SYSMIS=	-	신규가구 생성시기		신규가구 생성시기	
h1701_1	모음/무응답=99	문1	문1		가구원수	명
h17_pid1		결문번호	결문번호		1번 가구원-1가구원 가구원차수	가구원 1차 전임 1, 가구원 2차 전임 2, 가구원 3차 전임 3...
h17_pid1		개인 패널ID	개인 패널ID		개인 패널ID	
h1701_2		가구원번호1	가구원번호1	가구식별변수	가구원 번호	
h1701_3	모음/무응답=999, 단가인=999, 기타인원=997	문2	문2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와의 관계코드도 참고
h1701_4	모음/무응답=9	문3	문3		성별	1.남 2.여
h1701_5	모음/무응답=9999	문4	문4		태어난 연도	년

12-3 마이크로데이터에 제공에 관한 내부 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지침과 조사자료 관리지침이 있고, 이 지침에 따라 복지패널 데이터도 복지패널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무료로 공개하고 있음

13. 자료 수집, 처리 및 보관 과정의 비밀보호

13-1 자료 수집, 처리 및 보관 과정에서의 응답자 비밀보호 조치

- (조사매뉴얼) “한국복지 패널조사는 정부승인 지정통계조사(승인번호 제33109호)이며, 또한 법(통계법 제33조, 제25조)으로 비밀이 보장된다는 사실과 이 조사의 내용은 통계작성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음을 고지”하게 함.
- (조사표) “본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고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를 명시
- (CAPI) 조사가 완료되어 데이터를 추출한 이후 기존 CAPI 아이디는 삭제되어 조사팀에서 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함.
- (자료보관 및 공개) 추출한 데이터에는 응답자의 개인신상 정보는 일체 삭제되면, 주소 뿐 아니라 시군구 까지의 정보도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아 폭여 발생할 수 있는 응답자 식별 문제를 봉쇄하고 있음.
- (조사참여 및 자료활용 동의서) 가구 방문시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에 의거한 조사참여·자료활용 동의서를 지참하여, 응답자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있음. 매해 조사 착수 전에 이 동의서를 포함한 연구윤리 심의를 원내 IRB위원회로부터 받고 있음.

14. 공표자료의 비밀보호

14-1 공표 자료 또는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과정에서 응답자 식별가능성 제거

- 공표 자료에서의 응답자 식별가능성 제거

- 공표 자료는 빈도분석 통계표와 기술통계(중위값, 평균)로 구성되어 있어 원천적으로 응답자 식별가능성 발생여지 차단

14-2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과정에서 응답자 비밀 보호를 위하여 취한 조치나 방법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과정에서 응답자 식별가능성 제거
 -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응답자 식별가능 조사항목(주소, 연락처, 이름, 행정코드 7자리, 생월 제거)이 철저히 제거된 상태로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가공한 형태로 제공

15. 자료 보안 및 접근제한

16-1 자료 유실, 유출, 훼손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자료보안 관련 지침이나 조치

☐ 자료의 수집, 처리 및 보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위탁계약서
 - “제6조(부실·허위조사 등의 수수료 감액 및 책임) ①“계약상대자”가 조사 수행 중 악의로 또는 고의로 허위 응답을 받거나 설문지를 작성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과실 또는 고의 정도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하며,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발주기관”은 중도 포기자 “계약상대자”의 사후검증 결과 설문지 작성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지급된 조사 수수료를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의무 및 변상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및 법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시 통계법 제39조[벌칙]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⑤“발주기관”은 조사기간 중 또는 종료 후 “계약상대자”의 조사표 질에 대하여 검증할 수 있다.”
- 조사원 주의사항
 - CAPI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노트북에 조사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사업무 관련 이외의 기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파일을 저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유실, 유출, 훼손 등의 예방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자료 처리 및 관리지침
 - “제6조의 2(조사자료의 DB이미지화) ① 국가통계승인을 받은 조사사업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조사표 및 부가자료를 DB이미지화한 이후 폐기하며, 국가통계승인을 받지 않은 조사사업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유실, 유출, 훼손 등의 접근제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자료 처리 및 관리지침
 - “제8조(자료의 활용)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자료를 대출 또는 양여(내용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연구원 직원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해당자료를 대출 또는 양여(내용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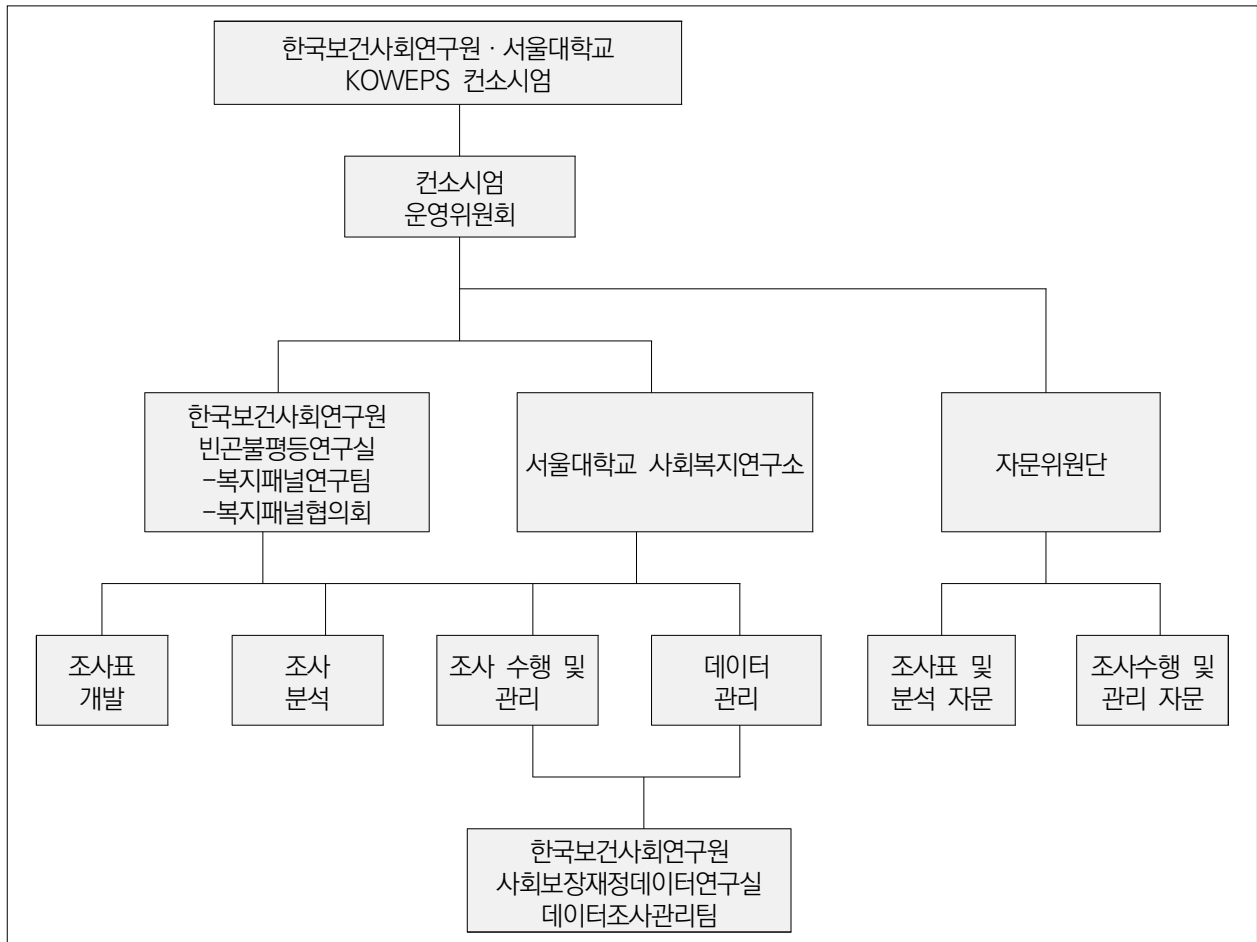
Ⅶ. 통계기반 및 개선

1. 기획 및 분석 인력, 사업예산

1-1 통계 기획 및 분석인력

□ 업무담당 부서명과 업무별 담당인력 구성

- 담당부서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 사회보장재정데이터연구실 데이터조사관리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컨소시엄)
- 한국복지패널(KOWEPS) 관리 및 운영체계



○ 담당인력

인원	소속	인원	소속
1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	1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데이터연구실
1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	1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데이터연구실
1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	1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데이터연구실
1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	1명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1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	1명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1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	1명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1-2 최근 1년간 통계 관련 교육과정 이수 내역

□ 통계품질관리(1기) 수료

2. 통계 품질관리 및 개선

2-1 통계품질제고 가능성에 대한 검토 결과나 개선 발전계획의 수립 또는 추진 실적

- 정시성(예고된 공표시기를 정확히 준수하는가에 대한 개념) 차원에서 데이터 및 분석보고서에 대한 일정한 공표시기를 정하고 그 시기에 맞춰 공표하고 있음.
- 통계의 정확성과 비교성을 확보하고 통계 간 연관분석이 가능하도록 어떤 현상의 집합 전체(산업, 직업)를 그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묶어 분류한 국가표준통계분류를 준용하고 있음.
- 표본오차의 크기, 비표본오차의 정도 및 잠정치/확정치 간의 차이 등을 검토함으로써 정확성을 제고하고자함.
- 주기적인 홈페이지 관리를 통해 외부이용자가 통계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계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노력함.

2-2 과거 통계품질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과제 이행내역 (중점관리과제)

- 패널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표본 및 가중치 관련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통계품질을 제고하고자함.
 - 원표본 특성 및 가중치 변화 분석을 통해 외부 및 내부 전문가(복지패널 연구진 포함)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계품질을 관리하고 있음.
 - 또한 탈락가구, 분가가구 등의 특성을 분석하여 패널관리에 대한 방안을 모색함.
 - 차수별 조사문항 검토를 통해 통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함.
- 원표본 소실로 인한 패널 추가(2012가구) 등 이행실적